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해석사례집

헌법위원회 제100회기(2016.9.)~제105회기(2021.9.)

1. 제105회기 헌법해석사례 P.1
2. 제104회기 헌법해석사례 P.80
3. 제103회기 헌법해석사례 P.149
4. 제102회기 헌법해석사례 P.250
5. 제101회기 헌법해석사례 P.352
6. 제100회기 헌법해석사례 P.52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제105회기 헌법 해석 사례

▶ 헌법 질의 해석

1. 다른 교단의 목사 청빙

부산노회장 강상국 목사가 제출한 “부노제190-63호 / 헌법 해석 질의(2020.9.22.)” 건

해석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제3항 제11호에 근거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기하성) 목사로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자”에 대하여 청목과정을 받아 줄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대한하나님성회 총회신학대학원”은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정기노회 헌의안 중 타 교단 목사로 노회 가입 청원하여 청목과정을 진행하려고 하는 바, 붙임과 같이 타 교단 목사를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단인가를 질의합니다.

2. 온라인 노회 개회(코로나19 심각단계)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2-33호 / 질의의 건(2020.9.22.)”

해석 : 질의1,2) 국가적 재난사항인 감염병 예방 “심각”단계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노회 총대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총회 헌법 및 총회규칙, 노회규칙 등이 없으며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초유의 재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법과 총회 헌법 등의 취지와 목적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 노회를 개최하되 최소인원 외에 노회총대들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실내 50명이 넘지 않는 선에서 “온라인 노회 회집(출석)교회” 로 지정된 장소로 출석함으로써 현장 및 온라인을 겸한 노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회집 교회별로 선거하여 중앙에서 집계 발표할 수 있고 신·구임원 교체와 회무처리도 가능하다. 다만, 국가 방역지침을 완화 할 경우와 노회원 수를 감안하여 해당 노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질의내용 : 질의1) 정기노회 시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어 실내 모임 및 집합 인원이 제한 될 경우, 노회원 인원을 회집교회로 분산 배정하여 온라인 노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2) 또 온라인 노회가 가능 할 경우, 회장단 선거를 위해 회집 교회별로 선거하여 중앙에서 집계발표하고, 신·구임원 교체와 회무처리를 진행해도 되는지

3. 재판국 재적 인원(제척,기피,회피) 기산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3572 / 총회 재판국 재적 인원 관련 질의(2020.9.11.)" 건

해석 : 질의1,2) 제척·기피·회피가 절차에 의해 확정된 때에는 원활한 재판을 위해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10항(제척·기피·회피가 확정된 때에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직권 또는 재판국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한다. 보선된 국원은 그 사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심판에 관여한다.)에 근거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하여야 하나, 재판국원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할 경우 사망, 사임, 은퇴 경우는 재적 국원(15명)에서 제외되지만, 제척·기피·회피 재판국원은 제외되지 않으므로 헌법 권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한 재적 국원(15명)의 3분의 2 이상(10명 이상)의 출석 정족수와 재적 국원(15명) 과반수의 찬성(8명 이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10항에 근거 반드시 보선 충원한 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재적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적수에 대한 '정수' 개념과 기피, 회피 등에 대한 재적 정족수에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 : 광주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구합 2402,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15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10]

질의내용 : 제104회 총회재판국이 9월 8일 국원 9인이 출석한 가운데 심리중인 사건 2건을 판결하였습니다. 총회재판국원 15인 중 6명이 불참하여 판결 성수가 미달되어 다른 사건들은 처리하지 않았고 판결한 사건 2건은 기피 국원, 회피 국원이 모두 총 3인이어서 재판국원 재적을 12명으로 기산하고 9명 출석으로 헌법 권징 제13조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참 국원 6인은 헌법 권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전체 재판국원 15명의 3분의 2는 10인이고, 국원 10인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판결할 수 있으므로 재판국원 9명으로 사건을 판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헌법 질의하니 해석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회임원회는 제104-13차 회의(2020.9.10.)에서 총회 헌

법위원회의 해석에 준하여 관련 사건의 판결 통보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1) 총회재판국원 15인 중 특정 사건에 대한 기피 국원, 회피 국원이 모두 총 3인이어서 재판국원의 재적인원을 기피 국원, 회피 국원 3인을 제외한 12명으로 기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피 국원, 회피 국원 3인을 포함한 15인으로 기산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총회재판국원 15인 중 특정 사건에 대한 기피 국원, 회피 국원이 모두 총 3인이어서 재판국원의 재적인원을 기피 국원, 회피 국원 3인을 제외한 12명으로 기산하여 판결한 절차는 합법적인지 여부

4. 재판국 재적 인원(제척,기피,회피) 기산

서울관악노회장 이경희 장로가 제출한 “관악 제48-88호 / 헌법질의 해석 요청(2020.9. 11.)” 건

해석 : 질의1~5) 제척·기피·회피가 절차에 의해 확정된 때에는 원활한 재판을 위해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10항(제척·기피·회피가 확정된 때에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직권 또는 재판국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한다. 보선된 국원은 그 사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심판에 관여한다.)에 근거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하여야 하나, 재판국원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할 경우 사망, 사임, 은퇴 경우는 재적 국원(15명)에서 제외되지만, 제척·기피·회피 재판국원은 제외되지 않으므로 헌법 권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한 재적 국원(15명)의 3분의 2 이상(10명 이상)의 출석 정족수와 재적 국원(15명) 과반수의 찬성(8명 이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10항에 근거 반드시 보선 충원한 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재적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적수에 대한 ‘정수’ 개념과 기피, 회피 등에 대한 재적 정족수에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 : 광주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구합 2402,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15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10]

질의6~9)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6항에 근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

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급속에 대한 결정은 재판국이 한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9항에 근거 기피 신청은 재판국원의 재적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변론이나 토론 없이 무기명·비밀투표로 정한다. 기피 신청된 국원은 투표할 수 없다.

질의10~11) 기피 신청은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9항에 근거 결정되어야 하고 기피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기각결정 또는 절차 미확정, 기피신청 결정 정족수 미달 등) 출석 정족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헌법 제3편(권징) 제2장(재판국) 제2절(총회재판국) 제8조(의결방법) 제1항에 전원합의부의 판결 합의는 재적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회재판국 국원이 15명이면 재적국원은 몇 명인지요

질의2) 총회재판국 국원이 제척 및 기피 그리고 회피되면 재판국의 재적국원에 삽입되는 지요

질의3)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장(권징) 제38조(제척, 기피, 회피) 제10항에 “제척 · 기피 · 회피가 확정된 때에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직권 또는 재판국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한다. 보선된 국원은 그 사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심판에 관여한다.”라고 규정되었습니다. 총회재판국 제104-10호 및 제104-33호 소송에서 기피 등의 재판국원 보선 충원 없이 판결한 것이 유효인지 무효인지요

질의4) 총회 재판국의 개회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5) 총회 재판국의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6) 총회재판국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 소송 진행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7) 기피신청은 재적 3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는지요

질의8) 기피결정의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9) 기피신청된 국원이 기피 결정 투표를 할 수 있는지요

질의10) 기피결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을 시, 그 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11) 기피결정이 무효인 상태에서 진행된 소송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5. 전도목사 파송 범위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가 제출한 “제정치 152-81호 / 헌법 해석 요청(2020.10.12.)” 건

해석 : 질의1,2) 전도목사는 헌법 정치 제27조 제4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2에 근거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 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로 노회 경계 밖이라도 학원, 병원, 기타 전도 가능한 기관의 기관장(이사장)의 요청으로 파송할 수 있다. 따라서 전도목사 파송의 목적은 학원 전도를 위한 것이므로 해당 학교가 교육부 설립 인가 및 총회가 인정하는 학교와 관계없이 건물이 있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학원이면 가능하다. 다만 해당 학원 전도를 위해 전도목사 파송이 적절하고 (이단 및 사이비 여부 등 판단) 필요한지는 노회가 판단해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제주열방대학이 학원으로 인정되는지 확인요청

질의2) 제주노회에서 제주열방대학에 전도목사로 파송이 가능한지 확인요청

6. 당회조직 및 장로피택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가 제출한 “제정치 152-82호 / 헌법 해석 요청(2020.10.12.)” 건

해석 : 헌법 정치 제64조에 근거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최초의 세례교인(입교인) 30인에 한하여는 장로 2인을 동시에 피택할 수 있으나 하지 못하였을 경우 1인을 선택 후 추후에 61명 이전이라도 1인을 추가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동시에 장로 2인을 피택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세례교인 30명이 되었을 때 장로 2인을 피택하지 못하고 1인만 피택하고 추후 세례교인 61명이 되었을 때 장로 2인을 피택할 수 있는지?

7. 행정착오 시 목사안수 및 목사직 효력

부산노회장 김수찬 장로가 제출한 “부노제191-07호 / 헌법 질의(2020.10.27.)” 건

해석 : 귀책사유가 목사안수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있고, 본인이나 학교도 행정처리 상 미숙으로 인한 학점부여와 졸업장을 수여함으로 얻은 이익이 없음으로 목사안수는 유효하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학점을 이수한다면 목사직의 효력은 문제없다.

질의내용 : 질의1) 학교의 학사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졸업취소 조치이지만, 취소된 해당 학점을 재취득해서 신학대학원 졸업 요건을 갖추면 이미 받은 목사직은 계속 유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8. 전임전도사 교역경험 인정

경남노회장 이상택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020-180호 / 전임전도사 교역 경험 인정의 건(2020.10.28.)”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4에 제1항에 근거 헌법 정치 제26조 제1항 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은 4년, 준전임은 3년으로 인정한다. 동법 제2항에 근거 증빙서류는 정치 제5-3호 서식에 의거 시무한 교회 당회장이 전임전도사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선교단체 및 신학대학의 경우 단체장의 명의로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제94회기 헌법 해석 63번, 제100회기 헌법 해석 28번 참조)

질의내용 : 질의1)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26조 목사의 자격 1.②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경험을 가진 자와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16조의 4 목사의 자격과 안수 1,2년 이상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를 말한다. 그리고 정치 제5-3호 서식에 의거 시무한 교회 당회장이 전임전도사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대원 졸업 후 노회 관할 지역 내의 대학병원 원목실에서 전임전도사로 2년 사역 후 병원 이사장의 요청으로 원목(전도목사)으로 청빙 받을 경우 전임전도사의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전남노회 질의: 직영 호남신대 조교수 경력 인정, 총장 명의로 발급, 2010년 8월 순천남노회 질의: 선교단체나 기관에 시무하던 전도사가 전도목사나 기관목사로 청빙될 경우 경력 인정, 청빙기관장이나 선교단체장의 명의로 발급).

9. 조기은퇴 강제 불가

대구동노회 대구칠곡교회 박경식 장로가 제출한 “헌법질의 청원 요청의 건(2020.11.12.)”

해석 : 질의1,2) 헌법 정치 제22조에 근거 70세 정년을 교회 규약으로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65세 조기은퇴 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조기은퇴를 거부할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적용순서에 따라 조기 은퇴를 강제할 수 없다. (제101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101번, 제102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28번, 제103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81번 참조)

질의내용 : 질의1) 시무장로의 임기가 총회 헌법에 의해 보장된 70세의 정년을, 교회의 규약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질의2) 교회의 규약으로 시무장로의 임기를 65세로 정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시기가 65세가 도과되었을 경우, 총회 헌법에서 보장한 70세 정년으로 은퇴할 수 있는지요?

10. 면직출교 무임목사 복직 절차

부천노회장 안경근 목사가 제출한 "예장부천노회 제145-7호 / 헌법위원회 헌법 질의(2020.11.24.)" 건

해석 : 질의1) 헌법 권징 제34조에 근거 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 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상소 후 중도에 취하할 경우 소송은 당초 제기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므로 상소기간 만료(판결문 접수 후 20일) 후 취하(2016.4.14.)한 경우는 상소기간 만료일(판결문 접수 후 20일)로 확정된다.

판결문 송부는 헌법 권징 제36조에 근거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따라서 면직출교일(2015.7.30.)로부터 송달일 10일, 상소기간 만료일(판결문 접수 후 20일) 등을 감안할 때 무임목사 해직 판결일(2016.3.11.)보다 선행되므로 면직출교에 의한 복직 절차에 따르면 된다.

질의2) 노회 재판국 판결 후 총회재판국에 상소하였다가 중도에 취하할 경우 소송은 당초 제기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므로 최종 재판국은 노회 재판국이다.

[※ 참고 : ① 국가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제1항〈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므3455 판결요지(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된다.)]

질의내용 : 질의1) A목사 2015.7.30.일 부천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출교, 2016.3.11.일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2012.4.17.일 담임목사 청빙이 무효라고 판결 받았습니다. A목사가 노회에서 복직을 한다고 하면 아래 절차 중 어느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① 2015.7.30. 면직출교에 따른 복직(헌법 권징 제134조, 제137조)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② 2016.3.11. 판결에 의한 2012.4.17.일 무임목사 해직에 따른 복직(헌법 정치 제37조, 헌법시행규정 제19조)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③ 아니면 한사람에게 면직출교와 무임목사 해직에 따른 두 번 복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질의2) 권징 제134조(해벌과 청빙)에 따른 해벌 절차와 관련하여, 부천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여 총회에 항소하였으나, 2016.4.1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상고 취하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최종재판국을 부천노회 재판국으로 보아야 하는지, 총회재판국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11. 교회분규 중 공동의회의 목사 연임 청빙 결의

평남노회장 최재범 목사가 제출한 "평남노 제192-90호 / 서류이첩(2020.10.21.)" 건

해석 : 질의1) 제104회기 헌법위원회 65번 해석으로 갈음하다.

[제104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65번]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2544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및 헌법 해석 초안 유출 경위 조사 요청(2020.7.17.)" - 사무국-2467 / 헌법해석 보고(2020.7.15.) 중 1번 - 【평남노회 상삼교회 김진열 장로 외 2인이 제출한 "총회헌법위원회 질의서(2020.5.21.)", 평남노회 상삼교회 전형섭 장로가 제출한 "부전지 상삼교회 (청원서) 추가서류(2020.6.24.)", 평남노회장 최재범 목사가 제출한 "평남노 제192-4호 / 상삼교회 서기 전형섭 장로(장로들)의 질의 건에 대한 반려 요청(2020.6.3.)", 평남노회장 최재범 목사가 제출한 "평남노 제192-29호 / 상삼교회 장로들의 헌법질의에 대한 평남노회의 입장(2020.7.7.)"】건과 평남노회 상삼교회 김진열 장로 외 2인이 제출한 "청원서(2020.7.15.)", 평남노회장 최재범 목사가 제출한 "평남노 제192-44호 / 상삼교회 전형섭 장로의 질의에 대한 헌법해석 재고 요청(2020.8.5.)", 평남노회 상삼교회 교인 김진열 장로 외 76인이 제출한 "호소문(2020.8.6.)" 건

해석 : 질의1) 공동의회는 헌법 정치 제90조 제3항 3호에 근거 상회의 지시에 따라 개최할 수 있으며 헌법 정치 제28조 제3항에 근거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질의2) 사실 관계 확인할 수 없어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3) 헌법 정치 제90조 제2항에 근거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의회 참석자 전원이 안건 상정 및 처리에 동의할 경우 안건은 추가 할 수 있으나 1명이라도 반대가 있는 안건은 다룰 수 없고 새로운 안건에 대해서 다시 당회 결의 및 광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질의4)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의 적용은 선출에 의해 임기가 있는 치리회장을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청빙에 의한 당회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교회가 계속된 분규(분쟁)로 인하여 부득이 정한 기간 내에 당회를 개최할 수 없

어 연임청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96회기 헌법위원회 54번 해석과 같이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을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일정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들을 살펴 볼 때 평남노회 자료에 김수태 목사가 무임목사로 등재된 사실(2019.10.22.),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에 근거 당회장 결원을 전제로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2020.3.2.임시당회장:석근복목사) 사실, 2020.4.19. 임시당회장 주재 하에 김수태 목사 전별금 지급(안)을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결의한 결과 부결(총투표 72명, 찬성1명, 반대61명, 무효10) 된 사실 등, 양측의 문제제기 문건 등을 살펴볼 때 노회가 상삼교회 담임목사 결원을 전제로 제반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무임목사 등재(평남노회, 2019.10.22.) 후 6개월이 지난 후 과거 헌법해석을 몰랐다는 이유로 평남노회 정기노회(2020.5.28.)에서 이를 번복한 것은 노회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김수태 목사는 무임목사로 봄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조직교회에서 당회의 결의 없이 공동의회를 열어 교인들의 신임을 물어 담임목사 연임 청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의2) 노회에서 설교목사로 파송한 성홍모 목사(평남노회 은퇴목사)가 본당 2층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무임목사가 된 김수태 목사를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이 1층 교육관에서 드리는 예배를 무임목사 된 김수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질의3) 공동의회(정치 제13장 제90조2항) 사전에 광고하지 않은 안건을 수습전권위원회 결의로 공동의회 당일 위원장이 긴급 동의안을 제안 할 수 있습니까? (서증7,서증8) 질의4) 제191회기 평남노회에서 연임청원을 받지 못하고 무임목사 된 김수태 목사의 담임 목사직과 당회장권이 연장되는 것이 시행규정 제33조5항을 인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질의2-1) 권리를 구하는 문제는 헌법해석 사항이 아니며 당사자가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다.

질의2-2) 제104회기 헌법위원회 65번에 '담임목사 유지된다.' 해석 한 바 없으며, 무임목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다.

질의내용 : 질의1) 담임목사로 부임한 3년이 되는 해, 6개월 전 성도들에 의해서 시무장로 전원이 노회에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하였고(사고당회), 이후 정상적인 당회 기능이 안되어 연임청원 절차를 갖지 못했을 때, 목사의 담임목사직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2) 질의자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의하면 노회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1) 질의자는 해당 노회에 어떤 권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2) 김수태 목사의 "담임목사직은 유지된다."는 것은 어떠한 해석인가요?

12. 노회 폐회 후 미진안건 처리(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4478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0.12.7.)” - 평양노회장 최창덕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93-3호 / 헌법해석 요청(2020.11.11.)” 건

해석 : 미진 안건은 토의가 미진한 안건을 말하고 상정되지 않은 새로운 안건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평양노회 보고서에 안건으로 등재 되어 있는 경우 임원회로 일임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노회 임원회에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 평양노회가 2020년 10월 20일 총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되었으나 코로나19로 모든 부서 보고서를 서면으로 받고 미진안건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폐회를 하였으나, 분쟁이 있는 교회에 수습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로 변경해 달라는 헌의서를 올렸기에 노회 폐회 중에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빠른 시일 안에 헌법 해석을 요청합니다.

13. 예산 불확정 시 예산집행(코로나19 재난상황)

서울북노회장 전일록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75-27호 / 2021년 예산 집행에 관한 질의 건(2020.12.7.)”

해석 : 교회의 예산과 결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91조 제5항 2호에 근거 제직회 결의와 제90조 제5항 2호에 근거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총회 헌법 정치 제90조 제4항에 근거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년도 예산을 확정할 수 없다면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이후 공동의회 개최가 가능할 경우 신속히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차기년도(2021년) 예산을 확정 결의하고 운영하면 된다.(제104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33번 참고)

※ 참고) [국가재정법 제55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①정부는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헌법」제54조 제3항(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부는 12월 8일부터 3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시행하여 각 지교회에서는 공동의회를 개회하지 못하게 되어 2021년 예산 집행에 문제가 발생되므로 ‘정치 제13장 공동의회 제5항 ② 예산 및 결산’에 대해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14. 전도목사 파송 범위

김제노회 봉남교회 박성규 목사가 제출한 “봉남교회 제 2020-26호 / 헌법해석(전도목사 파송청원과 청빙에 관하여)(2020.12.10.)” 건

해석 : 질의1,2) 전도목사는 헌법 정치 제27조 제4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2에 근거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 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로 노회 경계 밖이라도 학원, 병원, 기타 전도 가능한 기관의 기관장(이사장)의 요청으로 파송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가능하나 단, 자신이 기관장일 경우 기관 임원회(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결의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노회가 판단해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기관이나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재가복지센터도 전도목사 파송청원을 할 수 있는지?

질의2) 재가복지 센터장인 본인이 본인을 청빙할 수 있는지?

15. 노회 폐회 후 임시당회장 선임 및 파송 절차

광주동노회장 김영호 목사가 제출한 “광동제25-19호 / 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파송 절차 질의(2020.12.11.)” 건

해석 : 질의1,2) 헌법 정치 제67조 제2항에 근거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파송절차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1항에 근거 헌법 정치 제67조 2항의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가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따라서 노회 폐회 중에는 노회 정치부를 거치지 않고 노회 임원회가 임시당회장을 선임하여 파송 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 폐회 중 노회의 정치부가 임시당회장을 선임 후 노회 임원회의 승인으로 파송해야 하는지?

질의2) 노회 폐회 중 노회의 정치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노회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을 선임하여 파송 가능한지?

16.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온라인 개최(코로나19 심각단계 거리두기 2~3단계)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4574 / 교회의 온라인 회의 관련 헌법 질의(2020.12.14.)”

건

해석 : 질의1) 국가적 재난사항인 감염병 예방 “심각”단계 및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교회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총회 헌법 및 총회 규칙, 노회 규칙 등이 없으며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초유의 재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법과 총회 헌법 등의 취지와 목적 등을 감안할 때 각 교회 상황과 형편에 따라 헌법과 제 규정을 준용하여 온라인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온라인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경우 지난 제105회 온라인 총회 어려움을 감안하여 개회성수, 발언권, 표결권 확보와 인터넷 연결 불량으로 인한 발언권, 결의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인사권에 대해서는 헌법과 제 규정에 의한 개회 및 의결 정족수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2) 국가재난인 코로나19의 2단계 이상 비상시국 하에서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개최하기 심히 곤란하여, 온라인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개최할 경우 온라인 당회는 헌법 정치 제66조를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제직회와 공동의회는 헌법 정치 제91조 제3항 및 헌법 정치 제90조 제2항을 준용하여 1주전 사전 공지(공지방법 : 주보, 문자, 교회 홈페이지, 전화 등 / 온라인 회의방법 안내)한 후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재난인 코로나19 2단계이상 비상시국 하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당회장이 온라인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질의3) 온라인 당회는 헌법 정치 제66조를 준용하여 온라인상에서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온라인 참석자)으로 개회하여 진행하고, 온라인 제직회는 헌법 정치 제91조를 준용하여 개회성수는 출석수(온라인 참석자)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온라인 참석자)로 한다. 온라인 공동의회는 헌법 정치 제90조 제4항을 준용하여 개회는 회집(온라인 참석자)된 회원으로 개회하고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결의 당시 온라인 참석자) 과반수로 결의한다. 특히 인사 관련 사항은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5조를 적용하고 아울러 기 헌법위원회 해석을 참고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절차를 거쳐 결의된 안건은 유효하다.(제104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18번, 37번, 49번, 51번, 63번,

71번 참고)

다만, 총회 헌법 정치 제91조, 제90조 제4항에 근거 제직회와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여 예·결산을 확정할 수 없다면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고 이후 제직회와 공동의회 개최가 가능할 경우 신속히 개최하여 차기년도(2021년) 예·결산을 확정 결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04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33번 참고)

※ 참고) [국가재정법 제55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①정부는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헌법」제54조 제3항(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 질의1) 국가재난인 코로나19의 2단계 이상 비상시국 하에서 총회 헌법 제69조(당회의 회집), 제90조(공동의회), 제91조(제직회)를 어떻게 적용 또는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국가재난인 코로나19의 2단계 이상 비상시국 하에서 총회 헌법 제69조(당회의 회집), 제90조(공동의회), 제91조(제직회)를 적용 또는 준용할 경우 당회장의 소집 권한은 유효한지 여부.

질의3) 비상시국(국가적재난)에 관한 법조항이 현 총회 헌법에는 제정되어 있지 않은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정부와 자치단체장이 거리두기 2~2.5단계를 시행하여 주일예배도 온라인(영상) 예배로 전환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온라인 회의 진행 및 결의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교회분규 중 위임목사 청빙 및 연임청빙

서울강동노회 동성교회 김영진 장로 외 2인이 송부한 “총회 헌법질의 관련 보완 자료 송부(2020.12.)” 건

해석 : 질의1) “교회가 계속된 분규(분쟁)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인 당회(당회 미조직교회 제직회)를 개최할 수 없어 연임청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담임목사는 적법한 연임청빙 절차를 종료 할 때까지 자동 연장 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분규 여부에 대한 판단은 노회가

판단한 후에 연임청빙 문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16조에 근거 정치제5-1호, 2호 서식 외에는 노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질의4) 행정소송의 경우는 헌법 권징 제142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74조에 근거 치리회장의 행정행위 즉 행정처분을 말하는 것이며 헌법 권징 제154조는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 하는 소송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개 교회에서 함이 적절하다.

질의3,5~10,12,13) 위임목사의 경우 헌법 정치 제28조에 근거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헌법 정치 제29조 제1항에 근거 노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헌법시행규정 제17조에 근거 위임목사의 직무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되며 위임식 전의 목사의 칭호는 담임목사이다. 위임식이 없었으면 담임목사이며 담임목사 시무기간은 노회허락일로부터 3년이다. 공동의회 위임목사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위임식을 하기 전까지는 담임목사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헌법 정치 제28조에 근거 공동의회 결과에 대한 해약결의 또는 번안동의 없이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할 수 있고 이후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공동의회 일반결의에 대하여서는 헌법 정치 제90조 제6항에 근거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 위임목사의 경우 헌법 정치 제28조에 근거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출석회원이라 함은 헌법 정치 제90조 제6항에 근거 공동의회 일반결의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조 및 제12조에 근거 투표당시 재석으로 봄이 타당하다. 관행에 의하였다고 하여도 일반안건이 아닌 법적요건이 필요한 인사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제기 될 경우 헌법 정치 제28조를 준수해야 한다.

위임목사 투표 시 회의장에 남아있는 회원에 대하여 재석을 확인했어야 하나 그대로 진행하여 출석회원에 대한 정확한 재석수를 확인할 수 없었을 때는 헌법 정치 제28조에 근거 공동의회 개회당시 출석회원 456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개회 시 출석회원(456명)과 총 투표자(414명)에 차이가 크고 그 기준에 따라 위임목사 결의 정족수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되는 상황에서 “총 투표자 3분의 2 이상”으로 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헌법 정치 제28조에 근거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결의함이 적법하다. 이는 재석회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재석회원 중 총 투표자수로 결의할 경우 기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우리 교단 헌법에서는 출석회원과 총 투표수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출석회원과 총 투표수를 동일하게 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출석회원: 헌법 정치 제28조, 제44조, 제47조), (총 투표수: 헌법 정치 제41조), (투표수: 헌법 정치 제54조)]

노회는 서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개교회의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반드시 승인 결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노회 소집 통보서가 발송되었다면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3에 근거 임원회와 정치부가 폐회 중 할 수 있는 목사 청빙결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접수 서류에 대한 중대한 하자(관련서류 요건 및 절차여부)를 확인하거나 또는 요건이 미비하였다고 하면 보완 요구 및 반려 할 수 있다.

질의11) 위임목사 청빙서에 대한 유효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며, 만약 유효하지 않다고 하면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에 근거 위임목사의 위임투표는 노회의 동일 회기 내에는 1회만 가능하며 부결 시 담임목사가 된다. 회기가 달라질 경우 위임 투표가 가능하다.

(제102회기 헌법해석 1번 참조)

질의내용 : 질의1) 2020년 봄 노회 전일까지 3년 임기가 만료되는 담임(임시) 목사가 2019년 12월 22일 해 교회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 청빙결의 되고 봄 노회 개최 공고 후,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칭빙 승인 요청하였다. 아래 관련 근거 및 헌법질의 해석 등을 근거로 질의합니다. 2020년 봄 노회에서 안건 미 상정되어 위임목사 청빙 승인이 없었을 경우, 담임(임시) 목사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2) 위임목사 청빙 서식은 헌법시행규정 제16조에 의하면 제5-1, 2호 서식에 의하고 위임목사청빙 청원서 구비 서류 중 청빙서 사본(공동의회 출석 세례 교인 000명 중 000명의 서명)은 법정 규정 양식

이 없어, 우리 교회는 공동의회 회원이 투표 시에 실제 서명한 '투표인 명부'를 사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구비서류 제출 방식에 저촉 여부는?

질의3) 서울강동노회 규칙 제11조(2) 시찰 위원회 권한 규정에는 "지교회를 시찰, 협의 지도하며 당회가 제출한 제반 서류를 검토하여 노회에 제출하며,"로 되어 있고, 우리 교회는 노회 개최 공고 후, "위임목사청빙 승인요청서"를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시찰회에서는 제출된 위임목사청빙승인 요청서의 형식적 사항인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노회에 제출하였는바, 접수된 후 1개월 이후에 노회 정치부에서 형식적 사항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는지요?

질의4)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청빙결의방식에 있어서 무효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는 권징 제8장 행정쟁송 제2절 제142조 제2항에 이하 '무효 등 확인소송'인지 아니면 제3절 제15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인지요?

질의5) 교단 헌법 정치 제29조 제1항에는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3에는 목사의 칭빙 승인은 노회 소집 통보서가 발송된 후에 임원회와 정치부에서 할 수 없다. 그리고 헌법질의 해석(목사위임): 예장총 제86-330호(2002.2.21.) 총회장이 헌법질의 이첩 및 예장총 제86-457호(2002.3.28.) 총회장이 헌법질의 재심의 요청한 1) 대남노 제149-34호(2002.2.8.) "목사 위임에 대한 질문의 건"에서 "임원회가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할 수 있는지?"는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 1항 및 헌법조례 제4장(교회의 직원) 제16조(목사청빙) 1항에 의거 위임목사 청빙을 하였다면,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목사) 제29조(청빙승인) 1.2항에 의거 청빙승인 되어야 하며… 이하 생략…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강행 규정 성격의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위임목사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가 청빙승인 행위를 하지 않은 행위에 효력 유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만일 노회의 부작위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면 치유(또는 구제)방법은?

질의6)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3에는 목사의 청빙 승인은 노회 소집 통보서가 발송된 후에는 임원회와 정치부에서 할 수 없다로 되어 있고, 행정적 미비 사항이 있다하더라도 법규 위반이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닌 한, 보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통상규례라고 봅니다. 더구나 본 건과 관련한 행정소송(무효확인의 소) 제기 건은 변론 등을 통하여 그 효력을 별 건으로 다툴 수 있는 것임에도 한 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위임목사 청빙서를 노회장 명의가 아닌 정치부장의 명의로 "교단총회의 법적, 행정적 미비된 부분(법적해석 여지가 있음)"의 사유를 들어 접수된 지 1개월 이상이 경과한 2020.4.10. 본 건을 반려하였습니다. 반려행위에 대한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7) 서울강동노회 규칙 제10조 (1) 정치부: 지 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목사청빙… 장로선택 및 기타 본회가 위임한 사건을 심사 협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의 규정이 있음에도 정치부는 한 교회에 공동의회에 결의된 '위임목사청빙서'를 화해조정 이름하에 반려 및 진행한 내용들을 본회의(2020.5.12. 강동노회 회의록)에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결국 한 교회의 총회에서 결의되고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보고(청빙승인요청)된 우리교회 위임목사청빙서는 신기루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부의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8) 교단 헌법 정치 제29조 제1항에는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3에는 목사의 청빙 승인은 노회 소집 통보서가 발송된 후에는 임원회와 정치부에서 할 수 없다. 권징 제47조 재판국장은 판결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의 종용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부와 임원회가 재판국과 무관하게 화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부 명의로 해 교회에 통보할 수 있는지요?

질의9) 해 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공동의회에서 이의 없이 결의되어 승인 요청한 '위임목사 청빙서'가 권한 있는 기관에서 무효 등 판결 또는 해석이 있기까지는 적법적 추정력이 있어 교단 헌법 정치 제29조 제1항(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3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도 같은 시기에 '무효확인의 행정소송' 건이 접수된 것과 관련하여 본 건을 "교단총회의 법적 미비(법적 해석여지가 있음)"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부 반려행위에 대한 효력은?

질의10) 해 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공동의회에서 이의 없이 결의된 위임목사 청빙결의 건이 철회하는 해약 또는 소멸되기 위하여는 같

은 방식의 공동의회의 재결의(번안 결의 포함)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처가 화해조정 명목하에 정치부로부터 반려된 위임목사청빙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11) '질의 9'에서 반려된 위임목사 청빙서가 유효하다면 재 청빙승인 요청은 언제 요구해야 하는지요?

질의12) 이후 강동노회 정치부에서 화해조정운영절차로서 '위임목사청빙승인서' 반려 후 소송 건 취하 철차를 거친 후, 봄 노회 개최일이 도래하자 화해조정위원 중 1인이 임시당회장 및 제직회장이 되어, 일부 당회원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공동의회에서 재결의(번안 결의 및 승인 포함)는 없었음에도 코로나19 위기속에서 제직회를 개최하여 임시목사 투표를 실시하여 가결하였다.(※ 이후 봄노회에서 임시목사로 승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결의 건과의 배치 관계로 다수 공동회원이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을 구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1~9)에 대한 귀 위원회의 종합적인 해석을 기초로 강동노회 정치부의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과 제직회에서 결의된 임시목사 결의 건의 효력은?

질의13)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 청빙 결의 방식 질문

○ 우리교회(당회 및 공동의회)는 선거 및 투표에 관한 규정이 불비되어,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2항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에 있어서 위임목사 청빙투표에 관한 방법은 헌법 모법에는 규정이 없고[(경남노회장 김형곤 목사 제출 헌법질의(2008.7.15.) 질의 2) 위임목사 청빙 결의 시… 중략… "위임목사 청빙투표에 관한 방법은 헌법 모법에는 규정이 없어,")] 우리교회는 아래 관련 근거 1),~5) 내용과 같이 교단 헌법, 헌법시행규정, 장로회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회의규칙, 헌법질의해석, 대법원 판례, 국제법학회 해석, 우리 교단 소속 교회의 재석파악 즈음에서 출석회원을 투표인 수로 적용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특히 우리교회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결의 직전 재석 파악에 즈음하여 '개회인원이 아닌 실제 투표하는 수로 적용' 하기로 하였고, 2019.1.12. 원로 장로 추대 결의 시에도 이와 같이 시행, 결의하여 이의 없이 추대한 사례가 있다.

2019.12.22. 위임목사청빙 공동의회 시 의장은 상기 내용 등과 공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결의 직전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설명에서 "오늘 의결 요건은 헌법 제2편 제5장 제28조 내용에 따라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집계에 따른 결정의 명료화를 위하여 안건 상정 전 회집인원으로 계산된 인원은 결의 시점에 자리에 없을 수 있음으로 2/3 기준은 실제 투표한 인원수로 합니다.” 라는 발언을 하고, 정식 이의가 없이 진행되었고 경료되었다.

질문 가) 헌법 제2편 제28조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에 있어서 그 출석회원에 대한 해석은?

질문 나) 우리교회 공동의회 결의(투표) 직전 재석 파악에 즈음하여 공동의회 의장이 그동안 임시당회 결의사항, 공고 시 예배 중 공시 내용, 선관위 회의내용 및 아래 관련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근거로 하여 ‘투표 및 집계에 따른 결정의 명료화를 위하여 앞서 안건 상전전 회집인원으로 계수된 인원 중 지금(투표 시작) 없는 회원도 있을 수 있음으로 출석회원 2/3기준은 실제 투표한 인원수로 계수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진행하였고, 이의 없이 가결 선포, 경료하였는 바, 이와 같이 공동의회에서의 결의 방법 및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사항인지 여부?

18. 재판국원 기피신청 시 재판국 결정

서울관악노회장 권병학 목사가 제출한 “관악 제49-45호 / 헌법해석 질의서 송부(2020. 12.17.)” 건

해석 : 헌법 권징 제8조 제4항에 근거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당해 국원을 당해 사건의 심리·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

헌법 권징 제8조 제2항에 근거 당사자인 기소위원장과 피고(또는 행정소송일 경우 원고, 피고)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헌법시행규정 제38조에 근거 기피신청은 재판국원의 재적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나, 만약 양당사자 합해서 재적 3분의 1을 기피 신청할 수 없다고 하면, 한쪽이 재적 3분의 1을 신청할 경우 나머지는 신청할 수도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쪽 당사자가 재적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10호에 근거 치리회는 직권 또는 재판국원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위헌은 하위법(헌법시행규정)이 상위법(헌법)에 위배 될 때 다투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9항에 근거 기피신청 된 국원은 자신의 기피결정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나 타 국원 기피결정 투표에는 참여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38조(제척, 기피, 회피) 제9항 “기피신청은 재판국원의 재적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11일 총회 재판국에서 10명이 참석하여 재판국원의 재적 3분의 1(5명)을 초과한 7명이 기피신청된 상황에서 보정명령도 없이 곧바로 기피결정한 것이 위헌인지요? 합헌인지요? 동 제38조 9항에 기피신청된 국원은 투표할 수 없다. 고 했는데 기피신청된 국원이 타 국원 기피결정 투표에 참여한 것은 불법은 아닌지요?

19. 교회분쟁 종료에 따른 질의 처리

익산노회장 정경호 목사가 제출한 “익산노회 제17-1호 / 헌법질의 건(2020.11.9.)”

해석 : 노회에서 이미 재판이 끝나고 분쟁이 종료되었음으로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우선 ‘위탁재판건’은 이미 황등교회 당회재판국이 시작되어 당회기소위원회에서 피고발인에게 제1차 출석통지서(붙임자료1. 2020.6.17. 사건번호: 2020-2, 사건명: 장로의무 불이행 외3건)발부한 바가 있는 사건인데 당회 재판 중간에 당회 결의(2020.7.12.)로 익산노회로 위탁되어져서 위탁재판을 해도 되는지요?

질의2) 황등교회 당회는 익산노회에 위탁 청원한 ‘위탁 재판건’의 청원이유가 당회재판국에서 다루기가 난처하다는 이유로 노회재판국에 위탁하기로 결의합니다. 황등교회가 위탁 재판을 청원이유는 ‘교회재판국에서 다루기가 난처하니’인데 이것은 총회헌법 제3편 권징 제6장 특별소송절차 제1절 위탁재판 제120조 위탁재판의 청원 3가지 사유(1. 재판의 전례가 없어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2.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72조 4 [헌법 권징 제120조 3항에 의한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에도 전항과 같으며 그 경우란 다음의 각호를 말한다. ① 당회장이 고소인(고발인)이 된 경우 ② 당회장이 피고소인(피고발인)이 된 경우 ③ 기타 당회 또는 제직회나 공동의회의 사정상 당회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에 보더라도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익산노회가 위탁재판 허용해도 되는지요?

질의3) 황등교회 재판국에서 다루기로 한 ‘당회재판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72조 4(헌법 권징 제120조 3항에 의한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에도 전항과 같으며 그 경우란 다음의 각호를 말한다. ① 당회장이 고소인(고발인)이 된 경우 ② 당회장이 피고소인(피고발인)이 된 경우)에 따르면 재판국장 정동운 목사가 피고소인(피고발인)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회장이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102회 헌법위는 '총회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국원이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고소인(피고발인))이 그 사건에 심판에 관여할 때 그 판결은 헌법을 위반한 판결'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회재판건'은 재판국장인 정동운 목사가 피고소고발인에 해당하므로 당회 재판국이 구성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마땅히 위탁재판이 청원되어서 익산노회 위탁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항등교회 당회가 당회재판국을 설치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황등교회 기소위원회 활동을 시작해도 되는지요?

질의4) 당회 기소위원회에서 피고소고발인인 신청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기에 당회 기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재판국장인 정동운 목사가 피고소인이 된 경우에는 노호에 위탁재판을 청원하도록 명시(헌법시행규정 제72조 제4항)되어 있고, 재판국장이 피고소인인 경우 재판국원에서 제척(헌법권징 제8조) 되기 때문에 당회재판국이 구성될 수도 없고 총회 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피고소고발인인 정동운 목사)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할 때 그 판결은 헌법을 위반한 판결이 된다고 생각되어서 진술을 거부했는데 기소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당회 기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신문에 응해야 하는지요? 이때 당회 기소위원회가 기소기각 결정도 무효가 되는지요?

질의5) 그리고 '당회재판건'의 경우에는 정동운 목사가 피고소인이 된 경우로 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하도록 명시(헌법시행규정 제72조 제4항)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등교회 당회가 '당회 재판건'을 계속해서 진행시키면 신청인이 익산노회에 재판을 청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0. 사실관계 확인 불가에 따른 질의 처리

서울동남노회 손왕재 목사가 제출한 “총회 특별사면(해벌) 결의 집행에 관한 헌법 유권해석 질의(2020.11.27.)” 건

해석 : 질의1,2) 오래전(13년 전) 권고 사항에 대한 자료 불비 및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내용 : 총회 제91-736호 “특별사면(해벌)시행 권고”(2007.7.6.) 및 총회 제101-146호(2016.10.31.) 관련하여 모 교회 담임목사는 총회의 출교(면직)에 대한 특별사면(해벌) 시행권고(2007.7.6.)를 통지받고서도, 총회장의 행정지시를 불이행하여, 2016.10.31.자. 총회장은 거듭 영등포노회에 모교회가 집행하도록 권고를 결의하고, 노회가 지도하라는 행정지시를 하였음에도, 모 교회 담임목사는 고의적으로 당회 결의에서 해벌을 부결시키는 등으로 수년 동안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1) 위 경우에 헌법 정치(교인의 복권) 제20조와 헌법시행규정 제14조 2항에 따른 당회 결의 없이 교인의 회원권(집사직)으로 복권이 가능합니까?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88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거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를 위반하고 불이행한 자(당회장)는 처벌사항으로 가능합니까?

21. 무임목사의 대리당회장 자격 여부

경동노회 벧엘산성교회 김태화 장로가 제출한 “헌법질의서(2020.12.14.)”, “누락 서류 제출(경동노회가 반송한 헌법질의서 반려 공문)(2021.1.7.)” 건

해석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의 적용은 선출에 의해 임기가 있는 치리회장을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교회가 계속된 분규(분쟁)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인 당회(당회 미조직 교회 제직회)를 개최할 수 없어 연임청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담임목사는 적법한 연임청빙 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자동 연장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교회 분쟁으로 교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의 해석이 유효하나,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의 적용은 선출에 의해 임기가 있는 치리회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헌법 해석을 감안할 때, 분쟁중임에도 노회에서 아무런 행정조치(수습위원회 또는 수습전권위원회, 기타)를 취하지 않고 있을 경우 이를 무기한으로 적용할 수 는 없다.

따라서 벧엘산성교회의 경우 담임목사가 청빙에 관련하여 노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반려된 점, 노회가 사고 교회로 인식하였음에도 적극적으

로 수습위원회 또는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지 않은 점, 노회가 연임 청원을 보류하여 회기가 지나도록 청빙을 승인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헌법 정치 제27조 제2항 및 헌법 정치 제28조 제3항에 근거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하지 않아 연임기간을 넘겼다면 그의 신분은 무임목사로 봄이 타당하다.' (제100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19번 참조)
따라서 무임목사 신분에서 대리 당회장을 청하여 연임 청빙을 위한 제직회를 하였다면 적법하지 않다.

질의2)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내용 : 질의1) 벧엘산성교회는 담임목사가 부존한 상태 즉 경동노회가 2020년 4월 노회 시에 연임 청빙을 하지 않아 무임처리 된 상태에서 당회장이 아닌 자가 대리 당회장을 청하여 연임 청빙을 위한 제직회를 하였다면 그 제직회가 적법한 것입니까?

질의2) 당회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회원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제직을 임명하지 않거나 자신을 지지하는 극소수(6명)만 임명하여 제직회를 운영하고 있다면 적법한 것입니까?

22. 조직교회의 전도목사 청빙 불가

김제노회 금옥교회 서광종 목사가 제출한 "금옥교회 제2020-05호 / 헌법해석의 건(2020.12.28.)"

해석 : 질의1) 전도목사는 헌법 정치 제27조 제4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2에 근거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 산업기관, 국내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로 노회 경계 밖이라도 학원, 병원, 기타 전도 가능한 기관의 기관장(이사장)의 요청으로 파송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교회에 전도목사 청빙은 헌법에 전도목사 운영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청빙할 수 없다.

질의2) 전도목사 청빙에 있어서 '기타 전도 가능한 기관'에는 교회가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헌법 정치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도처에는 노회가 파송할 수 있으며, 파송에 대해서는 노회가 판단할 사항이다.(제101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25번 참조)

질의내용 : 질의1) 조직교회가 전도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16조2 전도목사 청빙에 있어서 기타 전도 가능한 기관의 기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에 교회도 포함되는지 해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 부목사 연임 청원과 교육목사 청빙

서울강남노회장 이성수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67-138호 / 헌법 질의의 건(2021.1.5.)”

해석 : 질의1,2) 헌법 정치 제27조 제3항에 근거하고 제104회기 헌법해석(29번)에 따라 당회가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의 부목사 청빙은 담임목사 부임 후 이전 위임목사 때부터 시무하던 부목사에 대해서는 담임목사 부임 후 첫 임기동안(3년 동안) 부목사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담임목사로 노회의 허락을 받은 날 이후 신규 부목사는 청빙할 수 없다.

헌법 정치 제27조 제7항에 근거하고 제103회기 헌법해석(49번)에 따라 조직교회(위임, 담임)목사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4, 제1항에 의거 교육목사 청빙 시 안수 후 청빙청원을 할 수 있으나, 교육목사를 청빙하여 전임사역을 맡길 수 없다.

질의3) 사회법정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해석 할 수 없으나 교회법은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에 근거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제103회기 헌법해석 49번, 제104회기 헌법해석 29번 참조)

〈제103회기 헌법해석 49번〉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470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19.2.11.)” -〈영등포노회장 임정석 목사가 제출한 “영노 제121-34호 / 질의서 제출의 건(2019.1.8.)”, 부산동노회장 남기룡 목사가 제출한 “부동노 제77-47호 / 교육목사 연임에 대한 질의의 건(2019.1.16.)”, 경기노회장 윤홍선 장로가 제출한 “경기노회 제69-031호 / 헌법 질의의 건(2019.1.23.)”〉 건, 포항노회장 박진석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7-24호 / 개정된 교육목사 청빙에 관한 질의의 건(2019.2.8.)”

해석 : 교육목사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본 교단의 무임목사가 1,800명이나 되며 임지를 구하기가 어려워 헌법 정치 제27조 제9항에 근거 자동해직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 담임목사 교회에서도 교육목사를 청원하여 무임목사 문제를 해결하며, 경험 있는 사람들로 교회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교육목사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교육목사의 자격과 위치에 대하여 문제점(노회원 자격-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당회원권, 안수

청원, 전임사역이 가능한지)과 혼란이 있을 것을 제기했다. 이에 헌법위원회에서는 문제점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보완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해석하다.

1. 교육목사는 노회의 언권회원이나, 당회와 제직회원권은 없다.
2. 조직교회(위임, 담임)목사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4, 1항에 의거 교육목사 청빙 시 안수 후 청빙청원을 할 수 있으나,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는 안수 청원할 수 없다.
3. 교육목사를 청빙하여 전임사역을 맡길 수 없다.
4. 미조직교회에서는 제직회의 결의로 교육목사 청빙 및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470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19.2.11.)”- “사무국-366 / 헌법해석 보고(2019.1.30.)” - 중 13)번(영등포노회장 질의, 부산동노회장 질의, 경기노회장 질의) 해석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기존 해석(제102회기 총회 헌법위원회 33번 해석/제103회 총회 회의안 662쪽, 제100회기 총회 헌법위원회 49번 해석/제101회 총회 회의록 623쪽 등)과 상충되므로 이를 감안해 주시고, 이번 제103회 총회 시 헌법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재심의해 주시기를 요청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등포노회장 임정석 목사가 제출한 “영노 제121-34호 / 질의서 제출의 건(2019.1.8.)”

질의1) 교육목사의 노회원 자격은 어디까지인지요?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질의2) 당회원권과 안수청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나. 부산동노회장 남기룡 목사가 제출한 “부동노 제77-47호 / 교육목사 연임에 대한 질의의 건(2019.1.16.)”

질의1) 새로 신설된 헌법 정치 제27조 제7항 교육목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부목사로 청빙을 하였지만 교육목사라는 목사 칭호가 신설되어 지교회에서 교육목사로 청빙코자 할 때 현재 시무 중에 있는 부목사를 교육목사로 청빙 시 신규로 교육목사 청빙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교육목사 연임청원서 제출로 교육목사로 청빙이 가능한지?

다. 경기노회장 윤홍선 장로가 제출한 “경기노회 제69-031호 / 헌법 질의의 건(2019.1.23.)”

질의1)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제27조 목사의 칭호 7항(신설) 교육목사는 위임(담임)목사를 교육 분야에서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청빙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정치 제28조 4항을 준용하고 연임청원은 헌법시행규정 제18조(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를 준용한다.” 중 “교육목사는 위임(담임) 목사를”에서 위임 목사가 아닌 담임목사가 있는 교회(조직, 미조직교회)에서도 교육목사 청빙이 가능한지요? 질의2) 담임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교육목사를 청빙할 경우, “교육목사 청원과 연임 청원은

헌법시행규정 제18조에 준용한다.", "헌법 제28조 4항에 부목사 계속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하며 당회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한다." 에서 담임목사가 교육목사 연임 청원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3) 담임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교육목사를 청빙할 경우 교육목사로 목사 안수 청원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4) 헌법 제2편 정치 제11장 노회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항에 의하여 교육목사가 노회원 자격이 있는지요?

라. 포항노회장 박진석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7-24호 / 개정된 교육목사 청빙에 관한 질의의 건(2019.2.8.)"

질의1) 위임목사 아닌 경우에도 교육목사 청빙의 가능 여부 질의2) 교육목사가 전임사역자(파트타임, 준전임)가 아닌 경우에도 청빙 가능 여부 질의3) 교육목사의 당회원 자격 가능 여부(담임목사 청빙에도 당회원 자격의 결의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노회원의 자격 가능 여부.

〈제104회기 헌법해석 29번〉

진주남노회장 류재돈 장로가 제출한 "진주남 제126-22호 / 헌법시행규정 제18조 2항과 관련된 부목사 연임 청원에 관한 해석 요청(2020.3.17.)" 건

해석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18조 제1항에 근거 위임목사가 공석일 경우 임시당회장은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있으나 신규 청원은 하지 못한다. 여기서 신규의 의미는 임시당회장 노회 파송일 또는 담임목사로 노회의 허락을 받은 날 이후 부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 질의2) 2012.9.20.일 개정 삭제되기 전 헌법시행규정 제18조 제1항의 단서조항 '임시목사가 부임한 후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 청원할 수 있다.'의 사유가 담임목사 부임 후 이전 위임목사 때부터 시무하던 부목사들에게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담임목사 임기 3년 중 2년간 무임목사가 될 수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삭제한 것이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18조 제3항 '정상적인 당회가 개회되지 못하면 부목사의 임기는 자동 연장'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회 1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 개정취지에 맞지 않다. 그러나 위임목사 때부터 시무하던 부목사의 연임청원이 무한정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또한 헌법 제27조 제3항 취지에 맞지 않기에,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로 교회가 연임청원하고 담임목사 부임 후 첫 임기동안(3년 동안) 부목사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헌법시행규정 제18조는 헌법 제27조 제3항과 충돌한다기보다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보완하는 규정으로 미비한 사항 등은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함이 필요하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정치 제27조 제3항에 부목사의 임기는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헌법시행규정 제18조 제1항에 신규 청원은 어느 시점부터이며, 부목사가 1년 시무하고 다시 1년을 연임 청원하는 그 시점을 신규라고 하는지? 또는 부목사 청원으로 신규 부임했을 시점을 신규라 하는지 해석을 바랍니다. 질의2) 위임(담임)목사 공석 전부터 이미 시무중인 부

목사의 연임청원은 담임목사가 몇 회까지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있는지? 1회가 아닌 몇 회라도 담임목사가 위임목사 시무 전부터 시무하던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면 헌법 정치 제27조 제3항과 상충된다고 보는데 어떤 법이 우선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 질의1) 위임목사가 아닌 당회가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가 부목사 또는 교육목사를 청빙하거나 안수를 줄 수 있는지, 줄 수 있다면 총회 헌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하고 있는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당회가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가 부목사 또는 교육목사를 청빙하거나 안수를 줄 수 없다면 이 같은 문제를 노회의 헌의 위원회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정치부에서 허락하여 노회 본회의에서 안수를 주기로 결의하여 안수를 주는 것이 합법적일 수 있는지, 만약 불법인 경우 이미 안수를 받은 목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최근 사회법정에서 판결된 판례와 관련하여 총회 헌법과 개 교회 규정 또는 부칙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면 무엇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휴무장로의 전도사 시무 가능

경남노회장 이상택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021-8호 / 전도사 겸직의 건(2021.1.5.)”

해석 : 휴무장로는 전도사로 시무할 수 있다. 다만 헌법시행규정 제25조 제4항에 근거 헌법 정치 제46조에 의하여 장로가 휴무하려면 제1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당회에 제출하여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휴무의 기간, 기간 연장, 자동복귀, 무임에 관하여 전항(헌법시행규정 제25조 제3항에 근거 목사의 휴무 시는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휴무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시무하며 휴무연장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무임이 된다.)을 준용한다.

질의내용 : 질의) 헌법 정치 제49조 제3항 노회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 다만 시무장로는 전도사직을 겸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무장로가 전도사로 시무 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치리회 산하 소속회 기관 및 단체 설치

서울동남노회장 손왕재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9-259호 / 헌법 정치 제92조에 따른 단체에 대한 질의의 건(2021.1.7.)”

해석 : 헌법 정치 제92조에 근거 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설치코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치리회 산하에 설치하고자 하는

산하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사적인 임의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것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 다만, 임의단체를 통해서 노회와 교회에 대하여 하는 행위가 권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책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해당 노회가 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 질의)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부위원장 이용혁, 총무 이재룡, 서기 최규희)라는 임의단체를 조직하여 서울동남노회의 임원들을 비방하고, 총회를 공격하는 등, 특히 서울명성교회를 비방하는 유인물(정상적인 목사 청빙임을 가지고 거짓으로 불법 세습으로 프레임)을 배포하는 등으로, 노회 질서를 문란케 하고 심각한 노회 분쟁과 서울 명성교회를 파괴하는 등으로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 경우에 헌법 정치 제92조에 따른 치리회의 승인 없이 조직된 단체이므로 불법 단체로 확인되는데, 불법단체입니까? 합법단체입니까?

26. 행정소송 절차

대구동남노회장 윤대호 목사가 제출한 "대구동남 제187-45호 / 행정소송절차와 원고자격 및 기각에 대한 질의 건(2021.1.6.)"

해석 : 질의1) 행정소송은 헌법 권징 제141조 헌법시행규정 제74조에 근거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행한 처분을 말한다.)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헌법시행규정 제75조 제1항에 근거 행정소송의 원고는 권징 제5-1호 서식에 의한 소장을 행정처분을 한 치리회에 접수를 시키고,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권징 제7-4호 서식에 의한 답변서를 첨부하여 차상급 치리회에 송부하여야 하고, 차상급 치리회는 재판국에 10일 이내로 이첩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은 권징과 같이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판국에 이첩해야 한다.

질의2) 원고 적격여부는 해당 치리회 재판국이 판단한다.

질의3) 행정소송은 헌법시행규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절차에 의해 처리해야 하며 임원회에서 판단하여 기각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질의내용 : 본 노회 소속교회 시무장로께서 치리장(당회장)의 행정행위 "부자격자의 권사 피택취소에 대한 거부와 피택자격 강행"에 대한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노회에 접수하므로 총회헌법 제3편 권징 제8장 행정쟁송 제143조 "재판관할" 1항에 의거하여 본 노회 임원회를 경유하여 재판국으로 이첩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과정에 대하여 기소위원장 및 노회원 중에

한 분이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이의를 제기하였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1) 행정소송건을 기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판국으로 이첩한 절차과정
2) 상기 행정소송을 제기한 당회원은 원고로서 부적격(제3편 권징 제8장 행정쟁송 제144조 "원고적격" 1항)
3) 행정소송은 임원회에서 판단하여 기각여부를 결정

27. 총장 임기 만70세 기준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이사장 장경덕 목사가 제출한 "장신법 2021-002호 / 총장 임기 70세에 관한 질의(2021.1.15.)" 건

해석 :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퇴직일을 정하고 있으므로 생년월일로 임기 만료일을 정하는 것은 국가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 또한 학기말 역시 특별한 근거가 없어 임기 만료일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에 근거 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에 정년은 만70세로 되어 있고, 총회 인준을 받아 임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총회헌법 정치 제22조를 준용하여 만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를 임기 만료일로 봄이 타당하다.

※ 참조) [일반직 공무원(1월~6월 생일 6월말 퇴직, 7월~12월 생일 12월말 퇴직) 과 교육공무원(3월~8월 생일 8월말 퇴직, 9월~2월 생일 2월말 퇴직)]

질의내용 : 질의)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임기에 관한 질의입니다. 만70세의 총장의 임기 만료일을 해당 생년월일로 할 것인지, 학기 말로 할 것인지, 연말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8. 치리회장의 업무상 행위 책벌대상 제외

광주노회장 박수일 목사가 제출한 "광노제35-36호 / 헌법 해석 질의(2021.1.27.)" 건

해석 : 당회가 없는 미조직 교회 경우 교회의 중요 결의사항 등은 당회를 대신하여 제직회에서 결의한다. 따라서 제직회의 결의로 담임목사가 행정상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헌법 권징 제54조의 3에 근거 책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 질의1) A교회는 당회가 없어 제직회 결의로 제직회장인 C목사가 통장명의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고소한 행위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54조의 3에 의하여 업무상의 행위가 책벌대상이 되는가?

29. 국가법원의 가처분 판결과 해당목사의 지위

총회장이 제출한 “행정재무처-1481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2.9.)” - 군산노회장 김대성 목사가 제출한 “82-06호 / 동신교회 주체 및 임시당회장 파송 질의건(2021.1.13.)”

해석 : “총회재판국 면직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뿐 아니라 각 노회 및 교회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권징과 처벌에 대한 국가법원의 최종판결이 아닌 일시적인 집행정지(가처분)라고 하더라도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 하는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 또한 국가법 권위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판결한 집행정지(가처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총회, 노회, 교회에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는 선례가 될 수 있어 동일하게 해석하기로 한다.

질의1) 교회법과 국가법에 상이한 점이 있어 국가법 판결대로 인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군산노회 목사가 맞다.

질의2)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황에서는 목사직은 유지된다.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목사 측과 반대 측 어느 특정을 주체로 정할 수 없다.

질의3,4) 임시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7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에 근거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가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산동신교회는 당회장의 결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할 수 없다.(제101회기 헌법해석 96번, 104번, 116번, 제102회기 헌법해석 18번, 제103회기 헌법해석 26번, 80번 참조)

〈제103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26번〉

군산노회 하영교회 민병채 목사가 제출한 “하영18-2호 / 헌법질의(2018.11.21.)” 건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69조 제2항에 근거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당회장은 당회를 소집해야 함에도 소집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 그러나 직무유기에 대한 판단은 관련 증거 등에 따라 재판국이 판단한다. 질의2) 당회재판국은 헌법 권징 제26조에 근거 목사에 대한 사항을 재판할 수 없다. 재판이 아닌 권고사임의 경우는 헌법 정치 제35조에 근거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가 처리할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회에서 사임권고 결의 효력 여부는 당회 결의로서는 효력이 인정된다.” 고 판단되나, 권고사임에 대한 효력은 상기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질의2-가~라)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어 답변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내용 : 1) 2016년 12월 11일 제직회에서 회원이 노회와 교단탈퇴 하자는 돌출발언을 제직회장이 안건으로 받아들여서 찬반을 물어 찬성33표 반대13표로 노회와 교단탈퇴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면 이 행위는 직권남용의 유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2) 제직회의 결의와 선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직회직후 1주일어간에 당회에서수습하기 위하여 당회원 모두가 3회에 걸쳐 당회소집을 요청했지만 당회장이 묵살하고 2018년 11월 1일 현재까지도 당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위임목사를 당회에서 사임 시킬 수 없지만 권징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11개항 중 1개 이상의 죄과를 범한 때는 재판에 의한 권징 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의 규정에 의해서 2년 전부터 무려 4개항 이상의 위반사항을 지적하여 내용증명을 2~3회에 걸쳐 보내고 본인(목사)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시정이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사임권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질의1) 사임권고안을 본인(목사)의 문제를 본인이 당회장으로 처리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대리당회장을 초빙해서 1심재판국인 당회에서 처리하기로 본인(목사)을 비롯하여 당회원 전원이 홍00 목사님을 대리목사로 초빙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본인이 위임한 사임의 건을 당회에서 대리당회장 사회로 당회원 모두가 사임시키기로 결의했다면 당회장인 본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의 여부와 사임결의의 효력의 여부를 해석바람. 질의2) 김대현 목사는 2017년 6월부터 자신을 따르는 성도를 데리고 교회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해 8월에는 엄연히 군산동신교회 제직회가 존재하는데도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만으로 제직회를 구성하였고, 2017년 10월경부터는 당회결의를 통한 자신의 사퇴결의를 한 것에 대한 군산노회 위탁재판의 결과가 시무장로들의 무죄로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산돌학교라는 곳에서 자신을 따르는 성도를 데리고 산돌학교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대현 목사는 군산동신교회와는 주소지가 다른 곳에서 자신을 추종하는 성도들을 데리고 동신교회의 원로, 은퇴 시무장로들의 명의를 도용하고 동신교회이름의 주보를 사용하면서 당회의 어떠한 결의도 없이 헌금을 걷고 일방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가. 이와 같이 교회의 유일한 치리회인 당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직회를 구성하고, 헌금을 걷는 행위, 헌금을 사례비로 집행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나. 김대현 목사가 장로들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주보사용은 적법한 것인지? 다. 이러한 경우 김대현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라. 김대현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면 김대현 목사가 동신교회 명의로 걷은 헌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금횡령으로 보아야 하는지?

〈제103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80번〉

군산노회장 문준섭 장로가 제출한 “80-60 / 헌법해석 질의(2019.6.13.)” 건

해석 : 질의1) 교회가 분립하고자 하면 헌법 정치 제11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5조, 제6조에 근거지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수습전권위원회에서 교회 분립을 결정할 수 없다. 질의2,3) 임시당회장 파송은 헌법 정치 제67조,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에 근거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경우 노회가 파송할 수 있다. 따라서 당회장이 결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수습전권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교회를 분립함이 불법인지요? 질의2)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임시당회장 파송이 불법인지요? 질의3) 임시당회장 파송요청 공문을 접수한 노회장은 인사권은 정치부 처리사항이기에 임원회의를 통하여 정치부로 이첩함이 불법인지요(수습전권위원회는 당회장권을 정지시킨바 없고, 임시당회장은 본 교회에서 파송요청).

질의내용 : 〈“행정재무처-1481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2.9.)”〉

“행정·재무처-776 / 헌법해석 보고(2021.1.22.)”와 관련근거에 의거 제출한 헌법해석 보고의 9)번 군산노회장 질의 해석은 총회재판국 판결보다 국가법원의 최종심 판결도 아닌 ‘총회재판국 면직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우위로 판단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재심의를 요청하니 이를 확인하여 재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노회장 김대성 목사가 제출한 “82-06호 / 동신교회 주체 및 임시당회장 파송 질의 건(2021.1.13.)”〉

질의1) 김대현 목사는 총회의 재판국으로부터 면직판결을 받았으나, 사회법정으로부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판결을 받았는데, 김대현 목사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군산노회 목사가 맞는지?

질의2) 노회는 목사 측과 반대 측 중 동신교회 주체를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김대현 목사 측은 노회 상회비를 분쟁 이후에도 납부하여 왔음.)

질의3) 만일 임시당회장을 동신교회에 파송해야 한다면, 임시당회장 파송요청은 교회 주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혹 교회 주체가 아닌 측(목사 반대 측)에서 요청하는 경우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하는지?

질의4) 만일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면, 임시당회장은 양측을 모두 관할하는지 아니면 파송 요청한 측만 관할하는 것인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미조직교회 담임목사의 연임청원 제직회 결의

전남노회장 김승익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32-032호 / 담임목사 연임청원 건을 다루는 제직회의 적법 여부(2021.2.9.)” 건

해석 : 담임목사 연임청원은 헌법 정치 제28조 제3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5에 근거 청원한다. 당회가 없는 미조직 교회 경우에는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제직회에서 결의한다. 따라서 당회를 대신하여 제직회에서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의사 결정에 치우침이 없도록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13항을 준용해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 나주 봉황중앙교회는 미조직교회로서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위한 제직회원 9명 중 3명이 참석하였고 2명이 부부입니다.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13항에 의하면 당회원 중 2촌 이내의 자나 배우자가 당회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다(신설개정 2018.9.13.).고 되어 있습니다. 당회가 없는 미조직 교회에서 인사 건을 다루는 제직회에도 적용되는지를 질의합니다.

31. 시무장로의 목사고시 응시자격 가능

순서노회장 김성신 장로가 제출한 “순서노 제44-35호 / 헌법해석 질의(2021.2.23.)” 건

해석 : 시무장로는 목사직을 겸할 수 없다. 그러나 시무장로가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거나 목사고시를 보는 것은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지 헌법 정치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목사로 임직한 것이 아니므로 겸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시무장로의 목사고시 응시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도 없으므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 현 시무장로가 목사고시를 보려고 하는데 목사고시를 보는 목적이 목사 일을 하기 위해서 라고 봅니다. 시무장로는 목사를 겸할 수 없고 헌법 제7장 49조에 “시무장로는 전도사직을 겸할 수 없다.” 했습니다. 먼저 장로직을 사임하고 목사고시를 봐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32. 임시의 노회기소위원회 및 재판국 조직 구성 가부

평양노회장 최창덕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93-41호 / 임시 기소위원회 및 재판국 조직에 대한 해석 요청(2021.2.10.)”건

해석 : 질의1,2) 헌법 정치 제87조 제1항 및 제77조 제8항에 근거하여 총회로부터 지시가 있을 경우 노회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을 구성할 수 있다. 노회 기

소위원회와 재판국 구성은 헌법 권징 제56조 및 제16조 근거하여 노회에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공천위원회 공천을 받아 임원회에서 조직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평양노회는 총회 임원회로부터 임시로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을 헌법대로 설치하여 재판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본 노회는 지난 193회기(2020년 10월 20일) 노회 시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을 없앴습니다. 노회 폐회 중에 노회 임원회가 임시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을 조직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질의2) 임시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을 조직할 때 공천위원회로 하여금 공천을 받아서 조직을 해야 하는지 노회 임원회가 조직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속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33. 부목사의 근로자 불가

대구칠곡교회 당회장 우성민 목사가 제출한 “대칠교 2021-3 / 부목사가 근로자인지에 대한 총회 헌법 해석 요청(2021.3.7.)” 건

해석 : 총회 헌법 정치 제21조 제1항에 근거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헌법 정치 제22조에 제1항에 근거 목사는 항존직에 포함된다. 헌법시행규정 제15조 제4항에 근거 교회의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목사(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교육목사 등)는 교회가 사용자로 근로계약을 맺는 근로자가 아니며, 총회 헌법 정치 제25조에 근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신앙공동체에 영적 지도자로서 교회 공동체에 의해 청빙(청하여 부름, 청하여 모셔옴)되는 자이다.

부목사는 헌법 정치 제27조 제3항에 근거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부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은 총회 헌법 정치 제28조에 근거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하며 당회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목사 계속청원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임기 1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설령 개교회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상위법인 헌법 정치 제27조 제3항에 위배되므로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순서)에 근거 무효이며 반드시 계속청원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1) 대구동노회 소속 목사이며 대구칠곡교회에서 시무(3년간)했던 안○○ 목사가 2021.3.2. 대구칠곡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의 이유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2) 안○○ 목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본인이 근로자(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회 헌법시행규정에는 목사는 항존직 이기에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대구동노회 소속이며 총회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의 목사로서 총회 법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을 근로자라고 칭하며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연임청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헌법 질의를 요청하오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4. 해외한인장로회 출신 온라인수강자의 청목과정 이수 후 목사고시 응시 자격 부여

총회장이 제출한 “행정재무처-2882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3.12.)” - 총회 고시위원장 한상영 목사가 제출한 “교육훈련처-338 / 목사고시 청목과정 응시자격에 대한 질의(2021.2.16.)” 건

해석 : 질의1) 현재 헌법개정위원회가 심의 중인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제6항 개정(안)에 “온라인 수강자는 불허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여도, 현재 심의 중인 사항으로 개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개정(안)을 전제로 현재 온라인 수강자를 불허하는 것은 법적용에 있어 적법하지 않다. 향후 헌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 헌법에 따라 불허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2) 다만 헌법 개정 전이라고 하여도 온라인 수강의 경우에도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제5항 3호에 근거 해외한인장로회에서 신학을 이수한 경우는 미국 나성(LA) 혹은 뉴욕(NY)에 소재한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M. Div) 본교에서 2년 이상 신학석사(M. Div)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청목과정으로 받아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이에 해당한다고 하면 청목과정 수료 후에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질의내용 : 〈“행정재무처-2882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3.12.)”〉- “행정재무처-2472 / 헌법해석 보고(2021.3.4.)”와 관련하여 헌법해석 보고의 4번(총회 고시위원장 한상영 목사의 질의) 해석은 지난 제104회기 총회 헌법위원회가 결의하여 제105회 총회에 청원하여 현재 헌법개정위원회가 심의중인 헌법개정(안)의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제5항, 6항 개정안 내용(“온라인 수강자는 불허한다.”)과 배치되므로 이와 관련한 귀 위원회의 해석은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재심의를 요청하니 이를 확인하여 재심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교육훈련처-338 / 목사고시 청목과정 응시자격에 대한 질의(2021.2.16.)”〉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제5항 3호는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M. Div) 출신자의 청목과정 이수 자격에 대하여 “본교에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는 2013년 8월부터 목회학 석사(M. Div) 온라인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회 신학교육부는 관련사항에 대하여 제104회기에 ‘이전 헌법(제102회기 총회 개정 전, 2017.9)에 온라인 수강 불허삽입’을 청원하였으나 제105회기 총회가 코로나19상황에 의해 온라인 총회로 진행됨에 따라 헌법 개정 청원이 다루어지지 않아 제106회기 총회에 재청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목회학 석사((M. Div) 온라인 과정이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제5항 3호에 해당하는지

질의2) 제105회기 목사고시 응시자 중 이○○ 전도사는 미주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M. Div)을 온라인 과정으로 수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영남신학대학교 청목과정을 지원하여 수료 후 목사고시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가 질의1)에 해석에 따라 교단 직영신학대학원 청목과정 지원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해야 하나, 헌법 질의에 대한 답변 없이 해당 신학대학원 청목과정 입학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청목과정 입학 자격이 부여 되어 수료한 자에 대한 헌법 해석에 따른 소급 적용과 목사고시 응시 여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전도목사 파송 자격유무

전주노회장 성상현 목사가 제출한 “전주노회 제47-25호 / 전도목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질의(2021.3.15.)” 건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27조에 근거하여 노회 파송을 받은 목사로 특수 목회를 위한 별도의 자격증 및 면허증 또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자격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전도목사는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 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이며 임기와 시무처에 대한 파송의 필요성, 파송 전도목사로 인한 전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노회가 결정하면

된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27조 목사의 칭호 “4.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 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의 정한 바에 의한다.” 에 “전도목사의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답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6. 유아세례 가능여부(코로나19 재난상황)

서울동남노회장 손왕재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9-403호 / 유아세례 질의의 건(2021.3.19.)”

해석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사항임을 감안할 때, 코로나19로 인하여 유아세례를 할 수 없었다면 예외적으로 2020년 기준으로 2세미만 유아에게 각 교회 당회 결정으로 유아세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내용 :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3장 14조 2항에 의하면 유아세례는 2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1년 동안 유아세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 저희 노회에 속한 몇몇 교회에서 유아세례 예식을 하려고 하는데 만3세 이하도 가능한지를 질의하오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 총회총대 회원권 성립 개시 시점

총회장이 제출한 “행정재무처-3278 / 총회 총대 회원권(임기) 개시 시점 질의(2021.3.23.)” 건

해석 : 헌법 정치 제88조에 근거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총회 총대 회원권(임기) 개시 시점은 개회일에 총대 출석을 확인한 후부터 회원권이 개시 된다.

질의내용 : 총회 헌법 정치 제88조(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에 “총회는 1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정기로 회집한다. 총회장은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회장의 유고 시는 부회장 혹은 직전 총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무한다.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회 총대 자격 및 임기 개시 시점에 대하여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여 질의하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총회 총대의 자격 및 임기 개시(회원권 성립) 시점은 언제 부터인지

여부.

38. 부총회장 후보등록 자격 유무

총회장이 제출한 “행정재무처-3031 / 총회 헌법에 근거한 부총회장 후보등록 자격 유무 질의(2021.3.17.)” 건

해석 : 기 통보한 “행정재무처-3409 / 헌법해석 통보(2021.3.25.)” 건 해석으로 갈음하다.

> 〈행정재무처-3409 / 헌법해석 통보(2021.3.25.)〉
> 총회장이 제출한 “행정재무처-3278 / 총회 총대 회원권(임기) 개시 시점 질의(2021.3.23.)”
> 해석 : 헌법 정치 제88조에 근거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총회 총대 회원권(임기) 개시 시점은 개회일에 총대 출석을 확인한 후부터 회원권이 개시 된다.
> 질의내용 : 총회 헌법 정치 제88조(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에 “총회는 1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정기로 회집한다. 총회장은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회장의 유고 시는 부회장 혹은 직전 총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무한다.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회 총대 자격 및 임기 개시 시점에 대하여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여 질의하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총회 총대의 자격 및 임기 개시(회원권 성립) 시점은 언제 부터인지 여부.

질의내용 : 1) 총회 헌법은 제2편 정치 제12장(총회) 제88조(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에 의거하여 총회 총대의 자격 및 임기 개시(회원권 성립)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회헌법 제2편(정치) 제12장(총회) 제88조(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 -총회는 1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정기로 회집한다. 총회장은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회장의 유고 시는 부회장 혹은 직전 총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무한다.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

2) 그런데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조 3항 나·다호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회규정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조 3항 -나. 장로부총회장 후보는 해 지역 각 노회의 시무교회에서 임직 7년, 근속 7년 이상을 봉사한 장로 총대 중에 노회장(부노회장 포함), 총회 임원, 각 부·위원회장, 총회 총대 7년 이상, 산하단체장 및 산하기관 이사장 등의 경력 중 하

나를 역임한 총대 중에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총대를 총회 직전 봄노회에서 2인까지 총회 개최 60일 전에 추천할 수 있다. -다. 당 회기에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예정인 목사, 장로는 당해년 2월 말까지 별도 양식(양식3)의 예비후보등록신청서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총회임원 및 총회상임부·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의 부·위원장직에 있는 자는 사임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3) 이와 관련하여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 12장(총회) 제88조(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에 근거하여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조 3항 나·다호'에 명시된 총회 부총회장 후보등록 자격에 대하여 총회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조 3항 나호의 "총대"의 해당 회기(년도)는 당해 회기(년도)인지, 차기 회기(년도)인지 여부

질의2) 이번 제105회 총회 총대가 아닌 장로가 제106회 총회 장로부총회장후보에 예비후보 등록과 후보등록을 각각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

39. 타국시민권자 범위

총회 세계선교부장 서화평 목사가 제출한 "해외다문화선교처-594 / 헌법 질의(제4장 제21조) (2021.3.23.)" 건

해석 : 헌법 정치 제21조에 규정은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선교사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총회의 파송 선교사는 헌법 정치 제27조 제6항, 제74조 및 제80조에 근거함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 질의) 총회 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는 "해외선교사"에 본 교단 총회의 파송을 받아 해외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선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리오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0. 헌법질의 절차

김제노회장 이강표 목사가 제출한 "김제노회 제80-0108 / 김제노회장이 질의하지 않은 건에 대한 총회 규칙부와 헌법위원회가 답신한 일의 준법 여부와 공문철회, 회수의 건(2021.3.23.)"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2항에 근거 "헌법에 관한 질의 시 반드시 총회 상임(특별) 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임원회의 결의 혹은 노회장 직권)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부전지 혹은 내용증명(복사본)을 첨부할 경우 헌법위원회는

접수하여야 한다."에 근거 부전지에 의해 접수 처리하였으므로 철회 및 회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내용 : 총회 규칙부와 헌법위원회가 김제노회장이 질의하지 않은 건에 대해 답신을 한 건은 아래에 제시한 법을 어긴 일이며, 치리회간 고유 특권과 정체성을 무시한 월권 사임임을 알고 김제노회장에게 발송한 공문을 철회, 회수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41. 헌법질의 절차 · 무임목사의 대리당회장 청원 절차 적법 여부

경동노회장 마흥락 목사가 제출한 "경동 153-82 / 총회 헌법해석 요청의 건(2021.3.24.)"

해석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2항에 근거 "헌법에 관한 질의 시 반드시 총회 상임(특별) 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임원회의 결의 혹은 노회장 직권)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부전지 혹은 내용증명(복사본)을 첨부할 경우 헌법위원회는 접수하여야 한다."에 근거 적법하다.

질의2) 기 통보한 "행정재무처-1311 / 헌법해석 통보(2021.2.4.)" 내용으로 갈음하며 당사자는 무임목사이다. 따라서 무임목사 신분에서 대리당회장을 청하여 연임 청빙을 위한 제직회를 하였다면 적법하지 않다.

〈경동노회 벧엘산성교회 김태화 장로가 제출한 "헌법질의서(2020.12.14.)", "누락서류 제출(경동노회가 반송한 헌법질의서 반려 공문)(2021.1.7.)"〉

해석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의 적용은 선출에 의해 임기가 있는 치리회장을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교회가 계속된 분규(분쟁)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인 당회(당회 미조직 교회 제직회)를 개최할 수 없어 연임청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담임목사는 적법한 연임청빙 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자동 연장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교회 분쟁으로 교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의 해석이 유효하나,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의 적용은 선출에 의해 임기가 있는 치리회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헌법 해석을 감안할 때, 분쟁중임에도 노회에서 아무런 행정조치(수습위원회 또는 수습전권위원회, 기타)를 취하지 않고 있을 경우 이를 무기한으로 적용할 수 는 없다. 따라서 벧엘산성교회의 경우 담임목사가 청빙에 관련하여 노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반려된 점, 노회가 사고 교회로 인식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수습위원회 또는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지 않은 점, 노회가 연임청원을 보류하여 회기가 지나도록 청빙을 승인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헌법 정치 제27조 제2항 및 헌법 정치 제28조 제3항에 근거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하지 않아 연임기간을 넘겼다면 그의 신분은 무임목사로 봄이 타당하다.' (제100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19번 참조)

따라서 무임목사 신분에서 대리 당회장을 청하여 연임 청빙을 위한 제직회를

하였다면 적법하지 않다.　질의2)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내용 : 질의1) 벧엘산성교회는 담임목사가 부존한 상태 즉 경동노회가 2020년 4월 노회 시에 연임 청빙을 하지 않아 무임처리 된 상태에서 당회장이 아닌 자가 대리 당회장을 청하여 연임 청빙을 위한 제직회를 하였다면 그 제직회가 적법한 것입니까?　질의2) 당회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회원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제직을 임명하지 않거나 자신을 지지하는 극소수(6명)만 임명하여 제직회를 운영하고 있다면 적법한 것입니까?

질의내용 : 질의1) 개인이 치리회인 당회(당회장)를 경유(제출)하지 않고 노회나 총회에 직접 헌법 질의를 하는 것이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11장 제77조 제2항에 의거 적법한지요?

질의2) 교회(당회)가 총회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해석사례 제104-61호, 2020.8.26.)에 따라 기간(2020.5.8.~10.06.) 내에 적법한 절차(제직회결의)를 거쳐서, 담임목사연임청빙서류를 가을노회(제152회기 노회임원회)에 제출하여 제153회기 정기노회(가을노회)에 헌의하였고, 제153회기 정기노회(가을노회, 2020.10.5.~6.)에서는 연임청빙청원에 대한 진정서 제출이 있어서 진정서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이 있기까지 연임청빙청원서 처리를 보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가. 그렇다면 교회가 제출한 담임목사 연임청빙 청원은 회기 경과와 관계없이 현재(153회기 : 2020.10.7.~2021.3.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적법한지요?

나. 교회가 제152회기 정기노회의 회기 내(2020.5.8.~10.4.)에 연임청빙 서류를 노회에 제출하여 노회가 접수하였고, 정기노회(가을노회, 2020.10.5.~6.) 본 회의에서 처리를 진정서를 확인하기까지 보류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이 경우 담임목사의 지위는 회기와 관계없이 치리회인 노회(임원회)가 결의(가·부 간)할 때까지 계속 연장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는바 적법한지요?

42. 헌법에서 명시한 연령 기준

총회 세계선교부장 서화평 목사가 제출한 “해외다문화선교처-600 / 헌법 질의(제4장 제22조)

(2021.3.24.)”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본 교단 헌법에 명시된 연령은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며 항존직의 은퇴 기준

은 “만70세”이다.

질의내용 : 총회 헌법 정치 제4장 제22조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 되는 연말까지로 한다.” 위 헌법조항에서 70세가 “만70세”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는 나이”인지 질의 드리오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3. 교회분쟁 시 담임목사 임기 연장

평양노회장 최창덕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93-62호 / 천래교회 질의 건(2021.4.6.)”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의 적용은 선출에 의해 임기가 있는 치리회장을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다만 “교회가 계속된 분규(분쟁)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인 당회(당회 미조직교회 제직회)를 개최할 수 없어 연임청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담임목사는 적법한 연임청빙 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 적용에 있어 노회가 분규(분쟁)를 위해 수습전권위원회 또는 화해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노력한 점과 분쟁 중 발생한 당회원 장로 중 1명이 면직 출교의 권징을 받은 점 그리고 당회장이 예·결산 당회를 소집하여도 응하지 않은 점 등과 화해조정위원회의 화해를 거부한 점을 볼 때 정상적인 담임목사 연임청빙이 이루어질 수 없음으로 적법한 연임청빙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담임목사의 임기가 연장된다고 할 것이다.

질의내용 : 본 노회 소속 천래교회가 수개월 동안 분쟁 중에 있으며 시무장로가 면직, 출교되고 사고당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도 분쟁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44.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온라인 개최(코로나19 심각단계 거리두기 2~3단계)

서울북노회 이정환 공로목사가 제출한 “헌법유권해석 질의(2021.4.7.)” 건

해석 : 기 통보한 “사무국-4716 / 헌법해석 통보(2020.12.23.)” 건 해석으로 갈음하다.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4574 / 교회의 온라인 회의 관련 헌법 질의(2020.12.14.)”〉 건

해석 : 질의1) 국가적 재난사항인 감염병 예방 “심각”단계 및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교회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총회 헌법 및 총회 규칙, 노회 규칙 등이 없으며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초유의 재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법과 총회 헌

법 등의 취지와 목적 등을 감안할 때 각 교회 상황과 형편에 따라 헌법과 제 규정을 준용하여 온라인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온라인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경우 지난 제105회 온라인 총회 어려움을 감안하여 개회성수, 발언권, 표결권 확보와 인터넷 연결 불량으로 인한 발언권, 결의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인사권에 대해서는 헌법과 제 규정에 의한 개회 및 의결 정족수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2) 국가재난인 코로나19의 2단계 이상 비상시국 하에서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개최하기 심히 곤란하여, 온라인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개최 할 경우 온라인 당회는 헌법 정치 제66조를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제직회와 공동의회는 헌법 정치 제91조 제3항 및 헌법 정치 제90조 제2항을 준용하여 1주전 사전 공지(공지방법 : 주보, 문자, 교회 홈페이지, 전화 등 / 온라인 회의방법 안내)한 후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재난인 코로나19 2단계이상 비상시국 하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당회장이 온라인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질의3) 온라인 당회는 헌법 정치 제66조를 준용하여 온라인상에서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온라인 참석자)으로 개회하여 진행하고, 온라인 제직회는 헌법 정치 제91조를 준용하여 개회성수는 출석수(온라인 참석자)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온라인 참석자)로 한다. 온라인 공동의회는 헌법 정치 제90조 제4항을 준용하여 개회는 회집(온라인 참석자)된 회원으로 개회하고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결의 당시 온라인 참석자) 과반수로 결의한다. 특히 인사 관련 사항은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5조를 적용하고 아울러 기 헌법위원회 해석을 참고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절차를 거쳐 결의된 안건은 유효하다.(제104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18번, 37번, 49번, 51번, 63번, 71번 참고) 다만, 총회 헌법 정치 제91조, 제90조 제4항에 근거 제직회와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여 예·결산을 확정할 수 없다면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고 이후 제직회와 공동의회 개최가 가능할 경우 신속히 개최하여 차기년도(2021년) 예·결산을 확정 결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04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33번 참고)

※ 참고) [국가재정법 제55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①정부는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헌법」제54조 제3항(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 질의1) 국가재난인 코로나19의 2단계 이상 비상시국 하에서 총회 헌법 제69조(당회의 회집), 제90조(공동의회), 제91조(제직회)를 어떻게 적용

또는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국가재난인 코로나19의 2단계 이상 비상시국 하에서 총회 헌법 제69조(당회의 회집), 제90조(공동의회), 제91조(제직회)를 적용 또는 준용할 경우 당회장의 소집 권한은 유효한지 여부. 질의3) 비상시국(국가적재난)에 관한 법조항이 현 총회 헌법에는 제정되어 있지 않은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정부와 자치단체장이 거리두기 2~2.5단계를 시행하여 주일예배도 온라인(영상) 예배로 전환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온라인 회의 진행 및 결의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질의) 현재까지 국가적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심각단계에 있으며 제직회는 물론, 공중예배까지 출석에 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모든 교회들이 제직회나 공동의회 소집이 사실상 불가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헌법은 제직회나 공동의회 의사정족수를 '모인 회원들로 개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 대형교회는 방역수칙에 따라 회집 인원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일부 제직들과 교인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제직회나 공동의회의 결의가 전체 교회의 결정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04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 공중예배가 가능해지고 제직회나 공동의회 소집이 가능해지는 상황까지 노회가 결의하여 허락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제104회기 한하여 허락한 것을 제105회기까지 허락하여 시행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온라인 개최(코로나19 심각단계 거리두기 2~3단계)

부산남노회장 이동룡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81-120호 / 헌법질의(2021.4.12.)" 건

해석 : 질의1,2) 기 통보한 "사무국-4716 / 헌법해석 통보(2020.12.23.)" 건의 해석한 방법대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결의된 안건이 유효하다. 교회의 정관의 경우 분쟁 시 국가법에 의해 효력을 다툴 때 민법에 따른 정족수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4574 / 교회의 온라인 회의 관련 헌법 질의(2020.12.14.)"〉 건

해석 : 질의1) 국가적 재난사항인 감염병 예방 "심각"단계 및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 집

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교회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총회 헌법 및 총회 규칙, 노회 규칙 등이 없으며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초유의 재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법과 총회 헌법 등의 취지와 목적 등을 감안할 때 각 교회 상황과 형편에 따라 헌법과 제 규정을 준용하여 온라인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온라인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경우 지난 제105회 온라인 총회 어려움을 감안하여 개회성수, 발언권, 표결권 확보와 인터넷 연결 불량으로 인한 발언권, 결의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인사권에 대해서는 헌법과 제 규정에 의한 개회 및 의결 정족수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2) 국가재난인 코로나19의 2단계 이상 비상시국 하에서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개최하기 심히 곤란하여, 온라인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개최 할 경우 온라인 당회는 헌법 정치 제66조를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제직회와 공동의회는 헌법 정치 제91조 제3항 및 헌법 정치 제90조 제2항을 준용하여 1주전 사전 공지(공지방법 : 주보, 문자, 교회 홈페이지, 전화 등 / 온라인 회의방법 안내)한 후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재난인 코로나19 2단계이상 비상시국 하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당회장이 온라인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질의3) 온라인 당회는 헌법 정치 제66조를 준용하여 온라인상에서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온라인 참석자)으로 개회하여 진행하고, 온라인 제직회는 헌법 정치 제91조를 준용하여 개회성수는 출석수(온라인 참석자)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온라인 참석자)로 한다. 온라인 공동의회는 헌법 정치 제90조 제4항을 준용하여 개회는 회집(온라인 참석자)된 회원으로 개회하고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결의 당시 온라인 참석자) 과반수로 결의한다. 특히 인사 관련 사항은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5조를 적용하고 아울러 기 헌법위원회 해석을 참고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절차를 거쳐 결의된 안건은 유효하다.(제104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18번, 37번, 49번, 51번, 63번, 71번 참고) 다만, 총회 헌법 정치 제91조, 제90조 제4항에 근거 제직회와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여 예·결산을 확정할 수 없다면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고 이후 제직회와 공동의회 개최가 가능할 경우 신속히 개최하여 차기년도(2021년) 예·결산을 확정 결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04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33번 참고)

※ 참고) [국가재정법 제55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①정부는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헌법」제54조 제3항(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 질의1) 국가재난인 코로나19의 2단계 이상 비상시국 하에서 총회 헌법 제69조(당회의 회집), 제90조(공동의회), 제91조(제직회)를 어떻게 적용 또는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국가재난인 코로나19의 2단계 이상 비상시국 하에서 총회 헌법 제69조(당회의 회집), 제90조(공동의회), 제91조(제직회)를 적용 또는 준용할 경우 당회장의 소집 권한은 유효한지 여부. 질의3) 비상시국(국가적재난)에 관한 법조항이 현 총회 헌법에는 제정되어 있지 않은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정부와 자치단체장이 거리두기 2~2.5단계를 시행하여 주일예배도 온라인(영상) 예배로 전환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온라인 회의 진행 및 결의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질의1) 본 교회에서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에 의거 정관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공동의회로 일시에 모이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헌법시행규정제3조 2항에 의거 공동의회를 개회하고 교회 정관을 제정하고자 하면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공동의회를 실시하여 결의할 경우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요? 1) 당회의 결의와 해당일을 지정하여 1주일 전 공동의회 소집 및 목적에 대한 광고 후 해당 일에 공동의회로 회집하여 개회성수인 모인 수로 개회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좌석에 20% 또는 30%의 제한으로 인해 일시에 회집결의 및 서명이 불가하므로 해당일에 1부 예배 이후 일몰시간을 특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찬성 및 반대유무를 위한 선거를 실시하여 정관제정에 필요한 공동의회 정족수만큼 투표로 결의하여 공포하면 가능한 것인가요? 2) 또한 공동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위임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3) 위임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장 “위의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주일에 소집될 공동의회 안건(안건:)에 대해 공동의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며 공동의회 참석자들의 모든 결정에 따르겠으며 이를 대한예수교장로회 덕천교회 공동의회 의장(000)에게 자필 서명하여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위임자 : 000(인)”

질의2) 만약 상기와 같은 방법의 정관제정을 위한 공동의회가 효력발생이 불가하면 헌법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6. 교회분쟁시 담임목사 임기 연장

군산노회장 김대성 목사가 제출한 “제82-21호 / 분쟁 중인 교회가 장로를 청원이 가능한가의 건(2021.4.19.)”

해석 : 질의1) 교회가 분쟁 시에는 장로 증원을 청원할 수 없으며, 분쟁 전 정상적인 당회에서 결정한 것은 유효하지만 현재 분쟁 중에 있다면 장로 증원 청원을 할 수 없다.

질의2) 분쟁 중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당회 및 공동의회를 할 수 없거나,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해야 하나 이런 절차가 불가능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노회는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제98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124번 참조)

질의내용 : 질의1) 현재 분쟁 중인 동신교회 김대현 목사가 교회가 장로 청원을 할 수 있는지?

질의2) 세울 수 있든지 없다든지 하면 헌법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47. 무임목사 시점

영등포노회장 곽근열 목사가 제출한 “영노 제125-55호 / 부목사의 무임 시점과 투표행위에 대한 질의(2021.4.20.)” 건

해석 : 헌법 정치 제35조에 근거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다만, 노회 폐회 중에는 정치부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노회 폐회 중에 노회를 대신하여 임원회에서 목사 사임을 처리하는 경우 처리 다음 날부터 헌법 정치 제27조 제10항 무임목사이며 언권회원이다. 언권회원은 투표할 수 없다. (제103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62번 참조)

질의내용 : 질의) 한 교회의 부목사가 연말(2020년 12월)에 시무하던 교회를 사임하였습니다. 노회가 폐회 중이었기에 임원회에서 시무 사임을 허락하였고, 다른 노회에 속한 교회의 부목사로 임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봄노회(2021년 4월)가 개회되기 전 시찰회에 참석하여 시찰장과 총회 총대를 선출하는 투표행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목사에게 시찰회원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임지를 옮기는 부목사의 무임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8. 임시당회장 대리당회장의 권한 외

영등포노회장 곽근열 목사가 제출한 “영노 제125-56호 / 임시당회장 파송, 정년이 지난 담임목사 권한 및 대리당회장 권한에 대한 질의(2021.4.20.)” 건

해석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1항에 근거 헌법 정치 제67조 2항의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가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을 때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지 않을 때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질의2) 정년이 지난 목사는 한시적으로 설교를 맡길 수 있으나, 치리권이 없으므로 치리는 할 수 없다.

질의3) 헌법시행규정 제30조 제2항에 근거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재단법인에 가입된 재산의 처분에 관해 결의한 것은 불법이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정치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2조 향존직은 70세가 된 연말까지로 정년이 규정되어 있는데 담임목사가 정년이 지났으나 후임 담임목사가 청빙되지 않았을 경우 헌법 제67조 2항에 따라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지요?

질의2) 만약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경우 정년이 지난 담임목사는 교회에서 설교나 치리를 할 수 있는지요?

질의3) 당회장으로부터 대리당회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공동의회에서 헌법 정치 67조 3항이나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의 4항의 사유로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헌법시행규정 제30조 2항에 의거 임직권, 권징권, 부동산 관리권과 그 외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는데 대리당회장으로 청빙 받은 이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재단법인에 가입된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를 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 신학대학교 개방이사도 은퇴 후 불가

총회 신학교육부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교육훈련처-978 / 질의 제출(2021.5.25.)” 건

해석 : 신학대학교 개방이사라도 교단 소속 목회자라면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4항에 근거하여 교단 헌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한다. 따라서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15조 제3항에 근거 은퇴자는 은퇴와 함께 총대, 실행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산하기관의 장,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모든 공직이 종결되기에 개방이사를 할 수 없다. (제95회기 헌법해석 18번 참조)

질의내용 : 1) 총회 모든 기관은 은퇴와 함께 그 직에 대한 권한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 임원중 은퇴한 개방이사가 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50. 전도목사 당회장 불가

대전서노회 성민제일교회 고백인 목사가 제출한 “대전성민제일2021-4-01 / 헌법해석 질의서 부전지(2021.4.12.)” 건

해석 : 질의1) 교회(개척지)를 담임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 설립이전이라고 하면 전도목사의 신분이 맞다. 헌법 정치 제27조 제2항 담임목사와 제4항 전도목사는 구분된다. 헌법 정치 제67조 제1항에 근거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위임목사, 담임목사)가 된다. 따라서 전도목사는 당회장이 될 수 없다. 헌법상 당회장권이 없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노회 전도부장이나 국내선교부장 허락 하에 임시적으로 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질의2) 헌법 정치 제95조 제2항에 근거 노회의 재산 중에 지교회의 부동산은 그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다만 헌법시행규정 제34조에 근거 헌법 정치 제93~97조에 의거 총회와 노회와 당회는 상회에 헌납한 재산이나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 외의 자체 재산에 대하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여 전권을 가지며 개별 치리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세부사항과 절차 및 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노회 규칙과 규정에 따른다. (제104회기 헌법해석 48번 참조)

〈대전서노회장 김성기 목사가 제출한 “대서노 제136-8호 / 교회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 관한 질의(2020.6.12.)”〉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96조 제2항에 근거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 부동산은 그 지교회의 당회로 관리케 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산은 제직회로 관리케 하되 지교회 운영에 사용케 한다. 단, 교회의 재산은 신도에게 지분권이 없다. 헌법 정치 제97조에 근거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않은 지교회의 부동산은 지교회의 소유로써 교회 명의로 등

기하여야 하며,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개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개인 명의로 등기한 지 교회 소유의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34조에 근거 헌법 정치 제93~97조에 의거 총회와 노회와 당회는 상회에 헌납한 재산이나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 외의 자체 재산에 대하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여 전권을 가지며 개별 치리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유지재단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교회의 재산(부동산, 동산)의 관리, 처분, 사용 등에 관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질의내용 : 질의1) 대전서노회 제132회 정기노회에서 결의한 사항〈유지재단에 가입되지 않은 교회가 부동산(토지, 건물)을 매매할 경우 임원회의 허락을 받는다.〉이 타당한 결의라고 할 수 있는지요?

질의3)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적용하면 된다.

질의내용 : 질의1) 대전서노회는 설립교회가 아니라는 이유(기도처)로 목사가 시무하고 있음에도 그 교회에 당회장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적법성의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대전서노회 정치부는 유지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교회의 청원 건에 대해 반려하고 있습니다. 적법성의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헌법과 노회 규칙(또는 부서 결의 등) 충돌(또는 모순)할 때 헌법이 우선입니까? 노회규칙(또는 부서 결의 등)이 우선입니까? 어느 것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며 적법입니까?

51. 미조직교회의 당회장권 행사 절차

전남노회 건강한교회 박형대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해석 질의 신청의뢰서(2021.4.16.)”, 전남노회 건강한교회 박형대 목사가 제출한 “통지서(총회헌법해석질의 신청 의뢰서)(2021.5.14.)” 건

해석 : 질의1~6) 헌법 정치 제77조 제2항에 근거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 헌법과 헌법시행규정과 각 치리회의 규칙에 정한 것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접수 처리 방법에 대한 사항은 헌법시행규정과 노회 규칙 또는 노회(임원회) 결의에 따른다.

헌법 정치 제67조 제4항에 근거 미조직교회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다만 미조직교회라도 교회 재산권에 대한 사항 및 교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과 교회명의로 청원, 헌의, 문의, 진정하는 사항 등을 당회장 혼자 결정하기보다 헌법 정치 제77조 제8항(각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을 준용하여 제직회에 상정하고 보고한 후 제출함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질의내용 : 질의1) 당회가 합법적으로 노회에 “헌의·문의·청원·진정” 등을 제출하면 노회가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질의2) 서식목록에 의하면 위임·담임·부목사청빙청원서, 목사(장로)휴무청원서 외의 각종청원서에 당회록 사본이나 제직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회가 합법적으로 노회에 “헌의·문의·청원·진정” 등을 제출할 때에 “당회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노회가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질의3) 헌법 제2편 제10장 제67조 제4항은 “4. 미조직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의 담임목사가 합법적으로 노회에 “헌의·문의·청원·진정” 등을 당회장 명의로 제출할 때에 노회가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질의4)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단독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미조직교회가 합법적으로 노회에 “헌의·문의·청원·진정” 등을 제출할 때에 “제직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노회가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질의5) 정기노회의 기타 안건토의 시간에는 목사나 장로의 총대가 당회나 제직회의 결의 없이 즉석에서 의제를 발의하여 성안되면 찬반토론 후에 가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회의 총대나 목사 개인 명의로 노회에 의제를 발의할 수도 있습니까?

질의6) 총회나 노회의 회기는 개회일을 가산일로 차기정기회의 개회전일까지 약 1년을 한 회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폐회 중일 때에는 임원회가 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각 노회는 총회에, 각 당회는 노회에 언제든지 청원서 등을 제출하면 총회나 노회가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52. 이단 이명 및 항존직 임직 불인정

경남노회장 이상택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021-78호 / 헌법 질의의 건(2021.5.6.)”

해석 : 질의1~3) 이단에서 본 교단으로 이명 되지 않으며 항존직 임직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교회 등록일로부터 새로 기산하여 항존직 선출을 해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이단에서 본 교단으로 이명이 가능한지요?

질의2) 이명이 가능하다면 이단 교회의 출석 기간과 장로 임직 인정 가능한지요?

질의3) 이명이 불가하고 출석 기간 및 항존직 임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의 성도는 해당교회 등록일부터 새로 기산하여 항존직 선출을 하면 가능한지요? (헌법시행규정 제10조, 제11조, 제12조)

53. 은퇴목사의 강단권 노회 허락 필요

영등포노회장 곽근열 목사가 제출한 "영노 제126-4호 / 정년이 지난 은퇴목사 관련 질의(2021.5.20.)" 건

해석 : 질의1) 은퇴목사는 노회 소속이며 교회 소속이 아니다. 따라서 노회의 허락과 교회의 허락을 받아 한시적으로 설교를 맡길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노회의 허락 없이 은퇴한 목사가 은퇴한 교회에 강단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설교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질의내용 : 질의1) 정년이 지난 은퇴목사가 시무하던 교회에서 노회의 허락 없이 계속 설교를 할 수 있다고 강단권을 주장하고 있다면 헌법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4. 노회 폐회 중 위임(담임)목사 청빙 절차

경서노회장 정만익 목사가 제출한 "경서 제21-24호 / 헌법 질의(2021.5.20.)" 건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29조에 근거 노회 폐회중일 때는 정치부 결의 후 임원회가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정치부 경유가 아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질의2,3) 헌법 권징 제123조 재심 사유에 해당해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상설 재심재판국이 있었을 때도 3심제로서 재심을 하지 않았고 사유가 있어야 했으며 재심개시결정 등의 절차가 있었다. 목사에 대한 것뿐 아니라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도 노회 재판국부터 다루므로 2심제이다. 목사에 대한 3심제 확보 부분은 목사가 노회 소속이고, 교회에서는 당회장으로 재판국장이 되어 본인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질의4) 헌법 권징 제126조의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은 헌법 권징 제123조 재심사유를 말한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의 폐회 중에 위임(담임)목사 청빙의 절차에 관한 질의입니다. 헌법 정치 제29조 청빙의 승인 3항 노회의 폐회 중에는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한하여 노회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청빙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기산일은 승인 후 첫 노회 개회

일이 다해서 통상적으로 노회의 폐회 중의 위임(담임목사) 청빙 절차를 임원회가 청빙 승인 결의 후 경유기간인 노회 정치부로 경유이첩을 하여 청빙절차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유기간인 노회 정치부로 경유이첩을 반드시 먼저 한 이후에 임원회가 청빙 승인을 해야 그 효력을 발생하나요. 아니면 임원회가 청빙 승인 후 경유기간인 노회 정치부로 경유이첩을 하여 청빙 철자를 완료하더라도 가능한 것인지요?

질의2) 본 교단의 헌법 권징 재판은 국가법원 같이 3심(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당회, 노회, 총회 재판국). 그러나 목사의 경우 1심 재판국은 노회 재판국입니다. 헌법개정 전에는 상설 재심재판국이 있어 3심제 적용이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폐지되어 마지막 3심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노회, 총회재판국, 그리고 재심 재판까지 해야 3심제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헌법 권징 제127조의 재심청구권자로서 제123조의 재심사유에 관계없이 재심청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제123조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질의3) 2번의 질의에서 목사는 헌법 권징 제123조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면 재판의 불평등으로 인한 권리의 침해로 볼 수밖에 없는데 헌법개정안을 발의해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질의4) 헌법 권징 제126조에는 재심청구 사유에 대하여 재심청구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위 기간 내에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해외출국, 장기입원 등으로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심의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하면 헌법 권징 제123조 재심사유를 말합입니까?

55. 노회원 자격 성립 시점

평양노회장 최창덕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94-4호 / 규칙해석 요청(2021.5.12.)” 건

해석 : 헌법 정치 제73조 제2항 및 제74조 제3항에 근거 노회는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로 조직하되,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에 대해서는 서기가 명부를 접수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 그러나 통상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교체파송도 포함) 명단은 노회사무원이 접수하고 이를 서기가 확인한다. 따라서 반

드시 서기가 직접 접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해 노회의 경우 해당 교회에서 노회사무실 팩스로 접수하였으나 당사자(해당 교회)의 귀책사유가 아닌 노회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명단이 보고되지 않았고, 이후 노회 서기가 이를 확인하였다고 하면 회원권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 〈록원교회 장로 2명 노회원 자격 건〉

북 시찰 록원교회는 제194회기 장로총대 2명 교체를 2021년 4월 19일(노회 3일전) 팩스로 요청했으나 노회사무실의 실수로 북 시찰장에게 보고하지 못하여 선거 진행 중에 북 시찰장 조인서 목사(현 평양노회 공천위원장)가 록원교회 당회에서 파송 요청한 (김정철 대 허기수 주병덕 대 장관순) 장로를 모시고 북 시찰 총대 선거를 주관하는 선거 관리 위원 경기 시찰장 강홍준 목사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가능하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시찰장 강홍준 목사가 처음에는 불가하다고 했으나 노회장이 직접 와서 2명의 장로를 총대로 인정하면 할 수 있다고 승인함으로 조인서 목사가 노회장을 모시고 현장에 갔으나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강홍준 목사가 노회서기의 사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조인서 목사의 회의안에 노회 서기가 사인함으로 북 시찰 선거관리 위원이며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강홍준 목사가 2명의 장로에게 투표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선거결과를 노회장이 당연직(증경총회장, 노회장, 서기) 3명을 포함하여 12명의 총회 총대를 발표함으로 박수로 받았습니다.

노회를 폐회한 후 록원교회 2명의 장로는 총대가 아님으로 총회 총대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재선거를 청원하였기에 규칙부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56. 원로목사 추대 및 변경 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단독 박세영 판사가 제출한 “사실조회서(사건번호 2020가단5315805 소유권이전등기)(2021.6.1.)” 건

해석 : 질의1~3) 헌법 정치 제27조 제8항에 근거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사로서 시무하던 목사가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목사다.

원로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정치 제8호 서식 참조) 따

라서 원로목사로 추대된 목사를 지 교회 공동의회의 결의만으로 원로목사 추대를 박탈할 수는 없다. 또한 예우에 대한 사항은 헌법 정치 제27조 제8항에 근거 지교회의 형편에 따른다.

이는 지교회가 자신의 재정형편과 사정에 따라 원로목사 예우의 수준을 사전에 정한 다음 노회에 그 허가를 받아 원로목사로 추대(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지교회의 형편이 달라졌을 경우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 가) 귀 교단 헌법 규정 및 해석상 개별교회의 담임목사가 20년 이상 시무하여 은퇴함과 동시에 원로목사로 추대된 경우 그 원로목사의 지위를 노회의 허가나 원로목사의 동의 없이 개별교회의 결의만으로 이를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나) 귀 교단 헌법 규정에서 “원로 목사 예우는 지교회 형편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의미가 ① 지교회가 자신의 재정형편과 사정에 따라 원로목사 예우의 수준을 사전에 정한 다음 노회에 그 허가를 받아 원로목사로 추대(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② 이미 결정한 원로목사 예우내용을 사후에 지교회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원로목사 및 노회의 동의 없이 지교회 공동의회 결의만으로 임으로 박탈·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질의 다) 피고 교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로목사인 원고의 예우를 이미 생활비 지급과 주택 증여로 결의한 다음 노회의 허가를 얻어 확정된 이후, 사후에 원고 또는 강남노회 동의 없이 피고 교회 내부결의만으로 원고에게 주택을 증여하지 않는 것이 귀 교단 헌법 규정 및 그 해석상 적법·타당한 것인지 여부.

57. 정직 목사의 타노회 이명 및 시벌

평양노회장 최창덕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94-12호 / 양지아름다운교회 헌법해석 요청(경유)(2021.6.9.)”, 평양노회 양지아름다운교회 김요한 목사가 제출한 “총회질의에 대한 자료를 첨부합니다.(2021.7.6.)” 건

해석 : 질의1,2) 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한 정직 처분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따라서 기간 동안 치리회(기관)의 직책이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만료 후에는 시무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건은 재판계류 중에 소속 노회를 바꾸었고 평양노회에서도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조

건으로 가입 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헌법시행규정 제16조13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강동노회에서 평양노회로 이명하여 소속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시행규정 제86조에 근거 헌법 권징 제119조에 의한 판결집행을 위하여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서울강동노회)는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피고인(권징사건) 또는 피고(행정쟁송사건)가 속한 치리회장(평양노회)에게 권징 제8-5호 서식에 의한 판결집행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 받은 소속 치리회장(평양노회)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헌법 권징 제131조, 제132조에 의하여 시벌한다.

질의3) 예총재판국 사건 제103-22 판결문에 의하면 “2011년 5월 8일 양지태평제일교회를 태평제일교회 창립30주년 기념교회로 분립시키기로 결의하여 양지태평제일교회 분립청원서, 당회록사본, 공동의회록사본,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 공증된 재산헌납증명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분립하였다.” 그러나 노회에서 결의하였다고 해도 분립 결정시 재산권에 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지 않았고, 태평제일교회 공동의회록에 의하면 재산권은 교회가 안정된 후 차후에 이전해 주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재산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개척 당시 분립과 동시에 독립하도록 공증된 재산헌납증명서까지 노회에 제출하였고 헌법 정치 제11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6조에 근거 이미 10년 전에 교회 분립 절차가 완료되었고 그동안 노회와 교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재산권은 헌법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질의4) 헌법 정치 제95조 제2항에 근거 총회 유지재단이 아닌 노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재산권에 대한 부분으로 당사자 간 처리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 질의1) 위의 사정에 따라 총회 헌법 제3편 제16조의 13에 근거하여 질의하는 것은 분쟁에 있거나 총회 기소 중에 있는 A목사가 노회를 옮기는 것이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질의합니다.

질의2) 또한 노회 결의로 완전 가입된 교회 및 목사이명이 취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합니다.

질의3) 개 교회에서 결의되지 않은 재산권(당회, 제직회를 거치지 않음)이 노회의 허락(교회분립청원)만으로 인해 재산권 이전될 수 있습니까?

질의4) B기념교회는 현재 10명 미만의 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기념교회에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면 교회 재산이 사유될 우려가 있고, A교회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권에 대한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대한 재산권을 총회 유지재단으로 이양할 수 있습니까?

58. 공동의회의 모바일 전자투표 불가

군산노회장 김대성 목사가 제출한 "제82-42호 / 항존직 피택을 위한 모바일 공동의회 개최 건(2021.6.10.)"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90조에 근거 해당 교회 구성원이 모여 진행하는 공동의회는 예배당 외 여러 장소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질의2) 온라인 총회 역시 "모바일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고 현장 투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전자투표"에 의한 피택은 투명성, 보안성, 안전성 등을 감안할 때 분쟁과 논란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 현재 교회 허용 좌석수 등을 감안하여 현장 투표함이 합당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 하에서도 총회 헌법 제90조(공동의회)의 장소의 개념을 꼭 예배당이라는 장소로만 국한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만일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국하에 총회 헌법 제90조의 장소의 개념이 예배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면 예배당을 포함하여 공동의회 장소로 지정한 모든 곳이 해당되며 공동의회를 진행했을 시 공동의회의 직접투표와 모바일 전자투표로 선출된 항존직 피택 결과는 유효한지 여부.

59. 국가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의 효력

총회장이 송부한 "행정재무처-7272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6.16.)" - "행정재무처-1481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2.9.)" - 군산노회장 김대성 목사가 제출한 "82-40호 / 김대현 목사에 대한 행정절차 법적 처리의 건(2021.5.20.)"

해석 : 교회법과 국가법원간에 상이한 점이 있어 국가법 판결대로 인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각 노회 및 교회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권징과 처벌에 대한 국가법원의 최종판결이 아닌 일시적인 집행정지(가처분)라고 하더라도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 하는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

만약 가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결국 교회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법원 결정을 부인할 수 있는 명백한 관련 근거와 국가법원의 판결을 부인하고 총회 재판국 판결대로 집행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총회가 보상하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1) 총회 재판국 면직 판결에 대하여 국가법원이 효력을 정지 시킨 상태에서 ① 해당 노회가 총회 재판국 면직을 전제한 헌법 권징 제137조에 근거하여 해벌 할 경우는 결과적으로 국가법원 재판의 의미가 없는 결과가 된다. ② 또한 해벌을 하기 전에는 담임목사가 아니라고 국가법원 가처분을 부인할 경우 이에 대한 피해는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금 번 해석 대상 교회 뿐 아니라 향후 총회재판 및 노회재판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교회법과 국가법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 기 해석에서도 국가법원에 의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았으므로 담임목사직이 유지된다고 해석하였기에 3월 4일 “행정·재무처-2472 / 헌법해석 보고”와 배치되지 않으므로 기 해석으로 갈음한다.

질의1) 국가법원에 의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면직 판결(사건번호: 예총재판국 사건 제104-06호)효력을 정지한다.” 라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았고 해벌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권징 제136조(구, 제146조)에 의한 해벌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다.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헌법위원회 해석대로 하면 된다.

질의2,3) 동신교회 담임목사 상태에서 면직 되었으나, 국가법원에 의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았으므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동신교회 담임목사직은 유지된다.(대법원 판결 시까지 여부는 양당사자의 상소여부〈항소, 상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질의내용 : 〈행정재무처-7272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6.16.)〉

총회장이 제출한 “행정·재무처-7014 / 헌법해석 보고(2021.6.11.)”와 관련하여 헌법해석 보고의 4번(군산노회장 김대성 목사의 질의) 해석은 총회 재판국의 면직 판결에 대하여 국가법원이 ‘총회재판국 면직판결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결정한 것을 근거로 총회재판국 판결을 취소 또는 파기한 내용에 상당하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법과 국가법의 효력을 단순하게 판단한 적합하지 않은 해석이며, 또한 헌법위원회가 지난 3월 4일 “행정·재무처-2472 / 헌법해석 보고”에 근거하여 군산노회장 질의에 대하여 총회임원회에 해석 보고한 내용(군산동신교회 주체는 특정 불가)과도 배치되므로

재심의를 요청하니 면밀히 검토하여 재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노회장 김대성 목사가 제출한 “제82-40호 / 김대현 목사에 대한 행정절차 법적 처리의 건(2021.5.20.)”〉

질의1) 김대현 목사가 헌법위원회 해석 통보에 목사가 맞다고 하였기에 정기노회 촬요에 기재하였는데 붙임4에 ②항에 기록된 내용처럼 헌법 권징 제7장 제147조에 의하여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 정기노회 촬요에 기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헌법위원회의 목사가 맞다는 해석 통보대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2) 김대현 목사가 목사가 맞다면 동신교회 목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신교회 원로 장로들이 말하는 대로 소속이 없이 목사 신분만 유지하는 목사인지?

질의3) 동신교회 원로장로 주장대로 면직된 김대현 목사가 동신교회를 시무하려면 제7장 제146조에 의하여 청빙이나 신임을 얻어서 시무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법원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대현 목사가 동신교회 목사직을 유지하는지? 헌법위원회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 전도목사의 겸직 여부

전주노회장 성상현 목사가 제출한 “전주노회 제48-18호 / 총회 헌법 질의(2021.6.23.)” 건

해석 : 외부기관에 대한 판단은 노회가 하되 외부기관일 경우에는 헌법시행규정 제22조에 근거 겸직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노회소속 목사로서 노회와 협력함이 적절하다.

질의내용 : 질의) 전주기전여고는 총회 산하기관 학교가 아니고 외부기관으로 교육부에 소속되어 교육부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노회와는 유관기관으로 선교적 지원을 받습니다. 전주기전여고 교목이 노회 허락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를 설립하였는데 담임목사 겸직 허락에 문제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61. 목사 안수 자격

군산노회 양무리교회 홍기표 원로목사가 제출한 “목사 안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헌법 질의의 건(2021.6.24.)”, 군산노회 양무리교회 홍기표 원로목사가 제출한 “목사 안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헌법 질의 청원의 건(보완서류)(2021.6.28.)”

해석 : 목사안수는 헌법 정치 제26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4에 근거 자격을 갖추어 받아야 한다. 따라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이나 경력으로는 목사안수를 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2편 정치 제26조 목사의 자격 제2항에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경험을 가진 자.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4 목사의 자격과 안수 제1항에 “헌법 정치 제26조 1항 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은 4년, 준전임은 3년으로 인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이나 경력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적법입니까?

62. 다른 교단의 목사 청빙시 이수학점

울산노회장 이재학 목사가 제출한 “울산노회 제82-020호 / 헌법질의 건(2021.7.2.)”

해석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23조에 근거 다른 교단의 목사청빙의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 중에 헌법 2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일 경우 비록 목사 안수를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단에서 받았다고 해도 청목의 취지가 우리 교단의 헌법과 교리를 이해하도록 하는 취지인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전에 우리 교단 헌법과목을 이수했을지라도 그간 헌법 개정 등을 감안하여 청목과정 헌법 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3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100번, 제104회기 헌법위원회 38번 참조)

질의2) 목사고시 및 안수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서약 후 이명이 가능하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23조 4항 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본 교단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 2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목사의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직영 신학대학원(장신대)을 졸업한 상황에서 다시 청목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는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또한 목사고시 및 안수(서약) 절차도 다시 해야 하는지 해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3. 교회분쟁 시 담임목사의 임기 연장

평양노회장 최창덕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94-36호 / 담임목사 연임 청빙 청원에 대한 질의(2021.7.7.)” 건

해석 : 기 통보한 “행정재무처-5292 / 헌법해석 통보(2021.5.7.)” 건으로 갈음하다.

〈평양노회장 최창덕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93-62호 / 천래교회 질의 건(2021.4.6.)”〉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의 적용은 선출에 의해 임기가 있는 치리회장을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다만 “교회가 계속된 분규(분쟁)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인 당회(당회 미조직교회 제직회)를 개최할 수 없어 연임청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담임목사는 적법한 연임청빙 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 적용에 있어 노회가 분규(분쟁)를 위해 수습전권위원회 또는 화해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노력한 점과 분쟁 중 발생한 당회원 장로 중 1명이 면직 출교의 권징을 받은 점 그리고 당회장이 예·결산 당회를 소집하여도 응하지 않은 점 등과 화해조정위원회의 화해를 거부한 점을 볼 때 정상적인 담임목사 연임청빙이 이루어질 수 없음으로 적법한 연임청빙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담임목사의 임기가 연장된다고 할 것이다.

질의내용 : 본 노회 소속 천래교회가 수개월 동안 분쟁 중에 있으며 시무장로가 면직, 출교되고 사고당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도 분쟁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 질의1) 평양노회 중부시찰 속해있는 천래교회가 내부 분쟁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가운데 제출된 고발건으로 인하여 총회 권징 재판국에서 진행된 재판결과 천래교회의 두 분의 장로 중 한 분의 장로가 면직 출교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한분의 시무장로가 있으나 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정상적인 당회를 열 수가 없어 담임목사 연임청빙 청원기간이 이미 지났음에도 청빙청원을 못하고 있습니다.(시무기간이 지난 봄노회까지)

이런 경우 담임목사의 임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법해석을 요청합니다. 현재 노회에서는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여 분쟁을 조정중에 있습니다.

64. 법리부서 위원직 겸임 불가

평양노회장 최창덕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94-37호 / 법리부서 겸임 건(2021.7.7.)”

해석 : 헌법 권징 제22조 근거 노회 재판국원 및 기소위원은 노회 수습위원 또는 수습 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부 부장과 부원이 재판국 및 기소위원회 겸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규칙부는 법을 제정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규칙부장과 부원이 재판국원이나 기소위원을 겸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질의내용 : 질의) 노회 법리부서인 규칙부 부장과 부원이 재판국 및 기소위원회 위원으로 겸임할 수 있는지 헌법해석을 요청합니다.

65. 부목사 연임청원 노회결의 취소 효력

함해노회장 송태승 목사가 제출한 “함해 제190-22호 / 부목사 연임 청원에 대한 노회 결의에 관한 질의(2021.7.7.)” 건

해석 : 질의1) 노회 결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53조 및 제154조에 근거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노회가 예전 결의에 대해 다시 논의 후 취소 결의를 할 수 있다.

질의2) 부목사의 계속 청원 결의의 효력은 행정쟁송을 통하여 취소하거나 노회가 취소 결의를 하기 전까지 효력은 유지된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 허락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면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6(노회 폐회 시 목사 청빙 승인)에서 노회에서 이미 결의 및 유안된 안건에 대하여 다르게 처리할 수 없고 본회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는 것에 의하여 노회에서 다시 논의 후 취소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질의2) 헌법 제3편 권징 제147조(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와 제153조(결의 취소의 소)를 유추하여 볼 때 부목사의 계속 청원 결의의 효력은 유지가 되는지? 또한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지(참고로 해당 부목사는 1951년생으로 올해 은퇴이며, 현재 무임입니다.)

66. 상소권자 구분

함해노회장 송태승 목사가 제출한 “함해 제190-21호 / 상소권 및 상소권자에 대한 질의(2021.7.7.)” 건

해석 : 질의1) 헌법 권징 제90조 제1항에 근거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질의2) 기소 및 상소는 그 행위 시의 기소위원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과거 소송 당시 기소위원장이 아닌 현재 상소 행위 시점 기소위원장이 상소권자이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제3편 권징 제5장 상소 제1절 통칙 제90조(상소권자) 3항에 보면 “고소인(고발인)은 피고인이 무죄판결, 기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소위원회에 상소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소위원회는 고소인(고발인)을 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권징 제5장 상소 제1절 통칙 제99조(항소이유) 7항에 “책벌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항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위원회에서 원심재판국의 책벌의 양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해석해 주시고, 법적 근거 조항을 부탁드립니다.

질의2) 함해노회 노회 기소위원회는 3년이 아니라 매 해마다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고 있습니다. (헌법시행규정 제61조 1항 참조.) 따라서 고소 고발 건이 기소되었을 때와 재판국 판결 이후 상소할 때 기소위원회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회재판국에 상소권자는 전 기소위원장입니까? 현 기소위원장입니까?

67. 재판비용 면제 대상 범위

서울관악노회장 권병학 목사가 제출한 “관악 제50-76호 / 재판비용에 대한 헌법 유권해석 질의의 건(2021.7.7.)”

해석 : 질의1) 헌법 권징 제28조에 근거 고소인(고발인), 항소인, 상고인, 이의(불복)신청인, 재심청구인, 행정쟁송인이나 치리회는 재판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헌법시행규정 제43조 제4항 1호에 근거 헌법 권징 제51조에 의한 치리회장과 임원이 고발을 한 때 재판비용을 면제한다. 따라서 당회서기가 자격으로 고발하였을 경우 재판비용이 면제된다.

질의2) 재판 불출석 및 진술권, 묵비권 등은 당사자의 권리로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다.

질의3) 당회서기의 경우 재판비용 면제 대상이므로 단순히 재판비용예납을 이유로 노회재판의 판결을 무효화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재판에 대한 사항은 재판국이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 질의1) 당회서기는 치리회 임원으로 헌법시행규정 제28조 4-①에 근거하여 재판비용면제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당회 서기가 고발장을 제출하는 경우 재판비용을 예납해야하는 것인지요?

질의2) 총회헌법위원회는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기소위원회의 심리나 재판국의 심리는 재판비용을 납부한 후에 심리를 하면 된다.”(제97회기 헌법위원회 유권해석)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

니다. 재판비용 문제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은 마땅히 당회 재판국이나 노회재판국에 출석하여 이에 대한 당부를 진술하고 재판국의 결정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당회재판도 노회재판도 일체 불응하고 상고이유는 단순히 재판비용을 예납하지 않았다는 사유만 적어서 상고장을 제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질의3) 재판비용은 사건을 맡은 해당 재판국의 사용비용입니다. 헌법시행규정 제43조 3에는 "재판비용은 재판을 한 치리회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예납한 재판비용의 금액은 재판의 결과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고 그 치리회에 귀속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반환한다.(개정 2012.9.20.)

그러므로 당회나 노회재판국이 당회 서기를 임원으로 인정하고 재판비용을 면제하여 준 것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이 사건의 본질(내용)과 무관한 절차상의 문제인 재판비용예납을 이유로 당회재판과 노회재판의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요?

68. 부노회장 후보의 당회 추천 적법 여부

전주노회장 성상현 목사가 제출한 "전주노회 제48-26호 / 총회 헌법 질의(2021.7.14.)" 건

해석 : 질의1,2,3) 헌법 정치 제75조에 근거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노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목사, 장로회원 각각 10인 이상 추천과 당회가 없는 경우 추천에 대한 방법에 적법성(당회장추천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은 해당 노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자격 조건은 총회 또는 국가법처럼 둘 수 있다. (총회 임원선거조례에 부총회장 자격조건, 국가법에 대통령, 국회의원 등 자격조건) 추천을 후보 자격요건으로 두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참고: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조 제2항, 제3항, 국가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질의내용 : 질의1) 〈도표1〉에 "각각 회원"이 "목사회원과 장로 회원 각각"으로서 "10인 이상의 추천(이중추천 불가)" 의 조건을 보다 선명하게 명시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당회 추천과" 를 추가하므로 개정된 법규로는 당회가 없거나 당회의 추천을 받을 수 없는 회원은 원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회원권이 제한 받게 되는 것이 맞는지요?

질의2) 가사 당회 추천이 정당하여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추천'은 행정업

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표2〉와 같이 미조직교회에서도 '당회 추천'이 가능한 지요?

질의3) 〈도표1〉과 같은 개정으로 "당회 추천"을 받을 수 없는 회원은 회원권(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총회헌법 정치 제74조에 의거 '재판(책벌) 외에 방법으로는 회원권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상위법에 위배이므로 총회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전주노회 선거관리규정 제2조 제4항〈도표1〉개정안결의는 무효인지요?

69. 원로목사 추대 및 변경 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4단독 박세영 판사가 제출한 "사실조회서 (사건 2020가단5315805 소유권이전등기)(2021.7.12.)" 건

해석 : 질의1-가) 헌법 정치 제27조 제8항에 원로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을 때 정치 제8호 서식에 교회 형편에 따라 어떻게 예우하겠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여 제출하고 노회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허락을 받는다.

노회에서 허락받았음에도 교회 당회나 공동의회에게 손쉽게 바꿀 경우 원로목사 생활에 안정성 및 신뢰보호 원칙을 지킬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정치 제27조 제8항에 근거하여 허락받은 노회에서 변경 허락도 받아야 한다.

질의1-나) 헌법 정치 제27조 제8항에 근거 원로목사 허락을 받았을 때 절차에 따라 변경 허락도 정기노회에서 받아야 하나, 폐회 중에는 헌법 정치 제27조 제8항에 근거 정치부와 임원회에서 받을 수 있다.

질의2-가~라) 해당노회에서 답변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 질의1-가) 헌법 제27조 제7항은 '원로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그 예우에 관하여는 '지교회 형편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을 뿐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문구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우변경 시에도 노회의 허락을 받아 변경,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1-나) 지교회 형편이 달라졌을 경우 원로목사 예우를 변경하기 위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노회의 정기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질의2-가) 원로목사 추대 허락 당시 서울강남노회는 원고 이광수에 대한

예우 수준을 구체적으로 통보받았는지?

질의2-나) 예우 수준을 통보 받았다면, 그 예우 수준을 노회에서 허락한 것인지

질의2-다) 예우 수준을 노회에서 허락한 것이라면 위 정기회 회의록에 예우에 관하여 허락한다는 구체적인 기재가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2-라) 만약 최초 원로목사 추대 시 예우 수준을 노회에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추대 이후 피고 교회에서 정한 예우 수준을 변경할 때에 노회에 허락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지

70. 교육목사 지위

남원노회장 김상섭 목사가 제출한 “남원노회 제64-25호 / 교육목사의 노회에서와 당회에서의 지위 해석 요청(2021.7.14.)” 건

해석 : 헌법 정치 제27조에 근거 교육목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정치 제74조 노회원의 자격에 교육목사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현재 헌법 정치 제74조가 개정 중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개정 전까지 헌법위원회 해석으로 노회 언권회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참고: 제103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49번)

질의내용 : 질의) 2018년 12월 20일 개정 신설된 총회 헌법에는 제5장 목사, 제27조 목사의 칭호 7항에 교육목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10장 당회 제64조 당회의 조직이나 제11장 노회 제74조 노회원의 자격에는 교육목사가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목사의 신분은 있는데 그 지위는 보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노회 소속임에도 노회에서 노회원인지 언권회원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에 교육목사의 당회에서의 지위, 그리고 노회에서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당회나 노회에서 정식 회원이 되는지 아니면 언권회원이 되는지 정확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 원로목사 추대 및 변경 절차

서울서북노회장 서성환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76-67호 / 헌법질의 건(2021.7.15.)”

해석 : 헌법 권징 제147조에 근거 취소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헌법시행규정 제79조에 근거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해외출국, 장기입원 등으로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러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결의한 안에 대하여 4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는 재판국이 판단한다.

다만, 헌법 정치 제27조 제8항에 근거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사로서 시무하던 목사가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목사다.

원로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정치 제8호 서식 참조). 따라서 원로목사로 추대된 목사를 지 교회 공동의회의 결의만으로 원로목사 추대를 박탈할 수는 없다. 또한 예우에 대한 사항은 헌법 정치 제27조 제8항에 근거 지교회의 형편에 따른다.

이는 지교회가 자신의 재정형편과 사정에 따라 원로목사 예우의 수준을 사전에 정한 다음 노회의 허가를 받아 원로목사로 추대(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지교회의 형편이 달라졌을 경우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 원로목사 추대 취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회나 정기노회에서 결의한 안에 대하여 4년이 지난 후에 치리회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까?' 또는 이 '취소소송을 재판국이 받아들여 재판할 수 있습니까? (헌법 제3편 권징 제8장 행정소송 제2절 제147조 2항) 만일 이 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또는 재판국이 이 건을 재판할 수 있다면 적법하게 해당되는 사유는 어떤 것들입니까?

(헌법시행규정 제79조) 위 질의에 대한 적법하고 정확한 해석을 청원합니다.

72. 총회 직영신학대학교직원 노동조합 조직 불가

한일장신대학교 이사장 박성근 목사가 제출한 "한일신학-109 / 신학대학교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 관련 등 질의(2021.7.15.)" 건

해석 : 질의1,2) 헌법 정치 제21조 및 제22조 교회의 직원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이다. 따라서 헌법시행규정 제15조 제4항에 근거 교회의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총회 직영신학대학도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및 제4항에 근거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으므로 위법이며 이에 따른 처리는 헌법 권징에 따르면 된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15조 4항을 보면 "4. 교회의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

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헌법시행규정에 따르면 “교회의 직원에 유급 종사자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총회 직영신학대학교의 소속 교수와 직원의 경우 총회 헌법상 교회의 직원에 포함되는지? 아울러 신학대학의 교수와 직원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 및 활동하는 것이 총회 헌법상(위 헌법 시행규정 제15조 4항)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불법이라면, 이사회나 총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2) 현재 한일장신대학교에서 목사/장로 신분을 가진 교수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하여 이사장과 학교를 대상으로 단체행동과 형사고발을 매달(임금 삭감 문제 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총회 산하 신학대학에 근무하는 목사/장로 신분 교수가 노조 설립 및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만약 적법하지 않다면 학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재심청구 기간

서울서노회장 곽재욱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103-40호 / 헌법 질의 해석 요청의 건(2021.2.22.)”, 서울서노회장 곽재욱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104-2호 / 헌법질의서 추가 제출의 건(2021.4.20.)”

해석 : 가. 법 적용시점(종전헌법규정과 개정헌법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해석

제103회기 헌법개정위원회에서 헌법 권징 제123조를 비롯한 제126조 등을 제104회 총회에 제출하면서 헌법 권징 제123조(재심사유)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다. 그 내용은 “재심대상 판결의 범위에 관한 경과규정이 필요함. 예) 이 개정헌법 공포이전에 청구한 재심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심판하며, 이 개정헌법 규정은 이 개정헌법에 의하여 청구한 재심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통상 법적용을 할 경우 경과규정이나 시행일을 두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적용하되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행위시점에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본 질의는 경과규정에 의해도 개정헌법 공포이전에 청구한 것이 아닌 개정 이후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 적용 일반 원칙에 따르더라도 별도로 법 시행일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기에 행위시점(재심청구시점)에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따라서 재심청구는 총회재판국 확정판결시점(2019.12.10.)이 헌법 개정 전이지만, 당사자가 노회 기소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시점(2020.1.6.)이 헌법

권징 제126조 개정 공포(2019.12.19.) 이후라고 하면 개정 헌법에 근거하여 재심 청구한 것이 적법하다. 따라서 개정 헌법 권징 제126조를 적용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함이 적법하다.

나. 사유가 발생한 날(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에 대한 해석

헌법 권징 제126조에 근거 재심청구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위 기간 내에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해외출국, 장기입원 등으로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에 대한 판단은 재판국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심청구권자가 제출한 재심청구서 내용을 보면 “총회헌법 2019년 12월 19일 개정된 재심청구기간과 재심청구자가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2019년 12월 19일 개정 이전의 헌법 권징 제126조 재심청구의 기간과 제127조 재심청구권자 1항, 기소권자를 근거로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 되어 있는 바, 재심청구권자(기소위원장, 당사자)가 개정사실을 몰랐다거나 절차에 대하여 오해하였다는 이유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 또는 특별한 사정” 또는 “재심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위원회의 해석(2019.6.17.)이 재심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 권징 제123조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해석을 했어야 하는데 헌법위원회는 재심사유를 언급한 바 없어 헌법위원회 해석 자체가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발생한 날”로 볼 수 없다.

아울러 재심 판결 시 주심(윤00장로)이 제출한 확인서(2019.10)가 “재심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하나, 이는 재심청구일(2019.7.15) 이후인 2020년 10월로 이를 근거로 재심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시점이 역전되는 것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내용 등으로 볼 때 “사유가 발생한 날”은 총회재판국 판결 선고일 외에 다른 사유를 찾을 수 없기에 총회재판국 판결 선고일(2019.12.10.) 기준으로 90일 이내 재심청구 해야 한다.

다. 헌법위원회 질의가 재판절차인 불변기간을 중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2항은 재판계류 중이나 질의 중일 때는 재판국 혹은 헌법위원회에 접수일부터 기간의 계산이 중지되고 선고나 답변서를 수령 후부터 계산되므로 재판이나 질의에 소요된 기간만큼 정해진 처리기간에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권징을 위한 처리 또는 행정처리 등

을 하는 기간 중일 때 재판계류중이거나 헌법위원회 질의기간 만큼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5항에 근거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과 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결의로도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에 질의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재판의 절차(항소기간, 상고기간, 재심기간 등)에 의한 불변기간은 헌법위원회의 질의를 이유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중단시킬 수 없다.

라. 재심 사유와 당시 판결 주심이 확인한 "판단에 유탈이 발견되었다."에 대한 해석

재심 판결문에 근거한 재심사유 헌법 권징 제123조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헌법 권징 제123조 제6항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할 때"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문에 의하면 "상고인들은 예배인도자의 예배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해를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할 것이기에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 판단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또 다른 재심사유로 적용한 헌법 권징 제123조 제7항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라고 되어 있으나, 재심판결문에 법규적용 즉 법조문의 적용에 착오나 오류가 있어 법규적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사항이 없는 점을 볼 때 재심사유라고 볼 수 없다.

마. 해석 결론

이상의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볼 때 재심사유가 적법하지 않은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불변기간인 재심 청구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재심청구를 받아 판결한 재심판결은 적법하지 않다.

질의내용 : 〈서울서노회장 곽재욱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103-40호 / 헌법 질의 해석 요청의 건(2021.2.22.)"〉

질의1) ① 고소인(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서에서 밝히는 대로 2019.12.19.자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및 ② 헌법 권징편 제129조(재심청구권자)가 2019.12.19.자로 변경되어 고소인이 직접 재심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하지 아니하고, 2020.1.6.에 서울서노회 기소위원회에 재심청구 요청을 하고, 서울서노회의 재심청구 불가를 통보 받은 후인 2020.7.16.에 총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경우가 제129조(재심청구기간)의 단서조항의 "단, 위 기간 내에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장기출장 또

는 해외출국, 장기 입원 등을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질의2) 2019.12.19자로 개정된 헌법(권징편) 제128조(재심에 대한 심판) 제4항은 "재심의 청구가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국에서 재심을 개시하여 상고심보다 중한 책벌을 했다면 헌법원리에 맞는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노회장 곽재욱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104-2호 / 헌법질의서 추가 제출의 건(2021.4.20.)"〉

질의1) 예총104-08호 재심사건은 헌법 권징 제123조, 헌법 권징 제126조, 헌법 권징 제128조, 헌법시행규정 제36조 4항이 명시 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재심재판국이 재심사유와 재심기간에 대하여 재심의 하여 판결한 사건입니다. (판결문 재중) 그렇다면 재심판결이 부적법한 판결입니까? 적법한 판결입니까?

질의2) 위와 같이 104-08호 재심사건은 ①재심청구의 청구권자와 재심청구 기간이 규정상의 방식에 위배함이 없고, ②청구권의 소멸은 헌법 권징 제123조 재심사유와 헌법 권징 제126조 재심청구 기간에 위법함이 없다면 재심청구가 적법한 것입니까? 부적법한 것입니까?

질의3) 그렇다면 당시 헌법위원회가 위 내용을 해석(재중) 한 바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고 판결한 것이 부적법한 청구와 판결입니까? 적법한 청구와 판결입니까?

질의4) 그렇다면 제104-08호 재심재판국의 판결이 부적법한 판결입니까? 적법한 판결입니까?

질의5) 그렇다면 본 교단 헌법 권징 제126조 [재심청구의 기간]과 헌법시행규정 제32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 재심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입니까? 아니면 상고심 판결 날로부터 90일입니까?

질의6) 그렇다면 재심 제104-08호에 대한 재심청구 사유와 재심청구 기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것입니까? 부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것입니까?

74. 대리당회장의 권한

충북노회장 박희동 장로가 제출한 "대충노 제144-27 / 대리당회장 위임절차의 적법성

과 권한(2021.8.13.)” 건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헌법시행규정 제30조 제2항에 근거 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당회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정)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거나 혹은 이 규정 제16조의 8의 제4항의 사유로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청한 경우,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쟁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대리케 함이 바람직하다. 분쟁 여부에 대한 판단은 노회가 한다.

질의2~5) 대리당회장이 현 당회장으로부터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 “헌법 정치 제68조 제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외에는 대리당회장이 당회 결의 없이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더욱이 당회 결의권이 없는 대리당회장이 헌법 정치 제68조에 근거 일부 대리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지라도 당회 결의를 통해 해야 한다. 따라서 대리당회장이 일방적으로 3년간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것은 대리당회장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

질의내용 : 질의1) 대리당회장의 위임의 근거로 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의 유고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시 대리당회장을 현 당회장이 위임할 우선권이 있다고 하나 현 당회장이 결원이나 유고가 아닌 상황에서 분쟁 중에 당회원의 합의 없이 대리당회장 위임이 적법한지?

질의2) 대리당회장으로 위임된 오영호 목사는 헌법 정치 제68조 당회의 직무를 근거로

1) 제직회의록, 당회록, 공동회의록, 사본(기간 : 2017년 3월~2021년 7월)

2) 청석교회 예·결산내역서(세부내역 포함) 기간 2017년 3월~2021년 7월)

3) 제직회 회의 시 보고된 월별 수입, 지출 내역서(기간 2017년3월~2021년7월)

4) 청석교회 임시모임, 정기제직회, 동영상(가. 2021.6.20. 진행된 담임목사와 교인들 모임 동영상, 나. 2021.7.18. 2부 예배 후 진행

된 정기 제직회 동영상)

5) 2021년 청석교회 제직, 재정부 명단

6) 2021.8.8.일 교회주보 외 교인들에게 배포된 유인물 등을 당회원과 합의 없이

위임된 대리당회장이 요구한 것이 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과 시행규정 정치 30조에 의한 적법한 권한인지?

질의3) 당회원 합의 없이 위임된 대리당회장이 교회 행정자료(제직명단 등)를 복사하여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이 헌법 권징 제3조 제13항의 개인 정보와 문서를 불법획득 및 유출 행위를 위반한 건지?

질의4) 대리당회장은 보통(청빙, 위임, 원로목사 추대) 본인이 본인의 건을 다룰 수 없을 때 대리당회장을 선임하는데 기타사정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질의5) 대리당회장에게 위임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정치 제68조 제4항, 제7항, 제8항 행사할 수 없다.)하였다고 대리당회장에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회장 직무를 모두 행사하려고 하는데, 대리장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75. 재판비용 반환여부

서울서남노회 고촌중앙교회 김종서 장로가 제출한 “불기소 처분에 따른 재판비용 반환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2021.8.19.)” 건

해석 : 국가소송의 경우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판검사가 상설로 근무하고 있지만, 노회, 총회는 당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소위원, 재판국원의 비용과 조사 및 소송비용, 또한 고소, 고발의 남발을 막는 의미도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 권징 제28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43조에 근거하여 규정된 재판비용을 납부하여야 하고 노회, 총회 재판 시에는 각각 예납하여야 한다. 예납한 재판비용의 금액은 헌법시행규정 제43조 제3항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재판의 결과에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제103회기 헌법해석 45번 참조)

질의내용 : 질의) 본 사건은 한 사건으로 2심인 노회와 3심인 총회에서 2번 재판을 할 시 노회 재판비용 200만 원 총회 재판비용 300만 원 총500만 원을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고소인이 노회에 총회에 이중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혹 고소인이 고소취하로 인하여 재판을 종결할 시에는 재판의 결과에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고 치리회에 귀속하는 것은 타당할 수도 있

으나 고소인이 불복하여 3심인 총회재판국에 항고할 시에는 노회 재판비용 200만 원을 반환받고 다시 총회재판국에 300만 원을 예치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국가의 형사재판에서도 고소인이 재판비용을 고소 시에 비용을 내지 않고 모든 비용을 국가 부담한 후 피의자의 범죄가 확정될 시 벌금을 받고 있으며 민사재판 또한 원고가 국가가 정한 재판비용을 미리 예치한 후 재판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재판비용을 정산 받고 있으며 만약 원고가 승소 시에는 재판비용까지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바 교단의 과다한 재판비용은(노회 따로, 총회 따로) 부당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76. 노회개회 일시 조정

경동노회장 마흥락 목사가 제출한 “경동154-50 / 헌법해석 질의(2021.8.20.)” 건

해석 : 헌법 정치 제78조에 근거하여 노회 규칙대로 시행하면 된다. 다만, 계속된 연휴로 정한 일시에 개회할 수 없다면 임원회의 결의로 개회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질의내용 : 경동노회 규칙 제7장 회의 제33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정기노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대체공휴일(10월 4일, 11일)이 실시됨으로 본 경동노회 정기노회를 10월 18일(월) ~ 19일(화)로 임원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질의) 대체공휴일로 인하여 10월 4일(월) ~ 5일(화) 정기노회를 10월 18일(화) ~ 19일(화)로 개최하는 것이 가한지?

77. 교회 부동산 관리 절차

평양노회장 최창덕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94-43호 / 비전교회 헌법해석 요청(경유)(2021.7.26.)” 평양노회 비전교회 김명일 장로 외 2인이 제출한 “비전장로 2021-05 / 비전교회 헌법질의서(2021.8.13.)” 건

해석 : 질의1~3) 헌법 정치 제68조 제8항에 근거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하며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헌법 정치 제91조 제5항에 근거 제직회에서 결의한다. 따라서 부동산 관리는 당회 결의한 후 제직회 결의로 매각하여야 한다. 교회 분규로 당회가 정상화 되지 않을 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예산, 결산, 서리집사, 각 부서장을 임명하여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방해 등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가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권징절차(고소, 고발, 기소, 재판, 책벌)에 따르면 된다.

질의내용 : 질의1) 조직교회에서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배제하고 당회장이 직권으로 제직회 결의를 주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했다면 적법한 것입니까? 아니면 불법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 어떤 죄과에 해당이 되는지요?

질의2) 조직교회에서 당회장이 당회 결의 절차를 배제하고 수년 동안 임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헌법 정치 제91조 5항의 5가지 제직회의 결의사항 중 제직회의 결의가 어디까지 유효합니까? 이 경우 직원남용에 해당되는지요?

질의3) 조직교회에서 당회장이 당회결의를 하지 않고 세례문답 및 세례식을 독단으로 관장했다면 적법한 것입니까? 부적법하다고 하면 당회원에게 업무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닌지요?

78. 파송 임시당회장의 임기

인천동노회장 이시문 목사가 제출한 “인천동 제47-29 / 임시당회장 파송 기간과 은퇴목사 계속설교에 관한 질의(2021.8.25.)” 건

해석 : 질의1) 임시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7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7 제1항에 근거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가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노회에서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은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7 제2항에 근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을 때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노회 파송 임시 당회장의 임기는 제1항을 준용하여 그 교회에서 청빙한 시무목사가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정치부와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청빙 승인되는 때까지이다.

질의2) 은퇴목사는 노회 소속이다. 따라서 교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한시적으로 설교를 맡길 수 있다. 그러나 설교를 계속하는 것은 은퇴목사 임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

질의내용 : 질의1) 목사가 지 교회를 은퇴했을 때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면 임기는 얼마가 되는지?

질의2) 은퇴목사가 지교회에 계속 설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은퇴목사가 매년 설교를 한다면 단 한 번의 절차로 후임이 올 때까지 계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매년 해야 하는지?

79. 노회 재판국 조직 구성 절차

평양노회장 최창덕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94-63호 / 노회 재판국 조직 구성에 관하여(2021.8.25.)”, 평양노회장 최창덕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94-63호 / 노회 재판국 조직 구성에 관하여(첨부자료 추가제출)(2021.8.25.)” 건

해석 : 질의1,2) 노회 재판국 구성은 헌법 권징 제16조에 근거 공천위원회 공천과 노회 승인 또는 헌법 권징 제17조에 근거 노회 폐회 중에는 공천위원회 공천과 노회 임원회 승인으로 구성한다. 질의 첨부자료에 의하면 평양노회는 상설재판국이 없었으나, 총회로부터 “행정재무처-659 (2021.1.20.)” 상설재판국을 구성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또한 제194회기(2021.4.22) 평양노회 보고서 16쪽 15. 공천위원회 보고(회의안 63-67쪽 참조 임시보고로 받다.)에 기소위원회와 재판국 공천은 노회 후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허락하였다. 또한 2021.7.26일 평양노회 제194회기 7차 임시 임원회의록에 의하면 “임원회는 재판국 조직 보고를 받고 8월 정기 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평양노회 보고서에 재판국원이 조직되어 있고 배포한 사실을 보면 재판국 구성은 유효하다.

질의3) 재판국 운영 및 재판국장 선임은 적법한 구성 후에 가능하며 재판국장 선출 시에도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헌법 정치 제90조 제6항 및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8조, 제12조”를 준용하여 재적 과반수 출석과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

〈제105회기 헌법해석 “행정재무처-3833 헌법해석 통보(2021.4.6.)” 참조〉

〈평양노회장 최창덕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93-41호 / 임시 기소위원회 및 재판국 조직에 대한 해석 요청(2021.2.10.)”〉

해석 : 질의1,2) 헌법 정치 제87조 제1항 및 제77조 제8항에 근거하여 총회로부터 지시가 있을 경우 노회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을 구성할 수 있다. 노회 기소위원회와 재판국 구성은 헌법 권징 제56조 및 제16조 근거하여 노회에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공천위원회 공천을 받아 임원회에서 조직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평양노회는 총회 임원회로부터 임시로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을 헌법대로 설치하여 재판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본 노회는 지난 193회기(2020년 10월 20일) 노회 시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을 없앴습니다. 노회 폐회 중에 노회 임원회가 임시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을 조직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질의2) 임시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을 조직할 때 공천위원회로 하여금 공천을 받아서 조직을 해야 하는지 노회

임원회가 조직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속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 임원회에서 공식으로 인준하지도 아니한 재판국의 임원조직과 활동이 유효한가이고,

질의2) 노회 임원회가 재판국에 노회 규칙을 위반한 조직 구성을 시정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로 재판국의 임원 조직 구성을 강행하고 활동을 계속해도 되는가이고,

질의3) 재판국장 선임을 위한 투표과정에서 전체회원 9명의 과반수도 넘지 못한 재판국장 선임 (투표자 참석 6인 중 3표를 획득, 또 다른 3표를 획득한 후보가 사퇴함)이 유효한가입니다.

80. 합의 불이행시 가중처벌의 적법성

경남노회장 이상택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021-127호 / 헌법 질의의 건 (2021.8.25.)”

해석 : 질의 첨부자료에 의하면 예총재판국 사건 제103-45호 판결 주문에 “1. 이 사건의 소송은 별도 화해조사와 같이 화해가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되었다. 2. 합의 불이행시 가중처벌로 다스릴 수 있다.” 라고 판결하였다.

본 건은 합의조서를 근거하여 사건 소송을 종료한 점, 전제 조건인 합의 불이행시 가중처벌로 다스릴 수 있다고 판결한 점 등을 볼 때 헌법 권징 제133조에 근거하여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을 경우 재판하여 가중 시벌할 수 있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 한 총회 재판국 판결은 적법하다.

질의내용 : 질의) 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을 요청하는 것과 그것을 결의하여 총회 재판국에 가중처벌 요청을 의뢰한 것, 그리고 가중처벌을 한 총회 재판국이 적법하지 않은 것인지요?

81. 비정상당회의 예결산 전년도 기준 적용

평양노회 비전교회 안명수 목사가 제출한 “비전21-08 /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의 건 (2021.8.24.)”

해석 : 질의1) 당회분규 여부는 당회원 일방이 당회를 회피하거나 방해하여 당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증명에 따라 헌법 정치 제63조 제4항 및 제5

항, 헌법시행규정 제33조에 근거 수습위원회와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될 때 분규로 보아야 하고 그 외에 어느 일방에 의해 분규로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한 분규가 아닐 때는 당회 결의를 통하여 제직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분규가 아니지만 수년간 당회가 정상화 되지 않을 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예산, 결산, 서리집사, 각 부서장을 임명하여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0회기 헌법해석 53번 참조)

질의2) 헌법 정치 제68조 제5항에 근거 당회는 재정을 감독하고 제8항에 근거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따라서 당회 결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은 할 수 없으나, 당회결의에 근거하여 제직회 결의를 하였다면 적법하다.

질의내용 : 〈평양노회 비전교회 안명수 목사가 제출한 “비전21-08 /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의 건(2021.8.24.)”〉

질의1) 헌법 정치 제59조 근거 조항에 의거 서리집사는 임시직(1년직)인데 당회분규(장로불참)로 인해 미 임명 시 제직자격 상실됨으로 전년도에 임명된 서리집사들에 한하여 임명했다면 합당한 것입니까?

질의2) 헌법 정치 제68조 및 제91조 근거 조항에 의거 당회에서 교회부동산 교환을 결의하고 이를 제직회에 넘겨 최종 결의하여 부동산교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적법합니까?

82. 담임목사 연임청원 기산일

순천노회장 송외천 목사가 제출한 “순노제103-133호 / 헌법 해석 질의 요청의 건(2021.8.31.)”

해석 : 질의1,2) 헌법 정치 제27조 제2항에 근거 담임목사 연임청원은 매3년마다 한다. 노회의 허락이 있을 경우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기산일은 노회 허락 일을 기준으로 한다. 연임청원을 위해 개최한 제직회는 동일 회기에 한해서 유효하다. (제102회기 헌법해석 1번 참조)

질의내용 : 질의1) 순천노회 초대교회 최화식 목사는 2019년 4월 25일 동 교회에 담임목사로 청빙되었습니다.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에 매 3년마다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담임목사 연임청원과 관련한 제직회 결의를 내년 봄 노회가 아닌 이번 가을 노회에 미리 해도 유효한지 여부

질의2) 상기 제직회 결의가 유효할 경우에, 연임청원서 제출도 이번 가을

노회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노회 연임청원서 제출은 내년 봄 노회에 해야 하는지.

83. 노회재판국 조직구성 절차

평양노회 재판국장 이규익 장로가 제출한 “헌법 해석 요청(2021.8.30.)”건

해석 : 질의1,5)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아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2~4) 제194회기(2021.4.22) 평양노회 보고서 16쪽 15. 공천위원회 보고(회의안 63-67쪽 참조 임시보고로 받다)에 기소위원회와 재판국 공천은 노회 후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허락하였다. 또한 2021.7.26일 평양노회 제194회기 7차 임시 임원회의록에 의하면 “임원회는 재판국 조직 보고를 받고 8월 정기 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평양노회 보고서에 재판국원이 조직되어 있고 배포한 사실을 보면 재판국 구성은 유효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치리회장이 반려하고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지 여부(증3참조)

질의2) 특정인을 실명거론하며 두 차례에 걸쳐서 치리회장이 재공천을 요청할 수 있는 지 여부(특정된 2인은 재판에 의해서 결격 사유가 없음(증4 참조)

질의3) 제194회 평양노회 보고서 16쪽 15. 공천위원회 보고 ‘기소위원회와 재판국 공천은 노회 후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허락하다’라고 명시된 바 재판국 조직 허락을 임원회에서 재차 받아야 되는지 여부(증5참조)

질의4) 재판국 조직을 노회 임원 중 서기가 소집자로서 소집하고 사회를 하여 국장 및 서기 회계를 선출하고, 194회 평양노회 보고서 8쪽 9. 재판국 조직보고가 인쇄되어 전노회원들에게 우송, 보고되었는 바 치리회장이 서기가 독단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직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증6 참조)(증7참조)

질의5) 치리회장이 기소된 자료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제104회기 헌법 해석 사례

▶ 헌법 질의 해석

1. 폐당회 시점과 담임목사 노회 허락 유무

서울북노회장 공석초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72-61호 / 총회 헌법위원회 질의서(2019.10.14.)” 건

해석 : 헌법 정치 제65조에 근거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1년 후 첫 노회부터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인 미달로 3년 경과한 후 첫 노회부터 당회가 폐지된다. 3년 경과의 기산은 헌법시행규정 제31조에 근거 노회에 보고된 후 첫 정기노회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헌법 정치 제27조에 근거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담임목사가 되기에 이를 노회에 보고하되 노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무임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질의내용 : 질의) 위임목사가 장로 1인이 되어 3년을 경과하여, 담임목사로 전환될 때에 헌법 제27조 따르면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담임목사가 된다.”고 하는데 별도로 노회에 담임목사 청원서를 내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2. 담임목사 연임 청빙 적법 여부

대구동노회장 김영식 목사가 제출한 “대동노 제185-2호 / 대구동노회 대구동광교회 담임목사 연임청빙 관련 적법성 질의의 건(2019.10.14.)”

해석 : 헌법 정치 제66조에 근거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회장과 장로 1인으로 당회를 개회하고 당회장 본인의 인사 문제로 대리당회장이 당회를 진행하여 장로 1인의 찬성이 있었다고 하면 헌법 정치 제28조에 근거 연임청원 시 당회장을 제외한 당회원이 장로만 2인일 경우에 한하여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1인이면 공동의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담임목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정치 제90조 제3항 4호에 근거 노회 지시에 따라 공동의회를 개최하였기에 이 경우는 담임목사 연임 청빙 청원은 적법하다.

질의내용 : 질의) 상기교회는 시무장로가 2명인 교회입니다. 금 번 담임목사 연임 청빙 청원과 관련하여 대리당회장이 주재하는 당회에 담임목사 연임 청빙

청원을 반대하는 장로 1명이 개회 성수가 되지 못하게 불참을 하였습니다.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주재하여 당회를 시작하게 하여 1부 예배를 진행하였으며, 2부 안건 처리 당회장 본인의 안건이므로 대리 당회장이 당회장을 나가게 하고 연임투표를 진행하여 장로 1명이 투표하였고 찬성표 1표가 되었습니다. 제직회를 진행하여 제직회원이 담임목사 연임 청빙 청원 투표에 참가하여 12명 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노회(임원회)는 헌법 정치 제77조 제1항, 제90조 제3항, 제5항에 근거하여 공동의회를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공동의회 참석 회원 20명이 전원 찬성투표를 하였습니다. 노회에서는 총회에 적법성에 대해 질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관련 서류 일체를 보내드리오니 검토하셔서 적법성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과 총회총대 파송

서울강남노회장 황명환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64-214 / 헌법 질의서 송부의 건(2019.8.30.)"

해석 : 국가법원으로부터 위임(담임)목사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위임(담임)목사 직무권한이 정지되었다면, 헌법 정치 제74조 제1항을 준용하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선거권이 정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총회 총대 파송은 적법하지 않다.

질의내용 : 질의) 국가법원으로부터 위임(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처분 결정을 받아 설교권을 포함한 치리권, 행정권 등 교회 대표자로서의 모든 직무권한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 목사가 총회 총대로 파송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관하여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구합니다.

4. 위임목사 및 담임목사 청빙

경동노회장 이동석 목사가 제출한 "경동 151-5 / 헌법위원회의 해석 요청 건(2019.10.15.)"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27조 제1항에 근거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 동법 제2항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로 위임목사, 담임목사는 노회 소속이나 지교회의 청빙으로 지 교회에 시무하는 목사다.

질의2~4) 제103회기 헌법해석사례 96번으로 갈음하다.

〈제103회기 헌법해석사례 96번〉

경동노회장 도영수 목사가 제출한 "경동 150-85 / 국가법원의 판결에 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 요청(2019.8.21.)" 건

해석 : 질의1) 국가법원에 의한 효력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그 이전의 모든 노회행정과

정기노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들이 소급하여 원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질의2) 당회장 면직, 출교 처분이 확정된(2018.6.26.) 이후는 당회장 결원이므로 임시당회장 파송은 적법하다. 질의3) 총회재심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2019.7.10.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정지가 결정되었기에 남종범 목사는 2019.7.10.일자로 안강제일교회 당회장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의 면직, 출교 확정판결 후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임시당회장 파송과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부목사 청빙은 적법하다. 다만 총회재심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2019.7.10 효력정지 결정이 있었기에 경동노회가 안강제일교회로 파송한 배성우 목사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당회장 지위가 정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질의4,5,6) 2019. 7.10.일자 총회재심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결정으로 남종범 목사가 그날부터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당회장 지위에 있으므로 당회장 사회에 의한 당회에서 노회 장로 총대를 파송함이 타당하다. 아울러 국가법원(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남종범 목사는 안강제일교회 당회장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당회장실 사용은 교회가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 질의1) 서울중앙지법('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의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총회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아직 재판계류 중이고, 또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소급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남종범 피고인이 "2015년 10월부터 2019년 7월 현재까지 안강제일교회 당회장 남종범 목사의 허락 없이 집행된 모든 노회행정과 정기노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들이 원인무효이며 앞으로도 당회장 남종범 목사의 허락이 없는 모든 행정과 서류는 무효" 라고 소급하여 노회의 행정과 정기노회에서 결의한 사항들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총회 헌법에 적법한지요? 질의2) 교단의 헌법상 당회장이 결원 시,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도록 되어 있는바(교단 헌법 정치편 제10장 재67조,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제16조의 7 제2항), 총회 재심재판국의 판결에 의하여 남종범 목사가 면직, 출교 처분이 확정된 이후, 경동노회가 교단 헌법에 의거 절차에 따라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적법한 것인지 질의3)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계류 중이고 또한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심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만을 가지고, 총회 재심재판국의 판결에 의하여 남종범 목사가 면직, 출교 처분이 확정된 이후, 경동노회가 총회 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정기노회에서 안강제일교회에 청빙을 허락한 배성우 목사에 대하여 "경동노회가 안강제일교회로 파송한 배성우 목사와 부목사들을 안강제일교회와 무관하며, 앞으로도 안강제일교회로 목회자를 파송할 수 없다."는 주장이 헌법상 적법한지요? ※ 참고 : 대법원도 지교회가 속한 교단의 노회가 지교회의 당회장인 목사 갑(甲)이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당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는 등 당회장의 결원이 생기자 목사 을(乙)을 지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적법하고, 그 후 일시적으로 임시 당회장의 파송사유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노회가 목사 갑(甲)에 대한 면직, 출교 처분 후 목사 을(乙)을 임시 당회장으로 인정하여 그 직무수행을 승인하고 있는 이상, 목사 을(乙) 및 그 후임 목사들은 모두 임시 당회장으로 지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질의4) 서울중

앙지방법원의 ‘총회재심재판국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만을 가지고 “2019년 10월 가을 노회 시 당회장인 자신의 허락이 없는 장로 총대는 무효이며, 또한 배성우 목사와 부목사는 안강제일교회 소속이 아니므로 노회 총대가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 헌법상 적법한 주장인지요? 질의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총회재심재판국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만을 가지고 “만일 경동노회가 국가가 인정한 안강제일교회 당회장 남종범 목사의 당회장권과 그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시 부득이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에 따른 법적인 손해배상을 노회에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헌법상 적법한지요? 질의6)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총회재심재판국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만을 가지고 “안강제일교회 당회장 남종범 목사는 2019년 8월 20일부터 안강제일교회 당회장실에서 근무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질의5) 헌법 정치 제28조에 근거 담임목사는 매3년마다 연임청원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헌법시행규정 제18조 제3항을 준용하여 “정당한 사유”로 “정상적인 당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매3년에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차기 노회에서 “정당한 사유” 및 “정상적인 당회를 개최하지 않은” 여부를 판단하여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허락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지 교회의 시무목사(위임목사, 담임목사)는 노회 소속으로서, 지 교회로 노회의 파송(허락)을 받아 시무하는 것이지, 시무하는 교회의 소속은 아니라 보는데, 이 같은 견해가 적법한지요?

질의2) 총회 재심재판국의 면직, 출교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면직, 출교로 발생한 목사의 직 회복과 당회노회 소속으로 회복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으나, 아직 본안 소송이 재판계류 중(서울고등법원에 재판계류 중)이고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재판계류 중인 상황이며(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 중) 또한 목사는 노회 소속이고, 지 교회에서 소속노회가 파송하는 것이며, 현재 노회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다른 목사를 파송하여 시무 중에 있고 이 파송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노회와 지 교회의 불필요한 혼선과 혼란을 막기 위하여, 지 교회 당회장 지위에 대한 회복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최종확정판결이 있고, 총회 재판국의 재재심에서 재심판결에 대한 파기선고가 있기까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같은 견해가 적법한지요?

질의3) 본 노회 소속의 A 교회는 총회 재심재판국의 판결(면직, 출교)과 총회 재재심 재판국의 결정(재재심 청구기각)에 의하여 합법한 청빙절차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갑 목사가 A 교회 담임목사로 시무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면직출교 처분을 받은 당사자(을 목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재심판결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아울러 재심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안소송은 1심이 끝나(을 목사 승소.) 항소재판계류 중에 있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1심 판결에 기인하여 '재심 재판국 판결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안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항소 중) 또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도 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 중에 있으며, 총회 재심재판국의 판결은 효력정지결정에 따라서 정지가 된 것일 뿐, 재심판결이 무효, 취소가 되거나 파기되지 않고 살아있는 상황에서, 총회 헌법위원회의 97-24 헌법해석과 103-55 헌법해석에 근거하여 이미 면직, 출교가 선고된 자(을 목사)에 대하여,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목사 직위의 회복과 노회소속으로의 복원을 허락하는 것은 가하다 할 것이나, 지 교회 당회장으로서의 회복은 본안 소송이 종결되어 판결이 확정되고 또한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시기상조라 유보함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교회의 혼란을 막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적법한가요? 위법한가요?

질의4) 본 노회 소속의 A교회의 을목사에 대하여, 노회의 결의나 임원회 결의도 없었고, 그렇다고 책벌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총회 재심재판국 판결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빙자하여 치리회장과 서기가 제151회 정기노회 보고서에 무임목사로 표시함이 적법한지요?

질의5) 본 노회 소속의 지 교회에서 담임목사 연임청빙 문제를 결의하기 위하여 대리당회장을 초빙, 당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분쟁, 기타 사정으로 당회가 정상적으로 연임청빙문제에 대한 결의를 하지 못하고 유회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담임목사의 임기는 비록 이번 가을 정기노회에서 연임청빙을 허락받지 못하였으나 '정상적인 회의(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결정될 때까지 자동연장 된다.'라고 봄이 적법한지요?

5. 타국 시민권자 직원 적법 여부

광주동노회장 정점수 목사가 제출한 "광동제23-148호 / 타국 시민권자의 목사 임직에 대한 질의 회신 요청(2019.10.28.)" 건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21조 제1항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제2항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단, ①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선교사역자 ②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 전문사역 부문(청소년 교육 등) ③ 해외선교사로 한정되어 있다.

질의2,3) 일반적으로 노회 소속 교회의 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 전문사역 부문"의 판단은 타국시민권자가 하여야 특별 전문사역부문(청소년 교육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고 노회가 판단하는 곳을 말한다.

질의내용 : 질의1) 타국 시민권자가 노회 소속 교회의 부목사로 안수 후 청빙이 가능한가?

질의2) 헌법 제2편 정치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1조 교회의 직원의 구분 "2.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노회가 인정하는 특별 전문 사역 부분(청소년 교육 등)"과 관련하여 특별 전문 사역 부분에 교회학교(노회 소속 교회의 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등)가 포함되는가?

질의3) 위 조항에서 특별 전문사역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6. 노회 분립 절차

서울서남노회장 윤병수 목사가 제출한 "서울서남 제93-009호 / 헌법 질의(2019.11.7.)" 건

해석 : 질의1,4,5) 헌법 정치 제82조 제1항에 근거 노회가 분립코자 하면 재석 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노회명, 기관 파송 이사, 노회재산, 노회에 속한 기관, 분할구역, 구역에 속한 교회 명단을 첨부하여 총회에 청원하여야 한다. 재석 파악여부에 대한 관련자료(회의록, 영상자료) 등이 없는 상황에서 재석 파악시점,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서남노회 관련사항에 대한 적법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질의2,3) 헌법 정치 제82조 제1항에 근거 재석 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확인해야 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서울서남노회 제92회 정기노회가 정상적으로 개회되어 총대투표가 진행되었고, 회무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총대 투개표 진행과정 중에 노회 분립안을 다루었습니다. 노회 분립 건을 처리할 당시 총대 투개표 요원 20여명이 해당 업무를 별도로 진행하기 위하여 이석하였고, 또한 많은 노회원들이 투개표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자리를 이석한 가운데 노회분립에 대한 상당한 토론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치리회장은 재석 확인 없이 노회 분립안을 가부로 표결 처리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

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8조 제2항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한다.”의 규정과 헌법 정치 제82조 제1항에서 “노회가 분립코자하면 재석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근거할 때 재석확인 없이도 노회분립 결의가 가능한지요?

질의2)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29조에서 동 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으로 “투표, 거수, 기립, 발성” 이상 네 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 가지 표결 방법 중 각종 선거 및 인사관계(문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표결해야 하고(동 규칙 제12조 제4항, 제29조 제1항), 안건의 일반적인 처리는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 규칙 제29조 제3항). 그러나 동 규칙 제29조 제4항에서 “단순한 안건은 발성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일반 안건 결의가 재석 과반의 찬성을 요한다는 점에 비추어 헌법 정치 제82조 제1항에서 “노회가 분립코자하면 재석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근거할 때, 이같이 헌법에 규정한 ‘노회 분립 건’이 발성에 의한 표결이 가능한 ‘단순한 안건’에 해당하는지요?

질의3) 노회 분립 건의 경우, 결의 정족수가 재석의 과반이 아닌 목사, 장로 각각 3분의 2를 요한다는 헌법규정(헌법 정치 제82조 제1항) 명시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정식표결(투표, 기립, 거수) 방법과 약식표결(발성) 방법 중, 어느 결의 방법으로 결의함이 당 헌법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요?

질의4) 노회분립안 결의 과정에서 가부를 물을 때 “아니오”라는 발성을 어느 노회원이 표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2조 제3항의 ‘아니오.’의 경우는 이유를 묻고 정당성을 판단한 뒤 결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묻지 않고 이를 묵인하고 가부를 물어 결의하였다면 적법한 결의라고 할 수 있는지요?

질의5) 헌법 정치 제82조 제1항에서 “노회가 분립코자하면(중략) 노회명, 기관 파송 이사, 노회재산, 노회에 속한 기관, 분할구역, 구역에 속한 교회 명단을 첨부하여 총회에 청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회 분립 결의 과정에서, 이상에서 규정한 분립 내용에 대한 논의나 합의안이 전혀 없이 노회분립을 결의하고, 다수의 구체적 분립내용 없이 총회에 분립을 청원했다면, 이는 헌법규정에 합법적인 노회분립 청원으로 볼 수 있는지요?

7. 준전임 개정 적용 시점

서울강남노회장 오경환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65-035호 / 개정된 헌법시행규정 질

의의 건(2019.11.13.)”

해석 :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1조에 근거 이 규정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개정 이후 신학대학원 졸업자로부터 적용하여야 하고, 기 졸업자라고 하여도 헌법시행규정 개정이후를 기산으로 교육전도사 및 준전임을 하였다면 교육전도사 4년 및 준전임 3년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 질의)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4가 제104회 총회에서 “헌법 정치 제26조 제1항 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은 4년, 준전임은 3년으로 인정한다.”로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대로 시행하도록 고지하였습니다.

개정 이전의 시행규정상 준전임 사역자의 경우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개 교회의 사정에 따라 준전임 전도사를 전임전도사에 준하는 자격으로 이해하고 2년 사역 후에 안수 후 부목사로 사역하도록 계획 중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정된 시행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 이후 신학대학원 졸업자로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기졸업자들의 경우 내년 봄 노회를 기준으로 2년의 준전임 사역을 한 사람을 안수 예정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졸업하여 준전임 혹은 교육전도사로 사역해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개정된 시행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노회원의 회원권과 피선거권

충주노회장 류승준 목사가 제출한 “충주노회-592 / 헌법질의(2019.11.14.)” 건

해석 : 헌법 정치 제74조 제1항 노회원의 자격은 “재판 외에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한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 정치 제75조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 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 정치 제74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임원선출을 위한 노회 규정은 노회에서 정할 수 있다.

목사 부노회장의 자동승계에 의한 노회장 선출이 노회원들 입장에서 볼 때 대상자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함에도 노회원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노회원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또한 자동승계 대상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재판절차에 의하여 확정 판결되지 않는 사항 및 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 등을 결격사유로 할 경우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고 기준이 모호함)를 이유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도 헌법 정치 제74

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노회원들의 선거권과 자동승계 대상자의 피선거권이 충돌되지 않도록 노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 질의) 충주노회 각종 시행세칙은 “본 시행세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과 충주노회 규칙에 따라 원활하고 공정하며, 질서 있는 노회의 직무 수행과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로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장 선거에 관한 규정, 1. 노회장, 1)항에 “노회장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목사 부노회장이 자동 승계하고, ~중략~ (결격사유라 함은 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나 총회헌법에 의해 책벌을 받을 죄과로 인해 기소가 제기되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책벌이 확정된 경우, 또는 노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로 되어 있어 노회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헌법에 의해 책벌을 받을 죄과로 인해 기소가 제기되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라는 규정이 “헌법 제2편 정치, 제11장 노회, 제74조 노회원의 자격[개정2012.11.16.] 제1항과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3절 재판, 제71조 [피고인의 무죄추정]에 의거 헌법에 위배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제2항에 의거 충주노회 시행규정을 개정을 하여야 하고, 개정 전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헌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9. 부목사의 임기 및 당회장의 일반변호사 직무대행자 소집 불가

서울강남노회장 오경환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65-134호 / 헌법 질의의 건(2019.11.26.)”

해석 : 질의1,2) 헌법시행규정 제18조 제3항에 근거 정상적인 당회가 개회되지 못하면 부목사의 임기는 자동 연장되며 정상적인 당회가 개회되지 못하면 기간은 계속 연장된다.

질의3)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여도 종교단체에 보장되는 종교 활동의 자유와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으로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이 직무대행자가 당회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단 헌법 정치 제6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변호사로 직무대행자가 되어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은 헌법 정치 제67조 및 제66조를 위반한 것으로 교단 헌법에 의한 당회로 볼 수 없고 또한 이를 당회로 보고 결의한 사항은 무효이다.(제103회기 헌법해석 사례 70번 참조)

질의4),5) 헌법 권징 제7조 제2항에 근거 권징 제3조에 해당하여 제5조 책벌하는 경우 외에는 부목사의 신분과 지위를 변경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서울교회 3명의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위한 당회 결의가 1년내(임기 만료전) 성립된 사실이 없는데, 부목사의 임기가 자동연장 된다면, 언제까지 연장되는지요?

질의2) 만약 부목사의 임기연장(2년 이상)이 되어서 안 된다면 부목사들의 신분은 무임목사인지요?

질의3) 만약 부목사의 신분이 유지된다면 시무목사가 아닌 불신자 당회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하는 당회에 참석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질의4) 정상적인 당회가 개회되지 못하여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당회가 할 수 없는 경우 지교회가 속한 상급 치리회인 노회는 부목사의 신분과 지위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질의5) 노회가 부목사의 신분과 지위를 변경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 할 수 있는지요?

10. 특별재심 청구

평북노회장 김상곤 장로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207-47호 / 헌법해석 요청의 건(2019.11.29.)”

해석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내용 : 질의1) 특별재심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만 진술권을 주고 피청구인에게는 제8장 행정쟁송 3항 등에 의거 자기를 방어할 권리 방어권(변호권)도 박탈당한 채 결정했다면 그 결정의 효력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질의2) 조건부 위임목사직 사임원인합의를 위반하고 그 위반이 면직출교처분까지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그 원인무효 여부에 대한 심리를 행정쟁송에서 담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질의3) 사임원인 무효소송 청구시효 5년의 기산점은 선교비 횡령의혹으로 사퇴요구에 따라 교회분쟁을 막기 위해 위임목사직을 사임하였음에도 고소를 당했다면 사임하게 된 선교비 횡령의혹에 대한 사임원인 여부를 따지는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 결과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질의4) 제137조 해벌치리회 ‘해벌은 최종 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의 결의 내지 승인(폐회 중에는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장이 선포 내지 공지함으로 시행된다.’ 의거 폐회 중 총회재판국이 만장일치 해벌승인을 임원회요구에 따라 두 차례씩이나 승인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총회회의안 보고서로 보고까지도 임원회가 촬요에 누락시켜버렸다면 해벌승인 확정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질의5) 총회특별재심 제134조 2항에 '총회당석에서 총회특별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임원회에 위임가능하다.' 102회 총회가 당석에서 구성한 사실도 없고 임원회가 위임받은 사실도 없이 위원회를 구성했다면 그 판결효력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11. 지교회의 설립 청원서

땅끝노회장 박금석 목사가 제출한 "땅끝노회 제26-26호 / 교회설립 허락에 대한 질의(2019.12.2.)" 건

해석 : 헌법 정치 제10조에 근거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헌법시행규정 제6조에 근거 노회는 지교회의 설립이 가합하면 이를 허락하고 설립위원을 선정하여, 그 교회에 파송하며 동법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처리한 후 노회에 보고하고 지교회 명부에 등재한다. 따라서 교회 설립은 폐회된 이후 임원회가 아닌 정기노회 또는 임시노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정치 제2장 10조의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에서 "노회에"란 회집된 정기노회나 임시노회에 허락인지, 폐회된 이후 기간에는 임원회에서도 지교회 설립 청원 허락이 가능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본 교회 의미와 교회분립 및 합병 절차

여수광림교회 배용주 목사가 제출한 "여수광림교회 제2019-30호 / 헌법질의에 대한 해석 요청의 건(2019.11.5.)"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20조(교인의 복권)에서 "본 교회"란 교인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출석하였던 교회를 말하며, 헌법시행규정 제12조(이명과 직원)에서 "본 교회"는 새로 등록한 교회를 말한다.

질의2) 시무교회는 헌법 정치 제22조 및 제27조에 근거 목사의 경우 위임을 받거나 임시로 교회를 담임하여 사역하는 교회,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가 임직하거나 취임하여 사역하는 교회를 말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임원선거조례 "시무교회"는 "본 교회"로 봄이 타당하다.

질의3) "본 교회"는 후보자가 "시무하는 교회"를 말한다.

질의4~7) 제103회기 헌법해석 사례 94번으로 갈음하다.

〈제103회기 헌법해석 사례 94번〉

여수광림교회 배용주 목사가 제출한 “광림 제1호 / 헌법질의 건(2019.7.25.)” 건과 여수노회장 김인호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46-51호 / 헌법질의 건에 대한 건의 및 질문(2019.8.22.)” 건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11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5조에 근거 지 교회를 분립 또는 합병하고자 하면 제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회장과 분립 및 합병될 교인들이 서명 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노회가 허락하면 헌법시행규정 제6조에 근거 위원을 파송하여 분립 또는 합병에 필요한 제반재산 및 행정처리 한 후 노회에 보고하고 지 교회 명부에 등재한다. 여수노회에서 행한 분립은 해당 교회를 준 분립이라는 용어 사용 및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이미 노회가 10년 전 결정한 사항으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 교회 분립으로 봄이 적절하고 따라서 그동안 이루어진 모든 당회와 노회의 행정절차 및 총회헌법에 의한 처리는 적법하다.

질의2~5) 교단 헌법에 의한 교회 분립에 절차적 미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0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해당교회에서 노회 임원을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분립된 교회 시무장로로 본다. 분립 시 항존직 직분(장로, 집사, 권사 등)은 그대로 계승되나(제99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95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보면 ① A교회에서 사임한 장로 8인에 대하여 B교회에 장로로 계승되거나 복직절차(헌법 정치 제47조 제1항 자의 사임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를 거친 것이 아닌 이명 장로에 준하는(헌법시행규정 제28조 제8항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당회의 장로선택 청원과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신임하며 노회 고시부의 면접 후 취임할 수 있고) “노회 가입 허락 받은 후 공동의회에서 시무 신임투표를 거쳐 시무토록 허락한 사실”과 ② A교회가 사임 처리된 장로들의 복직을 거부한 사실 ③ 제94회기 헌법위원회에서는 당시 여수노회 관련 해석(52번)으로 “최종적으로 헌법 제2편 정치 제68조(당회의 직무)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12조(이명과 직원)에 의거 사임한 측에서는 당회에 자필 서명한 이명증서로 이명을 요구하기로 하고 당회장은 요구가 있을 시 그대로 발급하기로 결의” 한 사실 등을 볼 때 A교회로부터 장로 시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B교회로부터 장로 시무기간을 기산함이 적절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준 분립’이라 명칭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또는 분립교회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2) “준 분립” 된 교회의 장로가 노회에 장로 선거청원, 노회 고시부의 면접도 하지 않고 그 교회의 시무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질의3) 이전 “A교회”에서 자의 사임한 자들이 “B교회”를 개척 후 공동의회의 3분의 2의 취임투표와 서약 절차도 없이 시무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질의4) 질의3,4에 근거 당회의 조직 요건 불비 상태인 교회가 위임목사 청빙을 결의할 수 있습니까? 질의5) A교회에서 시무 사임한 장로가 B교회의 장로로 시무기간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정치 제3장 교인 제20조 교인의 복권

1.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6개월

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2.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헌법 제2장 정치 제12조 [이명과 직원] 2. 항존직 선출 시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무흠기간을 “본 교회” 등록일로부터 새로 기산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본 교회라고 명시된 “본 교회”의 정확한 의미(해석)가 무엇인지요?

질의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 임원선거 장로 부총회장 후보는 해 지역 각 노회의 시무교회에 임직 7년, 근속 7년 이상 이라고 명시되었는데 여기 “시무교회”는 “본 교회”를 의미(해석)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의3) 여수노회 임원 및 총회 총대선거 조례 제6조(입후보자격) 1. “장로 부노회장 후보자는 ‘본 교회 시무장로’로 각각 10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에서 “본 교회”의 정확한 의미(해석)는 무엇인지요?

질의4) 여수노회 임원선거조례에서 장로 부노회장 자격은 “본 교회 시무장로로 10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에서, 본 교회 시무장로 10년 이상 된 자는 연속적인 기한을 말한 것인지? 아니면 시무기간 모두를 합하여 말한 것인지?

질의5) 여수노회 장로 부노회장에 출마한 박영호 장로는 2010년 4월 4일 여수영락교회에서 자의사임서를 제출하였고, 2010년 4월 11일 참석 당회원 만장일치로 사임처리가 되었는데, 기쁨있는교회를 세워, 2010년 11월 17일 장로신임으로 기쁨있는교회에서 장로가 되었다면, 박영호 장로의 “본 교회”는 어디를 말하는지요? 여수영락교회? 또는 기쁨있는교회?

질의6) 선거조례에 있는 법적인 자격기준을 노회 임원회가 법을 무시하고, 노회의 결의로서 현재 후보자 자격이 없는 후보에게 자격을 노회결의로 부여 할 수 있는지요?

*증거 8(여수노회 임원 및 총회총대 선거조례)

질의7) 선관위원장이 노회석상에서 장로 부노회장 후보로 등록한 박영호 장로는 후보자 자격이 없기에 이미 서류를 반려했지만, 임원회는 상임부장, 위원장, 시찰장 회의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자격을 임의 결의로 부여하고, 이에 임원선거일에 선관위원장은 장로 부노회장 선거는 불법임으로 선거를 치룰 수 없음을 선언하자, 노회장이 일방적으로 선관위 서기(김봉채 장로-당시 여수노회 회계)에게 선거를 일임하고,

투표용지도 미리 임원회에서 제작한 것으로 선거를 진행했다면, 금번 선거는 유효한 것인지? 무효한 것인지요? (불법한 결의로 진행된 선거와 미리 치밀하게 준비한 투표용지가 증거)

13. 부노회장 자격과 교회분립 및 합병 절차

여수노회장 정 훈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47-12호 / 여수평강교회 오현석 목사의 헌법 질의 해석 요청(2019.12.5.)" 건

해석 : 제103회기 헌법해석 사례 94번으로 갈음하다.

〈제103회기 헌법해석 사례 94번〉

여수광림교회 배용주 목사가 제출한 "광림 제1호 / 헌법질의 건(2019.7.25.)" 건과 여수노회장 김인호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46-51호 / 헌법질의 건에 대한 건의 및 질문(2019.8.22.)" 건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11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5조에 근거 지 교회를 분립 또는 합병하고자 하면 제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회장과 분립 및 합병될 교인들이 서명 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노회가 허락하면 헌법시행규정 제6조에 근거 위원을 파송하여 분립 또는 합병에 필요한 제반재산 및 행정처리 한 후 노회에 보고하고 지 교회 명부에 등재한다. 여수노회에서 행한 분립은 해당 교회를 준 분립이라는 용어 사용 및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이미 노회가 10년 전 결정한 사항으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 교회 분립으로 봄이 적절하고 따라서 그동안 이루어진 모든 당회와 노회의 행정절차 및 총회헌법에 의한 처리는 적법하다.

질의2~5) 교단 헌법에 의한 교회 분립에 절차적 미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0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해당교회에서 노회 임원을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분립된 교회 시무장로로 본다. 분립 시 항존직 직분(장로, 집사, 권사 등)은 그대로 계승되나(제99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95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보면 ① A교회에서 사임한 장로 8인에 대하여 B교회에 장로로 계승되거나 복직절차(헌법 정치 제47조 제1항 자의 사임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를 거친 것이 아닌 이명 장로에 준하는(헌법시행규정 제28조 제8항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당회의 장로선택 청원과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신임하며 노회 고시부의 면접 후 취임할 수 있고) "노회 가입 허락 받은 후 공동의회에서 시무 신임투표를 거쳐 시무토록 허락한 사실"과 ② A교회가 사임 처리된 장로들의 복직을 거부한 사실 ③ 제94회기 헌법위원회에서는 당시 여수노회 관련 해석(52번)으로 "최종적으로 헌법 제2편 정치 제68조(당회의 직무)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12조(이명과 직원)에 의거 사임한 측에서는 당회에 자필 서명한 이명증서로 이명을 요구하기로 하고 당회장은 요구가 있을 시 그대로 발급하기로 결의" 한 사실 등을 볼 때 A교회로부터 장로 시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B교회로부터 장로 시무기간을 기산함이 적절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준 분립'이라 명칭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또는 분

립교회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2) "준 분립" 된 교회의 장로가 노회에 장로 선거청원, 노회 고시부의 면접도 하지 않고 그 교회의 시무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질의3) 이전 "A교회"에서 자의 사임한 자들이 "B교회"를 개척 후 공동의회의 3분의 2의 취임투표와 서약 절차도 없이 시무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질의4) 질의3,4에 근거 당회의 조직 요건 불비 상태인 교회가 위임목사 청빙을 결의할 수 있습니까? 질의5) A교회에서 시무 사임한 장로가 B교회의 장로로 시무기간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 질의1) 본 노회에서는 B교회 장로 한분의 부노회장 자격에 대하여 분립에 준한(재산만 나누지 않고 분립하는 교회) 교회이므로 한 교회 시무 경력(노회장을 자동 승계 하는 부노회장 : 부노회장 입후보자격은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시무한 자)을 A교회 장로시무 연한과 B교회 장로시무 연한을 합산해서 부노회장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선거를 치루었는데 본 노회가 부노회장 후보 자격을 인정하는 행정행위가 적법한지 현명한 해석을 바람.

14. 개인부동산 기증 절차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3462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19.9.3.)" 중 부산남노회장 황형찬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78-61호 / 헌법질의(2019.7.26.)" 건

해석 : 질의1-1~3) 헌법시행규정 제34조에 근거 헌법 정치 제93~97조에 의거 총회와 노회와 당회는 상회에 헌납한 재산이나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 외의 자체 재산에 대하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여 전권을 가지며 개별 치리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개인부동산을 교회에 기증하고 이를 유지재단에 증여(기부)할 경우 헌법 정치 제68조 제8항 및 제96조 제2항에 근거 당회(당회가 없는 경우 제직회)의 결의로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교회 재산을 증여(기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경우는 증여(기부)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한 교회, 노회, 단체(이하 '명의신탁자'라 함)가 소유권 및 사용권, 수익권을 갖는다. 그러나 각 재산이 명의신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2-1~6)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어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내용 : 질의1-1) 개인 부동산을 증여(기부)로 유지재단에 가입할 때 본 부동산을 권리 행사할 해당교회의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제직회의록을 증여계약서에 첨부해야 합법적인 증여가 맞는지요?

질의1-2) 만일 질의 1의 증여계약서에 권리주체인 교회 제직회의록이 첨부

되지 않았다면 헌법 제95조 재산의 보존 3.의 의미는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질의1-3) 제95조 재산의 보존 3. 증여(기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지재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여(기부)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것임으로 유지재단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교회, 노회, 단체에서 소유권 및 사용권, 수익권을 갖는다.

질의2-1) 1998년 목사안수 후 3년마다 임시목사 연임 청원을 위한 제직회를 한 번도 거치지 않고 교회제직회원들과 노회를 기만하여 친구목사의 도장을 넘겨받고, 임시목사가 자신의 친 여동생을 제직회 서기로 세워 사문서 위조하여 임시목사 연임청원 건을 정기노회 때 허락을 받았다면 위 임시목사(담임목사)는 무효이며 위법인지요?

질의2-2) 이런 경우 불법 임시목사가 당회장 권이 있습니까?

질의2-3) 이런 자가 당연히 무임목사가 된다면 무임목사가 불법으로 교회 중직자, 즉 장로 피택, 안수집사피택, 권사피택과 장로장립, 안수집사, 권사취임 등 교회 임직식을 거행하였다면 자동 취소가 맞는지요?

질의2-4) 이런 자가 이의제기한 교회제직 당사자들을 본인과 불법으로 장립한 장로들과 당회재판국에서 기소위원 2명 선임 및 기소도 하지 않고, 재판도 열지 않고 사건 당사자가(무임목사) 제직회원들을 출교시킬 수 있는지요? 또한 당회판결문을 제직회원들인 당사자들에게 송달하지 않고 주일예배 광고만으로 출교처분 하였다면 무효가 맞는지요?

질의2-5) 해 당사자들이 억울하여 노회 기소위원회에 고소하고 기소위원회에서 기소하였는데 노회재판국에서는 재판 첨부서류 중 고소자들의 서명날인에 '고발인 서명날인'을 지적함에 따라 기소위원장이 기소장에 '고발'을 '고소'라고 정정하여 재판국에 기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국에서는 첨부서류에 고발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문을 '기소기각'으로 판결하여 고소 자체를 무효 처분했습니다. 재판국에서 이와 같은 착오에 의해 작성된 서류를 근거로 고발로 보고 기소기각 판결하였다면 노회재판은 원인무효임이 맞는지요?

질의2-6)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와 부적법절차로 노회 허락된 임시목사직과 당회장 권은 당연히 무효이며, 그 임시목사가 교회 제직회원들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제직회의 결의도 없이 대리당회장을 세워 임시목사 연임청원을 위한 제직회를 열어 과반수가 넘는 제직회원들이 이탈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임시목사 연임청원을 통과

시킨 후 노회에 보고하여 임시목사 연임청원이 허락되었다면 이 허락은 원인무효가 맞는지요?

15. 개교회 설립과 정관구비 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 강화석 재판장 판사가 제출한 “사실조회서(사건 2019나 41067 횡령금 반환)(2019.12.6.)” 건

해석 : 질의1,2) 개교회 정관을 반드시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개교회에 자율에 의하고 그 비율은 확인할 수 없다.

질의3) 개교회 정관 구비여부에 따라 독자성과 독립성이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질의4) 개신교 개교회 중 어떤 교단에도 속하지 않는 교회 숫자는 확인할 수 없다.

질의5)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헌법 정치 제10조 헌법시행규정 제4조에 근거 교회설립 후 교단 산하의 교회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교단 헌법 입장에서는 교단에 소속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실질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교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질의내용 : 원고(국립중앙의료원교회)는 피고를 상대로 선교비반환 소송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원고 교회가 정관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점, 어떠한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독립된 교회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제1심 판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1) 귀 교단 헌법에서 귀 교단 산하의 개교회에 정관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여부

질의2) 귀 교단 산하의 모든 개교회가 정관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정관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교회가 있다면 그 비율이나 숫자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셀 수 없이 많다면 이러한 취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귀 교단 산하의 개교회가 정관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러한 개교회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부정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질의4) 개신교 개교회 중 어떤 교단에도 속하지 않는 교회의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

질의5) 개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개교회가 교회의 실질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16. 위임목사 위임식 시한 만료 시 절차

경북노회장 하동오 목사가 제출한 “예총 경북노회 제185-49호 / 위임목사청빙에 관한 질의 건(2019.12.18.)”

해석 : 질의) 헌법시행규정 제17조에 위임목사는 위임식을 노회 승인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노회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1년 이내에 위임식을 하지 못하고 노회의 연장 승인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 다시 헌법 정치 제28조에 근거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 경북노회 소속 삼덕교회 천세종 목사 2016.12.08.(목) 위임목사 청빙 청원을 허락을 받았으나 2019년 12월 7일(토)로 위임목사청빙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위임목사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할 경우 공동의회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지 아니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지

17. 장로 공동의회 소집 불가 및 교단 탈퇴

군산노회장 서상옥 목사가 제출한 “81-5 / 헌법해석 질의(2020.1.7.)” 건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90조에 근거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따라서 장로가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

질의2~3) 교단 및 노회를 탈퇴하는 행위는 헌법시행규정 제87조(재판계류와 교단탈퇴)에 근거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회는 소속 교회가 탈퇴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87조에 근거 탈퇴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조치로 치리회에서 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부에는 탈퇴로 인한 제명이라고 쓰며 이 제명의 효과는 재판에서 면직과 출교 책벌을 병과하여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질의4)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장로가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질의2) 그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할 수 있는지?

질의3) 그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교단탈퇴를 이유로 장로들을 면직 출교할 수 있는지?

질의4) 교회가 분쟁 중이고 예배처소를 달리하고 있다. 장로가 1인도 없는 상태에서 목사가 1인 당회를 개최하여 교인을 실종처리하고 제명 처리할 수 있는지?

18. 제직회 소집(코로나19 재난상황)

부산남노회장 권영만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79-133호 / 헌법질의(2020.3.27.)” 건

해석 : 제직회는 헌법 정치 제91조 제3항에 근거 일주일 전에 광고하며, 개회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개회성수는 제직회원 일부라도 출석해서 요건을 갖추고 결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국가적 재난 상황(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심각단계)에 따라 제직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항이므로 노회가 허락하는 방법(예시: 이명 후 허락하기로 하다.) 등을 참고하여 ‘노회 종료 후 2개월 이내 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락’ 하는 것에 대하여 각 노회가 금회에 한하여 정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 본 교단에 소속한 대부분의 노회가 춘계 정기노회를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부득불 연기 또는 간소화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 교회에서는 담임목사 연임청원 건과 부목사 청빙청원 건에 대하여 청원서류는 정기노회를 앞두고 시찰 경유하여 제출하였으나,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영상예배로 대체되어 제직회소집을 못함으로 제직회 서류가 미비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헌법 정치 제28조 제3항 1호에 의거 기한 내에 연임청원과 제28조 제4항의 부목사 안수 후 청빙청원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적법한 것인지요?

19.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및 임시당회장 권한

경기노회장 정병록 목사가 제출한 “경기노회 제71-064호 / 헌법 질의 건(2020.3.24.)”

해석 : 질의1,2,3) 교단 및 노회를 탈퇴하는 행위는 헌법시행규정 제87조(재판계류와 교단탈퇴)에 근거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회는 소속 교회가 탈퇴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87조에 근거 탈퇴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조치로 치리회에서 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부에는 탈퇴로 인한 제명이라고 쓰며 이 제명의 효과는 재판에서 면직과 출교책벌을 병과하여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질의4,5) 헌법시행규정 제30조에 근거 임시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8조의 권한을 행사하며 당회 성수에 포함되고 결의권이 있다. 그러나 총회 헌법은 교단 탈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임시당회장에게 교단 탈퇴에 대한 결의권, 사회권은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담임목사(당회장)가 없는 상태에서 임시당회장의 사회로 교단탈퇴의 결의가 가능한가?

질의2)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할 때 전교인의 수가 15명이면 개회 정족수는 몇 명인가?

질의3) 공동회의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할 때 의결 정족수는 무엇인가?(재석의 과반수 혹은 2/3, 전회원의 과반 혹은 2/3)

질의4) 임시당회장에게 결의권이 있는가?

질의5) 위임장 효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 회의개회 정족수

2) 의결 시 정족수에서 투표권행사가 가능한가?
(안건에 대한 결의권에 대한 위임장을 받았을 시)

20.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 처리

서울북노회 팔호교회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헌법유권해석 질의의 건(2019.8.7.)”

해석 : 제104회 총회에서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이 처리되어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내용 : 질의1) 행정소송에서 노회장 자격이 없는 자가 노회장을 자처하면서 원고에서 피고로 경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총회재판국이 신임 서울동남노회장으로 피고를 경정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피고경정 통보나 피고인 진술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판을 진행하여 내린 판결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21.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 처리

서울북노회 팔호교회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헌법유권해석 질의(2020.1.7.)” 건

해석 : 제104회 총회에서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이 처리되어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나 총회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결의로서 총대권을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제103회 총회가 결의한 안건을 재판(행정소송)없이 제104회 총회가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기소위원회가 없는 재판은 공소유지가 불가함으로 재판을 진행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국이 고발인을 원고로 하여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총회와 아무 관련이 없는 목사(은퇴자 포함) 재판관할권은 총회에 있는지 노회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총회연금 계속납입 영수증

총회장이 송부한 “사무국-380 / 서류 이첩(2020.2.11.)” -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제종실 목사가 제출한 “연금2020-0107 /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 제4항 시행요청(2020.1.21.)” 건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 제4항은 강제규정이지만 헌법 정치 제28조 제3항과 헌법 정치 제29조에 근거 보완이 필요하며, 보완 시까지 권고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협조공문은 총회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다. (제103회기 헌법해석사례 18번 참조)

질의내용 : 1) 제103회기 총회에서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 제4항 '헌법 정치 제28조에 의거 목사(위임, 담임, 부목사, 전도, 기관)청빙과 연임청원 시에 총회연금 계속납입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2018.9.13.]의 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2) 그러나 총회에서는 '총회 사무국-3512(2018.12.11.) 제목: 헌법해석 통보'의 내용으로 재단과 각 노회에 위 규정이 보완이 필요하며 보완 시까지 권고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일부 노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규정 적용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연금재단 이사회, 총회 규칙부, 연금가입자회가 논의하여 계속납입증명서 발급 기준을 기존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보완하여 변경하기로 합의 하였고, 변경된 규정은 제104회 총회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4) 따라서 위 규정 적용이 보류된 주체가 해소되었으므로 총회에서 각 노회에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 제4항'의 규정을 시행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은퇴자의 유관기관 재직 적법

경북노회장 하동오 목사가 제출한 "경북노회 제185-64호 / 노회 산하 및 유관기관 관련 질의 건(2020.2.12.)"

해석 : 질의1,2) 헌법시행규정 제15조 제3항에 근거 은퇴자는 은퇴와 함께 총대, 실행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산하기관의 장,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모든 공직이 종결된다. 유관기관은 헌법시행규정 제37조 제2항에 근거 독립된 법인(기관)이지만 공익적 이익을 위해 총회나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한 부분의 감사권, 감독권, 승인권을 갖는 기관이다. 따라서 노회, 총회 파송이사를 제외하고 이사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이사로 재직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지교회 장로가 65세에 은퇴하고 노회 총대가 아닌 사람이 노회 산하 유관기관 이사로 재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2) 노회 규례에 '노회 산하 및 유관기관 이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유지이사라는 직함으로 그 이상을 이사로 재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24. 피고인의 무죄 추정과 교인증명서 발급

서울관악노회장 이경희 장로가 제출한 “관악 제47-83호 / 1심 재판에서 출교된 자의 교인의 자격에 대한 질의(2020.2.18.)” 건

해석 : 질의1,2) 헌법 권징 제71조에 근거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교인증명서 발부를 요구할 때 교인증명서를 발부해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1심 재판에서 출교 처분되어 2심에 항소 중인 자가 교인 증명서를 발부를 요구할 때 교인증명서 발부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의2) 1심 재판에서 출교 처분되어 2심에 항소 중인 자가 교인의 의무와 권리(자격)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25. 재심청구와 임시당회장 파송

서울강남노회장 오경환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65-247호 / 헌법 질의의 건(2020.3.2.)”

해석 : 질의1) 헌법 권징 제3조 제8항 ‘재판국에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재판국이 한다.

질의2~5)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3항에 근거 ‘헌법 권징 제123조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재심 재판국은 재심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원심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따라서 당회장은 결원된 상태이며, 임시당회장 파송에 대한 사항은 헌법 정치 제67조 제2항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에 근거 노회가 해당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 여부에 대한 절차적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노회가 파송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서울강남노회가 2019.5.14. 선고된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관련 재재심 사건의 장로증원무효판결을 무시하고 그 직후인 같은 해 6.7 위 총회판결에 상관없이 이들을 서울교회 장로로 인정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헌법 권징 제3조 제8항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질의2) 헌법 권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총회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 확정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서울강남노회가 2019.12.10. 선고된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한 출교판결의 즉시 확정효력을 무시하고 2020.1.9. 위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재심과 사회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임시

당회장 파송을 거부한 것 역시 권징 제34조 제2항에 위배된 행정행위가 아닌가요?

질의3) 총회재판국이 2019.12.10.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하여 정직 6개월과 출교를 병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서울교회는 이로써 헌법 정치 제67조 제2항에 규정된 당회장 결원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요? (서울강남노회도 첨부#2 공문에서 당회장 결원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더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질의4) 박노철 목사에 대한 출교판결로써 서울교회가 당회장 결원상태에 있으므로 박노철 목사 반대 측 과반수 당회원들이 합의하여 서울강남노회에 서울강남노회 소속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여 줄 것을 청원한 것은 역시 헌법 정치 제67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가 아닌가요?

질의5) 서울강남노회가 총회재판국 판결의 박노철 목사에 대한 출교판결에도 불구하고 재심(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4항에 재심청구만으로써는 책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이 청구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임시당회장 파송을 거부한 것은 헌법 정치 제77조에 규정된 노회의 직무를 명백히 유기하고 동시에 헌법 정치 제67조 제2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와 권징 제3조 제6항 '직무를 유기한 행위' 및 권징 제3조 제8항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26. 교회법 불복과 사회법

여수노회장 정훈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47-31호 / 총회 헌법질의에 대한 해석 요청의 건(2020.3.4.)"

해석 : 교회법에 불복하고 사회법으로 가는 자를 면직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시행규정 제74조 제3항에 근거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 또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최종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

질의내용 : 질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2회 총회 회의록 37페이지 정치부 보고 2번, 자)에 「교회법에 불복하고 사회법으로 가는 자는 면직한다.」는 법에 적용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7. 목사 임직식 장소

서울북노회장 한봉희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73-52호 / 임직식에 대한 질의의 건(2020.3.10.)”

해석 : 헌법 정치 제32조에 근거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경우에 노회 석상에서 임직한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 노회의 결의로 다른 장소에서도 목사 임직식을 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 헌법 정치 제32조, 제33조의 목사의 임직에 대한 규정에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는 경우에 노회 석상에서 임직한다.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의 임직식은 노회의 위임을 받아 노회임원회가 주관할 수 있다’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 산하 노회들 가운데, 효율적인 정기노회의 운영을 위하여 목사 임직식을 군목과 선교목사의 경우처럼 노회의 위임을 받아 노회 후에 별도의 일정을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헌법 규정에는 ‘노회 석상에서 임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효율적인 노회의 운영을 위하여 목사 임직식을 노회의 위임을 받아 별도의 일정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28. 총회재판국의 기소여부 판단과 추가고소 사실 및 부본 송부 절차

총회장이 송부한 “사무국-771 / 헌법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0.3.16.)” - 서울강남노회장 오경환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65-135호 / 헌법 질의의 건(2019.12.2.)”

해석 : 질의1) 총회 헌법 권징 제65조 제1항에 의거, 항고서 또는 재항고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은 그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그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기소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시행규정 제67조 제6항에 의거, 노회 기소위원회 또는 당회 기소위원회가 재차 기소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노회 기소위원회 또는 당회 기소위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재판하여 처리한다.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67조 제6항에 의하여 재판국이 직접 재판하는 것은, 재판국의 기소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소위원회가 재차 불기소처분을 하는 극히 제한적이고 특수한 경우에 재판국이 직접 재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이는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이 제도가 기소와 재판을 나누어 규정하는 교단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재판관할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질의2-1) 총회 헌법 권징 제64조 제4항에 의거, 노회 기소위원회가 불기소결정을

하지도 아니하고, 노회 기소위원회가 불기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닌 상태에서, 고소인들이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종전 고소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추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종전 고소사실과는 별도로 헌법 권징 제64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헌법 권징 제64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추가고소사실에 대해여는 총회 재판국은 재항고 기각 결정을 하거나, 기소명령을 하거나, 직접 재판할 수 없다.

질의2-2) 총회 헌법 권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종전 고소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추가 고소사실에 대하여 고소인들이 노회 기소위원회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직접 총회 재판국에 심판을 구할 수는 없다.

질의2-3) 총회 헌법 권징 제66조에 의거, 재판국은 기소장 부본을 제1회 재판기일 전 10일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는 피고인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기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해 재판하는 것은 총회 헌법 권징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총회 헌법에 규정된 재판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질의내용 :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771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0.3.16.)"〉 "사무국-366 / 헌법해석 보고(2020.2.10)" 중 1번(서울강남노회장 오경환 목사 질의) 해석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상충되고, 해석 문안의 가정법 사용은 부적합하므로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재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무국-366 / 헌법해석 보고(2020.2.10.)"

〈서울강남노회장 오경환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65-135호 / 헌법 질의의 건(2019.12.2.)"〉

질의1) 헌법 권징 제66조 제3항 및 헌법 권징 제7조 규정에 의할 때 총회재판국은 재항고 사건과 관련하여 기각 또는 기소명령을 할 수 있을 뿐인바, 총회재판국이 재항고 사건에서 재판관할 노회재판국의 판결 없이 피의자에 대한 재판을 하여 면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2) 총회 재판국의 기소명령 이후 관할 기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총회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재재항고를 통하여 총회재판국에서 목사에 관한 1심 재판을 하는 경우 기소결정과 재판권한이 모두 총회재판국에게 귀속되어, 교단 헌법 제4장 제1심 소송절차에서 제2절 기소와 제3절 재판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교단 헌법

에 위반되고, 노회재판국이 가지는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관할을 침해하고, 피의자인 목사에게 노회재판국과 총회재판국에서 2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총회 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질의2-1) 교단 헌법 제53조 고소 및 고발의 형식의 제1항은 “고소 및 고발을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소속치리회장에게 서면으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항고 및 재항고 제4항은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간주로 인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총회재판국에 재항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1항 내지 전3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소인들이 서울강남노회에 2017.4.21. 고소장(통장비밀번호 변경행위)을 제출하였다가, 서울강남노회에 기소위원장이 경유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2018.3.8. 재항고장의 서울강남노회 경유에 관한 건이라는 부전지를 붙여 총회재판국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여 이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에서 기소명령이 있었는데, 고소인들은 2018.3.23. 소속치리회장인 서울강남노회가 아닌 총회재판국에 추가 고소장(용역동원과 불법장로임직)을 접수하였는 바,

서울강남노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총회재판국에 제출한 2018.3.23. 추가고소장(용역동원과 불법 장로임직)은 교단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소의 형식 및 재항고절차에 위반되는 바,

총회재판국의 재항고 결정에 따른 1,2차 기소명령에 포함되지 아니한 고소인들의 2018.3.23. 추가고소장의 고소사항에 관하여 서울강남노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총회재판국에서 재항고결정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2-2) 총회 헌법 제65조 제4항은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간주로 인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1항 내지 전3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간주로 인한 불복절차로서 총회재판국에 재항고를 하여 1차로 기소명령이 결정된 사항 이외의 추가고소사실에 대하여 노회 관할 재판국에 기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총회재판국에 심판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총회재판국에서 위와 같은 추가고소사실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3) 교단 헌법 제67조 기소장부본의 송달은 “재판국은 기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소장의 부본을 제1회 재판기일 전 10일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소장 부본을 송달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의자에 대한 재판은 교단헌법의 재판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이 아닌지요?

29. 부목사 연임청원 1회에 한하여 청원

진주남노회장 류재돈 장로가 제출한 “진주남 제126-22호 / 헌법시행규정 제18조 2항과 관련된 부목사 연임 청원에 관한 해석 요청(2020.3.17.)” 건

해석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18조 제1항에 근거 위임목사가 공석일 경우 임시당회장은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있으나 신규 청원은 하지 못한다. 여기서 신규의 의미는 임시당회장 노회 파송일 또는 담임목사로 노회의 허락을 받은 날 이후 부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

질의2) 2012.9.20.일 개정 삭제되기 전 헌법시행규정 제18조 제1항의 단서조항 ‘임시목사가 부임한 후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 청원할 수 있다.’의 사유가 담임목사 부임 후 이전 위임목사 때부터 시무하던 부목사들에게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담임목사 임기 3년 중 2년간 무임목사가 될 수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삭제한 것이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18조 제3항 ‘정상적인 당회가 개회되지 못하면 부목사의 임기는 자동 연장’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회 1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 개정취지에 맞지 않다. 그러나 위임목사 때부터 시무하던 부목사의 연임청원이 무한정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또한 헌법 제27조 제3항 취지에 맞지 않기에,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로 교회가 연임청원하고 담임목사 부임 후 첫 임기동안(3년 동안) 부목사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헌법시행규정 제18조는 헌법 제27조 제3항과 충돌한다기보다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보완하는 규정으로 미비한 사항 등은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함이 필요하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정치 제27조 제3항에 부목사의 임기는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헌법시행규정 제18조 제1항에 신규 청원은 어느 시점부터이며, 부목사가 1년 시무하고 다시 1년을 연임 청원하는 그 시점을 신규라고 하는지? 또는 부목사 청원으로 신규 부임했을 시점을 신규라 하는지 해석을 바랍니다.

질의2) 위임(담임)목사 공석 전부터 이미 시무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은 담임목사가 몇 회까지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있는지? 1회가 아닌

몇 회라도 담임목사가 위임목사 시무 전부터 시무하던 부목사의 연임 청원을 할 수 있다면 헌법 정치 제27조 제3항과 상충된다고 보는데 어떤 법이 우선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0. 부목사 연임청원 1회에 한하여 청원

대구동노회장 김영식 목사가 제출한 “대동노 제185-65호 / 부목사 연임청빙 질의 건(2020.3.17.)”

해석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18조 제2항 담임목사는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없으나 위임(담임)목사 공석 전부터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 시무 중인 전도사의 목사안수 및 청빙은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목사 공석 전부터 있던 부목사 연임청원은 할 수 있다.

질의2,3) 2012.9.20.일 개정 삭제되기 전 헌법시행규정 제18조 제1항의 단서조항 ‘임시목사가 부임한 후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 청원할 수 있다.’의 사유가 담임목사 부임 후 이전 위임목사 때부터 시무하던 부목사들에게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담임목사 임기 3년 중 2년간 무임목사가 될 수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삭제한 것이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18조 제3항 ‘정상적인 당회가 개회되지 못하면 부목사의 임기는 자동 연장’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회 1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 개정취지에 맞지 않다.

그러나 위임목사 때부터 시무하던 부목사의 연임청원이 무한정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또한 헌법 제27조 제3항 취지에 맞지 않기에,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로 교회가 연임청원하고 담임목사 부임 후 첫 임기동안(3년 동안) 부목사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헌법시행규정 제18조는 헌법 제27조 제3항과 충돌한다기보다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보완하는 규정으로 미비한 사항 등은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함이 필요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위임 목사 사임 후 담임목사가 청빙되었을 경우 이미 위임목사 공석 전부터 시무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2) 연임 청원이 될 경우 몇 회까지 가능한지?

질의3) 위임목사 때부터 시무하던 부목사의 연임청원이 총회 헌법으로 불가능하다면 시무교회에서 부목사 목사의 칭호와 부목사의 구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31. 임시당회장 당회성수 포함

전주노회장 이준철 장로가 제출한 “전주노회 제45-45호 / 임시당회장의 결의권과 권한에 대한 질의(2020.3.18.)” 건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30조에 근거 임시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8조의 권한을 행사하고 당회 성수에 포함된다.

질의내용 : 질의) 교회에서 담임목사(위임목사)가 은퇴하고 당회의 결의로 임시당회장 파송 요청이 있어서, 임원회와 인사부가 논의하여 임시당회장을 임명하여 파송했을 때, 임시당회장은 당회에서 성수에 포함되는지와 임시당회장의 결의권과 권한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32. 무임목사의 정당한 이유 판단

대구서남노회장 김해봉 목사가 제출한 “대서남노 제185-26호 / 헌법 제5장 제27조 10항의 무임목사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 요청의 건(2020.4.1.)”

해석 : 질의1,2) 헌법 정치 제27조 제10항에 근거 무임목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 된다’는 규정에서 정당한 이유에 대한 사항은 노회가 판단할 사항이며, 이에 대하여 분쟁이 있다고 하면 당사자 간 쟁송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 헌법 정치 제5장 제27조 제10항에 ‘무임목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무임목사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위의 경우 A목사는 헌법 제5장 제27조 제10항의 무임목사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이 되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어도 자동해직이 되지 않는지요?

질의2) 아니면 A목사는 무임목사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아 무임목사 3년이 경과하면 자동해직이 되는지요?

33. 대리당회장의 권한과 교회 분쟁시 예결산 집행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영훈 판사가 제출한 “사실조회촉탁서(사건 2019고단4458 업무상횡령)(2020.4.10.)” 건

해석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질의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30조 제2항에 근거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거나 혹은 이 규정 제16조의 8의 4항의 사유로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청한 경우, 대리당회

장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제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질의1-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에 근거 대리당회장은 현 당회장이 존재하고 결원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헌법시행규정 제30조 제2항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질의1-나)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당회장을 대행하는 상황이기에 대한예수교장로교회 헌법시행규정 제30조 제3항에 근거 대리당회장은 목사로서 사회권은 있으나 결의권(투표권)은 없다.

질의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91조 제5항 2호에 근거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결의권이 제직회에 있으므로 제직회에서 예산안을 결의하고 최종적으로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이고 부분적으로 예산 집행을 당회에 위임할 수 있고 집행 후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질의2-가), 질의2-나), 질의3) 교회의 예산과 결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91조 제5항 2호에 근거 제직회 결의와 제90조 제5항 2호에 근거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확정된 예산을 제직회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헌법 정치 제68조 제5항에 근거 당회는 재정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90조 제4항에 근거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분쟁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제직회의 결의로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질의4)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질의가 있었으나 헌법위원회에 “당회, 제직회 결의만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이 규정상 허용되는지”에 대한 질의는 개인적으로 유선상 질의를 하였을 수 있으나 확인할 수 없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공문으로 정식 질의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고범석, 고윤 법률사무소〉

질의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질의2)의 답변과 동일하다.

질의나) 교회의 예산과 결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91조 제5항 2호에 근거 제직회 결의와 제90조 제5항 2호에 근거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확정된 예산을 제직회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헌법 정치 제68조 제5항에 근거 당회는 재정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90조 제4항에 근거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분쟁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제직회의 결의로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따라서 희성교회 내규에 따라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집행 후 보고하였으므로 총회헌법과 희성교회 내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참고) [국가재정법 제55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①정부는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헌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1) 대리당회장에게 교회재산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인정되는지
   1-가) 대리당회장이 정식당회장과 권한과 임무에 있어서 다른 점은 무엇인지
   1-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상 대리당회장은 목사로서 사회권은 있으나 결의권(투표권)은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입법취지는 무엇인지
2) 공동의회는 개최하지 아니하고, 제직회의 권한은 당회로 위임시켜 당회에서 예산을 결의하고 재정부에서 이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교단헌법상 가능한지
   2-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건 하에 가능한지
   2-나)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교회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수년간 공동의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예산의 결의 및 집행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4) 희성교회가 공동의회가 열리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회, 제직회 결의만으로 예산·집행하는 것이 규정상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총회에 문의한 적이 있는지 및 문의했다면 총회가 답변한 내용

〈고범석, 고윤 법률사무소〉

가) 희성교회에서는 2017년도 제직회의를 열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결의를 하고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의 집행은 당회 재정부에 위임하여 집행 후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회의 내부적인 다툼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회계절차를 거치기 어렵고, 공동의회를 열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의 예산안에 대하여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고, 제직회가 그 예산안을 결의하여 당회나 재정부를 통하여 교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나) 한편 희성교회의 내규에는 제32조 제4항에서 “예비비는 당회의 결의로 지출하고 제직회에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위 제직회의 결의를 거친 2017년도 예산에는 예비비 항목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희성교회의 당회에서는 2017.9.17. 예비비 항목에 있는 금원을 가지고 황태주 대리당회장에 대한 위로금,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황태주 대리당회장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2017년 예산이 공동의회를 거칠 수 없는 상황에서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를 거친 것인데, 위 예산의 항목 중 예비비의 사용에 대하여 희성교회의 내규에 따라 예비비를 당회의 결의로 비용집행을 한 것이 당시 희성교회에서 공동의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 대한예수교총회 헌법 및 희성교회의 내규 등에 비추어 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34. 임원선출 규정의 기본권 제한 여부

대전서노회장 김성기 목사가 제출한 “대서노 제135-60호 / 임원선출 규정 질의 건(2020.4.17.)”

해석 : 질의1,2) 헌법 정치 제75조에 근거 노회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

노회 임원선출 시 ‘임원을 거친 회원을 부노회장 후보로 제한 한다.’ 라는 자격요건을 노회 규칙으로 두었다고 해서 기본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 노회 규칙은 일반적인 노회 결의가 아닌 노회 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개정해야 한다.

※ 참고) [총회임원 자격요건〈목사부총회장 후보는 목사임직 20년 이상에 해 지역 각 노회에서 교회, 노회, 총회, 기관 중에 10년 이상 근속하고, 노회장을 역임하고 총회 총대경력 7회(7년) 이상을 봉사한 총대, 장로부총회장 후보는 해 지역 각 노회의 시무교회에 임직 7년, 근속 7년 이상을 봉사한 장로 총대 중에 노회장, 총회 임원, 각 부·위원회 임원, 위원(이사) 총회 총대 7년 이상,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등의 경력 중 하나를 역임한

총대)을 두고 있고, 국가 공직선거법에도 자격 요건을 두고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정치 제74조에 피선거권의 기본권이 있으나 헌법 정치 제75조의 노회임원 선출은 노회규칙에 의해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임원을 거친 회원을 부노회장 후보로 제한 한다면 헌법 정치 제75조의 노회 임원 선출 조항은 과도하게 넘어 헌법 정치 제74조의 기본권을 침범할 가능이 있는지?

질의2) 헌법 정치 제74조 제1항 “재판(책벌)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헌법 정치 제75조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둔다.”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회임원을 역임한 회원을 부노회장 후보로 제한하는 규정 여부는 헌법 정치 제75조에 의해 본 회에서 결정할 사항인지?

35. 무임목사의 기산일 및 조기은퇴 연령

부산남노회장 권영만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80-4호 / 헌법질의(2020.4.23.)” 건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27조 제10항에 근거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무임목사 3년 기산일은 헌법 정치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정기노회 결의 일로 보아야 한다.

질의2) 헌법 정치 제27조 제11항에 근거 은퇴목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다. 정년이 되지 않아도 조기 은퇴하고자 하면 노회가 허락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기은퇴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이 없고 노회가 허락하면 조기은퇴 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정치 제27조 제2항에 담임목사 연임허락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허락 기준일은 실제 시무일(거의 대부분 정기노회 이전에 부임해서 시무)로 환산하면 3년이 초과되지만 정기노회라고 하는 헌법해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임목사도 시무처가 없이 3년이면 자동 면직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무임목사 3년 기준일도 시무사임일이 모두 다 다르지만 일괄적으로 담임목사 연임과 같이 정기노회(시무사임 허락일 기준)로 봐야 하는지요? 아니면 시무사임일로 보아야 하는지요?

질의2) 헌법 정치 제27조 제11항에 은퇴목사규정이 있지만, 현재 조기은퇴자에 대한 시행규정이 없으므로 조기은퇴 허락연령 기준이 없습니다. 시무목사의 조기은퇴를 허락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은 몇 세 인가요?

조기은퇴 청원자 중 65세 전후는 거의 허락하고 있지만, 50대 목사도 조기은퇴청원이 가능한 것인지요?

36. 타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과 재항고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151-60호 / 총회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재판관할) 요청(2020.4.23.)” 건

해석 : 질의1,2,3) 헌법 권징 제7조에 근거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은 소속 노회 재판국에 속한다. 또한 헌법 권징 제64조 제4항에 근거 소속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타 노회 기소위원회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사건발생 노회가 아니라 헌법 권징 제64조 제4항에 근거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해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현재 제주노회 회원이 아닌 목사의 항고장을 제주노회 재판국에서 접수와 재판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제주노회 회원으로 시무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타 노회로 이명 후 사건이 발생한 교회 기소위원회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불기소처분 후 제주노회로 항고장을 접수한 경우에 제주노회 재판국에서 접수와 재판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3) 1), 2)의 답변이 불가한 경우 어느 재판국으로 항고장을 접수해야 되는지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피택장로 교육기간(코로나19 재난상황)

서울북노회장 한봉희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73-64호 / 장로 임직에 대한 질의의 건(2020.4.24.)”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42조 제1항에 근거 장로로 피택 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적 재난 상황(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심각단계)에 따라 정기노회가 연기되었다면 헌법 정치에 근거한 교육일정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므로 금회에 한하여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은 받게 하되 4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노회의 판단에 따라 노회고시를 치룰 수 있으나 반드시 4개월 교육 이수 후 임직해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산하에 속한 대부분의 노회가 춘계 정기노회를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부득불 연기하게 되었고, 본 노회도 6월 9일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로의 선택 허락 청원은 연기된 춘계

정기노회에서 허락하면, 지교회에서 피택하고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은 후' 규정을 따르면 대부분의 노회가 정기노회 1개월 전에 고시를 치르게 되어 있어서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 재난에 해당하는 금 번에 한하여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은 받게 하고, 4개월이 경과되지 않아도 노회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하고, 당회의 교육은 계속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38. 다른교단의 목사 청빙(본 교단 신대원 졸업)

경남노회장 이용우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020-71호 / 헌법 질의 건(2020.4.27.)"

해석 : 질의1,2) 헌법시행규정 제23조에 근거 다른 교단의 목사청빙의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 중에 헌법 2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일 경우 비록 목사 안수를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단에서 받았다고 해도 청목의 취지가 우리 교단의 헌법과 교리를 이해하도록 하는 취지인 점을 감안할 때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제7항을 준용하여 서약 후 이명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 교단 헌법과목을 이수했을지라도 그간 헌법 개정 등을 감안하여 청목과정 헌법 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3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100번 참고)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정치 제23조 4항 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본 교단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 2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라고 있습니다. 본 목사의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상황에서 다시 청목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는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또한 목사고시 및 안수(서약) 절차도 다시 해야 하는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다른교단의 목사 청빙

목포노회장 박석우 목사가 제출한 "제121-268호 / 해외한인장로회(KPCA) 소속 목사 청빙에 대한 질의 건(2020.4.22.)" 은 신학교육부장 곽재욱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423 / 헌법 질의 관련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2020.5.18.)" 건

해석 : 질의1,2)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제4항 근거 외국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M. Div.)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 2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제5항 1호에 근거 동법 제4항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도 제4항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청목과정으로 받아줄 수 있고,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제5항 3호 해외한인장로회에서 신학을 이수한 경우는 미국 나성(LA) 혹은 뉴욕(NY)에 소재한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M. Div) 본교에서 2년 이상 신학석사(M. Div)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청목과정으로 받아줄 수 있으나 질의 대상자의 학교는 총회 신학교육부 확인결과 〈교육자원부-423 / 헌법 질의 관련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2020.5.18.)〉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제4항의 외국교단 직영신학대학원이 아니므로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고 청목과정을 받아줄 수 없다.

질의내용 : 정경화 목사, 해외 한인장로회(KPCA) 서남노회 소속, The Reformed University of USA 졸업(M.Div), 순복음세계총회(Assembly of Full Gospel Universal)에서 목사 안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교단 교육과정(청목) 이수, 해외한인장회 서남노회 노회장 역임한 목사의 청빙 청원을 노회에서 다룰 때 다음 두 가지 질의에 대해 헌법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헌법에 따라 해석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질의1) 담임목사로 청빙 가능이 합니까?

질의2) 청목대상으로 청빙해야 합니까?

40. 총회 목사임직 예식(안) 시행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152-8호 / 목사 안수 예식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2020.5.12.)” 건

해석 : 질의1,2) 헌법 정치 제33조는 목사의 임직식과 관련하여 ‘노회는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을 주관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가 그 예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무(강제)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102회기 총회에서 ‘총회 목사임직 예식(안)’을 2017년 가을노회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결의를 했을지라도 위 예식(안)은 총회의 권고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목사의 임직식은 노회가 주관하여 거행하면 되고, 예식에 관한 사항도 노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거행하면 된다. 그러나 위 예식(안)은 총회가 교단 전체의 사정을 감안한 총회 결의사

항으로 각 노회에서는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02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27번 참조)

질의내용 : 질의1) 본 노회에서 따로 결정한 바 없이 노회장이 2부 안수예식을 집례하였습니다. 그것이 적법한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아울러 목사임직예식에 강제규정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목사안수예식 전체가 단순히 권고안이라면 예컨대 장로노회장이 노회에서 결의하면 노회장의 자격으로 목사 안수를 할 수 있는 지 명확하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재판국원 전원 교체 적법 여부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152-9호 / 노회 결의와 행정사항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2020.5.12.)” 건

해석 : 질의1~5) 헌법 권징 제11조의1, 제16조, 제17조에 근거 노회 재판국원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1을 개선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불구하고 재판국원의 전원 교체는 노회의 결의라 할지라도 적법하지 않다.
(제103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47번, 48번, 56번 참조)

질의내용 : 제주노회는 2020년 4월 28일 제152회 봄 노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습니다.

“노회 재판국 판결이 총회 재판국에서 파기 자판된 경우 재판에 관여한 해당 전 재판국원들과 전 기소위원들을 6년간 법리부서(재판국, 기소위원회, 규칙부)에 공천하지 않는다.”

상기 규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규칙 개정하여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의 후 임기 중인 재판국장직과 재판국원으로서 본인의 사임서 제출 없이, 별도의 노회 결의 없이, 해임 절차 없이 타인으로 보선 공천을 하였습니다.

질의1) 제주노회의 결의가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80조(자유심증주의) 제54조의3[고소(고발) 및 기소의뢰의 제한] 제6조(책벌의 원칙) 제4조(재판의 원칙)에 의거하여 헌법에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

질의2) 제주노회의 규정을 근거로 임기 중인(재판국1년조) 재판국장직을 본인의 사임서 제출 없이, 별도의 노회 결의 없이 강제 해임 시킨 것이 적법한지 불법인지 여부

질의3) 제주노회의 규정을 근거로 잔여 임기가 6개월 남아 있는 재판국원을 본인의 사임서 제출 없이, 별도의 노회 결의 없이 공천 삭제 후 시행한 보선 공천이 적법한지 불법인지 여부

질의4) 제주노회 규칙 제4조 제1항,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잔여임기가 6개월이 남아 있는 재판국원을 봄 정기노회 기간 중 공천을 삭제하고 타인을 보선 공천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질의5) 질의4)번의 유권해석이 적법한 경우에는 어떤 근거에 의하여 적법한지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교인의 자격과 회원권 여부

총회장이 송부한 “사무국-1447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0.5.22.)” 건-〈서울서노회장 박용경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101-34호 / 헌법 질의 해석 요청의 건(2020.1.8.)”과 서울서노회장 박용경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101-51호 / 헌법질의서 보완 제출의 건(2020.3.23.)”〉

해석 : 질의1-1,2) 헌법 정치 제19조에 근거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헌법시행규정 제14조 제1항에 근거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게시판에만 게시할 경우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헌법시행규정 제30조에 근거 대리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8조 제7항 권징권이 없지만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 행정행위로 대리당회장이 주재한 당회에서 회원권정지결의가 가능하다. 다만 지교회에서 시무하고 은퇴한 은퇴(원로)목사가 실질적으로 교인들에게 책벌보다 더 강한 권리제한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회원권 정지를 결의하는 것은 정서상 바람직하지 않다.

질의1-3,1-5) 헌법시행규정 제12조 제1항 이명 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교인으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해야 교회의 서리집사와 전도사 등의 직원이 되거나 구역장, 교사, 찬양대원, 자치단체 임원 등의 직분을 맡을 수 있다. 이명 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교인으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하고 세례를 받았을 경우 현재 출석교회의 세례교인으로 인정되고 공동의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질의1-4) 헌법 정치 제20조 제1항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6개월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제2항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

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당회 결의로 복권시켜야 한다. 다만 “불법으로 회원권 정지가 되었거나 회원권을 정지시킨 당회 결의”에 대한 사항은 관련자료 없어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2-1) 총회 재판국 판결 중 ‘불법 예배(집회)에 참석 시킨 것은 중죄에 해당여부는 재판결과에 대한 사항이므로 재판국에서 답변할 사항이다.

질의2-2) 기소의 판단은 각 치리회 기소위원회의 판단에 의할 것이며, 재심은 헌법 권징 제123조에 의한 재심사유가 있을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여부는 재판국이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3) 헌법 권징 제90조 제3항에 근거 고소인(고발인)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기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소위원회에 상소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소위원회는 고소인(고발인)을 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제4항에 근거 기소위원회가 고소인(고발인)의 상소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상소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고소인(고발인)이 직접 상소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총회장이 송부한 “사무국-1447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0.5.22.)” 건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재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서노회 희성교회 이화춘 권사 외 112인 명의로 제출한 “탄원서(총회헌법위원회 헌법 해석 관련)”

〈서울서노회장 박용경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101-34호 / 헌법 질의 해석 요청의 건(2019.1.8.)”과 서울서노회장 박용경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101-51호 / 헌법질의서 보완 제출의 건(2020.3.23.)”〉

〈당회질의〉

질의1-1) 헌법시행규정 제14조 제1항은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 당회장이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공시함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30조 제2항은 ‘대리 당회장은 권징권과 서리집사 임명(당회의 결의로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 외의 인사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희성교회에서는 역사 이래 이러한 회원권 정지, 회원권잠정정지, 회원권유보라는 결의를 단 한 번도 당회 또는 제직회의에 의하여 행정범위를 한 적이 전혀 없었는데, 권징권과 인사권이 없는 대리당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 당회에서 교인의 자격정지를 결의하고 행정행위로 선포하여,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킴이 헌법(정신)에 합당한지요?

질의1-2) 새로운 담임목사를 모시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일환으로 담임목사 박태웅 당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 당회에서 2016. 4. 9부터 2017. 5. 7사이에 대리당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 당회에서 당회 결의에 의한 행정행위 즉, 교인의 회원권 정지, 교인의 회원권 잠정정지, 교인의 회원권 유보하는 결의를 취소하는 결의를 2019. 6. 23자 당회에서 결의하고 2019. 6. 30자 주보에 광고(공시)하였습니다. 행정행위로 처분에 해당하는 본 희성교회 교인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당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7. 12. 15자로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첨부 결정문 참조).
해당 교인들의 자격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3) 희성교회 당회는 과거 타 교회에서 전입하여 오는 교인 중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인에 대하여 교인의 신앙에 따라 진술하는 사실(세례교인 여부, 교인의 신급 여부 등)을 그대로 받아들여 교인으로 등록하여 왔습니다. 헌법시행규정 제12조 제1항은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교인으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해야 교회의 서리집사와 전도사 등의 직원이 되거나 구역장, 교사, 찬양대원, 자치단체 임원 등의 직분을 맡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인이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인으로 등록한 후 2년이 경과하였거나, 서리집사, 구역장, 교사, 찬양대원, 자치단체 임원 등의 직분을 맡았었다면 이 교인은 지 교회의 세례교인으로 인정되어 공동의회 회원이 되는지요?

〈교인질의〉

질의1-4) 당회에서(2016년, 2017년) 만장일치로 헌법 제20조, 헌법시행규정 제14조 제2항에 의거 교인 회원권을 정지 결의한 후 교회 주보에 공고한 자를 그 후(2019.6.23.) 총회 헌법 규정에 의한 복권 절차 없이(회원권 정지된 교인의 복권 자격 부합여부 심의) 기 당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취소 결의하고 회원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규정에 적법한지요?

질의1-5) 세례교인(입교인)된 18세 이상 교인은 공동의회의 회원권이 있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와서 본 교회에 등록하여 세례사항(세례증명서)을 확인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회원권을 주는 것이 적법한지요?

〈노회재판국〉

질의2-1) 총회 재판국 판결 중 '불법 예배(집회)에 참석시킨 것은 중죄에 해

당된다.'면 어떤 죄과에 해당되는지요?

질의2-2) 기소 또는 재심청구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질의3) 본 사건에 이해 당사자인 고소인들은 헌법 권징 제90조 제4항에 근거하여 기소위원장이 상고 요청을 받고도 상소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고발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43. 교인의 자격과 회원권 여부

전주노회장 이준철 장로가 제출한 "전주노회 제46-9호 / 유권 해석에 관한 질의(2020.5.25.)" 건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19조에 근거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되며 헌법시행규정 제14조에 근거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게시판에만 게시할 경우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장로가 대상일 경우 해당 장로는 교인으로서 회원권이 정지되었을 경우 당회원권도 정지된다. 이를 복권하기 위해서는 헌법 정치 제20조에 근거 복권절차를 밟아야 한다.(제102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34번 참조)

질의2) 헌법 정치 제19조에 근거 교회 교인으로 회원권이 정지될 경우 당회원권도 정지되며 당회 개회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3) 헌법 정치 제19조에 근거 교회 실종교인이 되었을 경우 장로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고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헌법정치 제20조에 근거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장로 중 6개월 넘게 교인의 의무를 행치 않고 출석하지 않아 물으니, 형편상 교회 출석이 어려워 당회원 명단에서 자신을 빼달라는 의사를 진심 다해 말하였고, 시간도 이미 10개월이나 지났기에 당회에서 그 뜻을 존중하여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거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4조 대로 회원권 정지를 선포하면, 해당 장로는 당회원 자격도 적법(헌법 정치 제20조)하게 복권되기 전까지는 정지되는지요?

질의2) 위의 상황에서 해당 장로가 교인 회원권 정지를 처분 받으면, 그 직후 당회를 열 때 당회 성수 인원인 과반의 숫자에서 해당 장로의 수는 제외가 되는지요?

질의3) 위의 상황에서 1년이 지나 적법한 절차(헌법 정치 제19조, 헌법시행

규정 제14조)로 실종교인으로 처분이 되면 적법(헌법 정치 제20조)하게 복권되기 전까지는 장로명단에서 제외시켜도 되는지요?

44. 교회의 예산과 결산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8단독 이영훈 판사가 제출한 “사실조회서(사건 2019고단4458 업무상횡령)(2020.5.26.)”,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8단독 이영훈 판사가 제출한 “증인소환장(사건 2019고단4458 업무상횡령)(2020.6.4.)” 건

해석 : 질의1,3) 교회의 예산과 결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91조 제5항 2호에 근거 제직회 결의와 제90조 제5항 2호에 근거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확정된 예산을 제직회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귀 지원이 사실조회 한 내용 중 “총회 헌법 정치 제90조 제4항에서 정한 제직회 결의로 전년도에 준해 지출 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한 것이 아니고, 제90조 제4항(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근거 회집된 회원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이에 불구하고 공동의회를 개최하지 못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하면 개 교회에서 제직회 결의로 전년도에 준해 지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에 대한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55조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던 것이다.

통상 예비비는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지출하는 항목으로서 교회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및 결산에 관하여 결의권이 있는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의 결의로 재정부가 집행해야 하나 장기적 내부분쟁으로 공동의회를 하지 못하고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로 지출하였다면 불법지출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러나 개 교회 예비비 집행에 대한 편성의 적절성 및 예산 규모에 대한 사항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으로 헌법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질의2) 총회 헌법에 개 교회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적정 규모 및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에서는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없다.

〈지난번 사실조회 회신 내용〉

교회의 예산과 결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91조 제5항 2호에 근거 제직회 결의와 제90조 제5항 2호에 근거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확정된 예산을 제직회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헌법 정치 제68조 제5항에 근거 당회는

재정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90조 제4항에 근거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분쟁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제직회의 결의로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참고) [국가재정법 제55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① 정부는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헌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 〈사실조회 내용〉

1) 이 사건 예비비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① 희성교회 공동의회는 2013년 또는 2014년경부터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데, 2014년 마지막 승인된 예비비 규모는 약 4,500만 원이고(2014년 예비비가 공동의회에서 승인된 것인지, 공동의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제직회 또는 당회에서만 승인된 것인지는 불분명함), 2016. 12 경 제직회에서 편성한 2017년도 예비비는 4,750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아서는 수년간 약 4,500만 원 내외로 예비비를 편성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2016년도 예비비 결산 집행 금액이 76,351,700원이었던 것으로 보아서는 제직회나 당회에서 편성했던 금액보다 실제 집행된 금액이 많았던 연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② 그런데 2017. 9. 12. 제직회에서 2017년도 예비비를 기존 이월된 2천만 원에 1억 7천만 원을 더 증액하기로 결정하고, 2017. 9. 17. 이 사건에서 문제된 당회에서 예비비 중 1억 6,700만 원을 대리당회장인 피고인의 활동비, 위로금 등으로 지급하는 곁의를 하였음(피고인은, 2015년 대리당회장 부임 후 실비조로 크지 않은 금액을 받았을 뿐 설교비, 거마비, 새벽예배 인도비 등 활동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가 전임 목사 방충근의 출교 문제가 정리되자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함).

③ 희성교회 내규에는 '예비비는 당회결의로 지출하고 제직회에 보고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예비비 지출 목적, 집행방식 등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2) 사실조회 사항

① 위와 같은 경우 귀 총회가 지난 번 사실조회 회신에서 언급한 총회헌법 정치 제90조 제4항에서 정한 '제직회 결의로 전년도에 준해 지출할 수 있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즉 수년간 공동의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고, 2017년 회계연도 중간에 제직회가 예비비를 종전 규모보다

대폭 증액한 뒤 당회가 증액된 예비비 중 상당 금액을 몇 년간 보전해 주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대리당회장 활동비 등 명목으로 지급 결의한 것이 위 총회헌법 조항에서 정한 '전년도에 준해 지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람.

② 공동의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예산편성 및 집행(특히 예비비)이 총회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귀 총회의 담당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람.

③ 변호인이 밝히고 있는 첨부 설명 내용 및 질의 사항도 함께 참조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다만, 첨부 설명 1항 중 예비비 집행 금액이 편성된 금액에 구애받지 않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7. 9. 17. 개최된 희성교회 당회에서, 위 2017년도 1억 9천만 원 예비비에서 피고인에 대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1억 6,7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결의를 한 것이 형법상 업무상횡령이 되는가의 문제가 된다는 점, 2017년도 예비비 결산 내역이 3억 2천여만 원으로 이전 연도들에 비해 크게 늘게 된 것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1억 6,700만 원 활동비 등을 예비비에서 지급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해 이해할 필요가 있음).

45. 노회 회기와 노회장 댓수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2-28호 / '노회 회기와 노회장 댓수'와 관련된 해석 요청(2020.6.2.)" 건

해석 : 헌법위원회 해석 사항이 아니며 노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 본 노회는 사고노회(95~96회기, 노회장 48대)였다가 총회수습전권위원회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노회가 개최된 2018년 봄노회(2018.5.29.)를 제98회 정기노회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노회 기간에도 서울동노회의 역사로 인정하여 노회장 48대와 95~96회기를 포함해서 진행하기로 임원회에서 결의했고, 제98회기 봄노회에서 노회원들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 결의를 토대로 서울동노회는 제50대 노회장이 제100회기 기념행사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에 현행 '노회 회기와 노회장 댓수'를 그대로 이어 진행하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타교단 교회 및 장로 노회가입 절차

경남노회장 이용우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020-101호 / 헌법 질의의 건(2020.6.1.)" 건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4조에 근거 지교회를 가입하고자 하면 헌법시행규정 제89조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그 교회에 입회될 교인들이 서명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록 교회가 독립교단을 탈퇴하여 우리 교단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타 교단 소속 교회의 장로로 우리 교단에 이명 하는 것으로 헌법시행규정 제26조 타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의 경우는 처음 선택할 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안수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타 교단의 교회가 본 교단에 가입할 경우에는 교단 헌법 정치 제40조 및 제41조에 부합한 지를 확인한 후 노회의 교회 가입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질의내용 : A교회 상황 안내 : 본 노회 소속 B교회에서 성도들 다수가 나와 노회 관할 지역 내에 부지를 구입하고 교회 건물을 건축, 당시 교단 소속을 두고 논의하다 독립교단으로 가입, 올해 1월 노회 소속 목사를 청빙, 독립교단 탈퇴 후 본 노회 소속으로 교회 가입 절차 진행, 금 번 봄노회 시 교회 가입 및 장로 조직 3명을 받기로 결의

1) A교회의 성도들의 오랜 생활 동안 통합에서 성장하며 교육 받아왔고, 금번에 다시 신앙의 고향인 본 교단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희망하여 금 번 봄 노회 시 교회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장로 조직 3명을 포함한 성도들로 하여금 본 교단의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 할 것을 서약받기로 하였습니다. (노회 결의사항 및 전례: 교회 가입 시 교회의 조직도 같이 받되, 본 교단의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 (교회 가입 시 성도(항존직 포함)와 교회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인 성도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려됩니다.)
2) 타 교단에서 장로가 이명해 올 경우 노회에서는 헌법에 따라 모든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고, 고시과목(성경, 헌법, 일반상식, 면접)중 성경과 일반상식은 면제 후 고시를 치루고 취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교회의 경우는 장로 3인(항존직 포함)이 시무 중인 교회를 이탈하여 타교회로 이명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단을 탈퇴 후 교회를 가입하는 것이므로 타 교단 이명 장로의 법 조항에 적용하기는 다소 맞지 않는다고 사려 됩니다.
3) 이에 본 노회에서는 정기노회 후 첫 임원회에서 가입 예배 전 장로 3인에 대한 교육시간(헌법, 규칙 등)을 가진 후 가입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질의) 교회 가입과 장로 조직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47. 국가 법원의 확정판결 적용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1877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0.6.19.)” - 평양노회장 안주훈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92-1호 / 해벌 절차 헌법 질의(2020.6.3.)” 건

해석 : 질의1,3) 헌법 권징 제128조 제4항의 적용은 개정헌법 공포일(2019.12.19.)부터

적용되므로 황형택 목사 건은 개정 공포이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 결의무효에 대한 제소기간 등)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 권징 제123조 제6항에 근거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헌법 권징 제137조에 근거한 해벌은 최종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의 결의 내지 승인(폐회 중에는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장이 선포 내지 공지함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벌이란 재판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시벌 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케 한 후 행하는 것으로” 헌법 권징 제137조를 준용하여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직권파기 할 수는 없다. 총회 재판결과에 대하여 관련법과 근거 없이 직권파기 될 경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총회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 단, 총회 화해조정위원장이 헌법 권징 제127조 제2항에 근거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정대리인으로 재심 청구 할 수 있다.

질의2) 총회 재판국의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직권파기 할 수 있는 헌법 규정은 없다.

질의내용 : 〈“사무국-1877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0.6.19.)”〉

“사무국-1720 / 헌법해석 보고(2020.6.11.)” 중 9번(평양노회장 안주훈 목사 질의) 해석은 1) 총회 헌법 권징 제128조 제4항과 권징 제123조 제8항은 모두 2019년 12월 19일 자로 동시에 개정된 조항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심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은 권징 제123조 제8항이 2019년 12월 19일 헌법개정 전에 존재한 조항이라면 가능하지만, 부재한 조항이었으므로 이 해석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재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2) 총회재판국의 행정소송 건 판결에 대한 해벌 절차는 총회 헌법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에서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효확정 판결이 되어(상고 취하로 항소심 판결 확정)법원판결의 효력(기속력과 확정력)이 확보되었고, 총회 차원에서 사건당사자간의 화해합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총회 헌법 권징 제137조(해벌치리회)를 준용하여 총회재판국이 직권으로 해당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종결을 승인함으로써 해벌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를 참고하여 해석을 재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노 제192-1호 / 해벌 절차 헌법 질의(2020.6.3.)”〉

질의1) 황황택 전 목사에 대한 행정재판(소송) 2건〈①황형택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판결(2011.8.1. 총회 재판국 선고) ② 황형택 목사 안수 결

의 무효 판결(2011.12.8. 총회 재판국 선고)〉은 총회 헌법 권징 절차상 재심청구 절차가 종결되어 불가한데 총회 재판국이 제시하는 구제받기 위해 또 다른 사법 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

질의2) 구제를 위한 사법절차가 종결된 황형택 전 목사에 대한 행정재판(소송) 2건에 대하여 "강북제일교회 합의서"와 대법원 상고취하 결정(2019.10.4. 자)을 근거로 총회 재판국이 직권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질의1)과 질의2)를 종합하여 진행할 수 있는 해벌 절차는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

48. 지교회의 부동산 관리

대전서노회장 김성기 목사가 제출한 "대서노 제136-8호 / 교회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 관한 질의(2020.6.12.)" 건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96조 제2항에 근거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 부동산은 그 지교회의 당회로 관리케 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산은 제직회로 관리케 하되 지교회 운영에 사용케 한다. 단, 교회의 재산은 신도에게 지분권이 없다. 헌법 정치 제97조에 근거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않은 지교회의 부동산은 지교회의 소유로써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개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개인 명의로 등기한 지 교회 소유의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34조에 근거 헌법 정치 제93~97조에 의거 총회와 노회와 당회는 상회에 헌납한 재산이나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 외의 자체 재산에 대하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여 전권을 가지며 개별 치리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유지재단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교회의 재산(부동산, 동산)의 관리, 처분, 사용 등에 관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질의내용 : 질의1) 대전서노회 제132회 정기노회에서 결의한 사항〈유지재단에 가입되지 않은 교회가 부동산(토지, 건물)을 매매할 경우 임원회의 허락을 받는다.〉이 타당한 결의라고 할 수 있는지요?

49. 온라인 장로고시 가부(코로나19 재난상황)

진주남노회장 류재돈 장로가 제출한 "진주남 제127-8호 / 코로나19로 인한 장로고시 관련 해석 요청(2020.6.18.)" 건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26조에 근거 장로고시는 노회가 시행하는 것으로 장로고시

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노회가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장로고시에 대한 부정행위 방지 장치 및 방법, 향후 이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해결방안 등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장로고시 응시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입국이 어려워 영상으로 장로고시를 응시해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바랍니다.

50. 타교단 출신 장로이명 및 원로장로 추대

평북노회장 김성곤 장로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208-72호 / 헌법 질의의 건(2020.6.25.)”

해석 : 질의1) 타 교단 출신으로 이명 절차에 따라 교회 이명이 되었고 과거 장로장립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하나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보, 패, 장로증서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타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의 경우는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8항에 근거 처음 선택할 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안수는 생략할 수 있다. 또한 타 교단 장로의 시무투표를 따로 실시할 지에 대한 것은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5항에 근거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질의2) 원로장로 추대는 헌법 정치 제44조에 근거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이다. 원로장로는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한다. 따라서 한 교회에서 중간에 시무중단이 있었다고 해도 총 시무기간 20년을 경과하였다면 가능하다.

질의내용 : 질의1) 타 교단 출신 시무 투표의 건(권호영 장로/2014년 1월 15일 가능제일교회 등록)

1) 장로로 선출하고 임명한 이전 교회가 현재 존재하지 않아 장로 선출에 대한 확인 서류를 확보할 수 없으며, 중간에 옮겨서 신앙 생활하던 교회(의정부신곡교회)의 이명서류만 확보 하고 있습니다. (이명자료 별첨) 이럴 경우
2) 2차 문건이나 자료를 통해 증명을 대신 할 수 있는지(주보, 패, 장로증서 등)
3) 교단이 다를 경우 본 교단 장로투표와 같이 이명자 시무투표를 따로 실시하여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득표를 획득하고 안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 질문

질의2) 원로장로 자격충족 해석의 건(이용백 장로)

이용백 장로님은 본 교회 선임 장로로서 1995년 장립되시고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사랑의 섬김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2021년 은퇴를 하십니다. 그러나 장로 시무에 단절 기간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자료별첨)

1) 사직서를 제출 후 2005년 9월 교회를 떠나셨다가 2009년 3월 다시 투표를 통해 복직하셨습니다. (3년 5개월 공백)
2) 따라서 가능제일교회 당회는 이용백 장로의 원로장로 자격요건에 대해, 장립부터 은퇴까지 총 시무기간에서 20년을 충족하면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 1995년 3월 5일 장로장립 ~ 2005년 9월 30일 사직
   - 2009년 3월 8일 복직 ~ 2020년 현재

51. 장로 피택 교육(코로나19 재난상황)

포항남노회장 이하준 목사가 제출한 “포남노제 100-17호 / 장로고시 시취에 관한 헌법해석 질의(2020.6.30.)” 건

해석 : 헌법 정치 제42조 제1항에 근거 장로로 피택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적 재난 상황(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심각단계)에 따라 정기노회가 연기되었거나 노회에서 장로피택을 허락 받았음에도 공동의회 소집이 어려웠다면 헌법 정치에 근거한 교육일정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므로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은 받게 하되 4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노회의 판단에 따라 노회고시를 치룰 수 있으나 반드시 4개월 교육 이수 후 임직해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지난번 총회 임원회에서 발송한 공문(제목: 헌법해석 통보〈노회장〉-시행 사무국-1409/2020.5.21.)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라 “정기노회가 연기되었다면” 이라는 단서 하에, 금회에 한해 노회가 피택장로 교육기간 4개월이 부족하여도 고시 시취하고, 반드시 4개월 교육이수 후에 임직해야 한다는 헌법해석이 있었습니다. 본 포항남노회의 경우와 같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2020년 봄 노회를 예정된 날짜에 개최한 노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봄 노회에서 장로피택 허락을 받은 교회들이 코로나 인해 상당기간 공예배와 공동의회 소집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4월과 5월에 부득이 공동의회와 피택을 진행할 수 없었고 대부분 6월과 7월에 진행하여 불가피하게 헌법에서 정한 4개월의 교육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노회에 고시 시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기노회를 연기한” 사례와 동일하게 헌법해석을 적용하여 피택장로 교육기간을 채운 후 임직한다는 조건 하에, 노회에서 실시하는 장로고시를 시취할 수 있는지?

52. 무임목사 기산일 및 이명

함해노회장 최낙규 목사가 제출한 “함해 제188-13호 / 총회 헌법 질의(2020.6.30.)” 건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27조 제10항에 근거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무임목사 3년 기산일은 헌법 정치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정기노회 결의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봄노회 이후 시무사임 하였다고 하면 2017년 가을노회 결의일 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므로 현재는 무임목사로 봄이 적법하다.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11조 제4항에 근거 목회자의 이명 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명청원서 송부를 본인 혹은 노회장이 요청했으나 2개월이 경과하여도 송부하지 않을 경우 노회장(함해노회장)은 이명확인서를 발급(발송)할 수 있다.

질의내용 : 본 노회 정기노회(2020.5.25.) 전도목사로 허락된 권영국 목사(소속/대구서남노회)의 이명청원과 관련하여 헌법위원회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노회 정기노회(2020.5.25.)시 전도목사로 허락된 권영국 목사(전도처/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이명청원서를 소속 노회인 대구서남노회에 발송(2020.6.11.)하였으나 무임기간이 경과되어 자동해직 되었으므로 이명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해당 목사는 봄노회 이후 대구목민교회를 시무 사임(2017년 5월 10일)하였습니다. 무임목사 3년 기간의 기산일은 헌법 정치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정기노회 개회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1) 해당목사인 권영국 목사는 아직 무임목사인지요? 아니면 해직된 목사인지요?

질의2) 현재 무임목사라면 본 노회에서는 헌법시행규정 제11조(교인 및 직원의 이명 및 확인) 4항에 근거하여 절차에 따라 행정처리해도 되는지요?

53. 교인의 책벌 확정

경안노회장 김영윤 목사가 제출한 “경안노 제2020-71호 /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의 건(2020.7.6.)”

해석 : 질의1~3) 헌법 권징 제71조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

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지 교회 출석을 제지할 수 없고, 당회에서 임명한 직분은 당회의 결의로 임명 철회할 수 있으며 출교 등 책벌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가능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지교회 당회에서 지교회 성도를 치리 하였을 때 치리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는가?

질의2) 지교회 당회에서 치리(출교)한 성도가 상위 기관에 상고하였을 때 치리당한 성도의 지교회 출석을 지교회에서 제지 할 수 있는가?

질의3) 치리(출교)당한 성도의 지교회 모든 자격 박탈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54. 치리회의 해벌 승인 절차

여수노회장 정훈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47-48호 / 헌법 권징 제137조에 대한 해석 요청(2020.7.3.)” 건

해석 : 질의1) 판결이 확정될 때 재판국이 소속되어 있는 치리회를 말한다.

질의2) 헌법 권징 제137조에 근거 최종 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의 결의 내지 승인(폐회 중에는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장이 선포 내지 공지함으로 시행되며,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하거나 치리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면 된다.

질의3) 최종 재판국의 해벌 승인이 났을 때 소속 치리회장이 선포 내지 공지를 해야 하며 해벌 승인에 대한 시효는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최종 재판국의 승인이 났을 경우에 해벌을 시행하는 치리회는 어느 치리회를 말한 것입니까? ① 면직된 목사의 해벌은 총회입니까? 노회입니까? ② 면직된 장로의 해벌은 노회입니까? 당회입니까?

질의2) 그 소속 치리회장의 선포 내지 공지에 대하여 해석요청을 합니다.

질의3) 최종 재판국의 승인이 났는데 소속 치리회에서 해벌을 시행하지 않을 시에는 해벌 승인에 대한 시효는 해벌할 때까지 유효합니까? 아니면 시효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55. 위임목사 자격 및 부목사 사임일 기산

순천노회장 최수남 목사가 제출한 “순노 제102-125호 / 헌법 질의에 관한 건(2020.7.9)”

해석 : 질의1,2,3) 헌법 정치 제27조 제3항에 의한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 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에 해 교회 위임(담임) 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해 교회 사임이란 헌법 정치 제35조에 근거한 사임 절차를 완료한 것을 말하며 단지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사임처리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임서 처리에 대한 사항은 노

회의 권한이며 합당한 이유 없이 사임서 처리가 늦어질 경우 사임서 제출 당사자 또는 해당 교회에서 해당 노회에 조속히 처리토록 요청할 책임도 있으므로 노회의 귀책만을 논할 수 없다. 따라서 부목사 사임일은 시무사임서 제출일이 아닌 부목사 사임이 허락된 노회결의일로 봄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헌법 제27조 제3항에 “해 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해 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라고 함에 의거 문재화 목사의 시무사임서 제출 원인 행위 날이 2018년 9월 17일이므로 이날로 “해 교회 사임 일”을 기산하면 되는지요?

질의2)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유와 헌법 제27조 3항에 의거 “해 교회 사임” 날이 문재화 목사의 사임일로 기산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 하는지요?

질의3) 노회는 정치 제78조 제1항에 “개회 1개월 전에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므로, 당시 순천노회 11월 정기회는 2018년 11월 5일이므로 2018년 10월 5일 이전에 사임서가 제출된 건은 노회 임원회와 정치부에서 신속히 처리 의무가 있으나 이런 직무를 소홀히 하고 정기 노회 기간까지 무료 50일 동안이나 사임서 처리를 방치하며 정기노회까지 미루다가 처리하므로 결국은 그에 대한 불이익과 피해는 서로사랑하는교회와 문재화 목사가 입게 된 그 귀책사유가 노회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유야 어찌하든 그 귀책사유가 노회에 의해 발생한 사항이므로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에 의해 서로사랑하는교회 부목사 문재화 목사의 사임일은 사임서를 제출한 2018년 9월 원인 행위일로 봄이 타당한지요?

56. 노회임원 선출과 시찰회 경유

목포노회장 박석우목사가 제출한 “제122-100호 / 헌법질의(2020.7.30.)” 건과 목포노회장 박석우 목사가 제출한 “제122-101호 / 헌법질의 추가의 건(2020.8.5.)”

해석 : 질의1,2,3) 헌법 정치 제75조에 근거 노회 임원 선출은 노회 규정으로 정하여 선출한다. 목포노회 규칙에 의하면 정·부회장 후보는 해 당회(제직회)의 결의와 해 시찰회를 경유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는 바, 시찰회는 경유기관으로 헌법시행규정 제9조에 근거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하거나 실질적 심사권이 없으며, 단지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따라서 노회 임원선거에서 노회 규칙에 시찰회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유에 그치지 않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참고: 헌법위원회 제92회기 68번, 제96회기 45번, 98회기 96번, 103회기 39번)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헌법 정치 제74조(노회원의 자격) 제1항에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합니다. 노회원의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은 재판이외의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총회 헌법 본 조항에 의하면 위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질의2) 총회 헌법 제81조(시찰회와 시찰위원회)가 총회 헌법 제74조(노회원의 자격)에 명시된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해 노회의 노회장 후보나 부노회장 후보가 되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행사를 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질의3) 총회 헌법 제81조(시찰회와 시찰위원회)가 총회 헌법 제74조(노회원의 자격)에 명시된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해 시찰회가 해 노회의 노회장 후보나 부노회장의 후보가 되는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추천하지 않으면 후보가 될 수 없다거나 후보등록을 받지 않는 노회 규칙은 상위법인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제2항(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 등의 순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한다.” 라고 한 근거에 의하여 노회 규칙이 상위법을 위배한 법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57. 장로 시무 연령

서울서노회장 박용경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102-16호 / 헌법 질의 해석 요청의 건(2020.8.5.)”

해석 : 질의1,2,)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칙 제29조에 근거 “본 회칙에 미비 사항은 교단 총회 관련(제, 법)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헌법 정치 제22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15조 제3항에 근거 장로의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이며, 이와 관련한 선거권, 피선거권도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봄이 적법하다. 시무장로의 은퇴연령 70세는 국가법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만70세가 되는 해 연말로 봄이 적법하므로 주민등록상 만70세가 되지 않았다면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선거 출마에 있어 연령제한을 이유로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교회 직원 및 전장련 피선거권 제한 연령에 관한 건

헌법 정치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2조 [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전국장로회연합회(이하 전장련) 회장에 출마하려는 A후보는 생년월일이 1952년 2월 25일생임으로 만70세가 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당회원 노회원 총회원의 자격이 유효하므로 49회(2020년11월) 전장련 회장선거에 출마할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연령제한 규정에 제한되어 출마할 수 있는지 출마할 수 없는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피선거권 연령기산의 기준에 관한 건

전장련 회칙 제9장 부칙 제29조(기타사항) 2. 본 회칙의 미비사항은 교단 총회 관련(제.법)규정을 준용하고 통상관례에 따른다. 전장련 회장의 자격을 갖춘 A후보의 호적상 생년월일이 1952년 2월 25일이고, 비공식적으로 사용한 생년월일이 1950년 2월 25일이라고 할 때 통상적인 관례를 따르면 이 후보의 연령은 호적상 생년월일인 1952년 2월 25로 기산되는 것(대법원 2017.3.9. 선고 2016다 249236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이고 사회적 통례임에도 전장련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A씨의 나이를 호적상 실제 나이를 기준해야 함에도 비공식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경쟁 후보에게만 후보자격을 부여한 것이 합법적인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8. 예배의 시작 및 광고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항소) 오창섭 재판장 판사가 제출한 “사실조회서(사건 2019노 1505 예배방해)(2020.7.13.)” 건

해석 : 질의1) 예배시간과 관련한 헌법 해석은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1-1) 공적예배(교회가 발행한 주보에 명시되어 있는 예배, 이하 예배라 한다.)의 경우 특별히 외부강사가 차량이 밀려 늦는 경우 외에는 정해져 있는 예배시간에 맞추어 정시에 시작한다.

질의1-2) 예배 시작을 알리는 타종은 총회 예배·예식서에 의한다기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교회에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형식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정한다.

질의1-3) 예배 시작은 총회 예배·예식서에 의하면 예배로 부름(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중들을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는 순서)으로 예배가 시작되나 형식에 대한 사항은 총회 예배·예식서를 참고하여 교회에서 정한다.

질의2) 총회 예배·예식서에 의하면 반주자의 전주와 예배로 부름으로 시작하고 이를 예배의 시작으로 봄이 타당하나, 형식에 대한 사항은 총회 예배·예식서를 참고하여 교회에서 정한다.

질의3) 전주와 예배부름으로 시작해서 목사의 축도까지가 일반적으로 교회 예배 형태이며 광고는 총회 예배·예식서에 의하면 축도 후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교회에서는 예배시간 중에 광고를 한다. 담임목사는 이 광고시간을 활용해서 교인들에게 알려야 할 교회운영 및 교인들의 동정 등에 대하여 광고를 한다.

질의4~7) 교회운영 및 교회소식을 전달하는 방법은 예배시간에는 광고시간을 활용하고, 예배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치리권이 있는 담임목사나 당회의 경우 교인들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나,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에(예배, 회의, 간담회, 기타) 따라 다르다. 예배의 경우는 예배의 인도자(목사)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회의 중일 때는 회의 의장에게, 간담회 중일 때는 진행자에 허락이 있어야 하고, 기타의 경우는 치리권이 있는 담임목사나 당회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일반신도의 공지사항 전달 요청 내지 광고시간 요청에 대해서 치리권자 및 진행자가 허락하지 않을 경우 다시 요청할 수 있으나 허락 없이 임의로 광고 및 공지사항을 전달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예배의 시작에 대해서 규정하는 총청노회나 상위 기관의 해석이 있는지?

1-1) 예정된 예배시간이 있으면 항상 그 시각 정시에 예배를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시보다 늦은 시간에 예배를 시작하는 것인지, 정시보다 늦은 시간에 예배를 시작하는 경우는 어떠한 사유인지?

1-2) 예배 시작을 알리는 타종이 있는 것인지?

1-3) 예배 시작을 알리는 목사의 선언이 있어야 예배가 시작되는 것인지?

질의2)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예배·예식서에는 주일예배는 반주자의 전주와 찬양대의 입례송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를 예배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지(즉 전주와 입례송이 없이는 예배가 진행되지 않는지)

질의3) 노회에서는 예정한 예배시간 내에 예배당 내에서 담임목사가 한 모든 발언을 내용을 불문하고 '예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지, 즉 담임목사가 예배시간으로 할애된 시간 내에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올라간 뒤 예배 내용이 아닌 '신도들이 교회 운영에 관하여 불만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을 밝히는 경우

까지 담임목사가 예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지?

질의4) 통상적으로 예배시간 또는 예배시간이 아닌 때에 성경에 따른 종교적 설교를 하는 것 외에 '목사가' 예배당에서 교회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신도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지?

질의5) 목사가 아닌 '일반 신도'가 예배시간 또는 예배시간이 아닌 때에 '광고'나 '공지사항 전달'의 목적으로 다른 신도들에게 교회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지?

질의6) 목사나 일반신도와 위 질의4, 5와 같은 공지사항 전달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질의7) 목사가 일반신도의 공지사항 전달 요청 내지 광고시간 요청을 하였는데 이를 거절하는 경우 일반신도가 그 거절에 불복하는 등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는지, 어떠한 절차가 보장되어 있는 것인지?

59. 담임목사의 연임청원

서울서남노회 주성수 목사 외 22인이 제출한 "담임목사 연임청원에 관한 총회 헌법위원회 질의(2020.7.17.)" 건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28조에 근거 담임목사의 연임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당회 미조직교회는 제직회 회의록을 제출한다. 매 3년마다 담임목사의 연임청원 시 만장일치로 연임을 찬성하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으나 1인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투표해야 한다. 따라서 절차에 따라 노회에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해야 하며 연임청원에 대하여 노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 교회에서 이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연임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에 근거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한다.

질의2) 헌법 정치 제27조 제10항에 근거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헌법시행규정 제19조 제3항에 근거 무임목사로 해직된 후 복직하려면 헌법 정치 제37조(목사의 복직) 절차를 준용한다.

질의내용 : 질의1) 서울서남노회 노회규칙 시행규정 24항 '담임목사는 3년마다 연임청원 한다. 단, 지 교회에서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임된다.' 노회규칙부에서는 총회 헌법과 다른 노회규칙을 제정하여 목사 청빙에

관한 연임시행규정 등을 임의로 적용하여 운영하며 이는 대혼란이 되는 바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2) 현재 헌법(제27조 목사의 칭호, 시행규정 제19조 무임목사 처리)에 근거한 무임목사 및 자동 해직된 무임 목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60. 부목사 사임일 기산과 기도처 설립

순천노회장 최수남 목사가 제출한 "순노 제102-132호 / 헌법 질의(2020.7.20.)" 건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27조 제3항에 의한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 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한 시점부터 헌법 절차에 따라 담임목사 혹은 위임목사 청빙이 가능하다.

질의2) 기 답변〈"사무국-2516 / 헌법해석 통보(2020.7.16.)"〉으로 갈음한다.

〈순천노회장 최수남 목사가 제출한 "순노 제102-125호 / 헌법 질의에 관한 건(2020.7.9.)"〉

해석 : 질의1,2,3) 헌법 정치 제27조 제3항에 의한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 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에 해 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해 교회 사임이란 헌법 정치 제35조에 근거한 사임 절차를 완료한 것을 말하며 단지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사임처리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임서 처리에 대한 사항은 노회의 권한이며 합당한 이유 없이 사임서 처리가 늦어질 경우 사임서 제출 당사자 또는 해당 교회에서 해당 노회에 조속히 처리토록 요청할 책임도 있으므로 노회의 귀책만을 논할 수 없다. 따라서 부목사 사임일은 시무사임서 제출일이 아닌 부목사 사임이 허락된 노회결의일로 봄이 타당하다.

질의3) 헌법 정치 제27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2.11.16.일 이전에도 관련 법이 있었다.

질의4) 헌법 정치 제10조에 근거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으로 지 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헌법시행규정 제6조에 근거 노회는 지교회의 설립이 가합하면 이를 허락하고 설립위원을 선정하여 그 교회에 파송하며 해당 지교회의 설립식을 거행하고 교인들로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케 하며 그 예식에서 설립됨을 선포하는 일을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감안하여 노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정하면 된다.

질의5) 기도처는 헌법 정치 제12조 근거 세례교인(입교인)의 수가 15인 미만인 경우와 지 교회 설립된 후 15인 미만의 상태로 2년간 계속되는 경우이다. 헌법시행규정 제4조에 근거한 기도처를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그 교회에 입회될 교인들이 서명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 가입허락이 있어야 한다.

기도처 설립예배 및 선포는 노회가 정하여 시행하면 된다.

질의내용 : 질의1)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바로 승계 할 수 없고 해 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해 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라는 총회 헌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 부목사였던 자가 “해 교회 사임 후 2년이 경과된 자”는 해 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의 시점이 만 하루(24시간)만 경과해도 정식적으로 당회와 제직회와 혹은 공동의회를 거쳐 담임목사 혹은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는지요?

질의2) 시무했던 부목사가 해 교회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 교회 시무를 하지 않은 지가 2년 10개월 된 경우에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바로 승계 할 수 없고 해 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해 교회 위임(담임) 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에 의해 시무했던 교회에 담임(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없는지요?

질의3) “부목사가 해 교회에서 사임 후 2년이 경과 된 자는 해 교회 담임(위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①총회 헌법 몇 조 몇 항인가요? ② 2012년 11.16 이전 법에는 없었는지요?

질의4) 지교회 설립(헌법 제10조, 헌법시행규정 제14조)하고자 세례교인의 요건을 갖추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은 후 교회 설립예배를 드리며 지교회 설립 선포는 해 노회장이 해야 하는가요? 시찰장이 해야 하는가요? 노회국내선교부장이 해야 하는가요?〈노회에 청원하여 노회가 허락을 하여 설립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선포도 노회장이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질의5) 노회 내에 “기도처 설립” 절차에 대하여 헌법 조항이 명확히 명시가 없는 것 같은데, 헌법 제10조, 헌법시행규정 제14조에 의거 교회 설립절차를 준용하여 ①노회에 청원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②노회 내 국내 선교부나 해당 시찰회에서 허락하고 노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지? ③기도처 설립이 노회에서 허락된다면 기도처 설립예배 후 기도처 선포는 노회장이 하는지, 노회국내선교부장이나 시찰장이 하는지요?

61. 담임목사 연임청빙 절차

경동노회 벧엘산성교회 이기세 목사가 제출한 “벧엘산성 제2020-11 / 헌법해석 질의(2020.7.21.)” 건

해석 : 질의1)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어 답변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2~5)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의 적용은 선출에 의해 임기가 있는 치리회

장을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다만 “교회가 계속된 분규(분쟁)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인 당회(당회 미조직 교회 제직회)를 개최할 수 없어 연임청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담임목사는 적법한 연임청빙 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자동 연장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위 I 의 진행경과와 같이 소수의 제직회원들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고자(담임목사연임청빙청원 반대) 외부세력까지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위력으로, 임시제직회 개최를 방해하여 임시제직회를 무산시킨 김태화 장로와 이를 동조한 자들의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

질의2) 위 I 의 진행경과와 같이 담임목사 반대자들의 조직적이고 위력에 의한 방해로 담임목사 연임청빙을 위한 임시제직회 개최가 수차례 무산됨에 따라, 정기노회에 담임목사 연임청빙청원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담임목사의 임기’는 정기노회가 경과하면 종결되는 것인지, 유지되는 것인지

질의3) 2020년 제152회 경동노회(2020.5.7.)에, 위 I 의 진행경과와 같이 담임목사 반대자들이 조직적으로, 외부세력을 동원한 위력에 의한 방해로 담임목사 연임청빙을 위한 임시제직회가 수차례 무산됨에 따라, 벧엘산성교회 담임목사 연임청빙청원을 하지 못한 경우, 담임목사의 ‘담임목사(당회장) 지위’는 정기노회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이 적법한지, 정기노회 경과로 종결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4) 총회 헌법위원회 헌법해석 사례 제93-5호와 제94-7호, 제98-59호의 해석은 현재까지 유효한 것인지

62. 타교단 소속의 장로임직 절차

서울북노회장 한봉희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74-34호 / 해외한인장로교회에서 임직한 장로의 취임 절차에 따른 질의(2020.8.6.)” 건

해석 : 질의1)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한인장로교회)는 타 교단으로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8항에 근거 타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의 경우는 처음 선택할 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안수는 생략할 수 있다. 단, 세례교인 비례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한인장로교회)에서 임직한(2012년 9월 23일) 장로가 귀국하여 본 노회 산하 지 교회에서 취임할 경우의 임직 절차에 대한 질의입니다. 해외한인장로교회에서 임직한 장로가 ‘헌법 제6장 제42조 1항’과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제26조 [직원의 선택] 8

항’에 의거 당회의 장로선택 청원과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 결의와 공동의회 3분의2 이상의 투표와 노회장로고시와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니면, 당회와 공동의회, 노회의 모든 절차를 진행한 후 노회고시는 면제하고 면접만 진행할 수 있는지

63. 온라인 총회 가능여부(코로나19 심각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3390 / 제105회 총회 관련 헌법 질의(2020.9.1)” 건

해석 : 질의1,3,4) 국가적 재난사항인 감염병예방 “심각”단계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총대 1,500명이 모두 모여 총회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총회 헌법 및 총회 규칙 등이 없으며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초유의 재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법과 총회 헌법 등의 취지와 목적 등을 감안할 때 헌법 정치 제88조에 근거 “현장 총회 교회”(도림교회)에서 임원 등 최소인원으로 총회를 개최하되 최소인원 외에 총대들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실내 50명이 넘지 않는 선에서 1~3개 노회별로 지역 1개 교회를 “온라인 총회 출석(회집) 교회” 로 지정한 후 그 장소로 출석함으로써 현장 및 온라인을 겸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총회 헌법 정치 제86조에 의한 개회성수 적용은 출석인원을 노회별로 수기,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 후 “현장 총회 교회”(도림교회) 운영본부에 제출함으로써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총회 헌법 정치 제85조에 의한 총회 임원선출은 현장 총회 교회와 온라인 총회 출석(회집) 교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투표용지 또는 전자투표)를 활용하여 투표하고 이를 보고하고 수합함으로써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총회 임원회는 헌법 정치 제88조에 근거 각 노회별 “온라인 총회 출석교회” 회집장소에 대하여 긴급하게 공고 및 공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금번 국가적 재난사항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루는 총회에 대하여 총회 임원회 및 관련 부서는 헌법 정치 제85조 임원선출, 제86조 총회 개회성수, 제88조 회원권 성립과 총회 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총대들의 표결권, 발언권 확보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2)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2단계이상 비상시국 하에서 총회 헌법 제88조에 근거 총회장이 온라인 총회에 대하여 소집 공고를 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국가재난인 코로나19의 2단계이상 비상시국 하에서 총회 헌법 제88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국가재난인 코로나19의 2단계이상 비상시국 하에서 총회 헌법 제88조를 적용할 때 총회임원회와 총회를 대표하며 총회직무를 통할하는 총회장의 권한은 무엇인지 여부

질의3) 국가재난인 코로나19의 2단계이상 비상시국 하에서 총회 헌법 제88조를 적용할 때 관련 헌법 조항인 제85조(총회임원 선출), 제86조(총회의 개회성수)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4) 비상시국(국가적 재난)에 관한 법 조항이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지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정부와 자치단체장이 거리두기 2~2.5단계 시행으로 주일예배도 온라인(영상)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온라인 총회를 포함하여 총회 개회에 대하여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총회 헌법 정치]

제86조 총회의 개회성수총회는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회원(목사총대 및 장로총대)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88조 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총회는 1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정기로 회집한다. 총회장은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회장의 유고 시는 부회장 혹은 직전 총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무한다.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

제89조 개회 및 폐회총회는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한다. 폐회시간에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폐회를 한다. "교회가 나에게 허락한 권으로 지금 총회가 폐회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된 총회가 다시 모월 모일에 모처에서 회집됨을 요한다."

[총회 규칙]

제40조 (총회)

1. 총회는 매년 9월 중으로 총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2. 총회의 기간은 4일 이내로 하고, 마지막 날 오전 중으로 폐회한다.
3. 총회는 다음 장소를 결정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시는 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4. 총회의 의안은 하회의 합법적인 헌의 및 상소건, 임원회, 각 부 및 위원회의 제안으로 하되 개회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개회 후에도 제출 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2.〉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64. 총회 헌의안 상정 결의 절차

충북노회장 서충성 목사가 제출한 “대충노 제142-40호 / 헌법과 규칙 해석에 대한 질의(2020.8.7.)” 건

해석 : 질의1,2,3) 헌법 정치 제77조의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여기서 “상정하다(上程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토의할 안건을 회의석상에 내어놓다.” 라는 것으로 노회 시 총회에 제출하는 안건(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토의 안건으로 제출한다. 라고 봄이 타당하다.

노회 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6에 준용할 때 노회 폐회 중이라도 정치부와 임원회는 헌법, 규정, 규칙, 총회나 노회의 결의에 의해 위임된 것에 한하여 폐회 중에 처리할 수 있고 노회에서 이미 결의 및 유안된 안건에 대하여는 다르게 처리할 수 없고 본회의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미진 안건은 임원회에 일임하고 폐회하기로 동의할 때”

미진 안건은 토의가 미진한 안건을 말하고 상정되지 않은 새로운 안건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헌법 정치 제11장 노회 제77조 노회의 직무 8항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피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에서 “본 노회~상정하고”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해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폐회 중 임원회가 소노회(헌법에는 소노회라는 표현이 없음)라고 하여 임원 및 정치부가 노회일을 처리하는데, 여기서 소노회가 위의 “본 노회” 와 같은 권한으로 정기노회에 상정되지 않은 헌의안을 폐회 중 노회 임원회가

헌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정기노회에서 노회원들의 결의에 의하여 헌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올바른 해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2) 정기노회 폐회 시 보통 '미진안건은 임원회에 일임하며 폐회 동의합니다.' 라고 했을 때, 상정되지도 않은 헌의안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이미 헌의안으로 상정된 다 다루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지 명확하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본 충북노회 제142회 정기노회는 폐회하며 임원회에 미진안건 및 헌의안을 일임한다는 내용 없이 폐회를 하였습니다.

65. 공동의회 시 신안건 처리 무임목사 여부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2544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및 헌법 해석 초안 유출 경위 조사 요청(2020.7.17.)" - 사무국-2467 / 헌법해석 보고(2020.7.15.) 중 1번 - 【평남노회 상삼교회 김진열 장로 외 2인이 제출한 "총회헌법위원회 질의서(2020.5.21.)", 평남노회 상삼교회 전형섭 장로가 제출한 "부전지 상삼교회 (청원서) 추가서류(2020.6.24.)", 평남노회장 최재범 목사가 제출한 "평남노 제192-4호 / 상삼교회 서기 전형섭 장로(장로들)의 질의 건에 대한 반려 요청(2020.6.3.)", 평남노회장 최재범 목사가 제출한 "평남노 제192-29호 / 상삼교회 장로들의 헌법질의에 대한 평남노회의 입장(2020.7.7.)"】건과 평남노회 상삼교회 김진열 장로 외 2인이 제출한 "청원서(2020.7.15.)", 평남노회장 최재범 목사가 제출한 "평남노 제192-44호 / 상삼교회 전형섭 장로의 질의에 대한 헌법해석 재고 요청(2020.8.5.)", 평남노회 상삼교회 교인 김진열 장로 외 76인이 제출한 "호소문(2020.8.6.)" 건

해석 : 질의1) 공동의회는 헌법 정치 제90조 제3항 3호에 근거 상회의 지시에 따라 개최할 수 있으며 헌법 정치 제28조 제3항에 근거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질의2) 사실 관계 확인할 수 없어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3) 헌법 정치 제90조 제2항에 근거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의회 참석자 전원이 안건 상정 및 처리에 동의할 경우 안건은 추가 할 수 있으나 1명이라도 반대가 있는 안건은 다룰 수 없고 새로운 안건에 대해서 다시 당회 결의 및 광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질의4)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의 적용은 선출에 의해 임기가 있는 치리회장을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청빙에 의한 당회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교회가 계속된 분규(분쟁)로 인하여 부득이 정한 기간 내에 당회를 개최할 수 없어 연임청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

우"에는 제96회기 헌법위원회 54번 해석과 같이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을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일정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들을 살펴 볼 때 평남노회 자료에 김수태 목사가 무임목사로 등재된 사실(2019.10.22.),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8에 근거 당회장 결원을 전제로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2020.3.2.임시당회장:석근복목사) 사실, 2020.4.19. 임시당회장 주재 하에 김수태 목사 전별금 지급(안)을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결의한 결과 부결(총투표72명, 찬성1명, 반대61명, 무효10) 된 사실 등, 양측의 문제제기 문건 등을 살펴볼 때 노회가 상삼교회 담임목사 결원을 전제로 제반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무임목사 등재(평남노회, 2019.10.22.) 후 6개월이 지난 후 과거 헌법해석을 몰랐다는 이유로 평남노회 정기노회(2020.5.28.)에서 이를 번복한 것은 노회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김수태 목사는 무임목사로 봄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조직교회에서 당회의 결의 없이 공동의회를 열어 교인들의 신임을 물어 담임목사 연임 청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의2) 노회에서 설교목사로 파송한 성홍모 목사(평남노회 은퇴목사)가 본당 2층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무임목사가 된 김수태 목사를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이 1층 교육관에서 드리는 예배를 무임목사 된 김수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질의3) 공동의회(정치 제13장 제90조2항) 사전에 광고하지 않은 안건을 수습전권위원회 결의로 공동의회 당일 위원장이 긴급 동의안을 제안 할 수 있습니까?(서증7,서증8)

질의4) 제191회기 평남노회에서 연임청원을 받지 못하고 무임목사 된 김수태 목사의 담임 목사직과 당회장권이 연장되는 것이 시행규정 제33조5항을 인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66. 이명증서 발급처리 가능여부

함해노회장 최낙규 목사가 제출한 "함해 제188-44호 / 총회 헌법 질의(2020.8.26.)" 건

해석 : 질의1,2) 헌법시행규정 제11조 제4항에 근거 목회자의 이명 시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명 청원서 송부를 본인 혹은 이명 예정 지역 노회장이 종전 시무지역 노회에 요청했으나 2개월이 경과하여도 송부하지 않을 경우 이명 예정지역 노회장은 이명확인서를 발급(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6월 11일자로 함해노회에서 전서노회로 "김성식 목사 이

명청원"을 요청하였으나, 전서노회에서 2020년 6월 29일자로 "이명청원을 보류" 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따라서 재판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11조 제3항에 근거 이명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명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음에도 단순히 요청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함해노회에서 이명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질의내용 : 질의1) 전서노회는 김성식 무임목사에 대한 재판에서 2020년 1월 17일자로 판결을 하지 않고 종결문으로 재판을 종결하였고, 이어 2020년 4월 21일 전서노회 봄 정기노회에서 노회원들에게 공포하고 노회보고서에 김성식 목사에 대한 종결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6월 11일자 함해노회가 전서노회에 김성식 무임목사에 대해 이명을 청원하자, 2020년 7월 16일자로 재판을 재개하여 면직처리를 하였으므로 이명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질의2) 함해노회가 전서노회에 이명 청원한 2020년 6월 11일 시점에 무흠한 무임목사라면 2020년 8월 26일은 이명청원 후 2개월이 지났으므로 함해노회에서 이명확인서를 발송할 수 있는지요?

67. 항존직 신임 투표 불가 및 헌법위원회 권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김동혁 재판장 판사가 제출한 "사실조회서(사건 2020가합50558(목사면직판결 무효확인)(2020.9.1.)" 건

해석 : 질의1,2,4)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에 근거 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

질의3) 헌법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36조 근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여기서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를 말한다.

질의내용 : 교인들이 시무장로 신임투표를 위하여 당회장에게 공동의회 소집을 청원(요구)하여, 당회장이 당회 결의 없이 공동의회 소집을 공고하고 공동의회에서 시무장로 신임투표를 실시하였을 경우, 이 공동의회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질의1) 예장통합 헌법위원회는 위와 같은 경우에 예장통합 헌법에 적법하다고 유권 해석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2) 예장통합 총회는 위와 같은 경우에 예장통합 헌법에 적법하다고 결의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3) 예장통합 헌법위원회는 어떤 법규에 근거하고 있으며, 어떤 권한(임무)을 갖고 있는지

질의4) 회신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은 무엇이 있는지(제76회 총회보고서 536쪽 이하, 헌법해석집 59쪽 이하, 총회규칙 등)

68. 목사 면직에 대한 권징 절차

경북노회장 하동오 목사가 제출한 "예총 경북노회 제186-73호 / 목사 면직에 관한 건(2020.9.2.)"

해석 : 질의1) 헌법 권징 제3조 제7항을 적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목사의 행위가 "파렴치한 행위"(살인·절도·강도·강간·방화·사기·공갈·횡령·성범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판단에 따라 권징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권징은 노회 권징 절차에 따라 함이 적법하다.

질의내용 : 질의1) 경북노회 소속 외국인노동상담소 소장 ㅇㅇㅇ목사가 2010년 10월에 임금체불 진정 등 법률업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4천6백만원을 선고 받았다. 헌법 권징 제1장 제3조 7항〈파렴치한 행위(성범죄 포함)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성범죄의 경우는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에 따라 위 목사를 권징 할 수 있는지?

69. 부목사의 연임청원 기산

경남노회장 이용우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020-148호 /헌법 질의의 건(2020.9.3.)"

해석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18조 제2항에 근거 위임목사 때부터 시무하던 부목사의 연임청원이 무한정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헌법 정치 제27조 제3항 취지와 맞지 않고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를 감안할 때, 담임목사 부임 후 첫 임기 동안(3년 동안) 부목사 연임 청원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제104회기 헌법해석 참고 "사무국-1394(2020.5.20.), 사무국-2512(2020.7.16.)〉

〈"사무국-1394 / 헌법해석 통보(2020.5.20.)"〉

대구동노회장 김영식 목사가 제출한 "대동노 제185-65호 / 부목사 연임청빙 질의 건(2020.3.17.)"

해석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18조 제2항 담임목사는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없으나 위임(담임)목사 공석 전부터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 시무 중인 전도사의 목사안수 및 청빙은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목사 공석 전부터 있던 부목사 연임청원은 할 수 있다. 질의2,3) 2012.9.20.일 개정 삭제되기 전 헌법

시행규정 제18조 제1항의 단서조항 '임시목사가 부임한 후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 청원할 수 있다.'의 사유가 담임목사 부임 후 이전 위임목사 때부터 시무하던 부목사들에게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담임목사 임기 3년 중 2년간 무임목사가 될 수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삭제한 것이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18조 제3항 '정상적인 당회가 개회되지 못하면 부목사의 임기는 자동 연장'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회 1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 개정취지에 맞지 않다. 그러나 위임목사 때부터 시무하던 부목사의 연임청원이 무한정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또한 헌법 제27조 제3항 취지에 맞지 않기에,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로 교회가 연임청원하고 담임목사 부임 후 첫 임기동안(3년 동안) 부목사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헌법시행규정 제18조는 헌법 제27조 제3항과 충돌한다기보다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보완하는 규정으로 미비한 사항 등은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함이 필요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위임 목사 사임 후 담임목사가 청빙되었을 경우 이미 위임목사 공석 전부터 시무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2) 연임 청원이 될 경우 몇 회까지 가능한지? 질의3) 위임목사 때부터 시무하던 부목사의 연임청원이 총회 헌법으로 불가능하다면 시무교회에서 부목사 목사의 칭호와 부목사의 구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사무국-2512 / 헌법해석 통보(2020.7.16.)"〉

진주남노회장 류재돈 장로가 제출한 "진주남 제127-8호 / 코로나19로 인한 장로고시 관련 해석 요청(2020.6.18.)" 건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26조에 근거 장로고시는 노회가 시행하는 것으로 장로고시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노회가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장로고시에 대한 부정행위 방지 장치 및 방법, 향후 이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해결방안 등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장로고시 응시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입국이 어려워 영상으로 장로고시를 응시해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바랍니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18조 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 2. 담임목사는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없으나 위임(담임)목사 공석 전부터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 시무 중인 전도사의 목사안수 및 청빙을 할 수 있다. 에 의거하여 위임목사 공석 전부터 이미 시무 중인 전임전도사가 담임목사의 청원으로 19년 가을 노회 시 목사 안수 및 부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오늘 가을 노회 시 부목사 연임 대상자가 되었으나 담임교역자가 현재 담임목사로 시무 중에 있으며, 위의 조항은 기존에 시무하는 교역자에 대하여 계속 시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해 교회 당회에서 부목사 연임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목사를 계속해서 연임 청원할 수 있는지?

70. 이명청원 및 재심, 총회기소위원회 폐지 후 소송건 처리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3555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0.9.11.)” -서울북노회장 팔호교회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헌법유권해석 질의(2020.7.23.)” 건

해석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11조 제4항에 근거 목회자의 이명 시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명청원서 송부를 본인 혹은 이명 예정 지역 노회장이 종전 시무지역 노회에 요청했으나 2개월이 경과하여도 송부하지 않을 경우 이명 예정 지역 노회장은 이명확인서를 발급(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11조 제3항에 근거 이명 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명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음에도 단순히 요청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이명 예정 노회에서 이명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질의2) 노회 재판국이 이미 판결하고 노회까지 보고한 사건이 동일 사건이라고 하면 다시 재판(판결)할 수 없으며, 헌법 권징 제106조에 근거 상고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헌법 권징 제123조 내지 제130조에 근거 재심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단, 헌법 권징 제47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60조 제5항에 근거 화해조서를 화해 당사자인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이 작성하고 고소인(고발인)이 화해의 내용에 관하여 동의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화해조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재판을 속행한 것은 적법하다.

질의3,4) 총회 기소위원회 폐지는 국가법과 같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검사가 기소 후 1,2,3심을 다투는 운영 형태를 준용하는 것이며 또한 불필요한 기소를 예방하기 위해 폐지되었으나, 질의와 같이 총회기소위원회가 기소 후 폐지되어 공소유지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발인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는 없으며,

총회 기소위원회 폐지 이전에 기소한 사건들은 총회 재판국에 이첩되어 심리 중에 있으므로 총회 헌법 권징 제5장(상소) 제3절(상고)을 준용하여 심리,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총회기소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사건의 경우 총회 관련여부와 관계없이 헌법 권징 제7조에 근거 목사에 관한 소송 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 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한다.

질의내용 : 질의1) 목사에 대한 이명요청은 2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거하는 노회에 회원이 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7월 25일자로 A 목사는 함해노회 소속이 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노회 재판국이 이미 판결하고 노회까지 보고한 사건을 다시 재판(판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질의3) 기소위원회가 없는 재판은 공소유지가 불가함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국이 고발인을 원고로 하여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총회와 아무 관련이 없는 목사(은퇴자 포함)의 재판 관할권은 총회에 있는지 노회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함해노회장 최낙규 목사가 제출한 “함해 제188-50호 / 총회 헌법 질의(2020.9.14.)” 건

해석 : 헌법 정치 제28조에 근거 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은 헌법 정치 제90조 및 헌법 정치 제91조에 근거 필요한 회의(공동의회 또는 제직회)를 해야 하나 국가적 재난 상황(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심각단계)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적법한 절차 및 방법(비밀투표가 보장될 수 있는 회송용 우편 등)을 거쳐 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을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노회 당일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내용 : 헌법 정치 제5장 목사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본 노회에서 회의록 접수 후 허락하는 것이 가한지요?

제103회기 헌법 해석 사례

▶ 헌법 질의 해석

1. 기본권 제한

서울강동노회 동성교회 김훈 목사가 제출한 “2018-05 / 총회 헌법 질의(2018.8.24.)” 건

해석 : 질의1,2,3,5) 헌법해석 사항이 아닌 규칙 해석사항이므로 반려하기로 하다.

질의4) 헌법 정치 제74조 제1항에 근거 노회비 미납에 대한 기본권(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등) 제한은 위법이다. 단, 청원권은 상회비 완납까지 보류할 수 있다.(95회기 헌법해석사례 45번, 96회기 헌법해석사례 12번 참조)

질의내용 : 질의1) 우리 동성교회는 2018년도 노회비 책정을 서울강동노회 규칙 제4장 제10조 “다” 호 규정에 의거 공동의회에서 결의하고 서울강동노회에 관계서류 첨부하여 보고하였다. 그 법 적용과 행정행위에 대한 효력은? (갑)설 : 관련 명문 규정에 근거한 행위이므로 “유효”하다. (을)설 : 노회규칙에는 없지만 정기노회에서 배정된 것에 상치됨으로 “무효”이다. (병)설 : 기타

질의2) 서울강동노회에서는 수차에 걸친 노회비 조정 청원 건에 대하여 자료 추가 확인 및 일체의 내용심의 없이 2017년 10월 17일 제61회 회의록 노회 재정부 보고서를 통하여 “동성교회에서 청원한 노회비 조정 청원 건”은 타 교회의 유사한 규모성을 감안하여 불허코자 하오며” 라고 공표하였다.

가) 각 지교회에서 의뢰한 상회비 조정 청원 건은 강동노회 규칙의 배정규정근거와 같이 지교회의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예·결산 및 총대비례에 의한다.” 라는 객관적, 독립적 준거 기준과 통상규례와 같이 예산서 및 입교인 통계자료 등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하여 행정절차법을 준용하여 객관적, 실질심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강동노회는 주문 내용과 같이 이러한 준용 근거는 없고, 타 교회와 비교하는 등 주관적, 주먹구구식 결의를 하였다. 이러한 상회비 조정 심의 결의에 대한 강동노회의 해석은?(갑)설 : 근거(노회규칙) 규정을 일탈한 중요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무효”이다. (을)설 : 그래도 정기노회에서 결의한 것이므로 “유효”한 행위이다. (병)설 : 기타

질의3) 각 지교회에 대한 상회비 배정 근거는 지교회의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예·결산 및 총대비례에 의한다.” 로 되어 있고, 통상규례에 의하면 세금, 사용료, 과징금, 회비 등을 정수할 경우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총대비례에 의한 배정기준과 적용예가 노회규칙, 부칙, 기타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견해는? (갑)설 : 구체적 기준이 결여되고 불비 되었으므로 효력 없는 규정이다. (을)설 : 후속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있는 규정이 된다. (병)설 : 기타

질의4) 서울강동노회규칙 제7장 제20조 (상회비)에는 “상회비 미납교회에 대해서는 총회 총대 피선거권 및 사무 행정을 보류한다.”로 규정이 있고, 2018년 7월 10일 서울강동노회 에서 우리교회에 발송된 (3차 요청)공문에서는 본 회계 책정 상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교회는 관련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며 우리교회에 통보하였다.

가) 헌법 정치 제72조 노회의 의의 및 제77조 제2호 노회의 직무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거나 헌법 정치편 어디에도 상회비 완납을 이유로 지교회의 관련서류를 보류 또는 접수하지 않는다는 (상위)규정이 없으며, 회원권 박탈(상실)이 아닌 한 사무행정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강동노회 규칙 제7장 제20조 (상회비) 미납, 완납하지 않은 사유로 사무 행정 보류 및 서류 미접수 한다는 규정은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갑)설 : 노회 자치 규정이므로 규제하는 규정은 ‘타당’하다. (을)설 : 총회법 정신 및 노회의 의의 등 제 사항을 고려할 때 월권적 사항으로 ‘타당하지 않은 규정이다. (병)설 : 기타

나) 강동노회 규정에는 미납한 경우에 사무행정 보류로 되어 있고 … 노회 회계부에서 발송된 문서에는 “본 회계 책정 상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교회는 관련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에서 ‘미납’ 및 ’완납’ 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갑)설 : 납부 잔액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도 행정적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을)설 : 납부 잔액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병)설 : 기타

질의5) 총회 교회회계기준 제3조 (회계년도)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로 제12조 (자금수지예산의 결정) “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예산안을 성안하여,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거쳐 매 회계연도 전 10일 전까지 확정한다.” 규정되어 있고, 우리교회 또한 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서울강동노회 규칙 제17조 (회계년도)에서 본회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로 한다. 로 되어 있다. 또한 동 규칙 제10조 (7) 나. 규정에 … 단, 배정 근거는 지교회의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예·결산 및 총대비례에 의한다. 가) 위 규정에 따르면 노회와 지교회와의 회계연도 기준이 상이하다. 각 지교회의 예산은 적어도 회계연도 전년도인 12월 20일에 결의되고,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 "0" 시에 확정되거나, 회계연도인 당해연도 초에 공동의회에서 결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서울강동노회는 회계년도 개시일이 전년도 10월 1일로 되어 있어, 지교회의 공동의회에서 결의되기 전인 10월 1일 이전에 각 지교회의 예·결산 등의 기초자료 없이 지교회에 대한 노회비를 배정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인데, 이는 예산의 책정 및 시행상 명백한 불균형, 부조화 현상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갑)설 : 노회의 회계연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개정 필요) (을)설 : 현행 규정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개정 불필요)(병)설 : 기타

2. 총대 선거

서울서남노회장 이상록 장로가 제출한 "서울서남 제90-056호 / 총회총대 선거에 관한 질의 건(2018.5.3.)"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84조에 총회 총대 비율은 있으나, 세례교인 3,000명 이상 교회의 2인 총대수에 대한 헌법 근거가 없다.

질의2) 투표동수에 대한 부분은 각 노회에서 총대선거에 대한 규정에 따른다.

질의내용 : 질의1) 세례교인 3,000명 이상 교회의 2인 총대수에 대한 법적 근거 확인

질의2) 투표동수일 경우 우선순위의 건 확인

3. 청구 기각 판결

서울강동노회 함께하는교회 송배일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통보에 대한 누락오류 재해석 요청의 건(2018.9.7.)"

해석 : 기 통보한 "사무국-2236 / 헌법해석 통보(2018.9.4.)" 해석으로 가름한다. (102회기 헌법해석사례 78번 참조.)

해석 : 질의1,2)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4항에 재판국의 판결에 관하여 법리 판단을 할 수 있다. 본 질의와 관련하여 총회 재판국이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을 받아들인 것이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시행규정 제75조 제3항에 근거 행정소송의 판결에 있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경우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할 수 있다. 또한 질의 자료로 보건대 총회재판국이 주요 청구를 상당수 누락하여 판단했거나 판결에 대한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질의내용 : 1. 헌법질의를 하게 된 경위배경

1) 질의자가 교단헌법 권징 제2절 행정소송 제151조 제152조 1항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예총재판국 사건 제102-35호)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사건 청구취지대로 서울강동노회 현 노회장 목사 김상옥 치리회장이 직접 행위(청구변경 5회 행정행위)가 너무 많아 노회의 공공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헌법수호 권리회복을 위하여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많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검증을 위해 원고피고의 양측변론이 수회 있을 줄 알았는데 국가 사법부 재판보다 못한 단 1회의 변론도 소환 요구받지 아니하고 법리적 원칙(규범에 의거 증거 다툼)보다 졸속으로 소를 지난 2018-07-19일 종결 판결하여 2018-07-30자로 서면 판결 통보로만 판시되어 송달받았다.

3) 살피건대 종결 주문과 판단 판시사항이 기본적인 교단 헌법본질에 반하여 심히 부합되지 못한 부당한 판시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침해 손상이 발생되었다.

4) 그리하여 사건에 관련된 판시에 법 적용 하자여부와 법적용을 등한시함으로 생산된 원인결과로 결정된 판시 판결문(결정)이 각각 판단부분이 각각 해당법 조문에 비추어 위배여부가 발생되었는지 아니면 치리회 차상급 총회재판국이 적법한 판단인지, 속히 헌법규정 유권해석을 속히 논하여 주셔서 판시가 합헌인지 위헌인지 또는 유효·무효인지 법리적 유권해석 판단을 요청합니다.

2. 교단 헌법 질의내용

질의1) 판결 판시한 「기각」 주문이 교단 헌법 헌법시행규정 제76조 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에 비추어 행정분과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을 받아들여 인용하고 심리했기에 판결이 기각이 아니라 본 취소소송이 「무효이다 아니면 유효이다」 등으로 주문판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잘못된 판단 '기각' 주문이 판결한 것에 대하여 헌법적 중대한 흠결사안이기에 법리적 법조문 주문이 위법성여부 유권해석 판단을 의뢰함.

〈질의1 설명〉

1) 원고가 2017-본안 소장에 청구하기를 치리회장이 위법한 행정행위 3회에 대하여 판단을 청구하였고, 추가로 청구변경을 헌법시행규정 제83조[행정소송의 청구변경] 권징 제159조[청구의 변경] 2항에 의거 청구의 변경을 서면으로 2018-01-09일자로 총회본부 사무국에 신청하였다.

2) 이러한 원고의 변경을 재판부가 판결이유 2. 판단 청구취지변경에 대하여 받아들인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헌법시행규정 제83조[행정소송의 청구변경] 4항에 근거 '본안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할 경우에는 취소판결 또는 무효 등 확인판결을 한다.'는 법적용 명시를 완전히 사실과 다르게 '기각' 이라는 판결을 하였다.

3) 시시비비를 헌법적으로 중대한 판단 책임을 지고 있는 본 장자교단 총회재판국 행정분과 재판부가 "어떤 사실에 대한 법률적인 법률지식 전문성 자질부족 결여로 인하여 확정적 고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이 행정소송이라는 원고의 취지 원심판결 취소소송의 본질을 넘어서 교단 헌법상 매우 잘못된 법리판단 사유가 되어서 소송을 제기한 권리자를 비롯하여 소속된 노회와 약 700여 노회원들에게는 엄청난 권리 손상발생은 반드시 회복되어서 본 교단 헌법 수호와 정통성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법적용 정당성을 위하여 분명한 유권해석을 속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원고가 청구한 서면으로 제출한 청구변경이 헌법 권징 제8장 행정쟁송 제159조 [청구의 변경]이유가 이유 있다 하여서 명시된 판결이유 1.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 변경한 사실과 다르게 또는 주요청구를 상당수 누락하여 확정적 고의를 한 것에 대한 판단흠결 결격여부에 대한 법리적 유권해석을 의뢰함.

〈질의2 설명〉

1) 원고는 청구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것을 발생시키는 각각의 기초사실(요건사실)을 주장하고, 그 요건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여 청구취지변경과 청구원인변경내용을 적법하게 서면으로 신청한 사실을 판결이유 1.기초사실에서 적시 인용 받아 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행정소송에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판단심리에 현출시키지 못함으로 원고는 기초 사실에 근거한 당연한 주장책임과 주장증명 권리를 부여받지 못했다.

2) 그리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원고의 청구 주요 기초사실이 확정적 고의로 판단유탈, 판단누락이 되어버려 권정 제159조[청구의 변경] 법 근거로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정당한 주장권리 기초요건 주요 청구변경 청구의 기초사실(요건사실)과 그 기초사실에 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다하기 위해 청구 변경한 기초요건 사실이 오히려 정당하게 권리를 부여받은 법규에 반하다.

3) 그리하여 예총재판국 사건 제102-15호 취소소송 판결선고일 2018-07-19

일자 판단에서 청구변경신청서 청구원인 행정소송의 종류 취소소송 변경 내용 현 치리회장(김상옥 목사) 추가 행정행위 4회(제61회기 노회촬요 공문서 기재 위법 유무판단), 5회 행위(피고소인들에게 송달해야 될 노회 고소장 미송달 위법 유무판단)에 대한 기초사실관계를 은폐하고 기망하여 판단을 확정적 고의로 인하여 판결에 중대한 흠결이 생산됐음으로 교단 헌법의 정통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됐는지 법리적 유권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재판관할과 재판비용

전남노회 건강한교회 박형대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청원서(2018.9.7.)” 건

해석 : 질의1) 헌법 권징 제7조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한다. 노회 총대일지라도 노회원과 총회원으로서의 행위가 아닌 사항은 당회재판국의 관할이다. 따라서 재판국 관할에 대한 판단은 노회기소위원회와 노회재판국에서 판단한다.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43조 제5항 2호에 의해 직권으로 기소의뢰 할 경우에는 재판비용이 면제되지만, 재항고에 대해서는 헌법시행규정 제43조 제2항 4호에 근거 재판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개요〉대한예수장로회 나주교회 당회가 최태훈·김맹진·나상기를 전남노회기소위원회에 기소의뢰하기로 결의하고 나주교회치리회장 명의로 2018. 06. 26. 전남노회치리회장에게 고발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최태훈은 현재 무임목사이고 김맹진·나상기는 전남노회 장로총대입니다. 하지만 전남노회 기소위원장은 김맹진·나상기 장로가 당회재판국 관할이라는 이유로 각하 처리한 것입니다. 각하 처리한 것에 대하여 불복하여 재항고를 하려고 하면서 두 가지 질의를 합니다.

질의1) 헌법 제3편 제2장 제1절 제7조에 의거하여 장로가 노회총대일 때에 재판관할 구역이 노회임에도 관할구역 위반이라는 이유로 각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부를 헌법위원회에 유권해석을 구합니다.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43조 제5항 제2호에 의거하여 나주교회 치리회장이 고발장을 전남노회에 접수할 때에는 재판비용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나주교회치리회장이 총회재판국장에게 재항고할 때에도 재판비용이 역시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부를 헌법위원회에 유권해석을 구합니다.

5. 교육목사 및 폐당회 기준

충주노회 대림교회 김찬영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서(2018.9.5.)” 건

해석 : 질의1,2) 교육목사는 현재는 적법하지 않다. 다만 제103회기 총회에서 헌법 개정을 결의한 사항으로 노회 수의 결과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질의3) 헌법 정치 제27조 제8항에 근거 공로목사는 20년 이상 시무해야 하고 노회에 은퇴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따라서 20년이 안되었다면 공로목사 추대 대상이 아니다.

질의4-1, 4-3) 제직은 헌법 정치 제68조에 근거 당회에서 결의하여 임명한다. 따라서 당회 결의 없이 임명된 제직들의 결의는 무효다.

질의4-2) 대리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7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8 제2항에 근거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자로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당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선정 초빙한 것은 합법적이다.

질의4-4) 헌법 정치 제65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31조에 근거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1년 후 첫 노회부터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인 미달로 3년 경과한 후 첫 노회부터 당회가 폐지된다. 장로가 1인일 경우에는 당회 미조직교회가 되며, 이 경우 첫 노회부터 시무장로는 치리권이 없다. 단, 당회 폐지 전까지 상회 총대권은 인정된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정치 제27조(목사의 칭호)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목사’가 적법한 것인가요? 또 본 교단 총회가 교육목사의 제도를 허락한 바가 있는지요?

질의2) 위임목사가 아닌 담임목사가 시무하는 교회가 부목사가 아닌 교육목사를 청빙하여 시무케 할 수 있는지요?

질의3) 헌법 정치 제27조 8.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로가 있는 목사가 노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시무하지 않은(노회 18년 시무) 은퇴 예정의 목사를 노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하여 공로목사로 노회에서 추대 결의를 할 수 있는지요?

질의4-1) 담임목사인 당회장이 당회원들의 당회 소집요구를 거부하고 당회 결의 없이 당회장 임의로 제직들을 임명하였다면 합법적인 제직 임명이라 할 수 있는지요?

질의4-2) 위의 당회장이 자신의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위해 당회의 결의 없이 대리당회장을 선정 초빙하였다면 그 대리당회장을 합법적인 대리

당회장으로 볼 수 있는지요?

질의4-3) 위의 대리당회장이 당회 결의 없이 당회장 임의로 임명한 제직들을 제직회원으로 제직회를 소집하여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결의하였다면 이 결의가 합법적이며 유효한 결의인지요?

질의4-4) 2017년 12월까지 시무장로가 4인이었던 당회가 3인이 은퇴하여 2018년 1월 1일부로 시무장로가 1인이 되었는데, 아직 첫 노회 전인 2018년 1월 1일의 시점에 시무장로 1인의 치리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 정치 65조, 헌법 시행규정 제31조에 의거 합법적인 것인지요?

6. 총회재판국의 재재심판결에 대한 권한

서울고등법원(춘천) 김복형 재판장 판사가 제출한 "사실조회서(사건2018나157지위확인)(2018.9.13.)" 건

해석 : 질의1) "강노 제129-194호 / 헌법해석 의뢰(2018.4.12.)" 해석 건은 "사무국-1437 / 헌법해석 통보(2018.7.18.)〉로 회신한 사실이 있다.(102회기 헌법해석사례 57번 참조.)

해석 : 총회에 접수된 재심서류에 대한 반려 및 재심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국에서 판단함이 적법하며 총회장이라 하여도 접수된 재심서류에 대한 반려는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적합하지 않다. 재심에 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6항에 근거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헌법 권징 제129조 제5항에 의한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기 전의 재판인 헌법 권징 제129조 제2항의 부적법 기각결정 및 제3항의 이유무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그 외에는 헌법 권징 제5장 상소에 따라 다시 심급에 따라 상소할 수 있을 것이나, 최종심인 총회재판국 원심판결 후 헌법 권징 제124조 사유로 재심판결을 받고 또다시 헌법 권징 제124조 사유로 재재심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재심을 반복하게 되고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없고, 지난 제102회기 총회 결의와 헌법개정으로 특별재심을 삭제한 총회헌법 정신 등을 종합하면 최종심인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에 대한 재재심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재재심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②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③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④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⑤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 한하여, 재재심이 가능하도록 극히 제한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일지라도 원심 재판국에서 상기 재재심사유에 대한 검토 및 재심개시결정(재재심)을 통해

신중하게 재재심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질의내용 : 오인근 씨 재심청원건(실상은 헌법에도 없는 재재심청원이다)에 있어서 예장총서 제102-89호 '사실 확인 회신(2018.2.19.)'에 의하면 총회재판국에 서류이첩 예장총서 102-26호에 의거 2017.11.6.에 있었고, 총회 서기부에서 잘못을 인지하고 예장총서 제102-56호에 의거 2017.12.15.에 재심청구서 반려요청〈반려요청공문 내용 2. … 귀 재판국에 이첩한 "오인근 씨가 제출한 재심청구서(2017.10.27.)는 총회헌법시행규정 제3장 제86조(개정 후 권징 제86조 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 3항)에 의거하여 재심청구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서기부의 행정착오로 귀 총회재판국에 사건 이첩하였으므로 이를 정정하여 해당서류(재심청구서)를 신속히 총회 서기부로 반려해 주시기를 요청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서를 보냈는데 총회재판국에서 이를 반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회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유래 없이 신속한 재판을 강행한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질의1) 재심접수와 서류 이첩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총회장의 결재를 받아 반려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하지 아니하고 헌법에도 없는 재재심재판을 강행할 수 있는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은지?

질의2) 제101회기 제1재심재판국에서의 최종 판결(2017.8.30.)내용을 제102회 총회석상에서 총회장께서 보고를 받아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여 최종 종결 처리된 사항으로, 정한 법정기한이 도과한(제127조 재심청구의 기간 …확정판결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사건을 다시 재재심재판을 할 수 있는지? (참고로 헌법이 개정되어 현행헌법에는 재심재판국이 없어졌음.)

질의2) 판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 권징 제34조에 근거 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 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총회재판의 판결은 총회보고와 관계없이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질의3) [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102-15호] 건과 [예총재판국 사건 제102-42호]건은 총회보고가 이루어졌다. (제102회기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재판국보고 24번, 60번 참조.)

질의내용 : 질의1) 강원노회장 안봉엽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29-194호 / 헌법해석의뢰(2018.4.12.)"에 대하여 귀 헌법위원회가 회신한 답변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판결들은 총회보고를 통하여 확정되는지, 총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판결의 효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질의3) 첨부한 해당 판결들이 총회보고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7. 피고인의 무죄 추정

경남노회장 신용부 장로가 제출한 “경남노제018-148호 / 노회장 자동 승계 관련 질의의 건(2018.9. 21.)”

해석 : 질의) 헌법 권징 제72조에 근거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형의 선고 또는 헌법 권징의 치리 받은 자로 볼 수 없기에 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 본 노회 선거조례에서는 “목사노회장은 현직 부노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목사 노회장 후보자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박수로 추대한다.”, “전항의 결격사유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헌법 권징의 치리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회장 승계를 앞두고 있는 부노회장이 기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회원들 사이에서 자격을 두고 이를 결격사유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로 나뉘어 있습니다.

8. 무임목사 자동해직 시기

경남노회장 신용부 장로가 제출한 “경남노제018-149호 / 시벌 기간 중 무임목사 자동해직 시기일 경우 질의의 건(2018.9.21.)”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27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19조에 근거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 된다. 목사직이 해직되면 목사 신분으로 받은 시벌은 종료된다.

질의내용 : 질의1) 본 교단 헌법에서는 “무임목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해직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무임목사 3년 시점이 1년 남은 자가 책벌을 받아 시벌 중에 있을 때(2019년 8월 말에 무임목사 3년이 되고, 이때 시벌기간이 약 1년 남았을 경우) 자동해직 및 시벌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당회원의 제한

여수노회장 강점석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45-61호 / 헌법시행규정 질의(2018.9.28.)” 건

해석 : 질의)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13항에 근거 과반수가 넘지 않을 경우 당회원이

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13항 “당회원 중 2촌 이내의 자나 배우자가 당회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과반수가 넘지만 않는다면 2촌 이내의 자나 배우자가 얼마든지 당회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인지. 예) 당회원 12명 중 부부장로 3가정일 경우

10. 대리당회장의 권한

순서노회장 김진국 목사가 제출한 “순서노 제41-97호 / 헌법 질의서(2018.10.1.)” 건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30조 제3항에 근거 대리당회장은 사회권은 있으나 결의권이 없다. 따라서 당회를 소집하여 진행하였으나 당회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재정부장 사임에 따른 새로운 재정부장 선출 및 노회 총대 선출은 대리당회장의 헌법시행규정 제30조 제2항에 명시한 헌법 정치 제68조 4항 임직권,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 기타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 헌금했는지에 대한 것과 재정부장 자격에 대한 것은 당회가 판단할 일이다.

질의내용 : 1) 현재, 순서노회 벌교제일교회는 담임목사의 당회장권이 정지된 상태이며, 총회 재판국에 상고한 상태이며, 벌교제일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노회 임원회에서 대리당회장으로 C목사를 파송한 상태입니다. 다음의 몇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으려고 합니다.

2) 노회 임원회에서 파송한 대리당회장이 임시당회를 소집하여 당회원 의결로 재정부장을 선출한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의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전 재정부장 B장로는 본인이 2018년 1월 중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휴직을 선언하였고, 금년 8월 임시당회 전에 본인이 휴무자임을 통보하였음.) 담임목사측에서는 대리당회장의 사회로 재정부장을 선출한 것이 인사권이므로, 이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임목사의 주장에 의하면, 대리당회장의 사회로 선출한 재정부장 A장로는 수개월 동안 헌금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재정부장을 맡을 수 있는지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대리당회장이 임시당회를 열어 노회 총대를 선출하는 것도 인사권으로서 불법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헌법위원회에서 본 사건이 정확하게 처리되어 교회의 안정을 얻고자 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1. 담임목사의 연임청빙과 증명서 발급 권한

경남노회장 신용부 장로가 제출한 “경남노제018-157호 / 헌법 질의 건(2018.10.5.)”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28조 제3항 제2호에 근거 담임목사 연임청빙은 3년으로 한다.
질의2) 헌법 정치 제63조 및 제68조에 근거 적법하지 않다.
질의3)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74조 제3항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4) 총회 제96회기 헌법해석 63번에 대한 인용은 해 교회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질의5) 각 노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발급에 대한 권한은 노회에 있다.
(제102회기 헌법해석사례 66번 참조.)

질의내용 : 1) 본 남지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있었으나 당회원 장로님들의 담임 목사 연임청빙을 부결하는 관계로 시초의 발단이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교인들이 반발하였고 다시 연임청빙을 논의하면서 6개월을 시한부 목회를 하기로 약속하고 연임 청원 절차를 거쳐 정치 제27조 2항에 의해, 2017년 10월 17일 제123회 경남노회 시에 통과 되었습니다. 문제는 6개월 후 서로 간에 약속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시비비가 있게 되었고, 담임목사는 계속 시무 중에 있습니다. 노회에서도 담임목사이며 당회장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질의1) 2017년 10월 14임 노회 시 연임청빙을 받은 현재의 최홍성 목사인 저는 남지교회 담임목사와 당회장권이 계속 유지 되는 것이 적법합니까?

2) 가처분신청에 의해 집행관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 저가 인도하는 교인 측은 본당에서, 일부의 교인들은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관 예배에는 본 노회의 은퇴목사 한 분이 노회와 당회의 허락 없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질의2) 은퇴목사님의 이러한 예배인도는 적법한지요?

3) 헌법시행규정 권징 제75조 3항에 의하면,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교단헌법의 최종확정 재판을 거치지 않고 국가기관에 고소, 가처분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일부의 교인들이 사회법에 가처분 신청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본 목사는 교회의 모든 일에 가처분 신청을 당한 상태입니다.

질의3) 위의 75조의 4항에 의하면 이런 행위는 소속치리회(노회)에 고소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한 사회법의 가처분 결정에 순응해야 합니까?

4) 제96회기 헌법해석사례 63번에 의하면, “당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전년도를 기준으로 예결산, 서리집사, 각 부서장을 임명하여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일부의 교인들은 모든 일을 자신들 마음대로 하고 있으며, 재정도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4) 당회의 결의 없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이들의 모든 집행은 위법이 아닌지요?

5) 저는 제123회 경남노회 정기노회에서 남지교회 담임목사로 연임청원을 받았고, 지금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 소속 최홍성 목사입니다. 그러나 경남노회 노회장 직인이 찍힌 소속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청원하였으나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5) 담임목사인 저가 경남노회 노회장 직인이 찍힌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나요?

12. 개교회의 원로목사 지위 박탈 여부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 윤종구 판사가 제출한 “사실조회 독촉(2018나 20218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사실조회신청서(2018.8.14.)” 3번 건

해석 : 질의3) 헌법 정치 제27조제7항에 근거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사로서 시무하던 목사가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목사다. 원로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예우는 지 교회 형편에 따른다. 헌법시행규정 제21조에 근거 당회에서 발의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 과반수로 가결하고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추대하기에 개별교회의 결의만으로 원로목사의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3) 개별교회의 담임목사가 20년 이상 시무하여 은퇴함과 동시에 원로목사로 추대된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규정 및 그 해석상 그 원로목사의 지위를 개별교회의 결의로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

13. 당회원의 제한

부산노회장 양봉호 목사가 제출한 “부노제186-97호 / 당회구성에 관한 질의(수정)(2018.9.20.)”

해석 : 장로가 되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 다만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13항에 근거 당회원 중 2촌 이내의 자나 배우자가 당회의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당회원은 될 수 없다.

질의내용 : 제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26조 직원선택 제13

항에 당회원 중 2촌 이내의 자나 배우자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여자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최초 당회구성)에서 남편 1명만을 장로로 세우기 위해서 공동의회 선택을 받고 현재 장로고시를 치르기 위해 이미 가을노회에 서류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장로고시를 허락할 수 있습니까?

14. 헌법위원회 해석 적용과 재판국 관할

전남노회 건강한교회 박형대 목사가 제출한 "헌법위원회에 질의 신청 처리 청원서(2018.10.23.)"

해석 : 질의1,7) 총회재판국이 헌법위원회 해석을 인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은 아니다. 다만 헌법 권징 제124조 제6항에 근거 재심청구사유가 될 수 있다.

질의2) 헌법 권징 제129조, 제130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3항에 근거 재심절차는 헌법 권징 제129조에 의한 재심개시절차와 헌법 권징 제130조에 의한 재심심판절차로 2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30일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판단은 재심을 담당하는 재판국이 한다.

질의3) 헌법 권징 제7조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재판국에 속한다. 노회 총대일지라도 노회원과 총회원으로서의 행위가 아닌 사항은 당회재판국이 관할이다. 따라서 재판국 관할에 대한 판단은 노회기소위원회와 노회재판국에서 판단한다.

질의4)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어 답변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5) 타 노회라고 하여도 개척감사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질의6)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어 답변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8)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어 답변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재판국장이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인용하지 않고 확정판결 한 것은 위헌이기 때문에 재심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질의2) 재심청구의 기간이 기간 내에 청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 또는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을 받는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어도 재심청구가 가능합니까?

질의3) 나주교회 당회의 시무장로가 전남노회의 총대가 되면 관할 재판국이 당회재판국입니까? 노회재판국입니까? 만일 노회재판국이라면 불기소처분은 원인무효입니까?

질의4) 전남노회 기소위원장이 고발인에게 불기소결정문을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절차법에 의거하여 효력이 없기 때문에 원인무효입

니까? 또한 불기소결정 통지문 말미에 표기한 연월일을 통지한 기산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체국 등기우편물 발송일 소인의 연월일을 기산일로 보는 것입니까?

질의5) 전남노회장이 타 노회 소속 목사의 개척감사예배에 참여하여 전남노회장의 명의로 순서를 맡은 일은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질의6) 전남노회장이 정치부의 보고도 없고 정기노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교회설립예식을 거행한 것은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만일 위헌이라면 교회설립예식은 원인무효입니까?

질의7) 전남노회장이 총회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인용하지 않고 결의한 것은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만일 위헌이라면 노회 결의는 원인무효입니까?

질의8) 전남노회장이 임원회에서 나주교회 임시당회장을 임의로 교체하는 행정명령은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만일 위헌이라면 새로 파송된 임시당회장의 직무는 원인무효입니까?

15. 다른 교단의 목사 청빙

서울관악노회장 강현원 목사가 제출한 “관악 제45-1호 / 미주장신대 졸업생의 목사고시 응시 및 목사안수에 관한 헌법해석 질의서 송부(2018.10.26.)” 건

해석 : 해당 목사가 개정 헌법시행규정 공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개정 헌법시행규정 공포 이전에 헌법시행규정 제23조에 근거 청목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헌법을 수강하고 청목과정을 수료한 뒤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 대신(총회 목사고시 없이) 청빙 받은 노회(정치부)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개정된 헌법시행규정 제23조에 근거하여 헌법과목을 포함하여 30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제102회기 헌법해석사례 26, 72번 해석 참조.)

질의내용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23조 개정이전에 이미 미주장신대를 졸업하였고 미주한인교회 등을 거쳐 서울관악노회 예수세계교회 시무중인데 헌법시행규정 제23조 개정으로 인해 헌법과목을 포함하여 30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지?

16. 피고 적격 및 경정

서울북노회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헌법 권징 제146조 제1항 및 권징 제75조2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의 건(2018.11.2.)”

해석 :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

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치리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의 규정이나 통상 관례에 따라 직무대행의 범위 내에서 행정소송의 피고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부적합한 소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소 각하 판결은 재판국이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 질의1) 우리 교단 헌법 권징 제146조 [피고적격 및 경정] 1.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리회장의 자격은 치리권을 가진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혹은 헌법이 정한 직무대행자로서 부노회장, 부총회장이 치리회장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치리회장인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유고상태이며 이를 대신할 부노회장, 부총회장이 부재할 경우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누구를 세워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헌법시행규정 권징 제75조 [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2.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소 각하 판결을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소송의 요건불비에 원고나 피고부적격도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치리회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에서 치리회장(당회장, 부노회장, 부총회장)이 부재할 경우 헌법 제146조 제1항에 위배되는 요건불비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재판국은 요건불비로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며 정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재심청구권자 자격

서울서노회 마포교회 김영재 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 요청 건(2018.11.9.)”

해석 :질의1) 제102회기 헌법해석사례 47번(해석 : 질의2-1) 기소위원장이 고소인(고발인) 상소 요청을 받고도 상소하지 않을 경우, 헌법 권징 제91조 제4항에 근거 고소인(고발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으로 갈음한다.

질의내용 : 질의1) 고발인이 헌법 권징 제91조 제4항에 근거 직접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질의2) 재심청구권자의 자격을 결한 고발인의 재심청구서를 근거로 판결 선고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인지요?

18. 연임청원 시 연금계속납입증명서 제출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3094 / 서류이첩 및 연구보고 요청(2018.11.14.)” 건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 제4항은 강제규정이지만 헌법 정치 제28조 제3항과 헌법 정치 제29조에 근거 보완이 필요하며, 보완 시까지 권고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 “사무국-3094 / 서류이첩 및 연구보고 요청(2018.11.14.)” 이번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된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시무목사 청빙과 연임청원)의 시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 위원회에 붙임과 같이 관련 서류를 이첩하니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 시행이 모법인 총회 헌법 관련 조항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여부를 연구, 검토하셔서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천동 제41-37 / 총회연금 미가입자의 각종 청원서류 접수 보류에 관한 질의(2018.10.8.)”

질의) 금번 103회기 총회에서 시행세칙으로 채택된 1) 청빙 및 연임 청원 시(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사, 군목) 연금 계속납입 증명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임목사는 3년마다 제출해야 한다. 2) 계속납입증명서는 6개월 이상 계속납입한 자에게 발급한다. 는 제6조는 연금가입자들만을 위한 시행세칙으로 본 시행세칙이 그대로 시행 될 경우 본 노회에 소속된 154명의 목사들 중 현재 총회연금에 가입 계속 납부 중인 68명의 가입자들만 개정된 세칙에 의해 향후 3년 후에도 목사직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103회기 총회임원회에서는 다시 한 번 개정된 세칙의 시행에 관하여 심도 깊게 재고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향후 연금 미가입 목사들에게 발생할 연임청원 서류 미접수 사태 및 무임목사 대량 발생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노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예측, 대응할 수 없어 이에 총회 임원회에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 담임목사 연임청원과 무임목사 지위

서울동노회장 김권수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99-7호 / 헌법 해석 요청(2018.11.2.)” 건

해석 : 질의1,2)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담임목사 연임청원 부결 결정 보류 청원”을 받았다고 대리당회장을 통하여 다시 연임 청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제101회기 헌법해석사례 9번 참조.)

질의3) 헌법 정치 제27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19조에 근거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따라서 노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북성교회에서 만 14년간 목회를 했던 조영규 목사의 연임청원이 당회(당회 장로 총 2명)에서 부결되고, 해 교회의 당회서기가 노회 정치부장에게 “북성교회 목사 연임청원이 부결되었으니 노회 회의안을 작성할 때, 조영규 목사가 무임목사로 기록되도록 건의, 조치를 요청” 하는 문건을 접수(교회 직인은 없고, 당회원 2인의 실인으로 발송했으며, 교회 직인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직인은 담임목사가 보관하고 있기에 찍을 수 없었다는 부전지 동봉)하였습니다. 또한,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해 교회 목사와 관련된 ‘담임목사 연임청원 부결 결정 보류청원’을 받았을 경우, 해 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대리당회장을 통해 그 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있는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이와 관련하여 총회 헌법위원회의 ‘청빙 부결된 자를 재청빙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청빙이 아닌 그 동안 목회를 해왔던 목사의 연임청원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또한,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북성교회 담임목사 연임청원 부결 결정 보류청 원]을 받았기에, 노회에서 [북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를 하고 난 후에 노회 공천위원회 보고 시 해 교회 목사의 부서 공천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던 바, 부서 공천과 관련된 이의제기에 대해 규칙부장이 노회석상에서 무임목사라고 말하였다면(규칙부장은 그 목사를 무임목사로 본다는 해석은 있었으나, 노회가 결의하지는 않고 노회 분위기를 위해서 공천하지 않았다면) 그 목사는 무임목사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장로의 자격

광주노회장 유갑준 목사가 제출한 “광노제32-146호 / 장로 자격에 대한 질의 (2018.11.5.)” 건

해석 : 제101회기 헌법해석사례 89번, 112번에도 불구하고 예총재판국사건 재심 제102-07호에 따라 “김성규가 장성읍교회를 스스로 떠날 것과 자신의 장로 직무에 대하여 시무 사임의사를 구두로 명확히 표현한 것과 그 표현을 행동으로 구체화한 점, 김성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자의사임한 자에 대한 복직 절차에는 제직회가 필요하지 않은 점, 장성읍교회 임순배가 폐당회 신청한 점 등은 헌법 정치 제47조 제1항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김성규가 복직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김성규는 장성읍교회 장로가 아니다.” 로 재해석한다. (제100회기 헌법해석사례 17번, 제101회기 헌법해석사례

34번, 제101회기 헌법해석사례 89번, 제101회기 헌법해석사례 112번 참조.)

질의내용 : 1) 본 노회 임원회에서는 장성읍교회 당회장 임순배 목사가 제출한 김성규 장로의 장로총대천서를 총회 재판국의 재심청구서(재심 사건번호: 제102-07호) 판결통보 판결이유에 『김성규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여 헌법 정치 제20조에 절차를 거쳐 장로직을 복권시킬 것을 공문으로 기재하여 장로총대천서를 반려하였습니다.

2) 그런데 장성읍교회 당회장 임순배 목사는 장로총대천서 서류반려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리하여 본 광주노회는 헌법위원회에 질의합니다.

3) 장성읍교회 당회장 임순배 목사의 주장은 재심 전에 총회 헌법위원회로부터 헌법해석 통보를 받은 내용을 근거하여 김성규 장로가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장로직이 유지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첨부: 전남노회장의 질의 건에 대한 헌법해석 예장총 제101-1106호)

4) 그러나 헌법위원회로부터 받은 헌법해석 통보는 장성읍교회의 상회인 본 광주노회를 거치지 않고 전남노회를 거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일이었으며, 본 노회는 이것을 가지고 재심을 청구하여 총회 재판국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피재심청구인의 무죄를 파기하고 책벌을 강구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김성규 장로에 대한 판단으로 헌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장로직을 복권시켜야 함을 판결 받았습니다.(첨부: 예장총재 제102-346호, 판결통보)

5) 본 노회가 장성읍교회 당회장의 잘못된 판단의 건으로 청구한 재심의 이유서를 첨부하오니, 위의 내용과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어 김성규 씨의 장로자격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21. 총회재판국의 재재재심 성립 불가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3586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18.12.14.)" -"사무국-3190 / 총회재판국의 재재심 판결에 대한 재재재심 성립여부 헌법질의(2018.11.21.)"- 건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6항에 근거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헌법 권징 제129조 5항에 의한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기 전의 재판인 헌법 권징 제129조 제2항의 부적법 기각결정 및 제3항의 이유무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그 외에는 헌법 권징 제5장 상소에 따라 다시 심급에 따라 상소할 수 있을 것이나, 최종심인 총회재판국 원심판결 후 헌법 권징 제124조 사유로 재심판결을 받고 또다시 헌법 권징 제124조 사유로 재재심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재심(재재심)을 반복하게 되고 이로 인해 법적 안

정성을 기할 수 없고, 지난 제102회기 총회 결의와 헌법개정으로 특별재심을 삭제한 총회헌법 정신 등을 종합하면 최종심인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재재심)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기 해석과 같이 예외적인 사유(기존 재재심 해석 예외적인 사유 5가지)에 한하여 "재재심"까지 허락할 수 있다고 하여도 "재재심"으로 그 억울한 피해를 충분히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총회 헌법 수호와 법적 안정성, 재판결과에 대한 권위를 지키기 위해 "재재재심"은 할 수 없다.

질의내용 : 헌법해석 보고 중 9)번 (총회장 질의/사무국-3190/총회재판국의 재재심 판결에 대한 재재재심 성립여부 헌법질의/2018.11.21) 해석은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법적 합목적성과 안정성 훼손 문제를 고려해 주시고, 이에 따른 총회 재판국의 위상과 권위의 실추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서 재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기 총회 헌법위원회가 총회장의 "사무국-56 / 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에 대한 이의절차 유무 관련 헌법 질의 (2018.4.12.)"와 강원노회장 안봉엽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29-194호 / 헌법해석 의뢰(2018.4.12.)"를 해석하면서 " .....(중략) 지난 제102회기 총회 결의와 헌법개정으로 특별재심을 삭제한 총회헌법 정신 등을 종합하면 최종심인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에 대한 재재심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재재심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②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③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④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⑤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 한하여, 재재심이 가능하도록 극히 제한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일지라도 원심 재판국에서 상기 재재심사유에 대한 검토 및 재심개시결정(재재심)을 통해 신중하게 재재심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헌법 질의하니 헌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총회 재판국에서 심리, 판결한 재재심 청구 건에 대하여 ①또다시 재재재심 형태로 이의신청, 재심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와 ②이를 총회 재판국이 심리,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③만약 불가하다면 재재재심 청구 서류를 총회 서기부가 서류 반려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임시당회장 파송

서울동노회장 김권수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99-16호 / 헌법 해석 요청 (2018.11.14.)” 건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7 에 근거 헌법 정치 제67조 제2항의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따라서 노회중일 경우 임원회 결의가 아닌 노회결의로 파송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가 정회중인 상황에서 소속교회의 당회장이 결원이 되었을 때, 헌법 정치 제67조 제2항에 의거 해 교회 당회원의 청원으로 노회 임원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지 여부

23. 위임목사의 권고사임

서울동노회장 김권수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99-15호 / 행정 질의 요청 (2018.11.14.)” 건

해석 : 위임목사의 권고사임은 헌법 정치 제35조 제2항에 근거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가 없을 경우 위임목사의 권고사임은 유효하지 않다.

질의내용 : 본 노회 소속 청량리중앙교회의 김식 장로 외 4명의 장로들이 교회 분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임목사인 김성태 씨를 권고 사임케 하도록 본 노회에 요청한 바, 이에 대하여 본 노회가 정회 중일 때는 어떻게 해석하고 답변해야 하는지, 또 위임목사의 직인이 없는 권고사임 요청이 유효한지?

24. 판결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 회원권 제한 여부

군산노회장 문준섭 장로가 제출한 “군노제80-5호 / 헌법질의(2018.11.19.)” 건

해석 : 질의1) 헌법 권징 제132조에 근거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한다. 만약 소속치리회에서 15일 이내 판결을 시벌하지 아니할 때는 헌법 권징 제133조 제3항에 근거 차상급 치리회에서 집행한다. 만약 소속치리회 및 상급 치리회가 시벌하지 않을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86조에

근거 확정 판결이후 60일 지나면 시벌 집행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질의2) 헌법 정치 제74조 제1항에 근거 노회비 미납에 대한 기본권(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등) 제한은 위법이다. 단, 청원권은 상회비 완납까지 보류할 수 있다. (95회기 45번, 96회기 12번 참조). 기타 상임부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에 따른다.

질의3) 헌법시행규정 제30조에 근거 임시당회장은 권징권이 있다. 권징 시 헌법 권징 제6조에 근거 재판절차에 의해 권징하거나, 헌법 권징 제26조에 근거 재판절차를 대신하여 당회결의로 권징 할 수 있다. 따라서 직권남용 혐의로 권징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국에서 한다.

질의4) 헌법 권징 제37조 제1항에 근거 재판국에 대한 기피신청 및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해당 재판국이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재판을 통해 책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 소속 치리회에서 15일 이내에 시벌하지 아니했고 차상급 치리회에서도 집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 책벌 받은 피고인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2) 군산노회 규칙 제10장 부칙 2) “상회비 미납교회의 회원 및 총대 장로는 상임부서 배정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해 교회는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다(상회비는 추계 정기노회 개회 30일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에 의거하며 몇 교회가 추계 정기노회 개회 30일 전을 넘겨 상회비를 납부했으나 노회는 이를 이유로 하여 회원 및 총대 장로 모두를 상임부서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산노회가 전에 헌법 질의에서 이러한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냐고 질의했을 때 헌법위원회에서 상회비 미납을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본권 차원에서 답변을 주신 것으로 사료 되는 바 똑같이 기한 내에 상회비를 미납했다고 상임부서를 배정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질의3) 임시당회장이 임시당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직권남용 혐의로 권징 할 수 있는지요? 또 대리당회장이 임시당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직권남용 혐의로 권징 할 수 있는지요? 헌법에 명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임원회에서 해 당회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기소의뢰 한 것이 적법합니까?

질의4) 재판국 전체회의에서 기피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하기로 한 것과 재판국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 찬성으로 판결문을 정정한 것을 직권남

용 혐의로 권징 할 수 있는지요?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받아보니 주문은 무죄이고 판결이유는 모두 유죄로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황당하여 판결문 정정 신청을 노회에 요청했고 노회는 판결문 정정 신청서를 재판국에 보내 와서 재판국에서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 재판국원들의 찬성으로 오류인 판결이유를 무죄 취지에 맞게 정정 하였던바 이러한 경우에 재판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노회 임원회에서 재판국장을 고발하고 기소 의뢰한 것이 적법합니까?

25. 기소위원의 임기

전남노회장 정종채 장로가 제출한 “전노제130-13호 / 헌법질의(2018.11.20.)” 건

해석 : 질의1~3) 노회 기소위원회의 임기는 헌법 권징 제56조 제3항에 근거 2년으로 하되, 헌법시행규정 제61조 제1항은 각 노회의 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노회 규칙에서 정함이 없을 때에는 1년으로 하며 노회에서 연임을 허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 권징 제56조 제3항에서는 노회 기소위원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임기 2년 후 연임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헌법시행규정 제61조 제1항은 노회에서 연임을 허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노회기소위원 임기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도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연임을 허락하였다면 당사자를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서로 충돌할 때에는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의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기 때문에 헌법시행규정 제61조 제1항은 헌법 권징 제56조 제3항에 의거 원인무효입니까?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61조 제1항의 노회의 규칙에서 정함이 없을 때에는 1년으로 하며 노회에서 연임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은 임기를 1년으로 할 때의 연임은 헌법 권징 제5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연임할 수 있는 기간이 정기노회 임원선출연월일을 기산일로 일회기 동안만 연임 가능하여 최고 임기는 2년까지로 제한하는 것입니까?

질의3) “정기노회 임원선출연월일 기산일로 일회기 동안만 연임이 가능하며 최고 임기는 2회기까지로 제한한다.” 라고 할 때에는 이미 만 2년이 경과되어 정기노회 임원선출일에 3년차 기소위원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면직하고 즉시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보선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26. 권고사임의 효력

군산노회 하영교회 민병채 목사가 제출한 “하영18-2호 / 헌법질의(2018.11.21.)” 건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69조 제2항에 근거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당회장은 당회를 소집해야 함에도 소집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 그러나 직무유기에 대한 판단은 관련 증거 등에 따라 재판국이 판단한다.

질의2) 당회재판국은 헌법 권징 제26조에 근거 목사에 대한 사항을 재판할 수 없다. 재판이 아닌 권고사임의 경우는 헌법 정치 제35조에 근거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가 처리할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회에서 사임권고 결의 효력 여부는 당회 결의로서는 효력이 인정된다.” 고 판단되나, 권고사임에 대한 효력은 상기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질의2-가~라)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어 답변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내용 : 1) 2016년 12월 11일 제직회에서 회원이 노회와 교단탈퇴 하자는 돌출 발언을 제직회장이 안건으로 받아들여서 찬반을 물어 찬성33표 반대13 표로 노회와 교단탈퇴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면 이 행위는 직권남용의 유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2) 제직회의 결의와 선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직회직후 1주일어간에 당회에서 수습하기 위하여 당회원 모두가 3회에 걸쳐 당회소집을 요청했지만 당회장이 묵살하고 2018년 11월 1일 현재까지도 당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위임목사를 당회에서 사임 시킬 수 없지만 권징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11개항 중 1개 이상의 죄과를 범한 때는 재판에 의한 권징 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의 규정에 의해서 2년 전부터 무려 4개항 이상의 위반사항을 지적하여 내용증명을 2~3회에 걸쳐 보내고 본인(목사)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시정이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사임권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질의1) 사임권고안을 본인(목사)의 문제를 본인이 당회장으로 처리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대리당회장을 초빙해서 1심재판국인 당회에서 처리하기로 본인(목사)을 비롯하여 당회원 전원이 홍00 목사님을 대리목사로 초빙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본인이 위임한 사임의 건을 당회에서 대리당회장 사회로 당회원 모두가 사임시키기로 결의했다면 당

회장인 본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의 여부와 사임결의의 효력의 여부를 해석바람.

질의2) 김대현 목사는 2017년 6월부터 자신을 따르는 성도를 데리고 교회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해 8월에는 엄연히 군산동신교회 제직회가 존재하는데도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만으로 제직회를 구성하였고, 2017년 10월경부터는 당회결의를 통한 자신의 사퇴결의를 한 것에 대한 군산노회 위탁재판의 결과가 시무장로들의 무죄로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산돌학교라는 곳에서 자신을 따르는 성도를 데리고 산돌학교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대현 목사는 군산동신교회와는 주소지가 다른 곳에서 자신을 추종하는 성도들을 데리고 동신교회의 원로, 은퇴 시무장로들의 명의를 도용하고 동신교회 이름의 주보를 사용하면서 당회의 어떠한 결의도 없이 헌금을 걷고 일방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가. 이와 같이 교회의 유일한 치리회인 당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직회를 구성하고, 헌금을 걷는 행위, 헌금을 사례비로 집행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나. 김대현 목사가 장로들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주보사용은 적법한 것인지?

다. 이러한 경우 김대현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라. 김대현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면 김대현 목사가 동신교회 명의로 걷은 헌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금횡령으로 보아야 하는지?

27. 원고 적격 및 피고 경정

서울동남노회 직전노회장 고대근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75-013호 / 헌법질의(2018.11.29.)”

해석 : 질의1) 회원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으로 원고적격여부를 다툴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헌법 권징 제145조에 근거한 원고적격여부는 관련 증거 등에 따라 재판국이 판단한다.

질의2)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치리회장 유고시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에 근거 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치리회 임원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개선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또한 노회규칙 및 규정 등에 의해 직

무대행의 범위 내에서 행정소송의 피고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피고적격 여부는 관련 증거 등에 따라 재판국이 판단한다.

질의내용 : “김수원 목사 외 13인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7.10.24.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청원 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소장에서 “헌법 권징 제155조(결의무효확인의 소)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총회재판국에 소장을 제출한 “치리회원인 김수원 목사 외 13인”이(14인의 원고들) 서울 마천세계로교회 본당에서 2017.10.24. 서울동남노회 73회 정기노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청원 건에 관한 결의할 당시에 원고들 14인이 (김수원 목사 외 13인이) 회의장에서 노회원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탈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김수원 목사 외 13인(원고1 김수원, 원고2 이용혁, 원고3 최규희, 원고4 고은철, 원고5 구탁서, 원고6 박봉화, 원고7 백종찬, 원고8 안장익, 원고9 이신성, 원고10 이옥기, 원고11 이재룡, 원고12 이현성, 원고13 장병기, 원고14 장원기)”이 제기한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노회서기 김용석 목사가 추가 안건 8건으로 접수되었다고 보고하고, 헌의위원장 김동흠 목사 부노회장이 노회석상에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청원 건”을 정치부로 보낸다고 보고를 마치고, 2017.10.24.자 오후 19시 20분 경. 서울마천세계로 교회 1층 청산홀에서 정치부서 모임인 정치부장 고대근 목사 외 8명이 참석하여 추가 안건으로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청원” 안건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노회원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적법하게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결의 승인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동남노회 정치부 모임에서 ”정치부원 원고4 고은철과 원고13 장병기”는 정치부 모임에 참석하여 치리회원(노회원)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치리회원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탈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에서 치리회장(노회장)은 정치부장 고대근 목사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가한 줄 아오며” 전노회원들에게 가부를 물었을 때에 전노회원들은 만장일치로 “허락이요”라고 하였고, 반대로 원고1 김수원 목사 외 13인은 “아니요”라고 권리의 주장을 하지 않

았으며, 회의장을 이탈하였고, 그리고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으로 인하여 명성교회 당회원(치리회원)이 아니므로 원고1 김수원 외 13인들에 대한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질의1) 이 경우에 원고1 김수원 외 13인들은 자신의 권리(치리회원의 권리)를 포기하고 회의장을 이탈한 자들이 무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성립되는 지 여부"와 ②"원고적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2) 또한 현재 제74회 서울동남노회가 2018.10.30.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오전 10시 20분 경. 개회가 선언된 후에 의장의 자격의 시비로 인하여 노회분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치리회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현재 총회재판국에서 계류 중인 재심청구 사건번호102-29호(접수일 2018.9.7)에서 "피고(피재심청구인: 현재 노회장 공석) 적격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8. 실종교인 처리, 담임목사 연임청원과 기산일, 헌의위원회의 반려 적법 여부

함해노회장 안요환 목사가 제출한 "함해 제185-22호 / 헌법 적용에 대한 질의서 제출(2018.12.3.)" 건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19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14조에 근거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게시판에만 게시할 경우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상적 절차에 의해 소집된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하고 법에 따라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단, 분쟁중인 교회에서 어느 일방이 적법 절차 없이 실종교인으로 처리할 수 없다.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74조 제3항에 근거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 또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최종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행정행위"나 "처분"과 관련 없을 경우는 사회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을 했다고 해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시무장로 확인증 발급은 노회와 당회가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3)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5에 근거 당회 미조직교회나 당회원 1명인 교회의 목사 청빙(연임청원 포함)은 헌법 정치 제28조 제3항과 제67조 제4항에 의거 대리당회장의 사회와 제직회 참석 과반수로 결정하며 이 경우 대리당회장이 서명한 제직회의록으로 당회록을 겸한다.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의 청빙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과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4) 헌법 정치 제42조에 근거 피택 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노회고시에 합격한 자를 지교회는 장로임직을 행한다. 통상 지교회에서 장로임직에 대한 당회의 논의가 있으나 당회결의 여부가 임직의 적법을 다투는 것은 아니다.

질의5) 매3년을 기준으로 하며 정기노회에서 허락받는다. 다만 교회 사정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도 노회에서 허락받아야 하며 기산일은 노회에서 허락받은 날로 하여 3년을 계산한다.

질의6) 현재 총회 재판국의 연임청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반려에 대한 적법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정치 제27조 제9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19조에 근거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목사로 3년이 경과하면 노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이 됨을 통지하고 노회에 보고한 후 무임목사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헌의위원회 청원서류 반려와 노회가 무임목사로 결의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질의7) 유·무죄를 다투는 모든 재판에 해당한다. 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7조 근거 시무목사(위임목사, 담임목사)가 된다.

질의8) 헌법 정치 제65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31조에 근거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1년 후 첫 노회부터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인 미달로 3년 경과한 후 첫 노회부터 당회가 폐지된다. 장로가 1인일 경우에는 당회 미조직교회가 되며, 이 경우 첫 노회부터 시무장로는 치리권이 없다. 단, 당회 폐지 전까지 상회 총대권은 인정된다.

질의9) 해당 재판국에서 관련 증거 등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내용 : 질의1) 교회가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당회와 제직회를 거쳐 계약서에 따라 시행 사에서 제공한 임시예배 처소로 이사를 하기 위하여 주보에 2개월 이상 광고를 하였고, 이사 준비도 함께 하였는데, 일부 교인(1/3미만)들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남으로 담임목사 명의로

당회 소집 및 복귀 권고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계속 다른 장소에서 모임을 갖고 있기에, 이에 6개월이 경과하여 '회원권 정지', 1년이 경과하여 '실종교인' 처리를 한 것이 적법한지?

질의2) 이탈한 자들이 교단 헌법(행정쟁송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 법원에 담임목사 직무정지가처분 등을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이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에 노회가 시무장로 확인증을 발급하여 준비서면에 제출케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3) 담임목사 연임청원 시에 당회가 미조직교회로 있을 경우에 반드시 당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대리당회장이 인도한 제직회 결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4) 교회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장로를 피택하고, 노회에서 실시한 장로고시에 합격한 자를 당회의 결의 없이 장로 임직을 거행한 경우 그 임직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5) 담임목사에 대한 연임 청원은 그의 임기 중 언제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임기가 만료될 무렵의 정기 노회에서만 가능한지?

질의6)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된 청원서류를 "교회가 분쟁중이고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헌의위원회에서 반려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그 시점에 총회재판국에서 담임목사 연임정원에 대한 재판중이였음에도 노회가 무임목사 처리를 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7)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9[재판계류 중의 당회장권]에서 권징 제72조(판결 확정 전 무죄 추정)가 적용되는 재판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권징재판, 행정쟁송재판 및 사회재판까지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권징재판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조항의 당회장이란 위임목사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담임목사도 해당되는 것인지?

질의8) 장로 3인 중, 1인은 제직회 석상에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뒤 타 교회에 등록하여 1년 이상 그 교회에서 교인의 의무(새가족 환영회 참석, 공예배 대표기도, 당회제직회 참석, 십일조 및 각종 헌금생활 등)를 행한 자이고, 또 다른 1인은 연말이 되어 정년 은퇴를 하여, 다음해 1월부터 장로 1인이 되었을 경우 미조직 교회가 되는지?

질의9) 질의8)에 해당하는 자들이 노회와 사회법에까지 담임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소송을 함에 있어 원고 자격이 있는지?

29. 임시당회장 파송

충남노회 남산교회 황정수 장로가 제출한 “임시당회장 파송 적법(2018.12.04.) 건”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7 제1항에 근거 헌법 정치 제67조 제2항의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가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그러나 제2항에 근거 전항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당회(제직회)를 할 때는 노회에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지 않을 때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파송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정치 제67조 제2항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1) 충남노회 138회기에 대회에서 유성상 목사가 남산교회 임시당회장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남노회임원회에서는 3일 후에 임의로 오영환 목사를 남산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했습니다. 2) 남산교회는 오영환 목사를 거부했고 합의, 연명(황정수 장로, 문미정 장로)하여 이진 목사(한마음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충남노회 임원회에서는 적법한 절차로 과반수의 결의 (합의 연명 요청) 청원했는데 거부했습니다. 3) 임원회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법 해석을 했습니다. 분명히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고 했는데 “요청한” 을 빼고 해석했습니다. 저희 남산교회는 장로 3인이 있는 조직교회입니다. 헌법 정치 제67조 제2항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 충남노회 임원회에서는 오영환 목사를 남산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영환 목사가 남산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이 적법한지 헌법 해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

서울서남노회장 한요섭 목사가 제출한 “총회총대선거결과 재검표에 관한 질의(2018.12.5.)” 건

해석 : 질의1,2) 헌법 권징 제158조 및 제159조는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에 적용되며 재검표에 대한 사항은 없다. 따라서 서울서남노회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없을 경우 임원회

에서 할 수 있다. 규칙 등에 의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총회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질의내용 : 헌법 권징 제158조(선거무효소송) 및 제159조(당선무효소송)에 의하면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재판국에 선거무효의 소 및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노회는 제103회 총대선거에서 “재검을 요청한다.”는 질의서에 의거하여 임원회의 결의로 재검표를 시행하여 논란이 있어 이에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 증거 없이 “재검을 요청할 시” 재검을 시행해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2) 선거무효의 소 또는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재검을 요청” 하면 임원회의 결의로 재검표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31. 노회 수습위원회 구성

진주남노회장 이성철 목사가 질의한 “진주남 제124-11호 / 헌법질의(2018.12.7.)” 건

해석 : 질의) 헌법 정치 제63조 제4항에 근거 교회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노회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는 어떤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노회임원회 권한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질의내용 : 헌법 정치 제63조 제4항[노회 임원회의 수습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질의) 노회 임원회가 교회분쟁사건 수습을 위해 수습위원회를 구성할 때 수습위원은 임원들로만 구성해야 합니까? 아니면 노회원 중 특정인도 수습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32. 장로 증원 선택

강원동노회장 이규동 목사가 제출한 “강원동 제131-40호 / 장로선택에 대한 헌법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질의(2018.12.10.)” 건

해석 : 질의1,2) 헌법 정치 제64조 제2항에 근거 최초의 세례교인(입교인) 30인에 한하여는 장로 2인을 동시에 혹은 선택 후 추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30인당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수년 후 장로 1인이 은퇴하였다고 하여도 최초 세례교인(입교인) 30명에 대해서 2인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장로 1인을 선택(증원)할 수 있다.

질의내용 : 헌법 정치 제10장 당회 제64조 당회의 조직 2항에서 “최초의 세례교인(입

교인) 30인에 한하여는 장로 2인을 동시에 혹은 1인을 선택 후 추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30인당 1인씩 증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서

질의1) 최초의 세례교인(입교인) 30인에 한하여는 장로 2인을 동시에 혹은 1인을 선택한 후 추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에서 최초 세례교인(입교인) 30명으로 장로 2인을 선택하여 임직하고 조직당회가 되었다가 수 년이 지나서 장로 1인이 은퇴를 했다. 이 경우 세례교인(입교인) 30명으로 장로 1인을 선택(증선)할 수 있는지? 또는 31명 이상 60명이 되어야 장로 1인을 선택(증선)할 수 있는지?

질의2) 조직당회로 장로 2인 시무 중 세례교인 31명 이상 60명 이하인 경우 장로 1인을 선택(증선)할 수 있는지?

33. 지교회의 부동산 재산권

대구서남노회장 임영태 목사가 제출한 “대서남노 제183-9호 / 교인이 없는 교회의 재산권에 관한 질의 건(2018.12.12.)”

해석 : 헌법 정치 제97조 제1항에 근거 지교회의 부동산은 지교회의 소유로서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개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개인 명의로 등기한 지교회 소유의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2항에 근거 지교회의 부동산과 동산의 관리, 처분, 사용, 지분에 관하여는 헌법 정치 제9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대표자는 당회장으로 한다. 헌법 정치 제67조에 근거 당회장은 그 교회의 시무목사(위임목사, 담임목사)가 된다. 따라서 은퇴목사는 그 교회의 시무목사가 아니므로 대표자가 될 수 없고 대표자로서 등기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설령 은퇴목사가 대리당회장이 될 수 있다고 하여도 헌법시행규정 제30조에 근거 부동산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교회가 대표자가 없고 교인도 없을 경우 헌법 정치 제95조 제2항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그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에 근거 노회에서 관리함이 적법하다.

질의내용 : 대구서남노회 소속 이강룡 은퇴목사가 1986년 9월 9일부터 2011년 10월 10일까지 염광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던 중에 교인이 한 사람도 없어 2011년 10월 11일부터 전도목사로, 2015년 10월 6일 70세로 은퇴목사가 되었으며, 대지409㎡와 건물(1층 점포, 2층 교회와 사택)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염광교회 대표자 이강룡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은퇴목사는 은퇴와 함께 모든 공직에서 종결된다.” 는 조항에 의하여 염광교회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됨이 마땅하나 본 건물을 사유재산처럼 임대하고 있어, 이 물건을

대구서남노회 유지재단에 증여하여 관리케 하자는 노회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대구서남노회 전권위원회가 소를 제기하여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 건물의 소유 및 관리권이 어느 쪽에 있는지 총회의 견해나 판례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은퇴목사 신분

대구서남노회장 임영태 목사가 제출한 "대서남노 제183-8호 / 은퇴목사의 신분에 관한 질의 건(2018.12.12.)"

해석 : 헌법 정치 제27조 제10항, 제74조 제2항에 근거 목사(은퇴목사 포함)는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개 교회에 교인이 될 수 없다.

질의내용 : 은퇴한 목사가 시무한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35. 교단 탈퇴자의 재심 청구권 유무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3626 / 교단 탈퇴자의 재심청구권 유무 헌법질의(2018.12.18.)" 건

해석 : 질의1) 헌법 권징 제3조 및 제4조,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4항에 근거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 단, 외국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의 직원이나 혹은 종교적 이유로 귀국치 못하는 자가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교회에 직원으로 봉사할 때도 적용된다. 따라서 본 교단의 소속된 자가 아닌 경우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교단을 탈퇴한 자는 재심도 청구할 수 없다.

질의2) 총회에 접수된 재심서류에 대한 반려 및 재심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국에서 판단함이 적법하며 총회장이라 하여도 접수된 재심서류에 대한 반려는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교단을 탈퇴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4항에 근거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접수를 거부할 수 있거나 재판국에 조건부 이첩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재판국 판결로 면직, 출교된 자가 그 이후 교단에 탈퇴하여 소속 노회에서 제명되었는데 2년여 시간이 경과되었고, 교단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직, 출교 판결(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총회 재판국이 이 재심청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위 면직, 출교 판결(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권을 총회 서

기부가 재심청구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반려하지 않고 재심청구권 성립여부를 확인 후 처리하도록 총회 재판국에 조건부로 이첩한 행정처리는 적법한지 여부

36. 은퇴목사의 소속

부산노회 신창수 은퇴목사가 제출한 “총회헌법위원회 해석 청원의 건(2018.12.15.)”

해석 : 질의1) 노회 소속이다.

질의2) 노회이다.

질의3) 교인이 대리당회장이 될 수 없다. 헌법 정치 제27조 제10항, 제74조 제2항에 근거 목사(은퇴목사 포함)는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개 교회에 교인이 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은퇴목사(공로, 원로, 은퇴)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노회? 교회? 목사가 70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 노회의 결의로 공로(20년 이상) 또는 원로(20년 이상)로, 그 외는 은퇴목사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 정치 제27조(목사의 칭호) 제7항에 원로목사에 대해, 제8항에는 공로목사에 대해, 제9항에는 무임목사에 대해, 제10항에는 은퇴목사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정치 제11장(노회) 제74조(노회원의 자격) 제2항 “공로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 전 노회장, 전 부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목사의 소속은 노회입니까 교회입니까? 즉 은퇴목사는 교인입니까?

질의2) 그리고 은퇴목사의 권징의 주최는 당회입니까? 노회입니까? 헌법 권징 제5조 제2항에는 교인에게 과하는 벌이 있고, 제3항에는 직원(항존 및 임시직원)에게 과하는 벌로 구분하고 있는데 은퇴목사(원로, 공로)가 죄를 지었을 때 제2항에 의하여 벌을 받게 됩니까? 제3항에 의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은퇴목사가 교인이면 1심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은퇴목사는 2심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질의3) 헌법 정치 제67조 제5항에는 대리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고 했는데 교인이 대리 당회장이 될 수 있습니까? 따라서 목사가 은퇴를 하게 되면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항존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퇴목사는 노회의 언권회원이며 노회가 관리하는 직임이라고 생각하는데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37. 재판비용 미납의 판결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196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19.1.14.)” -진주남노회 양승주 목사가 제출한 “진주남 제123-23호 / 헌법질의(2018.9.10.)” 건

해석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80조에 근거 재판국장은 직권으로써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재판비용 예납영수증 사본 첨부 및 피고에게 송달할 부본 첨부 등의 여부를 심사하고, 만약 이들을 흠결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써 기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납금을 회수하였다면 헌법시행규정 제67조 제1항4호 “고소, 고발이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나 재판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질의2) 상고에 관해서는 헌법 권징 제108조에 근거 헌법 권징 제95조를 준용하기에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소의 제기기간은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부전지를 첨부하여 재판국에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접수여부는 재판국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3-1,3-2) 헌법 권징 제121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72조에 근거 당회결의 혹은 당회장직권으로 위탁재판을 청원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전지를 첨부하여 재판국에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접수여부는 재판국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4-1) 헌법시행규정 제60조 제5항에 근거 헌법 권징 제47조에 의한 화해의 당사자는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이며, 고소인(고발인)이 화해의 내용에 관하여 동의를 하여야 그 화해가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 권징 제128조의 재심청구권자는 소를 취하할 수 있다. 따라서 화해의 효력과 재심취하는 별건이다.

질의4-2) 헌법 권징 제128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73조에 근거 재심청구권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196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19.1.14.)” - 진주남노회 양승주 목사가 제출한 “진주남 제123-23호 / 헌법질의(2018.9.10.)”의 질의2), 질의3) 해석은 부전지가 첨부된 권징사건 서류에 대해서는 총회재판국과 노회재판국이 판단하여 보정지시하거나 서류반려 하는 등 절차 및 서류 미비에 대해서는 해당 치리회 재판국이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는 점을 면밀히 감안한다면 “재판국이 판단할 문제임”으로 재고해서 재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남노회 양승주 목사가 제출한 “진주남 제123-23호 / 헌법질의(2018.9.10.)”〉

교회 담임목사의 횡령문제로 원로추대로 인해 분쟁 중에 있습니다.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안수집사 6명의 이름으로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장로 3명과 집사 2명을 당회에 고발을 하여서 담임목사 재판국장, 부목사 기소위원장, 등 재판국을 구성하여 피고발인들을 2차에 걸쳐 소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발인들이 재판국 구성 등 행정행위에 대해 노회에 행정쟁송을 하였던바 고소(고발)하여 2개월 경과한 가운데 고발인들이 재판 비용 50만 원을 환수 하였으므로 임시당회장 주관하의 당회 중에 이 사실에 대하여 고소 취하(무효)됨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기 소송한 행정쟁송을 노회에서 무효하다 하였으나 총회재판국과 재심국에서 담임목사의 행정행위가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헌법 권징 제67조(불기소처분) 1의 ④. 다)항의 고소. 고발이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기소권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질의1-1) 당회에 고발하였다가 취하한 고발 건을 당회원으로서 취소됨을 결의하였던 장로들을 포함한 5명의 이름으로 당회를 통하여 노회에 위탁재판 청원을 하였습니다. 이에 노회 기소위에서 헌법 제52조 3항에 의해 후고발인들의 고발을 반려한다고 고발을 반려(불기소)하였던바 총회 재판국에서 예납금만 회수하여 간 것은 고발 취하(무효)가 아니라고 노회기소위에 기소하도록 명령 하였습니다. 재판이 성립하려면 권징 제28조 재판비용 예납에 의해 반드시 재판비용을 예치해야만 되며 예납하지 않으면 소송(기소)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비용 예납금을 회수하여 간 것은 취하(무효)가 아닌지요.

질문1-2) 예납금을 회수해 가도록 협조한 부목사, 재정부장, 회계 등이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자들로서 당회에서 당회의 결의로 임시당회장이 취하(무효)하였다 선포하였는데 총회 재판국(재항고 제102-29호)에서 취하(무효)가 아니니 노회기소위에 기소하라는 것이 옳은지요.

질의2) 예장총재심 제101-28호 행정쟁송에 관련하여 피고인(상고인)이 노회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상고장을 노회에 우편으로 송달하였다 하나 상고장을 노회에서 받지 못한 가운데 부전지를 첨부하여 총회에 직접 접수하므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회재판 결과 노회 재판(원심)에서 행정행위가 불법하여 무효하다 하였으나 총회재판국에서 헌법위원회의 해석(헌법위 제101-863호)도 시행하지 않고 헌법

에 반하는 피고(상고인)의 행정 행위가 유효하다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고심에 부전지를 첨부하여 피고인(상고인)이 총회(재판국)에 직접 접수하였다면 적법합니까.

질의3-1) 사건번호 예장총재 제101-54호, 102-11호(병합). 상고건에 대하여. 노회재판국의 재판 중 피고인(상고인) 장로는 노회원으로 노회 관련한 행위를 제외한 문제는 당회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노회재판국에서 당회원들의 문제로 당회에서 재판이 어려우니 위탁재판을 요청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여 임시당회장이 위탁재판 청원서를 노회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시당회장이 철회하여 고발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고발인들은 이러한 사실에 부전지를 첨부하여 위탁재판을 진행하고 재판하여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상고하여 총회재판국에서 위탁재판에 대하여 하자가 있으므로 원심재판을 무효하다. 고 기각하였습니다. 치리회장인 임시당회장이 위탁재판을 거부하여 고발인 들이 부득이 부전지를 첨부하여 위탁재판을 진행하여 판결한 위탁재판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적법한지요.

질의3-2) 현재 헌법은 교인의 기본권인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게 만든 줄 압니다. 치리회장이 재판을 거부하게 되면 부전지를 첨부하여 상회 치리회에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교인의 기본권을 간과한 판결이 아닌지요.

질의4-1) 사건번호 예장총재 제101-38호(재심 제?호) 재심을 요청하여 재판 중에 고소인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기소위원장이 화해한다고 취하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헌법 제60조 5항의 헌법에 반한 내용으로 취하가 성립될 수 있는지요.

질의4-2) 위 질의4-1)의 내용에 관하여 재판국이 종결 처리한 판결이 잘못되었다면 노회 기소위에서 기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38. 노회 임원 선거

충주노회 새암교회 엄철수 목사가 제출한 “2018-1101 / 총회 헌법 질의 청원에 관한 건(2018.11.1.)”

해석 : 질의1,2) 노회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정치 제75조에 근거 충주노회 규

정 및 선거관리세칙에 따른다. 따라서 선거관리세칙에 관한 사항이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충주노회가 결정한다.

질의3) 노회는 노회 산하 각 부서 및 위원회의 활동과 사업을 감독하고 잘못됨을 바로잡을 권한이 있다. 그러나 재판국의 판결은 노회 결의로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헌법 권징 제91조 및 제94조에 근거 차상급 재판국에 상소(항소)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충주노회 선거규정의 조항은 사회 일반의 경험칙상 단독 입후보자에 대한 의사가 없이 노회원 전원 또는 노회원 대부분의 찬성과 지지를 전제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로 보건대 노회원 다수가 단독 입후보자를 지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 선거규정을 적용하여 단독 입후보자라는 이유만으로 투표 없이 박수로 당선을 확정한다는 것은 노회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처사가 아닌지?

질의2) 부노회장 및 임원의 선거권을 가진 노회원이 본회 석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원 선거에 관한 결정 또는 보고를 받아들여서 수용하거나 받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요?

질의3) 노회원이 심각하고도 명백한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관한 사실 및 그 동안의 고질적인 불공정 재판의 관행을 알게 되었음에도 재판의 독립성이란 미명으로 이를 묵인하고 재판국의 보고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함이 옳은지요? 노회원에게는 재판국을 포함하여 노회 산하 각 부서 및 위원회의 활동과 사업을 감독하고 잘못됨을 바로잡게 할 권한이 있지 않은지요.

39. 미조직교회의 당회장권, 제직 임명권, 연임청원 승인권

충주노회 대소교회 이래혁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에 관한 요청의 건(2018.12.3.)”, 충주노회 대소교회 이래혁 목사가 제출한 “2019-1 / ‘총회 헌법위원회 헌법질의 보충자료 제출’ 의 건(2019.1.21.)”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67조 제1항에 근거 미조직 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당회원이 은퇴 전에 또는 확정판결 전에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회의 결의 없이 제직을 임명했다면 적법하지 않다. 당회원이 은퇴하고 익년에 당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헌법 정치 제67조 제4항에 근거 미조직 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질의2,4) 제직은 헌법 정치 제68조에 근거 당회에서 결의하여 임명한다. 당회원이 은퇴 전에 또는 확정판결 전에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회의 결의 없이 제직을 임명했다면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당회 결의 없이 임

명된 제직들의 결의는 무효이다. 그러나 당회원이 은퇴하고 익년에 당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헌법 정치 제67조 제4항에 근거 미조직 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시찰회는 경유기관으로 헌법시행규정 제9조에 근거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질의3) 연임청원이 개 교회의 절차를 거쳐 왔다고 하더라도 헌법 정치 제29조 제1항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따라서 노회는 연임청원 서류에 대한 논란 등이 있을 경우 처리 보류를 결의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2017년 12월 31일에 장로 3인(박원준, 김주석, 김태성)이 은퇴하였고, 장로 1인(이진희)은 충주노회재판국에서 정직2년을 판결(2017년 9월 4일)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항고하여 총회재판국에서 2018년 2월 13일 면직출교 판결되었습니다. 시무장로가 1인(이진희 장로)인 상태라서 담임목사가 2018년 1월 7일 주일에 교회운영을 위한 제직임명을 하였습니다. 적법한지요?

질의2) 임명된 제직회에서 과반 수 이상이 연임청원에 대한 결의를 하였고, 연임청원서를 시찰 경유하기 위하여 시찰회에 접수하였으나 시찰장은 대소교회 은퇴장로 박원준 씨와 김태성 씨 외 5인이 연임청원에 반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시찰장이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적법한지요?

질의3) 정치부에서도 당회를 경유하지도 않은 탄원서를 접수하여 연임청원서를 노회 본회에서 논의 해줄 것을 청원하고, 제13회기 충주노회 가을노회에서 정치부 보고 시간에 제직회 결의가 있는 제직회의록을 첨부한 연임청원을 재판판결 후까지 보류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적법한지요?

질의4) 2017년에 3인의 장로가 은퇴하여 2018년에는 장로가 1인인 상황이었는데 정기노회 후에 정치부에서는 당회의 결의가 없이 제직을 임명한 것은 무효이며 그 제직회에서 한 연임청원을 위한 결의를 한 것은 무효라 하여 무임목사로 처리할 것을 노회 임원회에 공문을 보냈는데 적법한지요?

40. 사고노회 판단의 주체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가 제출한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의 사고노회 규정 시 그 ‘판단의 주체’에 관한 헌법해석 질의의 건(2018.12.4.)”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에 근거 “치리회의 사고 여부는 노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따라서 상급 치리회 또는 노회 등 어느 주체의 의해 ‘사고노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치리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사고노회가 된다. 다만,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2항에 근거 총회(폐회 후 총회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으며,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7항에 근거 총회 임원회가 사고노회로 규정한 경우는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된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에 따르면 “치리회의 사고 여부는 노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노회 여부의 행정적 ‘판단’ 또는 ‘규정’은 노회와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중 어느 치리회가 하는지요?

41. 담임목사 연임청원

충주노회장 길만호 목사가 제출한 “충주노회-391 / 헌법 질의(2018.12.11.)” 건

해석 : 질의1) 일부 항존직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불명확하고 당회의 결의 없이 임명된 자격 없는 제직들이 결의한 사항은 무효이다. 그러나 당회원이 은퇴하고 익년에 당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헌법 정치 제67조 제4항에 근거 미조직 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이 경우는 제직회 결의가 유효하다.

질의2) 헌법 정치 제28조 제3항 제1호에 근거 연임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당회 미조직교회는 제직회 회의록을 제출한다. 연임청원에 대해서는 노회가 결의하거나, 서류 미비 및 절차 하자의 경우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노회가 총회재판 확정 판결 시 까지는 보류하였다고 하면 연임청원에 대한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질의3) 대소교회 및 이래혁 목사에 대한 지칭보다 헌법의 해석이 충주노회에 사건을 기반으로 질의 되었고 내용과 부합하므로 헌법 해석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충주노회 대림교회 김찬영 목사가 제출한 헌법질의서(2018.9.5.)에 대한 답변은 “2018년도 당시에 임명된 제직은 당회 결의 없이 임명되었기에 무효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직들에는 항존직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임청원 서류에는 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찬성과 반대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 항존직들의 의견

(찬성인지 반대인지)을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제직회의는 유효한지, 무효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제직회는 유효인지요? 아니면 무효인지요?

질의2) 이래혁 목사는 지난 본 노회 제13회기(2018.10.11.~12.) 정기노회 시 연임청원 기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상태가 고려되기도 하고, 소송 중에 있기도 하여 본회(2018.10.11.~12.) 정치부 보고에서 총회 재판 확정 판결 시 까지 연임청원 건을 유보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이 경우 이래혁 목사의 연임청원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질의3) 지난 충주노회 대림교회 김찬영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서(2018.9.5.)"에는 질문에 대소교회라든지, 이래혁 목사라고 지칭하지는 않았는데 노회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42. 타국시민권자의 위임목사 청빙

부산남노회 수안교회 정추용 장로가 제출한 "노회가 반려한 문서 내용의 법규 해석 답변 요청(2018.12.10.)" 건

해석 : 타국 시민권자라도 시민권 포기를 조건부로 노회에서 허락할 수 있으며, 위임목사의 경우는 헌법시행규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되며 위임식 전의 목사의 칭호는 담임목사이다.

질의내용 : 질의) 부산남노회 소속의 수안교회는 호주 시민권자인 엄정길 목사를 2017년 5월 7일 제직회에서 담임목사로 청빙하였으며 노회가 2017년 9월 30일 까지 기간을 연기하면서 시민권포기 확인서(시민권 상실증명서)를 노회에 제출 후 담임목사 청빙을 허락하다로 하였다. 다시 2018년 6월 30일 까지 기간을 재 연기하연서 시민권포기 확인서(상실증명서)를 노회에 제출 후 노회가 담임목사 청빙을 허락하다로 재 연장하였다. 2018년 12월 5일 까지 호주시민권이 포기 안 된 사항입니다. (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 2항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지요?) 2018년 7월 1일-2018년 12월 5일 까지 시민권상실증명서가 당회나 노회에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담임목사의 실질적 효력이 없으며 정상적인 당회 소집이 불가능하기에 선임장로 겸 당회서기로 법과 규례와 하나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회에 법규 해석을 질문하였으나 부남 제77-21호로 반려되어 이것을 부전지로 첨부하여 질문 문서를 보내오니 문서 내용의 질문 해석 답변서를 2018년 12월 24일 까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3. 목사의 연임청원 승인과 무임목사

충주노회 이덕식 목사가 제출한 “헌법질의에 관한 건(2018.12.19.)”

해석 : 질의1,2) 노회는 연임청원 서류를 접수하여 서류의 진위 및 적법을 판단할 수 있다. 그 판단 하에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할 수 있고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질의3,4) 현재 재판국의 연임청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헌법 정치 제27조 제9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19조에 근거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목사로 3년이 경과하면 노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이 됨을 통지하고 노회에 보고한 후 무임목사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라고 판단된다. 가처분결정 혹은 재판확정이 되지 않으면 당회장의 지위를 유지한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정치 제28조 3항 ①에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당회 미조직교회는 제직회 회의록을 제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노회는 지교회가 구비하여 제출한 담임목사의 연임 청원서류를 접수하기만 하면, 제직회의 적법한 구성 등 지교회의 형편이나 청빙 서류의 법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거나 살핌이 없이 무조건 연임 청원을 허락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질의2) 헌법 정치29조 제1항에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함은 노회가 청빙 청원을 부결함으로 청빙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의3) 무임목사로 있던 자가 재판 중에 있으므로 담임 목사 연임 청원 건을 재판 확정 판결까지 노회의 결의로 보류를 하였다면 당회장 권한이 살아 있어 당회장의 직무나 제직회장의 직무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야 합니까?

질의4) 2017년과 2018년 당회의 결의 없이 서리집사를 임명하여 담임목사 연임 청원한 제직회의는 무효라는 헌법위원의 답변(충주노회/김찬영 목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담임목사 연임 보류된 해 교회 목사는

당회장의 권한으로 2019년 서리집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까?

44. 지교회의 교단탈퇴

인천동노회장 이범진 목사가 제출한 “인천동 제42-15호 / 질의서(지교회의 교단탈퇴에 관하여)(2018.12.28.)” 건

해석 : 노회가 소속 교회가 탈퇴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87조에 근거 탈퇴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조치로 치리회에서 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부에는 탈퇴로 인한 제명이라고 쓰며 이 제명의 효과는 재판에서 면직과 출교책벌을 병과하여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본 인천동노회에 소속 되어있는 예수소망하나교회 김윤환 목사가 국제독립교회 연합회에 진작에 가입되어 있음을 노회에서 확인하였으나, (예수소망하나교회가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국제독립교회 연합회 사무총장과 통화로 확인했으며, 홈페이지에 예수소망하나교회 사진과 김윤환 목사 사진 게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소망하나교회에서는 인천동노회 탈퇴사실을 신문에 공고하거나 노회에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회가 총회 헌법 권징 제3장 87조 2항에 의거하여 예수소망하나교회가 본 교단을 탈퇴함과 김윤환 목사의 면직 및 제명을 처리(신문에 공고) 할 수 있는지요?

45. 고소 취하의 시점과 재판비용 반환

부산남노회장 황형찬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77-61호 / 헌법질의(2019.1.2.)”, 부산남노회장 황형찬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77-64호 / 헌법질의 수정·보완(2019.1.4.)” 건

해석 : 질의1) 헌법 권징 제50조에 고소취하의 시점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43조 제4항에 근거 예납한 재판비용의 금액은 재판의 결과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고 그 치리회에 귀속한다.

질의내용 : 헌법시행규정 제43조 제4항 2호에 의거 고소취하로 인한 기소기각의 판결한때는 예납한 재판비용의 금액을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1) 그러면 고소취하의 시점은 언제까지인지요?

질의2) 기소위원회가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기소권 없음, 각하)을 결정하였을 시 예납한 재판비용은 반환해야 하는지요?

46. 총회총대 선출 방법

충청노회장 박선용 목사가 제출한 “충노대외 제69-51호 / 규칙 해석사례 관련 총회 질의 요청 (2019.1.3.)” 건

해석 : 질의1,2) 노회 내 전체 시찰회를 의미하며, 목사와 장로를 구분해야 한다. 다만 총회 총대 선거에 대한 사항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각 노회 규칙에 따라 선출하되 최종적으로 노회에서 선출 또는 인준 등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질의내용 : 지난 제69회기 정기노회에서 규칙부에 위임한 「4개 시찰(청주서, 진천, 증평, 괴산)의 “총회 총대 선출 시 우선 7개 시찰에 목사 1인, 장로 1인을 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투표로 선출한다.”」에 대한 안건을 연구하는 가운데 총회의 질의해석에 관한 이견으로 총회에 질의요청을 합니다.

가. 총대 파송관련 총회의 질의해석

1)「제99회기 총회 헌법 해석사례 31. 총회 종대 선출방법의 질의해석」“노회의 총회 총대 선출은 노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시찰회에서 안배하는 경우 그 수는 전체 총대수의 반수를 넘지 않아야 하며, 그 시찰회에서 추천되더라도 노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2)「제103회기 총회(해석) 보고 제4편 규칙 해석사례모음 7. 충청노회장의 질의 해석」 질의1 해석, “노회가 총회 총대 선출방법을 노회(본회)의 결의로 제정한 규칙대로 선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노회(본회)에서 선출(승인)해야 한다.” 질의1)「총회 총대 선출시 우선 7개 시찰에 목사 1인, 장로 1인을 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투표로 선출한다.」에 대하여 노회의 결의(규칙개정)로 가능한지 여부

질의1) 제99회기 총회 총대 선출방법에 대한 헌법해석 사례의 “시찰회에서 안배하는 경우, 그 수는 전체 총대수의 반수를 넘지 않아야 하며” 에서 시찰회는 노회 내 1개 시찰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노회 내 시찰회 전체를 의미하는 지의 여부

질의2) 같은 조항에서 총대 수의 과반수는 목사, 장로 구분하여 각각의 과반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구분 없이 전체 총대의 과반수를 의미하는 지의 여부

47. 재판국원 전원교체 적법 여부

충주노회 충주상일교회 류승준 목사 제출한 “2018-8 / 총회 헌법위원회 헌법해석 질의 청원의 건(2018.11.14.)”, 충주노회 충주상일교회 류승준 목사가 제출한 “충상 19-02 / ‘헌법위원회 질의 청원 추가 보완 및 증거자료’ 제출의 건(2019.1.17.)”

해석 : 질의1) 회의순서 보고는 노회 시 노회원들에 의해 회순 채택 등으로 할 수 있다.

질의2) 헌법 권징 제11조의1, 제16조, 제17조에 근거 노회 재판국원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1을 개선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불구하고 재판국원의 전원 교체는 노회의 결의라 할지라도 적법하지 않다. 또한 재판국의 판결은 노회 결의로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헌법 권징 제91조 및 제94조에 근거 차상급 재판국에 상소(항소)할 수 있다.

질의3,4) 노회 임원선거에 대해서는 헌법 정치 제75조에 근거 충주노회 규칙 및 선거관리세칙에 따른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대한 것은 노회규정 또는 노회 선거관리규칙 등 충주노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 질의1) 회의순서보고 시간에 재판국장이 부노회장 후보로 나와서 선거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전에 재판국 임시보고를 하게 해달라는 발언을 하여 노회장이 노회원들에게 묻고 재판국 임시보고를 하게 했는데 절차와 선거법에 적법한지

질의2) 재판국 전원 교체와 노회 재판국에서 이미 판결 선고한 재판을 취소하고 기소부터 다시 하도록 결의한 것이 적법한지?

질의3) 충주노회 재판국장으로서 판결한 것을 문제 삼아, 절차와 판결에 문제가 있어 당시 재판국장이었으므로 목사 부노회장 후보 자격에 결격사유가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기소가 된 적도, 재판의 확정 판결도 없음에도 결격사유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4) 단독 후보인데도 자격 신임투표를 하게 해서 불신임을 받게 했고, 노회장은 목사 부노회장이 당선이 안 된 것으로 선포하였는데 선거법에 적법한지

48. 노회 임원선거, 재판국원 전원 교체 적법 여부

충주노회 기소위원장 조세환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위원회 헌법 해석 질의청원 요청의 건(2019.1.9.)"

해석 : 질의1) 노회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정치 제75조에 근거 충주노회 규정 및 선거관리세칙에 따른다. 따라서 선거관리세칙에 관한 사항이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충주노회가 결정한다.

질의2) 헌법 권징 제11조의1, 제16조, 제17조에 근거 노회 재판국원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1을 개선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불구하고 재판국원의 전원 교체는 노회의 결의라 할지라도 적법하지 않다. 또한 재판국의 판결은 노회 결의로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헌법 권징 제91조 및 제94조에 근거 차상급 재판국에 상소(항소)할

수 있다.

질의내용 : 1)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후보자 소견발표를 하였으나 후보자의 검증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노회직전의 재판절차 진행에서 심각한 불법과 탈법한 사실이 밝혀지고 후보자 신임에 대하여 격렬한 토론 이후에 투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후보자인 류승준 목사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 결과에 겸허히 승복한다고 노회 앞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질의1) 단독 입후보자인 경우에는 투표 없이 후보자의 소견을 듣고 박수로 당선을 확정(충주노회 선거에 관한 규정 5.)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단독 후보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증절차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노회 개회직전에 재판국장으로서 심각한 불법과 탈법한 사실이 밝혀짐으로 후보자 자격신임에 대하여 노회원 다수가 투표하기로 결의한 것은 선거 권자로서의 적법한 권리행사인가?

2) 충주노회 제13회 정기노회에서 노회원들은 재판국의 판결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재판국장과 국원들이 첫째, 기피신청을 다룰 수 없는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사실. 둘째, 불복신청을 하였으나 소송을 중지하지 아니한 사실. 셋째, 변론기일을 당일 핸드폰 문자로 변론기일을 기소위원장에게 알린 사실. 넷째, 재판국의 제출한 서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거짓말한 사실로 재판국장과 국원들이 재판의 절차와 법리를 위반하며 판결문 낭독 후 다수의 회원들과 기소위원회는 재판절차와 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거센 항의와 비판이 있었고 국장은 거짓말로 변명을 하였으나 오히려 절차와 헌법을 위반한 불법재판이었음을 알게 되어 노회원들은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하여 재판을 다시 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요구가 성안되어 표결에 부친 결과 총 투표수 142표, 찬성 98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 결되어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되었습니다.

질의2) 재판국장의 행위(절차, 법리, 탈법, 불공정한 재판)에 대하여 묵인 방조한 재판국원의 전체 교체를 한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요?

49. 교육목사 자격 및 지위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470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19.2.11.)” -〈영등포노회장 임정석 목사가 제출한 “영노 제121-34호 / 질의서 제출의 건(2019.1.8.)”, 부산동노회장 남기룡 목사가 제출한 “부동노 제77-47호 / 교육목사 연임에 대한 질의의 건(2019.1.16.)”, 경기노회장 윤홍선 장로가 제출한 “경기노회 제69-031호 / 헌법 질의의 건(2019.1.23.)”〉 건, 포항노회장 박진석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7-24호 /

개정된 교육목사 청빙에 관한 질의의 건(2019.2.8.)”

해석 : 교육목사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본 교단의 무임목사가 1,800명이나 되며 임지를 구하기가 어려워 헌법 정치 제27조 제9항에 근거 자동해직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 담임목사 교회에서도 교육목사를 청원하여 무임목사 문제를 해결하며, 경험 있는 사람들로 교회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교육목사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교육목사의 자격과 위치에 대하여 문제점(노회원 자격-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당회원권, 안수청원, 전임사역이 가능한지)과 혼란이 있을 것을 제기했다. 이에 헌법위원회에서는 문제점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보완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해석하다.

1. 교육목사는 노회의 언권회원이나, 당회와 제직회원권은 없다.
2. 조직교회(위임, 담임)목사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4, 1항에 의거 교육목사 청빙 시 안수 후 청빙청원을 할 수 있으나,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는 안수 청원할 수 없다.
3. 교육목사를 청빙하여 전임사역을 맡길 수 없다.
4. 미조직교회에서는 제직회의 결의로 교육목사 청빙 및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470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19.2.11.)”-“사무국-366 / 헌법해석 보고(2019.1.30.)” - 중 13)번(영등포노회장 질의, 부산동노회장 질의, 경기노회장 질의) 해석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기존 해석(제102회기 총회 헌법위원회 33번 해석/제103회 총회 회의안 662쪽, 제100회기 총회 헌법위원회 49번 해석/제101회 총회 회의록 623쪽 등)과 상충되므로 이를 감안해 주시고, 이번 제103회 총회 시 헌법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재심의해 주시기를 요청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등포노회장 임정석 목사가 제출한 “영노 제121-34호 / 질의서 제출의 건(2019.1.8.)”

질의1) 교육목사의 노회원 자격은 어디까지인지요?(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질의2) 당회원권과 안수청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나. 부산동노회장 남기룡 목사가 제출한 “부동노 제77-47호 / 교육목사 연임에 대한 질의의 건(2019.1.16.)”

질의1) 새로 신설된 헌법 정치 제27조 제7항 교육목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부목사로 청빙을 하였지만 교육목사라는 목사 칭호가 신설되어 지교회에서 교육목사로 청빙코자 할 때 현재 시무 중에 있는 부목사를 교육목사로 청빙 시 신규로 교육목사 청빙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교육목사 연임청원서 제출로 교육목사로 청빙이 가능한지?

다. 경기노회장 윤홍선 장로가 제출한 “경기노회 제69-031호 / 헌법 질의의 건(2019.1.23.)”

질의1)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제27조 목사의 칭호 7항(신설) 교육목사는 위임(담임)목사를 교육 분야에서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청빙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정치 제28조 4항을 준용하고 연임청원은 헌법시행규정 제18조(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를 준용한다.” 중 “교육목사는 위임(담임) 목사를”에서 위임 목사가 아닌 담임목사가 있는 교회(조직, 미조직교회)에서도 교육목사 청빙이 가능한지요?

질의2) 담임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교육목사를 청빙할 경우, “교육목사 청원과 연임 청원은 헌법시행규정 제18조에 준용한다.”, “헌법 제28조 4항에 부목사 계속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하며 당회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한다.”에서 담임목사가 교육목사 연임 청원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3) 담임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교육목사를 청빙할 경우 교육목사로 목사 안수 청원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4) 헌법 제2편 정치 제11장 노회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항에 의하여 교육목사가 노회원 자격이 있는지요?

라. 포항노회장 박진석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7-24호 / 개정된 교육목사 청빙에 관한 질의의 건(2019.2.8.)”

질의1) 위임목사 아닌 경우에도 교육목사 청빙의 가능 여부

질의2) 교육목사가 전임사역자(파트타임, 준전임)가 아닌 경우에도 청빙 가능 여부

질의3) 교육목사의 당회원 자격 가능 여부(담임목사 청빙에도 당회원 자격의 결의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노회원의 자격 가능 여부.

50. 담임목사 청빙

진주남노회장 이성철 목사가 제출한 “진주남 제123-13호 / 헌법질의(2019.1.8.)”

해석 :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답변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내용 : 1) 위임목사의 은퇴로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하였습니다. 교회 형편상 부목사 2명이 필요하지만 1명은 전임인 위임목사 때 시무하여 왔기에 부목사 1명 더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위임목사가 아니어서 노회의

허락을 받지 못하고 당회에서 타 노회 소속인 목사를 청빙하였습니다. 허락받지 못한 목사로 인해 분쟁의 소지를 없이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질의1-1) 노회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목사를 당회에서 편법으로 청빙하였는데 목사의 직임 명칭을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질의1-2) 노회에 허락을 받지 않은 목사가 당회와 제직회·공동의회에 참석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질의1-3) 주보에 올리는 순서를 정한다면 며칠 먼저 당회에서 청빙하였지만 노회의 청빙을 받을 수 없는 1명의 목사와 며칠 늦게 정기노회에서 청빙 허락을 받은 목사의 순서를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2) 당회원 일부의 반대도 있었지만 다수결에 의한 결의와 제직회를 거쳐 노회에 대한 행정거부를 결의 하였습니다.

질의2-1) 하회인 교회가 상회인 노회를 상대로 행정거부를 결의할 수 있는지요.

질의2-2) 불법이라면 행정을 거부한 치리회를 설득하고 권유하여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51. 권징재판의 기소의뢰 주체

군산노회장 문준섭 장로가 제출한 "군노제80-28호 / 헌법해석 통보에 따른 문의의 건(2019.1.23.)"

해석 : 질의1) 죄과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54조의2 및 헌법 권징 제59조 제3항에 근거 치리회장이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기소의뢰 당시 치리회장이 임기가 끝났을 경우 재판 시 참고인으로 진술 할 수 있으나 재판에 있어 법적 행위는 현 노회장과 현 기소위원장이 한다.

질의2,3,4,5) 항고 또는 재항고는 헌법 권징 제64조에 근거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각 치리회 상급 재판국에 하는 것으로 불기소처분 통지를 한 기소위원회를 상대로 현 치리회에서 하는 것이다. 다시 기소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현 기소위원장이 해야 한다. 현 기소위원회에서 기소하지 않을 경우에도 헌법 권징 제64조에 근거 항고 또는 재항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다음 회기로 넘어간 직전 노회장(임원회)의 권징재판 기소의뢰 건은 실제로 진행되는 재판에 임하는 주체가 기소의뢰자인 직전노회장인가요? 아니면 다음 회기인 현 노회장인가요?

질의2) 현 노회장과 현 기소위원회가 기소의뢰자인 직전 노회장과 직전 기소위원회와 문제를 보는 시각과 태도가 달라서 미온적이고 부정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때, 기소의뢰자인 직전 노회장과 직전 기소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질의3) 직전 노회장이 기소의뢰 한 권징재판 건이 현 노회장 체제에서 불기소처분이 되거나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여 재항고나 상고를 해야 할 경우에 누가 주체가 되어 해야 하는지요?

질의4) 만약에 현 노회장이나 현 기소위원장이 직전 노회장의 기소의뢰 건에 대하여 재항고나 상고를 할 의지 없을 때, 기소 의뢰했던 직전 노회장이 재항고나 상고를 고하자 하면 할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그 재판비용 예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5) 기소유예 기간이 원인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한 범죄가 다시 재현되어 기소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기소유예를 했던 전 기소위원장과 사건을 다루지 않았던 현 기소위원장 중 누가 기소를 해야 하는지요? 또한 사건을 다른 전 기소원장을 기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건을 다루지 않은 현 기소위원장은 기소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52. 고소권 유무

서울관악노회장 강현원 목사가 제출한 “관악 제45-58호 / 헌법해석 질의회신 요청 (2019.1.25.)” 건

해석 : 헌법 권징 제48조에 근거 죄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의 권징에 따른 고소, 기소, 재판은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4항에 근거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 해당교회가 아니라고 하여도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는 고소권이 있다. 본 교단의 소속 여부는 고소를 받은 해당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 담임목사가 설교하는 도중에 담임목사 교회의 교인이 아닌 자(미 출석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교인들에게 발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담임목사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소장을 본 노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교인이 아닌 자가 헌법 권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고소권 자(죄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요

53. 면직출교의 해벌청원

강원노회장 서상택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31-129호 / 헌법해석 의뢰(2019.1.28.)” 건

해석 : 질의1,2) 헌법 권징 제137조에 근거 해벌청원은 피고인 소속 치리회 또는 피고인 본인이 할 수 있으며, 해벌은 최종 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의 결의 내지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장이 선포 내지 공지함으로 시행된다. 폐회 중에는 해당 치리회 재판국의 승인으로 해벌한다.

질의내용 : 질의1) B목사의 “면직 출교” 해벌 청원을 누가 할 수 있는지요? 해 교인인 A교회인지, 노회 임원회인지, 본인이지 아니면 노회 내 다른 당회에서도 가능한지요(합동측의 경우 다른 당회에서 청원하여 해벌한 사례가 있기에)

질의2) B목사의 “면직 출교” 해벌 처리는 노회 시에만 가능한지, 아니면 제137조에 의해서도 가능한지요?(노회 시까지는 3개월의 공백의 기간이 있어 A교회에서 후임자 청빙 절차가 늦어질 것 같기에 제137조에 따라 처리하면 후임자 청빙 지연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54. 실종교인 처리

포항남노회장 이석수 장로가 제출한 “포남노제 97-24호 / 헌법해석 질의 요청(2019.1.30.)” 건

해석 : 질의1,2) 헌법 정치 제19조에 근거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되며, 헌법시행규정 제14조에 근거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게시판에만 게시할 경우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교인의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 헌법 정치 제16조 교인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며 당회원권, 제직회원권, 공동의회 회원권이 정지된다.

질의3,4) 장로가 그 직무를 다하지 않을 때 이를 장로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와 헌법 정치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에서 말하는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난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 정치 제68조에 근거 해 당회가 판단 한다.

질의내용 : 현재 본 교회에 교인이 당회장이나 당회에 신고 없이 6개월 또는 1년 이상 교회의 정기적인(주일) 예배 출석과 헌금, 봉사 등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교인(당회원)이 있으며, 당회원(장로) 중에는 당회도 참석하지 않고 있어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1) 총회 헌법 정치 제39조 장로의 직무 중 당회원으로서 그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회의 결의로 행정권(당회원권, 제직회원권, 공동의회 회원권)을 정지 시킬 수 있는지?

질의2) 총회 헌법 정치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헌법시행규정 제14조에 의거 당회원을 당회의 결의로 실종교인 처리 할 수 있는지?

질의3) 장로가 그 직무를 다하지 않을 때 이를 장로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 회의 결의로 고소고발 하여 당회 재판국이 재판하여 권징 할 수 있는지?

질의4) 항존직원 및 서리집사, 세례 및 원입교인이 당회장이나 당회에 신고 없이 정기적인 (주일) 예배 출석, 봉헌, 봉사 등 교인으로서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제직회(공동의회)만 참석하는 경우는

1) 총회 헌법 정치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에서 말하는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이러한 상황이 6개월 또는 1년 이상 될 때 총회 헌법 정치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헌법시행규정 제14조에 의거 회원권 정지, 실종교인 처리 할 수 있는지? 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55. 직무정지가처분 인용 시 대리당회장 파송 적법 여부

서울강남노회장 황명환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63-199호 / 헌법 질의의 건 (2019.2.7.)"

해석 : 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8, 제16조의9, 제16조의10, 제30조를 살펴볼 때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회장의 직무는 정지되나 지위는 유지되므로 당회장의 사망 또는 사직, 직위가 상실되었을 경우인 '결원'이 아닌 '유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헌법시행규정 제30조에 근거 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당회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정)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거나 혹은 제16조의8의 제4항의 사유로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청한 경우,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제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당회장이 직접 대리당회장 파송을 요

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판결문 송달로 인한 효력 발생 이전이라면 가능하다.

질의내용 : 당회장이 법원 1심과 2심에서 위임(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본안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임(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회장은 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이전에 당회장이 유고라며 소속 노회에 A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청원하여 파송을 받았고 반면 과반수 당회원은 당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합의(연명)로 B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하였습니다.

질의1)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당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당회장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지방법원과 대법원판례와 같이 당회장 결원이므로 소속 노회는 과반수 당회원이 합의로 요청한 해 노회 소속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여야 하고 지교회 당회는 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 시까지 과반수 당회원이 합의로 적법한 대리당회장이 업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귀 위원회의 견해는 어떤지.

질의2)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당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우를 당회장 유고로 보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권한을 대리인을 내세워 위임할 수 없고 직무정지를 당한 이후에는 대리당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정지되며 직무정지가 되면 그 순간부터 곧바로 대리당회장을 위임할 수 있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8 제2항에 따른 현 당회장의 위치에도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시무정지나 정직 책벌이 확정된 경우인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10 규정을 준용하여서라도 과반수 당회원이 합의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귀 위원회의 견해는 어떤지.

질의3)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8 제1항에 의하면 “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 당회장의 유고 및 기타 사정의 경우에는 결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노회 또는 폐회 중의 임원회는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당회장 직무정지 경우를 유고로 보더라도 이 경우 노회가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귀 위원회의 견해는 어떤지

질의4) 당회장이 직무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당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그 위임의 효력은 위임한 당회장이 적법한 직무권한을 갖고 있을 때까지이므로 이후 법원에서 당회장으로 서의 직무권한이 정지된 이상 그

위임의 효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도 함께 정지되는 것으로 보는데 귀 위원회의 견해는 어떤지.

56. 재판국원의 전원교체 적법 여부 및 노회임원 선거

충주노회장 길만호 목사가 제출한 “충주노회-426 / 헌법 질의(2019.1.31.)” 건

해석 : 질의1) 헌법 권징 제11조의1, 제16조, 제17조에 근거 노회 재판국원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1을 개선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불구하고 재판국원의 전원 교체는 노회의 결의라 할지라도 적법하지 않다. 또한 재판국의 판결은 노회 결의로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헌법 권징 제91조 및 제94조에 근거 차상급 재판국에 상소(항소)할 수 있다.

질의2) “충주노회 규정 및 선거관리세칙”은 헌법 정치 제75조에 근거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 라고 위임되어 있고, 충주노회원의 결의에 의해 결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충주노회규정 및 선거관리세칙”이 헌법 정치 제74조 책벌에 의하지 않은 어느 개인의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 한다거나, 개인의 고유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제103회기 총회 셋째 날(12일)오 회무시간에 총대들은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목회세습 등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이 헌법정신에 위배했다는 이유로, 거수 다수결의에 의해 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충주노회에서 제13회 정기노회에서 재판국 보고 시 개회 3일 전(2018.10.8.)에 있었던 재판국의 판결 선고가 법리와 절차를 무시한, 명백하게 공정성을 잃은 재판이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판국원 전원 교체 요구가 성안되어 총 투표수 142표, 찬성 98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총회 재판국원 전체 교체와 재석의 2/3를 넘는 총대의 결의로 처리된 본 노회의 재판국원 전원 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질의2) 충주노회 각종 시행세칙 제3장 선거에 관한규정 2. 부노회장 3)선거 (5)에 “단독 입후보자일 경우에는 투표 없이 후보자의 소견을 듣고 박수로 부노회장 당선을 확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존중되어야 할 선거에 있어서 만장일치가 아닌 상황에서도 무조건 투표 없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존중되어야 할 선거에 있어서 만장일치가 아닌

상황에서도 무조건 투표 없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헌법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에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충주노회 규칙에도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및 지교회의 권리) 1)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는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업무분담권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살필 때 '충주노회 시행세칙 선거에 관한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주노회 선거에 관한 규정이 노회 규칙과 총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근거 살필 때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57. 재판진행 중 기소 없이 즉시 책벌

평북노회장 김형준 목사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205-55호 / 헌법 질의(2019.2.19.)" 건

해석 : 질의1,2) 헌법 권징 제6조에 근거 재판 중에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등을 통해 원활한 재판진행을 방해할 경우 헌법 권징 제7조 재판관할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판결로 책벌할 수 있으며 해당 판결에 따라 시벌은 해당 노회 소속 치리회장이 해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72조에 따라 상기 타노회 노회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석상에서 적절치 않는 행동으로 즉석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타 노회 노회원이므로 헌법 절차상 해당 노회에 기소의뢰 또는 고소(위탁재판)하는 것이 맞나요?

질의2) 만약 타노회 노회원이 재판 석상에서 권징 재판을 받았다면, 판결에 따라 시벌은 해당 노회 소속 치리회장이 시벌할 수 있는지요? 타 노회가 해당 노회로 판결통지 한 것이 적절한가요?

58. 시무사임 권고 결의

천안아산노회장 김형제 목사가 제출한 "천안아산노회 5-44호 / 헌법 질의(2019.2.21.)" 건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35조 제2항에 근거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

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당회장의 사회와 적법한 당회결의 및 공동의회 결의가 없는 권고사임은 위법이다.

질의내용 : 질의1) 본 노회 소속 모 교회의 교우들이 장로회의 임의 단체에 대한 진정과 탄원이 있는 바, 당회장의 허락이나 위임 없이 당회장의 거취 문제나 또는 권고 사임 등을 결의할 수 있는지요?

59. 항존직 선출 방법

광주동노회장 정점수 목사가 제출한 “광동제23-63호 / 헌법 질의(2019.2.21.)” 건

해석 : 질의1,2) 헌법 정치 제2조의 교회의 자유는 교회가 교회의 입회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정할 수 있으나, 헌법시행규정 제3조에 근거한 범주내서 조직하고 정할 수 있다. 이는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지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또한 지교회가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교단의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무시한 자율권은 허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장로는 헌법 정치 제41조에 근거 공동의회에서 총투표자의 3분의2이상, 안수집사, 권사는 헌법 정치 제54조에 근거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해야 적법하다. 투표는 1회에 연속하여 혹은 한 노회기간 동안 투표횟수를 합하여 3차까지 할 수 있고, 투표방법(변경포함)은 남은 횟수에 한하여 당회와 공동의회가 투표장에서도 정할 수 있다.

질의3)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5항에 근거 당회와 공동의회가 투표장에서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몇 명까지 기록하도록 할 것인지, 유효표 여부, 표시방법(이름표시, 0X표시), 몇 차까지(1~3차)할 것인지 등등 구체적인 투표방법과 투표방법변경까지를 의미하나,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투표수(장로는 헌법 정치 제41조에 근거 공동의회에서 총투표자의 3분의2이상, 안수집사, 권사는 헌법 정치 제54조에 근거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까지 투표장에서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질의내용 : 1. 00교회(김00 목사 당회장이 항존직 피택 지원자에 한하여 투표하는 것을 제안하여 지원 받았으나 소수만 지원하였습니다.

2. 소수 지원자만으로 투표할 수 없어 당회에서 당회장은 ‘1안) 총회 헌법 절차에 의한 방법’과 ‘2안) 피택자 계획인원(장로 5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15명)을 정하여 득표 순위로 선출하는 방법’ 중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 투

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장로들은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 헌법 절차대로 투표하는 것은 제안하였으나 관철하지 못함)

3. 공동의회로 항존직 피택을 위한 투표를 시행하면서 당회장은 '선거관리 위원회' 미조직, '항존직 피택 대상자 명부' 미작성 등 투표에 대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투표 방법에서 1안)인 '총회 헌법 절차에 의한 방법 보다 2안)인 '득표수 순위'에 중점을 두고 회의를 진행하여 거수로 투표한 결과 2안)이 과반수이상이 되어 2안)으로 피택자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4. 00교회 당회장은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도중 '임시당회'를 소집하여 2안)의 계획인원(장로 5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15명)을 장로 과반수이상(5명), 안수집사 20표이상(6명), 권사 30표이상 12명)으로 결의하여 '계획인원 변경'에 대한 공동의회 표결 없이 항존직 피택자를 결정하였습니다.
5. 00교회 당회장은 공동의회에서 1안)과 2안)을 제안할 당시 "총회 헌법 제6장 41조와 54조"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헌법시행규정 제26조 5항"에 의거하여 당회와 공동 의회에서 2안)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총회 헌법 제6장 41조와 54조"를 잠재하고 "총회 헌법 정치 제1장 원리 제2조 교회의 자유"에 의해 득표 순위에 의하여(장로 과반수이상, 안수집사 20표이상, 권사 30표이상) 피택 하였으므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 그러나 당회원(장로)들은 "총회 헌법 제6장 41조와 54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며, 교회의 '정관' 혹은 '선거내규'에 따라 정해졌더라도 "총회 헌법 제6장 41조와 54조"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의1) "총회 헌법 제6장 41조와 54조"는 어떠한 경우(투표가 1차, 남은 횟수 2-3차까지도)에도 꼭 지켜야 하는가?

질의2) "총회 헌법 정치 제1장 원리 제2조 교회의 자유"에 의거 "총회 헌법 제6장 제41조와 제54조"에 의하지 않고 피택 할 수 있는가?

질의3) "헌법시행규칙 제26조 5항"의 투표방법(변경포함)의 의미는 무엇인가?

60. 치리회의 의미와 면직출교 및 해벌

강원노회장 서상택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31-130호 / 규칙해석 의뢰(2019.1.28.)" 건

해석 : 질의1) 치리회는 헌법 정치 제60조에 근거한 당회, 노회, 총회를 말하고 정기노회가 개회하면 치리회가 되거나 회장이 치리회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노회에서 '면직이나 출교'된 목사를 해벌하려고 할 경우 헌법 권징 제137조에 근거 노회의 결의 내지 승인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벌

시 치리회인 노회는 정기노회를 말하고 노회가 폐회 중에 해벌에 대해서는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책벌은 헌법 권징 제131조 및 제132조에 근거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에서 '면직이나 출교'된 목사를 해벌하려고 하거나 또는 '제명' 하려고 할 때에 치리회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정기노회가 개회되면 그 자체가 치리회가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회장이 치리회로 전환한다고 선포하여야 치리회가 되는 것인지요?

61. 부목사의 연임청원

경남노회장 이종훈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019-34호 / 폐당회 유보 교회의 부목사 연임 청빙의 건(2019.3.6.)"

해석 : 헌법 정치 제65조, 헌법시행규정 제31조에 근거 폐당회가 유보된 상태에서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위임목사 지위를 유지하나, 당회를 할 수 없으므로 제직회 결의로 시무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은 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 조직교회 당시 부목사를 청빙하였고 이후 장로 2인 중 1인이 은퇴하여 헌법 정치 제65조에 의거 3년이 경과하지 않아 폐당회 유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미 시무중인 부목사의 연임 청원을 하려면 당회의 결의로 해야 하는데 미조직교회가 되어 당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직회 결의로 부목사 연임 청빙이 가능한지, 부목사 연임을 처리하려면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62. 시무사임 목사의 총대후보 자격

영주노회장 강성효 목사가 제출한 "영주노 제70-81호 / 총회 총대 규정에 관한 질의(2019.3.4.)" 건

해석 : 헌법 정치 제35조에 근거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다만, 노회 폐회 중에는 정치부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노회 폐회 중에 사임이 처리될 경우 헌법 정치 제27조 제10항 무임목사이며 언권회원으로 총대후보 자격이 없다. 단. 전도목사 허락 후에는 헌법 정치 제74조에 근거 회원권이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본 노회 K목사는 지난해(2018년 11월 14일)시무하던 교회를 사임한 후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전도목사 파송 절차를 위하여 서류 제출을 한 상태에서 4월 노회 시 총회 총대 후보로 출마한 상황인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참고사항 / 사임을 한 시점으로부터 2019년 4월 노회 개회 시 까지는 분명 무임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총회총대는 물론이고 국내선교부를 경유하여 전도목사로 파송을 받기 위한 절차도 본 회의에서 허락이 되어야 가능한 것 일진데 이 또한 모순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헌법 정치 제29조 3항)

63. 재판조서 교부 제한

서울강동노회장 독고인호 장로가 제출한 "강노 제63-021호 / 헌법 질의의 건 (2019.3.6.)"

해석 : 질의1,2) 총회 헌법에 기타 소송관계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나 국가 형사소송법을 참고할 때 기타 소송관계인을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한정하는 것이나, 고소인에게 재판조서 교부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참고 : 국가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규칙 제26조(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국가 형사소송법 제45조에 규정한 기타의 소송관계인이라 함은 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형사소송법 제340조 및 제3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권자를 말한다. 아울러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본인은 지난 2018년 7월 16일 교회분규사태와 관련하여, 태평제일교회 ○○○ 목사와 ○○○ 목사를 서울강동노회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본 노회 기소위원회에서는 두 달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소한 내용들을 소상히 살펴, 2018년 9월 17일 피고소인 두 명에 대해 각각 정직 2년의 책벌로 노회재판국에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강동노회 재판국에서는 이렇게 기소된 피고소인 두 명에 대해 모두 2018년 12월 7일 기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본인은 본 소송을 총회재판국에 2018년 12월 12일 상고했고, 보다 자세한 재판 절차의 확인을 통해 앞으로 있을 총회 상고심을 대비하기 위해, 그리고 현재 피고인 측이 노회판결문을 본 교회 분규와 관련 건물인도소송에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에 대한 변론을 위해서 2019년 1월 9일, 노회재판국에 재판조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구에 대해서 노회재판국은 헌법 제3편 권징, 제38조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부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몇 초본이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에서 '기타 소송관계인'이

'피고인 측 변호사'임을 말하면서 지금까지 재판조서를 요청한 본인에게 발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노회임원회를 통해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1) 노회재판국이 주장하는 '기타의 소송관계인'이 '피고인 측 변호인'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질의2) 노회재판에서 패소한 원고가 총회상고심 변론을 위해서 노회재판조서를 볼 수 있는 권한의 유무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64. 권고사임과 재판관할

청량리중앙교회 김성태 목사가 제출한 "헌법질의서(2019.3.20.)" 건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35조 제2항에 근거 목사의 권고사임은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권고사임 의결정족수는 헌법 정치 제90조 제6항에 근거 재석과반수로 결의한다.

질의2,3,4,5,)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아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6) 헌법 권징 제7조 제2항 의거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재판국에 속한다. 따라서 노회에 고소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청량리중앙교회 김성태 목사가 제출한 "헌법질의서(2019.3.20.)"〉

질의1) 2017.3.12. 김성태 목사 권고사임 건의를 위한 공동회의 시 투표 결과 교인 191명 참석, 119명 찬성, 68명 반대, 무효 4명으로 찬성 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인원의 2/3가 넘지 않았음에도 가결되었다고 선포한 행위가 총회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질의2) 2017.3월 공동의회에서 김성태 목사의 권고사임 건이 통과되었다는 이유로 2017.4.4.부터 현재까지 당회장실을 폐쇄한 행위가 총회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질의3) 2017.3월 김성태 목사가 청량리중앙교회 당회장이며 담임목사직을 우지하고 있음에도 김성태 목사의 권고사임 건이 통과되었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책벌 절차 없이 김성태 목사의 설교권을 박탈한 행위가 총회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질의4) 교회 내에서 파당을 지어 교단 탈퇴 결의를 하고 교계 신문, 게시물

등을 통해 교단탈퇴 사실을 발표하는 한편, 상회인 서울동노회에서 2018.9.30. 주관한 공동의회에서 “총회의 교단탈퇴 철회” 건을 부결시킨 교인들을 총회재판국이 2019.2.12. 교단탈퇴가 아니라고 판결할 수 있는 지와 이 결의를 수용하지 않는 교인들이 김성태 담임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여치 않고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한 청량리중앙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총회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질의5) 헌법 제3편 권징, 제83조 제2항, ‘국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과 같이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따라 청량리중앙교회에서 교단을 탈퇴하여 헌법에 없는 ‘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 이름으로 교회 재정을 횡령한 죄(2018형제66413)와 예배를 방해한 죄(2017형제55343)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구약식명령 처분한 죄를 총회재판국과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무죄라 할 수 있는가?

질의6) 당회장이 피고소인이 되는 경우 헌법대로 당회 결의와 당회장이 위탁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규를 위반하여 교인들이 직접 노회에 고소할 수 있는가와 부적합한 고소장임을 알면서도 반려하지 않고 노회장이 기소위원회에 송부하고, 사회법으로 호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한다던 기소위원회에서 불평등하고 부적당하게 피고소인을 기소할 수 있는가와 그 기소장을 통한 재판이 합법적인가의 여부

65. 치리회장의 행정행위

부천노회장 정만수 장로가 제출한 “예장부천노회 제141-34호 / 헌법위원회 헌법 해석 질의(2019.3.25.)” 건

해석 : 질의1,2)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74조 제1항(구 제75조 제1항)은 “헌법 권징 제141조(구 헌법 권징 제151조)의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는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행한 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74조 제1항(구 제7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행한 처분’은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행한 행위 중 “법적 효력을 수반하는 치리회장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국가법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와는 그 의미와 효력이 다르다. 헌법 정치 제32조 목사임직 선포, 헌법 정치 제75조 노회임원선거 당선 선포, 헌법시행규정 제6조 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의 처리 선포, 헌법시행규정 제17조 위임목사 선포, 헌법시행규정 제21조 원로목사 선포,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5조에 의한 행위, 기타 노회장 및 총회장의 행정지시, 행정명령 등이 “치리회장이 행한 행

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 노회장이 노회원의 투표결과 차기 노회장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하는 행위는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74조 제1항(구 제7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 본 노회 소속 A목사가 부천노회 제33회기 노회석상에서 당시 노회장 이덕선 장로가 회원 자격에 대한 결정과 투표결과에 따라 곽태문 목사를 제33회기 부전 노회장으로 결정하여 선포 하였으나, A목사가 헌법권정 제74조 제3항(구 헌법 권징 제75조 제3항)을 위반하여, 노회장 곽태문 목사의 직무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제기하였고, 이에 부천노회 재 판국에서는 A목사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74조 제3항(구 헌법 권징 제75조 제3항) 위반 및 기타 권정의 사유가 되는 죄과를 근거로 면직 출교의 책벌을 하였습니다. 이후 4년이 흐른 2018년 A목사는 국가법원에 면직출교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 있어 주요 쟁점이 "제33회기 노회석상에서 당시 노회장 이덕선 장로가 회원 자격에 대한 결정과 투표결과에 따라 곽태문 목사를 제33회기 부천노회장으로 결정하여 선포한 것이 행정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본 교단에서 말하는 행정행위 즉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행한 처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고 있는지?

질의2) 부전노회 제33회기 노회석상에서 당시 노회장 이덕선 장로가 회원 자격에 대 한 결정과 투표결과에 따라 곽태문 목사를 제33회기 부천노회장으로 결정하여 선포한 행위가 행정행위인지?

66. 축도에 대한 총회 결의의 적법성

경남노회장 이종훈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019-35호 / 축도 질의의 건(2019.3.28.)"

해석 : 성경본문대로 축도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총회 결의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의내용 : 질의) 본 교단 제74회 총회에서 축도연구위원회가 연구한 보고를 받은 후 동의와 개의를 놓고 투표하여 "있을찌어다"를 "축원하옵나이다"로 결의 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성경(민6:24~26, 고후13:13) 본문대로 축도하는 것이 위법인지

67.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

경남노회장 이종훈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019-36호 / 목사 위임예식 시 서약 담당자 질의 건(2019.3.28.)"

해석 : 헌법 정치 제33조에 근거 노회는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을 주관한다. 목사의 임직식은 별도의 예식에 준하면 되고, 목사 위임식은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제97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71번 참고.)

질의내용 : 예장총 제85-586(2001.5.10.) 헌법해석에 의하면 목사 위임예식 시 위임국장은 노회장이 아닌 자도 할 수 있으며, 장로노회장도 위임국장을 맡을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배, 예식서에 의하면 선포는 집례자(위임국장)가 하도록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1) 위임국장이 장로노회장이어서 설교자인 목사가 위임목사 서약을 받아도 되는지

68. 권고사임과 재판관할

서울동노회 기소위원장 양재천 목사가 제출한 “총회헌법위원회 질의서(2019.4.3.)”, 서울동노회장 이성주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99-124호 / 헌법 질의 요청(2019.4.5.)” 건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35조 제2항에 근거 목사의 권고사임은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권고사임 의결정족수는 헌법 정치 제90조 제6항에 근거 재석과반수로 결의한다.

질의2,3)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아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4) 기 해석으로 가름한다.

질의5) 헌법 권징 제7조 제2항 의거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재판국에 속한다. 따라서 노회에 고소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서울동노회 산하 청량리중앙교회가 2017.3.12.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김성태 위임목사에 대한 시무사임의 권고 안건(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35조의2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회원 191명이 참석하였기에 개회 정족수가 충족되었고(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90조 제4항), 그 중에서 찬성 119명(62.3%), 반대 68명(35.6%), 무효 4명(2.1%)으로 찬성이 재석 과반수가 되므로 가결(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90조 제6항)이 선포되었는데, 이것이 총회헌법에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2) 상기 1항에서와 같이 2017.3.12.자 공동의회에서 김성태 위임목사에

대한 시무사임 의 권고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동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서울동노회에 공문으로 건의하였으나(2017.3.20.) 그 당시 서울동노회는 사고노회 상태였기에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데다가 그러한 사고노회 상태가 언제 해소될 수 있을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리고 김성태 목사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자신의 사무실(당회장실)을 근거지로 삼아 자신에 대한 지지 교인들의 세를 규합, 확대해 나갔고 이러는 과정에서 김성태 목사에 대한 대다수의 반대 교인들과의 마찰이 발생하여 큰 충돌로 확대될 우려가 증폭되었기에, 동 교회는 더 큰 불상사 발생을 예방키 위해 교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 조치로서 김성태 목사 사무실 폐쇄라는 임시적 조치를 불가피하게 취했던 것인 바, 이것은 단순히 동 교회가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안전과 관리적 측면에서 판단 처리해야 할 사안이 지 교단(총회 헌법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 이러한 이해가 맞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참고로 김성태 목사 측 교인이 이러한 상황(김성태 목사 사무실 폐쇄)을 사회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이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린 바 있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형제50978호, 2017.12.29.).

질의3) 청량리중앙교회는 2017.3.5. 개최된 임시당회에서 김성태 목사에 대한 시무사염의 권고 안건(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35조 2항)이 가결됨에 따라 예배를 당회가 주관하되 당회서기와 예배부장에게 맡겨 처리키로 결의 하였는바(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68조 3항), 이 결의에 따라 설교를 당회서기와 예배부장이 협의하여 선정한 같은 교단 내 목사로 하여금 담당토록 하는 게 총회헌법에 적법한 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예전에 경북노회도 당회가 문익환 목사가 세례요한보다 훌륭하다고 설교한 나요섭 목사의 설교권을 박탈한 사례가 있고, 당시 경북노회가 당회원들의 결정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바 있고, 91회기 총회재판국에서 나요섭을 면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 시 ‘라가’와 같은 욕설이 나오고 그 입에서 저주가 쏟아질 경우에도 거룩한 예배와 의식의 일부로서 그래도 설교권을 유지시켜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4) 청량리중앙교회가 김성태 목사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분쟁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 하에서, 서울동노회는 사고노회 상태였기에 동 교회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었고, 주일날 공식 예배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

성태 목사 자신은 예배 집례자(설교자나 사회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강단에 무단 등단하여 법원 판결문을 큰 소리로 낭독 하는 등 예배시간 내내 만행을 저질렀기에(2017.9.3. 및 9.10.), 동 교회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겠기에 이러한 극도의 혼란 상황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신앙을 할 수 있는 길은 교단을 탈퇴하여 김성태 목사 문제를 해결한 후에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어쩔 수 없이 교인총회를 개최하여(2017.9.10.) 교단탈퇴를 결의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 이 교인총회가 김성태 목사가 제소한 사회 법정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기에(2018.9.20.) 결국 교단탈퇴 결의 자체도 무효가 되었고, (2) 교회법적으로도 총회 헌법위원회가 청량리중앙교회의 교단탈퇴는 인정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2018.9.4.), (3) 총회 재판국도 김성태 목사 측이 김성태 목사 반대자 측 중직자들 13명 을 상대로 교회법에 따라 고소한 사건(예총재판국 사건 제103-03호)에서 그 판결문 (2019.2.12.)을 통해 본 건 교단탈퇴를 불인정하였습니다. 광성교회도 교단탈퇴를 시도하였으나 절차미비로 법원은 교단탈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상회(서울동노회) 지시로 2018.9.30. 개최된 청량리중앙교회 공동의회에서 상회 지시로 상정된 안건이 부결되었는데 이때 안건은 “교단탈퇴 철회”가 아니라 총회 헌법위원회의 “청량리중앙교회의 교단탈퇴를 인정치 않는다.”는 유권해석(2018.9.4.)을 수용하느냐 여부를 묻는 것이었기에, 이 안건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교단탈퇴”가 성립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논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총회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총회헌법은 규정하고 있으므로(총회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 해당기관(서울동노회)은 총회헌법 유권해석(2018.9.4.)의 수용여부를 물을 필요가 애초에 없이 지교회가 그냥 그 해석대로 시행토록 통보만 하면 되는 사안이었는데 과잉 조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 판단해 볼 때, 청량리중앙교회(김성태 목사 지지 교인들이든지 반대 교인들이든지를 불문하고)가 교단에 그대로 잔류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이해가 맞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교단을 떠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김성태 목사를 떠나고자 했던 것이지, 본 교회 목회자를 총회장으로 만들어 준 교단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단탈퇴가 무효로 되었고, 대법원도 부적합절차의 탈퇴를 무효로 판단하고 있는

바, 탈퇴 시도 행위만으로도 탈퇴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질의5) 지교회의 당회장(목사)이 피고소인이 되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목사에 대한 심판사항은 노회 재판국 소관 사항이기에(총회헌법 제3편 권정 제20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항), 당연히 노회 재판국에서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장이 피고소인이 된 경우에는 노회재판국에 위탁재판을 해줄 것을 청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총회 헌법시행규정 제72조 제4항)이 있는 바, 이것은 상기의 규정과 상충되는 규정이라고 보여 집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당회장인 경우 그 당회장이 자신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사건을 노회 재판국에 위탁재판을 청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일인데(특히 교회가 분쟁상태인 경우에는 당회장은 거부를 할 것이 뻔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탁재판은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회장이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회장이 피고소인이 된 상태이고, 정상적인 당회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당회장을 거치지 않고 노회 재판국에 위탁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69. 임시당회장의 권한

강원노회장 서상택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31-169호 / 헌법해석 의뢰(2019.4.9.)” 건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30조 제1항에 근거 임시 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8조의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당회를 열어 장로 선택을 결의하고 임직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위임(담임)목사가 공석일 경우, 당회의 요청으로 인해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당회를 열어 장로 선택을 결의하고 임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요?

70. 직무대행 일반변호사의 당회소집 적법 여부

서울강남노회장 황명환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64-102호 / 헌법 질의의 건(서울교회 박두호 장로 외 5인)(2019.4.23.)”, 서울교회 박두호 장로 외 5인이 제출한 “헌법 질의(2019.4.18.)” 건

해석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에 근거 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 당회장의 유고 및 기타 사정의 경우에는 결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노회 또는 폐회중의 임원회는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그러나 당회장은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인용결정문이 송달되기 이전에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 제2항에 의거 직접 대리당회장을 위임할 수 있고, 현 당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결정문 송달 이후에는 현 당회장이 위임한 대리당회장은 대리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가처분인용결정문이 송달된 이후에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 제4항에 의거 당회원 과반수가 합의(연명)하여 노회 또는 폐회 중 임원회에 청원하여 파송 받은 대리당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하게 하며 이 경우의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제2항에 준하여 행사한다. 본 교단의 헌법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한 절차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의해 직무대행자라는 이름으로 일반변호사가 당회장 기능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종교단체에 대하여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에도 이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여도 종교단체에 보장되는 종교활동의 자유와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으로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이 직무대행자가 당회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단 헌법 정치 제6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변호사로 직무대행자가 되어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은 헌법 정치 제67조 및 제66조를 위반한 것으로 교단 헌법에 의한 당회로 볼 수 없고 또한 이를 당회로 보고 결의한 사항은 무효이다.

질의내용 : 질의) 위임목사인 박노철 목사의 직무를 대행할 자로 파송된 자가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일 때 직무대행자가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을 당회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71. 직무정지가처분 인용과 대리당회장

서울교회 임상헌 장로 외 12인이 제출한 “헌법해석 추가보충질의(2019.2.21.)”, 서울교회 임상헌 장로 외 12인이 제출한 “헌법해석 추가보충질의서(2019.3.7.)”, 서울강남노회장 황명환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63-215호 / 헌법 질의의 건(임상헌 장로 외 12인)”, 서울강남노회장 황명환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63-233호 / 헌법 질의에 관한 건(2019.3.19.)”

해석 : 질의1,2), 질의)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에 근거 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 당회장의 유고 및 기타 사정의 경우에는 결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노회 또는 폐회 중의 임원회는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그러나 당회장은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이 송달되기 이전에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 제2항에 의거 직접 대리당회장을 위임할 수 있고, 현 당회장

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문 송달 이후에는 현 당회장이 위임한 대리당회장은 대리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처분 인용 결정문이 송달된 이후에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 제4항에 의거 당회원 과반수가 합의(연명)하여 노회 또는 폐회 중 임원회에 청원하여 파송 받은 대리당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당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이 송달된 이후 분쟁으로 대리당회장을 선임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노회에서(폐회 중 임원회에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서울교회 임상헌 장로 외 12인이 제출한 "헌법해석 추가보충질의(2019.2.21.)"〉, 〈서울교회 임상헌 장로 외 12인이 제출한 "헌법해석 추가보충질의서(2019.3.7.)"〉, 〈서울강남노회장 황명환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63-215호 / 헌법 질의의 건(임　상헌 장로 외 12인)"〉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8 제1항에 의하면 "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 당회장의 유고 및 기타 사정의 경우에는 결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노회 또는 폐회 중의 임원회는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당회장 직무정지 경우에 노회가 대리당회장을 파송하였다면 이는 위법이 아닌가요?

질의2) 당회장 직무정지가처분이 인용된 당회장이 그 가처분결정의 효력발생 이전에 위임한 대리당회장의 효력은 가처분의 효력발생 이전까지이므로 그 가처분효력발생 이후에는 본인의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대리당회장 위임도 불가한 것이 아닌가요

〈서울강남노회장 황명환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63-233호 / 헌법 질의에 관한 건(2019.3.19.)"〉

질의) 당회장이 법원1심과 2심에서 위임(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서 이미 노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의 지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72. 직원의 신임투표 불가

서울교회 대리당회장 이태종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의 건(2019.2.19.)", 서울강남노회장 황명환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63-216호 / 헌법 질의의 건(박노철 목사 측)(2019.3.11.)"

해석 : 질의1-1, 1-2, 2-1)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 및

헌법 권징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에 근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고,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에 근거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하위법규는 무효이므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신임 투표에 관한 정관 규정은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상급치리회는 헌법 권징 제51조 제2항에 근거 치리회장과 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고, 헌법 권징 제54조의 2에 근거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질의내용 : 1) 위임목사 및 시무장로의 재신임을 묻는 지교회의 규정에 관하여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은 ”헌법 권징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은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 등의 순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임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1) 그렇다면, 교회 내규로 재신임규정(정관, 규정, 세칙 등 그 어떤 형태의 독립된 규정 혹은 여타규정 속에 별도 조항 포함)을 제정하여 항존직인 위임목사·장로의 그 시무를 권징이 아닌 당회 및 공동의회의 신임투표를 통해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사임, 해임 등을 시키는 것이 우리 교단 헌법에 비추어 가능한지요?

질의1-2) 만약 가능하다면 적용 가능한 해당 헌법 또는 시행규정, 총회규칙 등 어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2) 위임목사의 청빙과 위임식, 자의 및 권고사임 등에 관한 노회의 지휘, 감독권에 관하여 조직교회가 위임목사의 청빙(정치 제28조)을 원하는 경우 노회의 청빙 승인(정치 제29조)을 받아 노회에서 주관(정치 제33조)하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지교회의 위임목사직에 취임할 수 있고, 목사의 자위 및 권고사임(정치 제35조)에도 노회의 허락과 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정년이 되기 전에 은퇴하기를 원하는 경우(정치 제35조, 자의사직)에도 소속 치리회인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습니다.

질의2-1) 이러한 경우 재신임규정에 의하여 위임목사를 당회 및 공동의회의 신임투표를 통해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사임, 해임 등을 시키는 경우 지교회가 속한 상급 치리회인 노회는 아무런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요?

73. 직무대행 일반변호사 당회소집 적법 여부

서울강남노회장 황명환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64-0001호 / 헌법 질의에 관한 건(2019.4.15.)”은 기 송부한 “사무국-1504 / 헌법 해석 통보(2019.5.3.)” -〈서울강남노회장 황명환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64-102호 / 헌법 질의의 건(서울교회 박두호 장로 외 5인)(2019.4.23.)”, 서울교회 박두호 장로 외 5인이 제출한 “헌법질의(2019.4.18.)”〉 건으로 갈음

해석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에 근거 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 당회장의 유고 및 기타 사정의 경우에는 결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노회 또는 폐회 중의 임원회는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그러나 당회장은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인용 결정문이 송달되기 이전에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 제2항에 의거 직접 대리당회장을 위임할 수 있고, 현 당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문 송달 이후에는 현 당회장이 위임한 대리당회장은 대리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가처분인용 결정문이 송달된 이후에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 제4항에 의거 당회원 과반수가 합의(연명)하여 노회 또는 폐회 중 임원회에 청원하여 파송 받은 대리당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하게 하며 이 경우의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한다. 본 교단의 헌법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한 절차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의해 직무대행자라는 이름으로 일반변호사가 당회장 기능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종교단체에 대하여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에도 이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여도 종교단체에 보장되는 종교활동의 자유와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으로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이 직무대행자가 당회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단 헌법 정치 제6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변호사로 직무대행자가 되어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은 헌법 정치 제67조 및 제66

조를 위반한 것으로 교단 헌법에 의한 당회로 볼 수 없고 또한 이를 당회로 보고 결의한 사항은 무효이다.

질의내용 : 총회장이 송부한 “사무국-1504 / 헌법 해석 통보(2019.5.3.)”
-〈서울강남노회장 황명환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64-102호 / 헌법 질의의 건(서울교회 박두호 장로 외 5인)(2019.4.23.)”, 서울교회 박두호 장로 외 5인이 제출한 “헌법질의(2019.4.18.)”〉
질의1) 위임목사인 박노철 목사의 직무를 대행할 자로 파송된 자가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일 때 직무대행자가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을 당회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74. 항존직 이명시점 기산

대구동노회장 김병옥 목사가 제출한 “대동노 제184-4호 / 헌법시행규정 제13조의 적용에 관한 질의(2019.4.16.)” 건

해석 : 질의1) 항존직 직분자의 이명시점은 헌법 정치 제17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11조, 제12에 근거 이명증서를 발급한 일자로 봄이 타당하다.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13조에 근거 이명증서가 발급되었으나 3개월 이내에 반송되어 올 때에는 원 교적에 즉시 복적 되고 헌법 정치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근거한 직원은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복적이 될 수 있다. 직원이 복적 될 경우 그 직분도 함께 복직이 된다.

질의내용 : 질의1) 항존직 직분자의 이명시점을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가) 당회의 이명 허락이 결의 된 날 나) 교회가 이명 증서를 발급한 날
질의2) “이명증서가 발급되었으나 3개월 이내에 반송되어 올 때에는 원 교적에 즉시 복적 된다. 직원은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에서 가) 직원은 당회결의로 교인의 자격으로 복적이 되는 것인가? 나) 직원은 당회결의로 교인의 복적과 아울러 그 직분도 함께 복직이 되는 것인가?

75. 고소고발 공소 시효

순서노회장 위용운 장로가 제출한 “순서노 제42-62호 / 사문서 위조와 공소시효의 관한 질의서(2019.4.19.)” 건

해석 : 질의1)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어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2) 헌법 권징 제49조에 근거 고소는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헌법 권징 제52조에 근거 고발은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과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발하지 못한다.

질의내용 : 질의1) 사문서 위조에 의해 허락된 위임목사 합헌/위헌 어디에 해당됩니까? 당회록을 조작(목사1, 장로1을 ~ 목사1, 장로4로) 해서 청빙 청원한 위임목사

질의2) 공소시효 적용은 최소 알게 된 날 부터인지? 최종적으로 알게 된 날부터 인지? 그리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임. 20년 이상 조작된(이중) 장부 처음엔 몇 건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확인해보니 계속 되어 왔음을 발견하고 시간 날 때마다 계산을 해서 찾아내게 됨.

76. 기도처, 전도처, 개척지 개념

총회 국내선교부장 전일록 목사가 제출한 “국내선교부-166 / 기도처, 전도처, 개척지 개념에 대한 질의 요청(2019.4.19.)” 건

해석 : 질의1) 기도처는 헌법 정치 제12조에 근거 세례교인(입교인)의 수가 15인 미만인 경우와 지교회 설립된 상태로 2년간 계속되는 경우에 기도처라고 한다. 전도처는 전도목사가 헌법 정치 제27조에 근거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 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처소를 말한다. 개척지라 함은 노회의 허락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개척하고 있는 곳을 말한다.(참고: 제94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9번. 참조)

질의내용 : 헌법에 나타난 기도처, 전도처, 개척지에 대한 개념을 질의하오니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7. 은퇴목사 교인 자격유무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1949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19.6.7.)” 중 1항. 전국은퇴목사회장 손승원 목사가 제출한 “전은305 / 교인 정의에 관한 질의(2019.2.22.)” 건

해석 : 헌법 정치 제17조(교인의 이명), 제18조(교인의 출타신고), 제19조(교인의 자격정지), 제20조(교인의 복권)를 보면 교인의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노회 소속인 은퇴목사의 경우 은퇴 후 교인의 신분으로 전환되어 당회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며, 헌법 정치 제27조 제11항, 제74조 제2항, 헌법 권징 제7조 제2항에 근거 목사(은퇴목사 포함)는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당회의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며, 정치 제90조 제7항, 제91조 제4항, 정치 제67조 제5항에 근거 은퇴목사도 대리당회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의회, 제직

회 회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은퇴목사는 교회에 권리 교인이 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공로목사, 원로목사 등 은퇴목사가 은퇴 후 특정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 후 교회가 정한 예배에 출석과 헌금을 드리고 성례식에 참석하고 교인으로 의무를 행사하는 경우 출석 교회의 교인으로서 의무와 봉사를 감당할 경우에 교인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요?

질의2) 은퇴한 후 시무하던 교회에 출석하면서 위의 1항과 같이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면서 봉사를 감당할 시에 교인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지요?

질의3) 전국은퇴목사회 회원 목사들이 거주지의 교회에서 교회에 출석하며 교인으로서 의무를 행사할 시에도 교인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지요?

78. 노회개회 성수, 장로피택과 임직

목포노회장 이진구 목사가 제출한 "제120-25호 / 헌법해석 질의 건(2019.5.20.)"

해석 : 질의1)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8조 제2항에 근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과반수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속회 시 이의 없이 기 처리된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단, 법규개정에 있어서는 개별 법규에 정해진 정족수가 미달되면 무효이다.(총회 규칙부 해석 참고.)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37조 제1항에 근거 산하기관은 헌법 정치 제92조 제1~제4항에 의거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 따라서 목포노회와 땅끝노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 땅끝노회 서부유지재단은 산하기관이다.

질의3)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3항에 근거 장로는 피택 된 후 1년 이내에 노회 장로고시에 응시하여야 하고, 제4항 장로는 고시에 합격한 후 1년 이내에 임직하여야 하며 만일 임직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1년 간 연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택(2018년 3월) 후 1년 이내 노회 장로고시 합격하고 임직(2018년 9월)을 실시하였다면,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노회 허락 후를 1년을 기준으로 하는 목포노회 규칙 및 세칙과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노회(장로)고시와 임직 허락 청원을 관리해야 할 노회가 이를 관리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미 임직한 장로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헌법 정치 제76조 "노회는 회원(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목포노회 제120회기 2

일째 회무진행 중 1) 신안시찰이 헌의한 헌의 건과 기타논의 시간에 진행된 2)선거관리위원회에 부노회장 입후보서를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노회의 모든 직임을 사임하게 하자는 건 3) 노회 내 상임부서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부서장과 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결의 되었으나 일부에서 노회 이틀째 속회 정족수(재적과반)가 채워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그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함.

질의2) 목포노회와 땅끝노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 땅끝노회 서부유지재단이 목포노회의 산하기관인지 유관기관인지?

질의3) 목포노회에 소속된 A교회가 2016년 10월 노회에 장로 3인 증원 허락 청원을 받았으나 사정상 2017년 10월까지 장로 피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2018년 3월 장로 피택을 하여 2018년 4월 봄노회 때 장로고시 청원과 장로고시 합격 후 임직허락 청원을 하여 노회 고시를 합격하고 당회의 교육을 수료하여 2018년 9월 장로 임직을 하였는데 일부에서 이 임직 무효라고 주장하는 형편입니다. 시찰회, 노회 임원회, 고시부, 정치부 심의를 거쳐 임직을 이미 하였는데 이런 경우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와 이 임직이 유효한지 무효한지?목포노회 규칙 및 세칙과 규정 2. 세칙 및 규정 제2조 3에 의하면" 노회 허락 후 1년 내에 피택장로를 세우지 못하거나 피택 후 1년 이내에 임직하지 못하면 노회 허락이 무효로 된다.(헌법시행규정 제26조)라고 되어 있음.

79. 헌의위원회 및 기소위원회 역할

경남노회 직무대행 부노회장 이용우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019-105호 / 헌법 질의건(2019.6.10.)"

해석 : 질의1~3) 헌법 정치 제28조 제3항에 근거 담임목사 임기는 3년이다. 그러므로 담임목사 청빙서류에 6개월 후 사임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노회가 결의하였다고 하면 헌법 정치 제28조 제3항에 근거 3년으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헌의위원회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부서에 헌의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로 헌법시행규정 제9조에 근거 경유기관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헌의위원회가 결의하여 헌의하였다고 해도 목사청빙은 헌법 정치 제29조 제1항, 제3항, 헌법시행규정 제16

조의 1에 근거 시찰회 경유하여 정치부를 거쳐 노회에서 결의하여 승인한다. 이에 목사청빙 관련 헌법조항을 볼 때,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여 승인하는 정치부와 노회 결의에 책임이 있다. 따라서 안건을 헌의한 헌의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헌의위원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책벌하는 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오류이며 위법한 책벌이다.

질의4) 증거물에 대한 판단은 해당 재판국이 판단한다.

질의2-1) 고소를 취하하였기에 적법여부를 다툴 수는 없으나, 적절하지 않으므로 기피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다.

질의2-2) 고소장에 죄목이 없다고 하여도 기소위원회에서 조사하여 기소 시 죄목을 추가할 수 있다.

질의2-3) 기소위원의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헌법 권징 제8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38조 및 제61조에 근거 기소위원회가 판단한다.

질의2-4~2-7) 헌법 권징 제142조 내지 제145조 및 제149조에 근거 해당 재판국이 판단한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조항과 다른 단서조항에 대하여 불법성이 있음을 알려주었고, 이를 알면서 서류를 올린 후 6개월이 지나서 불법서류를 받아 처리했다고 헌의위원장을 고소한 경우는 권징 제154조 원고 적격 사항에 위배되는 원고 부적격과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요?

질의2) 헌의위원회는 서류를 검토하여 기본적인 양식에 문제가 없으면, 해당 부서에 배분하는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의 고소는 행정소송이 아닌 직무유기를 했다고 하면서 권징 고소 건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행정소송이 아닌지요? 또한 헌법 제155조 1항의 “행정소송의 피고는 치리회장이 된다.”는 조항에 의거해 볼 때 본 사건의 피고는 당시의 헌의위원장이 아닌, 당시의 노회장이 되는 것이며, 현재의 피고는 피고부적격에 해당되지 않은지요?

질의3) 위의 배경설명의 과정에서 헌의위원장은 불법과 합법의 해석과 처리는 정치부와 본 회의 시에 있다는 노회 규칙과 전통적인 관례대로 사회하고 통과 시켰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고소인들은 고소문건에 “헌의위원장으로서 연임청빙서류가 적법하지 않는 서류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반려조치를 하지 않았다.”, “헌의위원들과 노회원들에게 고의로 은닉하고 은폐하였다.”, “헌의위원회의 정상적인 서류절차를 무시하고 노회 사무장으로부터 직접 수령 후 정상적인 서류인양 헌의위원

회와 노회원들에게 보고하여 기만하였다.” 라고 하며 거짓진술로 고소했습니다. 여기에서 질의합니다. 이런 경우가 헌의위원장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요?

질의4) 위의 고소인들은 본 노회 재판국의 기각판결에 불복하면서 총회 재판국에 상고했습니다. 문제는 상고하면서 위 건과 전혀 관계없는 본 노회에 계류 중인 공천위원회 고소건의 모두 진술과 서증, 물증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질의합니다. 본 재판과 전혀 관계없는 증거물이 상고심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일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아닌지요?

질의2-1) 위의 배경 설명 다섯째 단계에서 밝힌 대로 공천위원이었던 고소자들이 노회 공천위원장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서류가 접수 진행 중에 고소인이 노회 회무 중 기소위원으로 공천되어 기소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고소한 사실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여 기소위원장이 되어 직접 기소하는 행위가 합법인지요? 불법인지요?

질의2-2) 위의 배경 설명 서론에서 밝힌 대로 공천위원들 간의 공천배분의 의견 차로 일어난 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125회기 본 노회 시에 조정하고 수정 보완하여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고소자가 기소위원장이 되어 노회 재판국에 기소하였습니다. 공천위원회에서 올린 공천명단을 본회에서 심의하고 수정 보완하여 통과한 업무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행위가 아닌지요? 또한 기소장에는 새로운 죄와 증거물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직무유기, 직권남용, 문서위조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에 없는 죄목을 기소위원회에서 임의로 추가하여 기소했습니다.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하여 위배 되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이러한 행위가 직무유기, 직권남용, 문서위조의 죄가 적용이 되는지요?

질의2-3) 피고인(공천위원장)이 최초 고소자였던 기소위원(장)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61조 3항에 의거하여 기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기소위원회에서는 총회 상고장에서 헌법에도 없는 기피신청을 했다고 상고했고, 또한 기소위원장이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서 기피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질문합니다. 헌법시행규정 제61조 3항은 피고인이 기소위원 1명을 기피신청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정확한 해석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런 경우 본 노회 기소위원회의 기각 행위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질의2-4) 기소위원장이 본 건 고소인 당사자이어서 피고인이 기피신청을 했지만 기각 당하였습니다. 이 후 노회 재판국에 기소위원 기피재정신청을 하였는데, 재판국이 이런 기피신청을 받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요?

질의2-5) 어떤 사건이든지 고소는 피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위 고소 건은 피해자가 없습니다. 헌법 제8장 제154조 원고적격 1항에 의하면 “소송은 치리회장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피해 당사자가 있어서 제3자인 고소인들이 했다 한다면, 고소장이 아닌 고발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볼 때 고소인들은 원고 부적격자들이 아닌지요? 또한 고소자들은 같은 공천위원들입니다. 만약 잘못됨이 있으면 정식으로 의의 제기나 공천위 재소집을 요청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없이 공천위원회 임원들을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의2-6) 헌법 제8장 행정소송 제15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항, 2항에 의하면, “행정 소송의 피고는 치리회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75조 행정소송의 대상범위 2항에 의하면, “노회, 총회의 상임부서 및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장은 그 치리회의 보조기관이므로 행정행위를 외부에 표시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볼 때 본 소송건의 피고는 공천위원회의 임원이 아닌, 당시의 치리회장인 노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피고가 잘못 지정된 때는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고를 바꾸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건의 경우는 피고부적격이 아닌지요?

질의2-7) 위의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볼 때 기소위원회의 기소는 소추재량의 일탈과 요건불비로 인한 기소권 남용이 아닌지요?

80. 수습전권위원회 권한 및 임시당회장

군산노회장 문준섭 장로가 제출한 “80-60 / 헌법해석 질의(2019.6.13.)” 건

해석 : 질의1) 교회가 분립하고자 하면 헌법 정치 제11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5조, 제6조에 근거 지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수습전권위원회에서 교회 분립을 결정할 수 없다.

질의2,3) 임시당회장 파송은 헌법 정치 제67조,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에 근거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경우 노회가 파송할 수 있다. 따라서 당회장이 결

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수습전권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교회를 분립함이 불법인지요?

질의2)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임시당회장 파송이 불법인지요?

질의3) 임시당회장 파송요청 공문을 접수한 노회장은 인사권은 정치부 처리 사항이기에 임원회의를 통하여 정치부로 이첩함이 불법인지요(수습전권위원회는 당회장권을 정지시킨바 없고, 임시당회장은 본 교회에서 파송 요청).

81. 조기은퇴

부산남노회장 황형찬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78-44호 / 헌법 질의(2019.6.17.)” 건

해석 : 질의1) 항존직(당회원)은 총회 헌법 정치 제22조 단서조항에 근거 70세가 되기 전에 조기 은퇴하고자 할 경우 당회에 조기은퇴청원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허락을 받아 조기 은퇴할 수 있다. 따라서 ‘항존직(당회원)은 65세 조기은퇴하기로 한다.’는 당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회의 허락만 받으면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조기 은퇴)할 수 있으므로 조기 은퇴는 총회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소속 당회에서 65세에 조기 은퇴하기로 자의로 결의하고 직접 당회원들이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예컨대, 65세가 되었을 때쯤에) 조기은퇴를 거부하는 장로가 있을 경우 위 당회 결의를 이유로 70세 이전(예컨대, 65세가 되었을 때)에 장로의 조기은퇴를 강제할 수는 없다. (제101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101번, 제102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28번 참조.)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15조 제1항에 근거 항존직에 있는 자가 정년 전에 은퇴하려면 소속 당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고, 정년 전에 복직하려면 자의사직 목사, 장로의 복직절차(정치 제47조 제3항)에 따라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본 교회가 항존직(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정년을 당회에서 결의하여 65세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질의2) 조기 은퇴한 70세가 되지 아니한 항존직(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은 복귀를 해야 하는지?

82. 교단탈퇴자의 재심청구권 유무

강원노회장 서상택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32-036호 / 헌법해석 의뢰(2019.6.17.)” 건

해석 : 질의1,2) 헌법 권징 제3조 및 제4조,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4항에 근거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 따라

서 본 교단의 소속된 자가 아닌 경우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교단을 탈퇴한 자는 재심도 청구할 수 없다.

질의3,5) 총회에 접수된 재심서류에 대한 반려 및 재심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국에서 판단함이 적법하며 총회장이라 하여도 접수된 재심서류에 대한 반려는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교단을 탈퇴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4항에 근거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접수를 거부할 수 있거나 재판국에 조건부 이첩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대상자의 판단은 헌법 권징 제8조에 근거 해당 재판국이 한다.

질의4) 국가법원에서 위증죄로 형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헌법 권징 제3조 제7항에 근거 권징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재판 없이 노회에서 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무국-122 / 헌법해석 통보(2019.1.11.) 참조.)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3626 / 교단 탈퇴자의 재심청구권 유무 헌법질의(2018.12.18.)" 건

해석 : 질의1) 헌법 권징 제3조 및 제4조,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4항에 근거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 단, 외국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의 직원이나 혹은 종교적 이유로 귀국치 못하는 자가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교회에 직원으로 봉사할 때도 적용된다. 따라서 본 교단의 소속된 자가 아닌 경우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교단을 탈퇴한 자는 재심도 청구할 수 없다. 질의2) 총회에 접수된 재심서류에 대한 반려 및 재심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국에서 판단함이 적법하며 총회장이라 하여도 접수된 재심서류에 대한 반려는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교단을 탈퇴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4항에 근거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접수를 거부할 수 있거나 재판국에 조건부 이첩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재판국 판결로 면직, 출교된 자가 그 이후 교단에 탈퇴하여 소속 노회에서 제명되었는데 2년여 시간이 경과되었고, 교단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직, 출교 판결(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총회 재판국이 이 재심청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위 면직, 출교 판결(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권을 총회 서기부가 재심청구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반려하지 않고 재심청구권 성립여부를 확인 후 처리하도록 총회 재판국에 조건부로 이첩한 행정 처리는 적법한지 여부

질의내용 : 질의1) 권징 제3조 및 제4조,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4항에 근거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교단을 탈퇴한 자는 재심도 청구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데 회원박탈자인 일반인의 재심청구를 받아 재판할 수 있는지?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86조 제3항 '가중처벌자는 이의, 상소할 수 없다' 되

어 있는데 가중처벌을 받은 자의 이의 상소와 재심을 할 수 있는지?

질의3) 본건과 같이 재심청구조건에 맞지 않는 건도 반려하지 않고 재판을 강행해도 되는지요? 또한 우제영 씨 목사직 회복을 위한 연명자인 기피대상자가 재판을 해도 되는지요?

질의4)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금고를 받았는데 노회에서 제명의 대상이 되는지?

질의5) 총회임원회의 중지명령(사무국1831호 2019.5.31.)에도 재심을 강행할 수 있는지?

83. 재판국원 교체 적법 여부

충주노회 재판국장 김찬영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서(2019.6.4.)" 건

해석 : 기 통보한 "사무국-1515 / 헌법해석 통보(2019.5.3.)", "사무국-1516 / 헌법해석 통보(2019.5.3.)" 건 해석으로 갈음하다.

〈사무국-1515 / 헌법해석 통보(2019.5.3.)〉 충주노회 충주상일교회 류승준 목사 제출한 "2018-8 / 총회 헌법위원회 헌법해석 질의 청원의 건(2018.11.14.)", 충주노회 충주상일교회 류승준 목사가 제출한 "충상19-02 / '헌법위원회 질의 청원 추가 보완 및 증거자료' 제출의 건(2019.1.17.)"

해석 : 질의1) 회의순서 보고는 노회 시 노회원들에 의해 회순 채택 등으로 할 수 있다. 질의2) 헌법 권징 제11조의1, 제16조, 제17조에 근거 노회 재판국원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1을 개선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불구하고 재판국원의 전원 교체는 노회의 결의라 할지라도 적법하지 않다. 또한 재판국의 판결은 노회 결의로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헌법 권징 제91조 및 제94조에 근거 차상급 재판국에 상소(항소)할 수 있다. 질의3,4) 노회 임원선거에 대해서는 헌법 정치 제75조에 근거 충주노회 규칙 및 선거관리세칙에 따른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대한 것은 노회규정 또는 노회 선거관리규칙 등 충주노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 질의1) 회의순서보고 시간에 재판국장이 부노회장 후보로 나와서 선거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전에 재판국 임시보고를 하게 해달라는 발언을 하여 노회장이 노회원들에게 묻고 재판국 임시보고를 하게 했는데 절차와 선거법에 적법한지 질의2) 재판국 전원 교체와 노회 재판국에서 이미 판결 선고한 재판을 취소하고 기소부터 다시 하도록 결의한 것이 적법한지? 질의3) 충주노회 재판국장으로서 판결한 것을 문제 삼아, 절차와 판결에 문제가 있어 당시 재판국장이었으므로 목사 부노회장 후보 자격에 결격사유가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기소가 된 적도, 재판의 확정 판결도 없음에도 결격사유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4) 단독 후보인데도 자격 신임투표를 하게 해서 불신임을 받게 했고, 노회장은 목사 부노회장이 당선이 안 된 것으로 선포하였는데 선거법에 적법한지

〈사무국-1516 / 헌법해석 통보(2019.5.3.)〉 충주노회 기소위원장 조세환 목사가 제

출한 “총회 헌법위원회 헌법 해석 질의청원 요청의 건(2019.1.9.)”

해석 : 질의1) 노회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정치 제75조에 근거 충주노회 규정 및 선거관리세칙에 따른다. 따라서 선거관리세칙에 관한 사항이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충주노회가 결정한다. 질의2) 헌법 권징 제11조의1, 제16조, 제17조에 근거 노회 재판국원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1을 개선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불구하고 재판국원의 전원 교체는 노회의 결의라 할지라도 적법하지 않다. 또한 재판국의 판결은 노회 결의로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헌법 권징 제91조 및 제94조에 근거 차상급 재판국에 상소(항소)할 수 있다.

질의내용 : 1)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후보자 소견발표를 하였으나 후보자의 검증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노회직전의 재판절차 진행에서 심각한 불법과 탈법한 사실이 밝혀지고 후보자 신임에 대하여 격렬한 토론 이후에 투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후보자인 류승준 목사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 결과에 겸허히 승복한다고 노회 앞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질의1) 단독 입후보자인 경우에는 투표 없이 후보자의 소견을 듣고 박수로 당선을 확정(충주노회 선거에 관한 규정 5.)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단독 후보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증절차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노회 개회직전에 재판국장으로서 심각한 불법과 탈법한 사실이 밝혀짐으로 후보자 자격신임에 대하여 노회원 다수가 투표하기로 결의한 것은 선거 권자로서의 적법한 권리행사인가? 2) 충주노회 제13회 정기노회에서 노회원들은 재판국의 판결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재판국장과 국원들이 첫째, 기피신청을 다룰 수 없는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사실. 둘째, 불복신청을 하였으나 소송을 중지하지 아니한 사실. 셋째, 변론기일을 당일 핸드폰 문자로 변론기일을 기소위원장에게 알린 사실. 넷째, 재판국의 제출한 서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거짓말 한 사실로 재판국장과 국원들이 재판의 절차와 법리를 위반하며 판결문 낭독 후 다수의 회원들과 기소위원회는 재판절차와 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거센 항의와 비판이 있었고 국장은 거짓말로 변명을 하였으나 오히려 절차와 헌법을 위반한 불법재판이었음을 알게 되어 노회원들은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하여 재판을 다시 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요구가 성안되어 표결에 부친 결과 총 투표수 142표, 찬성 98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 결되어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되었습니다. 질의2) 재판국장의 행위(절차, 법리, 탈법, 불공정한 재판)에 대하여 묵인 방조한 재판국원의 전체 교체를 한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요?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제99회기 제102회기에서 재판국원 1년조, 2년조를 교체 공천하기로 결의한 것, 제103회기에서 재판국원 1년조, 2년조, 3년조 모두를 공천하기로 한 결의가 적법한 것인지?

84. 부목사의 연임 청원

진주남노회장 이성철 목사가 제출한 “진주남 제125-19호 / 헌법질의(2019.6.27.)” 건

해석 : 질의) 헌법시행규정 제18조 제2항 담임목사는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없으

나 위임(담임)목사 공석 전부터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 시무 중인 전도사의 목사 안수 및 청빙은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목사 공석 전부터 있던 부목사 연임청원은 할 수 있다.(참고: 단서 조항 "〈단, 임시목사가 부임한 후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 청원할 수 있다.〉는" 2012.9.20. 개정 삭제됨.)

질의내용 : 질의)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다(헌법 제5장 27조 3항)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임목사와 담임목사는 노회청빙이 허락된 때부터 헌법이 적용이 되므로 담임목사가 부목사를 계속 청빙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유) 남해읍교회 담임목사는 제122회기(2017.10.12.)에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았으며, 헌법시행규정 제18조 1항과 2항에 의해서 제123회기(2018.4.5.~6.)에 전도사를 안수하여 부목사로 청빙 했었다. 그러나 담임목사로 부임한지 1년 6개월이 경과한(2017.10.12. 청빙 받음.) 담임목사가 제125회기(2019.4.11.)에 다시 부목사 계속 청빙하는 것은 상위법인 위임목사(헌법 제5장 27조 3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85. 기도처, 전도처, 개척지 개념

국내선교부장 전일록 목사가 제출한 "국내선교부-265 / 기도처, 전도처, 개척지 개념에 대한 재질의 요청(2019.7.5.)" 건

해석 : 기도처는 헌법 정치 제12조 제2항에 근거 지교회가 설립된 후 세례교인(입교인)의 수가 15인 미만의 상태로 2년간 계속되는 경우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개척하는 경우 기도처라고 한다. 전도처는 전도목사가 헌법 정치 제27조에 근거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 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처소를 말한다. 개척지라 함은 노회의 허락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개척하고 있는 곳을 말한다.(참고: 제94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9번. 참조.)

질의내용 : 총회국내선교부는 기도처, 전도처, 개척지 개념에 대하여 헌법질의〈국내선교부-166 (2019.4.19.)〉를 하여 헌법해석 통보〈사무국-1871(2019.6.3.)〉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모호한 바 전도처와 기도처, 개척지 개념에 대하여 재질의 하오니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 교회 설립 조건

부산동노회장 남기룡 목사가 제출한 "부산동노회 제78-36호 / 교회 설립 및 가입에

대한 질의의 건(2019.7.3.)”

해석 : 헌법 정치 제10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4조에 근거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 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하되 정치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그 교회에 입회될 교인들이 서명 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립 청원 시 담임 교역자가 있어야 하고 담임교역자는 제91회 총회 결의에 따라 개척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담임 교역자가 노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설립 청원 시 개척훈련을 받을 수 없을 경우 향후 받을 것을 전제로 조건부 허락을 할 수 있다.

질의내용 : 헌법 정치 제10조에 의거 지교회 설립은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되어 있고 제91회 총회 시 “신설 개척되는 교회는 설립 청원 시 담임교역자가 반드시 총회가 실시하는 개척훈련을 받은 자로 한다.”로 결의하여 교회 설립하는 담임교역자로 하여금 먼저 총회에서 실시하는 교회 개척훈련을 받게 하고 교회 설립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노회 소속교회 중 분쟁으로 세례교인 15명 이상이 따로 예배처소를 마련하여 담임교역자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 평신도를 대표자로 하여 교회 가입 청원을 하였습니다. 만약 교회가입을 허락할 경우 총회 개척훈련을 받지 않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기에 교회 가입(설립)을 허락해야 하는 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 당회원의 제한

전남노회장 정종채 장로가 제출한 “전노 제130-123호 / 헌법 해석 신청 청원(2019.7.3.)” 건

해석 : 질의1~3)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13항에 근거 당회원 중 2촌 이내의 자나 배우자가 당회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13항 신설 이전에 장로가 된 경우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으나 관련조항이 신설된 후, 2촌 이내로 구성된 당회는 헌법시행규정 취지에 적법하지 않다. 그러나 당회록의 유무효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노회에서 헌법시행규정 취지를 따라 신규 충원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질의내용 : 해당 교회의 당회는 헌법시행규정 제26조 13항 신설 개정되기 전 당회가 당회장 1명, 당회장 배우자(장로) 1명, 당회장의 친형(장로) 1명으로 현재는 2촌 이내로 구성된 당회입니다.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26조 13항이 신설되기 이전 조직된 당회이기 때문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장로를 신규 충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충원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26조 13항이 신설 후에 결의된 당회록은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질의3) 노회에서는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88. 은퇴목사 교인 자격 유무

전국은퇴목사회장 우제돈 목사가 제출한 “전은목 32-19-5 / 헌법해석 통보(전국은퇴목사회)에 관한 건(2019.7.12.)”

해석 : 기 통보된 “사무국-157 / 헌법해석 통보(2019.1.11.)”, “사무국-160 / 헌법해석 통보(2019.1.11.)”, “사무국-2434 / 헌법해석 통보(2019.7.3.)” 건 해석으로 갈음하다.

〈사무국-157 / 헌법해석 통보(2019.1.11.)〉 대구서남노회장 임영태 목사가 제출한 “대서남노 제183-8호 / 은퇴목사의 신분에 관한 질의 건(2018.12.12.)”

해석 : 헌법 정치 제27조 제10항, 제74조 제2항에 근거 목사(은퇴목사 포함)는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개 교회에 교인이 될 수 없다.

질의내용 : 은퇴한 목사가 시무한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사무국-160 / 헌법해석 통보(2019.1.11.)〉 부산노회 신창수 은퇴목사가 제출한 “총회헌법위원회 해석 청원의 건(2018.12.15.)”

해석 : 질의1) 노회 소속이다. 질의2) 노회이다. 질의3) 교인이 대리당회장이 될 수 없다. 헌법 정치 제27조 제10항, 제74조 제2항에 근거 목사(은퇴목사 포함)는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개 교회에 교인이 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은퇴목사(공로, 원로, 은퇴)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노회? 교회? 목사가 70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 노회의 결의로 공로(20년 이상) 또는 원로(20년 이상)로, 그 외는 은퇴목사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 정치 제27조(목사의 칭호) 제7항에 원로목사에 대해, 제8항에는 공로목사에 대해, 제9항에는 무임목사에 대해, 제10항에는 은퇴목사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정치 제11장(노회) 제74조(노회원의 자격) 제2항 “공로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 전 노회장, 전 부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목사의 소속은 노회입니까 교회입니까? 즉 은퇴목사는 교인입니까? 질의2) 그리고 은퇴목사의 권징의 주최는 당회입니까? 노회입니까? 헌법 권징 제5조 제2항에는 교인에게 과하는 벌이 있고, 제3항에는 직원(항존 및 임시직원)에게 과하는 벌로 구분하고 있는데 은퇴목사(원로, 공로)가 죄를 지었을 때 제2항에 의하여 벌을 받게 됩니까? 제3항에 의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은퇴목사가 교인이면 1심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은퇴목사는 2심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질의3) 헌법 정치 제67조 제5항에는 대리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

다고 했는데 교인이 대리 당회장이 될 수 있습니까? 따라서 목사가 은퇴를 하게 되면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항존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퇴목사는 노회의 언권회원이며 노회가 관리하는 직임이라고 생각하는데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무국-2434 / 헌법해석 통보(2019.7.3.)〉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1949 / 헌법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19.6.7.)" 중 1항. 전국은퇴목사회장 손승원 목사가 제출한 "전은305 / 교인 정의에 관한 질의(2019.2.22.)" 건

해석 : 헌법 정치 제17조(교인의 이명), 제18조(교인의 출타신고), 제19조(교인의 자격정지), 제20조(교인의 복권)를 보면 교인의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노회 소속인 은퇴목사의 경우 은퇴 후 교인의 신분으로 전환되어 당회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며, 헌법 정치 제27조 제11항, 제74조 제2항, 헌법 권징 제7조 제2항에 근거 목사(은퇴목사 포함)는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당회의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며, 정치 제90조 제7항, 제91조 제4항, 정치 제67조 제5항에 근거 은퇴목사도 대리당회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의회, 제직회 회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은퇴목사는 교회에 권리 교인이 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공로목사, 원로목사 등 은퇴목사가 은퇴 후 특정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 후 교회가 정한 예배에 출석과 헌금을 드리고 성례식에 참석하고 교인으로 의무를 행사하는 경우 출석 교회의 교인으로서 의무와 봉사를 감당할 경우에 교인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요? 질의2) 은퇴한 후 시무하던 교회에 출석하면서 위의 1항과 같이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면서 봉사를 감당할 시에 교인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지요? 질의3) 전국은퇴목사회 회원 목사들이 거주지의 교회에서 교회에 출석하며 교인으로서 의무를 행사할 시에도 교인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지요?

질의내용 : 본회가 질의한(전은305, 2019.02.22.) 은퇴목사 교인 건에 대하여 2017년 07월 13일자로 본회에 통보한 헌법 해석은 납득할 수 없는 해석이므로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수정통보 바랍니다. 1. "은퇴목사는 교회의 권리교인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헌법 정치 제3장 교인 제16조 교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제3장 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혹 공동의회 피선거권 등 부분제한 해석은 가능할지라도 헌법조문 교인의 권리 전체를 부정하는 해석은 은퇴목사 교인권과 자유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것이 되고 마치 헌법위원회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비추어 짐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사과와 함께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카톨릭과 달리 목사는 임직 후에나 은퇴 후에나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결같이 공교회 교인인 동시에 지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대로 교인 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신학을 대표하는 루터와 칼뱅의 만인제사장이론에도 따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퇴목사는 기본

적으로 노회의 소속 회원이기 때문에 총회와 노회법에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퇴목사는 공교회교인으로서 지교회의 교인도 될 수 있습니다. 지교회의 교인으로서 교회를 섬기며 성찬에 참례하며 지 교회의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노회의 관리 하에 있으며 지교회와의 관계에서는 공동의회의 회원으로서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와 모든 의무를 행하면서 교인으로서 헌법의 존엄성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89. 원고 적격 및 피고 경정

서울북노회 팔호교회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헌법 권징 제154조[피고 적격 및 경정]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의 건(2019.7.24.)”

해석 : 기 통보된 “사무국-3506 / 헌법해석 통보(2019.12.11.)”, “사무국-158 / 헌법해석 통보(2019.1.11.)” 건 해석으로 갈음하다.

〈사무국-3506 / 헌법해석 통보(2019.12.11.)〉 서울북노회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헌법 권징 제146조 제1항 및 권징 제75조2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의 건(2018.11.2.)”

해석 :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치리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의 규정이나 통상 관례에 따라 직무대행의 범위 내에서 행정소송의 피고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부적합한 소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소 각하 판결은 재판국이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 질의1) 우리 교단 헌법 권징 제146조 [피고적격 및 경정] 1.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리회장의 자격은 치리권을 가진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혹은 헌법이 정한 직무대행자로서 부노회장, 부총회장이 치리회장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치리회장인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유고상태이며 이를 대신할 부노회장, 부총회장이 부재할 경우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누구를 세워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헌법시행규정 권징 제75조 [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2.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소 각하 판결을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소송의 요건불비에 원고나 피고부적격도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치리회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에서 치리회장(당회장, 부노회장, 부총회장)이 부재할 경우 헌법 제146조 제1항에 위배되는 요건불비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재판국은 요건불비로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며 정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158 / 헌법해석 통보(2019.1.11.)〉서울동남노회 직전노회장 고대근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75-013호 / 헌법질의(2018.11.29.)”

해석 : 질의1) 회원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으로 원고적격여부를 다툴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헌법 권징 제145조에 근거한 원고적격여부는 관련 증거 등에 따라 재판국이 판단한다. 질의2)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치리회장 유고시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에 근거 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치리회 임원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개선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또한 노회규칙 및 규정 등에 의해 직무대행의 범위 내에서 행정소송의 피고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피고적격 여부는 관련 증거 등에 따라 재판국이 판단한다.

질의내용 : “김수원 목사 외 13인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7.10.24.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청원 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소장에서 “헌법 권징 제155조(결의무효확인의 소)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총회재판국에 소장을 제출한 “치리회원인 김수원 목사 외 13인”이(14인의 원고들) 서울 마천세계로교회 본당에서 2017.10.24. 서울동남노회 73회 정기노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청원 건에 관한 결의할 당시에 원고들 14인이 (김수원 목사 외 13인이) 회의장에서 노회원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탈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김수원 목사 외 13인(원고1 김수원, 원고2 이용혁, 원고3 최규희, 원고4 고은철, 원고5 구탁서, 원고6 박봉화, 원고7 백종찬, 원고8 안장익, 원고9 이신성, 원고10 이옥기, 원고11 이재룡, 원고12 이현성, 원고13 장병기, 원고14 장원기)”이 제기한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노회서기 김용석 목사가 추가 안건 8건으로 접수되었다고 보고하고, 헌의위원장 김동흠 목사 부노회장이 노회석상에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청원 건”을 정치부로 보낸다고 보고를 마치고, 2017.10.24.자 오후 19시 20분 경. 서울마천세계로 교회 1층 청산홀에서 정치부서 모임인 정치부장 고대근 목사 외 8명이 참석하여 추가 안건으로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청원” 안건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노회원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적법하게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결의 승인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동남노회 정치부 모임에서 ”정치부원 원고4 고은철과 원고13 장병기”는 정치부 모임에 참석하여 치리회원(노회원)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치리회원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탈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에서 치리회장(노회장)은 정치부장 고대근 목사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가한 줄 아오며” 전노회원들에게 가부를 물었을 때에 전노회원들은 만장일치로 “허락이요”라고 하였고, 반대로 원고1 김수원 목사 외 13인은

"아니요"라고 권리의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회의장을 이탈하였고, 그리고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으로 인하여 명성교회 당회원(치리회원)이 아니므로 원고1 김수원 외 13인들에 대한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질의1) 이 경우에 원고1 김수원 외 13인들은 자신의 권리(치리회원의 권리)를 포기하고 회의장을 이탈한 자들이 무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성립되는 지 여부"와 ②"원고적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2) 또한 현재 제74회 서울동남노회가 2018.10.30.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오전 10시 20분 경. 개회가 선언된 후에 의장의 자격의 시비로 인하여 노회분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치리회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현재 총회재판국에서 계류 중인 재심청구 사건번호102-29호(접수일 2018.9.7)에서 "피고(피재심청구인: 현재 노회장 공석) 적격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 현행 헌법 권징 제8장 행정쟁송 제2절 행정소송 제145조 [피고적격 및 경정]는 "1.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현행대로 가능하지만 치리회장이 치리회장의 자격으로 소송(권징)을 제기하였을 경우나 치리회장이 피고인 경우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인 치리회장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치리회장이 선임되었을 경우 해당 소송의 원고나 피고의 권한과 위치도 승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치리회장이 치리회장의 권한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에 그 권한과 책임 역시 차기 치리회장에게 승계되어야 한다고 사료됨으로 이에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만약 새로운 치리회장이 소송의 승계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치리회장이 승계를 거부할 수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 항존직의 이명 절차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 서영애 재판장이 제출한 "사실조회서(사건 2019가합10649 손해배상(기)" 건

해석 : 질의 가-1,2) 이미 다른 교회에 가서 등록하였다면 종전교회 교인의 자격은 상실되어 피택은 유효하지 않다.

질의 가-3~6)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3항, 제4항, 제8항에 합당하지 않다. 원인무효 및 다시선출여부는 해당 치리회에서 당시 사항 및 절차의 위반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질의 가-7) 본 교단 즉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소속 교회에서 이미 장로로 임

직한 사람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내에 타 교회로 이명 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질의 나-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소속 교회가 아닌 다른 교단의 교회에서 이미 장로가 된 사람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내에서는 집사가 처음 장로로 피택하는 절차 즉 헌법 정치 제41조~제42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질의 나-2)-가~마) 귀책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나 양측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교단이고 장로는 교회 소속이기에 교회를 떠나면 교회법상 장로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항은 양측이 충분히 알고 있을 수 있기에 양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교인과 달리 항존직(장로, 안수집사, 안수권사)의 이명증서는 반드시 제출하여 이명절차가 완료된 뒤 항존직 피택 및 임직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항존직의 경우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명증서로서 무흠 여부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12조 제2항에 근거 "항존직 선출 시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무흠기간을 본 교회 등록일로부터 새로 기산하여야 한다." 본 교단 이명장로의 경우 공동의회에서 신임되었을 경우 장로고시 및 안수절차가 없는 점, 타 교단의 이명장로일 경우 본교단의 처음 장로로 임직하는 사람과 동일하나 다만 안수를 받지 않는 점은 다르다. 따라서 이명증서는 본 교단 또는 타 교단 장로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이명증서는 헌법 정치 제17조 헌법시행규정 제11조에 근거 제출해야 하고 항존직의 경우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강제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9항에 근거 항존직의 자격이 원인 무효로 확인되었을 때에 당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되었음을 통지하고 당회에 보고한 후 항존직 명부에서 삭제한다. 단,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을 때는 해직할 수 없다. 따라서 귀책사유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질의 다) 무흠의 기산은 본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소속교회의 경우는 교회가 다를지라도 이명증서를 제출하여 확인될 경우 헌법 정치 제26조 제2항의 무흠기간은 합산한다. 다만 헌법시행규정 제12조 제2항에 근거 항존직 선출 시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무흠기간을 본 교회

등록일로부터 새로 기산하여야 한다. 헌법시행규정 제27조 제3항 “무흠기간은 항존 직원 임직 시에 적용하고” 라는 뜻은 장로의 경우 피택 될 때부터 헌법 정치 제40조 자격요건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미 적법 절차에 의해 시무중인 자가 헌법 권징 제5조의 책벌을 받거나 국법에 의해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임직시만 무흠기간에 의한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시무중인 자에게는 무흠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질의 라), 질의 마), 질의 마-1~3) 장로의 자격이 원인 무효인 경우 헌법 권징 제147조(구 헌법 권징 제157조)에 의한 소의 제기 기간에 말하고 있는 행정행위 즉 헌법시행규정 제74조 제1항에 근거 “헌법 권징 제141조의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는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행한 처분을 말한다.” 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존직의 자격에 대한 원인무효에 대한 근거규정은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9항에 근거 항존직의 자격이 원인 무효로 확인되었을 때에 당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해직되었음을 통지하고 당회에 보고한 후 항존직 명부에서 삭제한다. 단,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을 때는 해직할 수 없다. 따라서 귀책사유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질의 바) 2007년부터로 확인된다.

질의내용 :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 선택) 3, 4, 8, 과 관련하여

- 3항 “장로는 피택 된 후 1년 이내에 노회 장로고시에 응시하여야 하고, 만일 응시하지 못했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응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불합격하면 노회의 장로고시 허락을 다시 받아야 한다.”
- 4항 “장로는 고시에 합격한 후 1년 이내에 임직하여야 하며 만일 임직하지 못 할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1년간 연기 할 수 있다.”
- 8항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당회의 장로선택 청원과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신임하며 노회 고시부의 면접 후 취임 할 수 있고”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1) 피택 된 자가 임직 없이 타 교회(교적부에 등재)로 갔다가 교회로 다

시 전입(안수집사 및 서리집사)을 하였을 경우, 타 교회로 가기 전 피택 된 사항이 다시 전입하였을 때도 유효한 지, 아니면 위 규정에 의하여 무효화 되고 피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유효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 여부

질의3) 피택 절차 없이 타 교회로 가기 전 피택 된 것으로 임직을 하였을 경우 위 3, 4, 8,항의 규정에 합당한지 여부

질의4) 합당하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관련규정은 무엇인지 여부

질의5) 합당하지 않다면 위 절차 없이 임직한 항존직의 자격이 원인무효가 아닌지 여부

질의6) 합당하지 않을 경우 총회 헌법 제2편(정치) 제41조(장로의 선택), 제54조(집사 및 권사의 선택) 규정에 의해 공동의회에서 다시 선출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7) 위 제26조 제8항의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당회의 장로선택 청원과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신임한다.” 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고, 정확한 해석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나.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 선택) 제8항 “타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의 경우는 처음 선택 할 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하고 규정 하는 바,

질의1) 위 법률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질의2) 교회가 전입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명증서의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이명대장도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타 교단에서 전입하여 당회 및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 노회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임직 한 후 2년이 경과한 시무중인 장로에게 이명증서 미제출의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고, 이명증서의 제출은 강제규정이라며 해임 하였다면 적법한 것인지 여부

가) 적법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 여부

나) 이명증서의 제출을 요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여부

다) 이명증서의 제출이 강제규정인지 여부 및 강제규정이면 총회 헌법 어느 규정인지 여부

라) 이명증서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마) 제출하지 않은 사유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바) 교회가 전에도 전입자에 대한 이명증서의 제출을 요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전입한 장로 또한 교회가 이명증서 제출을 요한 적이 없이 절차에 의해 취임한 사항에서 귀책사유는 타 교단 전입자에게 있는지, 교회에 있

는지 여부

다. 질의) 헌법시행규정 제27조(무흠의 기산 및 적용) 2항, 3항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라. 질의) 총회 헌법 제8장(행정소송) 제157조(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의 2항 “취소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및 3.항의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는 규정은 행정처분에 국한 되는 것인지 여부

마. 질의) 위 “라” 항의 규정이 행정처분이 아닌 신청서에 대한 시효로 적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질의1)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 여부

질의2) 항존직분자의 원인무효의 행위에 대한 시효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질의3) 있다면 총회헌법 관련규정은 무엇인지 여부

바. 총회 헌법의 이명증서에 대한 규정은 언제부터 인지 여부

91. 다른 교단의 목사 청빙

평양노회장 조인서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90-30호 / 청목과정 헌법해석 질의(2019.8.7.)” 건

해석 : 헌법시행규정이 개정이 될 경우 기존 과정 중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적용여부를 규정해야 하나 이에 대한 조항이 없으므로 만약 해당 목사가 개정 헌법시행규정 공포 당시(2017.9.21)를 기준으로 하여, 개정 헌법시행규정 공포 이전에 헌법시행규정 제23조에 근거 청목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헌법을 수강하고 청목과정을 수료한 뒤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 대신(총회 목사고시 없이) 청빙 받은 노회(정치부)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제5항 제4항 개정이후에는 규정에 따라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 중에 헌법 2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제187회기(2017년 10월 24일) 노회 시 청목 청원한 정대경 목사에 대하여 헌법개정이전의 사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경 목사(1982년 12월 21일생)

장로회신학대학교 학부 2003년 3월 4일 입학, 2009년 8월 13일 졸업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M.Div 2009년 8월 24일 입학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M.Div 2011년 1월 31일 편입, 2012년

5월 18일 졸업
해외한인장로회(KPCA) 목사안수(2016년 3월 11일) 해외한인장로회 제52회 서북남노회
제187회기 평양노회 시(2017년 10월 24일) 명지대학교 기관목사 청원

92. 사고노회 규정 후 임시노회 안건처리

서울동남노회장 최관섭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6-003호 / 임시노회 개회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한 질의(2019.8.7.)” 건

해석 : 질의1) 사고노회로 정지되어 있었던 것으로 수습이 되어 정상적인 노회가 구성되었으므로 모든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질의2) 사고노회 이전 등록되어 수습노회 시 참석한 장로의 경우 헌법 정치 제73조에 근거한 노회 파송 규정에 부합할 경우 파송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은퇴 및 교회와 개인사정으로 교체 할 수 있다. 목사의 경우는 헌법 정치 제74조에 근거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동역자가 회원이다.

질의3) 담임목사 및 부목사의 경우 교회의 절차를 거쳤으나 사고노회로 처리하지 못하였을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18조 제3항을 준용하여 자동 연장되며, 이 경우 담임목사와 부목사는 회원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 파행과 사고 노회 규정 시 지교회의 각종 청원 사항이 기록된 보고서(교회에 관한 건, 목사에 관한 건 중, 담임목사와 부목사 연임 청원, 장로 선택 청원건 등)의 모든 안건들이 이번 임시 노회에서 처리해도 유효한지의 여부

질의2) 2019.7.25. 수습전권위원회 주관 수습 노회 개회 시 참석하였던 목사 및 장로 총대들의 명단을 그대로 이번 임시노회(2019.8.14.) 총대로 인정해도 무방한지의 여부

질의3) 본 노회가 파행과 산회로 인해 총회에서 사고 노회로 규정(2019.3.13.)된 기간 중, 기간이 지나 연임 승인이 되지 못한 담임목사와 부목사가 총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93. 수습전권위원회 권한 및 임시당회장 파송

군산노회장 문준섭 장로가 제출한 “80-67 / 헌법해석 질의(2019.7.8.)” 건

해석 : 질의1~4) 기 통보된 해석 “사무국-2430 / 헌법해석 통보(2019.7.3.)” 건으로 갈음한다.

〈군산노회장 문준섭 장로가 제출한 “80-60 / 헌법해석 질의(2019.6.13.)” 건〉

해석 : 질의1) 교회가 분립하고자 하면 헌법 정치 제11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5조, 제6조에 근거 지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수습전권위원회에서 교회 분립을 결정할 수 없다. 질의2,3) 임시당회장 파송은 헌법 정치 제67조,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에 근거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경우 노회가 파송할 수 있다. 따라서 당회장이 결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수습전권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교회를 분립함이 불법인지요? 질의2)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임시당회장 파송이 불법인지요? 질의3) 임시당회장 파송요청 공문을 접수한 노회장은 인사권은 정치부 처리사항이 기에 임원회의를 통하여 정치부로 이첩함이 불법인지요(수습전권위원회는 당회장권을 정지시킨바 없고, 임시당회장은 본 교회에서 파송 요청).

질의5)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어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6)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11항에 근거 그 치리회의 수습전권위원회 활동시한은 최종 판결 전까지이며 최종 판결 즉시 자동 해체된다. 단, 판결 확정 후에 새로이 구성된 수습전권위원회는 정한 기한까지 계속 활동하고, 수습전권위원회가 추가 고발한 경우에는 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동신교회 수습전권위원회 분립결정은 적법합니까?

질의2) 동신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임시당회장 요청이 적법합니까?

질의3) 동신교회 시무장로 3인(손경연, 박기출, 김동우)의 요청으로 임시당회장 파송이 적법합니까?

질의4) 수습전권위원회 분립결정으로 김대현 목사는 동신교회 당회장의 지위를 상실한 것입니까?

질의5) 제80회 추계노회에서 동의만 있고 재청과 가부 결정을 하지 못한 동신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합니까?

질의6) 제80회 추계노회(2018.10.23.)에 구성된 수습전권위원회가 6개월이 지난 제80회 춘계노회(2019.4.23.)에 사업보고를 한 후 (보고의 효력 유무를 떠나서) 존속에 관한 결정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자동 존속할 수 있습니까?

94. 교회분립 및 합병 절차

여수광림교회 배용주 목사가 제출한 “광림 제1호 / 헌법질의 건(2019.7.25.)” 건과 여수노회장 김인호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46-51호 / 헌법질의 건에 대한 건의 및 질문(2019.8.22.)” 건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11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5조에 근거 지 교회를 분립 또는 합병하고자 하면 제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되 당회와 공동의

회의 결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회장과 분립 및 합병될 교인들이 서명 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노회가 허락하면 헌법시행규정 제6조에 근거 위원을 파송하여 분립 또는 합병에 필요한 제반재산 및 행정처리 한 후 노회에 보고하고 지 교회 명부에 등재한다. 여수노회에서 행한 분립은 해당 교회를 준 분립이라는 용어 사용 및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이미 노회가 10년 전 결정한 사항으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 교회 분립으로 봄이 적절하고 따라서 그동안 이루어진 모든 당회와 노회의 행정절차 및 총회헌법에 의한 처리는 적법하다.

질의2~5) 교단 헌법에 의한 교회 분립에 절차적 미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0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해당교회에서 노회 임원을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분립된 교회 시무장로로 본다. 분립 시 항존직 직분(장로, 집사, 권사 등)은 그대로 계승되나(제99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95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보면

① A교회에서 사임한 장로 8인에 대하여 B교회에 장로로 계승되거나 복직절차(헌법 정치 제47조 제1항 자의 사임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를 거친 것이 아닌 이명 장로에 준하는(헌법시행규정 제28조 제8항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당회의 장로선택 청원과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신임하며 노회 고시부의 면접 후 취임할 수 있고) "노회 가입 허락 받은 후 공동의회에서 시무 신임투표를 거쳐 시무토록 허락한 사실"과

② A교회가 사임 처리된 장로들의 복직을 거부한 사실

③ 제94회기 헌법위원회에서는 당시 여수노회 관련 해석(52번)으로 "최종적으로 헌법 제2편 정치 제68조(당회의 직무)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12조(이명과 직원)에 의거 사임한 측에서는 당회에 자필 서명한 이명증서로 이명을 요구하기로 하고 당회장은 요구가 있을 시 그대로 발급하기로 결의" 한 사실 등을 볼 때 A교회로부터 장로 시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B교회로부터 장로 시무기간을 기산함이 적절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준 분립'이라 명칭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또는 분립교회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2) "준 분립" 된 교회의 장로가 노회에 장로 선거청원, 노회 고시부의 면접도 하지 않고 그 교회의 시무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질의3) 이전 "A교회"에서 자의 사임한 자들이 "B교회"를 개척 후 공동의회의

3분의 2의 취임투표와 서약 절차도 없이 시무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질의4) 질의3,4에 근거 당회의 조직 요건 불비 상태인 교회가 위임목사 청빙을 결의할 수 있습니까?

질의5) A교회에서 시무 사임한 장로가 B교회의 장로로 시무기간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95. 고소고발장 제출 및 판결문 정정

충주노회장 길만호 목사가 제출한 "충주노회-527 / 헌법 질의(2019.8.20.)" 건

해석 : 질의1) 헌법 권징 제53조에 근거 고소 및 고발은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소속 치리회장에게 서면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기소위원회가 고소인(피고소인)과 고발인(피고발인)으로 하여금 고소장, 고발장의 관련 문서를 기소위원회 서기에게 직접 접수토록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질의2) 송달은 헌법 권징 제41조에 근거 재판국장이 한다. 그리고 헌법 권징 제37조 제1항에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으나, 판결문에 있는 부족한 부분이 위 판결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판국이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재판국원 전체가 교체된 상황에서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후임 재판국이 정정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질의내용 : 질의1) 고소장, 고발의 관련 문서 접수 시 고소인(피고소인)과 고발인(피고발인)이 기소위원 서기에게 직접 우편으로 송달하라고 하고 총회에서 오는 기소위원회 문서도 개봉도 못하게 하고 겉봉에 접수인을 하고 자신들에게 주도록 강요하여 노회 임원들은 내용도 모르고 기소위원회에 이첩하는 실정입니다. 위법인지요?

질의2) 판결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송달의 책임이 후임 재판국장에게 있는 것이 맞는지요?

96. 국가법원 판결의 적용 범위

경동노회장 도영수 목사가 제출한 "경동 150-85 / 국가법원의 판결에 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 요청(2019.8.21.)" 건

해석 : 질의1) 국가법원에 의한 효력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그 이전의 모든 노회행정과 정기노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들이 소급하여 원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질의2) 당회장 면직, 출교 처분이 확정된(2018.6.26.) 이후는 당회장 결원이므로 임시당회장 파송은 적법하다.

질의3) 총회재심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2019.7.10.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정지가 결정되었기에 남종범 목사는 2019.7.10.일자로 안강제일교회 당회장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의 면직, 출교 확정판결 후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임시당회장 파송과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부목사 청빙은 적법하다. 다만 총회재심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2019.7.10 효력정지 결정이 있었기에 경동노회가 안강제일교회로 파송한 배성우 목사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당회장 지위가 정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질의4,5,6) 2019.7.10.일자 총회재심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결정으로 남종범 목사가 그날부터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당회장 지위에 있으므로 당회장 사회에 의한 당회에서 노회 장로 총대를 파송함이 타당하다. 아울러 국가법원(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남종범 목사는 안강제일교회 당회장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당회장실 사용은 교회가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 질의1) 서울중앙지법('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의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총회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아직 재판계류 중이고, 또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소급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남종범 피고인이 "2015년 10월부터 2019년 7월 현재까지 안강제일교회 당회장 남종범 목사의 허락 없이 집행된 모든 노회행정과 정기노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들이 원인무효이며 앞으로도 당회장 남종범 목사의 허락이 없는 모든 행정과 서류는 무효" 라고 소급하여 노회의 행정과 정기노회에서 결의한 사항들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총회 헌법에 적법한지요?

질의2) 교단의 헌법상 당회장이 결원 시,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도록 되어 있는바(교단 헌법 정치편 제10장 재67조,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제16조의 7 제2항), 총회 재심재판국의 판결에 의하여 남종범 목사가 면직, 출교 처분이 확정된 이후, 경동노회가 교단 헌법에 의거 절차에 따라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적법한 것인지

질의3)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계류 중이고 또한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심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만을 가지고, 총회 재심재판국의 판결에 의하여 남종범 목사가 면직, 출교 처분이 확정된 이후, 경동노회가 총회 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정기노회에서 안강제일교회에 청빙을 허락한 배성우 목사에 대하여 "경동노회가 안강제일교회로 파송한 배성우 목사와 부목사들을 안강제일교회와 무관하며, 앞으로도 안강제일교회로 목회자를 파송할 수 없

다."는 주장이 헌법상 적법한지요?

※ 참고 : 대법원도 지교회가 속한 교단의 노회가 지교회의 당회장인 목사 갑(甲)이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당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는 등 당회장의 결원이 생기자 목사 을(乙)을 지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적법하고, 그 후 일시적으로 임시 당회장의 파송사유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노회가 목사 갑(甲)에 대한 면직, 출교 처분 후 목사 을(乙)을 임시 당회장으로 인정하여 그 직무수행을 승인하고 있는 이상, 목사 을(乙) 및 그 후임 목사들은 모두 임시 당회장으로 지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질의4)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총회재심재판국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만을 가지고 "2019년 10월 가을 노회 시 당회장인 자신의 허락이 없는 장로 총대는 무효이며, 또한 배성우 목사와 부목사는 안강제일교회 소속이 아니므로 노회 총대가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 헌법상 적법한 주장인지요?

질의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총회재심재판국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만을 가지고 "만일 경동노회가 국가가 인정한 안강제일교회 당회장 남종범 목사의 당회장권과 그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시 부득이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에 따른 법적인 손해배상을 노회에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헌법상 적법한지요?

질의6)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총회재심재판국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만을 가지고 "안강제일교회 당회장 남종범 목사는 2019년 8월 20일부터 안강제일교회 당회장실에서 근무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97. 재판국 판결과 연임청원

순서노회장 권한대행 황점선 목사가 제출한 "순서노 제42-97호 / 재판국 판결에 의한 연임청원의 질의(2019.8.21.)" 건

해석 : 질의1) 총회 재판국 판결에 따라 "목사직 해직이 무효" 되었기에 연임청원 함이 적절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순서노회에서 남정교회 당회가 2011년 가을노회부터 폐당회가 되므로 위임목사인 신치섭은 담임목사가 되며 2014년 가을노회부터 무임목사가 되고, 3년이 지난 2017년 가을노회부터는 목사의 직이 해

직된다. 라고 판결하였으나 총회 재판국에서는 교회를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어 목사해직을 무효라고 판결한 바, 저희 노회에서는 연임청원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98. 목회교육원 졸업자의 목사안수 조건

충주노회장 길만호 목사가 제출한 “충주노회-533 / 헌법 질의(2019.8.23.)” 건

해석 : 질의1) 총회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했지만 담임전도사로 15년 이상 사역한 사람에 대하여 목사고시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은 목사안수 전 목회에 대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여 안수조건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담임전도사로 15년 이상 사역 경험을 하였다고 하면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능가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목사고시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한 총회 방침 등을 감안할 때 목사안수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에서 담임전도사로 15년 이상 사역한 사람 중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해 목사고시를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1년 과정을 허락하였습니다. 1년 과정을 졸업한 후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이 경우 총회헌법 정치 제26조 제1항 2호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라는 사항에 해당하여 2년 이상 교역을 하고 안수를 줘야 하는지요? 아니면 바로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9. 위임목사 청빙 기산과 공동의회

서울남노회장 이양재 목사가 제출한 “서울남 94-14 / 벧엘교회에서 요청한 헌법질의 요청 건(2019.8.28.)”

해석 : 질의1) 위임목사 청빙이 공동의회에서 부결되면 담임목사 임기는 노회 허락 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3년이다.

질의2) 담임목사 연임청원은 헌법 정치 제28조 제3항에 근거 당회와 제직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위임목사 청빙은 동법 제2항에 근거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공동의회는 헌법 정치 제90조 제2항에 근거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도록 되어 있어 위임목사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담임목사 연임투표를 대신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16조 제2항 “위임목사의 위임 투표는 노회의 동일

회기 내에는 1회만 가능하며 부결 시 담임목사가 된다."는 위 조항에서 위임투표 부결 시 담임 목사의 임기는 잔여임기(노회 담임목사로 청원한 날짜를 기준으로 3년)인지, 위임투표 날짜를 기준으로 3년인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공동의회 위임투표 시 찬성이 3분의 2에 미달되어 부결되었을 경우에 대해, 찬성이 과반수 이상이 될 경우 제직회에서 담임목사 연임투표를 생략하고 연임청원이 가능한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다른교단의 목사 청빙 조건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3485 / 헌법 해석 요청(2019.9.5.)" 건

해석 : 본 교단 직영신학대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본 교단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해외나 국내에서 2년 이상의 교역 경험을 하고 해외한인장로회(KPCA)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사람이 본 교단 소속 교회의 목사로 청빙을 받았을 경우, 이명이 가능하다. 다만 헌법과목을 이수했을지라도 그간 헌법 개정 등을 감안하여 청목과정 헌법 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 본 교단 직영신학대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본 교단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해외나 국내에서 2년 이상의 교역 경험을 하고 해외한인장로회(KPCA)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목사가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단의 목사 청빙) 제5항이 개정 공포된 2017년 9월 21일 이후에 본 교단 소속 교회의 목사청빙을 받을 경우, 본 교단 직영신학대학원에서 헌법과목만 이수하였다면 청목과정의 헌법 과목 이수 없이 본 교단 목사 이명도 가능한지 아니면 2017년 9월 21일 개정된 헌법시행규정 제23조에 따라 헌법과목을 제외한 청목과정의 나머지 과목 3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

101. 치리회 간 소송 재판비용 면제

평양노회장 조인서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90-43호 / 재판비용 질의(2019.9.4.)" 건

해석 : 치리회 간 소송은 헌법시행규정 제43조 제4항에 근거 재판비용이 면제된다.

질의내용 : 질의) 행정소송(치리회 간의 소송)을 할 때에 재판비용이 면제되는지 질의합니다.

102. 담임목사 시무일자 기산

경북노회장 강경구 장로가 제출한 "예총 경북노회 제184-58호 / 시무일자 질의 건(2019.9.4.)"

해석 : 시무 시기는 임시임원회 및 정치부 연석회의 청빙청원이 허락한 날부터이며 기산일은 헌법 정치 제29조 제3항에 근거 임시임원회 및 정치부 연석회의 청빙청원 허락 후 첫 노회 개회일이다.

질의내용 : 질의) 경북노회 소속 삼덕교회 천세종 목사에 대하여 2016.11.30.(수) 179회기 제2-1차 임시임원회 및 정치부 연석회의에서 이명후 담임목사 청빙청원을 허락하기로 통과 후 서울동노회로 천세종 목사 이명청원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12.08.(목) 제179회기 3-1차 임시임원회 및 정치부 연석회의에서 위임목사 청빙청원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세종 목사의 이명확인서는 2017년 12월 8일에 이명확인서가 접수됨을 삼덕교회에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천세종 목사의 담임목사(위임목사) 시무 시기는 정확히 언제로 해야 하는지 헌법해석위원회에서 해석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102회기 헌법 해석 사례

▶ 헌법 질의 해석

1. 담임목사 연임청원 기산

익산노회 은성교회 이홍석 목사가 제출한 “은성 제2017-11호 / 담임목사 연임청원의 시기에 관한 질의(2017.8.4.)” 건

해석 :

질의1) 헌법(제2편 제5장 제28조 1, 2항),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제16조 제1, 2항)에 의거 위임목사의 위임투표는 노회의 동일 회기 내에는 1회만 가능하며, 다른 회기에 가능하다.

질의2) 헌법(제5장 제27조 2항, 제28조 3항②)에 의거 담임목사 연임청원 기산일은 노회 허락 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2017년 가을노회에 연임청원을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본인은 익산노회 은성교회에 지난 2011년 12월 27일 노회 정치부 연석회의에서 허락을 받고 2012년 1월 1일부로 담임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3년 여가 지난 2014년 11월 가을노회에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본래는 2011년 가을 노회 이후(2011.12.27.) 에 담임목사 청빙 허락을 받고 부임하였기에 현행법에 의하면 2015년 3월 봄노회에 연임청원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은성교회 당회에서는 그 다음 해(2015년) 가을노회에 위임목사 청원을 하기로 잠정 결정하였고, 봄노회에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하고 바로 다음 가을노회에 위임목사 청원을 해야 하겠기에 절차상 번거로워 정기노회 한 텀(term)을 앞당겨 만 3년이 지나지 않은 2014년 11월 가을노회에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하여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해 2015년 가을노회를 앞두고 10월 4일 열린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 청원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일부 담임목사 반대 측의 선동으로 몇 표 차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금 번 다시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해야 할 때를 앞두게 되었는데,

질의1) 한번 부결된 위임목사 청원은 다시 할 수 있는지요?

질의2) 시급하게 다가오는 담임목사 연임청원은 반드시 올해(2017년) 가을노회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2018년) 봄노회에서 해도 되는지요?

2. 전도목사 복수 파송

제주노회장 이정일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112호 / 기도처 전도목사 복수파송에 대하여 (2017.9.15.)” 건

해석 : 헌법 정치 제27조 4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1 제3항에 근거 기도처에 전도목사 숫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가능하다. 〈제94회기 헌법해석 (63. 전도목사 및 기관목사 청빙 및 행정처리)〉 참고. 그러나 이후 교회 설립 시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는 헌법정치 제27조 3항에 근거 동시에 청빙할 수는 없다. 〈제94회기 헌법해석(63. 전도목사 및 기관목사 청빙 및 행정처리)와 제96회기 헌법해석(42. 개척교회 목사 청빙)〉해석 참고

질의내용 : 기도처에 전도목사를 파송할 때, 두 사람의 교역자를 파송할 수 있는 지를 질의 합니다. 질의이유 - 제주노회에 기도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형편상 1인이 아니라, 2인의 교역자가 공동목회를 계획하여 실제로 적지만 2인의 힘을 기도처를 마련하고 전도를 시작하여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역할 분담으로 한 사람이 담당교역자 구실을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동역 교역의 역할을 분담하여 목회하는 형편입니다. 이제 교역자 청빙을 하려고 할 때 이 두 사람을 한 기도처 교역자로 곧 기도처 전도목사로 파송할 수 있는가를 질의합니다.

3. 전도사 청빙시 헌법정치 제28조 6항 적용 여부

경남노회장 박태부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017-137호 / 헌법 질의 건(2017.9.25.)”

해석 :

질의1) 헌법정치 제28조 6항 1호는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비속의 배우자에 대하여 은퇴 전에 위임(담임) 청빙 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세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위임(담임)목사도 아닌 전도사는 입법미비 및 법의 명확성 부족으로 제한 할 수 없다.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7. 2항에 근거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 당회가 없을 경우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로 요청할 수는 있으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으면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질의3) 헌법시행규정 제88조에 근거 교단탈퇴 행위를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 교단 탈퇴에 관해서는 교회 내부에 찬반의 양론이 있으므로 분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헌법 정치 제63조 제4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33조에 수습위원회(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임(담임)목사 결원이므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제98회기 헌법해석(9.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참고.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28조 6에서 담임목사가 별세를 하였을 때와 청빙하려고 하는 자가 전도사일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28조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질의2) 담임목사의 별세로 인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경우 당회의 요청이 없어도 파송 가능한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 당회 제67조 2.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16조의7 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1. 헌법 정치 제67조 2항의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가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2. 전항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당회(제직회)를 할 때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질의3) 위의 해교회가 교단 탈퇴(신문 공고 및 탈퇴서 제출, 인정할 수 없음으로 반려)를 할 경우 당회의 요청이 없어도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수습위원회(수습전권위원회 포함)를 구성할 수 있는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목사 사임서 처리

경남노회장 박태부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017-136호 / 헌법 질의 건(2017.9.25.)”

해석 : 헌법정치 제3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가능하다. 노회 소집통지서가 발송된 후일지라도 목사청빙과 달리 노회가 개회 때까지 자의사임 사직서 처리를 미루는 것은 자의사임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정치부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 목사 사임서를 처리할 경우 노회 소집통지서 발송과 상관없이 임원회와 정치부에서 허락 가능한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29조 3. 노회의 폐회 중에는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한하여 노회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청빙 승인을 할 수 있다. 제35조 목사의 사임 및 사직 1. 자의사임 : 목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다만, 노회 폐회 중에는 정치부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16조의 3 시무목사 청빙 승인 목사 청빙 승인은 노회 소집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는 임원회와 정치부에서 할 수 없다.」

5. 헌법정치 제28조 6항 1호 법조항 효력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제출한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6항 1호 법조항의 ‘효력 유무’ 에 관한 총회 질의의 건(2017.10.16.)”

해석 : 헌법정치 제28조 6항 1호는 법조항으로 현재도 효력이 있다. 헌법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다고 해도 헌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이다. 위헌의 판단은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시행규정과 총회 규칙 등이 맞지 않을 때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는 효력이 있으나 수정, 삭제 추가 등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101회기 총회헌법해석 95. (헌법정치 제28조 6항 위헌 여부) 해석으로 갈음한다.

질의내용 : 서울동남노회 서기부에서 접수하여 헌의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로 이관한 ‘명성교회 위임목사(김하나 목사) 청빙청원서’를 노회 규칙에 따라 심의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6항 1호, 그리고 ‘은퇴한’ 목사의 직계비속의 경우도 법제정의 취지와 정서(한국사회와 사회의 일반여론이나 법상식 등), 성경의 가르침(고전10:23~24, 31~33) 등을 고려해 볼 때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진주남노회의 질의에 대한 해석의 건, 제102회 총회 헌의안 및 보고서p.593.)에 따라 본 건 청원서를 총회 헌법 결격사유(헌법위배)로 반려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건 서류를 제출한 명성교회(임시당회장 유경종 목사) 측에서는 총회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위원장 고백인 목사)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위헌판단을 내린 관련 헌법조항(헌법 정치 제28조

6항 1호)은 이미 “효력정지 내지 효력 상실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노회 안에서 관련 헌법 조항의 효력 유무에 대해 이견(다툼)이 있습니다. 이에 본 질의자는 헌의위원장의 자격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대로 그 질의 절차(헌법시행규정 제36조 2항)를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회(헌법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6항 1호가 현재 법조항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효력이 정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답변) 바랍니다.

6. 상소여부에 대한 기소위원장 판단

제주노회장 이정일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117호 / 예장총 제101-868호 헌법해석 (시행 2017.5.11)의 회신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재질의 건(2017.9.26.)”

해석 : 헌법권징 제91조는 강행규정이나 1항은 3항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피고인이 무죄판결, 기소기각의 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고소인(고발인)이 상소를 요청하였을 경우, 상소여부에 대해서는 헌법권징 제91조 1항에 근거 기소위원장이 판단하여 상소할 수 있다.

질의내용 : 가. 귀 위원회에서는 예장총 제101-868호의 회신에서 저희 노회가 질의한 헌법권징 제91조(상소권자) 제3항은 생략하고 제1, 4항에 대해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셨는데, 문리적인 해석방법에 따르면 제4항은 제3항을 전제로 성립하므로 결국 3항도 강행규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귀 위원회는 사정변경, 정상참작을 하는 재판국이 아니오며, 예, 아니오를 해석하는 기관일진대, 저희 노회 질의서에 이런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셨음은 보이지 않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헌법 권징 제91조 제3항에 ‘고소인(고발인)은 피고인이 무죄판결, 기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소위원회에 상소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소위원회에서는 고소인(고발인)을 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노회에서

1) 고소사건으로 저희 노회 재판국이 시무정지 6개월을 판결하였고,
2) 고소인은 무죄판결, 기소기각의 판결에만 상소요청이 가능함에도 노회 재판국의 유죄판결에도 기소위원회에 상소를 요청했으며,
3) 기소위원장은 고소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소한 것임으로 헌법 권징 제91조 3항을 지키지 않고 상소한 것임이 명백하다.

다. 헌법위원회는 증거내용인

1) 상고장 첨부 : 3에 (고소인)당회의 재판판결 불복으로 고소인의 상고 요청서가 첨부되어 있음.
2) 고소인(당회)재판판결 불복으로 상고를 요청한 날짜가 2월 1일이며, 기소위원회 모임날짜는 2월 2일이고, 상고한 날짜는 2월 3일이다. (모든 서류 접수는 노회가 접수해서 기소위원회로 보내야 하는데, 노회는 접수한 적이 없음, 고소인(당회)과 기소위원장이 사전에 조율한 근거)
3) 기소위원장이 여비를 요청한 문서에 기소위원장은 고소인(당회)의 상고 청원을 받아 들여 총회 재판국에 상고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하기를 제주노회 기소위원회는 고소인(고발인)의 상고 청원에 따라 총회 재판국에 상소한 것이므로, 헌법 권징 제91조 제1항에 의한 상소로 사료되어 법 적용에 하자가 없다 할 것이다. 라고 해석했는데, 그러면 헌법 권징 제91조 제1항에 의한 상소로 사료되어 상소했다면, 물론 기소위원장은 상소권자인 것은 맞지만, 어디에 강행규정인 제91조 3항의 법을 무시하고 고소인의 청원을 받아들여 상소하라는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제91조 3항의 법은 임의규정입니까? (질문) 귀 위원회에서 살피건대 이와 같은 과정에서 보여준 적법(適法)과 위법(違法)사항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명확한 해석을 하여 주심으로 추후 재발장지에 지침이 되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판결 정정, 위탁재판 청원 절차, 변호인 직무 등

전남노회장 조원섭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8-161호 / 총회헌법위원회 헌법 질의와 해석 신청(2017.10.12.)” 건

해석 :

질의1) 헌법권징 제37조 제1항에 근거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으로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 판결문 통보 뿐 아니라 상소한 이후에도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서에 표현상의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등 오류가 생겼을 경우 정정할 수 있다.

질의2) 치리회장에 대한 직무유기 여부는 별건으로 재판에 따른 불변기간은 준수해야 하며, 헌법권징 제89조 5항에 근거 기소제기의 절차가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기소기각 판결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툴 수 있다.

질의3) 동일한 사건여부에 대한 판단은(헌법권징 제50조 제2항 및 헌법권징 제52조 제3항) 재판부에서 판단하되 동일사건이 아니라 판단될 경우 재판할 수 있다.

질의4) 헌법권징 제7조 제2항, 제20조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72조 제4항 제6항에 근거 담임(위임)목사에 대한 소송사건은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고소인(피고발인)인 경

우 노회재판국에서 다룬다.

질의5) 대리당회장은 헌법시행규정 제30조 제2항에 근거 권징권이 없으므로 권징을 위한 재판국 구성을 할 수 없다. 또한 헌법권징 제121조 제2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72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회나 교회의 분쟁으로 당회 재판국의 구성 또는 당회의 회집이 불가할 때에는 당회장이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

질의6) 대리당회장은 당회의 소집권이 있으나 헌법정치 제66조에 근거 헌법시행규정 제30조 제2항에 근거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대리 당회장은 목사로서 사회권은 있으나 결의권(투표권)은 없다.

질의7) 고소장에 대한 반환요청은 기소위원회에 접수 후에는 고소인의 고소 취하서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며(헌법 권징 제50조, 제52조, 제98조, 헌법시행규정 제60조 제4항) 변호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의해 고소 취하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질의 8~10) 변호인은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며,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변호를 위한 사건 자료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헌법권징 제30조 제2항에 근거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실비의 여비 및 숙박료 외에 기타 등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 간에 약정에 의한다.

질의내용 :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나주교회(이하 '나주교회'라고 한다.) 위임목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로 시무중입니다. 교회를 분란하게 한 주도적인 김성돈 장로를 비롯한 3인을 상대로 6명의 장로 합의로 당사자인 신청인과 나상기 장로가 2016년 12월 9일 고발장을 노회에 제출하여 위탁재판을 통해서 치리를 청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전남노회 기소위원장이 2017년 4월 7일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었으나 2017년 6월 20일 치리회장인 노회장이 10일 동안 지연하여 고발장 사본을 피고인들에게 통보하지 않아서 죄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이 죄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행정부서의 잘못을 이유로 전남노회 재판국에서는 "총회헌법 제89조 제5항을 준용하여 재판국원 전원일치로 당 사건의 기소를 기각하기로 한다."로 판결주문 하였습니다. 이 주문에 대한 전남노회 재판국에서는 판결이유로 "당 사건을 고발장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치리회장으로부터 피고인들이 고발장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음이 재판진행과정에서 확인 된 바, 이는 헌법시행규정 제60조 제3항을 위반한 내용으로 동 규정 제67조(불기소처분) 제1항 제⑤호(각하 가) 목의 내용 중 기소권

없음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하여야 할 것을 기소 제기한 사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과 동일 고발인인 나상기 장로는 2017년 6월 20일 판결 선고일 당일 전남노회 재판국을 통해서 직접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남노회 재판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미 판결한 판결문을 고발인과 피고발인들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23일 판결문을 정정하여 우편으로 통보해 왔는데, 판결이유를 볼펜으로 다음 ( )의 부분을 서필로 추가하여 “당 사건은 고발장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치리회장으로부터 피고인들이 고발장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음이 재판 진행과정에서 확인된 바, 이는(헌법권징 제122조 제1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60조 제3항을 위반한 내용으로 동 규정 제67조(불기소처분) 제1항 제⑤호(각하 가) 목의 내용 중 기소권 없음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하여야 할 것을 기소 제기한 사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통보해 왔습니다.

질의1) 재판의 판결의 내용을 이미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정하여 서면으로 재 통보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7조(판결의 정정 제1항)의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37조(판결의 정정) 제1항의 판결의 정정이 재판의 판결을 하고 통보하기 이전에 그 이유가 발견이 되었다면 가능하지만, 만약에 판결하고 서명으로 통보된 이후에 1달, 3개월, 1년이 지난 후에도 정정하여야 할 그 이유가 발견되어진다면 판결의 정정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재심을 통해 정정해야 합니까? 그리고 제37조(판결의 정정) 제1항의 판결의 정정의 시점이 판결문의 통보이후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판결문이 통보되기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까?

질의2) 고발인이나 고소인의 잘못이 없이 치리회장의 의도적이거나 실수로 치리회장이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에게 송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판국에서 기소기각으로 판결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제1절 제48조 제1항과 제51조 제1항에서 밝히는 모든 사람은 고소·고발을 통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죄과가 있는 자들을 치리하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에 위배가 된다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난다면 정치적으로 치리회장의 마음대로 의도적으로 기간을 넘겨서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피해를 입은 자들의 억울함을 낳게 할 것이고, 모든 고소·고발건을 접수한 치리회장의 의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고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권징 제1장 제4조 재판의

원칙 제1항 재판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인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 고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치리회장(노회장)의 의도적이건 실수건, 또한 치리회장의 행정적인 착오로 피고인들에게 고발장이나 고소장을 송달하지 못해서 기소기각으로 판결된 사건은 다시는 재판을 할 수 없는지요?

질의3) 2016년 12월 9일 전남노회에 위탁재판 접수건은 고발건이며, 전남노회에 2017년 7월 7일 접수된 위탁재판은 동일한 고소장을 재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6년 12월 9일건은 고발장이며 2017년 7월 7일 건은 고소장이라는 것입니다. 2016년 12월 9일 고발장의 고발인은 신청인과 나상기 장로입니다. 2017년 7월 7일 접수한 것은 고소장으로 고소인 또한 이재우 장로가 추가 되었고, 고소한 사건의 내용도 고발장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추가되어지고 변경되어져서 고소한 것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재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고발건에 대한 재고발이 아니라 고소건으로 고소당사자도 추가되고 사건의 내용도 추가되어진 고발장이 아니라 내용이 다른 고소건이라면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4)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제1절(통칙) 제7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제2항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재판국에 속한다.” 제3절(노회 재판국) 제20조(심판사항) 노회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제2항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 사건”에서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은 노회재판국에서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의 소송사건이란 목사가 피고소인·피고발인이 될 때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목사가 고소인·고발인일 때를 이야기 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둘 다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이 있을 때 제1심인 당회를 거쳐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목사는 노회원이기 때문에 노회에 직권하여 바로 재판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질의5)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재판국에서 한다면 제98회기 헌법해석사례 71번, 제97회기 헌법해석사례 64번을 참고하여 질의 합니다. 권징권, 행정권, 인사권이 없는(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사회권만 있는 대리당회장을 세웠을 때, 위탁재판의 경우 당회장이 사건의 당사자(고소·고발인, 피고소·고발인)일 때도 치리권자가 아닌 사회권만 있는 대리당회장이 행정

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당회의 재판국장인 당회장이 사건의 당사자 이어서 당회재판국의 구성이 불가할 때도 대리당회장이 주관하는 당회를 거쳐서 위탁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회장 직권으로 노회에 위탁재판 가능한지요? 아니면 대리당회장을 세웠을 때는 모든 위탁재판의 경우 대리당회장이 주관하는 당회를 거쳐서 위탁재판을 청원해야 합니까? 아니면 대리당회장이 주관하는 당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거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질의6) 당회장이 사회권만 위임한 대리당회장은 당회의 소집권이 있는지 여부와 당회장이 요청하지 않은 안건들에 대해서 사회를 볼 수 있는지요?

질의7) 현 전남노회에 2017년 7월 7일 접수된 위탁재판 고소건에 대해서 변호인은 기소위원회에서 피고소인들을 소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남노회임원회에 변호인의 이름으로 행정상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전남노회에 접수된 고소건을 전남노회 임원회에서 임원회를 거쳐서 기소위원회에 이첩한 사건을 반송해서 고소인들에게 반송해 주어야 한다고 청원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에게는 대리권, 진실권, 보호권, 접견권 등이 있는 줄 압니다. 변호인의 대리권이 기소위원회에 선임서를 내놓고(헌법시행규정 제44조 제2항) 기소위원회에서 피고소인들의 소환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행정부서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한 고소장을 행정부서에 변호인의 이름으로 반환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변호인의 대리권의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질의8) 변호인의 변호의 범위는 법률적인 지식으로 피고소인들을 조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호인이 노회임원회가 해당사건을 처리한 일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제기하고, 재판국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관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관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9) 변호인의 사건이 일어난 해당교회에 사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라고 문서를 보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이 일어난 해당교회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는지요?

질의10) 헌법 제3편(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0조(변호인의 자격 등) 제2항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실비의 여비 및 숙박료 등을 지급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실비의 여비와 숙박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변호인은 실비의 여비와 숙박료

외의 것 예를 들어 변호인선임비 등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8. 대리당회장 권한

평북노회장 전세광 목사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202-115호 / 헌법 질의 해석의 건(2017.10.10.)”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평북노회장 최동출 목사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203-16호 / 헌법질의 해석의 건(2017.10.26.)” 은 “예장평북 제202-115호” 건으로 갈음 해석

해석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3항 수습전권위원회에 의해 당회의 기능이 정지되었고, 헌법 정치 제35조 제2항에 의거 위임목사 및 시무장로의 불미스러운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에는 헌법 정치 제90조 제3항 4호, 제5항 4호에 의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파송한 대리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시무사임권고 투표를 할 수 있다. 대리당회장의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30조 제2항에 근거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히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시무사임권고는 권고사항으로 헌법시행규정 제30조 제2항의 인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시무사임권고 결의와 수습전권위원회가 기능정지 한 것은 별개이다. 따라서 수습전권위원회가 3개월 이내에서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해지시키는 것은 적법하다.

질의내용 : 〈“예장평북 제202-115호”〉

질의1) 본 노회에서 파송한 홍광교회 대리당회장이〈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35조 2(권고사임) 및 제6장(장로) 제43조 2(권고사임)〉에 의거하여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실시한 위임목사, 시무장로의 시무사임권고 결의를 위한 투표는 적법한 것인지요?

질의2) 본 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홍광교회 목사 및 시무장로 직무정지한 일에 관하여, 공동의회(2017년8월28일)에서 시무사임권고 결의가 부결된 장로에 대하여 시무정지 해지 한 것은 적법한 것인지요?

시무정지기간 : 2017년 8월 1일 ~ 10월 31일까지

시무해지일자(권고사임 부결된 장로 7인) : 2017년 8월 29일

〈“예장평북 제203-16호”〉

질의1-1) 평북노회 소속인 홍광교회는 노회수습전권위원회로부터 교회내의 갈등과 혼란의 책임을 홍광교회 당회장과 당회원들에게 물어, 주후 2017년 8월 1일자로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이 3개월 간

정지처분을 받아 시행중에 있었습니다.

질의1-2) 본 평북노회 홍광교회는 상회(노회) 지시를 받아(헌법 제2편 정치 13장 제90조 3항의 4) 2017년 8월 20일 안건(위임목사, 시무장로 사임권고 결의안) 시간, 장소를 명시하여 공동의회 소집을 공고하였고 한 주간 후인 2017년 8월 27일 대리 당회장의 사회로 공동의회를 열어, 정치 5장 35조 2항, 정치 6장 43조 2항에 의거 목사(위임목사)와 시무장로 1명의 시무사임 권고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질의1-3) 이렇게 노회의 지시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헌법 정치 제35조 2항에 의거하여 위임목사의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하기 위한 결의를 한 것과, 헌법 정치 제43조 2항에 의거하여 시무장로 사임권고안을 결의한 것이 불법인지요?

질의2) 당회장권, 당회원권의 시무정지를 명령한 수습전권위원회가 공동의회에서 시무사임 권고 결의가 부결된 시무장로에 대하여 교회의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 시무정지된 당회원권의 시무정지를 해제하는 것이 불법인지요?

9. 사임변호인의 노회 공천 여부

군산노회장 강무순 목사가 제출한 "군노 79-1호 / 헌법 질의의 건(2017.10.24.)"

해석 :

질의1) 노회 재판이 끝나고 총회 재판국에 상고장이 제출되었기에 헌법권징 제29조 제3항, 헌법시행규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심급마다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판국장이 된 변호인은 이미 사임한 상태이므로 헌법권징 제16조에 근거 노회 공천은 적법하다.

질의2) 헌법권징 제16조 제1항, 제56조에 의거 노회에서 정하여 공천할 수 있다.〈참고 :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 제4항 4호. (제89회)〉

질의내용 : 2017년 6월 2일부터 열린 노회 위탁재판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H목사가 10월 17일에 열린 추계노회에서 재판국원으로 공천되고, 재판국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9월 28일 판결이 이루어졌으나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서, 10월 9일 피고인들은 판결문 정정 요청서를 제출했고, 10월 11일 고소인과 기소위원회는 총회 재판국에 상고장을 제출 했으며, H목사는 변호인을 사임한 상태입니다.

질의1) 이와 같이 H목사가 재판국원으로 공천되는 것이 적법합니까?

질의2) 노회에서 재판 관련자(고소인, 피고인, 변호인, 재판국원, 기소위원

등)들을 공천할 때 시간 간격(인터벌) 없이 재판국원을 기소위원으로, 기소위원을 재판국원으로 이런 식으로 공천할 수 있습니까?

10. 이명처리

충청노회장 연제국 목사가 제출한 “충노대외 제67-19호 / 안경훈 목사 이명청원 건에 대하여(2017.11.1.)” 건

해석 : 헌법정치 제30조에 근거하여 노회는 절차에 따라 시무사임청원을 처리하고 이명증서 발급해야 한다. 절차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내에 이명증서를 발부하지 않는다면 헌법시행규정 제12조에 근거하여 이명증서를 발부하지 않은 것을 부전지나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경우는 바로 이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 충청노회는 2016년 10월 25일 서울동노회 소속 안경훈 목사의 이명청원서를 발송하였으나 서울동노회로부터 2016년 12월 8일 서동노 제94-2호 이명증서 발급 보류 공문을 접수하였으며, 이에 본 노회는 헌법 제2편 제5장 제30조(다른노회 목사의 청빙)와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제12조(이명과 직원)에 근거하여 2017년 8월 25일 조속한 처리를 위해 내용 증명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이명청원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안경훈 목사의 목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1. 노회 폐회 후 총회 헌의 절차

여수노회장 강점석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45-2호 / 헌법 제11장 노회 제77조 8항, 헌법 시행규정 제3조 2항 헌법해석 질의(2017.11.2.)” 건

해석 :

질의1) 헌법정치 제77조 제8항과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6에 근거 노회 폐회 시 임원회에서 질의, 문의, 헌의 등을 총회에 할 수 있다. 다만 노회에서 이미 결의 및 유안된 안건에 대하여는 다르게 처리할 수 없고 본 회의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제99회기 헌법해석 20 참고)

질의2) 노회 규칙 삽입내용이 헌법을 위반한 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나 질의1)에 관한 것이라면 삽입할 수 있다.

질의3) 질의1)에 관한 사항의 결의는 헌법 위반이 아니다.

질의내용 : 헌법해석 질의 조항 : 헌법 제11장 노회 제77조 8항,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

제45회 여수노회에서는 “총회에 헌의할 긴급한 안건은 노회 임원회 결의 후 총회에 헌의하고 후일 노회 시에 총회에 헌의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할 수 있

도록 노회의 규칙을 신설하여 달라는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로 결의 하였습니다.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결의하여 문제가 있다고 사려 되므로 헌법 해석 질의를 드립니다.

※ 여수노회 규칙 : 현재 여수노회 규칙에는 총회 헌의 안에 대한 규칙이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1) 헌법 제11장 노회 제77조 8항에는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여 노회의 결의 후에 총회에 헌의하게 되어 있는데 여수노회는 “총회에 헌의할 긴급한 안건은 노회 임원회 결의 후 총회에 헌의 하고 후일 노회 시에 총회에 헌의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 할 수 있도록 노회의 규칙을 신설하여 달라는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를 노회규칙에 삽입하여 시행하자고 결의하였는데 노회의 결의가 헌법을 위반한 결의인지 아닌지?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의 순서이며, 상위 법규에 위반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원칙을 적용한다. 로 되어 있는데, 위반한 내용을 노회가 결의하여 노회 규칙에 삽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질의3) 헌법을 위반하여 노회에서 결의한 안건이나 내용은 유효인지 무효인지?

12.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서울서노회장이 제출한 “서노 제97-03호 / 헌법 질의해석 요청의 건(2017.11.10.)”

해석 : 질의1~4) 당회장 결원 시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에 근거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당회(제직회)를 할 때는 노회에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담임목사 결원 시에는 임시당회장를 파송해야 하나 파송여부는 노회에서 판단하고 임시당회장의 파송 시까지는 한시적으로 대리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한다.

질의내용 : 1. “제99회기 헌법 해석 사례, 53 당회장 / 임시당회장 / 대리당회장”의 해석과 헌법 시행규정 제16조의 7[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 현재 본 노회 소속 H교회의 위임목사 B목사가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출

교'(2017.7.11) 처분을 받고, 당회장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3. H교회 당회장이 결원되기 전, H교회 당회장인 B목사가 이전 총회 판결로 인해 '정직 24개월' 시벌 중이었기에 그동안 당회 청빙으로 H교회 원로목사가 대리당회장 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4. 상기 B목사의 '출교'(2017.7.11.)로 인해 본 노회는 'H교회가 당회장이 결원된 상태이므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한다.'고 H교회 당회에 알려 주었습니다.
5. 그러나,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2항을 들어 당회장이 결원되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니 추후 상황에 따라 임시당회장 파송 요청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문제는 H교회 당회가 정상적으로 당회는 소집되고 있으며, 당회가 청빙한 대리당회장(원로목사)을 통해 교회의 기본 업무는 처리되고 있으므로, 임시당회장 파송요청을 안할뿐더러, 대리당회장 체제로 교회안정과 수습을 모색하려는 정황이 보입니다.

   질의1) 당회장 결원이 되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대리당회장이 직무를 계속하는 수행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질의2) 해 교회가 당회장이 결원되고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임시당회장을 노회에 청원하지 않을 시 노회는 어떻게 조처해야 하는지요?

   질의3) 노회(폐회 중 임원회)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노회가 직무 유기에 해당되는지요?

   질의4) 당회장이 결원되고 3개월이 경과 후 해 교회 당회의 청원이 없어도 노회가 반드시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하는지요?

13. 판결 적법 여부

서울강남노회 송상옥 장로가 제출한 "서울강남노회 재판국 판결문에 따른 헌법 유권해석 질의 청원서(2017.11.10.)" 건

해석 :

질의1), 2), 3) 재판국원이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고소인(피고발인)인 경우 헌법권징 제8조에 의해 재판국원에서 제척되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면 설사 그 재판국이 재적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헌법을 위반한 판결이다.

질의4), 5) 헌법 권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 및 고발은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소속 치리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헌법 권징 제60조 제1항은 기

소를 함에는 기소장을 관할 재판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소인(고발인)이 피고소인(피고발인)을 고소(고발)할 당시 피고소인(피고발인) 소속 치리회장에게 적법하게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면 그 고소(고발)은 적법한 고소(고발)라 할 것이며, 그 이후 피고소인(피고발인)이 다른 노회 소속 교회로 이명했다 하더라도 이명하기 이전의 종전 치리회 재판국은 적법한 관할 재판국이므로 해 재판국이 선고한 판결은 적법한 판결이다.

질의6), 7) 헌법 권징 제58조 제3항에 의하면 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기소위원장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피의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헌법 권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재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도록 되어 있고, 헌법 권징 제75조는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헌법 권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국장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에는 10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소위원장이나 재판국장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지도 않고,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기소를 하거나 재판을 하였다면 그 기소 또는 재판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 권징 제41조에 의하면 송달은 직권으로 하며, 송달을 받을 자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소위원장과 재판국장은 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소환장을 발송하여야 하지만, 만약 송달 받을 사람이 노회원이고, 해 노회원이 노회에 주소지를 등록한 이후 그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된 주소지를 노회에 알리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변경된 새로운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기소위원장 또는 재판국장이 노회에 등록된 종전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발송하고 이 사실을 노회 사무실 등 적당한 곳에 게시하였다면 그 소환장은 해 노회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질의8) 책벌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재판국이 헌법 권징 제13조, 제19조에 의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제3편 제2항 제1절 제8조(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4항에 의거하여 국원의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고소인(피고발인) 경우에 제척 사항에 해당하고 그 헌법 8조에 의하여 재판국원은 그 사건의 심리, 재판에서 제척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고 재판에 참여하여 판결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1) 헌법규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시행하였는지 여부 및 판결 결과에 대한 적법성 여부

2) 총회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고발인 임현철 장로)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할 때 동 재판 판결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2) 헌법규정에 따라 판결 결과에 대한 적법성 여부

3)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한 사건의 당사자(고발인 임현철 장로)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재판국원(고발인 임현철 장로)이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관여하게 하여 재판에 판결한 결과가 대하여

질의3) 헌법규정에 따라 판결 결과에 대한 적법성 여부

4) 피고인 송상옥 장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강남노회 하늘빛교회 당임목사 김수읍 목사로부터 2017.1.8.일자로 타 교회로 이명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서울강남노회 하늘빛교회 교인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이명처리가 완료한 후 59일이 경과한 2017.2.27.일 재판국에서 소환장을 발부하여 소환을 하였고, 이명한 후 65일이 경과한 타 교회 교인을 2017.3.13.일자로 노회 재판국에서 재판의 절차를 거쳐 책벌을 한 경우

질의4) 헌법규정에 따라 재판의 절차를 걸쳐 공정한 재판을 시행하였는지 여부

5) 서울강남노회 노회장 이태종 목사님으로부터 제58회 정기노회 시 소란을 일으켰던 하늘빛교회 소속 송상옥 장로에 대한 2016년 5월 19일부로 1차 치리 요청을 하였고 거기에 따라 하늘빛교회에서 치리를 안하니까 2차로 2016년 8월 26일부로 서울강남노회에서 하늘빛교회에 송상옥 장로에 대한 치리요청에 대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여 회신요청에 대한 사항으로 하늘빛교회 담임목사이신 김수읍 목사님께서 2016년 8월 29일송상옥 장로 치리내용을 아래와 같이 서울강남노회에 답변하였습니다. 첫 번째 답변내용은 본 교회에서는 송상옥 장로를 노회에 파송할 수 없다고 통고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노회의 권고에 대해 서울강남노회 남선교회 회장 임기인 2016년 11월까지 하늘빛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있고 그 후에는 자원하여 문서로 장로 시무사임을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라고 답변을 노회에 문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은 하늘빛교회에서 치리한 결과가 아닙니까? 아울러 피고인 송상옥 장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강남노회 하늘빛교회 담임목사 김수읍 목사로부터 2017.1.8.일자로 타교회로 이명처리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이미 하늘빛 교회에서 이명처리가 끝난 상황에서 다시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회에 기소되고 노회 재판국에 재판에 소환되어 재판을 시행하

여 판결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5) 하늘빛교회에서 1차로 치리하였고 2차로 하늘빛교회에서 이명 완료한 상태에서 타교인 인데도 노회 재판국에 회부되어 재판을 시행한 결과가 타당한지 여부

6) 헌법 제3편 권징 제13조에 의거하여 피고의 소환은 구두 혹은 서면으로 통지하되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며 재판 개정 10일전에 전달되어야 하며, 전달은 그 증거가 있어야 한다. 라는 헌법 규정에 따라 소환을 받지 않고 재판에 미 참석하여 재판의 절차에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어서 모든 재판에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일방적인 재판의 절차에 따라 재판한 결과에 판결이 적합하고 합법적인가 여부?

피고인 송상옥은 2016년 08월 19일자로 서울시 구로구 도림로 59(구로동 두산아파트 11동 2103호) 소재지로 이사를 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소환장을 이사하기 전에 살던 집 주소(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43길 10 유앤미아파트 101-804)로 우편물을 발송함으로서 소환을 전혀 받지 않고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회에 기소되었는지, 재판에 소환되었는지 소환장을 받을 수가 없어서 소명할 기회로 상실하였습니다. 저가 소환장을 제대로 받았다면 재판에 참여하여 진위여부를 제대로 가려서 소명을 하여 재판에 대한 판결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환장을 받지 않음에 따라 소명할 기회를 상실하였고 재판에 불참석함에 따라 재판의 절차에 의한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인 재판의 절차에 따라 재판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6) 헌법규정에 따라 소환장을 전달하지 않고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인 재판의 절차에 따라 재판한 결과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시행하였는지 여부

7) 헌법 제3편 권징 제26조에 의거하여 재판회가 증거의 조사는 증인 심문과 검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증거 조사란 재판의 절차도 지키지도 않고 재판의 절차에도 하자가 있었음에도 재판 판결이 결정함에 따라 재판 결과가 적합하고 합법적인가 여부?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의 재판 절차에 따라 피고의 심문과정과 변론에 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재판의 절차를 수행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피고 측에 대한 보호는 생각하지 않고 재판국에 일방적인 심리 판결에 의거하여 결정함에 따라 모든 재판 결과에 대하여

질의7) 헌법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한 절차를 재판을 시행하였는지 여부

8) 헌법규정에 의거하여 헌법 제3편 제1장 총칙 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

과) 10항에 따르면 폭언, 협박, 폭행의 죄과로 면직, 출교로 재판 판결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8) 헌법규정에 의하여 판결한 결과의 죄과인 면직, 출교의 적정성 여부?

14. 임시당회장 파송과 대리당회장 권한

서울서노회장 장찬호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97-11호 / 헌법질의 해석의 건 (2017.11.16.)”

해석 : 당회장 결원 시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에 근거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당회(제직회)를 할 때는 노회에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담임목사 결원 시에는 임시당회장를 파송해야 하나 파송여부는 노회에서 판단하고 임시당회장의 파송 시까지는 한시적으로 대리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제2항에 준하여 행사한다.

질의내용 : 저희 희성교회는 2010.04.11.일자로 방충근 목사를 청빙하여 시무케 하였으나 2차례 당회장권 정지, 시무해임 등 처벌을 받던 중 2015년 8월 25일에는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2년 목사 정직을 받았고, 결국 금년 2017년 7월 11일에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출교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의 혼란과 상처, 교인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혼란 중에 30년 넘게 희성교회를 키우고 지켜오신 황태주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모셨고, 그 후 지난 2년간 수많은 모멸과 상처를 당하면서 오늘의 희성교회로 안정시켰습니다. 현재 희성교회는 황태주 원로목사(대리당회장)와 시무장로 전원이 일치가 되어 교회를 치리하고 제직원들의 적극 협조로 예배를 안정되게 드릴 수 있고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수 반대 진영 사람들이 중2층에 따로 앉아 헌금도 하지 않고 설교가 귀에 거스르면 소리를 지르는 등 예배를 방해하였고, 그동안 20건이 넘는 노회, 총회, 검찰, 법원에 무차별 소송을 제기한 자들입니다. 기히 말씀드린 대로 법적 외형상 안정은 되었다 하나 아직도 교단과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소송이 여러 건 있습니다. 하다못해 서리집사 임명 받지 못했고, 당회 결의로 이런저런 보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았다며 당회원을 대상으로 1억 원이 넘는 손해 배상의 소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1명의 반대 없이 원로목사 추대와 그 예우를 가결한 후, 총회 재판국에 원로목사 추대를 비밀투표하지 않고 기립과 발성으로 해서 무효이므로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여 기각 당하자 국세청에 비밀히 세금 추징요구를 제기하여 교회가 국세청으로부터 1억

여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했던 자들입니다. 그 후속조치(구상금)가 저들의 소제기로 법원에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건이 소송 중에 있는 등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난마(亂麻)와 같이 산적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당회장이 결원이 되어 이제는 좀 더 안정적인 임시당회장을 파송 받아야 하겠는데 그럴 형편이 못되는 것이 현실적 아쉬움입니다. 외부에서, 교회 내정을 깊숙이 모르는 임시당회장이 오셔서 당회원과 호흡을 맞추어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수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임시당회장이 오시면 씻기 힘든 상처만 계속 받을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방충근 목사를 중심으로 한 인사들은 과거, 총회재판 심리에서 서강교회 송영태 목사께서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고 서강교회(송영태 목사) 앞에서 1년 넘게 주일날마다 피켓 시위하여, 서강교회 담임목사와 교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으며 주변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고, 그 후 대리당회장으로 이건호 목사(청파동교회)를 모셨으나 모신지 1개월 쯤 되어 우리정서와 맞지 않으니 다음 수요일까지 사임하지 않으면 청파동교회와 목사 주거 아파트 앞에서 피켓시위 하겠다고 협박 문자를 발송하여 사임하게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차별 고소, 고발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와중에 어느 목사님께 임시당회를 맡아 달라 요청할 수 있겠으며 어느 목사님이 흔쾌히 이일을 감당한다 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지난 2년간 황태주 목사님께서는 대리당회장으로 순교의 각오로 한주도 거르지 않고 주일설교를 하시고 계시고 있으며, 시무장로와 한마음이 되어 오늘의 희성교회를 있게 하신 황태주 원로목사께서 담임목사든, 임시당회장이든 청빙될 때까지 대리당회장으로 그 임무를 계속 하는 이외 대안이 없다 판단되어 헌법시행규정 제16조 7의 4항 “임시당회장의 파송 시까지는 대리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며….” 규정에 의하여 당회장 결원 직후 동 헌법시행규정 2항에 의거 당회원 전원 결의와 연서로 황태주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하여 혼란하던 교회가 급속하게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질의)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의 4항에 의거 담임목사가 부임하거나 임시당회장을 파송 받을 때까지 원로 황태주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한 것과 동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2항에 의거 당회 결의와 당회원 연서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함이 적법한지요?

15. 공동의회 절차 적법성

서울서북노회장 김상목 장로가 제출한 “서북노 제69-19호 / 해석 질의 건(2017.11.20.)”

해석 :

질의1) 공동의회의 일시, 장소와 마찬가지로 안건도 한 주일 전에 광고를 해야 할 사항이

므로 2부 예배 광고 시간에만 안건 광고를 하고 1부 예배 광고 시간에는 안건 광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안건 광고는 적법한 광고라고 볼 수 없고, 그 안건 처리는 부적법하다. 다만, 참석자 전원이 안건 상정과 처리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안건 처리는 적법하다.

질의2) 헌법정치 제90조 제4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하였다면 그 결의는 적법하다. 단.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3항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상위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정관 개정 및 제정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정관의 정족수로 처리한다.

질의3) 헌법정치 제90조 제2항에 근거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의회 참석자 전원이 안건 상정 및 처리에 동의할 경우 안건은 추가 할 수 있으나 1명이라도 반대가 있는 안건은 다룰 수 없고 새로운 안건에 대해서 다시 당회결의 및 광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질의4)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는 하위법규는 무효이므로 지교회의 정관과 본 교단 헌법이 상충될 경우 지교회의 정관을 우선한다는 취지의 지교회 정관은 개정하여야 한다.

질의5) 헌법시행규정 제88조 제1항은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면직책벌로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재판에 계류 중 여부와 관계없이 탈퇴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조치로 치리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단 탈퇴에 대한 규정을 지교회 정관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질의내용 : 질의1) "공동의회는 일시, 장소, 안건을 한주일전 교회에 광고한다."로 정치 제90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교회의 당회장은 한주일전 주보에 일시, 장소는 광고하였으나 안건은 명시하지 않았고 다만 2부 예배 광고시간에 "정관 재제정 및 개정"한다고 광고하였습니다. 그나마 1부 예배 광고 시간에는 안건 광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정관 재제정 및 개정안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아 성도들이 사전에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공동의회 당일 오전 8시 29페이지 분량의 재제정 및 개정안을 본당 앞에 붙여 공지 하였으나 2부 예배를 드린 성도들의 경우는 당일 부착된 공지를 검토할 틈도 없이 공동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할 때 "정치 제90조 2항"에 위배됨이 아닌지요?

질의2) 서북노회에 보고된 제일영광교회 재적교인(세례교인)은 890명입니다. 공동의회 시작전 재석인원 1차 확인때 297명, 2차 확인때 292명이라 의장이 발표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관의 제정은 재적교인의 과반, 개정은 재적 교인의 2/3 이상 참석하여야 개회성수가 되므로 공동의회를 개회할 수 없으니 다음에 공지하고 다시하자'는 발언을 하고 동의 재청을 받았으나 의장은 몇 명이 참석하던지 참석한대로 개회하면 된다고 하며 공동의회를 강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적법한 개회인지요? 또한 불법한 공동의회였다면 개정된 정관은 무효인 것인지요? (재석:292명, 찬성:166명, 반대82명, 기권:44명)

질의3) 강행된 공동의회에서 사전에 공지된 안건 즉 정관 재제정 및 개정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위임목사 목회 보호를 위한 결의" 라는 안건을 한 집사님이 발의 하여서 일부성도가 공지된 안건이 아니므로 상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의장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예"와 "아니요"로 답하게 하여 일부 "아니요"라는 반대를 표시하였으나 적법한 표결절차 없이 만장일치라 하며 의결했습니다. 이때에 이 안건의 상정과 의결이 적법한 것인지요?

질의4) 개정 정관 제3조 제2항(단, 본 교단과 소속 노회가 본 교회의 독립성과 목적을 훼손할 경우 본 교회 정관을 우선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총회헌법에 적법한 것인지요?

질의5) 개정 정관 제24조(공동의회 결의 사항 및 의결 방법) 2-5 공동의회 의결방법에서 교단 및 노회소속 변경, 가입, 탈퇴, 행정보류, 교회합병 승인은 공동의회 재석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였는데 교단 탈퇴와 같은 중요사항을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한 정관이 총회헌법에 적법한 것인지요? 교단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을 지교회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 총회 헌법에 적법한 것인지요?

16. 노회임원 고소 여부

군산노회장 강무순 목사가 제출한 "군노79-007호 / 헌법 질의의 건(2017.11.28.)"

해석 : 헌법권징 제54조의 3에 근거 노회장과 서기가 치리회의 일원으로 임원회 및 각 부서·위원회의 결의, 결정, 해석, 판결 등 업무상의 행위를 하였다면 책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다만 금품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와 관련한 비리행위는 책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노회장과 서기에게 제54조의 3 후단에 규정된 범죄행위가 있다면 헌법권징 제20조 제2항, 제53조에 근거하여 노회에 고소해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장과 서기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노회에 고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총회(기소위원회)에 고소해야 되나요?

17. 장로 이명 복귀 절차

서울관악노회장 이정규 목사가 제출한 “관악 제43-12호 / 총회 헌법에 관한 질의서 송부(2017.12.5.)” 건

해석 : 장로가 다른 교회로 이명하여 그 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시무하다가 원래 교회로 복귀할 경우 그 장로는 원래 교회의 장로로 복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교회로 이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다른 교회로 이명하여 노회의 승인을 받고 그 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시무하다가 다시 원래 교회로 와서 장로로 시무하려면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장로로 취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질의내용 : 저희교회 현 상황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새봉천교회에서 교회법을 무시하고 이명한 장로를 시무장로로 세우려고 합니다. 지난날 교회 분란으로 봉천교회에서 더처치교회로 옮겨간 강해성, 윤상용, 이성광 장로가 그곳에서 시무장로로 노회에 승인을 받고 시무하다 2016년 11월 중에 새봉천교회로 다시 와서 협동장로로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당회 결정만으로 시무장로로 세운다고 하여 교회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회장님 올바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명한 장로가 노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고 당회 결정만으로 시무장로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나마 이일을 계기로 모든 일을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고 당회 결정만으로 행하여지는 거라면 누군가 막아서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분은 모두가 장로님이 바르게 서지 못하고 장로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직분에만 전념하고 당회에서 헌법은 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자기주장만 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아프실지는 상상이 안됩니다. 저도 이렇게 아픈데 얼마나 아프실까 존경하는 노회장님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18. 타노회 은퇴목사의 대리당회장 자격

군산노회장 강무순 목사가 제출한 “군노 79-011호 / 헌법 질의의 건(2017.12.15.)”

해석 :

질의1) 헌법정치 제67조 제5항에 근거 은퇴목사에게 대리당회장을 맡길 수 있으며, 대리당회장은 소속 노회 목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 타노회 은퇴목

사에게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 제4항에 근거 현 당회장이 고의적으로 당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당회에 불참하여 6개월 이상 당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당회원 과반수가 합의(연명)하여 노회 또는 폐회 중 임원회에 청원하여 파송 받은 대리당회장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지만, 만약 노회나 노회 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장로들이 임의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지 않다. (총회 제93회기 헌법해석 6. 참조)

질의2) 적법하지 않은 대리당회장이 개최한 공동의회는 위법이다.

질의3) 적법하지 않은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노회 탈퇴는 위법이다.

질의내용 : 군산노회 산하 동신교회는 목사 장로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교인들이 양분되어 충돌을 거듭한 끝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목사와 장로간의 쌍방 고소사건이 총회재판과 사회재판에 계류 중에 있으며, 1년 넘게 당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당회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회장이 응하지 않자 장로들은 직접 타노회 은퇴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했습니다. 그리고 대리당회장의 사회하에 당회를 열어서 헌법 정치 19조에 의거해서 공동의회 회원을 260명에서 189명으로 정리한 후(지난 춘계노회 교세보고에는 세례교인 350명, 장년출석 220명) 공동의회를 개최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했으며, 이후 노회탈퇴 공지문을 개교회로 보냈고 군산세무소에서 교회 대표자를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회나 임원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1) 2016년 10월 23일 오후 3시에 소집하여 결의된 김대현 목사를 사임시키기로 한 것을 추인해 달라는 건은 김대현 목사를 사임시키기로 만장일치로 추인하기로 결의하다.
2) 교회 대표자 변경 승인의 건은 당회서기인 손경연 장로를 변경 승인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3) 교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조건부로 노회 탈퇴의 건은 교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조건부로 군산노회를 탈퇴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질의1) 타노회 은퇴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질의2) 공동의회 절차가 적법합니까?

질의3) 노회 탈퇴 절차가 적법합니까?

19. 전도목사의 담임목사 청빙

진주노회장 김연석 장로가 제출한 “진주노제111-20호 / 담임목사의 청빙 청원 허락의 위법 여부에 관한 질의서(2017.12.18.)” 건

해석 : 헌법정치 제27조 제4항은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

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 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이며,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의 정한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담임목사가 시무하고 있던 교회가 후임 목사를 청빙함에 있어서 전도목사로 청빙하여 그 전도목사로 하여금 후임목사로 시무케 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다른 기관의 전도목사로 시무하던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여 후임 담임목사로 시무케 하는 것은 적법하다.

질의내용 : 1) 진주노회 천성교회는 정OO 담임목사의 병환으로 목회가 어려워져서 2013년 3월 12일 부울경범양선교회로부터 임OO 목사를 전도목사로 파송 받아 목회전반의 일을 돕도록 했습니다. 정OO 담임목사는 병환이 깊어져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어 연임청원을 하지 않아 2017년 4월로 무임목사가 되었습니다. 임OO 목사는 2017년 3월 부울경범양선교회 전도목사를 사임하였고 천성교회는 그동안 천성교회를 도왔던 임OO 목사를 당회와 제직회를 거쳐 노회에 청빙 청원을 하였습니다.

2) 2017년 10월 12일 제111회 진주노회에서 정치부는 이 청빙은 부울겸범양선교회와의 약속(별지 참조)이 있어서 청빙이 불가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천성교회 총대가 교회의 사정을 살펴달라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본회의 숙의 후 투표 결과 청빙 허락이 가하다고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3) 청빙 허락을 공표하려는 순간 어느 회원이 '법이요'라며 헌법해석사례(92회기 헌법해석 사례 8항 전도목사의 담임목사 청빙문제 - 인천동노회장 송인섭 목사가 제출한 헌법질의 2007.8.21.)를 제시했습니다.

4) 노회장은 법의 문제를 제기했기에 총회에 위법 여부사항을 확인한 후 처리하도록 임원회에 맡겨주실 것을 요청했고 천성교회 임OO 목사 청빙건은 임원회에 위임되었습니다.

질의) 임OO 목사의 청빙 청원을 허락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은지요?

20. 불이익변경의 금지 적용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장두영 판사가 제출한 "사실조회서(2017가단1720위자료)(2017.12.14.)" 건

해석 :

질의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재심재판을 함에 있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 권징 제104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헌법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 제16항에 근거 피고인 외에 기소위원장이 상소한 사건 또는 기소위원장과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 권징 제124조 사유로 재심 재판을 할 경우 언제나 총회재판보다 책벌선고를 받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즉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 권징 제104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헌법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 제16항 규정에 근거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만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며, 기소위원장만이 상소하였거나 또는 기소위원장과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헌법해석 제101회기 42. 항소 / 불이익변경의 금지 / 재심청구

질의내용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재심재판을 함에 있어서 총회재판보다 책벌 선교를 받은 피고인에게 불익하게 변경하는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의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재심재판을 함에 있어서 총회 재판보다 책벌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124조에서 재심사유를 정하면서 “책벌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이 규정이 재심재판에서는 언제나 총회재판보다 책벌선고를 받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취지인지 여부.

21. 동성애 관련 총회 결의 적용

제주노회장 임명휘 장로가 제출한 “제노제 147-18호 / ‘댓글과 동성애 지지 여부 질의’, ‘로마천주교의 영세 인정과 이단성 관계 규정 질의’ 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2017.12.4.)” 건 중 ‘댓글과 동성애 지지 여부 질의’ 건

해석 : 페이스북의 댓글이 총회 결의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인 것은 맞지만, 그 글의 게시자가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고, 따라서 이것만으로는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12항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질의내용 : 제목 : 이 댓글 내용이 동성애 지지와 옹호인가?

1. 질의 주문 : 1번. 헌법시행규정 제26조 12항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

2번. 안광덕 목사가 장신대 총학생회 성명서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안광덕 페이스북 댓글(장신대 성명을 정태효 목사가 공유한 게시물) :
2017.9.23. 오전 7시
제목 : “신학생들, 동성애 문제 자유롭게 논할 수 있도록”
댓글 : “그래도 우리 장신대는 살았다. 잘 한다. 후배, 부끄럽다 선배들, 나도….”

질의) 이 댓글(2번)이 헌법시행규정 제26조 12항(1번)에 해당되는 동성애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인지를 해석하여 주기 바랍니다.

2. 질의 배경 :

본 교단 총회가 동성애 반대하는 헌법시행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 총학생회가 총회가 동성애 관련 조항을 개정 결의한 것에 대하여 “신학생들, 자유롭게 동성애 문제 논할 수 있도록” 그 과정과 신학교 수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안광덕 목사(성산포교회 위임목사)는 제주노회 총회 총대로서 총회 결의에 참여하였지만 총회 의한 처리 과정의 타당성과 토론이 부재를 아쉽게 여기는 중에 장신대 총학생회의 성명을 보고 ‘동성애 찬양과 옹호가 아니라는’ 분명한 표현과 민주적 토론 필요성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제 총회는 이와 같은 댓글을 쓴 것이 헌법시행규정 제26조 12항 조문에 ‘동성애 지지와 옹호하는 자’ 인지를 해석하여 주기 바랍니다.

3. 질의 이유

가. 페이스북 댓글은 동성애 지지나 옹호가 아니다.

댓글을 단 페이스북 다른 목사님의 인용글은 “멋진 후배들, 역대 총회의 오류!”, “슬픕니다. 미안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장신대 총학생회의 성명서 제목을 인용하기를 “신학생들, 자유롭게 동성애 문제를 논할 수 있도록” 이었습니다.

동성애 지지나 옹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총회가 동성애 입법 과정과 신학교에서 그 문제를 수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나. 장신대 총학생회 성명은 동성애 지지와 찬양이 아니었다. :

총학생회 성명서에서 다음을 주장(부분 인용)하였다.

제목 : “교회는 혐오의 총칼에 맞서는 최후의 보루”

“제102회 총회를 이끌어가는 선배님들의 시대와는 다르게 우리가 직면한

현 시대는 동성애자들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시대다.”

“~신학교라는 상아탑에만 갇힌, 죽은 신학이 아니다. 신학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신학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는 것에 신학생의 정체성과 소명을 두고 있다.’ 곧 ‘신학은 동성애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답할 것인가?’가 신학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이란 뜻이다.”

“우리에겐 ‘신학과 교회가 이에 대해 어떻게 응답해야할지’ 깊이 탐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아직도 우리에게 낯선 타자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려면, 가난하고 무시 받는 이들과 함께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을 배제와 소외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여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배우고 싶습니다. 성경적으로 동성애라는 물음에 어떻게 답해야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넓혀가는 것인지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찬양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오해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보다 성경에 가깝게, 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정신에 가깝게 알고, 그들에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에 신학생이 자유롭게 동성애의 문제를 논할 수 있는 풍토와 환경이 신학교에 조성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다. 총회 동성애 관련 선언 :

총회는 동성애는 반대한다. 하지만 동성애자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선교와 치유의 대상으로 여긴다.

1) 제99회 총회(정영택 총회장) 선언

“동성애·동성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질서와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가정의 모형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롬1:26~27)입니다. 총회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질서와 민족공동체의 건강한 성윤리를 지키는 공적책임을 다하며, 사회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에 예언자적이고 선교적인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5. 5. 26. 총회장 정영택 목사

2) 동성애에 관한 총회(제101회, 이성희 총회장) 선언

하나. 총회는 동성 결혼의 합법화에 반대한다.

하나. 총회는 군형법 92조 6의 개정안 발의를 반대한다.

하나. 총회는 동성애자(者)를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변화의 대상으로 여긴다.

성경의 동성애 금기를 공적 권위로 받아들인 총회는 동성애자(者)를 사랑과 변화의 태도로 대해야 한다. 총회는 동성애자를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천부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임을 고백한다.

교회는 동성애적 끌림으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동성애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완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총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의 원칙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2017.6.12.에 총회는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댓글이 총회의 입장과 다른 '동성애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 인지를 해석하여 주십시오.

22. 수습전권위원회 요청의 대리당회장 파송

평북노회장 최동출 목사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203-59호 / 헌법 질의의 건 (2017.12.29.)"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33조 3항에 근거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당회원들의 권한정지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당회장권이나 당회원권은 그 즉시로 정지되고 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일부 당회원들의 권한 정지는 해제하면서 위임목사의 당회장권과 일부 장로의 당회원권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정지시켰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노회 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대리당회장은 헌법시행규정 제3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당회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노회 파송 대리당회장에 의해 적법하게 소집, 개회된 당회에서 한 결의는 적법하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시행조례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제3항에서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항에서는 "교회나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안에서 신앙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북노회 수습전권위원회에서는 아직 교회 수습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당회원들의 권한정지를 해제시켜, 시무를 하게하고 위임목사와 장로 1인은 계속 권한정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임목사도 없이, 대리당회장도 없이 당회를 열고 그 결정을(인사, 행정, 예배 등)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상기 33조 제3항의 법정신은 필요하면 당회원 전원의 기능을 정지시켜놓고 수습활동을 하고 수습이 끝나면 해체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또 법은 공정성이 그 생명입니다. 그런데 평북노회 수습전권위원회에서는 공정성과 화해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치우쳐, 교회분란을 도리어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위헌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가중처벌 의뢰

서울서노회장 장찬호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97-36호 / 헌법 질의 해석의 건 (2018.01.12.)”

해석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86조 제3항에 근거 피고인이 시벌을 불이행할 시는 소속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고, 그 재판국은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판결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질의2) 총회헌법 권징 제132조에 근거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한다.

질의내용 : 마포교회는 제101회 총회 제2재심재판국의 재심청구[사건번호 제101-권징]와 관련하여 총회 헌법 제3편[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및 헌법시행규정 제3편[권징] 제73조[재심청구]에 의거 판결문(2017.7.18.일자)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 총회 임원회가 총회 제2재심재판국 제101-5권징 판결에 대한 판결집행문을 총회 헌법 제3편(권징) 제5장(상소) 제3절(상고) 제120조(집행과 종국판결), 헌법시행규정 제87조(집행과 종국판결)에 따라 판결집행 통보(2017.9.8.)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시벌당사자인 당사자인 김○○집사, 김○○집사, 진○○집사는 일체의 치리 행위에 대해 불복하며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심청구 판결문[사건번호 제101-권징]에 따라, 피고인들의 범죄행위가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권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고 교회 내 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질의1) 총회 집행문에 의거 근신 중에 있는 시벌대상자들이 불응하고 반성문

을 1회 이상 소속 치리회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행동을 삼가지 않으며, 교회 내 혼란을 일으킬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 제5조)

질의2) 총회 집행문에 따라 시벌대상자가 거역할 시 총회가 직접 집행하는지요? (헌법 제3편 권징 제7장 제142조)

24. 무임목사의 전도목사 파송

전남노회 국내선교부장 김용범 목사가 제출한 "총회헌법위원회 헌법해석청원서(2017.12.27.)" 건

해석 :

질의1), 질의5) 헌법 정치 제27조 제9항 무임목사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자동 해직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의 존재 유무는 노회에서 판단한 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무임목사 3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도목사 파송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질의2), 질의3) 헌법시행규정 제19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목사로 3년이 경과하면 노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이 됨을 통지하고 노회에 보고한 후 무임목사 명부에서 삭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목사로 3년이 경과하면 자동해직의 필요요건은 갖춰지지만, 자동해직의 효력은 노회장이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이 됨을 통지하고 노회에 보고한 후 무임목사 명부에서 삭제한 때에 발생한다. 즉 자동해직 통지는 해직의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자동해직의 효력발생 요건이다.

질의4) 무임목사에 대한 처리는 노회에서 하며 노회가 인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3년이 경과해도 자동해직되지 않으며, 헌법시행규정 제19조 제1항에 정하여진 일련의 절차(노회장이 자동해직통지를 하고 노회의 논의를 거친 후 무임목사 명부에서 삭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임목사로 3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자동해직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남노회가 해 목사의 전출을 허락한 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청빙여부는 전출한 광주동노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다. (제100회기 33. 헌법위원회 해석 참고)

질의내용 : 1) 2017년 08월 18일 전남노회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이하'국내선교부'라고 한다.)는 제9차 회의에서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전도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김경복 목사 사임을 결의한 것입니다.

2) 국내선교부는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전도목사로 시무 중인 당사자의 사임 연월일이 2017년 08월 23일이기 때문에 동일(同日) 후임전도목사로 우경애 목사의 허락을 결의한 것입니다.

3) 2017년 08월 21일 전남노회 정치부는 제9차 임원회의에서 우경애 목사를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전도목사로 허락을 결의한 것입니다.
4) 2017년 08월 21일 전남노회 임원회는 제22차 임원회의에서 우경애 목사의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전도목사 파송 요청을 보류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5) 2017년 08월 25일 전남노회는 제23차 임원회·국내선교부임원 연석회의에서 우경애 목사의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전도목사 파송 요청은 부결하고 국내선교부로 회신하여 공개 모집 후에 선정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6) 2017년 08월 31일 전남노회 국내선교부는 제10차 회의에서 노회 임원회의 지시사항인 공개 모집을 성실하게 이행한 결과 다시 우경애 목사가 당선되어 그를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전도목사로 파송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7) 2017년 09월 05일 전남노회 임원회는 제24차 회의에서 우경애 목사가 결격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전도목사 파송을 다시 보류하고 국내선교부장의 면담 후에 받기로 한 것입니다.
8) 2017년 10월 26일 정기노회에서 승인하여 줄 것을 회원들이 요청하였으나 노회장이 당사자가 무임목사라는 이유로 보류한 것입니다.

질의1) 헌법 정치 제27조 제9항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만 3년이 지나도 자동 면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질의2) 헌법 정치 제27조 제9항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에서 만 3년이 지나도 당사자에게 해직예고 통지를 사건에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회가 무임목사를 면직처리 할 수가 있습니까?

질의3) 전남노회는 2017년 10월 26일 현재 무임목사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목사가 11명입니다. 노회가 당사자들에게 해직됨을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무임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법사항입니까? 합법사항입니까?

질의4) 전남노회가 2016년 11월 14일 무임목사 기간이 만 4년 1개월째인 박찬숙 목사를 광주동노회 보건대학교 전도목사로 청빙청원을 받고 전출을 허락한 것은 위법사항입니까? 아니면 합법사항입니까?

질의5) 질의4가 합법이라면 무임목사 기간이 만 약 5년 4개월째인 우경애 목

사를 전남노회국내선교부가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전도목사로 파송하기로 결의한 것은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

25. 장로 휴무 기간

충북노회장 이상은 목사가 제출한 “대충노 제137-24호 / 원로장로 추대 관련 질의(2018.2.6.)” 건

해석 : 장로로서 시무한다는 것은 헌법정치 제39조의 장로의 직무와 제68조 당회원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로가 헌법 정치 제46조에 의하여 휴무하게 되면 그 장로는 헌법 정치 제39조의 장로의 직무와 제68조 당회원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게 되므로 장로 휴무기간은 헌법 정치 제44조(원로장로)에 기재된 장로 시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 1. 은퇴대상 장로 현황

- 장로기간 : 25년 9개월 21일(장로장립 : 1992.3.11., 70세 되는 해 : 2017.12.31)
- 장로휴무기간 : 8년 2개월 25일(시작 : 2001.10.7., 종료 : 2009.12.31)
  ※ 장로휴무 사유 : 본 교회 유급 사무장 종사
- 장로시무기간 : 17년 6개월 26일(장로기간 - 장로휴무기간)

2. 질의 사유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로장로는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20년 이상 장로 시무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 등 2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고 해석됨.
- 이 경우, 유급 사무장 종사로 인한 장로 휴무기간이 장로 시무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음. ※ 공동의회에서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따르기로 의결하였음.

질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44조 규정의 장로 시무 기간에 유급 사무장 종사로 인한 장로 휴무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청목과정 절차

서울서남노회장 이상록 장로가 제출한 “〈타교단 출신 청목 과정〉에 대한 관한 질의(2018.2.1.)” 건

해석 : 헌법시행규정이 개정이 될 경우 기존 과정 중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적용여부를

규정해야 하나 이에 대한 조항이 없으므로 만약 해 목사가 개정 헌법시행규정 공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개정 헌법시행규정 공포 이전에 헌법시행규정 제23조에 근거 청목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헌법을 수강하고 청목과정을 수료한 뒤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 대신(총회 목사고시 없이) 청빙 받은 노회(정치부)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 처음 청목과정에 입학할 때는 헌법을 수강하고 청목과정을 수료하면 목사고시를 치지 않고 노회(정치부)의 면접을 통해 본교단의 목사 청빙과정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제102회 총회에서 헌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처음 청목과정에 입학할 때의 조건과 상충됩니다. 헌법의 소급적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 개정 전 헌법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23조(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5. 청목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3) 해외한인장로회에서 신학을 이수한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나 미국 나성(LA) 혹은 뉴욕(NY)에 소재한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M.Div) 본교에서 2년 이상 신학석사(M.Div)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청목으로 받아줄 수 있다. 단 2년 미만 수학 후 졸업자나 타 지역 혹은 타국 소재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는 불허한다.

4) 3)의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 중에 헌법과목을 이수 후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 대신(총회 목사고시 없이) 청빙 받은 노회(정치부)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

▶ 개정 후 헌법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23조(다른 교단의 목사청빙)

5. (청목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4) 3)의 경우 본 교단 직영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 중에 헌법 2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27. 제102회 총회 결의 목사임직 예식 / 유아세례 / 여성총대 할당제 적용

총회장이 제출한 “총회결의에 대한 헌법 해석 질의(2018.2.22.)” 건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33조는 목사의 임직식과 관련하여 ‘노회는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을 주관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가 그 예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무(강제)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102회기 총회에서 '총회 목사임직 예식(안)'을 2017년 가을노회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결의를 했을지라도 위 예식(안)은 총회의 권고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목사의 임직식은 노회가 주관하여 거행하면 되고, 예식에 관한 사항도 노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거행하면 된다. 그러나 위 예식(안)은 총회가 교단 전체의 사정을 감안하여 가결한 것이므로 각 노회에서는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의2)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 참여는 총회헌법 정치 제16조와 상충되므로 이를 허락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질의3) 총회헌법 정치 제77조 제8항 및 제84조에 의하면, 총회총대의 선정 및 파송은 노회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총회가 그 결의로 이에 직접 간여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여성총대 파송에 관한 제102회기 총회의 결의는 의무(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총회의 위 결의는 교단 전체의 사정을 감안하여 가결한 것이므로 각 노회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총회 총대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의내용 : 제102회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임원회는 102-2차 회의 결의로 전국 노회에 다음의 3가지 제102회 총회결의에 대해서 가능한 총회결의를 준수하도록 협조요청 하였는데 이 총회결의에 대하여 전국 노회가 의무(강제)사항으로 시행해야 하는지 또는 권고사항으로 시행해야 하는지를 헌법에 근거하여 해석해 주실 것을 질의하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제101회 총회 수임안건인 '장로노회장 임기 시 목사임직 예식을 별도로 제정해 달라는 건(서울노회 헌의)' 을 101회기 한 회기 동안 연구하여 '총회 목사임직 예식(안)'을 제출하오며 채택하여 달라는 청원건과 이 예식(안)이 이번 가을노회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결의한 건 후속조치(교육자원부 보고 시 결의)

질의2)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 참여 허락 결의(제102회 총회 국내선교부 보고 시 결의)

질의3) 모든 노회가 여성총대 1인 이상을 총회 총대로 파송하는 건 허락 결의(제102회 총회 여성위원회 보고 시 결의)

28. 항존직 / 은퇴장로 / 조기은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김동윤 판사가 제출한 "사실조회서[사건:2017카합100283 예배 등 업무방해금지가처분](2018.2.21.)" 건

해석 :

질의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헌법(이하 '총회헌법'이라 함) 정치 제22조(항존직)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단, 항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질의2) 제94회기 헌법위원회 헌법해석 39번 사례가 있다.

39. 장로의 사임 및 사직 대구서남노회장 박수열 장로가 제출한 '은퇴장로의 해석에 대한 질의(2010.5.12)' 건에 대하여 본 교회의 시무장로의 연한을 65세로 교회 내규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무장로가 62세에 시무를 사임하고 은퇴하고자 할 때, 질의1) 당회에서 시무사임을 허락할 경우 즉시 은퇴장로로 할 수 있는지, 질의2) 아니면 교회 내규에 의해 정해진 시무장로의 연한인 65세 이후에 은퇴장로로 할 수 있는지, 질의3) 아니면 총회 헌법에 정한 연한인 70세 이후에 은퇴장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은 "헌법 제2편(정치) 제22조(항존직) 단서조항과 제43조(장로의 사임 및 사직) 제1항(자의사임)에 의거 조기 은퇴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

질의3) 항존직(당회원)은 총회헌법 정치 제22조 단서조항에 근거 70세가 되기 전에 조기 은퇴하고자 할 경우 당회에 조기은퇴청원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허락을 받아 조기 은퇴할 수 있다. 따라서 '항존직(당회원)은 65세 조기은퇴하기로 한다.'는 당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회의 허락만 받으면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조기 은퇴)할 수 있으므로 조기 은퇴는 총회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소속 당회에서 65세에 조기 은퇴하기로 자의로 결의하고 직접 당회원들이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예컨대, 65세가 되었을 때쯤에) 조기은퇴를 거부하는 장로가 있을 경우 위 당회 결의를 이유로 70세 이전(예컨대, 65세가 되었을 때)에 장로의 조기은퇴를 강제할 수는 없다.

질의4) 위 질의3)해석과 같이 헌법 정치 제22조 단서에 근거 항존직(장로,집사,권사)은 70세 이전이라도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조기은퇴 할 수 있기 때문에 70세 이전에 은퇴하는 것은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총회헌법 정치 제22조 단서 이외에는 70세 이전에 항존직 은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또한 조기 은퇴 제한 규정이나 예외 조항도 없다.

질의내용 : 사실조회서(사건:2017카합100283 예배 등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질의1) 귀 총회 헌법 정치편 제22조(항존직) 규정 내용이 어떠한가요?

질의2) 귀 총회는 다음 헌법 해석 사례가 있는가요? 있다면 관련 사례의 회신문을 사본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39. 장로의 사임 및 사직 / 대구서남노회장 박수열 장로가 제출한 '은퇴장로의 해석에 대한 질의(2010.5.12)' 건에 대하여 본 교회의 시무장로의 연한을 65세로 교회 내규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무장로가 62세에 시무를 사임하고 은퇴하고자 할 때, 질의1) 당회에서 시무사임을 허락할 경우 즉시 은퇴장로로 할 수 있는지, 질의2) 아니면 교회 내규에 의해 정해진 시무장로의 연한인 65세 이후에 은퇴장로로 할 수 있는지, 질의3) 아니면 총회 헌법에 정한 연한인 70세 이후에 은퇴장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22조(항존직) 단서조항과 제43조(장로의 사임 및 사직) 1항(자의사임)에 의거 조기 은퇴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

질의3) 귀 총회 교단 소속 장로가 자신이 소속된 교회의 치리회 당회에서 '항존직(당회원)은 65세에 조기은퇴하기로 한다.'에 자의로 결의하고 직접 서명한 후, 장로직을 65세에 은퇴하는 것은 귀 총회 헌법 규정에 위반됩니까?

질의4) 만약 위 3항의 질의가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면 70세 이전에 항존직 은퇴가 가능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떠합니까?

29. 공동의회 서기 자격

여수노회장 강점석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45-18호 / 당회 서기가 아닌 자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것도 당회원이 아닌 자가 공동의회 서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해석(2018.2.22.)" 건

해석 : 헌법정치 제90조(공동의회) 제2항에 근거 당회의 결의에 의해 한 주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을 광고하였고 당회장이 의장이 되었다면 그 공동의회는 적법하다. 다만 동법 제7항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에 근거 공동의회 서기는 당회서기가 맡아야 한다. 그러나 당회서기가 유고상태이고 당회원이 사정상 공동의회에 불참하여 공동의회 의장이 공동의회 회원 중 임시서기를 추천하였고, 이에 대해 공동의회 참석자 모두가 동의하고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공동의회 임시서기는 적법하다. 따라서 그 후 공동의회를 적법하게 진행하였다면 그 공동의회 결의는 적법하다.

질의내용 : 질의) 당회 서기가 아닌 자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당회원이 아닌 자가 공동의회 서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 해석을 바랍니다.

헌법 제2편 정치 제13장 제90조 공동의회 7항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서기로 한다." 여수 영락교회는 2008년 2월 3일 김성기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했습니다. 부임할 당시에는 세례교인 1,229명(2007년 말 교세통계표 기준)이 모이는 여수노회 굴지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담임목사와 교인들 간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으로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2010년 6월에는 장로 8명이 목사와의 갈등으로 사임서를 제출하니 일괄 수리하므로 8명의 장로를 비롯한 항존 직분자들과 상당수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된 분쟁과 법적 다툼으로 쇠락의 길을 걸으며 지금은 세례교인 280여명(2017말 교세통계표 기준)도 모이지 않는 중소교회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수영락교회 김성기 목사는 2017년 3월 29일(수) 7시 30분에 회원 51명이 본 교회에서 모여서 장로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열었고 세 명이 장로로 피택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본 교회 당회 서기는 최광석 장로 이므로 최광석 장로가 법대로 공동의회 서기가 되어야 하는데 최광석 장로도 다른 교회로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당회를 소집하여 시무 장로인 이경래 장로를 당회서기로 선임해서 공동의회를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회도 하지 않고 공동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무장로인 이경래 장로는 담임목사가 법대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으므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수영락교회 김성기 목사는 2017년 3월 29일(수) 7시30분 공동의회에서 아직 취임도 하지 않는 타 교회에서 온 백학성 장로를 공동의회 서기로 선임해서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헌법 제2편 정치 제13장 제90조 공동의회 7항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서기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당회서기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타교회로 떠났다면 부득이한 상황이므로 당회에서 다시 시무장로를 당회서기로 선임하고 공동의회를 소집해서 회무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의회를 소집한 상태에서 그것도 당회원이 아닌 자를 임시로 공동의회 서기로 선임하여 공동의회를 한 것은 당연히 위법이라고 사료되므로 헌법위원회의 현명한 판단과 해석을 바랍니다.

30. 장로 피택과 장로 임직

여수노회장 강점석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45-19호 / 불법으로 강행한 장로 임직식에 대한 헌법 해석 질의(2018.2.22.)”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로 하고, 여수노회장 강점석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45-23호 / 여수영락교회 김성기 목사 외 2인의 헌법해석 질의(2018.3.2.)” 건은 “여노 제45-19호(2018.2.22.)” 해석으로 갈음해석

해석 :

질의1) 헌법 정치 제77조 제6항,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장로의 피택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장로로 피택된 자가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의 고시에 합격하고, 노회가 임직을 허락하였을 경우 지교회가 장로 임직을 행할 수 있다. 따라서 노회가 장로 임직을 허락한 이상 노회가 제시했던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교회의 장로 임직은 유

효하다.

질의2) 헌법 정치 제42조 제2항에 근거 장로임직은 지교회가 행하는 것이므로 노회가 이와 관련하여 권고 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기에 임직식에 참여한 사실만으로는 권징 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여노 제45-19호 / 불법으로 강행한 장로 임직식에 대한 헌법 해석 질의(2018.2.22.)”〉

질의1) 분쟁 중에 있는 여수영락교회가 불법으로 강행한 장로 임직에 대한 헌법 해석

질의2) 불법 임직식에 참여한 노회원들을 권징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해석

헌법 제2편 정치 제11장 제77조 노회의 직무 2항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 헌법과 헌법시행규정과 각 치리회의 규칙에 정한 것에 관한 사항을 접수처리 한다. 6항 노회는 지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와 전도사의 자격 고시를 한다. 제45회 여수노회 정기노회(2017.10.24.화)에 여수영락교회 당회장 김성기 목사가 김성신, 김경래, 박미선 씨를 장로고시 및 임직청원을 했습니다. 정치부에서는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의 서기가 당회서기와 다르므로(헌법해석 요청함) 위법성이 있어서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장로고시는 허락하고 세 사람의 임직을 담임목사인 김성기 목사와 장로대표인 이경래 장로가 화해한 다음에 허락하기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였습니다. (투표결과: 총투표자수 117명 중 장로대표와 화해 한 후 임직을 허락하기로 88명 찬성으로 결정함.) 이에 여수노회 임원회는 여수영락교회 당회장인 김성기 목사가 빨리 화해하도록 요청해서 급히 2017년 10월 24일(화) 노회 후 두 차례〈10월 31(화), 11월 4(토)〉에 걸쳐 화해 모임을 가지며 화해를 진행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락교회 김성기 목사는 노회가 끝난 지 두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노회 전부터 이미 임직일자를 잡아 놓았다고 하면서 11월 5일(주일)에 급박하게 “장로 임직식”을 강행하였습니다.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11장 제77조 노회의 직무 6항 [노회는 지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와 전도사의 자격 고시를 한다.] 헌법 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26조 직원선택 4항에 [장로는 고시에 합격 후 1년 이내에 임직 하여야 하며 만일 임직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1년간 연기할 수 있다]는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보면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있으므로 서로 화해하고 임직을 하여야 하며 만일 화해가 잘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임직이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 최대한 노력이라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회의 권위와 결정을 무시하고 세 사람의 임직을

강행한 것은 노회가 조건부로 허락한 것인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사료되므로 헌법위원들의 현명한 해석을 바랍니다. 또한 “영락교회 임직식은 아직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장로 임직식을 거행하므로 임직식 순서 맡은 것을 자제하라는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 임원회의 결정과 권위를 무시하고 불법 임직식에 참여한 노회원(목사, 장로)들에 대해서 권징 할 수 있는지 헌법 해석을 바랍니다.

〈“여수노회장 강점석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45-23호 / 여수영락교회 김성기 목사 외 2인의 헌법해석 질의(2018.3.2.)”〉

1. 노회 회의 결의 내용

1) 2017년 10월 제45회기 여수노회 정기노회의 결정(제45회기 회의록 11. 정치부 보고. 장로고시 및 임직 청원에서 여수영락교회 당회장 김성기 목사가 청원한 김성신, 김경래, 박미선 씨 장로고시 및 임직 청원은 (장로고시는 허락하고) 임직은 장로 대표 (이경래장로)와 화해한 다음에 허락하기로 하다.)로 결정 하였습니다.

2.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

질의1) 헌법 제6장 장로 제39조 장로의 직무1. 제41조 장로의 선택1. 제42조 장로의 임직1.2.헌법시행규정 제26조 직원선택2.4.에 의하여 모든 절차와 임직의 권한을 노회가 갖는지? 당회가 갖는지?

질의2) 노회에서 장로청원을 받고, 교회 공동의회에서 선출하여 노회훈련원 교육을 수료 하고, 노회고시와 면접 후에 합격통지까지 받은 지교회의 장로 임직예정자의 임직을 노회가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질의3) 장로임직 대상자들은 아무런 흠결이 없이 교회와 노회의 모든 절차를 거쳐서 진행 된 장로 임직의 건을 노회 본회에서 “화해 후 임직한다.”는 식으로 결의하여, 지 교회 교인의 선출권과 임직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 합법적인지?

질의4) 교회와 노회의 모든 법적인 과정을 거쳤다면 정치부나 노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질의5) 임직에 관한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데도 여수노회가 일방적으로 ‘화해 후 임직을 허락하기로 하다’ 가 법적인 요건을 갖춘 것인지?

질의6) 총회헌법위원회가 해석한 답변서를 통지 받고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6조 6항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시행하라”는 해석을 따르지 않아서, 총회 임원회는 다시 행정이행 명령을 공문으로 전달하였음에도 노회

는 이를 무시하고 시행하지 않고, 노회 임의로 결의를 통해서 총회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31. 수습노회의 개회 성수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102-570호 / 수습노회 개회 성수 관련 헌법 질의(2018.2.27.)” 건

해석 : 헌법정치 제76조 “노회의 개회는 (시무 목사와 총대 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8조 제2항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과반수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9항이 “노회 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총회장 명의로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이 규정이 헌법 정치 제76조나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8조 제2항에 대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고노회의 경우 수습전권위원회에 의해 소집하는 노회라 할지라도 헌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시무 목사와 총대 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러므로 총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전권으로 수습노회 소집에 모인 노회원수로 개회할 수는 없다.

질의내용 : 제101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는 서울동노회의 수습을 위하여 2017년 1월 13일 ‘총회 서울동노회 수습전권위원회’를 조직 구성한 바 있으며, ‘총회 서울동노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울동노회 수습을 협의하여 2017년 5월 2일, 9월 14일, 2회에 걸쳐서 “서울동노회 수습노회”를 소집한 바 있으나 개회하지 못한 상태로 회기를 마감하였습니다. 이번 제102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는 제102회 총회 결의에 따라 서울동노회 수습을 위하여 새롭게 ‘총회 서울동노회 수습전권위원회’를 조직 구성하고 현재까지 12회에 걸쳐서 정기회의를 가졌고, 여러 차례 서울동노회 목사측, 장로측 대표와의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서울동노회의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총회 헌법 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에 의거 서울동노회 수습노회를 2018년 2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소집하였는데 목사회원 재적 388명중 출석 146명, 장로회원 재적 286명중 출석 167명으로 개회성수 부족으로 또다시 개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동노회 수습노회 소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헌법질의하니 적법하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에 의거 총회장 명의로 소집된 수습노회(1차)가 어느 집단의 방해로 목사 회원, 장로회원 각 재적 과반수 미달로 개회되지 못하였을 때, 2차로 소집되는 수습노회 개회 성수도 반드시 목사회원, 장로회원 각 재적 과반수로 해야 하는지 또는 총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전권으로 수습노회 소집에 모인 노회원수로 개회할 수 있는지 여부

32. 노회 기소위원회 및 재판국 폐지

진주남노회장 양승주 목사가 제출한 “진주남 제122-46호 / 노회 기소위원회, 재판국 폐지에 대하여
(2018.3.2.)” 건

해석 : 헌법권징 제4조(재판의 원칙) 제2항에 근거 재판은 3심제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헌법권징 제16조(구성) 및 헌법권징 제56조(노회 기소위원회 구성)에 근거 노회 재판국 및 노회 기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모든 교인(직원)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헌법권징 제4조 제1항) 개 노회가 노회기소위원회와 노회 재판국을 폐지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 노회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을 개 노회가 폐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총회 헌법위원회의 답변을 구합니다.

33. 파트타임(준전임) 목사 지위

순천노회장 김종구 장로가 제출한 “순노 제100-56호 / 당회 구성원에 대한 질의 (2018.3.7.)” 건

해석 : 파트타임목사(준전임목사)를 헌법정치 제28조 제4항에 근거하여 청빙하였다면, 헌법정치 제64조(당회의 조직) 부목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파트타임목사(준전임목사)의 명칭과 지위는 헌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질의내용 : 당회 구성원에 대한 질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제10장 당회의 구성원에 대한 질문 입니다. 제64조 당회의 조직에 있어서,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라는 조항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헌법에는 들어 있지 않으나 현실적 교회운영에 있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파트타임(혹은 준전임으로 주말의 일정한 시간을 교회에 와서 근무함)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적합한 명칭이 없기에 모두 부목사로 청빙합니다. 부목사로 청빙하여 교육목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대로 부목사로 부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당회의 구성원에 해당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들이 파트타임 (주말에만 근무하기에)으로 교회와 약속하고 근무하기에 이들

은 당회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면 헌법 제64조(당회의 조직)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을 조직하되” 라는 조항에 부목사는 반드시 당회원으로 들어가도록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당회원으로 자격이 있다고 하면 주중에 근무하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기에 반론이 제기가 됩니다. 교육전도사의 일을 하기에 교육전도사처럼 당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제에 목사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부목사의 명칭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거나(예를 들면 교육사제도라든지), 헌법 조항에 대해 현실적인 헌법해석을 해 주셔서 총회산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로 혼란을 겪지 않고 행정을 잘 감당함으로 건강한 교회들로 성장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 위임목사 기간 / 시무장로 사임 절차/ 폐당회 기간

서울강동노회장 김상옥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61-035호 / 헌법해석 질의의 건 (2018.3.9.)”

해석 : 헌법 정치 제43조 제1항에 근거 장로가 시무사임을 원하면 사임서를 제출하여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무장로가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을지라도 헌법정치 제19조에 근거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헌법시행규정 제14조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제1항에 근거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게시판에만 게시할 경우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에 근거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장로 1인에 대한 당회원권이 정지된다. 따라서 헌법정치 제65조에 근거 위의 절차를 거쳐 시무장로가 1인도 없는 경우, 그 시점부터 1년 후 첫 노회부터 폐당회가 되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1명의 장로가 계속 존재하므로 3년 후 첫 노회부터 폐당회가 된다. 이에 A목사의 위임목사 기간은 헌법정치 제27조 제1항에 근거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담임목사가 되므로 위의 시점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하면 A목사를 담임목사로 해석하여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제직회의 안건으로 받아 부결시킨 것은 위법이다.

질의내용 : 헌법 제2장 정치 제36조 2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한 헌법해석을 질의합니다.

1. 위임목사 기간에 대한 질의

1) A목사는 2015년 11월 노회에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1월 시무장로 1인이 은퇴하였고, 2016년 6월 시무장로 1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교회 결석이 이어졌으나 과거 결석 후 재출석한 전례를 미루어 2016년까지 시무장로로 주보에 표기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7년부터는 시무장로로 주보에 표기하지 않았으나 시무사임절차는 밟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위의 사정에 따라 A목사는 2017년 4월 노회가 열리기 전 3월경에 해당 2인 장로의 노회록 표기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간사의 업무실수로 2017년 4월 노회 회의록에 그 이름이 등재되었습니다.

3) 그 이후 교회에서 발생한 분규로 인해 A목사의 위임목사의 자격이 없다 해석한 A목사 반대 교인 측에서는 A목사를 담임목사로 해석하여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제직회의 안건으로 받아 부결시켰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교회의 폐당회가 되는 시점과 이에 따른 A목사의 위임목사 기간은 언제까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35. 대리당회장 파송

경기노회장 마두락 목사가 제출한 “경기노회 제67-041호 / 헌법 질의의 건(2018.3.12.)”

해석 :

질의 1),2),3) :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 제1항에 근거 “헌법 정치 제67조 3항 당회장의 유고 및 기타 사정의 경우에는 결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노회 또는 폐회 중의 임원회는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다만 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당회장 유고 시 대리당회장] 제4항에 근거 “현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지 않고 당회장이 행방불명, 질병, 출국이나 여행 등 장기 출타나, 고의적으로 당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당회에 불참하여 6개월 이상 당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당회원 과반수가 합의(연명)하여 노회 또는 폐회 중 임원회에 청원하여 파송 받은 대리당회장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근거 분규중인 교회에 수습전권위원회에 의해 당회장권이 정지되었을 경우, 노회 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그러나 당회장이 시무중임에도 장로 당회원들이 당회장 없이 당회를 개최하거나 진행하여 시무하지 못하도록 결의한 것은 위법이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정치 제10장 67조 3항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 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에서 현 교회에 위임목사로 시무 중에 있는 당회장이 있을 경우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장로 당회원들이 당회장 모르게 목사를 시무하지 못하게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위 건에 의거 당회장이 자리를 이탈한 상태에서 장로 당회원들만의 결의가 가능한지 여부

36. 전도목사 청빙

전남노회 국내선교부장 김용범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청원서(2018.3.19.)” 건

해석 :

질의1), 질의4) 헌법정치 제27조 제4항에 근거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 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의 정한 바에 의한다. 따라서 시무처가 전남노회 구역여부에 관계없이 노회에서 정한다. 타 노회소속 목사의 경우 해당 노회에서 사임서 처리를 전제로 전도목사 청빙을 할 수 있다.

질의2), 질의3) 헌법정치 제27조 제4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2에 근거하여 헌법정치 제6-1호 서식에 의거 정기노회일 때는 국내선교부가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받아야 하고, 노회 폐회 중일 때에는 헌법정치 제29조 제3항 근거 임원회에서 할 수 없다.

질의5) 헌법정치 제30조에 근거하여 노회는 절차에 따라 시무사임청원을 처리하고 이명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절차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내에 이명증서를 발부하지 않는다면 헌법시행규정 제12조에 근거하여 이명증서를 발부하지 않은 것을 부전지나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경우는 바로 이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질의내용 : 전도목사 청빙 등의 건

질의1) 현재 전남노회 전도처 전도목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담임목회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광주동노희 소재의 “사단법인 빛고을선교회”의 전도목사청빙을 받고 시무 처를 변경하는 청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① ‘헌법 제2편·제4장·제27조·제4항, 헌법시행규정 제16 조의2’에 의거하여 허락하여 주는 것이 적법합니까?

② 행여 정치부나 임원회에서 타 노회 구역이라고 반대할 수 있습니까?

질의2) 정기노회일 때, 국내선교부가 전도목사파송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① 국내선교부의 청원 안건으로 제출하는 것입니까?

② 정치부의 청원 안건으로 제출하는 것입니까?

질의3) 노회가 폐회중일 때, 국내선교부가 전도목사파송요청서를 제출하는 방

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① 전남노회에 전도목사파송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② 만일 전남노회에 제출할 수가 있다면 정치부의 결의와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③ 아니면 임원회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질의4) 타 노회소속 목사가 해당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사고노회이기 때문에 사임서 처리가 안 된 목사인데 전남노회구역에 교회를 개척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의 질의입니다.

① 국내선교부가 전남노회에 전도목사파송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② 전남노회가 전도목사파송요청을 허락하면 해당노회에 이명청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③ 만일 전남노회가 불허(不許)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질의5) 타 노회소속 목사가 해당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사고노회이기 때문에 사임처리가 안 된 목사인데 전남노회구역에 교회를 개척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의 질의입니다.

① 국내선교부가 전남노회에 전도목사파송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② 전남노회가 전도목사파송요청을 허락하면 해당노회에 이명청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③ 만일 전남노회가 불허(不許)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④ 해당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사고노회가 되어 사임처리가 지연되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37. 당회 조직 조건

부산노회장 양봉호 목사가 제출한 “부노 제185-83호 / 헌법 질의(2018.3.21.)” 건

해석 : 헌법정치 제64조(당회의 조직) 제1항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에 의거 당회를 구성할 수 없다. (참고: 제99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46. 당회의 조직)

질의내용 : 본 노회 장로고시 청원서 중 장로 최초 선택 청원 허락을 받아 담임목사 남편 1인이 피택되어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바 당회 구성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38. 가중처벌 의뢰 절차

효성교회 원로목사 이창재 목사가 제출한 “부전지(총회규칙질의)(2018.2.20)”의 질의 2

번, 3번 건

해석 :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8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서울남노회가 가중처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부전지를 첨부하여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없다.

질의3) 총회의 공식절차 및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 판결문은 총회의 공식문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총회임원회가 판결문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다.

질의내용 : 질의2) 서울남노회는 종회 저11재심판국의 판결떠1100-10행정)에 대하여 사회법정에 판결무효확인등(2017가합507781)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입니다. 소속치리회가 재판당사자가 되어 가중처벌을 결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I총회 제1재심재판국의 판결(제100-10행정)을 받은 본 교회가 부전지를 부쳐서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법시행규정 제87조 3항은 “피고인이 시벌을 불이행할 시는 소속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고, 그 재판국은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판결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고, 이 가중처벌에 대하여 이의신청, 상소 등 불복할 수 없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속치리회가 재판당사자가 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소속치리회인 서울남노회가 총회 제1재심재판국의 판결(제100-10행정)에 대하여 사회법정에 판결무효확인등(2017가합507781)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로써, 재판당사자가 되어 가중처벌을 결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 제1재심재판국 판결(제100-10행정)을 받은 본 교회가 부전지를 부쳐서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3) 총회 제1재심재판국의 판결(제100-10-1)이 제102회기 총회임원회의 행정상의 공문(제102-132호)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회 제1재심재판국은 2017.1.19.“서울남노회의 전중식 효성교회 위임목사 청빙허락(2015.08.04.)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효성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제100-10행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 4. 12. 총회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권징 제120조에 의하여 판결을 집행하고 제142조에 의하여 소속 치리회장이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 공시하고 또는 지상 공고하여 시벌하기 바랍니다.”라고 판결집행문(예장총 제101-772호)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남노회와 전중식은 총회 제1재심재판국의 판결(제100-10행정)

총회장 판결집행문(예장총 제101-772호)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총회 제1재심재판국은 2017. 9. 15. “전중식을 가중처벌하여 면직 출교에 처한다. 이 사건은 이의신청, 상소 등 불복할 수 없다. (헌법시행규정 제87조 3항)”고 판결(제100-10-1)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금 번 제102회 총회석상에서 총대들에게 보고하여 통과하였습니다. (총회보고내용 녹취록 참조)

하지만 제102회기 총회임원회(제102-132호)는 ① 총회 행정지원본부에서 총회 직인을 찍어 공식문서로 발송한 사실이 없습니다. ② 총회 석상에서 총대들에게 공식 보고된 바가 없으며 총회 회의록에도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③ 총회임원회가 여러 차례 반려한 건을 총회 제1재심재판국이 총회 임원회 결의 없이 판결한 것은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87조 3항과 총회임원회 안건처리 지침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등의 이유로 총회장 판결집행문을 내려 보낼 수 없다고 공문을 보내어 왔습니다.

이에 본 교회는 2017. 9. 28. ‘총회장 판결집행문 및 실행감독 요청’을 하였고, 이어서 2017. 10. 17. ‘총회 제1재심재판국 총회보고내용 녹취록 제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기 총회임원회(제102-132호)의 공문에 대하여 2017. 11. 8. ‘청원회신(예장총 제102-132호)에 대한 법적조치 예고장’을 제출하면서 총회임원회의 행정 처리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항의한바 있습니다. 총회 헌법권징 제34조 제2항은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제120조 제2항은 “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질의합니다. 총회 제1재심재판국의 판결(제100-10-1)이 제102회기 총회임원회의 행정상의 공문(제102-132호)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9. 부서장 보직 해임 적법 여부

남원노회장이 제출한 “남원노회 제57-12호 / 동북교회 직원선거에 관한 총회장님께 질의서 경유 전달(2017.12.21)”의 질의1번과 질의2번의 4)항 건

해석 :

질의1) 선거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위로 말미암아, 동북교회 당회에서 선임장로, 선거관리위원장, 찬양위원장, 노인대학학장의 직분에 대해서 보직 해임한 것은 헌법권징 제5조 제3항에 의한 책벌 사항이 아니고, 교회 감독기관인 당회의 직무사항이므로 적법하다.

질의2) 토론이나 투표 당사자를 퇴장시키고 토론하거나 투표하는 것은 당회의 결의와 당회의 결의에 대한 당사자의 수용으로 가능하며, 헌법정치 제44조 제2항의 근거

과반수란 찬성 과반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15명 중 7명 찬성은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 또한 원로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는 헌법정치 제90조 제3항에 근거 “당회의 결의로 소집”하고, 공동의회 결의사항은 동법 제5항에 근거 “당회가 제시한 사항”을 결의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공동의회에 “원로장로 추대 안건”상정여부를 위한 당회 개최 및 당회 결의에 따라 부결된 사항을 공동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질의내용 : 금 번 남원동북교회 직원선거 과정에 있었던 한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는1995.11.4.부터 시무장로로 동북교회를 선기는 송진한 장로입니다. 당시 남원동북교회 노인대학장을 맡고 있었으며 지난 9월 본 교회의 직원선거를 실시해서 1,2차에 걸쳐 장로 3명, 안수집사 14면, 권사 22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최선을 다해 선거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한사람이라도 더 피택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한 열정으로 교인들에게 선거를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투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거 기간 중에 선거를 독려하며 홍보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로 인하여 본 교회 당회원 몇몇 분이 저의 선거 홍보 및 안내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이의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진위를 알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동북노인대학장 송진한 장로는 1차 선거 후 9월 12일 오전 11시경 노인대학어르신들이 1차 선거에 참여하신부들을 묻자, 5명이 참여 했다고 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2차 선거는 언제하고 노인대학 직원은 누가 2차 선거 후보가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여 2017년도 동북노인대학 편성표에 나와 있는 후보자들의 성명에 ○표를 한 유인물을 복사하여 궁금하신 분에게 나누워 준 후 입후보자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누구를 찍으라 찍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고 단순하게 2차 투표에 많이 참여하라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회 게시판 공고문에 후보자들의 명단이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투표하면 좋겠다고 안내한 뒤에 유인물을 회수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송진한 장로 본인은 절대불법선거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적법한 홍보 및 안내라고 누차 주장했으나 동북교회 당회에서는 불법선거행위라고 규정하고 송진한 장로의 모든 직분(선임장로, 선거관리위원장, 찬양위원장, 노인대학위원장)을 박탈하였습니다. 동북교회는 헌법에 명시된 권징의 재판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당회의 결정이 절차와 방법 및 결정이 모두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2) 2017년 12월 3일, 12월 정기당회에서 송진한 장로 원로장로추대안건을 상정한 뒤 토론과정에서 당사자(송진한)를 배제(퇴장), 은퇴원로장로들을 배제(퇴장)하고 원로장로 추대권을 무기명투표 한 바, 찬성 7, 반대 5, 무효 3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당회는 무효표가 반대표로 봐야 한다고 하며 본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1) 대상자(송진한)를 퇴장시킨 후 토론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안건 투표에 당사자(송진한)를 배제(퇴장)시킨 행위가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3) 안건투표결과 무효표를 반대표로 간주하여 부결시킨 행위가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찬반결과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란 기권과 무효표를 제외하고 찬반을 결정한다는 선관위와 국회사무처와 변호사의 해석임.)
4) 원로장로 추대결정은 헌법 제6장 제44조에 의하면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당회에서 공동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고 당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헌법의 규정에 맞다고 할 수 있는지요?

※ 참고 : 2017.10.22. 13:00 긴급당회를 소집하여 송진한 장로가 불법선거와 관련 질의서를 총회에 질의하였으므로 대책위원회를 원로장로 2명, 시무장로 3명으로 구성하여 송진한 장로에게 당일 당회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사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며 수차례 철회하라고 회유하였습니다. 송진한은 그 약속을 믿고 교회 평화와 화목을 위하여 2017.10.31. 철회하였으나 철회당시 약속했던 일들이 번복되어 원로장로까지 부결시키고 2017.12.17. 19:00 은퇴식을 하였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40. 원로장로 추대

충북노회장이 제출한 “대충노 제137-29호 / 원로장로 추대 관련된 유·무효 여부(2018.4.2.)” 건

해석 :

질의1), 질의2) 원로장로 추대는 헌법정치 제44조에 근거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이다. 원로장로는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한다. 원로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은 헌법정치 제90조 제3항에 근거 “당

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개회한다.

당회록에 “원로장로 추대”를 위해 공동의회를 개회하겠다고 결의한 사실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의회 소집(2006.12.24.)을 당회가 결의(2006.12.14.)했고, 당회 후 헌법정치 제90조 제2항 2호에 근거 “원로장로 추대” 라는 안건을 주보에 공고(2006.12.17.) 하였으며, 당시 공동의회 소집 및 안건 상정, 결의(2006.12.24.)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원로장로 추대(2006.12.31.)까지 하였다면 이는 헌법정치 제90조 제3항에 따라 당시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목적이 “원로장로 추대”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히 당회록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로장로 추대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 : 조기은퇴 원로장로 관련 질의

질의1) 조기은퇴 및 원로장로 추대와 관련하여 헌법 제 규정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소집하는 공동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원로장로 추대를 11년 전 하였습니다. 다만, 당회록에 ‘원로장로 추대 결의’ 라는 문구 기록이 없다는 사유로 원로장로 추대가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질의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6장 장로 제44조 원로장로 당회 제68조 당회의 직무, 제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 공동의회, 제 규정과 총회헌법사례집 100회기 71번 등에서 원로장로추대는 당회의 결의 후 공동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결의 추대하여야 함에도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공동의회에 원로장로 추대 건을 상정하여 결의하였다면 이는 원로장로 추대가 무효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지?

◎ 조기은퇴 원로장로 현황

1) 장로기간 : 24년 1개월 16일

- (장로장립 : 1982.11.16, 장로은퇴 : 2006.12.31)

2) 당회 결의(당회 회의록) : 2006년 12월 14일

- 본인 의사 에 따라 은퇴 결정 수용
- 공동의회 일시 : 2006 년 12월 24일(일)
- 은퇴식 일시 : 2006년 12월 31일(일), 오후예배

3) 공동의회 추대(공동회의록) : 2006년 12월 24일

- 원로장로 추대의 건 상정하여 무기명 투표 결과 추대 가결

4) 당회 결의(당회 회의록) : 2006년 12월 24일

- 은퇴식 개최: 2006년 12월 31일(일), 오후 찬양예배 후

5) 원로장로 추대 예식 : 2006년 12월 31일

※ 현재 원로장로로서 본 교회를 섬기고 있음(은퇴 후 11년 경과)

◎ 질의 사유

1) 원로장로 추대는 헌법 제 규정에 따라 “조기은퇴와 원로장로 추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당회 결의 및 공동의회 결의가 있었고, 원로장로 추대 예식도 있었음,

2) 다만, 당회 회의록에 ‘원로장로 추대’라는 문구 기록이 없다는 사유로 인하여 원로장로 추대가 무효라는 견해가 있음.

3) 이와 관련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152조, 제157조, 제164조 규정 등이 있지만, 부득이 교회의 평화를 위해 위와 같은 견해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함.

◎ 원로장로(조기은퇴장로)에 관한 건

1) 조기 은퇴장로 수용 결의 개요

- 당회결의 : 2006. 12. 14.

- 결의내용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은퇴결정 수용하기로 결정

2) 공동의회 2006. 12. 24.

3) 은퇴식 2006. 12. 31.(일) 오후예배

41. 특별사면대상 면직 해벌자의 복직 절차

서울서북노회장이 제출한 “서북노 제69-59호 / 특별 사면 대상자의 노회 가입에 관한 질의 건(2018.4.4.)”

해석 :

질의1), 질의2) 헌법정치 제74조에 근거 목사는 노회 소속으로 목사직이 면직되었다가 사면(해벌)될 경우 헌법정치 제80조 제12항 근거 소속 노회로 복직됨이 원칙이다. 이후 타 노회로 가입하고자 하면 헌법정치 제30조에 근거 이명 등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타 노회로 가입함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 평북노회에서 면직 책벌 후에, 100회기 총회에서 특별 사면된 목회자와 교회가 본 노회에 가입을 청원한 건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와 합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박병문 목사는 평북노회 역촌동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하던 중에 역촌동 교회의 원로목사인 이규승 목사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에, 2010년 7월 30일 평북노회로부터 면직의 책벌을 받았습니다.

2) 면직의 책벌을 받은 박병문 목사는 지지하는 교인들과 함께 백석측 교단에 가입하여 사역을 하던 중에, 2016년 9월 19일(문서번호 예장총 제100-1403호) 사면확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3) 이후 박병문 목사는 본 서울서북노회에 “은평온누리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입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명관계가 불분명하여 노회의 가입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4) 면직 당시 소속노회였던 평북노회에서 갈등 관계에 잇던 역촌동 교회 측과 원만하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만 전달 받았습니다. 박병문 목사가 역촌동 교회의 원로목사인 이규승 목사를 찾아가 사과를 하고 또 화해를 확인하는 문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책벌 후 해벌된 목사와 교회가 노회를 가입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질의1) 면직 당시 소속노회로 복직한 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합법적인 것입니까?

질의2) 면직 당시 소속노회와 무관하게 지역 노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이명의 절차가 없이, 교회가 노회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아서 노회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42. 대리당회장의 권한

전남노회 건강한교회 박형대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청원서(2018.4.2.)” 건과 전남노회 박형대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청원서(2018.4.11.)”건은 병합하여 해석

해석 :

질의I-1~2), 질의II-1~4) 당회록에 대한 진위여부, 정상적인 당회를 판단하는 것은 재판국이 증거 유무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판결할 사항이다.

질의I-3~4, 9) 헌법정치 제67조 제3항, 제5항에 근거하여 대리당회장을 선임하였을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30조에 근거하여 대리당회장이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휴무기간은 대리당회장이 당회장 권한을 행사한다.

질의I-5~8) 목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유사한 입장이 아니기에 공무원법의 준용과는 별개다.

질의I-10~12), 질의II-5~9) 당회장이 휴무기간중일 때 헌법정치 제67조 제3항, 제5항에 근거하여 대리당회장을 선임하였을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30조에 근거하여 대리당회장이 당회장 권한을 행사한다.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고 권징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시행규정 제30조 제3항에 근거 사회권이 있다. 따라서 헌법시행규정 제72조에 근거하여 당회의 결의를 거쳐 위탁재판을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휴무중인 당

회장이 위탁재판을 청원하는 것은 위법하다. 〈제101회기 119번 질의 4번. 참조〉

질의I-13~14), 질의II-10~11) 당회서기의 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시행규정 제89조 제2항(구 헌법시행규정 제90조 제2항)에 의거 치리회장의 직인이 날인되었을 경우에는 유효하다.”〈제101회기 119번 질의 3번. 참조〉

질의내용 : I. 전남노회 건강한교회 박형대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청원서(2018.3.21.)”

질의1) 헌법 제2편 제10장 제70조에 의거하여 당회록은 회집일시, 장소, 회원, 결의안건 등이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당회회의록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별지1은 나주교회 제186회 당회 회의록입니까?

질의2) 헌법 제2편 제10장 제70조에 의거하여 당회록이 회집일시, 장소, 회원, 결의안건 등이 빠짐없이 기록하지 않고 당회장과 당회서기가 결의사항을 임의로 조작하여 편집한 것은 위·변조된 당회회의록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별지3은 나주교회 제186회 위·변조된 당회회의록입니까? 또한 제186회 위·변조된 당회회의록은 헌법 권징 제3조 13항의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질의3) 나주교회가 담임목사와 성도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당회장이 1년 이내에 조건부 사임인 안식년(2017.02.01.~2018.01.31.)을 갖기로 당회에서 결의하고 당회의 권한을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선정하여 전남노회에 별지5의 ‘나주교회 대리당회장 선정보고’를 하였다면 휴무기간 동안에 공석인 상태에서 당회의 운영에 대한 권한대행은 대리당회장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만일 부정하면 누가 당회장 권한대행을 하는 것입니까?

질의4) 나주교회 담임목사와 성도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당회장이 1년 이내에 조건부 사임인 안식년(2017.02.01.~2018.01.31.)을 갖기로 당회에서 결의하고 2017년 01월 31일 전남노회에 별지6의 ‘목사휴무청원’을 제출하여 임원회의에서 허락(2017.02.07.)을 받았다면 당회장의 공석인 안식년 기간 동안에 당회장은 행정권이 일지정지 되고 당회장이 위임한 대리당회장에게 권한대행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만일 부정하면 누가 당회장 권한대행을 하는 것입니까?

질의5) 나주교회 담임목사는 전남노회에 별지6의 ‘목사휴무청원’을 제출하면서 헌법 제2편 제5장 제36조 1항 ③의 ‘신체·정신상의 휴양을 요할 때’를 인용하여 휴무사유를 ‘심신의 휴양을 위해’ 라고 특정하였는데

이것은 공문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를 준용한 것입니까?

질의6) 헌법 제2편 제5장 제36조 2항의 “휴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을 허락할 수 있으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공무원법 제72조 제1호의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를 준용한 것입니까?

질의7) 헌법 제2편 제5장 제36조의 목사가 안식년으로 1년 동안 휴무를 할 때는 공무원법 제73조 제1항의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휴무 중인 담임목사는 당회장의 신분은 보유하나 당회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와 같은 의미입니까?

질의8) 헌법 제2편 제5장 제36조의 “목사의 휴무”와 공무원법 제71조의 “공무원의 휴직”이란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만일 부정하면 어떠한 점이 다릅니까?

질의9) 당회장(담임목사)이 헌법 제2편 제5장 제36조의 ‘목사의 휴무’ 허락을 노회에서 받고 안식년 기간(2017.2.1.~2018.1.31)중에 당회장(담임목사)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질의10) 헌법 제2편 제5장 제36조의 “목사의 휴무” 기간 중에 당회장(담임목사)이 당회의 결의도 없이 별지8의 ‘위탁재판청원서’를 전남노회에 임의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만일 부정하면 원인무효에 해당합니까?

질의11) 헌법 제2편 제5장 제36조의 “목사의 휴무” 기간 중에 당회장(담임목사)이 대리당회장의 사회로 인한 당회의 결의도 없이 ‘별지8’의 ‘위탁재판청원서’를 전남노회에 임의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만일 부정하면 원인무효에 해당합니까?

질의12) 헌법 제2편 제5장 제36조의 “목사의 휴무” 기간 중에 당회장(담임목사)이 별지8의‘위탁재판청원서’를 사전에 당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전남노회에 임의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만일 부정하면 원인무효에 해당합니까?

질의13) 헌법 제2편 제5장 제36조의 “목사의 휴무” 기간 중에 당회장(담임목사)이 ‘별지8’의 ‘위탁재판청원서’를 전남노회에 임의로 제출하면서 당회서기 날인도 없이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만일 부정하면 원임무

효에 해당합니까?

질의14) 헌법 제2편 제5장 제36조의 “목사의 휴무” 기간 중에 당회장(담임목사)이 ‘별지8’의 ‘위탁재판청원서’를 전남노회에 임의로 제출하기 위하여 당회서기 날인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자 시무장로 1인, 은퇴장로 1인의 공동명의로 당회서기에게 별지9의 내용증명으로 서명날인을 요청할 자격이 있습니까? 만일 부정하면 원인무효에 해당합니까?

Ⅱ. 전남노회 박형대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청원서(2018.4.11.)”

질의1) 나주교회가 매월1회 이상 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의 사회로 정기당회나 임시당회를 개최하고 있으면 정상적인 당회입니까?

질의2) 나주교회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당회가 소집되었기 때문에 나주교회는 정상적인 당회입니까?

질의3) 나주교회는 당회장이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직접 지명하여 위임하고 1년 동안의 안식년(2017.01.31.~2018.01.31.)에 들어간 후에 대리당회장의 사회로 정상적인 당회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나주교회는 사고교회가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질의4) 나주교회는 일부 분쟁과 갈등이 있었지만 정상적인 당회를 개회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당회입니까?

질의5) 대리당회장은 권징 권은 행사할 수 없으나 위탁재판 청원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리당회장의 사회로 인한 당회의 결의 없이 당회장 직권으로 2017.07.07. 전남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한 것은 위헌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질의6) 안식년 기간(2017.01.31.~2018.01.31.) 중인 나주교회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통하여 당회를 소집한 후에 위탁재판을 청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당회장 직권으로 2017.07.07. 전남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한 것은 위헌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질의7) 안식년 기간(2017.01.31.~2018.01.31.) 중인 나주교회 당회장은 대리당회장을 통하여 당회 회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회를 회집하지 않고 당회장 직권으로 2017.07.07. 전남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한 것은 위헌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질의8) 안식년 기간(2017.01.31.~2018.01.31.) 중인 나주교회 당회장은 대리당회장을 통하여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당회장 직권으로 2017.07.07. 전남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한 것은 위헌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질의9) 안식년 기간(2017.01.31.~2018.01.31.) 중인 나주교회 당회장은 당회장 직권으로 2017.07.07. 전남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하면서 사전에 당회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질의10) 안식년 기간(2017.01.31.~2018.01.31.) 중인 나주교회 당회장은 당회장 직권으로 2017.07.07. 전남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하면서 "위탁재판청원서"에 당회서기 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질의11) 안식년 기간(2017.01.31.~2018.01.31.) 중인 나주교회 당회장은 당회장 직권으로 2017.07.07. 전남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하면서 "위탁재판청원서"에 당회서기 날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나주교회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령문서인 "내용증명 통지"를 붙임으로 한 것은 위헌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43. 항존직의 자격

포항남노회장 이형춘 목사가 제출한 "포남노 제96-01호 / 헌법 해석 질의 요청 (2018.4.11.)" 건

해석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9항에 근거 항존직의 자격이 원인 무효로 확인되었을 때에 당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되었음을 통지하고 당회에 보고한 후 항존직 명부에서 삭제한다. 이는 헌법권징 제5조에 의한 권징(책벌)이 아니며 항존직 자격 자체가 원인 무효 되었기에 취임이 취소된 것이다. 〈제101회기총회 헌법해석. 105. 장로의 자격. 참조〉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9항에 근거 원인 무효 되었기에 장로가 아니고 장로로 취임하고자 할 때는 헌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인무효로 장로 취임이 자동 해직된 장로는 제직회원으로 임명받아야 한다.

질의3) '장로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란 헌법권징 제3조 및 이에 준하는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 헌법정치 제90조 제2항 및 5항에 근거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고 회의를 해야 한다. 다만 공동의회 참석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 안건은 추가 할 수 있으나 반대가 있을 경우 다룰 수 없고 새로운 안건에 대해서 다시 당회결의 및 광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본 교회는 예장 총 제101-1233호의 헌법해석 통보에 따라 당시 시무장로였던 H장로에 대해 헌법 시행규정 제26조 직원선택 9항에 의거

원인무효로 자동해적 되었음을 당회장이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당회에 보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교인 중 일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시행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총회 헌법해석 통보에 따른 시행과 관계없이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 총칙 제6조 [책벌의 원칙] 2항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2) 본 교회는 타 교단이나 본 교단 교회에서 본 교회로 이명 증서를 접수하고 당회로부터 이명이 허락된 전입장로, 전입안수집사, 전입권사는 제직회 회원이 되는지? 이명증서가 접수되지 않고, 당회의 이명이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직회 회원이 되는 것인지? 에 관하여 포항남노회에 질의하였고(포중교 17-12-18호) 포항남노회는 헌법해석 질의 요청에 관하여 포남노제 95-11호(별첨)의 내용으로 해석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타 교회에서 전입하여 본 교회 전입 장로로 취임하여 시무 장로가 된 후 취임 취소된 장로의 직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시무 해임된 장로는 제직회 회원은 되는 것인지?

질의3) 총회 헌법 제2편 제6장 제43조(장로의 사임 및 사적) 2항의 '장로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처리한다.'는 내용에 있어 '장로가 교회 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당회가 장로의 권고사임을 결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의회 시 일부 교인들의 요청으로 시무사임을 권고 할 수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44.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의 기본권 침해 소지 여부

서울북노회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위헌적 헌법에 대한 효력이 범위에 대한 질의의 건(2017.10.16.)" 과 서울북노회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헌법 유권해석 질의 및 추가자료(2017.10.18.)" 건은 병합하여 해석

해석 : 우리 교단 헌법은 제1편 교리, 제2편 정치, 제3편 권징, 제4편 예배와 예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이 내용적으로 국가 민법적 요소(정치편)와 형사소송법적 요소(권징편) 등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으로서 역할보다 법률적 역할이기에 "제1편 교리"만을 헌법으로 보고 위헌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나 총회 헌법(제1편~제4편)은 규범적, 형식적으로 "헌법"으로 구분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기에 총회 헌법으로서 가치와 권위를 가진다.

헌법위원회에서 “합헌, 위헌의 판단”은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하위법인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여 “합헌과 위헌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질의에서 “제101회기 헌법위원회 위헌심판 결정문”이라고 하였으나, 총회 헌법위원회는 재판의 일종인 “위헌심판” 제도가 없고, “합헌과 위헌의 판단”이 있을 뿐이다.

헌법정치 제28조 제6항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었다고 하여도 헌법위원회가 헌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만약 위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헌법이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을 위헌이라고 하는 모순이 된다.

또한 질의에서 헌법위원회 해석을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에 의거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 등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뿐, 총회와 노회가 지체 없이 시행할 결정 사안은 아니다.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이 헌법 정치 제2조 교회의 자유와 헌법 정치 제28조 제1항, 제2항 성도의 권리 등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제101회기 헌법위원회 해석(95번)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해석(95번)은 위헌이라거나,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이는 “침해의 혐의”, “침해의 가능성” 즉 개연성이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는 헌법이 헌법 자체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 더 연구하고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 등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정치 제28조 제6항 1호, 2호에 대한 효력여부에 대해서는 기 해석 통보한대로(예장총 제102-242호/2017/11.15) 개정 전까지 효력은 유지된다.

질의내용 : 1. 〈서울북노회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위헌적 헌법에 대한 효력이 범위에 대한 질의의 건(2017.10.16.)”〉 건

제101회기 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28조 6항에 대한 위헌 심의청원에 대하여 “정치 제28조 6항은 장로교신조 및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헌법에 위배되며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제101회 헌법위원회 위헌심판 결정문 1, 2)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회는 헌법시행규정 제36조 6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아직 이와 같은 총회의 결정을 각 노회에 통보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을 개정할 때까지 현 헌법 조문이 효력을 가진다.”는 등 개인적인 주

장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제102회 총회 시 헌법위원회 보고시간에 총회장도 “헌법위원회 보고는 임원회가 이미 보고를 받았고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하는 것이지 총회에서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총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총회장의 발언은 헌법시행규정 제33조 6항과 제92회 총회 헌법위원회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적법 절차에 대한 입장으로 사료됩니다.(헌법시행규정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즉시 시행해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제101회 헌법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제101회기 헌법위원회 유권해석)

또한 제92회기 총회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에 근거하면 총회(헌법위원회)의 결정은 행정 및 집행명령으로 즉시 시행해야 할 사항임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헌법위원회의 결정과 총회장의 인식은 제101회 헌법위원회가 결의한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제92회총회헌법위원회 유권해석)

아울러 제101회기 총회 헌법위원장도 개인적인 소견이기는 하지만 “위헌으로 드러난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은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제101회기 헌법위원장 고백인 목사 의견서)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위원회의 결정을 ‘헌법불합치’로 이름하고 결정이 나는 순간부터 해당 법조문은 효력이 상실된다고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헌법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려하면 헌법개정시한을 결정문에 적시하여 그 기한 내에 개정을 하도록 하고 개정시한을 넘기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판결사례)

그러므로 위헌판단이 이루어진 정치 제28조 6항은 개정시한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위원회가 결의한 날로부터 해당 헌법 조문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제102회 헌법위원회가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반하는 결정을 한다면 현행 헌법시행규정 제36조와 제92회 헌법유권해석은 사문화될 것이며 동시에 이 조문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해 온 각종 재판 사건들은 모두 재심대상이 될 것이며, 행정조치들은 번복 되어야 하는 등 총회는 큰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102회기 헌법위원회가 정치적 입장이 아닌 교단의 준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통일성 있는 순수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북노회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헌법 유권해석 질의 및 추가자료(2017.10.18.)”〉

본인은 앞서 제출한 헌법유권해석질의 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과 관련하며 헌법시행규정 부칙 7항을 근거로 위헌조문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주장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본인의 소견을 피력합니다.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7조는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 2007.6.28. 공포(제정)”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적용범위]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에 근거하여 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을 하위개념인 총회 결의로 변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의 위헌심판은 총회결의로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총회결의로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은 위헌으로 판단된 조문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102회 총회는 헌법 정치 제28조 6항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효력이 상실된 법조문을 현실에 적용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7조를 근거로 제101회 헌법위원회의 위헌심판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규정이 갖는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종교단체의 주체적이고 선언적 의미를 갖기는 하지만 구속력은 없는 조문입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보면 제93회기 헌법위원회 유권해석 중

『4. 부목사 연임 청원 및 투표방식

서울강남노회 소망교회 당회장 김지철 목사와 이기용 장로가 각각 제출한

'부목사 계속 청원 및 무임 목사에 관련한 총회 헌법 유권해석 요청(2008.10.27., 2008.9.19.)' 건에 대하여는 "헌법 정치 제27조 2항, 제28조 3항, 제29조, 제66조, 제69조, 헌법시행규정 제19조 1항에 의거 정상적으로 당회가 이루어졌을 때 부목사 연임 청원이 부결되었으면 무임 목사가 되지만,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목사로서의 시무는 자동 연장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사고당회의 경우 부목사의 임기는 연임청원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임기가 연장된다는 의미의 해석이었습니다. 물론 헌법에 위배되는 해석이었지요.

이 해석을 근거로 서울강남노회는 부목사 연임청원을 하지 않은 소망교회 부목사 10명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당시 헌법유권해석 질의자였던 소망교회 이기용 장로 등은 '헌법위원회 유권해석 무효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고 법원은 '총회헌법위원회의 해석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위법한 유권해석은 정치적 목적에서 총회 부총회장에 입후보한 당시 헌법위원장이 서울강남노회 총대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내린 위법한 해석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 헌법위원회는 유권해석에서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려고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 번 본인이 제출한 유권해석 질의에 대하여 여론이나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법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45. 노회장 결원 시 직전 노회장의 노회 소집 권한

서울동남노회 임은빈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 질의서(2018.3.19.)" 건

해석 :

질의1) 서울동남노회에 대한 총회재판국〈사건번호: 예총재판국 사건 제102-09호, 사건명: 서울동남노회 태동교회 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 선거관리위원장(김충수 목사, 이대희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선거무효소송)"〉의 판결 결과 주문에 의하면 "2017.10.24.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실시한 노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하였다. 만약 노회장이 집행부를 임명했다면 집행부 모두 무효가 되지만 집행부가 선거에 의한 것이라면 무효가 아니다. 따라서 임시노회 소집은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에 근거 노회장 선거 무효로 노회장이 적법하게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직전노회장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 직전노

회장이 노회를 소집하면 된다.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 “치리회의 사고 여부는 노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치리회 임원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개선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에 근거하여 후임 노회장 선출여부로 판단한다.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7항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되며 사고 노회가 되는 시점의 노회 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는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재판(책벌)에 의하지 않고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헌법정치 제74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분쟁의 당사자 및 피해자의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

질의내용 : 질의자는 서울동남노회 목사회원 순번 우선자(1번)이자 현직 전임 노회장들 중 최고 선임자로서 본 노회 김수원 전 부노회장이 제기한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의 소’에서 원고(김수원 목사)의 주장이 인용되면서 승소하였는바(2018.3.13.), 노회의 정상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임시노회를 준비하도록 돕기 위하여 전임(증경) 노회장 모임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다음의 사안에 대해 질의를 하오니 혜량하여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선거무효가 인용되면서 현 집행부(임원회)의 직권이 상실된 경우, 폐회 중 임시노회의 소집권자는 누가 되는지요?

질의2) 혹여 이번의 선거무효의 소에서 패소한 측에서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고 새로운 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임시노회마저 보이콧함으로써 노회를 사고노회로 만들었을 경우, 선거무효의 소에서 헌의위원장으로서 행한 행정행위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어 승소한 원고 김수원 목사는 사고노회가 되는 시점에서 ‘분쟁의 당사자’인지 ‘분쟁의 피해자’인지요

46. 총회 헌법개정 절차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83 / 헌법개정 절차 관련 헌법 질의(2018.4.17.)” 건

해석 :

질의1~3) 헌법개정절차는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9항에 근거하여 “헌법위원회 혹은 헌법개정위원회가 총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제10항에 근거 헌법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이 총회에 상정되면 헌법개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 헌법정치 제104조 제3항에 근거 교리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년간 연구 후에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헌법개정위원회에서는 총회에서 결의되어 연구토록한 제102회기 헌법개정(안)

외에 별도로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 없다. 총회에서 위임되지 않은 헌법정치 제28조 제6항에 대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 조항은 헌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제103회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질의내용 : 1. 총회 헌법위원회가 제101회기와 이번 제102회기에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한 바 있습니다.

가. 제101회기 해석 :

"서울북노회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헌법 정치 제28조 6항, 권징 제57조 2항, 2항-4, 3항, 4항에 대한 위헌, 무효판단 청원서 건(2017.5.16.)"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목사 청빙에 관해 장로교는 성도들의 권리이므로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 제1조(양심의 자유), 제2조(교회의 자유)에 입각하여 교단이 교회의 자유(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장로교 원칙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장로교는 감독정치가 아니라 대의정치와 회중정치에 근거한 교파이기 때문에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공동의회의 결정으로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가 인준하고 있다. 그럼에도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본 교단이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제1편(교리) 제4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 제2조(교회의 자유), 제4조(교회의 직원),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5항 ①호(당회가 제시한 사항)를 위배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1항, 제2항, 제3항과 충돌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 제2편(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제102회기 해석 :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제출한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6항 1호 법조항의 '효력 유무' 에 관한 총회 질의 건(2017.10.16.)"

해석 : 헌법정치 제28조 6항 1호는 법조항으로 현재도 효력이 있다. 헌법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다고 해도 헌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이다. 위헌의 판단은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시행규정과 총회 규칙 등이 맞지 않을 때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는 효력이 있으나 수정, 삭제, 추가 등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101회기 총회헌법해석 95. (헌법 정치 제28조 6항 위헌 여부) 해석으로 갈음한다.

2. 위 헌법 해석에 대하여 헌법개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헌법 질의하니 면밀히 검토하시어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총회 헌법위원회의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해석에 근거하여 헌법개정을 위한 후속조치로 어떤 헌법 개정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제102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 보고 시 “총회 헌법위원회가 제102회 총회에 상정한 헌법개정(안) 조항들은 1년간 더 심의하여 제103회 총회에 상정하도록 해달라는 건은 허락하다”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법개정(안)에는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총회 헌법개정위원회가 제28조 제6항에 대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면 이 조항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2항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서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에 대한 헌법개정(안)을 제103회 총회에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

47. 재심청구권자 / 시벌방법 / 가중처벌 절차

서울서노회장 장찬호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97-70호 / 헌법질의 해석 요청의 건(2018.4.19.)”

해석 :

질의1-1)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4항에 근거 헌법위원회가 법리판단을 할 때 재판국의 판결에 관하여 법리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 판단이 헌법 권징 제124조 제6항에 해당될 때 재심청구권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참고. 제101회기 헌법 해석 사례 84. 특별소송절차 / 재심청구권자(예장총 제101-1101호 /2017.8.3)

질의1-2) 헌법 권징 제142조 제4항은 시벌의 기산일에 대한 기준이며 시벌방법은 헌법 권징 제142조 제1항에 근거 시벌은 소속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하여

야 한다. 그러나 시벌을 기피하고 타처로 간 자에 대하여는 지상에 공고하여 시벌한다.

질의1-3) 헌법시행규정 제86조 제3항(구, 헌법시행규정 제87조 제3항)에 근거한 가중처벌은 치리회가 피고인에게 통지된 여부와 피고인이 시벌을 불이행하였는지 판단하고,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 가중처벌 의뢰할 때 해당 재판국에서 관련 증거 등에 따라 재판국이 판단한다.

질의2-1) 기소위원장이 고소인(고발인) 상소 요청을 받고도 상소하지 않을 경우, 헌법 권징 제91조 제4항에 근거 고소인(고발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질의2-2) 재심 기간은 훈시규정으로 적법하다.

질의내용 : 1. 〈마포교회 김영재 장로 외 1인이 질의한 '총회헌법위원회 헌법해석 질의 요청(2018.4.9.)'〉

질의1) 총회제2재심재판국은 재심청구인 마포교회 안수집사 민응규가 총회 헌법 제3편 제128조[재심청구권자]의 자격을 결한 고발자임을, 피재심청구인들이 2017년 4월 18일 제출한 '재심청구서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미 총회 헌법 제3편 제128조[재심청구권자]의 자격을 결한 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의 분명한 해석이 존재하며, 제1재심재판국의 판례(사건번호:총회제2재심재판국 제100-5권징, 사건명:"예총재판국 사건 제99-41호 결정 / 충주노회 대소교회 이OO 장로 외 1인(나OO서리집사)이 충주노회 이OO 목사 외 1인(신OO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에 대한 재심청구, 재심개시결정:2016.9.20. 판결:2016.12.29.)도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제2재심재판국이 이를 묵살하고 재심개시결정과 피재심청구인 유지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일 사건에 대해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첨부6)과 총회재판국의 해석(첨부2, 4)이 상충될 때, 헌법 해석에 있어서 어느 쪽이 우선권을 갖는 지요

질의2) 헌법 제3편[권징] 제7장[시벌 및 해벌] 제141조[시벌치리회]와 제142조[시벌방법] 1항과 관계없이 제142조[시벌방법]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이 최종 확정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시벌이 시작된다면, 치리회 석상에서 시벌하는 절차는 필요 없는지요?

질의3) 헌법 제3편[권징] 제7장[시벌 및 해벌] 제141조[시벌치리회]와 제142조[시벌방법] 1항에 따라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한 사실이 없이 최종 확정판결 주문에 적시된 '근신' 유기책벌 기간을 경과한 후 뒤늦게 피고인이 시벌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워, 헌법시행규정 제3장 제87조[집행과 종국판결] 3항에 의거

치리회 결의로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는지요

2. 〈마포교회 김성은 안수집사 김성은 외 14인이 질의한 '헌법위원회 헌법해석 질의 요청(2018.3.30.)'〉

질의1)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신청) 취지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이 2017년 1월 10일 선고한 예총재판국 사건 제100-43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해 주시고 원심(총회재판국)판결을 파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총회제2재심재판국은 재심청구인의 청구취지와는 다른 서울서노회재판국을 원심재판국으로 보고 서울서노회재판국 사건번호 2015-5,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였습니다. 총회 제2재심재판국의 판결의미는 서울서노회재판국 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이다. 따라서 서울서노회가 원심재판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 제3편 권징 제125조[재심의 관할] 조항에 의거, 재심재판은 재심의 관할권이 있는 원심재판국인 서울서노회 소속 서울서노회재심재판국 관할이며 총회 제2재심재판국 관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심의 관할권이 없는 총회 제2재심재판국이 재심청구권자의 자격을 결한 고발인의 법적 무효인 재심청구서를 근거로 2017년 7월 18일 판결 선고한 것은 적법한 것인가요?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13항의 재심기간은 강제규정이라는 의미의 헌법 해석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총회 제2재심재판국 제101-5권징 건의 재심판결은 재심기간(총회로부터 이첩 받은 2017.3.15.부터 4개월은 2017.7.14.)4개월을 경과하여 2017년 7월 18일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심기간을 경과하여 판결한 총회제2재심재판국(국장 한상영)의 판결은 적법한지요?

48. 실종교인 처리된 시무장로 자격 / 부목사 지위

부천노회장 박신철 목사가 제출한 "예장부천노회 제140-2호 / 헌법해석 질의(시무장로 자격 및 부목사 지위 등)(2018.5.2.)" 건

해석 :

질의1-1)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하면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이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그러나 복음 전파를 위해 분립개척 한 것으로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며, 분립된 교회를 돕는 차원에서 파송되었던 것으로 실종교인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14조에 근거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

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분립 개척된 교회에 파송된 것이고, 헌법시행규정 제14조에 근거한 행정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재취임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도 시무장로 자격은 유효하다.

질의1-2) 분립개척교회에 완전히 이명한 경우 외에는 헌법정치 제46조에 근거 장로의 휴무 제도를 활용하고, 헌법시행규정 제25조 제4항에 근거 휴무의 기간, 기간 연장, 자동 복귀, 무임에 관한 동법 제3항을 준용하면 된다.

질의2-1~2) 부목사는 파트타임목사(준전임), 음악목사, 교육목사, 음향, 영상 담당목사 등 명칭과 지위에 관계없이, 헌법정치 제28조 제4항에 근거하여 교회에서 청빙하였고, 헌법정치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노회 허락을 받았다면 부목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을 경우 부목사로 인정되고 노회 목사회원자격도 인정된다.

질의3-1) 헌법정치 제64조에 근거 당회원은 지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로 구성되며 당회원은 당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질의3-2) 부목사는 당회원으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나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참석하지 않는다.

제96회기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 73. '당사자의 의결권 행사 제한'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당회나 제직회의 경우 특별히 자신의 신상에 관한 문제에 의결권 행사여부는 법 정의 개념에서나 도덕적인 측면으로 볼 때 참석해서는 안 된다"를 참조하기 바람.

질의내용 : 1. 시무장로 자격관련 질의

본 노회 산하 참된교회는 교회 분립개척을 많이 한 교회(2017년말 53개 교회)로서 분립개척 시에는 모교회의 장로 등 항존직을 1년간 파송하여 분립개척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교회에서 2005년 4월 24일 같은 노회내로 32번째 개척교회(산울교회)를 분립하였고 이곳에 000 시무장로를 파송시켰습니다. 대개의 경우 분립교회가 1년 후 자립하면 파송장로는 모교회로 복귀하여 왔으나 2006년 3월 19일 자립예배 이후에 모 교회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산울교회의 시무장로로 봉사를 계속해 오다가, 2010년 1월 모 교회로 복귀 하였습니다. 모 교회로 복귀할 당시 당회장(박00목사)에게 4년 여간 다른 교회에 있다가 다시 왔으므로 다시 장로시무선택투표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당회장은 분립개척 교회에 봉사하다가 돌아온 것이란 이유

등으로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며, 2010년 4월 20일 부천노회 보고서에 위 참된교회 시무장로로 등재하였고, 2010년도 교회요람에도 시무장로로 기록하였으며, 이후부터 당회원으로서 당회 참석 및 의결, 교회의 교육위원장·선교위원장 등 위원장으로서 행정권 및 예산집행권을 행사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분립개척교회에서 복귀한 이후 8년 여간 시무장로로서 활동해 오면서 시무장로 자격 및 당회원권 행사에 대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는데 최근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서 당회의 결정권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고, 교회 일각에서는 파송에서 8년 전에 복귀한 당해장로의 시무장로 자격에 대해 복귀 후 다시 장로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시무장로 자격 이 없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하면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됩니다. 또한 헌법정치 제20조 에 근거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실종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 분립한 것으로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고 분립된 교회를 돕는 차원에서 파송되었던 것으로 실종교인으로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헌법시행규정 제14조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분립개척 된 교회에 파송된 것이기에 이런 행정행위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참고로 위 교회는 분립개척교회 파송 후 그 교회로 교적을 옮겨 수년간 봉사하다가 돌아온 장로의 시무 복귀절차로서 헌법(정치) 41조의 장로선택 투표절차를 다시 밟아 재취임 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위 사례처럼 새로 장로선택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도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1) 위 교회처럼 분립개척교회에 파송되었다가 분립개척교회로 교적을 옮겨 수년간 봉사 한 후 다시 모 교회로 돌아온 장로의 시무장로 복귀절차로서 헌법(정치) 41조의 장로선택 투표절차를 밟아 재취임하지 않은 경우 모교회에서의 시무장로의 자격이 무효인지 헌법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2) 분립개척교회에 파송되어 수년간 봉사하다가 복귀한 장로의 시무장로 자격회복 절차 는 어떻게 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2. 부목사 지위 및 노회총대 자격 관련 질의

본 노회 산하 참된교회의 000 부목사는 2013년 10월 22일 목사안수 후 당해교회 부 목사로 시무하면서 매년 부목사 연임청원에 따라 시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 참된교회는 2017년 11월 19일, 정기(임시) 당회에서 위 000목사를 상근 유급직원으로 영입하되, 노회관련해서는 부목사직을 유지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당회록 사본 별첨). 그리고 이러한 당회 결의에 따라 위 000부목사에 대한 연임청원이 노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헌법(정치) 제28조 4호에서는, 부목사의 계속(연임)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하며, 당회의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당회록도 노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교회 일각에서는 “설교를 하지 않는 부목사는 부목사가 아니다”면서, 부목사의 자격 및 부천노회 목사총대 자격 등을 문제 삼고 있어서 교회의 분란이 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질의1) 교회의 부목사는 반드시 예배설교를 담당하여야 부목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설교외의 분야로서 음향·영상 등의 분야를 전임하는 목사도 부목사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노회의 목사총대 자격이 인정되는지 헌법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2) 위 000부목사에 대해 ’17년 11월 19일 당회 연임청원 시 영상 및 음향 등을 전담하는 상근유급직원으로 영입하되, 처우는 준전임 대우로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만, 준전임으로 대우하는 목사는 부목사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지 헌법해석을 요청합니다.

3. 부목사의 당회 의결권 관련 질의

본 노회 산하 참된교회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여러 부목사를 두어 왔습니다만, 그동안은 당회시간에 부목사들이 담당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어서 관례적으로 당회에 부 목사들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당회의 의결에도 부목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서 당회의 결정권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고, 교회 중요 정책이 당회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결정되게 됨에 따라서 그동안 당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부목사의 당회 의결 참여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헌법(정치) 64조에서는 당회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 등으로 조직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헌법규정으로는 부목사 는 당연히 당회 구성원으로서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만, 위 교회 일각에서는 위 교회가 그동안 선대목사 때부터 관례적으로 부목사가 당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만큼, 부목사는 당회에 참석 의결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목사 연임청원 등과 같은 안건의 의결 시에 당사자인 부목사가 자기문제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 교회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질의1) 그동안 부목사가 당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관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목사는 헌법 제64조에 따른 당회 구성원인 만큼 당연히 당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2) 부목사가 당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상 당연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부목사의 연임청원 등 자기문제에 대한 의결 시에는 부목사 본인의 제척 또는 회피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해석을 요청합니다.

49. 노회 임원의 상임부서 공천

부천노회장 박신철 목사가 제출한 “예장부천노회 제140-3호 / 헌법해석 질의(노회 임원 상임부서 공천 여부)(2018.5.2.)” 건

해석 :

질의1) 제96회기 총회헌법위원회 해석 15번, 17번을 들어 노회임원은 상임부서에 공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해석을 오해한 것이다. 제96회기 총회헌법위원회에 15번(부산남노회 이형식 목사 제출) “현재 노회 임원은 상임부서에 공천될 수 없으며, 재판국원은 더더욱 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으나, 당시 총회 임원회에서 잘못 해석되었다고 판단하여 헌법위원회 재심의 요청한 결과 17번으로 “현재 노회 임원은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로 수정 해석했던 것이다. 이는 현재 노회 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 상임부서 공천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

현직 노회 임원에 대한 상임부서와 독립 사업기관(감사위원회, 기소위원회, 재판국)에 공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헌법규정은 없다.

노회 공천 조례가 없을 경우, 총회 공천조례를 준용하여 현직 노회 임원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재판국, 이대위 공천을 제한하거나, 중립성 보장을 위해 기소위원회 공천을 제한 할 수는 있을 것이나, 현직 노회임원에 대한 상임부서 공천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노회에서 정하거나 총회 공천조례

를 준용 할 수 있다.

※참고: 총회의 경우는 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에 근거 총회 회계와 부회계는 총회 정책상 각각 재정부 2년조와 재정부 3년조로 공천하고, 헌법위, 감사위, 재판국, 이대위 위원으로 총회 임원에 선출 된 자에 대해서만 공천위원회가 본 회의 기간 중에 상임부서 3년조로 공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총회장을 제외하고 부총회장 포함 모든 임원들이 상임부서 등에 공천된다.

질의내용 :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에 근거 총회 회계와 부회계는 총회 정책상 각각 재정부 2년조와 재정부 3년도로 공천하고, 정원이 제한된 부서(헌법위, 감사위, 재판국, 이대위) 위원으로 총회 임원에 선출된 자는 공천위원회가 본 회의 기간 중에 상임부서 3년조로 공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102회기 경우 총회장을 제외하고 부총회장 포함 모든 임원들이 상임부서 등에 공천되었습니다. 따라서 노회 임원도 상위법규를 준용하여 노회 규정에 근거 공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노회 소속 회원이 제96회기 총회헌법위원회 해석 15번, 17번을 들어 노회임원은 상임부서에 공천하면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질의가 있어 헌법위원회해석을 요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현재 노회 임원은 노회 행정으로 각 교회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이런 노회 임원이 공천 시에 상임부서와 독립 사업기관(감사위원회, 기소위원회, 재판국)에 공천할 수 있나요?

50. 교회 비상개혁위원회의 효력

영등포노회장 문희교 장로가 제출한 “영노 제120-14호 / 영도교회 비상개혁위원회에 관한 질의서(2018. 5.21)” 건

해석 :

질의1~3) 비상개혁위원회는 제직회 산하 임시위원회로 지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직회 산하 조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헌법정치 제60조에 근거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제직회는 치리회가 아니며, 집행기구이므로 치리회인 당회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다.

더욱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에 대하여 교회 정관 및 내규, 회의 결의 등을 근거로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에 근거 명백한 위법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질의내용 : 영도교회 당회는 부설건물(엘림관)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재정관련 사고수습 및 본 교회가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위해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원활한 수습방안을 마련하고자 당회원 및 제직원들을 포함한 특별

위원회(가칭, 교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고, 이를 지난 4월 22일(주) 열린 임시제직회에 상정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명칭을 비상개혁위원회(이하, 비개위)로 명명하고, 그 지위와 목적 그리고 활동영역을 첨부한 자료(별첨1)와 같이 정하였으며 활동기간을 5월 27일까지 5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던 당회의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비개위는 당회 허락된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 또는 헌법에 저촉되는 활동범위를 담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당회는 비개위의 활동이 총회 헌법에 저촉될 우려와 함께 당회와 비개위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으로 인한 의견 충돌이 교회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당회의 결의에 따라 노회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교회 당회는 비개위의 적법성과 활동 및 범위의 타당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즉, 현재 건축문제 사항들을 넘어선 교회의 재정과 행정 전반에 대한 사안을 조사할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또한 이 위원회가 초법적인 활동이 가능한 특별상위위원회인지에 대한 행정규칙과 절차에 따른 유권해석이 요구되어 아래와 같은 질의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질의목적〉

현재 지난 임시 당회 시 제출된 비개위 자료(별첨1)에 따르면 비개위는 당회가 주장하고 인정하는 바와 다르게 당회를 대체하는 특별기관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비개위의 위치와 활동범위가 당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총회 헌법에 근거한 비개위의 특별기관으로서의 지위의 타당성과 합법성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회가 주장하는 비개위〉

당회가 주장하는 비개위는 교회 건축 재정 문제에 대하여 성도들의 의견과 제안을 받아 종합함으로 건축 재정의 해결책 또는 좋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교회 전반적 의견을 수렴하여 교회의 나아가야 할 건강한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는 특별위원회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비개위 위치는 현재의 교회적 특별 사항에 의거한 임시 특별기관요로 당회 또는 제직회에 소속된 것이 아닌 교회의 건축 문제에 대한 건강한 안을 내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개위가 주장하는 비개위〉

현재 비개위가 주장하는 바, 본 기관은 제직회 산하에 두며, 이는 당회를 대체하는 기관A로 당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교회 전반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을 하는 임시 기관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개위는 그에 따른 당회 및

교회 기관에 대한 논의 또는 감사를 시행하며 당회에는 필요시 보고하고 최종 결의권은 비개위가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1) 현재 총회헌법상으로 볼 때, 비개위의 위치와 역할이 당회를 대신하는 특별기관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합당한 규칙과 절차에 따른 주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비개위가 (별첨1)의 재정분과 기본활동과 행정분과 기본활동에 나오는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개교회의 최고 의결기관과 치리회는 어떤 곳이며, 또한 교회의 상·하위 부서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51. 교인의 복권 절차

서울관악노회장 이정규 목사가 제출한 “새봉천교회 헌법해석 질의요청서 송부(2018.5.21.)” 건

해석 : 다소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교인의 복권은 헌법정치 제20조에 근거하여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질의내용 : 새봉천교회는 전신인 봉천교회와 세광교회기 2015.11.15.합병하여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합병이전 봉천교회는 담임목사 청빙과정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 목사를 지지하던 강해성 장로, 이성광 장로, 윤상용 장로 외 33명은 봉천교회를 이탈(이탈 과정에서 이명서를 보내 적도 없고 이명서를 요구한 적도 없음) 하였고 봉천교회는 이들에게 정관 제2조(교인의 의무와 권리)(1)(2) (3) 항과 정관 5조를 근거하여 6개월간 회원권 정지와 교회출입을 금지하는 징계를 하였습니다. 징계를 하자 이들은 분립교회인 더처치교회에 출석하여 잠시 시무장로로 활동을 하다가 봉천교회가 합병하자 다시 복귀를 하였습니다. 합병 후 만들어진 새봉천교회는 전신인 봉천교회 건물을 현재까지 예배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봉천교인들도 그대로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봉천교회는 합병 전 봉천교회의 연속하는 법률적인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새봉천교회는 다시 돌아온 강해성 장로, 이성광 장로, 윤상용 장로에게 1년간 협동장로로 근신케 하였고, 1년이 지난 후 2017년 11월 5일 새봉천교회 당회에서 당회원 2/3 결의로 시무복직을 허락하여 주보에 공지하였습니다.

질의) 당회결의 절차(당회원 2/3 결의)로 허락한 시무허락이 적법한지 여부?

※ 결의근거(첨부자료) : 1. 총회헌법 정치 제3장 제20 조2항, 제6장 제47조 1항

2. 2015. 4. 12. 주보공고(해벌)

3. 2015. 9. 13. 봉천교회 당회록

〈새봉천교회 장로 이명 관련 그간 진행 경과〉

1) 장로이명 관련 총회 규정

○ 제26조 [직원 선택]〈총회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8.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당회의 장로선택 청원과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신임하며 노회 고시부의 면접 후 취임할 수 있고, 타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의 경우는 처음 선택할 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안수는 생략할 수 있다. 단, 세례 교인 비례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2) 교회 합병 및 분립

○ 제11조 [지 교회의 분립, 합병] 〈총회 헌법 제2편 정치-제2장 교회〉

1. 지 교회의 분립 및 합병은 그 지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야 한다. 2. 노회가 허락하면 위원을 파송하여 분립 또는 합병에 필요한 제반재산 및 행 정처리를 확고히 한다.

○ 제77조 [노회의 직무] 〈총회 헌법 저]2편 정치-제11장 노회〉

7. 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 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 제5조 [교회의 분립과 합병청원]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지 교회를 분립 또는 합병하고자 하면 제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회장과 분립 및 합병될 교인들이 서명 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의 처리]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노회는 지교회의 설렵, 분립과 합병이 가합하면 이를 허락하고 설립, 분립 및 합병위원을 선정, 그 교회에 파송하며 다음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처리한 후 노회에 보고하고 지교회 명부에 등재 또는 삭제한다.

1. 지교회의 재산의 귀속 문제와 교적부 정리 및 직원을 선임하는 일

2. 해당교회에서 지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식을 거행하며 교인들로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 할 것을 서약케 하는 일

3. 그 예식에서 설립, 분립, 합병됨을 선포하는 일

3) 봉천교회 분립 경과

○ 개 요 : 봉천교회가 봉천교회와 더처치 교회로 분립됨(2015.8.30.)

○ 화해조서 봉천교회와 (가칭)더처치교회로 분리하는 일에 합의함(2015.5.4.)
○ 노회에 분립청원서 제출함(2015.8.29.)
※ 이성광 장로, 윤상용 장로, 김용남 장로, 이상용 장로가 분립되는 더처치교회의 교회대표로 분립정서 제출함.
○ 노회에서 봉전교회 분립을 허락함(2015.8.29.)
※ 2015. 8. 29. 서울악노회 임원회에서 결의함.
○ 더처치교회 분립예배 드림(2015.8.30.)
※ 서울관악노회 노회장이 교인과 노회원 앞에서 교회 분립과 이성광, 윤상용, 이상용 씨가 분립된 교회의 시무장로가 된 것을 선포함.
○ 윤상용 장로가 더처치교회에 이명증서 요청(2016.7.2)
○ 윤상용 장로가 더처치교회에 시무사임서 제출(2016.8.14)
○ 이성광 장로가 더처치교회에 이증증명서 발급신청(2016.8.18)
○ 강해성 장로가 더처치교회에 시무사임서 제출(2016.10.16)
4) 총회 재심재판국 판결
○ 주 문 : 이성광 장로와 강해성 장로는 화해와 분립의 정신에 따라 합의된 화해 조서대로 분립하는 교회의 장로가 된다.
※ 2015. 8. 28. 제99회기 총회 재심재판국 제99-1 행정 판결
5) 총회 헌법 해석 질의 및 답변
(1) 질의(서울관악노회 질의)
○ 노회의 주관하에 분립이 마무리 되면 교회(더처치 교회)의 교인들은-별도의 임명이나 취임절차 없이 분리되기 전 교회(봉천교회)의 시무와 직분(장로, 집사, 권사 등)을 그대로 인정받고 계승하는지 여부
(2) 답변(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위원회)
○ 분리되기 전 교회(봉천교회)의 시무와 직분(장로, 집사, 권사 등)은 그대로 인정 받고 계승된다. ※ 질의·답변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0회 총회-헌법위원회 보고서-
95. 분립된 교회의 교인들의 임명이나 취임 절차 / 분리시 위임식 여부

52. 피고인의 무죄 추정

나주교회 나상기 장로가 제출한 “총회헌법위원회 헌법질의와 해석 신청(2018.6.5.)” 건

해석 :

질의1~5) 헌법권징 제72조에 근거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에 항소 중에 있는 경우에는 직책에 대해 제한할 수 없다. 또한 단지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시당회장을 제한할 수

는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 재판국에서 정직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흠결이 있는 자가 교회 청빙위원장을 맡고, 정직 1년 시무정지 6개월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청빙위원이 될 수 있는지요?

질의2) 노회 재판국에서 정직의 유죄판결 받은 자로 흠결이 있는 자가 교회 재정부장직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3) 노회 재판국에서 정직의 유죄판결 받은 자가 흠결이 있는 자로서 노회 감사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는지요? 노회감사위원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시벌 받은 자가 시벌을 한 재판국과 기소위원회를 감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교회 질서 상으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4) 노회 재판국에서 정직의 유죄판결 받은 자가 흠결이 있는 자로서 총회 총대후보가 될 수 있는지요?

질의5) 나주교회 당회원으로부터 고소 받은 타교회 목사가 나주교회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지요?

53.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 권한

서울동노회장 김권수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98-83호 / 헌법 질의 요청(2018.6.11.)” 건

해석 : 임시당회장은 헌법시행규정 제30조 제1항에 근거 헌법 정치 제68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에 항존직(장로) 사임과 복직을 다룰 수 있다. 대리당회장은 헌법시행규정 제30조 제2항에 근거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제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이 항존직(장로) 사임과 복직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54. 헌법위원회 해석 시행

여수영락교회 김성기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제36조,제62조,제58조)(2018.6.5.)” 건

해석 :

질의1,2,3)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에 근거 헌법위원회 해석에 대해 “당사자나 해당기

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함에도” 헌법위원회 해석을 이행하지 않고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다.

질의내용 : “사무국-1155 / 헌법 해석에 대한 질의 및 재심의 요청(2018.7.5.)” 건 중 3번 가항.

4)항(여수영락교회 김성기 목사 질의)은 질의1)에 대하여는 헌법해석 통보와 상충된 여수노회의 기소결정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판단이 미흡하고 질의 2),3)의 기소기간, 소환기간에 대한 훈시(임의)규정 적용이 여수노회 사안에 합당한지를 재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헌법질의에 대한 배경설명

1) 여수노회장 강점석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45-18호”, “여노 제45-19호”, “여노 제45-23호” / 여수영락교회 김성기 목사 외 2인의 질의한 건에 대하여, 총회 헌법위원회는 예장총 제102-610호 / 헌법해석 통보 및 예장총 제102-618호 / 헌법해석 통보를 통보받고 여수영락교회의 임직에 관련한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정당한 임직이었다는 해석을 무시하고, 여수노회장 강점석 목사는 여수영락교회 김성기 목사를 여수노회 기소위원회에 고발하고, 여수노회 기소위원회는 헌법에 하자가 없다는 총회해석을 알고도 여수노회 재판국에 기소하여 재판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총회를 무시하는 노회의 일방적 행정이며, 여수노회의 결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죄목을 들어 법원칙도 무시하고 여수노회 재판국에 불법으로 회부하였습니다.

2) 여수노회 기소위원 정삼래 목사는 여수노회장 강점석 목사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출석통지를 보내와, 피고발인 5명은 여수노회 기소위원장 정삼래 목사, 서기 오환택 목사의 목사 연임청빙의 미진으로 인한 무임목사의 자격문제를 들어 기피를 신청했고, 여수노회는 이를 피고발인에게 반려하였기에 기소위원회에 출석하였는데 조사는커녕 노회장과 화해하고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였고, 후에 기소위원장은 노회장이 화해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알고도 기소를 한 것입니다.

2.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

1) 제2장 정치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6.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여수노회는 총

회 헌법위원회로부터 해석 통지를 수령하고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하게 법절차를 따른 피고발인을 기소한 것이 합당한 것인지?

2) 제62조 [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
"기소위원회가 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죄과를 조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장을 치리회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여수노회 기소위원회는 고발장을 2017년 12월 18일 접수했고, 당사자에게는 2017년 12월 23일에 통보하였으며, 이후 여수노회 재판국은 여수노회 기소위원회가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장을 3월 30일에 접수하였다고 피고발인에게 통보했는데, 고발장을 접수하고, 90일이 경과하고 기소한 것이 합당한 것인지?

3) 제58조 [고소(고발)인의 조사 및 피의자 신문] 1. 기소위원장은 고소(고발)인을 먼저 출석하게 하여 고소(고발) 취지 및 이유와 고소 내용과 증거 및 증빙 사실 여부를 먼저 조사한다. 2. 기소위원장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하고자할 때에는 10일전에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罪過) 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에 의거하여 여수노회 기소위원회로부터 출석을 통보받고, 여수노회 기소위원장은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고, 조서도 없이 피고발인을 기소한 것이 합당한 것인지?

55. 임시당회장의 권한

전남노회장 남성현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9-089호 / 총회헌법위원회 헌법 질의와 해석 신청(2018.6.11.)" 건

해석 :

질의1) 노회 보고 후 노회에서 허락된 사항이 우선한다.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30조 제1항에 근거 임시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8조의 권한을 행사한다. 만약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재정부장에게 외부회계법인과 체결하여 감사업무를 하라고 하였다면 적법하지 않다.

질의내용 :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1155 / 헌법 해석에 대한 질의 및 재심의 요청(2018.7.5.)" 건 중 3번 나항. 6)항(전남노회장 질의)은 당회 결의 및 노회 보고에 대한 명료한 해석이 필요하며, "~제출한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라는 표현은 재고하셔서 재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교회 당회에서는 담임목사님을 당회에서 1년간 안식년을 허락 결의하여

1년간 모든 사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안식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임목사가 교회를 3개월 이상 비우게 될 때에 노회에 보고 하여야하는 사항 때문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 보고양식에는 안식년에 대한 보고서 양식이 없어서 휴무청원 양식(정치 제12호 서식)을 빌어서 기타사항으로 적어서 노회에 보고하여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임목사의 휴무로 보느냐 안식년이냐에 대한 많은 혼란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1) 당회에서 안식년을 결의한 것이 우선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고양식이 없어 휴무청원서 양식으로 보고 한 것이 우선되어 집니까? 즉 목사님의 안식년은 당회에서 결의한 것이 우선되어 안식년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휴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질의2) 임시당회장이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재정부장에게 외부회계법인과 체결하여 감사업무를 하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부당합니까?

56.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재재심 가능 여부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56 / 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에 대한 이의절차 유무 관련 헌법 질의(2018.4.12.)” 건

해석 : 재심에 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6항에 근거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헌법 권징 제129조 5항에 의한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하기 전의 재판인 헌법 권징 제129조 제2항의 부적법 기각결정 및 제3항의 이유무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그 외에는 헌법 권징 제5장 상소에 따라 다시 심급에 따라 상소할 수 있을 것이나, 최종심인 총회재판국 원심판결 후 헌법권징 제124조 사유로 재심판결을 받고 또다시 헌법권징 제124조 사유로 재재심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재심을 반복하게 되고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없고, 지난 제102회기 총회 결의와 헌법개정으로 특별재심을 삭제한 총회헌법 정신 등을 종합하면 최종심인 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에 대한 재재심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재재심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②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③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④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⑤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 한하

여, 재재심이 가능하도록 극히 제한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일지라도 원심 재판국에서 상기 재재심사유에 대한 검토 및 재심개시결정(재재심)을 통해 신중하게 재재심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질의내용 : 1. 제102회 총회 결의로 총회 헌법 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 제7항 이하를 개정하여 재심제도는 유지하되 재심재판국 제도는 폐지한 바 있으며, (구) 헌법 권징 부분 "특별재심" 조항을 삭제 결의하였고, 이를 노회 수의절차를 거쳐서 2017.12.19자로 헌법 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2. (구)헌법 권징 부분 "특별재심" 조항을 삭제 개정하기 전 까지는 총회재판국과 재심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재심)을 할 경우 청원권자가 특별재심을 청원하여 교단 정기총회에서 재석 총회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 특별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총회 헌법은 특별재심 절차가 삭제 개정되어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헌법질의 하니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헌법 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에 의거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재심청구가 접수되면 원심재판국인 총회 재판국이 다시 심리,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재심청구건 판결에 대하여 또다시 이의신청, 재심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와 이를 총회 재판국이 심리,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능, 불가능 사유를 법적인 근거를 세밀하게 제시하여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7.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재재심 판단 권한

강원노회장 안봉엽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29-194호 / 헌법해석 의뢰(2018.4.12.)" 건

해석 : 총회에 접수된 재심서류에 대한 반려 및 재심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국에서 판단함이 적법하며 총회장이라 하여도 접수된 재심서류에 대한 반려는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적합하지 않다.

재심에 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6항에 근거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헌법 권징 제129조 5항에 의한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기 전의 재판인 헌법 권징 제129조 제2항의 부적법 기각결정 및 제3항의 이유무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그 외에는 헌법 권징 제5장 상소에 따라 다시 심급에 따라 상소할 수 있을 것이나, 최종심인 총회재판국 원심판결 후 헌법권징 제124조 사유로 재심판결을 받고 또다시 헌법권징 제124조 사유로 재재심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재심을 반복하게 되고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없고, 지난 제102회기 총회 결의와 헌법개정으로 특별재심을 삭제한 총회헌법 정신 등을 종합하면 최종심인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에 대한 재재심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재재심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②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③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④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⑤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 한하여, 재재심이 가능하도록 극히 제한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일지라도 원심 재판국에서 상기 재재심사유에 대한 검토 및 재심개시결정(재재심)을 통해 신중하게 재재심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질의내용 : 오인근 씨 재심청원건(실상은 헌법에도 없는 재재심청원이다)에 있어서 예장총서 제102-89호 '사실 확인 회신(2018.2.19.)'에 의하면 총회재판국에 서류 이첩 예장총서 102-26호에 의거 2017.11.6.에 있었고, 총회 서기부에서 잘못을 인지하고 예장총서 제102-56호에 의거 2017.12.15.에 재심청구서 반려요청〈반려요청공문 내용 2. … 귀 재판국에 이첩한 "오인근 씨가 제출한 재심청구서(2017.10.27.)는 총회헌법시행규정 제3장 제86조(개정 후 권징 제86조 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 3항)에 의거하여 재심청구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서기부의 행정착오로 귀 총회재판국에 사건 이첩하였으므로 이를 정정하여 해당서류(재심청구서)를 신속히 총회 서기부로 반려해 주시기를 요청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서를 보냈는데 총회재판국에서 이를 반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회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유래 없이 신속한 재판을 강행한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질의1) 재심접수와 서류 이첩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총회장의 결재를 받아 반려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하지 아니하고 헌법에도 없는 재재심재판을 강행할 수 있는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은지?

질의2) 제101회기 제1재심재판국에서의 최종 판결(2017.8.30.)내용을 제102회 총회석상에서 총회장께서 보고를 받아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여 최종 종결 처리된 사항으로, 정한 법정기한이 도과한(제127조 재심청구의 기간 …확정판결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

구하여야 한다) 사건을 다시 재재심재판을 할 수 있는지? (참고로 헌법이 개정되어 현행헌법에는 재심재판국이 없어졌음.)

58. 출교 책벌의 효력

순서노회장 김진국 목사가 제출한 “순서노 제41-55호 / 행정소송에 관한 질의서 (2018.5.16.)” 건

해석 :

질의1) 당회장이 교회가 분쟁중이라고 하여도 출교는 당회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헌법권징 제5조 제1항 제10호의 책벌사항이다. 따라서 헌법권징 제6조 제2항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을 할 수 없다”를 위반하였기에 당회장이 재판 없이 출교한 것은 무효이다.

질의내용 : 순서노회 소속 벌교제일교회 오선욱 장로, 박진수 장로가 벌교제일교회 당 회장 김서곤 목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취소 무효 확인의 소송에 관한 건입니다. 당회장 김서곤 목사는 오선욱 장로, 박진수 장로를 재판 없이 당회장 직권으로 출교를 교회 앞에 공포하고 당회원과 주보에도 명단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순서노회 기소위원에서는 김서곤 목사를 직권남용으로 기소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서노회 기소위원에서는 재판에 진행 중인 시안이니 재판을 기다리자고 설득하였고, 누구도 재판 없이는 교인을 책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으나 오선욱 장로, 박진수 장로는 당회장 김서곤 목사의 장로 출교 이유가 걱정이 돼서 자기 방어를 하고자 합니다. 당회장 김서곤 목사는 교회가 분쟁으로 당회가 정상기능을 할 수 없을 때는 당회장이 직권으로 출교처리 할 수 있고 2년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노회기소위원회에서는 각하처리하기 전에 총회헌법위원장의 유권해석을 얻고자 합니다. 총회의 헌법위원회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본 사건이 정확하게 처리되어 교회의 안정을 얻고자 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59. 담임목사 청빙 절차

서울동노회장 김권수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98-85호 / 헌법 질의 보완 재 요청 (2018.6.11.)” 건 중 세움교회 이재우 목사가 제출한 “헌법질의 의뢰(2018.4.17.)” 건

해석 :

질의1) 담임목사는 헌법정치 제28조 제3항에 근거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헌법정치 제29조 제1항, 제3항에 근거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

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노회 폐회 중에는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한하여 노회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청빙 승인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노회의 결의(임원회 청빙 승인)로 청빙이 승인되어야 지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고 당회장이 될 수 있다.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18조 제2항에 근거 담임목사는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없으나 위임(담임)목사 공석 전부터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은 할 수 있다. 헌법정치 제29조 제1항에 근거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따라서 노회 결의로 청빙이 승인되어야 지 교회의 부목사가 된다.

질의내용 : 질의1) 지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은 자가, 노회의 청빙 승인 절차(헌법정치 제28조, 제29조)를 완료하지 않아도, 지 교회에 부임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임 즉시 그 지교회의 당회장이 될 수 있습니까?

질의2) 위임목사가 아닌 자가 어느 목사를 부목사로 청빙하여 시무하게 하였으면, 그 부목사는 노회의 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부임 즉시 그 지교회의 직원이 될 수 있습니까?

60. 당회장 결원에 따른 절차

서울동노회장 김권수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98-106호 / 헌법 질의 요청(2018.6.25.)” 건

해석 :

질의1) 사고노회로 인해 지 교회 위임목사의 사임이 처리되지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난 것이 확인(당회확인 후, 노회 임원회 확인) 될 경우 당회장 결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헌법정치 제67조 제2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에 근거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해당 노회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요청할 경우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질의2) 담임목사 청빙은 헌법정치 제28조 제3항에 근거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회원 전원의 도장이 찍혀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회의 결의가 있으면 된다. 이후 헌법정치 제29조 제1항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동법 제3항 노회의 폐회 중에는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한하여 노회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청빙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기산일은 승인 후 첫 노회 개회일이다.

질의내용 : 1. 대리당회장과 임시당회장 건에 대하여

1) 지교회 당회장(위임목사)이 다른 교회를 개척하여 지교회를 떠났는데, 노회가 열리지 않아서 노회에서는 정식으로 사임이 처리되지 않았는바, 이

경우에 그 지교회에 파송되는 당회장이 임시당회장인지, 아니면 대리당회장인지?

2) 노회가 파행되어 사직서가 노회에 접수되거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명목상 당회장인지? (그렇다면 대리당회장이어야 하고,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개척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당회장이 부재(不在)한다면 임시당회장이어야 한다.)

3)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에 차이가 있으므로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목사 청빙에 관하여

1) 담임목사 청빙에 당회원의 동의로 청빙하기로 하였으나,

2) 노회의 파행으로 청빙이 미뤄지다가 노회가 개회되어 청빙하려고 할 때, 당회원과의 문제가 있어서 당회원이 청빙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는바,

3)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당회의 결의로 청빙이 이루질 수 있는지?

4) 청빙서류에 당회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61. 은퇴목사 책벌 가능 여부

부산동노회장 정일세 목사가 제출한 “부동노 제76-32호 / 은퇴목회자 책벌에 대한 질의(2018.6.25.)” 건

해석 :

질의1) 헌법정치 제27조 제10항에 의거 은퇴목사도 노회 소속 목사이므로 헌법권징 제3조에 죄과가 있을 경우 책벌할 수 있다. 책벌할 경우 헌법권징 제6조 제1항에 근거 재판에 의해야 하며 책벌의 종류와 내용은 재판결과에 따라 헌법권징 제5조에 의한 책벌을 할 수 있다. 〈제98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24. 은퇴목사도 책벌 가능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2) 헌법정치 제21조 제1항에 근거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이며 그 시무 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되는 경우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시무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 목회자는 교회 직원은 아니며, 헌법정치 제74조 제2항에 근거 노회의 언권회원이다.

질의내용 : 질의1) 은퇴목회자가 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 재판하여 책벌할 수 있는지? 있다면 은퇴목회자에게는 어떤 책벌이 가능한지?

질의2) 은퇴 목회자가 교회직원에 해당하는지?

62. 직원 선거

남원노회장 기옥종 목사가 제출한 “시행 남원노회 제58-10호 / 송진한 장로의 규칙질의 해석 및 헌법해석에 대한 추가질의 건 송부(2018.6.26.)” 건

해석 :

질의1) 토론이나 투표 당사자를 퇴장시키고 토론하거나 투표하는 것은 당회의 결의와 당회의 결의에 대한 당사자의 수용으로 가능하다. 다만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96회기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 73. ‘당사자의 의결권 행사 제한’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당회나 제직회의 경우 특별히 자신의 신상에 관한 문제에 의결권 행사여부는 법 정의 개념에서나 도덕적인 측면으로 볼 때 참석해서는 안 된다”를 참조하기 바람.

질의2) 불법선거에 대한 판단은 기소와 재판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선거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위로 말미암아 당회가 직분을 보직해임 한 것은 보직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묻는 것으로 헌법권징 제5조 제3항에 의한 책벌 사항이 아니고, 교회 감독기관인 당회의 직무사항이므로 적법하다.

질의내용 : 질의1) 규칙질의해석 결과통지에 “당회의 의결과 당사자와 은퇴원로장로들을 이석 하게 하고 토의 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회는 이석하는 과정에서 당회의 결의 없이 당회장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당사자와 원로장로들을 배제하고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결권(투표)을 보장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절차상의 부적법함을 이유로 당회의 의결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였는지 질문 드립니다.

질의2) 헌법해석 통보에서 “선거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위로 말미암아 동북 교회 당회가 모든 직분을 보직해임 한 것은 당회직무사항이므로 적법하다.” 라고 통보하셨습니다. 그러나 당회가 불법선거라고 단정 지을만한 사실과 증거가 없고, 단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경미한 정황만으로 재량권을 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분과 보직을 해임한 사항이 적법 하다고 해석한 것은 사실관계와 헌법을 오인 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만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안내한 사항이 불법선거로 단정 지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63. 교단 탈퇴 인정 여부

서울동노회장 김권수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98-107호 / 헌법 질의 요청(2018.6.27.)” 건

해석 : 교단 및 노회를 탈퇴하는 행위는 헌법시행규정 제87조(재판계류와 교단탈퇴)에 근거 인정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 서울동노회 소속 청량리중앙교회는 소위 교인총회를 열어서 서울동노회 탈퇴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탈퇴를 결의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질의 개요

서울동노회 소속 청량리중앙교회는 1934년 5월 16일에 창립되어 84년이 되는 교회로서 총회장 1명(고 임택진 목사)과 다수의 노회장을 배출한 교회입니다. 그런 청량리중앙교회는 2008년 1월에 부임한 김성태 목사의 부임 이후에 한차례 교회가 분열되는(2011년 10월) 아픔을 겪었고, 또다시 담임 김성태 목사와 부목사의 갈등으로 시작된 문제가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오늘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청량리중앙교회는 당회(2017.3.5.)와 공동의회(2017.3.12.)의 결의를 거쳐 김성태 목사에 대한 시무사임 권고를 서울동노회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2017.3.22.). 그러나 서울동노회는 지난 2년간 사고노회가 되어 청량리중앙교회의 문제를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김성태 목사 부임 전 약 1200명에 달하던 교인들은 200명 이하로 전락하였고 (청량리중앙교회 시무장로 6명이 2017년 10월 22일 자로 총회장에게 올린 청량리중앙교회 수습 청원 공문 중에서), 청량리중앙교회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서울동노회는 청량리중앙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지난 노회(2018.5.29.)에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량리중앙교회는 김성태 목사를 반대하는 측의 다수의 교인들이 소위 ‘교인총회’를 열어서 서울동노회와 교단의 탈퇴를 결의하였습니다. 이 결의에 관하여 청량리중앙교회의 7명의 시무장로 중에서 6명의 이름으로 2017년 10월 22일자로 총회장 앞으로 올린 “청량리중앙교회 수습 청원”건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6. 총회헌법으로는 김성태 목사를 퇴출시킬 방법이 없는 가운데, 서울동노회는 사고 노회로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 저희 교회의 고통은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사회법정을 통한 지루한 송사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여, 저희 교회로서는 본 교 단을 탈퇴하여 독자적으로 본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추진치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량리중앙교회 원로목사인 이용식 목사가 교인총회 회장으로 2017년 9월 15일에 서울동노회로 보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노회 탈퇴 통지” 공문에 의하면 “6. 우리 교회는 서울동노회가 우리 교회의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김성태 목사는

이것을 악용하여 교회 분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에, 2017.9.10.(주일) 교인총회를 개회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재적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서울동노회 탈퇴를 결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10일 자 교회연합신문에 교인총회 대표 이용식 목사(원로목사)의 이름으로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탈퇴공고를 냈습니다. 이들은 김성태 목사를 내보내려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교인총회를 열어 노회와 교단의 탈퇴를 결의하였다고 합니다.

질의) 그러면 청량리중앙교회의 다수의 교인들이 소위 교인총회를 개최하고 원로목사가 사회하여 결의한 '교회소속 변경(탈퇴)' 곧 서울동노회의 탈퇴와 교단 탈퇴가 과연 총회법에 인정되는 것인지요?

64. 장로 임직 절차

서울강동노회장 김상옥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62-013호 / 헌법 질의의 건(2018.7.11.)"

해석 : 헌법정치 제42조에 근거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노회고시에 합격한 자를 지 교회는 장로임직을 행한다. 노회고시의 합격 여부는 노회에 보고한 후 최종 확정되므로 노회 보고 후에 장로 임직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임직한 장로의 경우 그 귀책사유가 당회 또는 노회에 있을 경우 장로 임직은 유효하다. (참고 : 제94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32. 장로 임직 / 교육 기간)

질의내용 : 질의1) 장로 임직식에 관해 질의합니다. 노회 고시위원회에서 장로 고시를 통과하였으나 정기노회가 아직 개최되지 않아 정기노회에서 장로고시 합격자를 보고하기 전인 상황에서 교회가 장로 임직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바랍니다.

65. 당회와 제직회 기능

부산남노회장 안진환 장로가 제출한 "부남 제76-85호 / 헌법 질의(2018.7.3.)" 건

해석 :

질의I-1) 헌법시행규정 제3조에 근거 총회헌법이 우선된다.

질의I-2,3) 당회와 제직회는 상호 견제기능이 아니라 협력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이며 당회는 헌법정치 제68조 제3항, 제5항에 근거 소속기관과 단체 및 재정을 감독한다. 따라서 시위 등으로 정상적인 제직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재정집행 등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다.

질의I-4,5) 재심의 중임.

질의II-1~4) 교인은 총회헌법 정치 제15조에 근거하여 의무를 다해야 하고, 치리회는 총

회헌법 정치 제63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교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며,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총회헌법 정치 제19조에 근거하여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이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이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당회는 총회헌법시행규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당회의 결의는 정당하며, 이는 헌법권징 제3조와 충돌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 질의I-1) 총회 헌법에 명시한 사항과 개교회의 당회결의가 충돌할 때 총회헌법이 우선되어야합니까? 당회 결의가 우선되어야 합니까?

질의I-2) 총회헌법에 당회와 제직회는 각각 해당기구의 권한과 의무가 명시되어 상호 견제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와 상충되게 당회의 요구에 따라 제직회의 권한을 당회의 권한과 의무로 위임받아 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질의I-3) 위 2호가 위법이 아니라면 현재 총회에서 헌법으로 규정되어진 각 기구의 권한과 의무를 당회의 요구에 의하여 당회로 위임해 주어도 됩니까?

질의I-4) 당회 소집 시 정상적인 소집절차를 지켜서 당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당회원 전원에게 소집통보를 하지 않고 특정 당회원들에게만 통보하여 당회를 개최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질의I-5) 만약 위법이라고 하면 그동안 소집절차를 위반하고 실시한 당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있다면 그 결의가 무효입니까?

질의II-1) 교인증명서 발급요청 거부의 이유의 근거로 총회헌법 정치 제15조의 적용이 부합한가?

질의II-2)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당회의 결의로만 하고 교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

질의II-3) 당회의 결의가 정당하다면 총회헌법 권징 제3조에 상충되는데 당회의 결의가 유효한가?

질의II-4) 당회결의와 총회헌법 권징 제3조가 충돌할 때 당회결의가 우선인가 총회헌법이 우선인가?

66. 담임목사 연임 청빙

경남노회 남지교회 최홍성 목사가 제출한 “남지 제01호 / 헌법질의 의뢰의 건(2018.7.31.)”

해석 :

질의1) 헌법정치 제28조 제3항 제2호에 근거 담임목사 연임청빙은 3년으로 한다.

질의2)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75조 제3항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3) 총회 제96회기 헌법해석 63번은 해 교회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질의내용 : 질의1) 담임목사가 6개월 시한부 목회를 하기로 약속하고 연임절차를 밟아 노회의 허락을 받았다면 현재 남지교회의 담임목사직과 당회장권이 유지되는 것인지?

질의2) 소속 치리회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고소,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75조 제3항, 제4항에 위배된 것이 아닌가?

질의3) 총회 제96회기 헌법해석 63번의 해석에 비춰볼 때 당회결의 없이 교회 재정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이들의 집행은 위법이 아닌가?

67. 총회산하기관 및 선교재산 관련 법 개정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79 / 서류 이첩(2018.4.17.)"-총회산하기관및선교재산문제연구위원장 정해우 목사가 제출한 "총회산하기관, 선교재산관련 보고 및 청원(2018.4.10.)" 건 중 2항에 대한 건

해석 : 총회 헌법을 개정하여 해결하기보다는 기관 자체 정관에 의하여 규제함이 바람직하다.

질의내용 : 2) 총회 산하기관과 중장기적으로 총회의 교세 변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가. 총회유지재단에 총회 규칙상 당연직으로 파송하도록 되어 있는 장로 부총회장과 함께 총회 임원 1인을 추가로 파송토록 '공천위원회 조례'와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에 반영하도록 개정

나. 총회연금재단에 당연직으로 파송하도록 되어 있는 총회 사무총장과 함께 총회 임원 1인을 추가로 파송토록 '공천위원회 조례'와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에 반영하도록 개정

68. 교단 탈퇴 불인정

서울동노회장 김권수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98-85호 / 헌법 질의 보완 재 요청(2018.6.11.)" 중 청량리중앙교회 건

해석 :

질의1~5) 교단 및 노회를 탈퇴하는 행위는 헌법시행규정 제87조(재판계류와 교단탈퇴)에

근거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단을 탈퇴하였다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질의내용 : 질의1) 교단을 탈퇴한 자칭 '교인총회' 불법단체에 속하여 위임목사의 허락 없이 모든 위임 목사의 고유 목회 업무인 설교와 예배를 2017년 3월 12일부터 현재 2018년 4월 18일까지 불법으로 방해하여 제반 정규 예배에서 사회와 설교와 축도와 목회 업무 및 활동과 심방을 한 박연식 부목사의 연임청원이 가능합니까?

질의2) 교단을 탈퇴한 자칭 '교인총회' 불법단체의 모체인 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 정 위원인 강성식 안수집사(장로 피택자)와 이강충 안수집사(장로 피택자)가 서울동노회 탈퇴를 결의하여 청량리중앙교회의 교인이 더 이상 아닌데 장로청원이 합법적입니까?

질의3) 교단탈퇴자 박연식 부목사의 연임청원과 질의2) 강성식과 이강충의 장로청원을 제98회(가칭) 서울동노회 정기노회에서 취소 청원할 수 있습니까?

질의4) 교단을 탈퇴한 자칭 '교인총회' 불법단체의 모체인 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 정 위원인 권영화 장로가 서울동노회 탈퇴를 결의하고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44조 원로장로 2항 "원로장로는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한다." 는 법의 절차를 고의적으로 어기고 당회장이 부재한 당회와 당회장이 공동의회 의장인 공동의회도 없이 청량리중앙교회 원로장로로 추대되었다고 합법적인 원로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질의5) 교단을 탈퇴한 자칭 '교인총회' 불법단체의 의장 겸 대표(회장) 이용식 원로목사는 2017년 9월 10일 교인총회에서 의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되고 '교회소속 변경(탈퇴)'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키고 김성태 목사를 해임 결의하고, 조용훈 장로를 해임 제적 결의한 자가 적법합니까?

69. 휴무 장로의 지위

대구동노회 방기광 목사가 제출한 "휴무장로에 관한 질의의 건(2018.7.16.)"

해석 : 헌법정치 제46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에 근거 휴무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시무하며, 휴무연장 허락을 받지 않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무임이 된다. 장로의 휴무는 휴무기간 동안 시무장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기간 쉬는 것이므로 휴무 중인 장로는 노회 장로총대 및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

질의내용 : 모 교회 당회에서 결의하여 휴무장로가 된 사람이 노회 장로총대가 될 수 있는 지 그리고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는지

70. 분립허락된 교회의 장로 지위

서울관악노회장 이정규 목사가 제출한 “관악 제44-46호 / 시무장로 소속 관련 헌법해석 질의(2018.7.19.)” 건

해석 :

질의1) 더처치교회의 장로이다.

질의2) 더처치교회는 노회에서 분립이 허락된 교회이므로 새봉천교회에 시무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정치 제17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11조, 제12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장이 총회의 재심재판국 판결과 총회 헌법 절차에 따라 이상용 장로, 이성광 장로, 김용남 장로, 윤상용 장로를 분립된 더 처치교회의 시무장로로 취임 선포하여 11개월 이상 시무한 장로가 더처치교회의 시무장로인지, 봉천교회 시무장로인지

질의2) 노회에서 분립된 더처치 시무장로로 취임 선포한 이성광 장로, 윤상용 장로, 강해성 장로가 새봉천교회(봉천교회와 세광교회가 합병한 교회) 시무장로로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총회 헌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71. 선거법 위반 여부

남원노회장 기옥종 목사가 제출한 “남원노회 제58-19호 / 송진한 장로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2018.7.24.)” 건

해석 : “사무국-385 / 헌법해석 통보(남원노회)(2018.5.25.)”로 갈음하며 처벌은 권징절차를 따르면 된다.

※ 참고 : 당시 질의한 “남원노회 제57-12호 / 동북교회 직원선거에 관한 총회장님께 질의서 경유 전달(2017.12.21)”의 질의1번과 질의2번의 4)항 건 해석 :

질의1) 선거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위로 말미암아, 동북교회 당회에서 선임장로, 선거관리위원장, 찬양위원장, 노인대학학장의 직분에 대해서 보직 해임한 것은 헌법 권징 제5조 제3항에 의한 책벌 사항이 아니고, 교회 감독기관인 당회의 직무사항이므로 적법하다.

질의2) 토론이나 투표 당사자를 퇴장시키고 토론하거나 투표하는 것은 당회의 결의와 당회의 결의에 대한 당사자의 수용으로 가능하며, 헌법정치 제44조 제2항의 근거 과반수란 찬성 과반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15명 중 7명 찬성은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 또한 원로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는 헌법정치 제90조 제3항에 근거 “당회의 결의로 소집”하고, 공동의회 결의사항은 동법 제5항에 근거 “당회가 제시한 사항”을 결의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공동의회에 “원로장로 추대 안건”상정여부를 위한 당회 개최 및 당회 결의에 따라 부결된 사항을 공동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질의내용 : 1) 본 교회 송진한 장로가 지난해에 교회 직원선거 과정 중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던 처음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과 다른 '사실 확인서까지 만들어서 점차로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심적인 부담을 주며, 여전히 교회에 갈등의 우려를 낳게 하여 이제 그 문제가 잘 종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2017년 9월 12일(화)에 있었던 동북노인대학 일과 중에 송진한 장로가 '2017년도 동북노인대학 편성'에 인쇄된 특정인의 이름에 동그라미 표시 후에 '장로후보', '권사후보'라고 써서 배포했습니다. 후에 노인대학생 한 명이 교회에 그 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교회는 그 문제를 심각하고 여기고 살피는 중에 [총회 규정집 모음 제1편 총회(행정지원본부) 제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4. 가 …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할 시에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 고발이나 기소의뢰 할 수 있다. ⑤ 유인물 배포]에 의거하여 '유인물 배포'를 그 선거법에 준하여 교회직원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총회헌법 제3편 권징, 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9. 타인으로 죄를 짓게 한 경우]를 들어 교회직원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당회가 재판을 하거나 법적인 제재를 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뒤에 첨부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본인과 당회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가급적이면 은퇴를 앞둔 장로의 문제로 재판을 하지 않기를 원해서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와 당회의 조정에 의해서 문제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회와 제직회에서 사과까지 하며 인정했던 자신의 과오를 점차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말과 금년 초 당회 자리에서 "변호사 비를 100만원 주었다."고 했고, 본인의 서약 내용과 다른 총회 질의서 내용을 언급하자 "명예 훼손죄"를 운운했으며, 6월 당회 때에는 "끝까지 해보자."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당회도 모르게 몇 차례 총회에 질의를 반복했고, 당회에 총회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련의 행동으로 교회와 당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등 그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어서 당회는 불가피하게 그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동북교회 당회는 송진한 장로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위와 같은 행위

가 어떤 책벌의 종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72. 다른 교단의 목사 청빙

서울관악노회장 이정규 목사가 제출한 “관악 제44-50호 / 미주 장신대 졸업생의 목사안수 가능여부 해석 요청(2018.7.27.)” 건

해석 :

질의1) 만약 해 목사가 개정 헌법시행규정 공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개정 헌법시행규정 공포 이전에 헌법시행규정 제23조에 근거 청목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헌법을 수강하고 청목과정을 수료한 뒤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 대신(총회 목사고시 없이) 청빙 받은 노회(정치부)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개정된 헌법시행규정 제23조에 근거하여 헌법과목을 포함하여 30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 참고 : “예장총 제102-616호 / 헌법해석 통보(2018.3.22.)” 헌법시행규정이 개정이 될 경우 기존 과정 중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적용여부를 규정해야 하나 이에 대한 조항이 없으므로 만약 해 목사가 개정 헌법시행규정 공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개정 헌법시행규정 공포 이전에 헌법시행규정 제23조에 근거 청목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헌법을 수강하고 청목과정을 수료한 뒤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 대신(총회 목사고시 없이) 청빙 받은 노회(정치부)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23조 개정이전에 이미 미주장신대를 졸업하였고 미주 한인교회 등을 거쳐 관악노회 예수세계교회 시무중인데 헌법시행규정 제23조 개정으로 인해 헌법과목을 포함하여 30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지?

73. 은퇴목사의 회원권

전국은퇴목사회 회장 손승원 목사가 제출한 “31-13 / 은퇴목사 정회원권 회복(2018.7.31.)” 건

해석 :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은퇴목사는 본래 그 소속노회의 정회원이었습니다. 1907년 예수교장로회대한노회(속칭 독노회)가 조직되면서 대략적으로 제정하여 임시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후 1915년에 제4회 총회를 거치고 1921년 제10회 총회에서 완비한 조선장로회 헌법을 채택하여 사용하여 왔다. 이후 헌법은 시대와 상황변화에 따라서 부분 또는 전면 개정을 거듭하였다.(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서문 참조). 이때까지의 본 교단 총회 헌법의 골격이 본래의 미국장로교총회의 헌법 다르게 획기적으

로 개정되기로는 1970년도 제54회 총회(영락교회)에서 헌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개정함으로서 오늘에 이르렀다. 따라서 현재 본 교단 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 10항의 은퇴목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다. 에서 은퇴목사는 노회의 정회원으로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다로 개정되어야한다. 은퇴목사는 그 교적이 소속된 노회에 있어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총회는 은퇴목사의 신분을 노회의 정회원으로 반드시 개정해 주기를 청원 드립니다.

74. 무임목사 처리

여수노회장 강점석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45-50호 / 헌법질의서(2018.8.1.)” 건

해석 : 헌법정치 제27조 제9항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에 근거하여, 노회가 결의한 바도 없고, 시무처도 있다면 무임목사로 선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질의내용 : 질의1) 담임목사가 노회에 시무사임도 하지 않고 교회를 시무하는 중 노회임원회나 노회결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임목사도 연임청원기간이 지난지도 모르고, 시무하는 교회도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노회도 연임청원을 하라는 지시도 없는 상태에서 노회장과 서기가 직권으로 아무런 어떤 절차도 밟지 않고 연임청원기간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전격적으로 무임목사로 선언하고 통지했다면 이 담임목사는 무임목사가 되는지 현명한 해석을 바랍니다.

75. 총회 기소위원회의 기소와 재심

부산남노회장 안진환 장로가 제출한 “부산남노회 제76-96 / 헌법질의 건(2018.7.30.)”

해석 :

질의1,2) 헌법권징 제57조의 2에 해당할 경우 총회기소위원회의 기소는 정당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은 재판국에서 하며, 또한 헌법권징 제124조에 해당할 경우 헌법권징 제125조에 근거 원심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질의3) 헌법권징 제124조 재심사유에 해당할 경우 재심을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시행규정 제73조에 근거 원심 재판국에서 상기 재심 사유에 대한 검토 및 재심개시결정(재심)등을 통해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사항은 재판국에서 판단한다.

질의4) 목사는 헌법정치 제74조에 근거 노회 소속으로 노회 총대권을 별도로 갖지 않고 당연 노회원이 되는 것이며, 총회 총대권은 선출을 통해 갖게 된다. 노회는 회원권 정지, 총회는 총대권 정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목사의 노회 총대권 정지는 적법하지 않다.

질의내용 : 질의1) 목사의 책벌에 관한 절차. 고소(고발)인 4인에 의해 총회재판국으로 제기된 고소건을 총회 기소위원회가 부산장신대학교 이사장 민영란 목사를 상대로 기소제기 하여 노회 재판국을 거치지 않고 총회재판국에서 정직 6개월과 2년간 노회 및 총회 총대권을 정지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총회 기소위원회는 피고 목사의 소속노회 기소위원회로 기소명령을 보내어 노회재판국으로 하여금 1심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기소위원회가 직접 기소하여 총회재판국으로 하여금 판결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법에도 삼심제를 통해 권리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피고목사는 총회재판국 판결 1심 단심으로 종결되는 겁니까?(인민재판입니까?) 아니면 재심청구가 가능한지요? 2심절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질의2) 판결문에 게재된 판결이유. 마. 배임수뢰죄에 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 민영란 목사는 제57조의 2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에서 ① 총회장, 총회 총대 또는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장이나 이사가 총회원 또는 총회 직원,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이사 또는 직원을 그 직무와 관련된 죄과로 고소(고발)하거나 기소의뢰한 사건에 해당된다고하여 노회 기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총회기소위원회로 고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사실관계를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기 이전이며 학교법인 이사도 아닌 8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며 금곡성문교회 위임목사로 재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이사장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건을 가지고 총회 기소위원회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질의3) 고소의 취하에 관하여, 총회 헌법 제50조 [고소의 취하] 1.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 판결선고 이후에 원고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 합의문 또는 고소취하서를 총회재판국으로 제출하면 늦었지만 원심재판국인 총회재판국은 절차를 통하여 판결정정 또는 재심 개시하여 사건을 종결 판결할 수 있는지요?

질의4) 상회 총대권 정지에 대해 총회재판국 판결주문에서 피고는 정직 6개

월과 2년간 노회 및 총회 총대권을 정지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경우에 장로는 상회인 노회와 총회 모두 총대로 참여하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목사는 상회 총대로 총회만 해당되고 노회는 당연 회원이기에 총대권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판결주문대로 직시한 내용대로 한다면 총회총대만 정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회회원권까지 정지되는 겁니까?

76. 노회분립 결의 처리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1937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18.8.13.)” 건 중, 가항. 서울동노회장 김권수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98-112호 / 노회 분립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질의(2018.7.4.)” 건

해석 : 노회의 분립은 헌법정치 제82조 제1항, 제5항에 근거 정기노회에서 재석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노회명, 기관파송이사, 노회재산, 노회에 속한 기관, 분할구역, 구역에 속한 교회명단을 첨부하여 가결하고 총회에 청원해야 한다. 그러나 노회 분립을 가결하고 세부적인 사항(노회명, 기관파송이사, 노회재산, 노회에 속한 기관, 분할구역, 구역에 속한 교회명단)과 추진 전권을 시무 전노회장들에게 위임했다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질의내용 : 헌법 제82조 5항에 근거하여 제98회 정기노회에서 결의하였던 노회 분립(노회 분립 건은 시무 전노회장들에게 일임한다.)을 시무 전노회장들의 분립안 그대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시노회 후 진행하여야 하는 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 당회 소집 절차 적법 여부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1937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18.8.13.)” 건 중, 나항. 부산남노회장 안진환 장로가 제출한 “부남 제76-85호 / 헌법 질의(2018.7.3.)” 건 중 해석I-4,5)번 건

해석 :

질의I-4,5) 당회는 헌법정치 제69조에 근거하여 소집하며, 소집에 대해서는 전화, 문자,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당회원들에게만 통보하였다면 적법하지 않고 적법하지 않는 당회에서 결의한 것은 무효이다. 그러나 당회에서 전교인 기도회를 결의했고, 몇 주에 걸쳐 주보에 광고하여 전교인이 모인 기도회에서 당회장이 당회소집을 광고했다면 헌법정치 제66조에 근거 당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여 결의한 것은 적법하다.

질의내용 : 질의4) 당회 소집시 정상적인 소집절차를 지켜서 당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이

를 위반하여 당회원 전원에게 소집통보를 하지 않고 특정 당회원들에게만 통보하여 당회를 개최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질의5) 만약 위법이라고 하면 그동안 소집절차를 위반하고 실시한 당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있다면 그 결의가 무효입니까?

78. 판결 주문 판단

함께하는 교회 송배일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서(2018.8.10.)” 건과 서울강동노회장이 제출한 “강노 제62-037호 / 헌법 질의의 건(2018.8.16.)” 건

해석 :

질의1,2)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4항에 재판국의 판결에 관하여 법리 판단을 할 수 있다. 본 질의와 관련하여 총회 재판국이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을 받아들인 것이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시행규정 제75조 제3항에 근거 행정소송의 판결에 있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경우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할 수 있다. 또한 질의 자료로 보건대 총회재판국이 주요 청구를 상당수 누락하여 판단했거나 판결에 대한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질의내용 : 질의1) 판결 판시한 “기각” 주문이 교단 헌법 헌법시행규정 제76조 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에 비추어 행정분과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을 받아들여 인용하고 심리했기에 판결이 기각이 아니라 본 취소소송이 “무효이다 아니면 유효하다”등으로 주문판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잘못된 판단 “기각” 주문이 판결된 것에 대하여 헌법적 중대한 흠결사안이기에 법리적 법조문 주문이 위법성 여부 유권해석 판단을 의뢰함.

질의2) 원고한 청구한 서면으로 제출한 청구변경이 헌법권징 제159조 이유가 있다하여서 명시된 판결이유 1.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 변경한 사실과 다르게 또는 주요청구를 상당수 누락하여 확정적 고의를 한 것에 대한 판단 흠결 결격 여부에 대한 법리적 유권해석을 의뢰함.

79. 위탁재판 청원 절차

총회 재판국장이 제출한 “사무국-1835 / 헌법 질의(2018.8.8.)” 건

해석 : 헌법권징 제4조, 제7조, 제16조에 근거 노회재판국을 설치해야 하고, 헌법권징 제56조에 근거 노회기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는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헌법권징 제24조에 근거 치리회장인 당회장이 동시에 당회재판국에 국장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헌법권징 제121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72조 규정에 따라 “위탁재판청원”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 명시된 노회재판국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여 총회재판국에 “위탁재판청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해당노회는 헌법에 규정된 노회재판국 및 기소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교인(직원)이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 재판국이 미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총회 재판국에 “위탁재판청원”을 하였습니다. 총회재판국에서는 위탁재판청원 건을 접수 심리 할 수 있는지?

80. 장로고시 자격 및 장로의 임직

진주노회장 김연석 장로가 제출한 “진주노 제112-30호 / 장로고시 자격 및 장로의 임직에 관한 질의(2018.8.7.)” 건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12조 제2항에 근거 항존직 선출 시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무흠기간을 본 교회 등록일로부터 새로 기산하여야 한다. 제2항에 근거 이명증서를 요구했음에도 2개월 이내에 발부하지 않은 것을 부전지나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경우는 항존직은 종전 교회의 무흠기간과 현재 교회의 무흠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무흠이라 함은 헌법정치 제26조에 근거 “권징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정치 제40조에 의하면〈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된 자라야 한다.〉 되어 있는데 타 교회에서 이명을 한 경우에는 이명하여 등록한 후 개월 수에 관계없이 장로의 자격이 주어지는지?

81. 무흠의 의미

김제노회장 김철안 목사가 제출한 “김제노회 제75-49호 / 헌법 질의 해석의 건(2018.7.30.)” 건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12조에 근거 이명증서를 제출한 경우는 항존직 선출을 하려 할 때 종전 교회의 무흠기간과 현재 교회의 무흠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무흠이라 함은 헌법정치 제26조에 근거 “권징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12조 “이명과 직원”이 교회 등록하여 2년 이상 출석하였고, 이명증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항존직 선출을 하려 할시 무흠기간과 상관없이 이명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선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간에 관계없이 선출할 수 있는지 해석요청

82. 타교단 장로의 시무 절차

순천노회장 김종구 장로가 제출한 “순노 제100-106호 / 헌법 해석 질의 요청의 건(2018.8.10.)”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8항에 근거 타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의 경우는 처음 선택할 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안수는 생략할 수 있다. 단, 세례교인 비례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본 노회 소속 교회에서 타 교단(순복음)에서 장로임직을 받은 자가 본 노회 소속 교회에서 장로 취임이 가능한지

83. 사고노회 임원의 피선거권 제한

총회장이 제출한 “사무국-705 / 헌법 해석 재심의 요청(2018.6.12.)” 건 중

가항. 〈“예장총부 제102-49호 / 헌법해석 보고(2018.11.1.)” 중 6) “예장총 제102-96호 / 헌법 해석 요청(2017.10.13.)”〉 건

해석 : 헌법시행규정은 상위법인 헌법(교리,정치,권징,예배와예식)에 합치하여야 하나 제102회 총회 결의로 개정된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7항은 재판(책벌)에 의하지 않고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정치 제74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전과 같이 동일하게 해석하다.

가. 헌법시행규정은 상위법인 헌법에 합치하여야 하나 제102회 총회 결의로 개정된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7항은 재판(책벌)에 의하지 않고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정치 제74조 1항에 위배된다.

나.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1항에 근거 총회 헌법위원회는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여기서 판단은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3항에 근거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

다.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7조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합헌적인 조항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 시행유보, 효력정지를 할 수 없다는 뜻이며, 헌법위원회가 위헌 판단한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상위법인 헌법 정

신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7항은 헌법 정치 제74조 1항에 불합치 하므로 개정 및 삭제가 필요하고, 절차에 따라 개정 및 삭제 때까지 이를 적용하지 않음이 상위법인 총회 헌법정치 제74조 1항의 취지에 맞다.

질의내용 : 현행 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74조 1항과 이번 제102회 총회에서 결의하여 개정된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수습) 7항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되며 사고 노회가 되는 시점의 노회 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는 수습 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서울동노회 수습 관련이므로 신속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02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 보고 시 헌법시행규정 제33조 (교회 및 노회수습) 7항이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되며 사고 노회가 되는 시점의 노회 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는 수습 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로 개정 되었습니다. 반면에 현행 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74조 1항에서는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서울동노회 수습과 관련하여 이번 제102회 총회 결의로 개정된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수습) 7항에 대한 법적 시행이 헌법 제74조 1항과 관계없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4.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 파송

서울서노회장 장찬호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98-29호 / 헌법질의 해석의 건(2018.8.3.)”

해석 :

질의1,2) 헌법정치 제67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에 근거하여 당회장 결원 시 노회(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전항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당회(제직회)를 할 때는 노회에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지 않을 때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임시당회장의 파송 시까지는 대리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도 할 수 있고, 이 경우의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제2항에 준하여 행사한다. 3개월이 지나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으면 노회가 직접 파송할 수 있다. 따라서 한시적이란 파송하기까지의 기간으로 3개월이다.

질의내용 : 1)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통보한 ‘예장총 제102-378호’와 ‘예장총 제102-435호’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2) 오랫동안 재판이 이어져 온 희성교회 당회가 당회장 결원인 상태(2017.07.11.)에서 현재까지 교회 내 분규와 법적다툼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당회장(원로목사)의 체제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헌법시행규정 제16조 7)

3) 위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본 노회는 준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희성교회 당회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위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통보(예장총 제102호-378호, 435호)가 모호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해석통보(예장총 제102호-378호, 435호) 내용 중 당회장 결원 시 헌법시행규정 제16조 7에 근거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당회(제직회)를 할 때는 노회에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지 않을 때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담임목사 결원 시에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하나 파송여부는 노회에서 판단하고 임시당회장의 파송 시까지는 한시적으로 대리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한다. 상기 해석통보 내용 중 ‘임시당회장의 파송 시까지는 한시적으로 대리당회장을 통해’ 라는 해석 중 ‘한시적이란?’ 무슨 의미의 기간인지요?’

질의2) 총회 헌법에서 정하는 ‘한시적으로’ 라는 기간이 별도 있는지요?

제101회기 헌법 해석 사례

▶ 헌법 질의 해석

1. 재판의 원칙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오균섭 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2016.8.16)” 및 재질의(2016.10.17.)”건

해석 : 질의1),2),3),4),5),6),7),8),9)에 대하여 “재판은 고소 및 고발장이 접수되어야 진행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고 재판을 하였을 경우 그 재판의 효력은 발생하는지요

질의2) 고발장 접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당회 논의도 하지 않고, 고발장을 기소위원회 및 피고인에게도 통지도 않고, 고발장도 없이 기소위원이 심문하고, 재판국에서 심문하였습니다. 헌법의 일반절차를 준수 하였는지요, 헌법의 헌법절차를 무시한 재판의 효력은 발생하는지요

질의3) 고발장이 없다면 소송물이 없기 때문에 무효, 취소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부존재’ 상태가 아닌지요

질의4) 주문 제1항(시무정지 3년)은 헌법에 특정되지 않은 형량인데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질의5) 주문 제2항(즉시 효력을 발생한다)은 제1심재판에도 적용되는지요

질의6)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11월 15일 봉천교회와 세광교회가 합병되어 “새봉천교회” 가 되었습니다. 합병위원으로 노회장님과 봉천교회 측에서 원심재판국장 김승한 목사(성대교회), 재판국 서기 백남주 장로, 세광교회에서 조인훈 목사(현 새봉천교회 당회장), 임승현 장로가 참여하였습니다. 풍문에 오균섭 장로는 시무장로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문 제2항(즉시 효력을 발생한다)을 제시하면서 오균섭 장로는 시무장로가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시무장로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풍문과 양교회 대표자들이 합의하여 배제하였다는 풍문이 있는데, 주문 제2항이나 합의에 의하여 시무장로를 박탈할 수 있는지요

질의7) 권징 제4조(재판의 원칙) 제1항에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심재판국(재판국 서기 백남주 장로)에서 업무(재판)를 방해하여 항소기간이 되었다면 질의자의 재판은 끝이 난 것인지요, 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재판을 받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요

질의8) 그리고 항소장을 원심재판국에 접수한 2015년 10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재판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규정이 있는지요

질의9)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같이 헌법위원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관계행정기관(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데,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은 부존재, 무효인 원심재판국의 판결을 무효화 할 수 있는지요(지금까지 총회장님 명령도 거부하고, 막무가내로 일관하는 원심재판국의 소이를 보아 도저히 소송기록물을 제출하여 재판을 진행하리라는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총회 기소위원회로 하여금 재판국에 기소한다거나 재판국에서 자판하는 길은 없는지요, 아니면 원심재판국 의도대로 어느 누구, 어느 기관도 손을 쓰지 못하고 3년 시무정지를 당해야 하는지요, 이 지경이 되면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를 신뢰하지 않듯 총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불법재판으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와 가정, 자녀들에 대하여 신앙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해석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소송절차 / 재판국의 결정

경동노회장 임종수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44-132호, 헌법 질의(2016.9.7.)"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2절(기소) 제66조(재판국의 결정) 제1항, 제83조(증거조사의 방식) 제3항, 헌법시행규정 제70조(변론의 분리, 병합, 재개)에 의거 적법하다."

질의2),3),4)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2절(기소) 제59조(기소의 제기), 제60조(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에 적법하지 않다."

질의5) 가,다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5장(상소) 제2절(항소) 제98조(항소이유서와 답변서), 헌법시행규정 제45조(답변서 준비서면) 제4항에 의거 적법하지 않다."

질의5) 나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9조(해명권, 질문요청권)에 의거 적법하

지 않다.”

질의5) 라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2절(기소) 제66조(재판국의 결정) 제1항, 제②호에 의거 재판국이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6)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7),8)에 대하여 “노회기소위원회가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

질의9) 가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9) 나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사유로 총회 재판국이 직접 재판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질의9) 다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5장(상소) 제3절(상고) 제114조(상고재판국의 심판) 제8항에 의거 적법하다.”

질의10) 가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10) 나에 대하여 “적법하다.”

질의10) 다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10) 라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45조(답변서 준비서면)에 의거 적법하다.”

질의11)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12),13),14)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15)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3항에 의거 당회장권이 정지된 당회장은 회원권이 없다.”

질의16)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4조(당회의 조직) 제1항, 제66조(당회의 개회성수)에 의거 적법하지 않다.”

질의17)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1조(제직회) 제1항에 의거 안수집사 무효가 확정되었다면 제직회 회원이 아니다.”

질의18)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54조의 3[고소(고발)의 기소의뢰의 제한]에 의거 책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질의19)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5장(상소) 제3절(상고) 제114조(상고재판국의 심판) 제7항에 의거 적법하다.”

질의20)에 대하여 “재판 당사자인 노회 기소위원장에게 직접 정본을 발송하는 것이 적법이다.”

질의21)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제3항,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3절(재판) 제80조(증거재판주의)에 의거 판결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재항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인과 피고소(고발)인이 서로 다른 사건을(사건번호 제100-35호,제100-38호), 재항고인이나 피재항고인이 병합 심리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①재판국의 일방적 판단과 임의로 사건을 병합하여 조사한 것과, ②이런 병합 조사한 사실을 피재항고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2)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재항고 사건을 조사하고 변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①원고 소(고발)장에 없었던 내용(허위사실 포함)과. ②기소위원회가 불기소 결정을 한 이후에 발생한 사실(노회 기소위원회가 원 고소(고발)장에 없어서 조사하지도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음)등을, 재항고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근거로 임의로 추가하여 조사하고, 심문하며, 이를 근거로 판단, 기소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3) 재항고인이 기 고소(고발)한 사실 이외에, ①원고소(고발)장에 없었던 내용(허위사실 포함)과, ②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한 이후에 발생한 사실(노회 기소위원회가 원 고소(고발)장에 없어서 조사하지도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음)등을 준비서면을 통해서 추가하여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4) 재항고인이 재항고 중에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원고소(고발)장에 없던 내용과,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실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이를 판단하여 원 피고소(고발)인에게 면직과 출교의 책벌을 판결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5)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재항고 변론을 진행하면서,

가. 재항고인이 제출한 ①준비서면과 자료를 접수하였음에도, ②피재항고인에게 고지하거나 통보하지 않고 재항고 변론을 진행한 것이 적법한지

나. 변론과정에서 원 피고소(고발)인에게 재항고인의 준비서면과 관련한 심문과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피재항고인에게 재항고인의 준비서면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답변할 기회를 일체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다. 총회 재판국 권징분과장과 서기가 피재항고인인 노회 기소위원장에게 재항고인이 제출한 변론자료나 준비서면을 발송하지 않았음에도 발송하였다고 허위로 고지하며, 변론을 진행한 것

이 적법한지

라. 재항고 변론을 불법으로 진행하고도 당일에 즉석에서 재항고에 대한 기소 결정을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6)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재항고 결정문에 기소를 명령하면서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책벌을 “면직과 출교로 할 것” 을 명시하여 기소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7) 재항고 결정문 정본의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기소하라는 헌법시행규정 제3장 제67조 제6항의 접수일 기산일은 1)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재항고 결정을 한 날, 2)총회 재판국(권징분과)에서 결정문 정본을 작성, 발송한 날, 3)노회 서기부가 결정문을 접수한 날, 4)노회기소위원회가 결정문을 접수한 날, 이 4가지 중에 어느 날짜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8) 2016.7.21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치리회장인 노회장에게 재항고 결정문 발송 [수신 : 치리회장, 참조 : 노회 기소위원장]
2016.7.22 노회 서기부 재항고 결정문 접수
2016.8. 2 노회 기소위원회 재항고 결정문 이첩받아 접수
이러함에도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은 노회 서기부가 재항고 결정문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①임의로 10일을 계산하고 (2016.8.1.) ②재항고인의 2차 재항고 신청이 없었음에도, ③익일인 2016.8.2. 재판국 스스로 재항고 2차 결정을 한 후, ④2016.8.3 2차 재항고 결정문서(발송문서와 결정문)를 작성, ⑤2016.8.4. 발송한 것이 적법한지

질의9)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위 ‘질의8)’ 의 재항고 사건에서
2016. 8. 2. 2차 재항고 결정 결의
2016. 8. 3. 2차 재항고 결정문서 작성
2016. 8. 4. 2차 재항고 결정문 발송 [수신:치리회장, 참조:노회 기소위원장]
2016. 8. 5. 노회 서기부 접수
(노회 기소위원회는 2차 결정문 미접수)
2016. 8.12. 노회기소위원회에서 동 사건 노회 재판국에 기소
[사이에 8.13 토요일, 8.14 주일, 8.15 광복절]
2016. 8.16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에 기소하였음을 우편 보고
2016. 8.18 고소(고발)인에게 기소통지서 우편 발송
가. 노회 기소위원회가 고소(고발)인에게 늦게 기소통지를 한 것이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을 기망하는 행위가 되는지

나. 이러한 기망행위를 사유로 이미 노회 재판국에 기소된 사건을 헌법시행규정 제3장 제67조 제6항에 의하여 2016.8.23. 총회 재판국이 직접 재판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다.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1심인데도, 무변론으로 단번에 판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2016.8.23 판결)

질의10) 2016. 7. 20. 고소(고발)인, 고발장 치리회장(노회장)에게 우편발송
2016. 7. 21. 치리회, 고소(고발)장 우편접수
2016. 8. 2. 기소위원회, 치리회에서 이첩받아 사건 접수 및 검토, 조사 개시
2016. 8. 4 고소(고발)인 부전지 작성(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제2절 제65조 제2항의 사유발생을 이유로)
2016. 8. 8 고소(고발)인 재항고장 작성, 총회 재판국(권징분과) 직접 접수 (기소위원회 경유하지 않았음)
2016. 8. 19 총회 재판국(권징분과) 노회기소위원회에 재항고장 접수 통보
2016. 8. 22 노회 기소위원회 재항고장 접수 통보 문서 접수

가. 고소(고발)인이 조사중에 있는 사건을 재항고한 행위가 적법한지

나. 고소(고발)인이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제2절 제65조 제2항을 재항고 이유로 함이 적법한지

다.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재항고인의 재항고장을 노회기소위원회 경유없이 부전지에 의하여 직접 접수하여 심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라.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노회기소위원회와 원피고소(고발)인에게 재항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11) 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 당회장권 정지결정으로 노회에서 파송된 대리당회장이 2016.6.25.자 개최된 당회에서 2015.6.10.수 제직회의 결의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당회에서 무효임을 결의한 것이 적법한지

(무효사유 :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13장 제91조(제직회) 제3항 “3. 제직회 소집은 일주일전에 광고하며, 개회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위반→당일 제직회 광고, 당일 제직회 개최)

질의12) 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 당회장권 정지결정으로 노회에서 파송된

대리당회장이 당회에서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을 결의하고 이를 조직한 것이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 제68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제30조 제2항에 적법한지

질의13) 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 당회장권 정지결정으로 노회에서 파송된 대리당회장이 당회에서 교회 재정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것이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 제68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제30조 제2항에 적법한 것인지

(결의내용)

1. 교회 경상 재정의 부족이 심각하여 모든 재정(건축,선교,묘지관리,개안수술, 콩나물전도,기둥,성전장식,성미,전도 등)은 경상비로 통합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통장,비밀번호,인감은 즉시 회수하여 재정부장이 관리하기로 한다.
2. 2016.6.25까지 당회의 승인없이 임의로 지출된 모든 재정은 환수하기로 하고 추후로는 재정부에서 관리하기로 한다.
3. 교회의 분쟁으로 인한 교회측 소송비용과 기타비용은 교회 재정으로 지출하기로 한다.

질의14) 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 당회장권 정지결정으로 노회에서 파송된 대리당회장이 당회에서 “교인의 이동이 심하여 속한 시일 내에 교적부를 정리하기로 한다.” 라는 결의를 한 것이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 제68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제30조 제2항에 적법한 것인지

질의15) 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 당회장권 정지결정으로 당회장권이 정지된 당회장이 당회원으로서의 회원권이 있는 것인지(즉, 대리당회장이 주관하는 당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결의에 참여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16) 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 당회장권 정지결정으로 당회장권이 정지된 당회장이 과거 본인이 직접 은퇴시키고 은퇴를 공포한 장로를 대리당회장이 주관하는 당회의 의사정족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17) 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 당회장권 정지결정으로 노회에서 파송된 대리당회장이 총회 재판국(행정쟁송분과)의 판결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안수집사 무효가 확정된 교인(예총 제100-416호, 2016.7.15,금)을 제직회 서기로 임명한 행위(2016.7.17, 주일 15시)가 총회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한 중대한 위법행위인지

질의18) 당회장이 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 당회장권 정지결정으로 노회에서 파송된 대리당회장이 주관한 당회의 적법한 결의를 “헌법 권징 제1장 제3조 제2항 총회 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와 제6항 직권남용과 직무를 유기한 행위, 제8항 총회 재판국 판결에 순응하지 않은 행위”를 이유로 대리당회장을 고소(고발)한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질의19)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재항고 신청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헌법에서 정한 기간(60일)을 초과하여(180일 이상) 심의하였고,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변론을 개최하며, 재항고인과 피재항고인, 원피고소(고발)인을 수차례 법정에 소환하여 심문하며 조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20)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상고심 및 재항고 결정시, 판결문 정본과 재항고 결정문 정본을 [수신 : 노회장, 참조 : 노회 기소위원장]으로 하여 발송한 것이 적법한지, 재판 당사자인 노회 기소위원장에게 직접 정본을 발송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21)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재항고 사건에서 기소를 명령한 결정이유가 원 고발장이나 경동노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결정문, 기타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결정하였을 경우 적법한 것인지

(예시)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금장교회의 모 목사가 “무임목사로서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를 주관하여 시무장로를 권고 사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헌법의 정치를 어지럽혀서 기소를 결정하고 명령한다.” 고 판시하였는바, 실제는 모 목사가 담임목사 시무기간 중에 적법하게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를 개최, 주관하였고, 시무장로 권고사임이 결의되었음.

3. 책벌의 종류와 내용

진주남노회장 하영남 목사가 제출한 “진주남 제119-39호, 헌법질의(2016.9.22.)”건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제1항 ⑨호, ⑩호,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3(면직 및 출교와 직무와의 관계), 헌법 정치 제11장(노회) 제74조(노회원의 자격) 제2항, 제80조(노회가 비치할 명부) 제7항에 의거 노회 시 출석을 호명할 수 없고, 은퇴 명부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노회장 명부에는 역사적 사실이므

로 기록할 수 있다”

질의내용 / 노회장을 지냈던 분이 3년전 노회재판국에서 면직과 출교를 받았고 총회재판국에 상고했으나 기각을 받았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권징 제5조 ⑦항에 면직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라고 하는데 노회 회무보고서의 해당 교회의 직분자 명단에는 삭제하였으나 전노회장 명단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기노회 시 출석을 호명해야 되는지와 전노회장 명단에서 삭제되어야 하는지

질의1) 정기노회 시 출석을 호명해야 되는지요

질의2) 회무보고서의 전노회장(은퇴) 명단에서 삭제되어야 하는지요

4. 재심재판국의 구성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101-173호, 헌법해석 재심의 요청(2016.11.3/예장총 제101-120호, 총회 재심재판국 구성에 대한 헌법 질의(2016.10.2.)”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제101회 총회는 제100회기에 접수하여 이첩한 사건 4건과 재심개시 결정한 6건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에 한하여 제2재심재판국이 계속 심의, 판결토록 해 달라는 청원 건에 대하여 허락 결의하였으나, 총회 규칙 제3장[부,위원회(전문위원),이사 및 대표] 제17조(특별위원회) 제2항 및 제18조(특별위원회 임무)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2항에 의거 제2재심재판국의 구성은 총회 임원회에서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가. 본 교단 제101회 총회는 제 2재심재판국 보고시 재판판결 경과보고를 받고, 제 2재심재판국이 청원한 “위 보고한 재심청구 사건에 한하여 본 재심재판국이 계속 심의, 판결토록 청원건”을 허락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 12월 헌법개정 이후부터 재심재판국 제도가 운영된 이후 최초로 재심재판국의 존속 청원을 허락한 결의입니다.

나. 제100회 총회까지는 제 1,2재심재판국이 한회기 동안 해당 재심청구건을 심리, 판결한 것을 총회에 판결보고하고 계속 존속을 청원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 후 새회기 총회임원회는 재심재판국을 구성하면서 우선 총회 재판국원중 원판결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국 3년조 국원을 먼저 선임하고, 그 외 국원을 추가 선임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헌법 질의합니다.

질의1) 제101회 총회에서 존속청원이 허락된 제 2 재심재판국이 제100회기에서 접수하여 이첩한 사건 4건과 재심개시 결정한 6

건에 대하여 총회 결의대로 한시적으로 국원 변경없이 계속 심리, 판결함이 적법한지 여부를 헌법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 제9항 밑줄 부분에 근거하여 판단,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헌법시행규정 73조 9항 : "제7항(7.재심의 청구가 재심관할 재판국에 접수되면 원심판결에 관여했던 재판국원은 재심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의 경우 재심재판국이 노회재판국 또는 총회재판국이면 재심청구를 접수한 원심재판국은 원심판결의 심판에 관여한 모든 재판국원의 교체와 보선을 노회 또는 총회(폐회중에는 임원회)에 요청하여 다른 총대로 재심재판국을 구성하여야 하고 이들 교체 및 보선된 재판국원은 그 재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한다."

5. 심판사항 / 위탁재판의 청원

서울강남노회장 이태종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58-206호, 헌법사항 질의서(2016.10.6.)" 건

해석 : 질의 가),나),다),라)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4절(당회 재판국) 제26조(심판사항) 제2항에 근거 당회결의로 기소 및 재판을 대신하기로 한 후 책벌을 논의하던 중 위탁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며, 위탁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최근 서울교회 박노철 당회장 겸 담임목사의 목회와 관련하여 당회원 장로 27명중 18명이 담임목사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8명이 지지하는 입장을, 1명이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도들 중에도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비판적인 측의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고 서로 간에 밴드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 의견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B권사가 A집사에 대하여 작성문 문서가 카톡을 통하여 유포된 문제로 당회에 명예훼손 사유로 고소가 제기되어 당회 결의로 기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당회장은 고소장을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 조사를 완료한 후 재판국 구성단계에서 당회 재판국을 구성하여 정식 재판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헌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당회 결의로 기소 및 재판을 대신하기로 한 후 당회에서 권징사건 심리기일을 정하여 피고소인에게 통지하고 심리기일에 직접 기소위원장으로서 조사를 담당하였던 장로로부터 그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필요한 책벌을 논의하던 중, 당회장은 헌법 제121조 제2항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같은 조 제3항 기타 치리회

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소속노회에 위탁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하여 위 당회에서의 책벌 내용 결정을 유보한 상태에서 귀회에 헌법적 유권해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가) 헌법 권징 제121조 2항에 '당회나 교회의 분쟁으로 당회재판국의 구성 또는 당회의 회집이 불가할 때' 또 제121조 3항에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당회장의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질의 나) 위 사실관계 정리에서 본 바와 같이 당회원 장로들 사이에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다는 상황이 헌법 제12조 제2항의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위 121조 제3항의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중 헌법시행규정 제72조 제4항 ③기타 당회 또는 제직회나 공동의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사건이 같은 헌법시행규정 제72조 제4항 ① 당회장이 고소인(고발인)이 된 경우, ② 당회장이 피고소인(피고발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건 질의내용에서는 제외함)에 관하여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질의 다) 당회장은 위 A집사와 B권사와의 고소사건 이외에 추가로 다른 교인들간의 문제로 신규 접수된 고소, 고발 건에 대하여 아직 기소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 제121조를 적용하여 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한다고 하는바 이에 관하여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질의 라) 헌법 제121조 제2,3항 '당회 재판국이 재판국 구성이 불가능 하거나 치리회 사정상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라고 규정된 것과 관련하여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6. 노회원의 자격 / 상회비 미납 이유로 피선거권 제한 위법

군산노회장 정창환 목사가 제출한 "군노 77-049호, 헌법질의(2016.10.7.)"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3조 제2항, 헌법 정치 제11장(노회) 제74조(노회원의 자격) 제1항,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2항에 의거 상회비 미납 이

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나 각 노회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행정행위(청원권: 행정서류 반려, 보류 등, 총회 제49회, 51회, 61회, 68회 결의사항 참조)는 할 수 있다."

질의내용 / 노회 규칙 제10장 부칙 제2)항의 "상회비 미납 교회의 회원 및 총대장로는 상임부서 배정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해교회는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다(상회비는 추계정기노회 개회 30일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로 1. 본 노회 선관위에서는 30일 이후에 노회 규정을 어겨 상회비를 납부한 모 후보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후보 등록 서류 일체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2. 상회비를 노회 규정에 어겨 30일 전 이후에 납부한 교회 장로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규칙이 적법한지, 그 규칙에 의한 부노회장 피선거권 제한이 적합한지

7. 특별소송절차 / 재심재판국이 파기 환송한 총회재심재판국 사건에 관한 총회 재판국의 자판 여부

총회 재판국장 김진욱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재 제101-1호, 헌법질의(2016.10.12.)"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5조(재심의 관할), 헌법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4항 등에 의거 재심재판국의 파기환송 판결은 관할권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다."

질의내용 / 1. 사건 표시(재심 제100-2사건)

가. 사건명 : "예총재판국 사건 제 99-10호/익산노회 이리남중교회 홍광수 장로가 익산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무효확인의 소-담임목사 청빙허락 무효확인)"에 대한 재심 청구

나. 재판당사자

원고(재심청구인):홍광수, 65세, 남, 장로, 전북 익산시 금이면 용순1길 68

피고(피재심청구인):경정 전:윤갑수(익산노회장), 남, 목사

경정 후:송영대(익산노회장), 남, 장로

전북 익산시 인북로 131-4 익산노회

제3자 소송참가인:박춘수, 56세, 남, 목사

전북 익산시 인북로 226-17(이리남중교회)

변호인:이영수 65세 남 안수집사 전북 익산시 인북로 226-17

다. 행정소송의 종류 :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변론종결일 : 2016년 9월 7일
판결선고일 : 2016년 9월 7일
주문 : 1.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라. 총회재판국 판결 표시(예총재판국 사건 99-10호)
주문 : 1. 소를 각하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변론종결일 : 2015년 9월 8일
판결선고일 : 2015년 9월 8일

마. 재심청구 취지
1. 총회재판국 판결의 파기를 구합니다.
2. 박춘수 목사의 이력 허위기재의 불법으로 허락된 익산노회의 이리남중교회 위임목사 청빙승인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질의) 재심재판국이 파기 환송한 총회재심재판국 제100-2행정 사건에 관하여, 총회재심재판국은 2016년 9월 7일 총회재심재판국 제100-2행정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총회재판국에서 자판할 수 있는지 여부

8. 적용범위 / 상위법규에 위배되는 정관규정 개정

서울강남노회장 이태종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58-224호, 서울교회 정관과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에 대한 질의서 이첩 건(2016.10.17.)”과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 외 17인이 제출한 “경위진술 및 질의에 대한 의견서(2016.10.25.)”건

해석 : 질의1),2),3)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3항에 근거하여 1992년 2월 1일(토)에 제정되어 시행하여 온 바, 상위법규에 위배되는 정관규정이 있다면 개정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서울교회 정관 제15조(개정 및 효력발생)상, 본 정관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하고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자료(증거1)에 의하면 1992.2.1.(토) 제정된 것으로 확인됨. 당회는 통과되었는지 몰라도, 공동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서울교회 정관이 총회 헌법에 비추어 효력이 있는지

질의2) 위 규정 제2조(기간) 제3조(신임투표와 재 시무)상, 담임목사가 6년 시무 후 1년의 안식년을 마친 다음, 당회 3분의 2찬성에 의한 신임투표를 거쳐 재시무한다 라고 하는데,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

식년제 규정(증거2)은 제정근거인 정관의 위임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 바, 동규정은 총회 헌법에 비추어 효력이 있는지

질의3) 예장 통합 교단 헌법 제2편(정치) 제4장 제22조는 목사의 시무연한을 70세로 규정, 헌법시행규정 제1편(정치) 제26조(직원선택) 제7항은 헌법 권징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에 의거 목사,장로,집사,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하여 항존직의 경우 재신임투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상치되는 서울교회 정관,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발생 여부

9. 담임목사 청빙

경동노회장 이상철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45-23호, 헌법해석 질의 건(2016.10.18.)과 경동노회 금장교회 양병갑 장로 외 1인이 제출한 '총회 헌법위원장과 위원께 드리는 당부의 글(2016.10.18)' 건과 경동노회 권오정 목사가 제출한 '진정서(2016.11.14)'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수습전권위원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제직회를 소집한 것은 적법하나, 당사자를 재청빙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질의내용 / 제144회 경동노회는(2016.4.5) 금장교회의 당회의 갈등으로 담임목사가 사임을 하고 후임 담임목사 청빙과정에서 당회의 갈등의 내홍이 더 심화하여(시무장로 4인중 2:2) 금장교회 수습을 위해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습전권위원회는 금장교회의 수습을 위해 합의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쌍방의 주장만 내세워 합의가 원만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금장교회의 수습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습하기 위하여 총회 헌법 정치 제63조와 헌법시행규정 제33조 3항에 의거 당회장권, 당회원권(시무장로)을 3개월 정지시키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습니다.

질의) 수습전권위원이 당회장권, 당회원권을 정지시킨 가운데서 임시당회장이 제직회를 소집하여 담임목사 청빙을 하는 것이 적법한 지

10. 목사의 자격 / 무흠의 기산과 적용

전남노회장 서순석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7-153호, 이혼한 전도사의 목사안수 받을 수 있는 자격 여부 해석 청원(2016.10.17.)"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26조(목사의 자격), 헌법시행규정 제27조(무흠의 기산과 적용)에 의거 목사안수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목사안수 가능)."

질의내용 / Y 전도사는 2013년도에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2014년도 8월에 전남노회 구역에 '주님의벗 교회' 개척하여 현재 20명 이상의 성도들이 회집

하는 교회의 담임전도사로 장래가 총망되는 전도사로서 2016년 가을 노회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부에서는 당사자의 이혼 경력이 4년차이기 때문에 총회 헌법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신청하여 해석 결과에 의거하여 목사 안수를 허락하기로 결의하고 유권해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현재 총회 직영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이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만일 이혼 경력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문제를 가지고 관계기관에 민원등을 제기하면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경력자를 목사 안수를 주지 않으려면 차제에 헌법과 학칙을 개정하여 이혼경력자는 신학대학원 입학자격이 없다는 것을 결정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전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한지 4년차인 Y전도사가 전남편의 정신질환 등으로 가족(남편과 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2편 정치 제26조”, ‘헌법시행규정 제27조(무흠의 기산과 적용)’ 에 적법하여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요청

11.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 당회의 개회성수

평양노회 두레교회 김대일 외 1인이 제출한 “헌법 질의(2016.10.10./10.24)” 건과 차영근 목사 외 1인이 제출한 “헌법 질의(2016.11.1.)”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14조(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제1항은 효력규정으로,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게시판에만 게시할 경우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6조(당회의 개회성수)에 의거 위법 당회에서 결의된 처분은 무효이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헌법 제2편 제19조는 ‘교인이 신고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않고 6개월 이상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14조 제1항은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

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게시판에만 게시할 경우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14조 제1항이 단순한 훈시규정인지 아니면 효력규정인지 여부, 즉 실종교인 및 회원권정지 교인 처분을 교회의 주보에 게시하지도 않았고 게시판에 공시하지도 않은 경우 그 실종교인 및 회원권정지 처분의 효력이 유효한지, 즉 위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14조 제1항이 단순한 훈시규정이어서 주보 게시나 게시판 공시절차를 하지 않더라도 당회 결의만으로써 그 처분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위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14조 제1항이 효력규정이어서 당회 결의가 있더라도 실종교인 및 회원권정지 교인 명단을 주보에 게시하거나 게시판에 공시하여야만 실종교인 및 회원권정지 교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실종교인 및 회원권정지 교인 처분을 위한 당회 개최시 당회원 반수 가량에게 당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도 않고 열린 당회에서 실종교인 및 회원권정지 교인 처분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당회 결의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

12. 장로의 휴무

순천노회장 윤태현 목사가 제출한 "순노 제98-97호, 휴무장로 복직에 관한 질의(2016.10.25)" 건과 "순노 제99-02호, 자료송부(2016.11.1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6장(장로) 제46조(장로의 휴무)와 헌법시행규정 제25조(목사, 장로의 휴무) 제4항에 의거 당회의 허락을 받았다면 휴무장로이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5조(목사, 장로의 휴무) 제3항에 의거 휴무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시무한다."

질의내용 / 순천중앙교회 유석동 장로가 별첨과 같이 장로 휴무서를 제출하였는데 헌법 정치 제46조에 의한 휴무장로 입니까, 정치 43조 1항에 의한 자의 사임 장로입니까, 만약 휴무장로라면 복직절차는 헌법시행규정 25조에 의거 휴무기간이 도래되면 자동복귀 되는지요

13. 특별소송절차 / 재심의 관할 / 기소기각,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익산노회 이리남중교회 박춘수 목사 외 1인이 제출한 "이리남중교회 2014-제090호, 헌법해석 질의(2016.10.25)"건과 "이리남중교회 2014-제092호, 헌법해석 질의서 변경

접수 요청(2016.10.31)"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5조(재심의 관할)에 의거 재심은 원심국과 같은 관할이므로 총회 재판국의 상급심이 아니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5장(상소) 제3절(상고) 제115조(기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제116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제117조(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제118조(파기자판), 제119조(파기환송), 헌법시행규정 제3장(권징) 제73조(재심청구) 제3항, 제5항, 제6항에 의거 재심재판국에서는 파기환송할 수 없고 자판하여야 한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8장(행정쟁송) 제2절(행정소송) 제154조(원고적격), 제3절(결의 취소 등의 소송) 제163조(결의 취소의 소), 제164조(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의거 노회원이 아닌 자가 치리회장인 노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원고부적격이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재판국과 재심재판국의 심급에 대한 질문으로 총회 헌법 권징 제125조[재심의 관할] 에 비추어 재심재판국은 총회 재판국의 상급심이 아니라 사료되는데 맞는지요

질의2) 재심재판국이 사건번호 제100-2 행정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다." 고 판결했는데 재심재판국이 판결로 파기환송 할 수 있습니까(이는 헌법 권징 제125조(재심의 관할), 제130조(재심의 심판) 및 헌법시행규정 제73조 3항, 5항, 9항, 10항 등에서 명시한 원심재판국과 재심재판국은 "동일 심급" 원칙을 위배한 판결로 파기환송 한 것은 적법절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재심개시 결정으로 정지되었던 "소 각하"를 판결한 원심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여 확정된다고 여기는데 맞는 것인지요

질의3) 치리회장을 상대로 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 은 ①헌법 권징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치리회장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 당한 자" 라고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증거 할 충분한 사유와 증거가 분명한 자만이 행정소송 원고적격자라 할 수 있으며, ②헌법 권징 제163조, 제164조에서는 결의취소, 결의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당해 치리회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노회원이 아닌 자가 치리회장인 노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고의 자격이 없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14. 교회의 직원 / 당회의 직무 / 제직회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가 제출한 “당회장 단독의 장로 등에 대한 인사배정 및 임명행위의 효력에 관한 헌법질의(2016.11.16)”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2조(항존직), 제5장(목사) 제25조(목사의 직무), 제6장(장로) 제1항, 제9장(치리회) 제2항,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1조(제직회) 제4항, 첨부된 서울교회 정관, 서울교회 운영규정, 각 회칙에 의거 당회장의 당회 논의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독단적인 인사는 무효이며,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1. 박노철 목사는 귀 총회 산하 서울강남노회 소속 서울교회의 당회장인바, 당회장은 2017.11.9(수) 저녁 8시 30분경 서울교회 제402호에서 정기당회로 당회원 재적 장로 26명과 목사 7명 등 33명이 전원 참석하여 개최된 당회에서 당회안건도 상정하지 않은 채 당회원의 결의는 물론 아무런 논의도 없이 2017년 당회원 장로들의 인사배정, 스데반회(안수집사들의 회의체)와 권사회(권사들의 회의체인 제1,2권사회 및 은퇴권사들의 회의체인 샬롬권사회)의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제직회 임원들을 선정하여 일방적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하고 퇴장해 버렸습니다.

2. 당회장은 당회원 장로들의 인사배정을 비롯한 모든 봉사자 임명은 당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라 당회장이 독자적인 권한이므로 당회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고, 11.11(금) 금요기도회에서도 교인들 앞에서 위와 같은 자신의 임명행위가 정당하다고 천명하면서 앞으로 자신이 임명한 장로들을 중심으로 추가로 각 부서의 세부 섬김위원들을 임명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11.13(일) 주일낮 1,2,3부 예배의 각 광고시간에서도 같은 내용을 전 교인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

질의) 그렇다면 서울교회 당회장의 ‘당회논의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독단적인 위 인사배정 및 임명행위는 헌법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가 아닌지요(당회장은 마치 당연히 자신 독단으로 이를 임명할 수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당회도 거부한 채 자신이 임명한 장로들을 중심으로 2017년도 서울교회 각 봉사부서의 세부조직을 준비하면서 직원들에게도 위 임명한 장로들에게 협조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시급히 그 무효여부를 확인받지 않으면 2017년도 서울교회의 인사행정이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이로 말미암아 교

인들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 교회는 회복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상황에 직면해 있어 귀 총회에 유권해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15. 재심청구 / 재심의 관할

총회 재판국장 김진욱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재 제101-1호, 헌법질의(2016.10.12.)”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5조(재심의 관할), 헌법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4항 등에 의거 재심재판국의 파기환송 판결은 관할권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다.”

질의내용 / 1. 사건 표시(재심 제100-2사건)

가. 사건명 : “예총재판국 사건 제 99-10호/익산노회 이리남중교회 홍광수 장로가 익산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무효확인의 소-담임목사 청빙허락 무효확인)”에 대한 재심 청구

나. 재판당사자

원고(재심청구인):홍광수, 65세, 남, 장로, 전북 익산시 금이면 용순1길 68

피고(피재심청구인):경정 전:윤갑수(익산노회장), 남, 목사

경정 후:송영대(익산노회장), 남, 장로

전북 익산시 인북로 131-4 익산노회

제3자 소송참가인:박춘수, 56세, 남, 목사

전북 익산시 인북로 226-17(이리남중교회)

변호인:이영수 65세 남 안수집사 전북 익산시 인북로 226-17

다. 행정소송의 종류 :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변론종결일 : 2016년 9월 7일

판결선고일 : 2016년 9월 7일

주문 : 1.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라. 총회재판국 판결 표시(예총재판국 사건 99-10호)

주문 : 1. 소를 각하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변론종결일 : 2015년 9월 8일

판결선고일 : 2015년 9월 8일

마. 재심청구 취지

1. 총회재판국 판결의 파기를 구합니다.
2. 박춘수 목사의 이력 허위기재의 불법으로 허락된 익산노회의 이리남중교회 위임목사 청빙승인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질의) 재심재판국이 파기 환송한 총회재심재판국 제100-2행정 사건에 관하여, 총회재심재판국은 2016년 9월 7일 총회재심재판국 제100-2행정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총회재판국에서 자판할 수 있는지 여부

16.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광주노회장 한상영 목사가 제출한 “광노제30-169호, 헌법질의(2016.10.20)”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1절(통칙) 제8조(재판국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항 ②호에 의거 해당사건에 대해서는 제척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9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제5항, 제130조(재심의 심판),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4항 ‘헌법 권징 제124조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헌법 권징 제129조 제5항에 의한 재심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재판국의 결정으로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할 수 있다.’에 의거 재심재판국이 재심개시결정을 하여 결정을 하였다면 책벌정지 효력이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재판국원 중 총회 헌법 권징 제3조(권징사유가 되는 죄과)로 총회기소위원회에 기소가 되어 피고인의 신분인데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국원이 되어 본인이 기소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질의2) “원심재판국의 시무해임 1년의 선고를 받아 피고인이 재심재판국에 재심청구하여 재심재판국이 헌법 제129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제5항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헌법시행규정 제73조 4항’ 헌법 권징 제124조에 의한 재심청구는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헌법 권징 제129조 제5항에 의한 재심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재판국의 결정으로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할 수 있다 에 의거하여 재심재판국이 재심 개시결정을 하였다면 ‘무죄추정주의원칙’ 에 의거하여 책벌정지 효력이 있는지요

17.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함해노회장 서성규 목사가 제출한 “함해 제181-7호, 총회 헌법 질의(2016.11.4)” 건과 “함해 제181-36호, 총회 헌법질의 추가자료 제출(2016.12.20)” 건과 “함해 제181-37호, 총회 헌법 질의 추가자료 재제출(2016.12.20)” 건

해석 : 질의1),2),3)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1항, 제2항,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제1항, 헌법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7항에 의거 위법이다.”

질의내용 / 헌법 제2편 정치 제13장 제90조 공동의회 7항에 보면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에 근거하여

질의1) 공동의회 공고(안건/위임목사 청빙)를 2주전에 하고 공동의회로 모였지만 임시당회장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시무장로) 진행) 적법한 것인지요

질의2) 질의1)이 적법하다면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위임목사 청빙 건에 대해 본 노회에서는 청원 건을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행정처리해도 되는지요

질의3) 임시당회장 박범혁 목사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진행된 공동의회 선거를 통해 위임목사(3분의 2이상 득표)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18. 판결 선고기간

광주노회장 정태진 목사가 제출한 “광노제31-3호, 재판기일에 대한 헌법 질의(2016.11.16)”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2조(판결 선고기간)는 권고적(훈시적) 성격이므로 재판국의 판단에 의하여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참조, 제90회기 총회헌법해석 사례6, 70, 79, 제92회기 1, 제100회기 49, 제101회기 35).

질의내용 / 총회 헌법 판결 선고기간(권징 2장 4절 제32조)에 의거하여 노회 재판국의 재판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 노회 재판국 구성의 난항으로 인하여 재판 기일 내에 판결을 하지 못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재판국이 구성되어 아래의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1. 광주동광교회 위탁재판(접수일 : 2014. 9. 19)
2. 광주동광교회 항소심(접수일 : 2015. 11. 20)

19.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 목사의 휴무 / 재판과 책벌의 원칙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 외 17인이 제출한 “질의서(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한 서울강남노회의 위임목사 청빙승인 결의 및 목사 임직행위의 효력에 관한 질의, 서울교회 안식년 및 재신임규정에 대한 질의), (2016.11.9.)”건

해석 : 질의1),2),3)에 대하여 “2009년(행위 당시의 법적용) 당시 헌법 정치 제31조(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제1항,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제1항,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거 1년 이상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는 위법이며 무효이다.”

질의4)에 대하여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지교회 목사와 장로의 건강과 영적재충전을 위하여 안식년을 갖도록 하는 의무규정에 대해 헌법에는 제한규정이 없고, 오히려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36조(목사의 휴무), 제6장(장로) 제46조(장로의 휴무), 헌법시행규정 제25조(목사, 장로의 휴무)에 의거 지교회 내부규정(정관)에 의한 안식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질의5)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2조(항존직),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제1항, 제6조(책벌의 원칙)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선택) 제7항 ‘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 등을 살펴 판단하건대,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부임시 서울교회 정관 규정 준수에 대한 전제조건 하에 부임하면서 당회와 성도들에게도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임 후 지금까지 안식년시행과 재시무 투표규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인 역시도 서울교회 정관 규정에 따라 6년간 장로들의 안식년 및 재시무 이행에 관한 투표를 지금까지 본인이 집행하여 왔으며, 2015년 12월 9일 정기 당회시에도 교회의 규정대로 2017년 10월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재확인된 사실이 당회록에도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박노철 목사는 목회자의 양심과 금반언의 원칙, 신뢰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6년간 본인이 집행해 왔던 바에 따라, 해당되는 자신까지는 위 규정을 준수하여 목회자로서 성도들에 대한 언행일치의 본이 되어야 하고, 그 후로부터 위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3항에 근거하여 정관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내용 / 1.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한 서울강남노회의 위임목사 청빙승인 결의 및 목사 임직행위의 효력에 관한 질의개요

1) 박노철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소속 목사로 충현교회에서 시무하였고, 다시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목사로 분당지구촌교회에서 시무하였고, 독립교단이던 구리지구촌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하였으며, 그 후 본 교단 소속 서울교회의 초대목사인 이종윤 목사의 후임으로 청빙 준비 차 2009년 8월 동사목회를 위한 전도목사로 부임하여, 그 해 9월(가을학기) 본 총회 직영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입학하여 2010년 9월 이수예정이었는데, 2010년 5월에 1년 이상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설교를 제외한 과목에 합격한 후, 2011년 5월에 설교과목에 재응시하여 합격하여 2011년 7월 29일 총회 목사고시 최종합격자로 발표되었으며, 그에 기하여 2011년 11월 8일 서울교회에서 개최된 서울강남노회 제49회 정기노회에서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승인 결의되고 임직을 받았습니다.

2) 2011년 11월 8일 당시 총회 헌법을 살펴보면, 정치 제31조(다른 교파의 목사의 청빙) 제1항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본 총회 직영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 석상에서 서약을 한 자는 본 총회 산하 소속노회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박노철 목사는 노회의 허락으로 2009년 9월(가을학기)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청목과정에 등록하여, 2010년 9월에 이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5월에 아직 1년 이상 이수를 하지 않은 재학생으로 있었는데도, 당시 노회장은 박노철 목사가 청목과

정 미이수자임을 다 알면서도 2010년 5월에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불법)추천함으로써 박노철 목사가 성경, 교회사, 헌법, 논술, 설교 중 설교를 제외한 과목은 합격을 하였고, 설교는 불합격되었으며, 이에 다시 2011년 5월에 목사고시 설교과목에 재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같은해 7월 29일 합격자 발표)

2. 서울교회 안식년 및 재신임규정 질의에 관한 개요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내용(1998.8.15. 제정))

1) 담임목사와 장로는 6년 시무후, 1년의 안식년을 가진 뒤, 재시무 복귀전 그 해 10월에 재시무투표를 받아야 한다.

2) 총회나 노회의 정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당회 허락 하에 안식년을 반납할 수 있다. (단, 그 경우에도 재시무투표는 안식년을 가진 이들과 함께 받아야 한다)

3) 재시무투표는 당회원 2/3 찬성을 얻어야 하고,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공동의회에서 다시 신임투표를 물어 재시무 할 수 있다(자의사직하여 복직한 경우와 같이 2/3찬성 얻어야 함)

질의1) 그렇다면 박노철 목사는 2010년 5월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1년 이상 소정의 과목(성경, 교회사, 헌법, 논술 등)을 이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가 적법하고 합격처분이 유효한 것인지요

질의2) 따라서 2011년 11월 8일 서울강남노회 정기노회에서 박노철 목사에 대한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승인을 한 결의는 무효가 아닌지요

질의3) 현재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4) 지교회 내부규정으로 안식년 제도를 가지는 것이 총회 헌법에 위배되는지요

질의5) 1998년 8월 15일 서울교회 안식년 및 재시무 규정 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에 부임 할 당시 이미 서울교회는 위 규정을 13년째 시행하고 있었고 본인 역시도 서울교회에 부임시 이 규정 준수에 따른 약속을 하고 부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규정에 따라 지금의 원로목사인 이종윤 목사도 1998년, 2005년 2차에 걸쳐 재시무 투표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에 부임한 2011년도부터 6년간 장로들의 안식년 및 재시무 투표를 지금까지 집행하여 왔고 2015년 12월 9일 정기 당회시 박노철 목사는 교회의 규정대로

2017년 10월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재확인된 사실이 당회록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교회 2대 목사인 박노철 목사도 위 규정 및 약속에 따라 마땅히 이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것이 목회자의 도리가 아닌지요

20. 재판비용의 예납

제주노회장 이정일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125호, 기소위원장 경비부담에 대한 해석 의뢰(2016.11.7)"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28조(재판비용의 예납), 헌법시행규정 제43조(재판비용) 제1항, 제2항, 제7항에 의거 '위탁재판을 청원할 경우에 당회장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예납 받은 재판비용의 금액을 노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노회는 예납할 재판비용의 차액을 당회나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추가 징수하지 못한다."(참조,제101회기 47)

질의2)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28조(재판비용의 예납), 헌법시행규정 제43조(재판비용) 제1항, 제2항, 제7항에 의거 노회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질의내용 / 1. 재판 전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와 예납금의 성격에 관한 질의로 헌법 권징 제28조(재판비용의 예납), 헌법시행규정 제43조(재판비용)과 관련하여

질의1) 노회 재판에서 전체 재판비용을 고발(고소)인이 노회에 재판을 청원할 때 내는 예납금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 과정의 전체비용(기소위원회 활동 포함)을 노회의 재정으로 집행하고 예납금은 노회에 귀속하는 것인지

2. 상고 재판시 노회 기소위원회의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의로 노회 기소위원회가 상고하여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 기소위원회의 비용을

질의2) 노회 재정(행정비, 회의비, 여비 등)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원고발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21. 헌법위원회 해석 / 수습전권위원회 파송 및 권한 / 교인의 자격정지 / 교회 부동산 매매 / 당회록

대전노회장 남 청 장로가 출한 "예장 대노 제129-17호, 법규적용에 대한 질의

(2016.12.1)"건

해석 : 질의1),①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제6항에 의거 위법이다."

질의1),②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6항에 의거 재심사유가 된다."

질의2),①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2),②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3절(노회재판국) 제16조(구성)에 의해 노회 재판국이 구성되어야 하나, 재판국 구성과 수습전권위원회 구성과는 별개이다."

질의2),③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3항에 의거 수습전권위원회가 당회정지, 대리당회장 파송요청 등의 권한을 실행할 수 있다."

질의2),④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1항에 의거 적법하지 않다."

질의3),①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3),②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4조(당회의 조직) 제1항,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1항, 제91조(제직회) 제1항,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1항, 제8항에 의거 회원은 아니므로 결의권은 없다. 다만, 분쟁교회의 수습을 위한 범위 내에서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다."

질의3),③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제3항,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제2항에 의하여 행사할 뿐이다."

질의3),④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제3항,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제2항에 의거 적법하지 않다."

질의3),⑤에 대하여 "기본적 목회권을 제지할 권한이 없다."

질의3),⑥에 대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고, 당회가 사고 당회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내부 갈등 이전대로 행하면 된다."

질의3),⑦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3항에 의거 정지된다."

질의3),⑧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16조의 8(당회장 유고 시 대

리당회장) 제1항,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제2항에 의거 청빙할 수 없다.”

질의4),①에 대하여 “유지된다.”

질의4),②③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6항에 해당 하는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동법 제6조(책벌의 원칙) 제1항에 의거 책벌할 수 있다.”

질의5)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다.”

질의6),①②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48조(고소권자), 제51조(고발)에 의거 고소, 고발할 수 있으며, 권징재판에서는 기소위원장이 원고의 역할을 하고, 행정소송에서는 동법 제8장(행정쟁송) 제2절(행정소송) 제154조(원고적격)에 의거 원고가 될 수 있다.”

질의7)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1조(제직회) 제5항 ⑤호, 제14장(재산) 제96조(재산관리 및 용도) 제2항에 의거 제직회 결의 후 운영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실행위원들을 선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질의8),①②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제5항,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1조(제직회) 제5항 의거 회계감사는 당회와 제직회에서도 할 수 있다.”

질의9),①②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제3항, 제4항, 동법 제8장(집사 및 권사) 제59조(서리집사의 임명)에 의거 당회에서 부결할 수도 있으나 타당한 근거없이 부결한 행위는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6항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10),①②에 대하여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으나 결정은 당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질의1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3장(교인) 제15조(교인의 의무)에 의거 '교인은 봉헌의 의무를 잘 감당하여야 한다.”

질의12),①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70조(당회록) ‘당회록은 회집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가 날인을 하여야 한다.”

질의12),②에 대하여 “당회 폐회선언이 없더라도 결의된 사항은 유효하다.”

질의12),③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질의12),④에 대하여 “임시 서기를 선정하여 할 수 있다.”

질의12),⑤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70조(당회록)에 의거 당회장과 당회 서기의 날인만으로도 효력이 있다.”

질의12),⑥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70조(당회록)에 의거 결의된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가 날인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기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며 직무유기이다.”

질의12),⑦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70조(당회록)에 의거 결의된 안건(사항)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가 날인을 하여야 한다.”

질의12),⑧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70조(당회록)에 의거 결의된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가 날인을 해야 효력이 있다.”

질의12),⑨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6항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판단하여 동법 제6조(책벌의 원칙) 제1항에 의거 책벌할 수 있다.”

질의13),①②③④⑤⑥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6장(장로) 제43조(장로의 사임 및 사직) 제1항, 제10장(당회) 제66조(당회의 개회성수)에 의거 처리하면 된다.”

질의14)에 대하여 “질의자들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사료된다.”

질의15),①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2절(기소) 제65조(항고 및 재항고) 제2항, 제4항에 의거 총회재판국에 항고할 수 있다.”

질의15),②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28조(재판비용의 예납), 헌법시행규정 제43조(재판비용) 제1항, 제2항 ③호에 의거 총회 : 금 일백오십만 원이다.”

질의15),③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90조(서식), 서식목록(권징)에 의거하여 처리하면 된다.”

질의16)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제3항에 의거 당회 결의 또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대전노회와 대전노회 재판국이 노회재판절차에 대해 총회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공문(예장총 제100-1383호)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이행 및 고지를 하지 않고 ‘총회 헌법위원회도 틀릴 수 있다’ 주장하며 종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① 대전노회와 대전노회 재판국의 법 적용이 적법한지요

② 총회의 법 해석대로 이행하지 않아 권리를 침해받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대전노회와 대전노회 재판국의 강제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한 법대응 방법은 무엇인지요

질의2) 대전노회가 지교회인 동산교회에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①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시 노회의 정회원이 아닌 언권회원으로 구성해도 적법한지요

② 노회 내 재판국이 없으면 수습전권위원회 파송에 대해 이의제기할 기관이 없게 됩니다. 대전노회 내에 재판국이 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해 파송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③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시 심사기간인 1개월 기간 중에 수습전권위원회가 당회정지, 대리당회장 파송 요청 등의 권한을 실행할 수 있는지요

④ 노회 본회의 때 구성한 수습전권위원들이 사임했습니다. 노회 본회의가 아닌 노회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을 다시 구성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질의3) 대전노회가 지교회인 동산교회에 파송한 수습전권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① 수습전권위원회가 당회장과 당회원의 갈등으로 인해 파송됐고, 그 귀책사유가 당회원에게 있거나 귀책사유에 대한 확정판결이 없을 때 일방적으로 당회장권만 정지시키거나 특정 당회원권만 정지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② 수습전권위원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 참석, 발언, 결의권이 있는지요

③ 수습전권위원과 대리당회장은 재판국, 기소위원회 등을 의결할 권한과 당회의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④ 대리당회장의 교회 재정지출에 대한 결재가 적법한지요

⑤ 수습전권위원회와 대리당회장은 위임목사의 설교권, 성례집행권, 축도권, 사회권 등 고유권한에 대해 제지할 권한이 있는지요

⑥ 대리당회장은 제직회 각 위원장, 각부 부장, 구역장, 교구장, 서기, 회계 등을 임원을 임면할 권한이 있는지요, 대리당회장이 제직회 각 임원을 임명할 수 없다면 교회 인사조직에 초래될 공백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요

⑦ 수습전권위원회에 의해 당회원권이 정지될 경우 당회장권이 정지되면 제직회 의장직도 정지 되듯이 당회원 시무장로 자격으로 부여된 재정위원장, 교육위원장, 장기발전위원장 등의 제직회 위원장 직도 정지되는 것인지요

⑧ 수습전권위원회와 대리당회장은 종전 부교역자 사임으로 신임 부교역자를 청빙할 수 있는지요, 청빙이 가능하다면 청빙에 대한 의결은 어찌해야 하는지요

질의4) 교인의 자격정지에 대해 총회 헌법 제3장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법규와 총회 헌법위원회 공문(예장총 제100-1236호)에 근거하여 6개월 동안 신고없이 교회를 떠난 교인의 자격을 정지하고, 1년을 경과한 교인은 실종교인 처리하려 했습니다.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14조(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1.헌법 정지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를 근거로 당회에서 결의가 부결되었습니다.

① 교인지격정지, 실종교인의 구성요건이 된 교인의 자격(당회원권, 제직회원권, 공동의회원권)은 유지되는 것인지요

② 당회원들이 교회 갈등상황에서 자신들에 유불리에 따라 타당한 근거없이 결의를 거부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③ 당회원 중 '교인자격정지에 대한 행정처리' 에 대한 안건 결의에 대해 타당한 근거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부결시킬 경우 직권남용이 성립 되는지요

질의5) 노회에서 발행한 노회원의 주소,전화번호 등을 노회원이 아닌 노회 소속 지교회 교인이 열람하고 개인적 업무가 아닌 교회 공적업무와 관련해 사용할 수 있는지요

질의6) 대전노회 산하 지교회의 교인이 대전노회 임원들로 인해 불법 사실로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① 지교회 교인이 노회원을 상대로 권징소송, 행정소송, 고소·고발의 원고가 될 수 있는지요

② 만일 원고가 될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질의7) 교회의 부동산 매매에 대해 제직회에서 결의하고, 실행위원들을 임명하여 실행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질의8) 동산교회 내에 해당부서의 재정을 집행한 장부 및 지출증빙 내역이 없습니다.이로 인해 제직회에서 감사요청이 있었으나, 감사의 대상인 장로들이 감사를 거부하고 당회에서도 감사를 부결시켰습니다.

① 당회에서 회계감사에 대한 안건 발의 시 감사의 대상의 위원회의 장으로써 이해가 상충하는 장로들이 결의권을 행사는 것이 적법한지요

② 회계감사에 대해 결의권 행사가 부당하다면 제직회에서 회계감사를 위한 결의를 하고, 회계감사 규정을 정하고, 실행위원들을 지명하고 결의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질의9) 당회(당회장1명, 시무장로 3명)가 교회 인사를 의결할 때 교인들이 '시무장로들의 십일조 불납, 공예배 불참, 직권남용 등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한다' 는 이유로 피택교육까지 마친 안수집사 임직, 교구장, 서리집사, 제직회 부장 및 임원 등의 임명에 대한 결의시 무흠교인 등 타당한 근거없이 시무장로 3인이 결의권을 행사하여 임명을 부결시켰습니다.

① 교인들의 비판의 대상인 시무장로들 결의권 행사가 적법한지요

② 시무장로들의 결의권 행사가 부당하다면 인사에 대한 임명 결의 방법은 무엇인지요

질의10) 2015년 교회가 결의한 예산 항목에 동산교회가 총대로 파송한 장로의 '시찰위원회 수련회 여비 45만원'에 대한 지출 항목이 없습니다. 이를 당회가 제직회 동의없이 예비비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결의하였습니다.

① 당회의 결의가 적법한지요

② 당회의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면 직권남용 등으로 책벌이 가능한지요

질의11) 시무장로들을 주축으로 교인 20~30명이 십일조 등 헌금을 하지 않기로 담합하여 교회재정을 5천만원 정도 적자에 이르도록 하여 재정의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책벌 가능한 법규는 무엇인지요

질의12) 2017년 교회운영을 위한 정책당회 중 각 안건들에 대해 결의를 하던 중 당회장과 당회원 3명의 이견으로 당회가 정지됐습니다.

① 당회 내용을 녹취파일은 있으나, 당회장과 의견이 다른 당회 서기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회 서기에 의해 의결된 안건들이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결의된 안건들은 유효한

지요

② 당회장이 당회 폐회선언이 없이 중지되었더라도 중지시점까지 결의된 사항들은 유효한지요

③ 결의된 안건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론하여 결의를 반대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④ 당회록은 당회 서기가 당회 불참시 당회 서기가 아닌 당회원으로 기록할 수 있는지요

⑤ 당회록은 참석한 당회원 모두가 자필 서명을 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⑥ 당회 서기가 당회록 기재사항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기록을 거부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⑦ 당회록, 제직회록. 공동의회록은 결의된 사항만 기록할 수 있는지요

⑧ 당회록, 제직회록, 공동의회록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회의를 통해 결의된 사항들은 모두 법적효력이 없는 것인지요 (단, 녹취파일, 영상 등은 있습니다)

⑨ 이미 결의된 안건을 재론해 회의를 맴돌게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으로 책벌이 가능한지요

질의13) 당회장에게 시무장로들 5명중 3명의 자의사임서가 제출됐으나, 당회가 사임결의를 부결하였습니다.

① 당회가 업무인수인계 등 타당한 이유없이 사임서를 제출한 장로의 사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막는 것이 적법한지요

② 당회가 장로 사임을 부결해도, 사임서를 낸 장로가 철회의사가 없을 경우 처리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③ 당회의 시무장로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타당한 이유없이 결의권을 사용하여 시무장로의 사임을 부결한다면 직권남용이 되는지요

④ 당회가 시무장로의 사임을 결의할 때 자의사임서를 낸 3명의 장로는 사임결의에 대한 안건에 대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사임서를 낸 장로는 사임 안건이 아닌 다른 장로의 사임에만 결의할 수 있는지요

⑤ 당회가 시무장로의 사임결의를 할 때 사임 당사자가 당회에 참석할 수 없다면, 당회 성립을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되는지요

⑥ 당회장이 시무장로의 사임서를 받으면 사임서를 받은 날로부터

의무적으로 당회결의를 해야 하는 의무시한이 있는지요

질의14) 시무장로들이 헌금,봉사,공적예배를 드리는 것 등의 의무사항은 하지 않고 교인들이 시무장로들에 대해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배임, 횡령, 폭행, 음란죄 등으로 고소, 고발까지 이른 상황입니다. 시무장로들은 당회원권, 대표기도권, 노회총대권 등의 권한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법과 교회법에서 최종판결이 나올때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어 시무장로들의 '무조건 우기기' 식의 권한 행사로 교회와 노회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무장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방법이 가능한지요

질의15) 동산교회 교인 30명이 시무장로 7인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한 권징사건에 대해 대전노회 기소위원회에 2016년 1월 위탁재판으로 접수 됐으나, 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① '불기소 간주' 로 보고 총회 재판국에 항고할 수 있는지요

② 총회 재판국에 상고가 가능하다면 예납금은 얼마인지요

③ 총회 재판국에 상고가 가능하다면 항고장 양식은 어느 것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질의16) 주일예배 대표 기도자 선정은 당회 결의 없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22.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 목사의 이명

서울강남노회장 김예식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59-083호, 미국 해외한인장로회에서 안수 받은 류삼준 목사의 이명에 관하여(2016.12.6)" 건과 "서강남 제59-46호, 목사이명 청원의 건(2016.11.22)"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6조(목사의 자격) 제1항 ②호,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제4항, 제5항에 의거 본 교단 직영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본 교단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해외나 국내에서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하고 해외한인장로회(KPCA)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면 본 교단 소속 교회의 목사청빙이 가능하고, 아울러 본 교단 직영신학대학원에서 헌법과목을 이수하였다면 청목과정의 헌법과목 이수 없이 본 교단 목사이명도 가능하다."(참조, 제97회기 총회헌법위원회 해석 59번)

질의내용 / 류삼준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사정상 안수를 받지 않고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 2014년 9월 해외한인장로회 서노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23조 '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4항은 '다음의 외국 교파의 직영신학대학에 신학석사과정(M.Div)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된 경우 본 교단 직영신학대학교에 헌법을 이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본 노회는 류삼준 목사가 외국 교파의 직영신학대학 신학석사과정이 아니라 본 교단 직영신학대학 신학석사과정(M.Div)을 졸업한 자이기에 이 규정이 준용되거나 보다 융통성있게 적용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 류삼준 목사의 이명여부를 질의

23. 목사의 칭호 / 원로목사

진주남노회장 김창윤 목사가 제출한 "진주남 제120-17호, 원로목사 추대에 관한 질의(2016.12.7)"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제7항, 헌법시행규정 제21조(원로목사) 제1항, 제2항에 의거 원로목사의 자격을 전제로 미리 공동의회를 통해서 원로목사를 추대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질의내용 / 은퇴까지는 시무기간이 남아있는 목사로서 정확히 20년이 차지 않은 때에라도 미리 공동의회를 통해서 원로목사를 추대하는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여부

24. 임직식

광주동노회장 정연수 목사가 제출한 "광동제21-17호, 목사 임직식 관련 노회 결의사항에 대한 적법여부 회신 요청(2016.12.8)"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노회 결의 없이는 목사 임직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목사 임직식을 정기노회 이전에 행하기로 한 노회 결의와 규칙은 적법하지 않다."

질의내용 / 본 노회는 제20회 가을 정기노회(2015.10.26~27)에서 '가을 정기노회시 목사 임직식을 분리하여 별도로 거행' 하고 노회 기간을 하루로 단축하는 것을 다음 봄 정기노회에서 재 논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본 노회는 1항과 관련하여 제20회 봄 정기노회(2016.3.29.)에서 목사 임직식을 정기노

회 이전에 행하고 그 일시는 임원회에서 정하기로 결의하고 노회 규칙(제6장 회의)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목사 임직식을 정기노회 이전에 행하기로 한 노회 결의와 규칙이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32조(목사의 임직)와 상충하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적법한지 여부

25. 책벌의 원칙 /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순천노회장 윤태현 목사가 제출한 "순노 제98-98호, 헌법질의(2016.10.25.)" 건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8항, 제1항, 제2항에 해당할 경우,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1항에 의거 책벌할 수 있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항, 제2항, 제6항, 제8항, 제9항의 죄과 사유로 책벌할 수 있다."

질의4),5)-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제1항, 제3항, 제4항,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4항,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2(전도목사 청빙)에 의거 전도목사 청빙을 청원할 수도 없고 청빙을 허락할 수도 없다."

질의5)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1항에 의거 책벌할 수 있다."

질의6)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수습) 제11항, 제12항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은 판결 즉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에 의거 가능하다."

질의7)에 대하여 "사실이다."

질의8)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6항에 의거 수습전권위원장은 수습전권위원 중의 한 사람이고, 대리당회장을 맡을 수 없다."

질의8-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3항에 명기되었다."

질의9)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8항, 제9항, 제5항, 제2항 등에 해당할 경우,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1항에 의거 책벌할 수 있다."

질의10)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87조(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 제4항에 의거 시벌 진행과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 노회장이 [치리회장(당회장,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았으니] 책벌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합당하지 않다.”

질의11),①②③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제4항,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2조(판결 선고기간)는 권고적(훈시적) 성격의 조항이다.”(참조, 제90회기 총회헌법해석 사례 6, 70, 79, 제92회기 1, 제100회기 49, 제101회기 35)

질의11),④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2절(기소) 제66조(재판국의 결정) 제1항에 의거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질의12)에 대하여 “재항고 건에 대한 기소 제기 명령의 결정문에는 서식 제8-3호[결정문(권징책벌용)]을 준용하여 주문과 결정이유와 결정 고지일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질의13)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2절(기소) 제65조(항고 및 재항고) 제2항에 의거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질의14)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7항,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1항,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 선택) 제7항에 의거 위법이며 가능하지 않다.”

질의15),16)에 대하여 “적법한 행위가 아니다.”

질의17)에 대하여 “정당한 판결이며,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질의18)에 대하여 “고지할 수 있으며, 자판할 수 있다.”

질의19)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7항,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1항,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 선택) 제7항에 의거 위법한 행위이다.”

질의20)에 대하여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 치리회 임원회는 총회 재판국 판결에 순응하지 않는 행위로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이다.”

질의21),2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41조(재판국원의 합의방법) 제1항, 제2항,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3항에 의거 권징의 사유가 된다.”

질의23),25),27)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8조(제척, 기피, 회피) 제10항, 제61조(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 및 제척, 기피, 회피) 제3항을 준용(의거)하여 제척하고 총회임원회는 즉

시 보선하여 충원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24)에 대하여 “총회 기소위원회는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57조의 2(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 제1항~제4항에 의거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한다.”

질의26)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2절(총회 재판국) 제15조(전문위원) 제1항 단서 조항에 의거 총회 현 법리부서장(헌법위원장, 재판국장, 기소위원장, 규칙부장)은 총회 현 법리부서 전문위원이 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장과 부노회장 노회임원이 공동으로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거나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와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를 할 경우 권징의 사유로 책벌할 수 있는지요?

질의2) 노회장과 부노회장 노회임원이 공동으로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거나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와 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를 할 경우 권징 제 몇 조 몇 항에 해당하는 죄과인가요?

질의3) 노회 수습전권위원장과 서기 및 위원들이 공동으로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함은 물론,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와 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를 하며 장로가 공동의회 의장을 하는 불법한 자들과 동조하고 도리어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아 다 지켜보고도 이를 알고도 방조하고, 그 이후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교회 내 헌법을 위배한 자들을 조치하지 않고 도리어 동조할 경우 무슨 죄과의 권징의 사유로 책벌할 수 있는지요?

질의4) 위임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는 자가 노회에 같은 교회에 전도목사로 청빙을 할 경우 노회를 위임목사가 있는 교회에 전도목사 청빙을 허락할 수 있는가요? 총회 헌법 근거하여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질의5) 본질의 자는 아무리 헌법을 살펴봐도, [위임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는 자가 같은 노회에서 부목사 시무중인 같은 교회에 전도목사로 청빙은 불가하고 허락도 불가한 줄 압니다.] 그런데 당시 노회장과 부노회장 노회서기가 정기노회보고서 회의안에 헌의 안건 접수도 하지 않았는데, 살며시 끼워 넣기 식으로 안건을 접수시키고, 노회서기가 임의로 안건을 상정하여 노회에서 허락을 받게 하고, 이

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에서 이는 무효라고 판결을 하였으면 노회장과 노회임원은 즉시 회의를 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행정조치를 하거나 총회판결을 집행하거나 전도목사가 된 목사를 불러 개인적으로 권고를 하여 그만두게 하야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총회재판국 판결에 1년 이상 노회임원들이 불응한 행위를 하고 방치 방조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시행하지 않는 행위와, 이를 알고도 안건을 접수받은 노회서기, 노회장, 노회임원들은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거나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와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타인에게 죄를 범케 한 행위] 는 권징의 사유로 책벌할 수 있는지요?

질의5)-1 위임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는 자가 위임목사가 있는 같은 노회에 같은 교회에 전도목사로 청빙을 할 경우 노회를 위임목사가 있는 교회에 전도목사 청빙을 허락할 수 있는가요?

질의6)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수습) 제11항에 [그 치리회의 수습전권위원회 활동시한은 최종판결 전까지이며 최종 판결 즉시 자동해체된다] 라고헌법으로 명기하는데, [노회의 수습전권위원회가 최종판결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재판국 판결에 불응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 재판 청구하여 “노회의 수습전권위원회의 해체는 최종판결 즉시 해체된다.” 는 정당하다는 결정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한지요?

질의7)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은 판결 즉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함이 현 대한대한예수교 총회의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수습) 제12항에 있는 조항임이 사실인가요?

질의8)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수습) 제6항에 [수습전권위원장 중에서는 대리당회장을 맡을 수 없다.] 라고 명기하는데, 수습전권위원장은 수습전권위원 중의 한사람으로서 위원장인가요, 수습전권위원은 아닌가요? 수습전권위원장이 대리당회장을 할 수 있는지 동 조항에 의해 해석바랍니다.

질의8)-1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몇 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을 정지시킬 수 있고, 권한과 정지처분은 몇 차에 한하여 몇 개월 범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는지요?

질의9) 대리당회장이나 노회서기, 부노회장 총회재판국 판결에 불응하거나 타인에게 죄를 범하는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를 할 경우 그 죄과는 권징 제 몇 조 몇 항에 해당하며 이 죄과가 사실이라면 권징의 책벌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10) 헌법시행규정 제87조 제4항에 의하면, [동 시행규정 제1항, 제2항대로 시벌을 불이행하거나 회피할 경우 확정 판결 이후 60일이 지나면 시벌집행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해 노회장이 [치리회장(당회장,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 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았으니 책벌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시행규정 제87조 제4항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11) 총회 헌법 권징 제4조(재판의 원칙) 제4항에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권징 제32조(판결선고기간)에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재판국은 60일 이내에, 노회재판국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6조(재판국의 결정) 제1항에 [항고서 또는 재항고서의 그 기록을 수리한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재판국은 60일 이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판국은 필요한때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라고 함에 있어,

① 위에 각 조항에 기록된 기일들이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는 불변조항인지, 필요시에 사안의 중대성 또는 재판국에 접수된 제 사건의 분량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는 임의조항인지요?〈총회 헌법에는 분명히 절대 변경할 수 없다는 불변조항으로 명기된 곳이 없습니다.〉

② 만약에 이 기간을 불변조항으로 해석한다면 기간을 넘긴 지금까지의 판결이나 앞으로의 판결은 다 무효인지요?〈무효라면 무효라는 총회 헌법적 근거는 어느 조항인지요?〉

③ 이 기간이 불변조항으로 해석되어 기간 넘긴 모든 사건은 적접하지 않다면 위법으로 보고 무효로 처리해야 하는지, 기간을 넘긴 판결이나 결정이지 다시 법정기간을 넘겼으니 그 판결 무효 소송을 내야 하는지, 총회 헌법위원회가 적법하지 안하다고 하면 다 무효 되는 효력이 되는지, 만약에 법적 기간을 넘긴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해석한다면 총회재판국의 모든 판결은 다 무효인지, 법적기

간을 넘겼으니 그 재판은 무효라는 총회 헌법적으로 명기된 근거를 “유효 무효” 단어 한마디로가 아닌 그렇게 하면 무효라는 법적근거(조항 분명히 있는 명기)를 해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④ 재항고건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은 필요한때에 증거 조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헌법 권징 제66조(재판국의 결정) 제1항에 의거 해석바랍니다.

질의12) 재항고에 대하여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기소를 명령한다〈헌법 권징 제66조 제1항 제2호〉” 라고 하였는데 본 조항을 살피건대 이는 판결이 아니고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항고 혹은 재항고의 결정문은 우리 헌법 서식에 특별히 명기가 없으므로 서식 제8-3호[결정문(권징책벌용)]을 준용할 것으로 봅니다. 이 결정문에 주문과 결정고지일, 결정이유를 명기하여 재판국장과 국원들이 날인하여 당사자들과 치리회에 보낸 줄 압니다. 이 결정문에 주문과 결정 이유와 결정 고지 일을 써야합니까, 쓰지 않아야 합니까?

질의13) 헌법 권징 제65조(항고 및 재항고) 제2항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기소위원회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불기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에 규정에 의한 항고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제4항에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 간주로 인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항 1내지 3항을 준용한다.] 라고 한 근거에 따라 노회기소위원회가 고소, 고발건을 접수하여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통지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각하하거나 반려할 경우에는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요?

질의14) 장로가 공동의회 소집을 하여 장로가 공동의회 의장을 하고 집사가 보조사회를 하여 위임목사 해임을 결정하는 것 총회 헌법적으로 가능한지요?〈헌법조항에 의해 답변바랍니다〉

질의15) 장로가 공동의회 소집을 하여 장로가 공동의회 의장을 하고 집사가 보조사회를 하여 위임목사 해임을 결정하는 것을 수습전권위원장과 위원이 직접 보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수습하지 않는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가요?

질의16) 질의15) 장로가 공동의회 소집을 하여 장로가 공동의회 의장을 하고 집사가 보조사회를 하여 위임목사 해임을 결정하는 것을 당회 노회임원, 노회 서기, 부노회장이 차후에 다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총회 헌법적으로 정당한 행위인가요?

질의17) 장로가 공동의회 소집을 하여 장로가 공동의회 의장을 하고 집사가 보조사회를 하여 위임목사 해임을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고 대한예수교장로교 총회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사회법에서 총회 헌법적으로 판결을 하였는데 이 판결은 정당한 판결인가요? 대한예수교장로교총회 헌법에 반하는 판결인가요? 국가법원에서 총회 헌법적으로 공동의회를 하지 않고, 총회 헌법적으로 권징에 의해 목사를 해임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장로가 공동의회의장을 하여 회의에 의해 해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판결이 났음에도 불법한 장로들이나 노회 전(前) 현직 임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총회 헌법을 위배행위인가요, 합법적인 행위인가요?〈총회헌법위원회는 책임있는 해석을 바랍니다.〉

질의18) 헌법시행규정 제67조 제6항에 [재차기소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노회기소위원회 또는 당회기소위원회가 이를 직접 재판하여 처리한다.]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판국에서 기일 내에 자판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국은 해 치리회에 즉시 보고하게 하거나 고지하는 행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①할 수 있는지, 없는지요? ②재항고에 의해 재차기소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헌법 권징 제 60조 제 1,2항과 시행규정 제64조, 제65조에 의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총회재판국은 시행규정 제67조 제6항에 의거 자판할 수 있음이 헌법에서 확인됩니다. 맞는지요?

질의19) 재항고인들은 장로와 집사가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하여 위임목사를 해임하고, 사회법에 출입금지를 가처분시킨 자들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것은 총회헌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결하여 버렸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행한 불법공동의회를 진행한 당사자들과 그들의 불법공동의회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불법으로 위임목사 해임과 출입금지가처분 한 것이 정당하다고 동조한 노회 수습전권위원장과 서기 이에 동조하고 방조하고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를 하고 정당하다고 함께 동조행위를 한 당시 노회임원들과 부노회장, 당시 서기들은 총회 헌법을 위배한 행위를 한 것인가요? 합법적인 행위를 한 것인가요?〈이 해석을 노회임원들이나 불법한 장로들이 합법적이라 해석한다면 이 해석을 하는 헌법위원회는 함께 불법에 동조한 행위를 하는 헌법위원회라 하여도 헌법적으로 정당한지요?〉

질의20) 총회 헌법 권징 제34조(판결의 확정) 제2항에 [총회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총회재판국에서 [위임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는 자를 전도목사로 청빙하여 전도목사로 허락한 것은 무효이고 무임목사] 라고 결정하는 판결을 하여, 확정된 판결이 이미 났습니다. 그렇다면 노회 임원회가 이 확정 판결 이후에도 노회 보고서에 동 교회 목사로 혹은 부목사로 계속 등재하고 있는 행위가 총회재판국 최종확정 판결에 순응하는 행위인가요. 불응하는 행위인가요?

질의21) 헌법시행규정 제41조(재판국원의 합의방법) 제1항에 따라 재판사건이 합의되어 판결 선고가 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국원이 심판의 합의나 합의 과정과 재판의 비밀을 개인이나 사건 당사자에게 공개하거나 재판에 관한 문서 재판국원이 받은 문서들을 사건 당사자나,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 그것을 고소고발에 행사했다면, 그 심판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고 재판문서를 유출한 재판국원과 유출 받아 이를 행사한 그 사람은 권징의 사유가 되는지요?〈헌법시행규정 제41조 1,2항, 권징 제3조 제13항을 참조〉

질의22) 총회기소위원이 총회장에게 제출한 문서나 총회기소위원회에 제출한 문서가 기소위원 당사자에 직접관련 문서인줄 알고 이를 불법으로 획득하거나 불법으로 가지고 나가 누군가에게 유출하여 이를 타인의 고소, 고발에 사용하게 하는 행사를 하게 했다면 권징 제3조 제13항을 위배한 죄과에 해당한 것인지요?〈총회재판국원이나 총회기소위원들이 사건 관련된 문서나 자신에 관련한 문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출해 가서 행사하려 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 그 죄과가 상당하거나 고의적일 때는 책벌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 여겨 질의함〉

질의23) 총회 기소위원이 고소, 고발당하면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10항을 준용하여 제척하고 총회임원회는 즉시 보선하여 충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①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10항을 준용해야 할 이유는 총회기소위원회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준용함이 맞는지요? ②총회기소위원회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위원 자신들의 사건을 자신들이 조사하고 자신들이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요?

질의24) 총회기소위원회 직무는 총회 헌법 권징 제57조의 2의 1내지 4항으로 한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이 조항의 범위를 벗어나 조사나 기소를 제기한다면 총회기소위원들은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 조항의 범위를 벗어나 조사나 기소를 제기한다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질의25) 총회기소위원과 기소위원장이 재항고을 당하여 총회재판국에서 재판을 받은 사건이 되거나 재항고 당하여 기소제기 명령을 받으면, ①총회기소위원회의 직무를 그대로 계속 수행하여 기소위원장이나 기소위원으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재항고나 기소제기 명령 받은 기소위원장과 기소위원의 직위를 박탈하고 새로운 위원을 보선해야 합니까?〈참고-권징 제4조(재판의 원칙) 제3항을 준용하면 이를 그대로 두고 재판을 되면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반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26) 총회기소위원이나 기소위원장 혹은 총회재판국장과 재판국원 또는 재심재판국장 및 재심재판국원을 총회헌법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면 관련 사건을 공정하게 해석 자문하기보다 총회기소위원(장)과 재판국장과 국원)은 기소나 재판에 관련한 질의 해석에 대하여 자기 부서 법리 이득을 주장하거나 이익을 위해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가능성이 허다(許多)하기에 배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역시 권징 제4조(재판의 원칙) 제3항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앉아서 자문하거나 뒤에서 위원들을 조정하면 현실적으로 재판이나 기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하여야 우리교단 총회가 법리적으로 바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의 상식을 따라 바른 해석을 바랍니다.

질의27) 이 질의서가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으로 관련이 있다면 해석 전(前) 그 당사자에게도 배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배부하지 않고 제척시켜야 하는지요?

26. 책벌의 원칙 / 피고인의 무죄추정

익산노회 새소망교회 황철규 목사 외 3인이 제출한 “헌법질의에 대한 유권해석(2016.11.30)”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거 총회재판국 판결 전에 이미 최고 치리회인 총회(101회 총회 추가보고서Ⅱ 헌법위원회 보고 44쪽, 80번)에서 익산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와 익산노회 재판국의 유죄 선고는 무효라고 보고하여 받았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에서 내린 판결은 위법으로 무효이다.” (참조, 제91회 총회 헌법해석 사례 61번, 제92회 5번, 62

번, 72번, 제98회 8번, 89번, 제100회 63번 등)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 제3조(적용범위) 제1항, 제2항, 제3항,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제6항에 의거 위법이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2항,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3절(재판) 제72조(피고인의 무죄추정)에 의거 위법이다.”

질의내용 / 익산노회는 군산기독학원(서해대학)을 군산노회와 함께 공동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중에 교육부로부터 설립허가 조건인 수익용기본재산 72억 원을 법인에 출연하지 못한 관계로 교육부로 부터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교육부의 요구와 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양 노회는 수익용기본재산 72억 원을 출연하고 학교를 운영할 사람을 각각 영입하여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여 이사회(2013.8.19)에서 익산노회가 추천한 영입자 이모씨가 선정되었고, 법인은 교육부에 보고하였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4.1.16.에 이모씨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법인은 동년 3월에 교육부로부터 정이사를 승인 받아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되었으나, 동년 이사장에 취임한 이모씨는 자신이 기부한 금액과 교비를 횡령하였으며 현재 실형을 받도 복역중에 있습니다. 상기한 사건으로 인하여 익산노회는 그 과정에서 당시 노회장으로 재직한 황철규 목사, 협약조정소위원장 장택순 목사, 노회 서기 윤갑수 목사, 임시이사회 상무이사 황진택 장로에게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이에 익산노회는 군산기독학원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2015.11.5.에 관련된 4인을 노회 기소위원회에 고소하였고, 기소위원회는 재판국에 기소하였으며, 재판국은 2016.4.25.일에 유죄판결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4인은 총회 재판국에 상고(사건번호 제100-37호)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상고인 4인은 총회 헌법위원회에 익산노회의 고소.고발.재판의 중대한 법리와 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7문항의 질의에 대한 해석을 의뢰하여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급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익산노회기소위원회의 기소와 익산노회 재판국의 유죄 선고는 무효이다” 또한 “원인무효, 위법” 등의 해석통보를 받았고(2016.9.23.익산노회도 같은 날 받음), 제101회 총회에도 보고되어 총회가 받았습니다.(추가보고서Ⅱ, pp.44-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노회는 헌법해석을 즉시 시행하지 않고, 제13회 추계정기노회(2016.11.8.)에서 군산기독학원특별위원회(위원장 유종영 목사)의 청원으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습니다.(1.연금재단 및 총회 임원회에 가입자회에 이사장 선임 반대

공문을 보낸다. 2.익산노회의 서해대 사태를 알리고 연금재단 이사장 취임 반대 성명서를 익산노회의 이름으로 교계언론 및 사회언론에 성명서를 발표한다. 3. 총회 재판국에 재판의 정당한 진행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4.서해대 사태로 익산노회 재판국의 판결을 받은 4인에 대한 익산노회 부서 및 위원회의 임원 및 실행위원 선출을 금지한다) 또한 총회 재판국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일 고지도 없이 2016.11.17.에 본 사건을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크리스찬 투데이 2016.11.28, 22일자 보도)

질의1)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 즉 "익산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와 익산노회 재판국의 유죄 선고는 무효이다(2016.9.23. 통보받음)고 해석 통보한 사안에 대해 총회 재판국이 다른 판결(유죄)을 하여 기각한 것은 서로 상충되는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적법한 것인가요, 위법한 것인가요

질의2) 익산노회가 황철규, 장택순, 윤갑수 목사, 황진택 장로의 헌법질의에 대한 총회 헌법해석 통보를 접수(2016.9.23)하고 노회장이 이를 지체없이 시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가요, 아니면 위법인가요

질의3) 익산노회가 헌법해석 통보를 접수하고 제13회 추계정기노회(2016.11.8.)에서 총회 재판국의 종국판결 이전에 상기한 4개항의 결의(책벌에 해당하는 결의)를 하고 집행하는 행위는 적법한가요, 아니면 위법인가요

27. 재판국 / 임원의 선임 및 직무 / 항소이유 / 재판의 원칙

대전서노회 성광교회 나정희 집사 외 2인이 제출한 "헌법해석 요청서"(2016.12.15) 건

해석 : 질의1),①에 대하여 "재판부 설치 및 구성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질의1),②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9조 제4항에 반하는 법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질의1),③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2절(총회 재판국)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직무) 제5항 각 분과 독립 심리 판결 규정(절차) 위반에 해당된다."

질의1),④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5장(상소) 제2절(항소) 제100조(항소이유) 제8항 위반에 해당된다."

질의2),6)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8항에 해당된다."

질의3),4),5),질의7)①,질의8),9)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7항에 해당된다.”

질의7),②,질의10)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제3항,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 제3조(적용범위) 제1항, 제2장(정치)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제1,3,4,6항에 의거 그 판결은 위법하여 정당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사건번호 제100-45호 판결개요-총회 재판국은 2016년 11월 18일, 사건번호 제100-45호 위 상고심 판결에서 1)원심(노회)재판국이 상고인 이상구 목사의 “예수님이 교수형을 당했다” 는 설교 기소 사실에 근거하여, 상고인 이상구 목사가 이단 설교를 수행한 자로 여겨 당회장 면직과 출교를 판결한 것으로 단정하고, ①원로목사의 개인적 설교노트 기록만으로는 정확성을 인정할 수 없고, ②당시 새벽기도회 참석인원 24명 대다수가 그런 설교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③위 설교를 입증할 녹음이나 녹화 증거가 없고, ④이대위 판단과 신학자들의 연구보고 등이 없어, 원심(노회)재판국의 이단 설교 판결은 사실 증거 확인과 양형부과에 중대한 하자가 인정된다며 원심(노회)판결을 파기하고, 헌법 권징 제88조에 의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아울러 상고인 배원주 장로의 김원섭 집사 폭행 사건에 대하여 상고인 배원주 장로의 행위는 김원섭 집사의 등을 가볍게 두 번 친 것은 사실이나, 이같은 행위는 위법될 만한 사항이 아니며 대리당회장을 보호할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뿐, 상고인의 행위가 폭행으로 볼만한 의학적 판단이 전무하여 원심(노회)판결은 증거확인에 소홀했고, 양형에 부적절하므로 상고인에게 폭행죄를 적용하여 책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헌법 권징 제88조에 의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질의1) 총회 재판국 조직과 절차에 관한 헌법 질의-당 사건을 총회 제100회기 총회 재판국 권징재판 분과에 배당하여 심리(2016.9.5.)를 진행하던 중 제101회기 총회로 이첩되어 제2회(10.17, 11.17-18)에 걸쳐 재판국 회의가 있었음에도 각 분과도 조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 합의부(2016.11.17-18)회의에서 본 사건을 심리,판결한 것에 대하여

① 헌법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 제13항 ‘재심재판국은 제1차 조직회의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심을 종결하여야 한다’ 의 제1차 회의를 조직회의로 규정한 헌법시행규정을 준용

할 때, 총회재판국이 101회기 총회 이후, 제1차 회의에서 권징재판 분과와 행정쟁송 재판분과를 조직하지 않은 것은, 헌법 권징 제11조의 2(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제1항 '총회재판국에는 권징재판 분과, 행정쟁송재판 분과 및 전원합의부를 둔다' 의 재판부 설치 및 구성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② 당 사건에 대하여 당초 제100회기 총회재판국 권징재판 분과에 배당하여 심리하던 중, 회기가 바뀌어 제101회기 총회 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이 교체되었으나 아직 권징재판 분과가 구성되지 않은 가운데 사건을 전원합의부로 배당하고 사건 심리를 위한 변론기일을 별도로 잡지않고 원심(노회)재판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의 사실관계를 뒤집는 판결을 하였다면, 이는 헌법시행규정 제39조 제4항 '재판국장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규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는 규정에 반하는 법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③ 헌법 권징 제12조 제5항 '권징재판 분과는 배당된 권징 사건만을, 행정쟁송재판 분과는 배당된 행정쟁송 사건만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여 판결하되, 권징 사건을 행정쟁송 사건으로, 행정쟁송 사건을 권징 사건으로 판결할 수 없다' 의 규정에 의거할 때, 이미 제100회기 총회 권징재판 분과에 배당하여 심리 진행중이던 당 사건을 제101회기에서 권징재판 분과에 배당하여 계속 심리하여 판결하지 않고 전원합의부에서 심리 판결한 것은, 각 분과에 배당된 사건은 독립적으로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규정한, 위 헌법(권징 제12조 제5항) 각 분과 독립심리 판결 규정(절차) 위반에 해당 되는지요

④ 제100회기 총회재판국의 권징분과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심리 진행중, 제100회기 총회가 종결되고 제101회기 총회가 열려 총회 이후 새롭게 총회 재판국원이 구성되어 전원합의부에서 판단하였다면, 당초 권징분과 재판국원이 아닌 새롭게 구성된 총회 재판국원은 헌법 권징 제100조 제8항에서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조항에 해당되는 법규 적용의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질의2) 상고이유서에 관한 헌법 질의-당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11개 항은, 헌법 권징 제100조(항소이유)를 준용

하는 상고이유 제113조를 전체적으로 묶어 상고이유로만 제시하였을 뿐, 8개항 중 그 어느 것과 연계시켜 구체적으로 각 항목에 적용하여 상고이유를 밝힌바가 없고, 또 실제적으로 상고인의 상고이유 11개 항의 내용이 상고이유 제113조 8개항에 해당하는 그 어떤 내용도 없는바, 이같은 상고이유의 적법성에 관하여 총회재판국이 헌법 권징 제114조 제1항에 의거,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고, 헌법 권징 제105조를 준용하는 헌법 권징 제106조 제2항의 법 규정에 따라 판결서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함해도, 이같은 판단을 기재되지 않고 판결했다면, 이같은 판결이 헌법 권징 제124조(재심사유) 제8항(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에 해당되는지요

질의3) 원심 판결 파기후 자판에 관한 헌법 질의-당 사건에 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주문 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헌법 권징 제118조에 의한 '파기자판' 에 해당되는바 총회재판국이 원심(노회)판결을 파기하고 상고인들을 무죄로 자판함에 있어서 원심(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 근원이 소멸된 원심(노회)판결에 근거하여 자판하는 것은 모순과 원인무효에 해당되므로 원심(노회) 판결 파기 후 자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심리 재판과정을 거쳐 피고사건을 재판하여 죄과로 되지 아니하거나 죄과사실이 증명이 없을 때에 헌법 권징 제88조에 의거, 판결로서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이같은 사실 심리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멸된 원심판결에 근거하여 자판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면, 이같은 판결이 헌법 권징 제124조(재심사유) 제7항(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되는지요

질의4) 상고인 이상구 목사에 관한 헌법 질의-원심(노회)재판국은 상고인(원 피고인) 이상구 목사의 1)'예수님이 교수형을 당했다' 는 첫 번째 기소 사실과, 2)기소장 적용규정 1항 끝부분에 "기타 사안은 고소인측은 설교노트를. 피고소인측은 녹취록이 있음을 증거자료로 법정에 제출 예정임"을 밝히고 있는 두 번째 기소 사실과, 3)노회 기소위원회가 원심(노회)재판국의 기소장 변경 요청에 대하여 상고인의 교수형 설교가 상고인의 각서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답변을 해오며, 재판부에 그 해석을 위임한 세 번째 기소

사실에 근거하여, 상고인의 종합적 죄과 파악을 위해 원고측, 피고측이 제출한 방대한 설교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심리하여 설교의 실체와 위법성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 사실과 각서에 의해(원심재판국 판결문 p7-11에서 1)죄과 될 사실 ①~⑥) 유죄 판결한 것을, 총회재판국은 판결문 p3에서 원심(노회)재판국의 죄과사실 ②~⑥을 기소내용과 무관한 것을 죄과에 넣은 것으로 오판하고, 상고인의 설교와 연관있는 각서를 연임청원과만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 둔갑시켜 기소사실에서 불고분리의 원칙을 오판하여 무죄로 판결하였다면, 이같은 불고불리의 원칙 오판 적용이 헌법 권징 제124조(재심사유) 제7항(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때)에 해당 되는지요

질의5) 원심(노회)재판국이 상고인(원피고인) 이상구 목사의 교수형 설교 행위에 관하여 “이단 설교” 라고 해서 판결한 바가 없고(원심판결문 p5-7 참조) 오히려 교수형 설교를 한 사실을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사형” 이라는 개념으로 설교한 것으로 사실 판단하여 이단성 설교 논쟁을 종식시켰고, 다만 상고인이 교수형 설교를 통해 설교를 듣는 자 중, 한사람에게라도 혼란과 의문을 준 것은 헌법 권징 제3조 제1항 “성경상 중대한 계명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총회재판국 판례(예장재판국 사건 제97-11호, 2013년 제98회기 총회회의록 p327-328 판례 참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총회재판국이 원심 (노회)판결과 다르게 “예수님이 교수형을 당했다” 고 “이단 설교” 라고 판결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면 이 판결이 헌법 권징 제124조(재심사유) 제7항(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되는지요

질의6) 원심(노회)재판국이 기소위원회의 기소장에서 적용한 헌법 권징 제3조 제1항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죄과명을 그대로 수용하고, 원심 판결에서도 동일한 죄과명을 적용하여 상고인(원피고인) 이상구 목사에게 유죄를 판결한 당 사건을, 총회재판국이 헌법 권징 제3조 제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행위” 의 죄과명을 적용하여 판결한 것(이대위 판단이나, 신학자들의 연구 보고 필요성 적시가 그 증명임)으로 원심(노회)판결 결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면, 이같은 판단과 판결이 헌법 권징 제124조(재심

사유) 제8항(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에 해당되는지요

질의7) 당 사건에 있어서 원심(노회)재판국이 상고인(원피고인)이상구 목사의 교수형 설교 행위에 관하여 이미 원심 판결문 12쪽에서 밝힌 증거 외에 이상구 목사의 교수형 설교에 대하여 원로목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들은 최경란 권사의 증언 사실을 추가 증거로 총회재판국에 제출하였고, 상고인들이 교수형 설교 당일 24명이 새벽기도에 참석했다는 상고이유 문서에서 탄원인 19명은 들은 사실이 없고 5명은 이사 및 전출로 명시한바, 총 24명 외에 당시 새벽기도에 참석한 길창호, 최경란, 이영자 3인이 현재 성광교회에 출석중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24명이라는 상고인들의 주장이 조작된 것임을 밝혔음에도, 사실증명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입증되지도 않은 상고이유서 내용을 사실심리 증거자료로 삼아 무죄를 선고하였다면,

① 이같은 판단과 판결이 헌법 권징 제124조(재심사유) 제7항(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되는지요

② 당 사건 상고인 이상구 목사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심(노회)재판국이 죄과를 증명하고 유죄로 정당하게 판결한 사안을 총회재판국이 기소 사실에 대한 판단 오류와 원심(노회) 재판국의 판결내용에 대한 판단 오류와 헌법 또는 규정 적용의 판단 착오와 추가 증거자료도 확인하지 않고, 입증되지도 않은 상고이유서를 사실심리 증거자료로 삼아 원심(노회)판결을 파기하고 헌법 권징 제88조에 의거 무죄를 선고했다면, 당 사건 상고심 판결이 합헌인지, 위헌 인지와 이 판결이 정당한 유효 판결인지, 무효 판결인지요

질의8) 상고인 배원주 장로의 김원섭 집사 폭행 사건 판결에서 총회재판국이 2015년 8월 30일 담임목사 연임 청원 제직회 종료후, 김원섭 집사가 대리당회장의 귀가를 가로막으며 삿대질하며 폭언을 했다는 상고인들의 주장을 고소인들의 주장으로 둔갑시켜 판단하고, 제직회 당시 김원섭 집사가 담임목사 연임 안이 24대 14로 가결된 것에 불만을 품고 제직회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김원섭 집사가 제직회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오인 판단하여, 위 내용과 연계시켜 상고인 배원주 장로의 폭행 사건을 정당화하

여 무죄로 판결하였다면, 헌법 권징 제124조(재심사유) 제7항(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되는지요

질의9) 당 상고심 판결에서 총회재판국이 상고인 배원주 장로의 김원섭 집사 폭행 사건을 의학적 판단이 전무하므로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하여 폭행죄란 타인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의학적 판단을 요하는 상해죄와는 달리 진단과는 무관하게 성립되는 죄과로서 총회재판국이 진단과는 무관한 폭행죄를 의학적 판단 자료를 요하는 상해죄에 적용하여, 상해죄와 폭행죄 구분에 대한 법리 판단 착오로 인한 의학적 판단의 전무를 이유로 원심(노회)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판결한 것은 헌법 권징 제124조(재심사유) 제7항(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되는지요

질의10) 당 사건 상고심 상고인(원피고인) 배원주 장로의 김원섭 집사 폭행 사건 판결에서 원심(노회) 재판국이 배원주 장로 본인이 구타 사실을 시인하고 피해자가 "왜 때려!" 라고 고함친 증거자료 녹취록과 폭행을 목격한 2~3명(길창호, 김종성, 이강숙)의 증인이 있어 명백한 범죄가 증명되어 유죄한 판결한 사건을, 총회재판국이 상고인들의 주장을 고소인들의 주장처럼 잘못 판단하여 상고인의 폭행 행위를 대리당회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옹호하고, 배원주 장로의 폭행사실이 김원섭 집사가 "왜 때려!" 라고 고함친 녹취록에서 증명됨에도 "왜 나를 건드려!" 라고 말한 것으로 사실을 약화시켜 상고인들을 비호하고,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입증되지 않은 상고이유서를 사실심리 증거자료로 삼아 중대한 법리 판단 오류와 사실판단 오류를 범하여 원심(노회)판결을 파기하고 헌법 권징 제88조에 의거 무죄를 선고했다면, 당 사건 상고심 판결이 합헌인지, 위헌인지와 이 판결이 정당한 유효 판결인지, 무효 판결인지요

28. 특별소송절차 / 재심사유 /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서문석 장로 외 2인이 제출한 "헌법 질의서(2016.12.20)" 건

해석 : 질의1),①에 대하여 "재판부 설치 및 구성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질의1),②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9조 제4항에 반하는 법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질의1),③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5장(상소) 제2절(항소) 제100조(항소이유) 제8항 위반에 해당된다.”

질의1),④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항, 제6항에 해당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8항에 해당된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4항에 해당된다.”

질의4)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8항에 해당된다.”

질의5)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9조(당회의 회집)에 위배된다.”

질의6)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6항에 해당된다.”

질의7)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항에 해당된다.”

질의8)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제3항에 의거 재판하여야 한다.”

질의9)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7항에 해당된다.”

질의10)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3절(재판) 제82조(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11)에 대하여 “판결(결정)은 재판국의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제3항에 의하지 않고 한 결정(판결)이라면 정당한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사건번호 제100-44호, 판결개요-총회재판국은 2016년 11월 18일, 사건번호 제100-44호 위 재항고건 결정에서, 고발된 여러 죄과사실 중 하나에 불과한 법인카드 횡령건에 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문 하나만을 인용하여 재항고 신청이유가 없다고 한 후 나머지 죄과사실에 대하여는 증거판단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단순히 ‘인정하기 부족하여 재항고신청 이유가 없다’ 며 일방적으로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질의1) 총회재판국 조직과 절차에 관한 헌법 질의-당 사건을 총회 제100회기 총회재판국 권징재판 분과에 배당하여 심리를 하였으나 합의 도출 실패로 더 이상의 심리를 중단한(2016.9.5.)후, 제101회기 총회로 이첩되어 제2회(10.17, 11.17-18)에 걸쳐 재판국 회의가 있었

음에도 각 분과도 조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원합의부(2016.11.17.-18) 회의를 열어 본 사건을 심리, 결정한 것에 대하여

① 헌법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 제13항 '재심재판국은 제1차 조직회의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심을 종결하여야 한다'의 제1차 회의를 조직회의로 규정한 헌법시행규정을 준용할 때, 총회재판국이 제101회기 총회 이후, 제1차 회의에서 권징재판분과와 행정쟁송 재판분과를 조직하지 않은 것은, 헌법 권징 제11조의2(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제1항 '총회재판국에는 권징재판 분과, 행정쟁송 재판분과 및 전원합의부를 둔다' 의 재판부 설치 및 구성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② 당 사건에 대하여 당초 제100회기 총회 재판국 권징재판 분과에 배당하여 심리하여 국원 6명중 5명만 유죄에 의한 책벌에 동의하는 바람에 전원합의부로 이관되었으며(이 절차도 앞서 회기의 권징분과에서 정식으로 전원합의부로 이관되었는지 여부도 당사자에게 통보가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기가 바뀌어 제101회기 총회재판국장 및 상당수 재판국원이 교체되었고 아직 분과조직이 채 구성되지 않은 가운데 이사건 심리를 위한 변론기일을 별도로 잡지도 않고, 또 고발된 여러 죄과들에 대한 심리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기일통지도 하지 않은 채, 또 앞서 권징분과에서 대부분의 국원들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뒤집을 만한 상대방의 새로운 증거가 전혀 제출된 바 없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헌법시행규정 제39조 제4항 '재판국장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규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비롯하여 제반 재판절차관련 법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요

③ 제100회기 총회재판국의 권징분과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마친 후 제100회기 총회가 종결되어 제101회기 총회가 열려 총회 이후 다수의 총회 재판국원이 새롭게 구성되어 전원합의부에서 판단하였다면, 당초 권징분과 재판국원이 아닌 새로이 임명된 총회재판국원은 헌법 권징 제100조 제8항에서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조항에 해당되는 법규적용의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④ 2016년 11월 17일~18일에 소집된 재판국 첫모임에서 재판국장과 주심국원은 당초 이건 재항고 죄과사실 이외에도 기 접수된 재항고장은 물론 첫모임 직전에 추가로 제출된 재항고인들의 준비서면(8,9회)에서 죄과 항목별로, 일자별로 정리되고 추가로 고발된 내용을 사전에 다 알고도 나머지 재판국원들에게는 단순히 위 황령사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검찰 무혐의처분만을 근거로 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주도하여 특별히 새로 임명된 재판국원들은 전후 상황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기각 결정을 하게 하였는바, 이는 담당 국장과 주심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재판상의 결정을 이루어내지 못하도록 부당한 재판진행을 한 것이 아닌가요, 또 이는 신규 재판국원 9명을 기망한 행위로 권징 제3조 제1항에 해당한 죄과를 범하고, 이들의 정당한 재판심리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권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죄과가 아닌지요

질의2) 재항고 전원합의부 재판진행절차에 관한 헌법 질의-당 재항고심에서 재항고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8),9)는 제101회기 재판국이 구성된 이후에 제출하였는바 그 경우 전원합의부 재판국은 지체없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반박준비서면을 재판국에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이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재판국은 이러한 공방절차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앞서 권징분과에 제출된 자료만을 토대로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권징 제124조 8항의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질의3) 재판국은 본래 당사자들의 주장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권징 제101조) 그 밖에 주장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당연히 이 사건 변론과정에 현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판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결정이유에 의하면 서울교회 분쟁의 발단으로 변론과정에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당사자 쌍방 어느 누구도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이 결정문 모두에 전제사실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변론에 나타나지도 아니한 내용을 재판의 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위와 같은 심판자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으로 역시 권징 제124조 제4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질의4) 2016년 11월 17~18일, 당일 지정된 재판국 회의실에서 당 건의 재

판국장과 주심 목사(3년조로 처음 국원이 되었고 앞서 권징분과변론재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이건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함)가 미리 결정주문까지 작성하여 와서, 앞서 재항고인 측에서 교체된 국원들의 사건이해와 파악을 돕기 위하여 2016년 11월 10일에 제출한 재항고인 준비서면(8회,9회)에 대한 답변이나 준비서면을 다른 재판국원들에게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은 채, 2016년 11월 17~18일 기간에 단지 지방검찰청에서의 불기소결정을 "당연히 증거 있는 능력 있는 서류" 로 간주하고 고소장과 재항고장 및 범죄 사실 요지에 적시한 여러 나머지 죄과사실 [①수차의 당회 소집 불허 및 거부한 행위, ②서울교회 원로목사에 인격 모욕과 명예훼손 ③담임목사로서의 수차에 걸쳐 설교 표절하여 서울교회 공예배에서 선포한 행위] 까지도 모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것처럼 오도하여, 다른 죄과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기각 결정을 한 것인바, 이는 명백히 헌법을 위배하고 증거취사선택에 중대한 오류를 범한 잘못이 있으며 따라서 권징 제124조 제8항의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질의5) 재항고 결정문에 판단이 누락된 중요사항에 관한 헌법 질의-재판국원들이 당회장이 당회를 거부하거나 당회소집을 거부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기각 결정한 것은 총회 헌법 정치 제69조(당회의 회집)를 위배된 것이 아닌지요

질의6) 당회장이 당회진행을 거부하고 성안된 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거나 토론을 종결한 후에도 표결처리 등 안건처리를 거부하여 당회가 파행되게 한 죄과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당회진행거부나 안건처리 거부는 물론 매일 첫째 수요일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당회조차 근거도 없는 소란의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아예 소집자체를 거부하는 행위가 권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죄과가 아닌가요

질의7) 피재항고인 목사가 여러차례 표절 설교하고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목회지를 무단이탈 한 죄과사실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권징 상의 죄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는 성경상의 중대한 계명에 위반된 행위들이 아닌가요

질의8) 제자인 후임목사가 스승이며 전임목사를 공개석상에서 표절했다며 인격모욕 하였음에도 이를 권징 제3조 제5항에 해당한 죄과가 아

니라고 기각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이 정당한가요

질의9) 이러한 5),6),7),8)의 죄과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없이 그냥 모두를 포괄하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한 것은 결국 헌법 권징 제124조(재심사유) 제7항(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요

질의10) 2016년 11월 17일-18일에 소집된 총회재판국은 죄과사실중 법인카드 횡령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되었으나 이미 정당한 항고이의절차에 따라 고등검찰청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일방 당사자 편에 서서 기각결정을 하였는바, 위 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는 항고기간 도과 등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그것만으로서는 아직 권징 제8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국가법원의 확정판결서도 아닐 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도 아니므로 결국 이는 이건 결정에서 기각사유로 인용할 만한 당연히 증거능력을 부여할만한 결정적인 증거서류는 아니지 않는가요

질의11) 또 위와 같이 관련 진술이나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변론에서 현출되지도 아니한 사유를 재판 외에서 개별적인 통로를 통하여 전해듣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해명도 듣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서둘러 기각결정 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법리 판단 오류와 사실판단 오류를 범한 것이 되는데 이러한 결정이 유효한 결정인지, 무효의 결정인지요

29.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 위탁재판의 청원. 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가 제출한 “서울교회 제2017-2호, 헌법질의(2017.1.10.)”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제2장(재판국) 제1절(통칙) 제7조(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제2항, 제3절(노회재판국) 제20조(심판사항), 제4절(당회 재판국) 제26조(심판사항)에 의거 당회에서 재판할 수 있으며,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위탁재판) 제121조(위탁재판의 청원) 제3항, 헌법시행규정 제72조[위탁재판의 청원. 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제3항에 의거 위탁재판을 청원할 수 있고, 불복할 경우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2절(항소) 제94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에 의거 항소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서울교회는 현재 극단적인 분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분란의 불씨에 기름

을 부은 자가 있으니 김시환 안수집사입니다. 그는 2012년도부터 위임목사가 된 저를 반대하여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았고, SNS(페이스북)을 통해서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로 저를 이교도에 경도된 이단이라고 단죄를 하였습니다. 2012~2015년 말까지 거의 교회의 출석을 하지 않았고(했다면 2~3번 정도) 헌금생활의 흔적도 전혀 없으면(증거1) 사실상 실종교인이 맞는데, 반대파 장로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실종교인 처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김시환 집사가 저를 반대하는 세력이 모아지자 2016년 1월에 다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그가 와서 첫 번째 한 일이 저를 지지하는 두 분의 권사들을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교회밖에서 SNS를 통해 우리 교회 위임목사님을 거짓으로 비방하고 공개적으로 퇴출운동을 하는 자를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느냐? 요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얼마나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있느냐? 장로님들께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그 당시 선임 장로였던 오정수 장로에게 보낸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한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고소사건이었고, 당회는 피치 못하게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기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부터 매우 소란스러웠던 것이, 현재 다수를 이루고 있는 반대파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강진 장로와 서명철 부목사를 기소위원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했으며, 예상대로 저를 극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강진 장로는 저를 지지하는 두분의 권사들에 대해 기소의견과 동시에 시무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의견까지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진영논리에 편향된 편파적 일이라 생각해서, 당회장의 양심상 도저히 그 의견을 받아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교회가 정상적인 당회라면 이미 기소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당회가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기에 그렇게 해야 하지만 지금의 서울교회 당회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적인 힘을 내세워 소위 다수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당회장인 제가 당회록을 보려면 그 당시 멀티미디어 단장이었던 오정수 장로에게 결재를 받아야 볼 수 있도록 당회가 다수의 횡포로 그런 결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김시환 집사는 동일한 사건으로 두 분의 권사들을 사회법에 고소를 해 놓은 상태이고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존경하는 헌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질의드립니다. 오직 위임목사를 사임시키기 위해서 진영논리에 빠져 다수의 횡포를 부리며 갖은 악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그리하여 자정 능력을 상실한 당회에게, 오로지 담임목사가 흔들리지 말아야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다고 믿어 기도하는 두 분의 권사님들의 징계를 맡길 수 있는 것인지요 검찰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30. 당회장 결원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 교회 및 노회 수습

경동노회장 이상철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45-97호, 헌법해석 재질의 건(2017.1.3.)”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16조의 7(당회장 결원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및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13항에 의거 수습전권위원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제직회 혹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헌법과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질의내용 / 금장교회 담임목사 재청빙이(2015.2) 부결됨으로 인해 대립이 되었고 노회는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수습전권위원회는 합의를 수차례 시도 하였으나 서로의 주장이 첨예함으로(시무장로 4명중 2대 2) 수습을 위하여 (수습전권위원회 결의대로) 임시당회장 파송을 시행하였습니다.

질의) 수습전권위원회가 당회원권과 당회기능을 정지시키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제직회를 통하여 본 교회 당회가 1차 부결시킨 무임목사를 청빙함이 적법한지

31. 장로의 선택

경기노회장 이명식 목사가 제출한 “경기노회 제65-25호, 헌법 질의(2016.12.14.)”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장(원리) 제4조(교회의 직원),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제4항, 제6장(장로) 제41조(장로의 선택)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 선택) 제1항,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3항에 의거 활빈교회 당회가 정한 장로 후보 자격기준과 절차 행위는 위헌이 아니다.”

질의내용 / 본 교회는 2016년 10월 16일에 있었던 장로피택 선거를 앞두고 교회 헌법을 기초로 장로 후보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1) 세례교인 이상으로 교회 출석 7년 이상인 자, 2) 십일조를 실천하는 자, 3) 매주 교회 공예배 2회 이상 출석하는 자, 4)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 5) 교회와 교회부설기관의 직원으로 재직하는 자들 중에 장로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때는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장로 피택시 직원직을 사임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자, 이와같은 기준을 정하고 수

개월 동안 주보를 통해서 1~4번까지의 장로후보 자격기준을 계속해서 공표했습니다. 5번 기준은 교회직원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구두로 전달하고 주보에는 공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23일 있었던 제직회에서 제직 중 한분이 장로후보자 기준 5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의 요지는 자격기준 5번이 과연 교회 헌법상 적법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부설기관의 직원이 장로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장로 피택시 직원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직원의 생계를 볼모로 해서 직원의 장로직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고자 하는 일종의 직원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5번의 자격기준이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을 전교인에게 공표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만 통지한 것이 적법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에 헌법에 근거해서 교회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하는 활빈교회 당회는 노회 규칙부에 활빈교회 당회가 정한 장로후보 자격기준 5번의 적법성 여부와 5번의 자격기준을 전교인에게 공표하지 않고 직원 개인에게 구두로 통지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32. 서리집사의 임명 /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서울서노회장 최내화 장로가 제출한 “서노 제95-10호, 헌법질의해석 요청(2016.11.17.)” 건은 희성교회 당회원 김승호 외 5인이 제출한 “탄원서(2017.1.19.)” 건과 대리당회장 황태주 목사가 제출한 “탄원서(2017.2.2.)” 건과 우동화 장로 외 175인이 제출한 “탄원서(2017.2.24.)” 건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서리집사의 임명은 당회의 고유권한으로 헌법 정치 제8장(집사 및 권사) 제59조(서리집사의 임명),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제3항,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제2항에 의거 할 수 있으나, 예장총 제100-1423호, 헌법해석 통보된 공문(2016.9.22.) 질의1) ②위5의 나4)에 대한 해석으로 갈음하기로 하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제3항에 의거 당회에서 상기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질의4),5)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제8항에 의거 할 수 있으나, 대리당회장의 경우에는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제2항에 의거 부동산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제한된 범위(긴급을 요하는

경우) 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질의6),8)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제1항, 제3항에 의거 할 수 있다.”

질의7),9)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1조(제직회) 제3항, 제4항,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2조에 의거 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저희 희성교회는 당회장 방충근 목사께서 2015.08.25.일자로 총회 재판국으로 부터 24개월 정직 판결 선고를 받아 현재 시벌 중에 있습니다. 금번 본 교회 당회장인 방충근 목사가 노회 재판국(2016.10.21.)에서 또다시 1년 시무해임의 판결 선고를 받음으로 본 교회 당회장의 유고 상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견 되는바, 부득이 시무장로가 중심은 당회중심 체제로 교회의 치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장총 제100-709호(2016.03.04.)와 관련하여 귀 헌법위원회에서 서울서노회에 통보한 헌법해석에서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2항.....대리당회장은 단,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헌법 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3조(임시직), 제8장 제59조(서리집사의 임명),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당회장 유고시 대리당회장)에 의거 할 수 있다.

귀 헌법위원회의 해석 통보한 대로 본 교회는 당회장의 장기간 유고(정직)에 따라 당회 중심으로 교회의 행정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헌법에서 명시한 대로 서리집사 임명을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고, 교회의 임식직 등은 당회에서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질의1) 총회 재판국 판결(2015.08.25.)인 본 교회 당회장 방충근 목사의 정직 24개월 선고에 따라, 당회장이 유고이므로 본 교회 당회에서는 헌법에 따라 매년 실시해 온 서리집사 임명을 위해, 2016년 성도 명부와 서리집사 명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당회에서는 서리집사의 임명 기준으로 교인의 3대 의무인 성수주일을 비롯한 교회 생활과 봉헌의무(십일조, 각종 헌금), 당회의 치리에 순종하는 자인지 여부를 당회에서 심의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임명 적격자들에게 개별 통보하였고, 서리집사로 임명 받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본 교회 당회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였습니다. 상기 본 교회 당회 결의 절차중 대리당회장은 어떠한 결의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단지 회의를 주재하고 진행만 했습니다. 상기의 절차와 결의는 적법한지요

질의2) 본 교회 당회에서는 당 해년도 서리집사 중, 2016년도 서리집사를 다음과 같이 제외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당회 회의록 : 2016년 11월 28일, 제560회 정기당회 제7회 임시당회) 1. 정년 70세가 넘었거나, 사망,교회를 떠난 자(6개월 이상 예배 결석), 2. 본인이 임명을 거절하는 자는 제외했습니다. 3. 2015년도 서리집사 중에 의도적으로 집단화하여 예배방해, 예배 중 집단 이탈자(선동자), 십일조 등 봉헌의무 안 한자, 교회의 안팎에서 소요와 다툼을 주도한 자들은 당회에서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상기 3번에 대해서 당회장의 유고로 인한 당회는 교회의 질서유지와 정규예배를 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시도하였으며, 소요와 다툼을 촉발하는 이들에 대한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없었기에 유한적 직분자들에 한하여 연임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상기의 행정 결의가 적법한지요

질의3) 헌법 제2편 제10장 제68조 당회의 직무 3항에 따라, 주일예배 진행과 순서는 본 교회 당회가 주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교회 당회에서 자의사임 처리가 된 손00장로는 교회 내 분규가 계속된 상황과 관련하여 항존직 복권시비도 계속되고 있어, 부득이 '사임시비가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기도를 쉬는 것이 교회의 평화와 건덕에 좋다' 는 당회 내의 의견이 있으므로 1,2차례 기도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당회에서 상기의 결정이 적법한지요

질의4) 본 교회 당회장 방충근 목사는 2015년 8월 25일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정직 24개월의 판결을 받고 시벌 중에 있습니다. 헌법에 의거 정직은 유한적으로 목사의 신분과 시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벌자가 의도적으로 목양실(당회장 사무실)을 잠구고 출입불가를 한 것에 대해, 본 교회 당회에서는 2년간 폐쇄 및 방치할 수 없을뿐더러, 당회장의 직무대행자가 직무 수행할 수 있도록 불가불 개방조치가 필요했으며, 당회장의 개인 물품(직무용) 보안 문제와 사무집기의 유지보수의 필요에 따라 개조(변경)할 수 있도록 시벌자에게 사무실 개방을 당회의 결의로 본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전임 송00 대리당회장의 사회로 이루어진 결의였고 이 또한 대리당회장은 사회만 했고 결의권은 행치 않았습니다. 또한 현 대리당회장도 부동산 관리권이 없는 자로서, 이후 당회 결의에 어떠한 영향을 준 적도 없습니다. 상기 교회 관리 주체인 당회가 목양실 열쇠를 반납 및 회수하기로 결의하고 통보한 것은 정당한 행정조치

로 적법한지요

질의5) 헌법시행규정 제30조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의 조항에 따라 대리당회장은 부동산 관리권이 없고 나아가 부동산 관리 변동 또는 소멸(매매)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회의 관리 주체인 당회가 절차에 따라 시급한 교회 유지보수, 보안, 교회의 예배와 질서를 위한 교회문을 개,폐유무 등 운영사항을 대리당회장의 사회로 당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상기의 행정 결의가 적법한지요

질의6) 교세가 급격히 감소하여(1/5) 기존의 교회 부서 28개를 수년간 활동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부서 등을 5개 위원회로 개편하기로, 2016년도 신년도 정책 당회에서 헌법 정치 제68조 '당회의 직무' 에 의거 결의하였습니다. 본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제직회에 서기와 회계를 선임한 이외 어떤 부서를 둔 바 없습니다. 당회에서 상기의 결정이 적법한지요

질의7) 2016년 1월 24일 제직회 소집을 앞두고 1주일 전에 제직회 공고를 했고, 안건도 예시했습니다. 제직회 하면서 서기로 송기은 집사, 회계로 윤영춘 집사를 구두 추천으로 동의 재청을 받아 가하면 '예' 아니면 '아니라' 하여 선임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상기 제직회의 절차 및 결의가 적법한지요

질의8) 희2015년 11월 7일 당회원 수련회 및 2016년 정책 당회에서 28개 부로 되어 있는 교회 기구를 7개 위원회로 개편하여 업무를 관장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교회 부서의 개편이 당회의 행정치리 행위로 적법한지요

질의9) 2016년 제직회 서기와 회계를 2016년 1월 24일 제직회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임하였습니다. 이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455(2016.8.10.)의거 상기 제직회 서기와 회계의 선임은 정당하다는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2016년 정책 당회에서 교회 기구 개편을 결의하였고, 이를 주보에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2016.1.24. 제직회에서 서기와 회계 선임이 적법 여부와 교회 기구개편에 따른 당회 행정 결의가 적법한지요

33. 책벌의 원칙 /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 장로의 사임 및 사직 / 목사의 청빙

평양남노회 중랑제일교회 전창순 장로가 제출한 "2016-01호, 권징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2016.10.11)" 건과 "2016-1201, 헌법해석 질의 추가 제출 건(2016.12.)" 건과 "2017-01호, 헌법해석 추가 질의(2017.1.2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죄과로, 재판절차를 거쳐서 책벌할 수 있다[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1항].”

질의2)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 인간은 판단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기도행위로 인해 6개월 기도를 쉬라고 권고 결의하는 것은 권고사임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항, 제2항, 제12항에 해당하는 죄과로, 재판절차를 거쳐서 책벌할 수 있다[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1항].”

질의4)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2조(항존직), 제6장(장로) 제43조(장로의 사임 및 사직) 제2항에 명시된 권고사임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결의로 적법하지 않으며 즉시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5)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2조(항존직), 제6장(장로) 제43조(장로의 사임 및 사직) 제2항,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선택) 제7항에 의거 권고사임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결의한 것은 위법이다.”

질의6)에 대하여 “부목사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헌법 정치 제27조 3항). 헌법 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4항, 제35조(목사의 사임 및 사직) 제1항에 의거 위법이다.”

질의7)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2조(항존직), 제6장(장로) 제43조(장로의 사임 및 사직) 제2항에 명시된 권고사임 범주에 해당되지 않으며 강요할 수 없다.”

질의8)에 대하여 “질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적법하다 할 수 없다.”

질의9)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항, 제2항, 제12항 등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

질의내용 / 아래의 질의 관련 글은 본 교회 담임목사 위임 결의 절차부터 발생하였습니다.

1) 8월 21일 : 담임목사 청빙 2년이 경과하여 위임 결의 절차를 법적절차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진행하였고, 임시당회시 노회장을 대리당회장으로 모시고 무기명 비밀 투표하였으나 부결되어 노회장께서는 당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순종하여 교회가 어

렵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일부러 당부까지 하시고 가셨습니다.

2) 8월 28일 : 담임목사는 정기당회 석상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였기에 하나님과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부결 결과를 문제 삼으며 부목사를 지목하여 반대했다고 하며 다음 정기당회에서 인사조치를 논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3) 9월 04일 : 질의자가 예배 대표 기도를 하는 중에 음향실 안수 집사가 기도내용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크게 삐 하는 소리에 이어 음악을 크게 틀어 예배 기도를 완전히 방해하였습니다.

4) 9월 04일 : 합법적인 위임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위임 찬성 당회원들이 찬성 일부 안수집사 교인들과 편을 지어 왜 부결시켰느냐며 제직회 석상에서 반대한 당회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위임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하는 교인들을 선동하여 교인간 분열이 표면화 되고 교회의 혼란이 가중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5) 9월 11일 : 임시당회에서 본인이 기도를 잘못했다고 6개월 기도를 쉬라는 권고 권징을 내렸습니다.

6) 9월 17일 : 위임 찬성 안수집사 3명은 저를 카페로 불러내어 위임 부결을 성토하고, 기도를 잘못했으니 장로 시무를 1년간 쉬어라 그렇지 않으면 제직회를 열어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7) 9월 25일 : 정기당회에서 선임장로는 당회에서 상의조차 하지않고 부목사를 금년까지만 있고 내년에는 다른 교회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8) 9월 25일 : 정기당회 후반부에 원로 은퇴 장로님들까지 배석시켜 예배 대표기도를 잘못했고, 해명을 위해 교인들에게 보낸 기도 관련 문자내용을 문제삼아 본인을 강제로 내보내고(배제시킨후) 허위사실 유포외 담임목사 명예훼손으로 장로 권고사임을 다수결로 결의하고 공동의회 주보 광고와 일정까지 확정하였습니다.

질의1) 본인이 예배 대표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음향실 안수집사가 ‘삐 하는 큰소리에 이어 아예 음악을 크게 틀어’ 예배 기도를 완전히 방해했다면 이는 헌법 권징의 어느 죄과에 해당하고 어떤 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질의2) 본인이 하나님께 드린 대표기도를 당회가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다수결로 6개월 기도를 쉬라고 권고 결의할 수 있습니까

질의3) 위임 찬성 안수집사 3명이 위임 부결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빌미로 위임관련 내용을 대표 기도에서 언급한 본인에게 '시무를 1년간 쉬어라 우리말을 듣지 않으면 제직회를 열어 불이익을 주겠다' 고 협박을 했는데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질의4) 본인이 대표 기도할 때 음향실에서 고의로 기도를 완전히 방해하여 교인들이 기도내용을 정확히 몰라 알고 싶어하여 교인들에게 기도문과 해명문자를 보내며, 목사님도 내용적으로는 '목사님을 위한 기도 같다고 하시고(녹음 있음) 다른 교회 교인들이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기도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녹음 있음) 그후 당회에서는 그런 말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또 서기장로가 저의 기도와 상반된 가짜 기도문을 제시하며 녹음 있으니 인정하라고 협박하여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당회에서 본인을 강제로 내보내고(배제시킨후), 거짓 사실들을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으로 장로 권고사임을 결의했는데 적법합니까?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적법하지 않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 회복할 수 있습니까?

질의5) 본인에 대하여 위법하게 권고사임을 결의하고 이에 불응하자 당회가 강제로 자의사임을 강요하고 이를 공문으로 시행하여 계속 압력을 가한다면 이는 적법한지

질의6) 전임자가 청빙한 부목사를 후임 담임목사가 자신의 위임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회의 결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사임시킬 수 있습니까?(임기는 5년으로 2013.01.20.일 시행 교회정관상 2018.01.19.일까지 임)

질의7) 질의자를 위임 반대자로 표적 삼아, 예배대표 기도를 잘못했다고 트집을 잡아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권고사임을 결의(총회 헌법위원회 헌법해석사례:제100회기 74, 불법)한후, 이어서 자의사임을 강요(총회 헌법위원회 헌법 해석 사례:제96회기 14,불법)하고 10월부터 현재까지 당회 참석과 찬양대 봉사도 못하게 하면서, 사임을 하지 않자 노회에 고소까지 했는데, 기도 내용 문제로 사임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질의8) 본 교회는 당회장 외 당회원 7명(부목사 1명 포함)으로 의도적으로 상기 질의1)부목사 1명을 강제 사임시키고, 이어 질의2)장로 1명을 강제 사임통고 후 배제후(당회 참석을 10월부터 불법으로 막음, 업

무방해), 2017.01.08.일 당회에서 위임 가결을 결행했다면 이 결의를 합법적인 결의로 볼 수 있습니까?

질의9) 10월부터 본인에게 권고사임 통과하였으니 당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여러 당회원이 합세해서 큰 소리치며 윽박지르고 위력을 행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지금까지 강제 배제를 하고, 성찬분병 분잔위원 배제, 2017년 부서장 배제를 하였다면 업무방해로 봐도 되겠습니까?

34. 장로의 사임과 사직 /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평양남노회 중랑제일교회 김철인 장로가 제출한 "권징에 관한 질의(2016.12.13.)"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예배는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질서를 지켜야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잘잘못에 대해 인간은 판단할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4조(직원의 전임과 사임) 제2항에 의거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고, 그 결의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질의3)에 대하여 "당회의 권고사임 결의 시 당사자를 배제시킨 것은 위법은 아니나, 헌법 정치 제6장(장로) 제43조(장로의 사임 및 사직) 제2항에 명시된 권고사임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4)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5항, 제12항에 명시되어 있다."

질의내용 / 중랑제일교회 전창순 장로(1950.3.11.생, 2012.12.9.임직)는 2012년 12월부터 본 교회 시무장로로 섬겨오던중, 2016년 9월 4일(주일) 3부 예배때 대표기도를 하면서, 그 전 주(8월 21일) 당회에서 있었던 목사님 위임투표에 대한 당회의 결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담임목사를 비방하는 기도를 함으로서 예배를 드리던 교인들이 웅성거리고 기도를 '그만해요', '조용히 합시다' 등 교인들이 흥분하고 소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를 함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교인이 생기는 등 예배가 소란해지고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9월 11일 중랑제일교회 당회에서는 그 책임을 물어 6개월간 대표기도를 하지 않도록 대표기도 정지 권고를 하였고 본인도 이 권고를 수락하였습니다. 대표기도 정지처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창순 장로는 9월 17(토)에 자신의 기도가 정당하다면서 전교인들에게 자신의 기도문과 정당성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교인들을 크게 놀라게 하였고(전창순 장로의 메시지와 기도문 참조)이로 인하여 안

수집사회와 권사회에서 전 장로의 기도문에 대해 당회의 해답을 요구하는 질의서가 제출되는 등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9월 25일 원로,은퇴 장로들과 시무장로들이 같이 모인 당회에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전 장로에게 반성을 촉구하였으나 전 장로는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장로는 예배를 소란케 한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로서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마이크를 조작한 집사님을 징계해 달라고 당회에 고소(고발)를 하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충언을 한 안수집사 3명에게도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마이크를 조작하게 한 자신의 기도의 문제점을 숨기고 마이크 조작한 사실만 가지고 총회 헌법위원회에 위법 여부를 질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회에서는 자의사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 장로에게 부득이하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전 장로의 권고사임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1)전 장로는 실제 강단에서 기도한 내용과 교인들에게 보낸 자신의 기도문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전 장로는 교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목사님도 내용적으로는 목사님을 위한 기도 같다고 하시고 제3자인 다른 교인들이 봤을 때는 아무 문제없는 기도라고 말씀도 하셨다” 라고 하였는데 당회에서(전 장로가 있는 자리에서) 직접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물어 보았고,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지난 9월 11일 당회에서 결의한 6개월 대표기도 정지 권고 건을 가지고 목사님과 당회 서기가 전창순 장로를 당회로 불러 ‘당회의 조치를 받아들이겠느냐’ 고 물었을 때 ‘받아들인다’ 고 해놓고 교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는 ‘당회원 여러분들과 상의하시어 조속히 원상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였는바, 이는 당회의 결의를 무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따라서 전창순 장로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에 해당됨으로 본 교회 당회에서는 권고사임을 결의하였습니다. 장로의 권고사임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 교회에서는 공동의회를 열어 무기명투표를 한 결과 총 투표자 303명중, 권고사임 찬성 257표(85%), 반대 46표로 권고사임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전 장로에게 권고사임 안이 가결되었음을 알려주고, 10월 20일까지 수락여부를 통보해 줄 것을 우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장로는 10월 19일 권고사임 안에 대해 수락을 거부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왔고, 본 교회 당회에서는 전 장로가 이제라도 1년 자의사임을 하면 1년 후 복직시키자고 결의하였고, 그 뜻을 전하였으나 전 장로는 당회의 결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질의1) 대표 기도하는 장로의 기도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인들이 소란하고 예배가 방해를 받았다면 이는 헌법의 어느 권징 사유의 죄과에 해당되며 어떻게 조치하여야 합니까?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의 조치없이 단지 마이크를 조작한 집사를 치리한다면 그 권징 사유는 무엇입니까?

질의2)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권고사임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요?

질의3) 당회의 권고사임 결의시 본인의 입회하에 의견을 충분히 진술하게 한 후 찬반결의 때는 당사자를 배제시킨 것이 위법인지요?

질의4) 장로에게 선의의 충고를 한 집사를 협박이나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수 있는 헌법의 규정이 있는지요?

35. 목회세습(목회지 대물림) 금지 /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진주남노회장 김창윤 목사가 제출한 "진주남 제120-12호, 헌법질의(2016.11.21.)"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당시 총회(2014년 제99회)의 헌법 개정 상정안에는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는 조항도 있었으나, 재석 1,054명 중 찬성 610명으로 재석 3분의 2 미달로 부결된 것은 사실이다[참조, 제99회 총회(2014.9.22-25, 소망교회당, 총회 회의록 p.46). 그러나 이 조항을 삭제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임 혹은 은퇴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가령, 전임자의 사임(사직, 은퇴)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환경 등에서]처럼 '목회세습(목회지 대물림)'과는 전혀 상관없는 청빙에까지 이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금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는 등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질의2)에 대하여 "법조문만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목회세습(목회지 대물림)'의 금지에 관한 법 제정의 취지와 정서(한국교회와 사회의 일반 여론이나 법 상식 등), 성경의 가르침(고전 10:23~24, 31~33) 등을 고려해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제3항(부목사)의 사임 후 2년의 경과규정의 법 취지는 이 법이 없을 경

우에 발생할 수 있는 덕스럽지 못한 일들(가령, 위임목사를 배척하고 후임자로 선정되는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때,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질의2)의 해석에 근거하여 부목사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규정과 상관없이 청빙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개정 1990.1.13). 그리고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에 의거 해당하는 이와 교회에서는 위임목사(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 질의1) 주후 2014년 12월 8일 공포된 본 교단의 개정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6.'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라 하였다. 위 조문과 조항들의 의미는〈자립교회 담임목사의 은퇴나 사임시 그 아내 및 남편 또한 아들 며느리, 딸 사위를 후임으로 청빙할 수 없다〉 는 법조문이다. ③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당시 총회는 ③항을 제외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제98회 총회 회의록 참조).

위 질의1)을 확인바랍니다. 아니면 법적 정확한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2) 위 ③항이 제외되었기에 은퇴한지 한 회기 이상 지난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는 〈이전〉에 사임(사직)한 것으로 보게 되고, ①의 '은퇴〈하는〉'에서 볼 때 그 의미는 〈현재형〉과 〈미래형〉이고, '은퇴〈한〉' 이란 〈과거형〉이 되었기에 그 해당자를 후임으로 청빙하여도 '무방'하다 여겨지며 가능하다고 본다.

위 질의2)를 확인 바랍니다. 아니면 법적 조문으로 답을 부탁드립니다.

질의3)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에 의하면 3.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후 해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하였기에 아내, 아들, 며느리, 딸, 사위가 부목사이면 '해 교회 사임 후 2년이 경과되면 청빙이 가능하다' 는 해석이다.
위 질의3)을 확인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법조문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36. 송달의 원칙 / 피고인의 소환 / 변호인의 자격 / 변론 / 소송지휘권

대전노회장 남 청 장로가 제출한 "예장 대노 제129-18호, 법규적용에 대한 질의(2016.12.1.)" 건

해석 : 질의1),①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29조(변론) 제2항에 의거 적법하지 않다."

질의1),②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41조(송달의 원칙)에 의거 재판국에 있다."

질의1),③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43조(피고인의 소환) 제1항,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50조(피고인의 소환) 제1항에 의거 적법하지 않다."

질의1),④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0조(변호인의 자격 등) 제1항에 의거 활동할 수 있다."

질의1),⑤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1),⑥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29조(변론)에 의거 재판국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헌법시행규정 제40조(소송지휘권)에 의거 당사자는 재판국장의 소송지휘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

질의1),⑦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41조(송달의 원칙)에 의거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질의1),⑧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3절(노회 재판국) 제16조(구성), 제17조(국원의 임기 및 보선)에 의거해 선임된 재판국원으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며 변동시에는 사전에

고지하여 원만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질의1),⑨,⑪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3절(노회 재판국) 제21조(전문위원) 제2항에 의거 적법하지 않다.”

질의1),⑩에 대하여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1),⑫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답변 및 조언할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되나 법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질의2),①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3항, 동 규정 제16조의 10(유기책벌과 당회장권) 제1항에 의거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질의2),②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 제1항, 제2항에 의거 임시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8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대리당회장은 서리 집사 임명도 당회의 결의로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 임직권(장로,집사,권사), 권징권,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1절(통칙) 제7조(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48조(고소권자), 제49조(고소기간) 등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4),①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1조(제직회) 제1항 ‘제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집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질의4),②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8장(집사 및 권사) 제54조(집사, 권사의 선택), 제55조(집사 및 권사의 임직)에 의거 집사로 임직받았다면, 헌법 권징 제8장(행정쟁송) 제2절(행정소송) 제157조(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제3항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 재판 절차에 대한 질의

① 노회 재판국이 공문으로 ‘피고인 신문조서를 제출하라’ 고 했으나, 재판국장이 ‘신문조서가 준비되지 않았으므로 변호인은 나가라’ 피고의 변호인을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퇴장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법한지요

② 재판국이 피고인에세 ‘변호인은 신문조서를 제출하라’ 는 공문을 보낼

때 피고인에게 보내지 않아, 피고인이 재판국의 요청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요

③ 재판국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보낸 소환장 또는 공문에 재판국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았거나, 재판국장의 도장이 아닌 노회장의 직인이 찍혔다면 유효한 것인지요

④ 권징재판에 활동 중인 변호인이, 다른 재판의 행정재판의 임직무효소송의 대상자(피고인은 해당교회 위임목사)자로 계류중에도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권징재판과 행정재판의 재판국은 동일합니다.

⑤ 권징재판에서 고소인 측 변호인이 기소위원 옆에 배석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권징재판에서 고소인의 변호인을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⑥ 재판국장이 변호인이 해당 심급 재판의 기소위원회 때 변호인으로 활동했으나, 다른 재판(행정소송)이 계류중이라고 변호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재판국장의 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재판국장은 재판을 열지 않고 폐정했습니다. 이때 폐정의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지요

⑦ 재판국이 피고인에게 보낸 소환장에 재판국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열리지 못한 재판의 귀책사유가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재판국장은 그 앞전 공판때 피고인에게 '재판국장의 직인이 없는 공문은 무효다' 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⑧ 재판국의 국원이 1차 공판과 다른 재판국원을 2차 공판때 투입하였는데, 재판국원의 변동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⑨ 재판국장이 피고인이 재판참여를 반대하는 자문위원에게 재판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자문위원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으로 피고인의 변호인과 직접 대화하며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적법한지요

⑩ 재판국장 또는 자문위원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며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두진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⑪ 피고인이 재판국원이나 기소위원처럼 기피,제척할 수 없는 헌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직위인 자문위원이 재판에 배석해 발언하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적법한지요

⑫ 노회 재판시 기소위원들, 재판국원들, 노회임원들, 고소인들, 피고인들 등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재판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의 사항들을 처리하는 표준절차에 방법 등을 정리한 기준 매뉴얼이나, 재판의 표준이 될 만한 재판조서 등을 참고할 자료나 서적을 안내해 주실 것을 요청

질의2) 노회의 수습전권위원에 대한 질의

① 노회가 분쟁교회에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할 때 현 당회장이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이 확정되지 않아도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지요

② 수습전권위원 또는 임시당회장이 해당 교회의 서리집사 임명을 제외한 인사권, 행정권, 재산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지요

질의3) 치리회 소속의 교인이 회장 등의 임원이나 재판국원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죄과를 범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권징재판 또는 행정재판 소송의 제기는 어느 기관에 할 수 있는지요

질의4) 교인의 자격에 대한 질의

① A교회 제직회 회원이 같은 교단 다른 지역 B교회에 등록한 후, A교회의 제직회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적법한지요

② 2012년 당회 결의로 결정한 안수집사 후보 A씨를 공동의회원들의 입후보 동의와 과반수이상 투표로 안수집사로 임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직당시 이명증서가 없었다하여 당시 당회에서 A씨를 안수집사 후보로 결의했던 당회원들이 3년 후인 2015년에 임직무효가 적법한 것인지요 (해당교회는 안수집사 임직 당시 A씨는 입교한지 만4년이 어서, 현 교회 교역자가 A씨가 이전에 등록됐던 같은 교단의 B교회에 문의하여 신앙경력만 확인했고, A씨에게 이명증서나 내용증명 공문을 요구한 바 없었습니다. A씨는 B교회에서 신앙경력이 만 3년을 경과 두교회 합한 신앙경력이 만 7년을 넘었기에 당회가 결의한 것이며, A씨는 B교회에서 2015년 10월에 이명증서를 소급하여 발급받아 안수집사 임직을 받은 교회에 제출했습니다.)

37. 장로의 자의사임, 권고사임, 자의사직

광주노회 장성읍교회 임순배 목사가 제출한 “장성읍 제2016-27호, 총회 헌법위원회 헌법해석 청원(2016.12.13.)”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예장총 제100-489호, 헌법해석 통보(2016.1.7)” 공문으로 갈음하기로 하다.

질의내용 / 헌법 제2편 정치 제6장 제43조는 장로의 자의사임, 권고사임, 자의사직

등에 관한 조문입니다. 시무장로가 ‘자의사임을 하고 싶은 경우, 권고사임을 받는 경우, 자의 사직을 하는 경우’ 에는 당사자가 ‘당회에 사임서 제출’ 이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제24조는 ‘본인의 자필서명 사임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사임서 없이는 처리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당사자의 “당회에 사임서 제출” 이 의무사항입니다. 장성읍교회 김성규 장로는 개인사정상 2013년 10월 27일 당회에 자필 서명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사임의사표시를 하고 교회를 잠깐 불출석하다가 장로의 책임감을 통감하고 불출석한지 6개월도 안되어 다시 출석하여 2014년 7월 20일 당회에 정식 회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규 장로는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 제68조 제6항에 의거하여 장성읍교회 당회장의 장로 총대 추천으로 광주노회 제29회 가을정기노회(2014.11.4.)장로 총대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광주노회가 헌법 제2편 정치 제11장 제7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장로총대로 허락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장성읍교회 당회장은 제100회 총회 헌법위원회 보고(제99회기) 제28번의 유권해석 ‘당회에 사임서(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즉시 당회에 복귀시켜야 한다’ 에 의거하여 광주노회 제30회 가을정기노회(2015.11.3.)장로 총대로 김성규 장로를 천서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성규 장로는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 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킨 사실이 없다” 는 것입니다. 광주노회는 김성규 장로를 제29회 정기회에서 총대 장로로 인정하여 노회의 장로 총대 명부에 등재가 된 사람을 2015년 10월 19일 제30회 가을정기회(2015.11.3.)의 장로 총대천서불가의 통보를 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김성규 장로는 개인 사정상 잠깐 불출석하다가 6개월도 안되어 다시 출석한 자이기 때문에 장성읍교회 시무 장로로서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노회가 구두로 사임의사를 한 것도 사임이라고 뒤늦게 번복을 한 것입니다. 광주노회는 제96회(제95회기) 총회 헌법위원회 보고 65번을 준용하여 김성규 장로는 시무 장로의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성읍교회 김성규 장로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인용하면 “당회 석상에서 ‘나는 당회를 떠나겠다’ 란 말과 사임 철회를 권고하는 동료 장로에게 ‘나는 이제 본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 고 한 후 5주 이상 교회에 출석치 않았기에 부득불 당회의 결의로 사임처리를 한 것과 또한 부산노회 재판국에서 구두사임 의사를 재확인 차 묻는 재판국원에게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한 표

시한 이런 경우를 볼때 당회에서 사임처리를 한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정년이 될 때까지라도 사임서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회성수, 의결정족수, 당사자의 신분정리, 업무처리 등에 불확실한 상태가 계속되어 여러 가지로 곤란한 일이 발생될 수 있기에 공식 회의석상에서 구두로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회원 과반수로 결의하면 사임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질의) 제100회(제99회기) 총회 헌법위원회 보고 제28번의 두레교회 당회장 등이 질의한 유권해석에서 “당회에 사임서(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즉시 당회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해석에 준용하여 장성읍교회 김성규 장로 역시 당회에 자필 서명한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성읍교회 당회장이 김성규 장로를 당회에 즉시 복귀시키는 행정 처리가 합법” 입니까

38. 금전출납 / 재정관리

전남노회장 조원섭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8-29호, 총회 헌법위원회 헌법질의와 해석 신청(2016.12.29)”건과 “전노 제128-31호, 총회 헌법위원회 헌법질의와 해석 수정 신청(2016.12.30.)”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총회 교회 회계 기준에 보면 재정관리 조직 체계(결제라인)는 당회장, 재정부장(재정위원장), 회계 순이다.”

질의2)에 대하여 “교회재정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위임목사(당회장)에게 있다. 그러나 교회의 실정과 형편상 업무량이 과다하여 목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재정부장(회계)에게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전결처리케 할 수 있으나, 궁극적인 권한은 소멸되지 않으며, 교회재정 관리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질의3)에 대하여 “금전출납은 반드시 수입결의서(입금전표)와 지출결의서(출금전표)를 사용하되, 지출은 예산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지출 결의서에 따라 결재를 받아 회계가 지출하고 그 내용을 장부에 기장하여야 한다.”

질의4)에 대하여 “재정부장의 임무는 위임목사(당회장)의 명령과 지휘감독을 받아 재정 사무를 관장하고 위임목사(당회장)를 보좌한다.”

질의5)에 대하여 “재정부장, 회계는 교회의 직원 중에서 당회장(제직회장)이

임명한다.”

질의내용 / 제90회 총회 헌법위원회 보고(제89회기 헌법 해석 사례) 4.당회장 직무 및 제직회 부산노회장 김성권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청원”에 관하여 질의1) 조직교회의 위임목사인 당회장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교회의 재정이 당회장이 결재하지 않은 상태로 집행되어도 되는지의 여부와, 질의2) 조직교회의 위임목사인 당회장이 시무하는 교회의 재정에 관하여 당회장으로서 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건은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 제5조(치리), 제10장(당회) 제66조(당회장) 제1항, 제67조(당회의 직무) 제5항 및 제13장(회의 및 기관단체) 제89조(제직회) 제2항 제5항에 의하여 당회장(제직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교회의 내규가 있으면 내규에 따를 수 있다” 는 해석과,

제96회 총회 헌법위원회 보고(제95회기 헌법해석 사례) 45.목사의 청빙/공동의회/적용범위, 여수노회 여수성광교회 박승호 목사가 제출한 ‘헌법질의 해석에 관한 건(2011.4)중 질의4) 제직회장의 지시에 불복하고, 제직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준수치 않는 재정부장과 회계에 대한 직책상의 면직(해임)과 신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 건은 “일부의 당회원들이 교회에 중요 예산집행을 계속 거부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 이미 2010년 12월 19일 공동의회에서 예산,인사,행정권을 당회장에게 위임했으므로 당회장은 임면의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5) 재정부장에게 전결권(교회 내규)있을지라도 담임목사의 사후결재 여부 건은 “교회의 예산집행은 편의상 재정부장에게 전결권을 준 것일 뿐, 당회장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므로 사후결재나, 당회장이 요구할 때는 결재의 내용의 경중을 떠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질의1) 헌법 정치 제91조(제직회) 4항에 의거 재정부장은 회계위에서 재정수입,지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옳은지 그런지

질의2) 재정부장이 결재권이 있다면 위임목사(당회장)의 결재를 반드시 받은 후에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임목사(당회장)의 결재없이 재정부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질의3) 재정부장이 위임목사(당회장)의 결재없이 제직회 임원인 회계에게 기 책정된 예산 제목에 대하여 임의로 지출여부를 결정 할 수 있습니까

질의4) 위임목사(당회장)는 재정부장의 영역은 예산 편성, 계수조정, 재정

확보 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옳은지 그런지

질의5) 제직회장(당회장)의 지시에 거부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때, 재정부장과 회계를 직책상 해임하고 제직회장(당회장)이 신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

39.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가 제출한 “서울교회 제2017-3호, 헌법질의(2017.1.12.)”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교회의 정관(규정) 통과는 반드시 공동의회의 결정사항이나, 공개된 상태에서 헌법 권징 제8장(행정쟁송) 제2절(행정소송) 제157조(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제3항에 의거 경과하였다면 문제를 삼을 수 없다.”

질의내용 / 서울교회는 1992년 2월 1일 토요일에 정관/규정을 당회에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992년 2월 1일에도,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정관/규정에 대해 공동의회를 열어 공동의회의 결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서울교회의 정관/규정이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았는데 유효한 것입니까

40. 서식 / 기소제기의 시효

군산노회장 김호성 목사가 제출한 “군노 78-015호, 헌법질의 건(2017.1.25.)”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90조 제2항에 의거 치리회장의 직인이 날인되었을 경우에는 유효하다.”

질의2),①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4항에 의거 해당된다.”

질의2),②에 대하여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질의2),③에 대하여 “기소제기의 시효란 제척기간(어떤 종류의 권리에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경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으로 강행규정이다. 고소 및 고발 시효 3년이 경과한 고소 및 고발은 반려해야 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 담임목사의 위탁재판청원서에 당회 서기 날인에 관한 건-본 기소위원회는 제78회 군산노회 임원회로부터 군산동부교회 직원 3인외 서명교인 576명의 고발장 군노제78-099호를 심의하는 중에, 피고발인들이 동부교회 당회장이 직권으로 제출한 ‘위탁재판 청원서’ 에 당회 서기의 도장이 누락되었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억지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하여 본 기소위원회에서는 당회장 ‘직권’ 의 ‘위탁재판청원서’의 서류상의 하자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의 합치를 보았습니

다. 그러나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기소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본 기소위원회는 '위탁재판청원서' 의 '서류 보강작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우려했던 대로 당회 서기가 날인을 거부하였습니다.

질의1) 당회장 직권으로 제출하는 위탁재판청원서에 당회 서기의 날인은 무의미한 것 아닌지요

질의2) '고발,고소 시효' 및 '기소제기의 시효' 에 관한 건-기소 제기 공소 시효의 원인 행위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①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은 지교회의 재정 비리 및 부정행위도 해당이 되는지요

② '원인 행위 일' 의 정확한 의미는

③ 또한 제59조의 [기소 제기의 시효]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요, 고발 및 고소 시효 2년이 지나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사안도 제59조에 기소제기 시효 6년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요

41. 판결 선고기간 준수

대전노회장 남청 장로가 제출한 "예장대노 제129-61호, 유권해석 의뢰(2017.2.10.)" 건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으나,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제4항,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2조(판결 선고기간)에 의거 판결 선고기간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질의3)에 대하여 "강행규정이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제3편 권징 제157조 소의제기 및 제기기간 제2항의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에서 접수 당시(2015년)는 제척기간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재판방해 행위 등으로 지연되어 2016년 가을노회 이후 새로 조직된 재판국에서 행정소송 및 기소의 건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질의2) 위 제3항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에서 접수 당시(2015년)는 제척기간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재판방해 행위 등으로 지연되어 2016년 가을노회에서 새로 조직된 재판국에서 행정소송 및 기소의 건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질의3) 위 제157조 소의제기 및 제기기간은 강제조항인지 아니면 임의조항인지, 아울러 총회 재판국의 유사사례(판례)가 있는지 여부

42. 위탁재판시 재판비용

대전노회장 남청 장로가 제출한 “예장대노 제129-58호, 위탁재판시 재판비용에 관한 건(2017.2.10)”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43조(재판비용) 제2항 ①호에 의거 금 일백만원이다.”

질의2)에 대하여 “당회가 납부해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대전노회는 지교회인 동산교회의 고소건을 당회에서 위탁받아 재판을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재판비용을 얼마를 받아야 합니까? 헌법시행규정 제43조 7항 ‘위탁재판을 청원할 경우 당회장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예납 받은 재판비용의 금액을 노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때 노회는 고소인으로부터 얼마를 예납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질의2) 고소인이 당회에 재판을 의뢰할 때는 당회가 고소인으로부터 50만원을 예납받았을 것입니다. 노회에 위탁재판을 의뢰할 때, 재판비용이 100만원이라면, 나머지 50만원을 고소인이 납부해야 합니까? 당회가 납부해야 합니까?

43. 다른 노회 목사의 청빙

전남노회장 조원섭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8-064호, 헌법해석 신청 청원(2017.2.22.)” 건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30조(다른 노회 목사의 청빙)에 의거 처리하면 된다.”

질의내용 / 질의1) 타노회의 목사가 본노회의 경내에 교회를 개척하고자 본노회 국내선교부에 전도목사 파송요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본노회 국내선교부에서는 전도목사 파송을 허락할 수 있으며 전도목사 청빙을 허락할 수 있는지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11조 4항 “목회자의 이명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명청원서 송부를 본인 혹은 ①노회장이 요청했으나 2개월이 경과하여도 송부하지 않을 경우, ②노회장은 이명확인서를 발급(발송)할 수 있다” 에서 ①노회장은 요청한 노회장이고 ②노회장은 어떤 노회장을 지칭하는지

44. 위탁재판의 청원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 외 17인이 제출한 “헌법질의서(2017.3)”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위탁재판) 제121조(위탁재판의 청원), 헌법시행규정 제72조[위탁재판의 청원. 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제1항, 제3항에 의거 당회장이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할 수 있으나 사전에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 제3항에 의거 동일한 내용의 후고발자의 고발은 반려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의 시무장로 17인은 서울강남노회 서강남 제59-041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상 당회에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당회장이 노회에 위탁재판청원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장로, 집사, 권사 등을 상대로 하여 당회가 수신인으로 된 고소(고발)장에 대하여 당회장이 당회에 전혀 보고하지도 않은 채 바로 단독으로 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한 행위에 관하여 다음 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질의2) 당회에 이미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어 권징 청구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동일한 피고소인(피고발인) 장로나 집사, 권사를 상대로 동일한 사유로 또다시 고소(고발)장을 당회에 접수하여 권징 청구를 하였는바, 당회장이 나중 접수된 고소(고발)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노회에 위탁재판청원을 한 경우, 노회 기소위원회는 어떤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음 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45. 항소 / 불이익변경의 금지 / 재심청구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101-719호, 헌법해석 요청(2017.3.27.)”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며, 중형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헌법 권징 제5장(상소) 제2절(항소) 제104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헌법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 제16항에 명시되어 있다.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범위는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는 적용되나, 기소위원장만이 상소한 사건 또는 기소위원장과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재심재판국이 심리하고 있는 당 사건(기소위원장과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즉 쌍방이 재심청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가중시벌(처벌)하여 판결이 가능하다."

질의내용 / 본 재심재판국은 총회재판국 권징 판결 사건에 대하여 양측 당사자가 재심 청구하여 심리 중에 있습니다. 총회 헌법(시행규정)에는 가중시벌(책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 제3편[권징] 제5장[상소] 제2절[항소] 제104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나. 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 16항 피고인이 청구한 재심에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다. 제3편[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질의) 이와 관련으로 총회재판국에서 판결이 난 사건으로,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노회기소위원장은 양형이 부족하니 가중 처벌해 달라" 하고,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는 양형이 무겁다 하여 경감해 달라" 는 재심청구가 있는 바, 위의 내용을 살피어 볼 때 본 재심재판국이 심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기소위원장과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모두 재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기소위원장과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는 재심청구인이 되면서 동시에 피재심청구인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가중시벌(처벌)하여 판결 가능한지 여부.

46. 교회 및 수습 및 치리회의 권한

강원노회장 고승태 장로가 제출한 "강노 제126-130호, 총회 헌법질의(2016.10.14.)"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9장(치리회) 제63조(치리회의 권한) 제4항,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1항에 의거 노회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9장(치리회) 제63조(치리회의 권한) 제4항,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1항에 의거 노회의 결의에 의해 구성된 수습전권위원회를 총회재판국이 해체 하라고 할 수 없다.”(제100회기 헌법위원회 보고서 615-616쪽)

질의3)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은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제3항, 제2장(재판국) 제2절(총회 재판국) 제14조(심판사항),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27조(당사자 능력) 제3항, 제8장(행정쟁송) 제1절(통칙) 제161조(직권심리)에 의거 재판국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으나, 교회 내의 문제까지 이의신청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하여 판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제100회기 헌법위원회 보고서 616쪽)

질의내용 / 강원노회는 제124회 정기노회에서 원주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수습전권위원회가 원만한 교회 수습을 위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 3항에 의거 3개월(2015.4.23.~2015.7.22.)간 원주제일교회 당회의 기능과 당회장권, 당회원권을 정지하였으나 문제가 수습되지 못하여 또 다시 3개월(2015.7.23.~2015.10.22.)간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 기능을 정지하였으나 원만한 수습에 이르지 못한 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제125회 정기노회에서 원주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상황을 보고하면서 노회로 하여금 수습전권위원회를 수습이 끝날때까지 존속하도록 해 주실 것을 청원하여 허락을 받고, 수습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수습전권위원회가 사임을 함으로 노회는 새롭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조좌상 목사, 서기:안재호 목사)를 재 파송하여 원주제일교회를 수습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새롭게 파송된 수습전권위원회는 교회의 상황을 살펴 본 결과 수습을 위해서는 당회장권, 당회원권 등 당회의 기능을 정지하지 않고는 교회수습이 어렵다 판단되어 [헌법 정치 제9장(치리회) 제63조(치리회의 권한) 4항,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1항, 3항, 8항] 에 의거 3개월 정지에 이은 회기 내의 정지기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2016년 1월 12일 (사건번호 100-20호)에 대해 ‘원주제일교회 당회의 기능, 당회장권, 당회원권 정지는 무효이다’ 라는 결정과 ‘수습전권위원회는 불법임으로 즉시해체 한다’ 그 이외에도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33조(교회 및 노회수습) 14항인 이의신청 외에도 교회내의 분쟁사항까지 끼어 넣은 것을 결정문에 포함시켜 결정함으로 노회는 헌법시행규정 73조 재심청

구사항 3항에 위배됨으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국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질의1) 노회는 새로운 회기가 되어 원만한 교회 수습을 위해 새롭게 재 파송된 수습전권위원회가 헌법시행규정 33조 3항의 '당회의 기능, 당회장권, 당회원권 정지를 새 위원회가 하면 정당하지 않는 일인가요

질의2) 노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파송한 수습전권위원회를 총회재판국이 '불법하니 해체하라' 결정 할 수 있는지요

질의3) 이의신청 내용이 아닌 사항이라도 이의신청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하여 결정을 할 수 있는지요

47. 변호인의 자격

전남노회장 조원섭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8-036호, 총회 헌법위원회 헌법질의와 해석 신청(2017.1.9.)"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29조(변론) 제2항, 제30조(변호인의 자격 등) 제1항에 의거 위법은 아니다."

질의2)에 대하여 "제101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620쪽) 본 위원회 보고 제47번 10) 해석은 본 질의와는 같은 사안이라고 할 수 없기에 적용할 수 없으며, 헌법시행규정 제45조에 의거 위법은 아니다."

질의3)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 치리회장이 임원회의 결의로 같은 노회 소속교회의 당회장을 기소의뢰 한 사건입니다. 노회 임원회가 기소의뢰를 결의할 당시의 임원(당시 부노회장)이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위법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구합니다.

질의2) 총회 재판국(사건번호 제100-09호)에서 패소한 피고(당시 노회장)와 변호인(당시 부노회장)등이 원고(당회장)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의 내용을 2016년 04월 30일 작성한 고발장(A4용지 9쪽)의 약 3분의 2인 6쪽을 인용한 것은 위법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당회장)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대한 답변서를 피고(노회장)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구합니다.

질의3) 노회 치리회장이 기소 의뢰한 사건의 고발장에 명시된 피고발인(현재는 피고)은 질의2)의 내용에 포함된 변호인(당시 부노회장)이 총회 기소위원으로 선임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변호인(당

시 부노회장)이 관련된 노회 소송 사건이 많기 때문에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총회장 앞으로 2016년 01월 27일 “총회기소위원 선임 취소 신속 처리 청원” 의 문서를 발송한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인(당시 부노회장)은 총회에 접수된 문서를 불법으로 획득하고 유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당시 부노회장)의 자격으로 2016년 04월 30일 작성한 고발장(A4용지 9쪽)의 약 3분의 1인 3쪽을 인용한 것은 위법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구합니다.

48. 고소 및 고발 / 고발기간과 취하 / 고발인의 자격, 방식, 취하, 송달과 화해

익산노회장 이병호 목사가 제출한 “익산노회 제13-30호, 헌법해석 통보의 건 반려 및 헌법질의 건(2017.1.17.)” 건과 “익산노회 제13-45호, 헌법해석 통보 건 반려 및 헌법질의 답변 촉구(2017.3.3.)”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제101회 총회 추가보고서Ⅱ, 헌법위원회 추가보고서 제80번(44쪽) 4)의 해석으로 가름하기로 하다.

〈제101회 헌법위원회 추가보고서 제80번 4)〉

질의4)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 헌법시행규정 제60조(고발인의 자격, 방식, 취하, 송달과 화해) 제3항에 의거 공소시효 도과로 인하여 무효이며, 또한 송달일 도과로 인하여 고소(고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일 : 2013년 8월 19일

질의내용 / 고소에 적용한 총회 헌법 개정(신설)일:2014년 12월 8일

죄과를 범하였다고 고소인이 고소한 날:2015년 11월 5일

고소장이 기소위원회에 접수된 날:2015년 11월 13일

기소위원회 기소일 : 2015년 12월 30일

원심재판국(익산노회) 선고일:2016년 4월 25일

질의4) 총회 헌법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 1)제1항에 의하면 ‘고발은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과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발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 8월 19일의 행위에 대하여 2015년 11월 5일 고소,고발한 것은 공소시효 도과로 인하여

원인무효로 보아야 하며, 2)헌법시행규정 제60조 3항에 의하면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도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산노회장은 2015년 11월 5일 접수한 고소(고발)장을 2015년 12월 8일자로 송달(34일경과) 하였으므로 고소(고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

질의내용 / 1. 익산노회 새소망교회 황철규 목사 외 3인에 제출한 헌법질의(2016.9.5.)의 건은 당시 총회 재판국에 계류중인 안건이라 본 노회에서는 노회장 경유를 거부하였던 건이며

2. 질의4) 총회 헌법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 1) 제1항에 의하면 '고발은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과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발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라고 질의하였는데 본 노회는 고발이 아닌 고소 건이라서 본 노회와 하등 관련이 없는 개인적 질의로 판단하였으며

3. 귀 헌법위원회에서 해석, 판단하기 전에 해당노회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위 질의는 본 노회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적 헌법질의로 판단하였다.

질의) 귀 헌법위원회에서 "총회 헌법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 1) 제1항에 의하면 '고발은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과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발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 8월 19일의 행위에 대하여 2015년 11월 5일 고소,고발한 것은 공소시효 도과로 인하여 원인무효로 보아야하며" 라고 판단하였는데 고소의 건을 헌법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를 적용한 것이 바르게 판단되었는지요

49. 원로목사 추대

진주남노회장 김창윤 목사가 제출한 "진주남 제120-47호, 헌법질의(2017.1.1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제3항에 의거 합당하지 않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제5항에 의거 은퇴목사에게도 대리당회장을 맡길 수 있으나, 현재 교회에 시

무하던 목사가 은퇴를 한 후 본인이 시무했던 그 교회에 당회장으로 대리케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질의3)에 대하여 “질의1) 해석에 의거 무효이다.”

질의내용 / 질의1) 원로목사 추대를 위해서 자신의 인사 건을 대리장이 없이 당회장 본인이 당회와 공동의회 사회를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질의2) 은퇴직전의 목사가 은퇴 후에도 대리당회장 명의로 계속 시무하기 위하여 대리장을 초청하여 당회를 열고, 은퇴 후 본인을 대리장으로 의결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까

질의3) 시무기간에 본인의 인사 문제에 대한 결의가 은퇴와 함께 소멸되는 것인지, 존속하는 것인지요

50.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 위탁재판 청원 / 재판비용

군산노회 군산동부교회 송재현 은퇴장로가 제출한 “질의서(2017.2.15.)” 건과 군산노회장 김호성 목사가 제출한 “군노78-022호, 군산동부교회 위탁재판 청원 건에 대한 헌법 질의(2017.2.21.)” 건

해석 : 질의Ⅰ.1)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1절(통칙) 제7조(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제2항에 의거 당회재판국 관할이나,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위탁재판) 제121조(위탁재판의 청원)에 의거 위탁재판의 청원으로 노회 재판국에서 관할할 수 있다.”

질의Ⅰ.2),3),4)에 대하여 “이것이 사실이라면 적법은 아니다.”

질의Ⅱ.1)에 대하여 “노회에 직접 고발할 수 없기 때문에 각하(반려)하여야 한다.”

질의Ⅱ.2),Ⅲ.1)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28조(재판비용의 예납), 헌법시행규정 제43조(재판비용) 제1항, 제2항에 의거 재판비용을 예납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질의Ⅱ.3),Ⅲ.2)에 대하여 “동일사건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다.”

질의Ⅲ.3)에 대하여 “당회 재판으로 할 것인지, 위탁재판을 청원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회장의 판단과 당회의 결의로 결정할 사항이라 사료된다.”

질의내용 /Ⅰ.1) 권징 제7조 2항(장로 집사) 재판관할권이 동부당회에 속하는데 노회 재판국에서 관할 한 것이 불법이 아닌가 여부

2) 노회 기소위원회에서(2016.11.11.) 불기소처분이 이미 통지되어 있어

예납된 재판비용은 노회에 귀속되어야 됨 따라서(2016.12.26.) 군산동부교회 당회장 위탁재판청원 제출시 재판비용을 예납되어야 함에(2016.11.11.)고발시 예납된 것을 거짓으로 예납증명서를 붙였는데 확인치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가 여부

3) 권징 65조 4항 노회기소위원회 불기소 처분 불복시 20일 이내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 해야함에 이를 무시하고 다시 노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가 여부

4) 박춘명 집사 선거무효 소송은 권징 167조 선거일로부터 20일이내 주관선거관리위원장에 행정소송 해야 함에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노회 재판국에서 다시 재판을 취급하는 것이 위법이 아닌가 여부

Ⅱ. 1) 총회 헌법에 장로 집사 재판관할권이 지교회 당회에 있는데 노회에 직접 고발된 경우 지교회로 반환되어야 하나 노회에서 재판이 가능한지 여부

2) 위탁재판 청구시에도 재판 비용을 다시 예납하여야 함에도 예납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노회 기소위원회 처분(2017.1.1.)통지서에 기소권 없음으로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권징 제65조 항고 및 재항고 4항 기소위원회 불기소 처분 불복시 20일 이내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해야 함에도 동일사건을 노회 재판국에서 다시 관할할 수 있는지 여부

Ⅲ.1) 헌법시행규정 43조 4항 예납된 재판비용은 재판의 결과를 불문하고 반환되지 않고 그 치리회에 귀속된다는 법에 의하여 전에 동부교인이 군산노회에 고발한 바 있으나 일금 일백만원을 군산노회 기소위원회 불기소처분을 받아 반환되지 않았음 따라서 2016년 11월 11일 군산동부 교회 집사 3인이 고발한 사건 역시 군산노회 기소위원회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2017.1.1.)당연히 군산노회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군산동부교회 당회장 이동만 목사가 군산노회에 위탁 재판 청원(2016.12.26.) 한 바 당연히 헌법 규정 28조 재판비용 예납하여야만 적법할 것인데 재판비용을 예납하지 않고도 재판이 가능한지 여부

2)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2016.11.11. 동부교회 집사 3인이 고발한 사건은 군산노회 기소위원회로부터(2017.1.1.) 불기소처분을 당한바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다시 노회 재판국에(2016.2.26.)에 재판을 의뢰하여 동일 사건을 재판을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

3) 재판제도가 3심제도임으로 당연히 장로와 집사는 당회 치리회에 속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집사 3인이(2016년 9월)에 동부당회에 고발되어

(2016.10.30.)서류미비, 재판비용 미납,노회 화합조정위원회 조정을 기다리는 결의에 따라 반려되었고 이에 3인이 순응하여 재고발된 사실이 없음. 동부교회 당회원이 2016년 10명이었음으로 장로 4인이 피고발자였으나 나머지 6명으로 재판 구성요원이 합당함으로 제2심인 노회 재판국이 해당이 아니라 1심인 동부재판국에 속함으로 노회 재판국에서 본 고발사건은 반려하여 동부 재판국으로 이전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51. 수습전권위원회 권한 / 치리회의 권한

강원노회장 김원석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27-143호, 헌법해석 질의(2017.2.23.)"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9장(치리회) 제63조(치리회의 권한) 제4항,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1항에 의거 노회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3항에 의한 권한 정지는 헌법 정치 제9장(치리회) 제63조(치리회의 권한) 제4항,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1항에 의거 노회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3)에 대하여 "수습전권위원회에서 임명한 대리당회장의 임기가 3개월이라는 법적근거는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수습전권위원회가 교회의 분쟁을 수습하지 못한 책임으로 사임을 할 경우 노회에서는 교회 수습을 위해 수습전권위원회를 몇 번이나 설치할 수 있는지요

질의2) 수습전권위원회가 헌법시행규정 33조 3항에 의한 권한을 정지 시킨 후 수습이 되지않아 사임을 하고, 새로운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할시 헌법시행규정 33조 3항에 의한 권한정지를 할 수 있는지요

질의3) 2017.2.7.일 총회법리세미나에서 재판국장의 강의중 수습전권위원회에서 임명한 대리당회장의 임기는 3개월이라 하였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요

52. 재판국 / 임원의 선임 및 직무

대전노회장 남 청 장로가 제출한 "예장대노 제129-67호, 총회 헌법 해석에 대한 질의(2017.3.7.)"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0조(변호인의 자격 등)

제1항에 의거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시무직원'이라고 확인되면 변호인이 될 수 있다."

질의2),4)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2절(총회 재판국)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직무)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40조(소송지휘권)에 의거 재판국장은 소송 진행을 원활하고 순조롭게 하고 소송 절차를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증인신문순서의 변경, 재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인정신문,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기소장 변경의 허가,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권, 해명권, 질문 요청권 등)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질의3)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헌법 권징 제29조). 기소는 기소위원회가 제기하여야 수행한다(헌법 권징 제59조). 재판국은 기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소장의 부본을 제1회 재판기일전 10일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헌법 권징 제67조). 그러므로 기소제기 전에 기소위원회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국가 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헌법이 규정하는 변호인의 선임은 신고제입니까? 재판부가 그 변호인의 자격을 심사할 권한이 재판부에 없습니까?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과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직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자격은 심사의 대상이며 변호인을 선임하는 피고인은 총회 헌법이 요구하는 변호인의 자격의 적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그 선임의 적합함은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의 판단에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의심사에 있어서도 재판에 있어서의 통지기간에 대한 고지의 경우 헌법 권징 제36조 재판 송달의 기일에 관한 법규에서 보는바와 같이 재판 기일 전에 제출한 서류는 사전에 제출하여 재판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①변호사 선임계를 재판 당일 재판석에서 제출하여 재판부가 이를 검토할 여유를 주지 않았고, ②당석에서 제출된 선임계를 검토한 바 피고인 측이 제출한 13건의 변호사 선임계 중 1명은 교회에 등록한지 얼마되지 않은

평신도였으며, ③9명은 '교회요람' 외에 교회의 직원을 증명할 아무 서류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④또한 사전에 변호인의 수에 대하여 재판부에 아무 협의나 질의도 없이 13명의 변호인의 선임계를 일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 측은 교회요람이 있고 당회장이 연명하여 선임계를 제출했으니 당연히 변호인으로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재판부가 피고인의 변호권을 제한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3명 중 재직증명서를 첨부한 안수집사 1명, 권사 1명, 남자 서리집사 1명을 변호인으로 선정해 통보하여 재판에서 충분히 피고인을 변호할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 측의 주장대로 하면 평신도도 피고인이 연명하여 변호인 선임계를 내어 신고만 하면 재판국은 이를 수용해야 하며 피고인 측이 변호인 수의 제한없이 변호인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총회 헌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질의2) 헌법 12조 2항 재판국장의 재판사무 지휘, 감독의 권한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위의 경우 헌법 12조 2항 재판국장의 재판사무 지휘, 감독에 관한 권한은 무엇입니까 ①총회 헌법은 재판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건의 내용을 바르게 숙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판에 필요한 출석과 서면의 준비를 재판일 10전까지 준비하여 상호 통보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헌법 권징 제67조 송달, 시행규칙 45조 2항) ②또한 피고인 측은 재판일 이전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여 자신을 변호할 변호인에 대한 재판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이를 검토하고 준비할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부에 사전 통보 없이 재판 당일 재판이 개시된 시간 전에 다수의 교인들이 재판정에 착석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이라고 하면서 당석에서 13명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재판부는 첫 재판은 사실심문이 없는 인정심문만 진행되므로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를 검토한 후 결과를 통지해 줄 것을 설명하고 변호인 선임이 있기까지는 재판정에서 퇴정하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재판국장의 요청이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입니까? 피고인 측의 주장대로 재판을 일시 중지하고 피고인 측이 선임한 변호인들의 서류를 검토할 여유

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적법한 재판진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 재판장이 취할 재판장의 지휘, 감독의 권한과 범위는 무엇입니까

질의3) 헌법시행규정 제44조에 대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은 헌법시행규칙 제44조 2항에 근거하여 기소위원회에서 변호인으로 선임 되었으므로 당연히 1심 재판에서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필요가 없이 변호할 권한을 갖는다고 해석하여 재판국장의 재판 지휘, 감독의 권한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①이런 경우 재판부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호인을 기소위원회에서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고 하여 재판부에 선임계도 내지 않은 변호인을 당연히 변호하도록 허락해야 하는 것입니까? 헌법시행규칙 제44조 2항의 '효력이 있다' 는 규정은 재판국의 재판의 지휘 감독의 권한을 뛰어 넘는 규정입니까? 제44조 2항이 유효는 유효하나 44조의 변호인 선임에 대한 법 정신으로 볼 때 이도 재차 선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 재판국장의 재판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한다고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유효라는 의미가 재판부의 검토와 허락없이 당연히 피고인 측의 의도대로 재판부는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본 재판부가 심리한 재판은 피고인이 동산교회 당회장으로 당회원 전원의 연명으로 고소되어 직원남용 및 명예훼손 혐의뢰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한 재판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당연한 변호인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①당회장의 직원남용으로 고소된 원인을 제공한 자로 고소인들에게 고발된 상태이며 ②그 당연히 변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직원 선거(안수집사 선거)가 불법이라고 하여 장로 측에 의해 고소되어 본 재판부에 행정재판에 기소된 행정재판의 피고인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기소위원회에서는 기소 전이므로 변호인으로 기소위원회가 허락하였다고 해도 당사자와 피고인이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재판하여야 하는 본 재판부는 ①피고인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되었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의 기소사항에 피고인의 변호인을 자처하는 당사자도 관련되어 있으며 ②변호인 당사자도 행정재판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위원회에서 기소 전 피고인을 변호하였다고 해도 기소가 되었고 행정재판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로써는 변호인의 활동이 적법한지를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재판

부의 지휘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을 자처하는 당사자는 재판부가 변호인으로 허락하지 않은 재판정에서 퇴장을 요구하는 재판부의 요청을 2차례 이상 거부하고 퇴장하지 않아 재판이 2회나 중단되게 하고 오히려 재판부가 기소전 변호인으로 활동하였으니 1심에서 당연히 변호할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재판부의 불법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44조 2항이 기소전의 변호인이므로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본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당사자를 당연히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허락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는 의미가 무엇이며 재판국장의 재판 지휘, 감독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재판이 피고인 측에 불리하면 재판국원 기피신청을 하거나 재판의 결과가 피고인 측에게 억울하다고 하면 상급심에 재심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인은 수차 자신의 입장만을 무리하게 해석한 질의서를 수차 헌법위원회에 제출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발췌하여 재판에 관계한 국원들과 노회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언론에 공개하고, 재판국이 피고인 교회에 와서 사죄하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재판과 관련된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교인들과 시위를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위원의 교회에는 실제로 주일 예배에 오는 성도들 앞에서 “당신의 교회 목회자는 불법을 행한 사람” 이라는 취지의 시위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문제를 야기한 교회가 이를 수습하여 교회를 회복시키려는 노회와 재판국의 노력을 오히려 사실심리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재판정을 장악하고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고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여론에 호소하여 노회와 재판국을 불법으로 몰고 가는 여론재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질의4) 이런 경우 재판부가 취할 재판부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53.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주노회장 이정일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27호, 총회 헌법적용의 하자에 대하여(2017.3.8.)”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5장(상소) 제3절(상고) 제107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헌법 권징 제5장 제1절(통칙) 제91조(상소권자) 제1항, 제4항,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27조(당사자 능

력), 헌법시행규정 제71조 제2항에 의거 강행규정이며, 제주노회 기소위원회는 고소인(고발인)의 상고 청원에 따라 총회 재판국에 상소한 것이므로, 헌법 권징 제91조 제1항에 의한 상소로 사료되어 법 적용에 하자가 없다 할 것이다."

질의내용 / 총회 헌법 권징 제5장 제91조 제3항에 '고소인(고발인)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기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소위원회에 상소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소위원회는 고소인(고발인)을 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노회 재판국이 시무정지 6개월을 판결하자, 고소인(당회)은 판결에 불복 기소위원회에 상고를 요청하였고, 노회 기소위원장은 고소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총회 재판국에 상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헌법 적용에 있어서 강행규정입니까? 아니면 임의규정입니까?

54. 전도사의 자격

경기노회장 이명식 목사가 제출한 "경기노회 제65-51호, 헌법 질의건(2017.3.10.)" 건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7장(전도사) 제49조(전도사의 자격) 제1항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졸업자'는 본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서 교역자(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신학교(성서학원) 졸업자를 말하며, 타 교단 신학교(성서학원) 졸업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 증명서(신학과)를 제출한 자라도 본 교단 전도사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제2편 정치 제7장 전도사 제49조 전도사의 자격 제1항 25세 이상된 자로서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졸업자에 대한 질의로서 신학교 또는 성서신학원 졸업자에서 타교단 신학교 및 성서신학원 졸업자가 본 교단 전도사 고시를 볼 수 있는지(위 헌법 조항에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이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마치 교단과는 관계없는 듯한 해석이 가능하기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의2) 위 관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증명서(신학과)를 제출한자가 전도사 고시를 볼 수 있는지(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국가에서 고졸자에게 학위를 주기 위한 제도로 각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55.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 임직식과 위임식

진주남노회장 김창윤 목사가 제출한 “진주남 제120-67호, 헌법질의(2017.3.9.)”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1항, 제2항, 제29조(청빙의 승인), 제33조(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시무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제1항, 제2항, 제16조의 6(노회 폐회 시 목사 청빙 승인), 제16조의 7[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제17조(위임식)에 의하여 위임목사의 직무는 시작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3항, 제29조(청빙의 승인),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시무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제1항, 제16조의 5(미조직교회의 목사 청빙), 제16조의 6(노회 폐회 시 목사 청빙 승인), 제16조의 7[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의하여 담임목사 청빙이 이루어진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3항 ①호,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제2항, 제4항에 의해 청빙한다.”

질의4)에 대하여 “이것이 사실이라면 불법이라 판단된다.”

질의5)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75조(행정소송의 대상 범위) 제3항을 위배한 행위로,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항, 제2항에 해당되는 죄과이다.”

질의6)에 대하여 “당회 기소위원회의 구성과 당회 재판국 구성[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4절(당회 재판국) 제23조(구성),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55조(당회 기소위원회의 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위탁재판) 제121조(위탁재판의 청원)에 의거 위탁재판을 청원한 사실에 대해 절차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말이 아니다.”

질의7)에 대하여 “당회 기소위원회의 구성과 당회 재판국 구성[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4절(당회 재판국) 제23조(구성),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55조(당회 기소위원회의 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위탁재판) 제121조(위탁재판의 청원)에 의거 위탁재판을 청원하여야 한다.”

질의8)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3항 ①호,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1조(제직회)에 의거 위법이다.”

질의9)에 대하여 “부결이다.”

질의10)에 대하여 “적법한 청빙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택에 입주하고 교회를 시무하고 있다면 녹명교회 담임목사라 할 수 없다.”

질의1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1장(노회) 제74조(노회원의 자격) 제1항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제3항 ‘총대 장로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

질의1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1장(노회) 제74조(노회원의 자격) 제2항 ‘공로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은 언권회원으로, 회원권이 없다.”

질의13),14)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9장(치리회) 제63조(치리회의 권한) 제3항, 제11장(노회) 제74조(노회원의 자격) 제1항, 제3항,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1항~3항에 의거 위헌(무효)이며, 개정하여야 한다.”

질의15)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9장(치리회) 제60조(치리회의 구분)에 의거 제1차적 책임은 이를 집행(시행)한 해 치리회의 치리회장이며, 제2차적 책임은 집행(시행)한 그 사람(가해자)에게 있다.”

질의16)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제6항은 현재도 유효한 조항이다.”

질의내용 / 본 노회 소속 녹명교회(임시당회장 윤명근 목사)에서 담임목사 청빙에 대하여 청빙 심사중 노회 정치부나 노회에서의 청빙 승인도 받지 않고 2016년 3월 3일 날 새벽같이 불법으로 교회를 들어와 교회를 점거한 자가 당시 노회장 등 일부 임원과 소속교회 시무장로들을 상대로 명예훼손하였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부인(사모)와 함께 일금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까지 제기하고 현재 한 건물에서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주제한 예배와 불법으로 끌고 들어온 K목사가 주제한 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법정 싸움을 하고, 총회 재판국에서는 이 불법한 자가 노회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건에 대하여 판결을 미루고 있는 실정에 법원에서 민형사상 재판이 있기에 법원 판사들과 총회 재판국이 총회 헌법을 바로 알

아야 하기에 담임목사 청빙등에 대하여 헌법질의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질의1) 위임목사 청빙에 대한 헌법적인 절차와 헌법조항은 무엇인지요

질의2) 담임목사 청빙에 대한 헌법적인 절차와 헌법 조항은 무엇인지요

질의3) 담임목사 청빙과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당회 결의서(주제자인 당회장의 회의 사회,일시,장소,안건,안건 결의사항이 있는 당회록)가 없이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지요

질의4) 담임목사 청빙 과정에 있어 당회가 구성된 교회(녹명교회는 시무장로 3인, 당시 시무목사가 정년 하기 전에는 당시 시무목사가 당회장, 2015년 12월 31일 은퇴 후에는 임시당회장 파송됨)에서 우선적으로 당회에서 결의를 한 사실이 없는데 제직회를 정상적으로 주제하여 결정한 사실이 없는데 제직회원 일부가 후에 서명했다고 비어있는 사택으로 이 교회 황모 장로가 그 목사(K목사)를 새벽같이 들어오게 한 것과 들어온 것은 불법인가, 합법인가요

질의5) 이렇게 불법으로 들어온 목사가 노회장과 임원 시무장로들이 이렇게(위 질의4)같이) 들어오는 것은 불법이라 하자 도리어 당시 노회장 등 7인을 걸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행위는 총회 헌법 권징 사유 몇 조에 해당되고 시행규정 몇 조에 해당된 죄과인가요

질의6) 이런 과정에서 노회장이 행정명령을 2회나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고, 질의5)와 같이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부득불 시무 장로 2인이 불법으로 온 목사와 불법으로 이사오도록 한 시무장로 1인을 고발하고 임시당회장이 노회에 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불법으로 이사 오도록 한 그 시무장로(황장로)를 교회에서 재판하지 않았으니 절차가 맞지 않다고 하는 총회 재판국장과 일부 국원의 말이 맞는 것인지요

질의7) 시무장로 3인중 시무 장로 2인이 시무장로 1인과 불법으로 이사온 목사를 고발하였는데, 이 교회에서 고발된 장로를 누가 기소하고 누가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8) 담임목사 청빙과정에서 앞의 질의4)와 같이 황장로가 김목사란 사람을 불법으로 오게 한 후에 제직회원들이 서명한 것을 제직회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당한 제직회인지요

질의9) 청빙위원회가 2인을 압축하여 담임목사 청빙에 대하여 선택하는 과정에서 시무장로 3인, 당시 시무목사 1인이 2대 2이가 된 경우에 이는 헌법상 가결되는 투표인가요 부결되는 투표인가요

질의10) 녹명교회는 앞의 질의9)와 같이 당회에서 2대 2로 결정되어 가결된 당회결의서가 없고, 제직회도 정상적으로 제직회(담임목사인 교회 시무하는 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이 주제한 제직회)를 하지 않아 담임목사 청빙청원서가 없으므로 진주남노회는 녹명교회 김목사란 사람을 녹명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을 승인한 사실이 없는데, 2015년 3월 3일날 황모 장로와 짜고 들어온 김모 목사는 이교회를 시무하는 담임목사인가요, 불법으로 사택과 교회를 점거한 목사인가요

질의11) 총회 헌법에 노회의 회원권을 가진 목사와 장로는 어떤 자인가요

질의12) 노회원 자격중 언권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이 있는지요

질의13) 해 치리회(노회나 당회)가 제 규정(규칙, 시행규정, 조례, 시행세칙 등)으로 총회 헌법을 위배하고 노회원의 기본권인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위헌인가요 합헌인가요

질의14) 총회 헌법 정치 제63조(치리회의 권한) 제3항[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과 정치 제75조(노회임원선출)-[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규정으로 정한다]는 헌법에 따라 제규정을 제정하였는데, 해 치리회(노회나 당회)가 헌법 정치 제74조 제1항과 제3항을 위배한 제규정(규칙,시행규정,조례,시행세칙 등)으로 노회원의 기본권인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유기책벌을 받아 시벌중인 사실도 없는 회원을 노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헌법시행규정 제35조 제3항에 의거 그 효력이 유효인가 무효인가요

질의15) 해 치리회(노회나 당회)가 제규정(규칙,시행규정,조례,시행세칙 등)으로 총회 헌법을 위배하고 노회원의 기본권인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노회원 중에 누군가에 불이익을 받게 한다든지 피해를 입게 한다면 이에 대한 (헌법 위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요

질의16)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에 “헌법해석 권한이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라고 명시하는데 이 조항은 현재도 유효한지요

56. 노회원의 자격 / 은퇴목사 / 교인의 권리

부산남노회장 공두관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73-141호, 헌법질의(2017.3.8.)” 건

해석 : 질의1),2),3)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제10항, 제11장(노회) 제74조(노회원의 자격) 제1항, 제2항에 의거 목사(은퇴목사 포함)는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개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나, 교인의 의무[동 법 제3장(교인) 제15조(교인의 의무)]에 솔선수범하여야 할 것이며 교인의 권리[동 법 제3장(교인) 제16조(교인의 권리)] 중 성찬 참례권은 있다.”

질의내용/ 헌법 제2편 정치 제3장 교인 제13조 교인의 정의를 보면 “교인은 성부,성자,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1) 목사의 회원권은 노회에 있는데 은퇴한 목사는 개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질의2) 등록할 수 있다면 교회교적부에 등재하고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가

질의3)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면 당연히 성찬 참례권과 18세 이상 세례교인으로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고 의결권이 있는가

57. 목사 안수식

대구서남노회장 이규현 목사가 제출한 “대서남노 제179-26호, 총회 헌법위원회 질의(2017.3.21)”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노회 결의 없이는 목사 임직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목사 임직과 일정 등은 노회 결의 후 별도로 거행할 수 있다.”

질의2)에 대하여 “목사 임직(안수)식 거행과 노회 회원의 정족수 미달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질의내용 / 총회 헌법 정치 제5장 32조에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받을 경우에 노회 석상에서 임직하다’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노회가 폐회한 후에 목사안수식을 하는 것도 가능한지

질의2) 정회한 후 다시 속회 했을 때 노회 회원의 정족수가 미달해도 목사안수식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58. 교회의 직원의 구분 / 특별전문사역 부문의 범위

영남신학대학교 총장이 제출한 “영신 2017-101호, 헌법 제21조 2.②항의 특별전문

사역 부문의 범위에 대한 질의(2017.3.23.)" 건

해석 : 질의1),2),3)에 대하여 "김규식 목사는 지교회(헌법 정치 제9조, 제21조)의 직원이 아닌 기관목사(헌법 정치 제27조 제5항)이므로, 상기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김규식 목사의 건은 귀 기관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에 교수로 재직중인 김규식 목사는 본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우리 교단은 그동안 해외 시민권자의 교직 시무를 금지했었지만 총회는 전문사역자에 한해 교직시무금지를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제93회 총회) '교수'를 포함시켜 전문사역자의 범위를 정하고(제94회), 이를 시행하라고 64개 노회에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이에 총회 헌법 제21조 2, ②항의 특별 전문사역 부문의 범위와 관련하여 의견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영남신학대학교에 교수로 재직중인 김규식 목사에게 총회 "헌법 21조 교회의 직원의 구분" 의 적용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질의2) 만약 적절하다면 "헌법 제21조 2, ②항 특별 전문사역 부문(청소년 교육 등)" 의 범위에 '교수'가 포함되는지

질의3) 만약 "특별전문사역 부문(청소년 교육 등)" 범위에 '교수' 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김규식 교수는 목사직이나 해외시민권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지

59. 불기소 /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서울서노회장 최내화 장로가 제출한 "서노 제95-68호, 헌법 질의해석 요청의 건(2017.4.17.)"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67조(불기소) 제6항에 의거 기소명령을 받은 기소위원회가 기소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직접 재판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6항 '직무를 유기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 1. 노회 재판국 "마포교회 변종남 장로 고발 건(사건번호 2016-3)"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당회에 접수된 고발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회 기소위원회가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사건을 고발인들이 해당 노회 재판국에 항고(1,2차)하였습니다.

3. 고발인들이 항고(1,2차)하여 이를 받아들인 노회 재판국은 “당회 기소위원회에 기소하라” 는 기소명령을 2차에 걸쳐 마포교회 기소위원회에 기소명령을 통지하였습니다.
4. 그러나 당회 기소위원회는 피고발인에게 기소할 죄가 없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5. 당회 기소위원장이 노회 재판국의 기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헌법해석을 구합니다.

질의) 항고(1,2차)에 따라 노회 재판국이 당회 기소위원회에 ‘기소하라’ 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

60. 판결 확정 전 무죄 추정

광주노회장 정태진 목사가 제출한 “광노제31-71호, 당회장권에 대한 질의서(2017.4.26)”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당회장이 재판에 계류 중일 때는 헌법 권징 제72조(판결 확정 전 무죄 추정)에 의거 최종 판결 확정 시까지 노회 임원회는 임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당회장이 계속 당회장권을 행사한다(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9). 그러나 헌법 권징 제124조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헌법 권징 제129조 제5항에 의한 재심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권징 제72조)에 의거하여 재판 받을 권리가 있으며, 헌법 권징 제129조 제5항에 의한 개시결정이 되었다면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한 서울지방법원에서 총회 판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여 효력이 정지되었다면 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질의내용 / 헌법시행규정 제73조 4항 “헌법 권징 제124조에 의한 재심청구는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헌법 권징 제129조 제5항에 의한 재심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재판국의 결정으로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카합81077 총회 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등 가처분” 결정문에 의하여 총회 재심재판국이 재심개시 결정을 하였다면 ‘무죄추정주의원칙’ 에 의거하여 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61. 교회의 직원의 구분

광주노회장 정태진 목사가 제출한 “광노제31-72호, 교회직원에 대한 질의서(2017.4.2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1조(교회의 직원의 구분), 제23조(임시직)에 의거 교육 전도사는 임시직에 포함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0조(변호인의 자격) 제1항에 의거 (교육) 전도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질의내용 / 헌법 권징 제30조 1항(변호인의 자격은 본 교단의 직원 중 선임한다)
헌법 정치 4장 21조 1항(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헌법 정치 4장 23조(임시직은 전도사와 서리집사이다)
질의1) 전도사중 교육전도사는 임시직에 포함되는가
질의2) 교육전도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가

62. 헌법 질의해석 지체 없이 시행 /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

익산노회 새소망교회 황철규 목사 외2인이 제출한 “헌법질의에 대한 유권해석(2017.4.2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본 사안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통보는 유효하므로,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제6항에 의거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질의2)에 대하여 “익산노회 재판국은 가중 처벌할 사항이 아니며 무효이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7장(시벌 및 해벌) 제143조(가중시벌)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법 제2장(재판국) 제1절(통칙) 제9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에 의거 시벌할 수 없으므로 적법이 아니며 무효이다.”

질의4)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과 총회장의 행정처분은 노회가 반려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시행규정 제89조(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에 의거 책벌사항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 질의1) 이미 총회 헌법위원회가 익산노회 재판국의 판결이 위법이며 무효라고 4차에 걸쳐 해석(예장총 제100-1432호, 예장총 제101-456호, 예장총 제101-583호, 예장총 제101-585호) 통보했는데도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4회에 익산노회에 통보한 헌법위원회 해석통보는 지금도 모두 유효한가요, 모두 유효하다면 익산노회는 지체없이 시행해야 되는지요

질의2) 이미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 즉 “익산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와

익산노회 재판국의 유죄선고는 무효이다"(2016.9.23 익산노회가 통보 받음)라고 해석하여 통보했다. 최고 치리회인 101회 총회에서도 익산노회 재판국의 판결이 무효라고 보고 받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총회 재판국이 상고를 기각 판결한 것은 "위법으로 무효이다"(예장총 제101-583호, 예장총 제101-585호)라는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이성희 총회장의 결재를 거쳐 두번이나 통보했는데도 위법이며 무효인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근거하여, 익산노회가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없는데 했다면 처벌은 당연히 무효인가요

질의3) 총회장 명으로 제2재심재판국을 구성하고, 재심을 개시 결정하여 심리중인데, 동일 안건으로 하회인 익산노회 재판국이 재심중에 있는 재심의 원고를 소환하거나 재판하여 시벌할 수 있는지요, 만약 판결했다면 그 판결은 적법이며 유효한지요, 불법이며, 무효인가요

질의4) 헌법위원회 해석과 총회장이 결재를 하여 하회에 송달한 헌법해석통보를 하회에서 반려할 수 있나요, 또한 총회장이 내린 행정처분을 노회가 반려할 수 있나요

63. 적용범위

서울강남노회장 김예식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59-199호, 헌법해석 통보에 대한 질의(2016.12.27.)"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예장총 제101-450호(2017.1.11), 헌법해석 통보된 공문 질의 4), 5) 해석으로 갈음하기로 하다."

질의내용 / 질의) 총회 헌법위원회가 서울강남노회장에게 보낸 문서번호 예장총 제101-299호, '헌법해석 통보'에서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3항에 근거하여 1992년 2월 1일(토)에 개정되어 시행하여 온 바, 상위법규에 위배되는 정관규정이 있다면 개정하여야 한다' 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서울강남노회는 헌법위원회의 해석 가운데 '개정하여야 한다'를 서울교회가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목사안식년과 목사재신임 규정이 상위법규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오정수 장로 외 17인은 이를 일반적인 해석으로 이행하여 현 규정대로 담임목사에게 안식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인해 서울교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회 헌법위원회의 명확한 답변은

서울교회와 또한 서울교회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본 노회 재판국의 판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64. 고소 및 고발 / 고발기간과 취하 /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가 제출한 "서울교회 제2017-1호, 헌법질의(2017.1.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49조(고소기간),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에 의거 고소, 고발의 기간도, 제8장(행정쟁송) 제2절(행정소송) 제157조(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제3항에 의거 무효 등 확인소송의 제기 기간도 경과하여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예장총 제101-450호(2017.1.11), 헌법해석 통보된 공문 질의5) 해석으로 갈음하기로 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박노철 위임목사가 지금으로부터 6년 6개월 전인 2010년 5월경 장신대 청목과정 두 학기를 수강하여 16학점을 이수하였고, 이후에 목사고시에 응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11년 5월경에 목사고시를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정수 장로 외 17명이 청목과정이 6개월 밖에 안됐다고 하여 목사고시를 본 사건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요

질의2)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박노철 위임목사가 헌법시행규정 26조 7항 "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에 의거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 "적용순서는 총회 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총회 결의, 노회 규칙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 등의 순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임으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에 의거 서울교회 규정 / 정관과 당회 석상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가던 중, 조건부 재신임의 이야기를 교단 헌법을 잘 알지 못하고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약속이 무효가 되었음에도 위임목사가 안식년을 통해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65. 형식적 확정력(외부적 확정력, 불가쟁적 효력) / 특별재심 청원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101-680호, 헌법해석 요청(2017.3.15.)"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형식적 확정력(외부적 확정력, 불가쟁적 효력) 및 내용적 확정력(불가변적 효력)에 의거 다시 재심청구할 수 없고, 다만

총회 특별재심 청원[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3절(총회특별재심) 제132조~제140조 참조]은 가능하다."

질의내용 / 사건의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예총재판국 사건 제99-10호 판결 / 익산노회 이리남중교회 홍광수 장로가 익산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무효확인의 소-담임목사청빙허락무효확인).

- 주문 : 1. 소를 각하한다.
2. 예납된 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나.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 판결 "재심재판국 사건 제100-2행정"

- 주문 : 1.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다. 위 재심재판국 사건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은 귀 헌법위원회의 "예장총 제101-445호 / 헌법해석통보(2017.1.11.)" 에 따른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된다는 해석에 근거하여 "소 각하" 판결(확정)을 하였습니다(예총재판국 사건 제100-57호 판결).

질의) 이상의 내용을 살펴 볼 때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1차)가 이루어졌고, 다시 총회재판국의 판결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를 다시 재심청구(2차)할 수 있는지

66. 위탁재판을 청구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가 제출한 "헌법질의(부전지 포함),2017.4.13.)"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이미 헌법해석 통보된 공문(예장총 제101-298호)에 명시된 대로 질의 가), 나) 뿐만 아니라 질의다), 라)까지 포함하여 병합한 해석이다."

질의내용 / 귀 총회 2016.12.14. 시행 예장총 제101-298호, 헌법해석통보(첨부#1) 관련 보충질의입니다. 귀 총회는 종전 헌법질의사항(첨부#2)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위 질의사항을 병합하여 "해석 : 질의 가),나),다),라)에 대하여, 당회 결의로 기소 및 재판을 대신하기로 한 후 책벌을 논의하던중 위탁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며, 위탁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답변하여 질의자들은 위 질의사항 가),나)항 뿐만 아니라 다),라)항에 대해서도 모두 위탁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위 헌법해석통보 "당회결의로 기소 및 재판을 대신하기로 한 후 책벌을 논의하던 중 위탁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

하며, 위탁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는 답변은 질의사항 중 가),나)항에 대하여만 답변한 것일 뿐 질의 다),라)항에 대한 답변은 누락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귀 총회의 종전 해석통보에 위 질의 다),라)항에 대한 답변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누락된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해석을 받기 위하여 이건 보충질의에 이른 것입니다. 위 보충질의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공동의회 / 제직회 / 교회 분쟁시 장로 증원 청원 불가

서울강남노회장 김예식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60-012호, 헌법 질의(2017.4.14.)"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3항 제4호에 의거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예산 및 결산을 위한 상회(노회)의 지시 행위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예산 및 결산은 재정 감독권이 있는 당회[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제5항], 예산 집행권이 있는 제직회[헌법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1조(제직회) 제5항], 예산 및 결산권이 있는 공동의회[헌법 정치 제90조(공동의회) 제5항 제2호]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3항 제4호에 의거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장로의 선택[헌법 정치 제6장(장로) 제41조(장로의 선택)을 위한 상회(노회)의 지시 행위는 위법이다."

질의4)에 대하여 "제98회기 총회헌법위원회 해석사례 124번으로 갈음하기로 하다."

〈124. 교회 분쟁시 장로 증원 청원 불가〉

목포노회장 김강순 목사가 제출한 "제110-49호, 목포노회 수다교회 분쟁 건에 대한 헌법질의 요청(2014.7.16)"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교회가 분쟁시에는 장로 증원을 청원할 수 없으며, 분쟁전 정상적인 당회에서 결정한 것은 유효하지만 현재 분쟁 중에 있다면 장로 증원 청원을 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최경복 장로님과 이경심 권사님 부부는 수다교회 장로와 권사로 시무하다가 도초제일교회로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초제일교회 당회장 김성모 목사님 명의로 최경복 장로님과 이

경심 권사님의 교인이명청원서가 2010년 12월 21일부로 수다교회당회에 왔습니다. 수다교회 당회는 2010년 12월 23일 당회를 열고 최경복 장로님과 이경심 권사님의 도초제일교회 이명청원을 허락하기로 하여 이명서를 도초제일교회 당회장에게 발송하였습니다. 2011년 1월 7일자로 도초제일교회 당회장 김성모 목사님의 명의로 최경복 장로님과 이경심 권사님의 이명을 접수하고 도초제일교회 교인명부에 등재하였음을 알리는 이명접수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리하여 노회에 2011년 4월 봄노회에 수다교회 장로 2인 미달됨을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경복 장로님과 이경심 권사님은 수다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다교회는 법적으로 수다교회 교인이 아닌 타 교인의 신분으로서 최경복 장로님과 이경심 권사님이 수다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둘로 갈라놓고 교회분쟁을 일으킨 가운데 수다교회 교인(본당 2층) 이탈측을 주동하고 있습니다. 수다교회 당회는 당회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매 노회 회기때마다 정상적인 당회를 거쳐 장로증원 청원서를 올리지만 번번히 이탈측 교인들의 방해로 임원회에서 정치부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이렇게 장로 2인 미달로 3년이 경과되어 2014년 4월 정기노회부터 폐당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질의1) 그렇다면 폐당회 되기 전에 당회가 결의하여 2014년 4월 정기노회 회기에 제출한 장로증원 청원한 것은 효력이 있는지

질의2) 지난 헌법해석통보(예장총 제98-1012호) 해석II 질의4)에서 수다교회는 왜 정상적인 당회를 할 수 없는지, 폐당회 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당회가 되지 않는지

질의내용 / 1. 질의의 배경

가. 박노철 목사가 지난 2016. 6 이후 계속된 안건상정이나 표결거부 등으로 인한 당회파행 또는 당회소집거부나 불응 등으로 정상적인 당회운영을 하지 않는 등 당회장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당회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가 초래되었음에도 다수 측 장로들은 때로는 교회법적인 한계로 무력감을 느끼고 그로 인하여 성도들로부터는 무능한 장로들이라는 비난까지 받으면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법적 절차까지 자제하면서 박노철 목사의 당회장으로서의 위치와 권한

을 존중하여 최대한 총회헌법과 시행규정 및 서울교회 규정에 따른 당회운영을 위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나. 그 과정에서 박노철 목사가 2017년 교회규정에 따른 안식년 휴무에 해당되게 되었음에도 위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속 그 시행을 거부하여 할 수 없이 2016년말 사회법정에 안식년 휴무를 전제로 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으나 위 안식년규정의 법적인 성격에 의문이 있다는 모호한 판단하에 기각되었고 이에 고등법원에 항고만을 제기한 채 1심 결정을 존중하여 2017년 1월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박노철 목사의 당회장 직무권한을 인정하고 박노철 목사가 소집한 1월 정기당회에도 참여하여 안건토의에 임하였으나 여전히 전혀 변화된 모습없이 첫 번째 당회의안 심의과정에서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표결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함으로써 어렵게 몇 달만에 소집된 당회가 또다시 파행되어 버렸습니다.

다. 이에 더 이상 박노철 목사의 당회장권 횡포에 그대로만 있을 수 없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던 중인 2017년 1월 12일 마침 귀 헌법위원회에서 사회법의 직무정지가처분건 기각결정의 주요 이유가 되었던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이 총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유권해석과 함께 박노철 목사는 교회 앞에서의 공적인 약속에 따라 2017년 10월 재신임투표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이제는 박노철 목사가 2017년 안식년 휴무에 해당하여 그 기간 동안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중단하게 됨을 이유로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설교 등 예배를 주관하면서 기타 교회 행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현 상황에 관하여 -박노철 목사는 여전히 장로교정체성에 맞는 당회의 권한자체를 무시하고 그에 관한 헌법규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가. 서울교회 당회의 다수 측 장로들은 박노철 목사에게 2016년 11월 하순부터 2017년을 준비하기 위한 신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당회 개최, 각 부서 봉사자 임명을 위한 당회소집, 특히 신년도 예,결산 준비를 위한 예,결산 당회 소집 등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계속 거부하여 결국 아무런 처리가 되지 못한 채 2017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나. 그런 상황에서 위와같이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당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당회는 과반수 당회원의 합의로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하여 2017년 예산을 위한 당회를 1월 17일에, 2016년 결산과 2017년 예산을

위한 특별제직회를 1월 22일에, 그리고 공동의회를 1월 29일에 각 개최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도 그 통과된 내용에 따라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 위주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물론 그 과정에서 박노철 목사가 일방적으로 교회 재정이 들어 있는 통장과 이를 인출할 수 있는 비밀번호 등을 모두 자신만이 관리할 수 있도록 교체하여 버리는 바람에 당회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재정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고 할 수 없이 새로 들어오는 헌금수입으로 가까스로 긴급한 재정지출만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그때서야 박노철 목사는 그동안 다수측 장로들이 그렇게 애타게 호소할 때 외면하고 있던 신년도 예,결산 당회를 소집하겠다고 하여 이미 대리당회장의 인도로 예,결산이 모두 통과되었다고 하자 더 이상의 당회절차도 없이 노회에 일방적으로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 지시를 청원하였고, 소속 서울강남노회는 서울교회의 안식년규정에 대한 귀 헌법위원회의 헌법 해석통보에 대하여 “잘못된 기초사실에 의거하여 해석하였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 고 하며 박노철 목사가 여전히 서울교회 당회장권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에서 박노철 목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2017년 2월 16일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강남노회 상회로서 지교회에 예,결산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하려면 적어도 예,결산 안건이 총회 헌법에 따라 지교회 당회는 물론 제직회를 통과한 안건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결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마. 즉, 박노철 목사 주장대로라도 2016년도 결산안만 간신히 2017년 1월 정기당회를 통과하였을 뿐 제직회를 통과한 사실이 없고 예산안은 아예 당회나 제직회를 통과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강남노회는 이러한 교단 헌법상 예,결산 처리 절차 통과여부는 전혀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냥 박노철 목사의 편을 들어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박노철 목사는 자기를 지지하는 성도들에게만 공동의회 소집을 공고한 후 이를 처리하였습니다.

바. 박노철 목사의 위와같은 총회 헌법 무시 형태는 최근 또다시 발생하였는바, 박노철 목사는 이번 봄 정기노회를 앞두고 열린 서울교회가 소속한 영동시찰회에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않은 장로선출 안건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시찰회는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 부적합을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4일 정기노회 당일 앞서 시찰회에서 반려되었던 장로선출 안건이 어떤 경위를 거쳤는지 몰라도 다시 청원안으로 제출되어 강남노회는 이를 받아들여 허락하였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청원을 받은 노회 헌의위원회와 정치부는 박노철 목사가 당회 결의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청원한 내용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이를 통과시켰다고 변명한다고 하지만 이미 위 청원안을 반려하였던 시찰장이 노회현장에 있었음을 물론 노회 헌의위원회나 정치부도 최근 서울교회가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 휴무 문제로 당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당회 결의여부를 확인하면 충분히 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자기편 감싸기의 형태로 이를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더구나 아래와 같은 총회 헌법해석에 의하더라도 현재 담임목사의 안식년 시행문제로 분쟁중에 있는 서울교회 상황에서는 장로 증원 청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허락한 것은 더욱 더 상회인 총회마저 무시한 노회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서울강남노회는 박노철 목사로부터 2017년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청원안을 제출받고 상회로서 그 소집을 지시하였는바,

   질의1) 헌법 정치 제90조 제3항에 의하여 공동의회의 소집요건은 “①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②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무흠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 있을때에는 당회 결의없이도 소집힐 수 있다” 로 되어 있고 따라서 노회가 상회로서 지교회에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하는 것은 적법한 공동의회 논의대상 안건에 관하여 당회가 공동의회 소집결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상회로서 지시하여 예외적으로 당회결의 없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적어도 해당안건자체는 일단 공동의회 논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특히 예,결산 안건은 당회는 물론 헌법 정치 제91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제직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예,결산 안건에 대하여 그 통과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 상회라도 이에 대한 공동의회 소집지시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질의2) 지교회의 해당년도 예,결산에 관하여 당회나 제직회의 사전 결의가 없이 공동의회에서만 통과된 경우 그 효력이 있

는지요

2. 서울강남노회 산하 영동시찰회에서 박노철 목사가 제출한 장로선출 안건이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부적합 하다는 이유로 반려하였음에도 정기노회 당일 헌의안으로 다시 제출되어 노회의 허락을 받았는바,

질의3)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장로청원안건이 노회에서 허락된 경우 그 허락결의는 유효한지요

질의4) 더구나 현재와 같이 서울교회가 분쟁중인 상황에서 장로증원을 청원한 것이 허용되는가요(즉, 위 제98회기 124번 헌법해석이 지금도 유효한지요)

68.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진주남노회장 김창윤 목사가 제출한 “진주남 제121-9호, 헌법질의(2017.4.28.)”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1절(통칙) 제7조(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제2항, 제3절(노회 재판국) 제20조(심판사항) 제2항에 의거 노회원(총대)으로서의 행위와 관련된 소송사건이 아니므로, 상기 2인의 재판관할은 당회 재판국이다.”

질의내용 / 헌법 제3편 권징 제2장 제1절 제7조 제2항과 권징 제20조 2호에는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을 노회재판국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고발되고 기소된 사항이 노회원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며 본 교회에서 위탁 청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고발인 박기동 장로는 답변서에서도 위의 내용을 답변하였고 제1차 변론(2017년 4월 11일)에서도 첨부된 유인물을 재판국장의 허락을 얻어 배석한 재판국원과 기소위원장에게 배부하고 낭독하여 재판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국에서는 노회총대로 파송되었으므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제2차 소환장이(2017년 4월 13일자)송달되었습니다. 과연 본교회 장로 2인은 노회총대라는 이유로 본교회에서도 권징하지 않는데 노회재판국에서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 및 만약 불법으로 노회재판국에서 재판을 강행할때에 어떤 제재 방법이 있는지

69.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

서울남노회장 나천일 목사가 제출한 “서울남89-20호,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헌법해석 의뢰(2017.12.16.)” 건과 “서울남 90-1.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헌법해석통보 촉구 및 추가질의(2017.5.17.)" 건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57조의 2(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 제1항 ④호는 전항(①호, ②호, ③호)의 죄과를 전제로 한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한 자와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를 당한 자의 소속 노회가 상이한 사건에 한해서 총회 기소위원회가 관할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내용 / 1. 최근 개정된 헌법 규정인 헌법 제3편 권징, 제57조의 2항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 에 대한 오용 내지 남용으로 말미암아 교단 헌법의 심급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거나, 재판권관할 위반의 문제가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법적 소속은 노회인 까닭에 목사에 관한 (권징)재판관할은 노회재판국(노회 기소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자와 피고소(고발)자의 소속 노회가 다르다' 는 이유 하나만으로 총회 기소위원회가 목사에 관한 권징소송 건을 다루게 된다고 하면, 헌법 권징 제7조 2항과 충돌하고 모순이 됩니다. 총회 기소위원회가 목사에 관한 권징 소송 건을 다루게 되면, 목사는 자기 소속 노회의 기소위원회와 노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받는 기회가 박탈되고, 바로 총회 기소위원회와 총회재판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 항목을 살펴보면 총회 기소위원회는 '총회와 총회 산하 단체나 기관에서 그 직무와 관련된 죄과로 고소(고발)하거나 기소 의뢰한 사건들'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총회 기소위원회는 총회 총대, 또는 총회 산하 단체나 기관에서 그 직무와 관련된 죄과로 고소된 것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도, 고소(고발)한 자와 고소(고발)를 당한 자의 소속 노회가 서로 다르기만 하면 권징 소송 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사와 노회원 장로에 대한 재판관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가 오용, 남용된다면 앞으로 전국의 모든 노회 목사와 노회원 장로들에 대한 고소(고발)를 타노회의 목사와 장로를 통해 하면 바로 총회 기소위원회로 넘어가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될 것입니다. 그러면 총회 기소위원회를 설치한 근본 취지는 퇴색해 버리고, 전국의 모든 목사와 노회원 장로들을 고소·고발 분쟁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야기되고 있는 헌법 위반의 요소들을 해소하고,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헌법위원회가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해석, 즉 헌법 권징 제57조의 2항, ④호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한

자와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를 당한 자의 소속 노회가 상이한 사건” 에 대한 바른 해석 요청.

2. 고소(고발) 또는 기소의뢰한 자와 고소(고발) 또는 기소의뢰 당한 자의 소속 노회가 서로 다르기만 하면 총회 기소위원회가 이 사건을 접수하여 다루는 것은 권징 제57조의 2를 오남용한 것으로써 “고소 및 고발은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소속 치리회장에게 해야 한다” 헌법 권징 제53조 1항과 모순이 되어 헌법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를 언급한 헌법 권징 제57조의 2의 1. ④는, ①,②,③ 규정의 연장선에서 ④를 적용하여야 하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노회만 상이하다고 고소(고발)장을 총회 기소위원회가 취급할 수 없고, 피고소(고발)인이 총회 소속인 자라야 헌법 권징 제53조 1항과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즉, ‘총회와 총회 산하단체나 기관에서 그 직무와 관련된 죄과로 고소(고발)하거나 기소의뢰한 사건들’ 만을 총회 기소위원회가 관할함이 적법한 것이며, 권징 제7조와 권징 제53조 1항에 근거하여 피고소(고발)인의 소속이 노회이면 노회(기소위원회)재판국이, 피고소(고발)인의 소속이 당회이면 당회(기소위원회) 재판국이 관할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70. 적용범위 / 상위법규(총회 헌법)에 위배되면 무효) / 교회의 직원과 유급종사자, 은퇴자

부산남노회장 공두관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74-44호, 헌법질의(2017.5.22.)”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2항에 의거 총회헌법이 우선이다.”

질의2)에 대하여 “2009년 11월 당회 결의사항(항존식 65세 시무 종료)은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2항[상위법규(총회헌법)에 위배되면 무효)]에 의거 위법이며 무효이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2조(항존직),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2항에 의거 총회헌법이 우선이다.”

질의4)에 대하여 “재판 판결에 의한 사직도 아니고 [질의2)해석 참조], 헌법시행규정 제15조(교회의 직원과 유급 종사자, 은퇴자) 제1항에 의해 자의 사직한 것도 아니고, 다만 위법한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 필요없이 바로(즉시) 복귀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모법(총회 헌법, 상위법)과 지교회 당회결의가 충돌할 때 모법(총

회 헌법)이 우선입니까? 당회결의가 우선입니까?

질의2) 모법(총회 헌법)에 없는 조항을 당회 결의만으로 제정하여 시행함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질의3) 당회 결의만으로 은퇴연령을 당시 담임목사는 총회 법대로 70세로, 나머지 항존직(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은퇴연령을 65세로 정하여 8년전부터 당사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계속 은퇴를 실행한다면 당회결의를 우선해야 합니까? 아니면 모법(총회 헌법)을 우선해야 합니까?

질의4) 만약 위법이라고 하면 그동안 조기은퇴 했던 70세가 되지 않은 항존직(장로, 안수집사, 권사)은 복귀해야 합니까?

71. 소송절차 / 고소(고발) 및 기소의뢰의 제한 / 재심 사유 / 고발기간과 취하

경동노회장 이상철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45-7호, 헌법해석 질의건(2017.4.10.)"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2)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이 1심일 경우 반드시 제1심 재판국과 동일한 재판절차를 거친 후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만약 총회 재판국이 제1심 재판국으로서 거쳐야 할 제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이다."

질의3)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에 사건이 계류되기 이전에 이미 노회 기소위원회가 노회 재판국에 적법하게 기소를 하여 노회 재판국에 사건이 계류중에 있다면, 총회 재판국의 해당 사건은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설사 총회 재판국이 법리오해 등의 사유로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 선고까지 다마쳤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위법하여 무효가 되고, 만약 아직까지 노회 재판국이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노회 재판국은 계속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하면 된다."

질의4)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5),6),7)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54조의 3[고소(고발) 및 기소의뢰의 제한]에 의거 '치리회의 임원회 및 각 부서 · 위원회의 결의, 결정, 해석, 판결 등 업무상의 행위는 책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금품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 와 관련한 비리행위는 책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질의8),9)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10)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없다.”

질의11)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재판을 할 경우 무효 또는 재심사유가 된다.”

질의1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 제3조(적용범위) 제1항,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에 의거 적법하지 않으며,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6항에 해당할 경우 재심사유가 된다.”

질의13)에 대하여 “해당 치리회 재판국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14)에 대하여 “유효하다.”

질의15)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49조(고소기간),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 제1항에 의거 다시 고소(고발)할 수 없다.”

질의16)에 대하여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17),18)에 대하여 “제100회 총회 헌법해석사례 80번 4)로 갈음하다.”

〈80. 고발기간과 취하 / 기소장의 변경〉

익산노회 새소망교회 황철규 목사 외 3인이 제출한 ‘헌법질의서에 대한 유권해석(2016.9.5.)’건

해석 : 질의4)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 헌법시행규정 제60조(고발인의 자격, 방식, 취하, 송달과 화해) 제3항에 의거 공소시효 도과로 인하여 무효이며, 또한 송달일 도과로 인하여 고소(고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 질의4) 총회 헌법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 1)제1항에 의하면 ‘고발은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과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발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 8월 19일의 행위에 대하여 2015년 11월 5일 고소,고발한 것은 공소시효 도과로 인하여 원인무효로 보아야 하며, 2)헌법시행규정 제60조 3항에 의하면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도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산노회장은 2015년 11월 5일 접수한 고소(고발)장을 2015년 12월 8일자로 송달(34일경과) 하였으므로 고소(고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

질의내용 / 총회 재판국 기소명령(사건번호 총재100-17호, 18호) 일정별 진행 사항

■ 제1차 기소명령

2016.6.07. 총회 재판국(권징분과) 제1차 재항고 결정(기소명령) 의결

2016.6.08. 총회 재판국 제1차 재항고 결정문 우편 발송
(예장총재 제100-360호, 제100-361호 2016.6.8.)

2016.6.09. 경동노회 서기부 송달문서 우편접수
(수신 : 노회장, 참조 : 재판국장,기소위원장)

2016.6.14. 노회 서기부 경동노회 재판국 및 기소위원회에 제1차 재항고 결정 문서이첩(경동 144-51호, 144-53호 2016.6.14.)

2016.6.14. 경동노회기소위원회가 총회 재판국의 제1차 재항고 결정문(기소명령)접수

■ 제2차 기소명령

2016.8.02. 총회 재판국(권징분과) 제2차 재항고 결정(기소명령) 의결

2016.8.11. 총회 재판국 2차 재항고 결정문 우편 발송
(예장총재 제100-480호, 제100-481호, 2016.8.11.)

2016.8.12. 경동노회 서기부 제2차 결정문 송달문서 우편접수
(수신 : 노회장, 참조 : 재판국장, 기소위원장)

2016.8.22. 노회 서기부 경동노회기소위원회 및 노회재판국에 2차 재항고 결정 문서 이첩(경동 제145-118호, 제145-119호 2016.8.22.)

2016.8.22. 경동노회 기소위원회가 총회 재판국의 제2차 재항고 결정문(기소명령) 접수

2016.8.22. 경동노회 재판국에 기소(기소위원회 2016-44호, 45호, 2016.8.22.)
(경동노회 재판국 사건번호 경동 16-08-03호, 경동 16-08-04호)

2016.8.22.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에 기소하였음을 보고.
(기소위원회 2016-46호, 47호, 2016.8.22.)

질의1)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의 제2차 재항고 결정문(기소 명령)에 의하여 기일 내에(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노회 기소위원회가 노회 재판국에 적법하게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을, 총회 재판국이 뒤늦게 “기소장에 기소사실을 직접 기재하지 않았다” 는 사유로 헌법시행규정 제67조 제6항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고 총회 재판국이 직접 자판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2)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헌법시행규정 제67조 제6항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직접 자판할 때, 제1심 재판임에도 헌법 권징 제4장의 제1심 소송절차 (“①원피고인 및 노회 기소위원회에 재판일정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②원 피고인에게 재판기일고지 및 출석요구도 하지 않았고, ③원피고인의 변론이나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④재판 개정 당일 일방적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⑤재판 개정 당일 판결하려 시도한 것")를 거치지 않고 재판을 한 것이 적법한지

질의3)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에서 위 질의2)항에 따라 당일 판결을 시도하였으나 의결 정족수(재적 3/4 찬성) (재적 7명중 6명 찬성) 미달(찬5 : 반1)로 판결이 무산되어 헌법 제2편 권징 제2장 제2절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 회기 총회 재판국 전원합의부에 회부되었는바, 전원합의부가 노회 재판국이 이 사건을 재판 중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또 제1심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하였다면 적법한지

질의4) 총회 재판국(권징분과) 1,2차 재항고 결정문(기소 명령)의 주문과 결정이유 및 고지사항에 대하여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적법하지 않다' 라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질의3)항에서 명시한 것처럼 총회 재판국 전원합의부로 재판이 회부되어서 재판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판결을 하였는데, 판결주문과 판결이유를 총회 헌법위원회가 적법하지 않다고 해석한 1,2차 재항고결정문(기소명령)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한 것이 적법한지

질의5)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교회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기가 교회수습을 위한 직무상의 행정행위를 한 것을 권징으로 책벌(위원장:면직·출교, 서기:정직 1년)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6) 교회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도 아닌 서기의 직무상 행정행위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권징의 죄과를 들어 책벌(정직 1년)을 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7) 치리회장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쟁송의 판결을 근거로 하여, 치리회장과 부노회장을 함께 권징의 죄과로 책벌을 요청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8) 치리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재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사자 능력(원고)이 없는 자가 확정된 판결도 없는 사람(치리회장과 부노회장)을 대상으로 총회 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9) 치리회장이 행정재판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당사자의 능력(원고)이 없는 자가 치리회장과 부노회장을 가중 처벌해 달라고 헌법시행규정 제87조 제3항을 근거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아무런 근거나 이유없이 헌법 권징 제3조[권장의 사유가 되는 죄과]를 근거로 가중 처벌해 달라고 슬그머니 변경하여 가중처벌 의뢰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10) 당사자의 능력(원고)이 없는 자가 가중처벌의 사유(권징의 사유가 5가지 이상, 누범, 상습범, 파렴치한 죄과, 부정과 비리가 상당히 불량한 피고인)가 없고, 기소되거나 책벌 받은 사실이 없으며, 확정된 책벌의 판결이 없는 자(치리회장과 부노회장)임에도 불구하고 권징의 사유를 들어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는지

질의11) 위 질의7)~10)의 요청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12) 총회 재판국에서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해석일 뿐,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고 주장하면서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적법하지 않다)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13) 국가법으로 국가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 치리회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교회법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해 달라’ 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14) 총회 헌법위원회 제98회기 보고서 해석 No.54와 No.55, No.64와 No.65는 현재도 유효하며, 노회 재판에서 판결 시에 적용 또는 인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15) 헌법시행규정 제3장 제60조 제3항에 대한 헌법해석(제100회기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 No.80, 질의4))을 근거로(송달일 도과) “고소(고발) 무효”를 주장하여, 고소(고발)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 고소(고발)인이 다시 고소(고발)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16) 위 질의15)의 경우 고소(고발)인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기소위원회도 적법하게 기소하였으며, 재판도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바, 치리회의 귀책사유로 고소(고발)이 무효가 된다면 고소(고발)인만 억울하게 됩니다. 고소(고발)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다면 고소(고발)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절차는 무엇인지(재고발, 재심청원, 재항고 등)

질의17) 위 질의15)의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3장 제60조 제3항에 대하여, 치리회장이 피고소(고발)인에게 고소(고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헌법 및 제규정에 의한 피고소(고발)인의 방어권 침해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나, 지연송달의 경우에는 고소(고발)장이 피고소(고발)인에게 지연송달된 것이어서, 피고소(고발)인의 방어권 보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또한 이후 기소위원회의 조사 과정이나 재판진행과정에서도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방어권 보호 등 헌법과 제규정에 규정한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고소(고발)에 대한 흠결로 보

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여지며, '치리회장의 송달 일 도과로 고소(고발)이 성립되지 않는다' 는 해석은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이라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피고소(고발)인의 권익을 보호하다가 고소(고발)인의 권익 보호와 억울한 피해 보호는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헌법위원회의 법적 판단은

질의18) 위 질의15)의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3장 제60조 제3항에 대하여, 총회 헌법위원회가 "제100회기 헌법해석 No.80의 4항" 해석(송달일 도과)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앞으로 행정부서인 치리회장이 피고소(고발)인에게 고소(고발)장 접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소(고발)장을 송달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법리부서인 기소위원회가 이첩접수일 또는 직접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소(고발)인에게 통보하도록 헌법시행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제1절 제54조1 제2항에 의하면, 고소(고발)인이 부전지를 첨부하여 치리회를 거치지 않고 기소위원회로 직접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고, 기소위원회가 고소(고발)인으로부터 직접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치리회장은 고소(고발)장 접수사실을 알 수가 없어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소(고발)인에게 고소(고발)장을 송달할 수가 없습니다.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제1절 제54조 1 제2항의 경우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헌법적 견해와 치리회장이 취하여야할 적법한 조치는 무엇인지요

72. 기소장부본의 송달 / 절차의 흠결 보정

광주노회장 정태진 목사가 제출한 "광노제31-81호, 재판 계속 진행에 대한 질의서(2017.5.23.)"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3절(재판) 제67조(기소장부본의 송달)에 의거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보정명령으로 기소장을 송부(절차의 흠결을 보정)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

질의내용 / 본 노회 과거 재판국에서 광주동광교회 위탁재판청원 건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기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6번의 재판국 구성이 새롭게 되므로 재판국장이 바뀌어서 재판을 진행해 왔으나, 이런 사유에도 재판을 진행해도 되는지, 법적하자는 없는지

73. 개척지 기도처를 시무하는 전도목사의 증명서 발급

인천동노회장 윤석호 목사가 제출한 “인천동 제39-17호, 개척지 기도처를 시무하는 전도목사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의(2017.5.24.)”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2장(교회) 제9조(지교회) 제1항, 제10조(지교회의 설립)에 의거 목사의 칭호로 구분할 때는 전도목사이지만, 사역으로 볼 때 신분은 담임목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발급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 총회 헌법 정치 제2장 제10조에서 지 교회의 설립은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 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로 되어 있고, 제12조 2항에서는 지 교회가 설립된 후 세례교인(입교인)의 수가 15인 미만의 상태로 2년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회는 이를 기도처로 변경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제7조 [기도처의 합병]은 헌법 정치 제12조 2항에 의해 기도처로 변경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인근 다른 지 교회에 합병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로 명시되어 세례교인 15인 이상의 지 교회와 기도처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정치 제5장 제27조 목사의 칭호 1항과 2항을 보면

1.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담임목사가 된다.
2.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목사와 담임목사는 지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정치 제5장 제27조 목사의 칭호 4항에서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의 정한 바에 의한다. 로 규정하여 지교회의 담임목사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회 내에 신규로 설립하려는 교회들의 경우 세례교인이 15인이 미달되어 교회설립을 하지 못하고 기도처로 허락을 받고 있으며, 기도처의 목사는 노회 국내선교부의 파송 청원에 따라 전도목사로 시무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처로 허락을 받아 시무하는 교회의 전도목사가 노회에서 담임목사재직증명, 대표자증명, 소속증명 등 각종 노회발행 증명을 교회 이름과 담임목사의 신분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74.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평북노회장 전세광 목사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202-76호, 헌법 질의 건(2017.6.16.)”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각각 심급의 기소위원회를 말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1절(통칙) 제7조(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제1항, 제2항에 의거 적법하지 않다.”

질의내용 /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1절 고소 및 고발 제54조의 2는 “접수한 고소장(고발장)을 치리회장이 전항의 기간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지 않거나 반려할 경우에는 고소(고발) 당사자가 부전지를 첨부하여 기소위원회에 직접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이 조항이 말하는 바 “기소위원회” 란 제1,2,3심 중 어느 심의 ‘기소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즉, 재판관할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질의2) 이 조항에 의거하여 당회 소속 장로들이 제1심 사건에 대해 부전지를 첨부하여 제2심을 청구하는 일이 적법한지

75. 특별심판위원회 구성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101-990호, 특별심판위원회 구성 관련 헌법 질의(2017.6.21.)”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특별심판위원회가 이첩된 심리사건을 판결한 후에 또 다른 신사건이 접수되면 특별심판위원회의 임원 조직은 새로 구성해야 하며, 심판중에 다시 새로운 사건이 접수되면 현 임원 조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1. 제 101회기 특별심판위원회는 서울북노회 이정환 목사가 총회장을 상대로 제출한 “행정소송(2016.10.31)” 을 심리하기 위하여 2016.12.27에 조직되었으며, 2017.4. 11. 자로 이정환 목사의 “행정소송건” 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2. 최근에 대구애락원 이사장 성영학 장로가 총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2017.5.29. 자로 총회 제출하였고, 총회임원회는 제 101-9차 회의(2017.6.7)에서 헌법 절차대로 특별심판위원회로 사건을 이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귀 헌법위원회에 헌법 질의하니 적법하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77조(총회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제7항에 “심판이 종결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체 된다” 와 제8항에 “총회의 회기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체되며.....” 명시하고

있는데 각 조항 자구로 인하여 특별심판위원회가 이첩된 심리 사건을 판결한 후에 또다른 신사건이 접수되면 특별심판위원회의 임원 조직은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 임원 조직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어떤 의견이 적법한지 여부.

76. 원로목사 직위 및 예우

포항남노회장 유원식 목사가 제출한 “포남노제 93-09호, 원로목사 직위 및 예우에 관한 질의(2016.11.28.)”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원로목사의 예우는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제7항, 헌법시행규정 제21조(원로목사) 제1항에 의거 공동의회에서 투표 과반수로 가결하고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직위 해임은 행정조치로 할 수 없고, 다만 그 행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고소(고발)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2항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제96회기 총회헌법해석사례 46)

질의내용 / 원로목사 직위 및 예우에 관련하여 그 직위를 해임하거나 예우를 철회하는 안건을 공동의회에 상정하였을 시 안건이 결의되기 위해서는 공동의회 투표수의 과반수의 결의로 의결되는지 아니면 삼분의 이 이상으로 의결되는지

77. 장로의 선택

경안노회장 이상출 목사가 제출한 “경안노 제2016-106호, 헌법질의(2016.12.5.)”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6장(장로) 제41조(장로의 선택)의 ‘총 투표수’라 함은 그 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투표한 전체의 투표 수(유효, 무효, 기권 포함), 즉 재석하여 투표한 사람의 수를 말한다.”

질의내용 / 헌법 제41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위의 내용중 “총 투표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총 투표수” 라 함은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투표한 전체의 투표 수(유효,무효,기권)를 말한다는 견해와 “총 투표수”는 그 투표 가운데 유효한(미기재, 중간, 난외 제외) 투표만 해당된다는 견해로 갈리어 있습니다. 전자는 우리 총회 헌법을 근거한 주장이고, 후자는 합동측 헌법의 해석의 참조이니 원리는 같을 것이란 생각으로 의견이

다릅니다.

78. 위탁재판의 청원, 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서울서노회장 최내화 장로가 제출한 “서노 제94-34호, 헌법질의 해석 요청의 건(2016.12.23.)”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3절(노회 재판국) 제20조(심판사항) 제4항,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위탁재판) 제121조(위탁재판의 청원), 헌법시행규정 제72조[위탁재판의 청원, 책벌(권징) 적용과 범위]에 의거 위탁재판 청원이 가능하다.”

질의내용 / 고소장을 접수한 당회가 기소하지 않고 상급치리회에 위탁 재판 청원이 가능한지 [헌법관련조항 제3편 권징 제6장 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 위판재판 제121조(위탁재판의 청원), 헌법시행규정 제72조(위탁재판의 청원,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79.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군산노회장 김호성 목사가 제출한 “군노 제78-9호, 동신교회 제직회의 결의에 대한 적법 여부 질의 건(2016.12.29.)”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교단 및 노회를 탈퇴하는 행위는 헌법시행규정 제88조(재판계류와 교단탈퇴)에 근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 및 노회를 탈퇴할 경우 모든 교우들에게 적용되는 중대한 일로 제직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하여야 하며, 공동의회는 헌법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2항에 의거하여 개최하여야 하는데, 제직회 진행 중에 교단 및 노회 탈퇴를 결의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이다.”

질의2)에 대하여 “제직회의에서의 결의가 위법이며 무효이기에 기타 모든 행정행위는 효력이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동신교회는 지난 12월 11일(일) 예결산제직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교단 및 노회 탈퇴를 동의하였고, 이 건의 심의 결과 교단 및 노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를 제직회의 의장인 위임목사가 공포하였는데 이것이 적법한지(군산노회는 유지재단이 아닙니다)

질의2) 전북기독신문에 12월 18일(일)부로 교단과 노회를 탈퇴한다고 교회명이 아닌 교인대표 조인영 장로 외 제직 일동으로 광고를 한 것이 탈퇴 공고로써 효력이 있는지

80. 책벌의 원칙 / 피고인의 무죄추정

익산노회 새소망교회 황철규 목사 외 3인이 제출한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시행에 관한 규칙질의(2016.11.29.)“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 제3조(적용범위) 제1항, 제2항, 제3항,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제6항에 의거 위법이다.”

질의2),6)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2항,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3절(재판) 제72조(피고인의 무죄추정)에 의거 위배된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 제3조(적용범위) 제1항에 의거 총회재판국을 비롯하여 총회, 총회 산하의 모든 부, 위원회,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는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에 따라야 한다.”(참조, 제91회 총회헌법해석사례 61번, 제92회 5번, 62번, 제98회 101번, 116번, 제100회 63번 등)

질의4),5)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에서 내린 판결은 위법으로 무효이다.”(참조, 제91회 총회헌법해석사례 61번, 제92회 5번, 62번, 72번, 제98회 8번, 89번, 제100회 63번 등)

질의내용 / 익산노회는 군산기독학원(서해대학)을 군산노회와 함께 공동 설립하여 운영해오던 중에 교육부로부터 설립허가 조건인 수익용기본재산 72억 원을 법인에 출연하지 못한 관계로 교육부로 부터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교육부의 요구와 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양 노회는 수익용기본재산 72억 원을 출연하고 학교를 운영할 사람을 각각 영입하여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여 이사회(2013.8.19)에서 익산노회가 추천한 영입자 이모씨가 선정되었고, 법인은 교육부에 보고하였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4.1.16.에 이모씨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법인은 동년 3월에 교육부로부터 정이사를 승인 받아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되었으나, 동년 이사장에 취임한 이모씨는 자신이 기부한 금액과 교비를 횡령하였으며 현재 실형을 받도 복역중에 있습니다. 상기한 사건으로 인하여 익산노회는 그 과정에서 당시 노회장으로 재직한 황철규 목사, 협약조정소위원장 장택순 목사, 노회 서기 윤갑수 목사, 임시이사회 상무이사 황진택 장로에게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이에 익산노회는 군산기독학원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2015.11.5.에 관련된 4인을 노회 기소위원회에 고소하였고, 기소위원회

는 재판국에 기소하였으며, 재판국은 2016.4.25.일에 유죄판결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4인은 총회 재판국에 상고(사건번호 제100-37호)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상고인 4인은 총회 헌법위원회에 익산노회의 고소.고발.재판의 중대한 법리와 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7문항의 질의에 대한 해석을 의뢰하여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급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익산노회기소위원회의 기소와 익산노회 재판국의 유죄 선고는 무효이다" 또한 "원인무효, 위법" 등의 해석통보를 받았고(2016.9.23.익산노회도 같은 날 받음), 제101회 총회에도 보고되어 총회가 받았습니다.(추가보고서Ⅱ, pp.44-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노회는 헌법해석을 즉시 시행하지 않고, 제13회 추계정기노회(2016.11.8.)에서 군산기독학원특별위원회(위원장 유종영 목사)의 청원으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습니다.(1.연금재단 및 총회 임원회에 가입자회에 이사장 선임 반대 공문을 보낸다. 2.익산노회의 서해대 사태를 알리고 연금재단 이사장 취임 반대 성명서를 익산노회의 이름으로 교계언론 및 사회언론에 성명서를 발표한다. 3. 총회 재판국에 재판의 정당한 진행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4.서해대 사태로 익산노회 재판국의 판결을 받은 4인에 대한 익산노회 부서 및 위원회의 임원 및 실행위원 선출을 금지한다) 또한 총회 재판국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일 고지도 없이 2016.11.17.에 본 사건을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크리스찬 투데이 2016.11.28, 22일자 보도)

질의1) 익산노회가 총회 행정지원본부에서 보내온 예장총 제100-1432호의 헌법질의에 대한 총회 헌법해석 통보를 접수(2016.9.23.)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행해야 하는데도(헌법시행규정 제36조 6항)시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인가요, 위법인가요

질의2) 익산노회가 헌법해석 통보를 접수한 후에도 이를 시행하지는 않고 제13회 추계정기노회(2016.11.8.)에서 상기한 4개항의 책벌에 해당하는 결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결의를 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헌법 권징 제72조 참조)

질의3)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서로 상충될 때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가요(헌법시행규정 제36조 4항 참조)

질의4) 제101회 총회가 본 사건과 관계된 사안에 대하여 "익산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와 익산노회 재판국의 유죄 선고는 무효이다"는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받음으로 총회에서 결의됐는데(총회 보고서 Ⅱ

pp44-46) 총회에 속한 재판국이 총회 결의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질의5) 질의4) 질의에서 판결을 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이 판결 내렸다면 그 판결은 유효한가요, 무효한가요(시행규정 36조 6항)

질의6) 익산노회 추계정기노회(2016.11.8.)에 임원회 보고에서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 통보의 제목 건을 받았는데(노회 보고서 p50,제18차 임원회의록 참고) 동일 회기, 동일 장소에서 상기한 4가지 결의를 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81.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

강원노회장 김원석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27-079호, 총회 헌법질의(2017.1.9.)" 건

해석 : 질의1),①에 대하여 "총회 기소위원회는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57조의 2(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 제1항에 해당할 경우 기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나, 강원노회 소속 목사와 장로 그리고 강원노회 산하 지교회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한 상기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질의1),②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1절(통칙) 제7조(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제2항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재판국에 속한다.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재판국에 속한다.'라고 할 때 각 치리회 기소위원회 직무에 의거 목사에 관한 고소(고발) 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고소(고발) 건의 기소 여부는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고소(고발) 건의 기소는 당회 기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질의2)에 대하여 "수습전권위원회가 활동 중일 때는 수습전권위원 중에서는 대리당회장을 맡을 수 없으나(헌법시행규정 제33조 6항), 수습전권위원회가 해체된 후에는 대리당회장을 맡을 수 있다."

질의내용 / 강원노회 소속인 오인근 목사가 2016년 9월 8일경 총회 기소위원회에 앙원용 목사 외 12인(양원용, 박삼주, 노성국, 김수호 / 강원노회 소속 조좌

상, 고승태, 안봉엽 / 강원노회 산하 원주제일교회 소속 최상해, 이신묵, 안원희, 김해동, 민중기)을 고소(고발) 하였습니다.(사건번호 : 기소 제100-10)

질의1),① 총회 기소위원회가 위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질의1),② 고소(고발) 또는 기소를 의뢰한 자와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를 당한 자의 소속 노회가 동일한 사건'의 재판관할권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어디에 있는지

원주제일교회 655명의 교인들이 오인근 담임목사를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강원노회 재판 후에 고소하여 교회 분규가 생김에 따라 강원노회는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강원노회 재판국은 오인근 목사에게 면직출교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오인근 목사는 총회에 상고하였으나 총회재판국은 정직 1년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0(유기책벌과 당회장권) 제1항에 근거하여 원주제일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연명으로 조좌상 목사를 원주제일교회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하였고 노회가 허락하여 조좌상 목사가 현재 원주제일교회 대리당회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질의2) 총회 재판국이 2016.8.2. 오인근 목사에 대한 정직 1년의 판결을 선고하여,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11항에 따라 제3차 원주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자동 해체된 이후,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10 제1항에 따라 원주제일교회 당회원들이 과반수의 연명으로 종래 제2,3차 원주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조좌상 목사를 원주제일교회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하는 것이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6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82. 안식년 규정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가 제출한 "서울교회 제2017-2호, 헌법질의(2017.1.20.)"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안식년 규정은 교회의 배려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시행하는 임의규정으로 안식년 기간 중에도 신분[위임(담임)목사, 당회장]은 유지된다."

질의내용 / 목사의 휴무는 본인의 사정과 본인의 원할 때에 가능하지만, 서울교회 안식년의 의미는 강제적으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6년이 지나면 집행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따른 재시무를 하려면 재시무투표를 하여 2/3이상 당회원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안식년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현재

서울교회 당회원 16명이 단합하여 박노철 목사의 재시무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강제로 안식년을 보내려는 것입니다.

질의)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적(강행규정)으로 시행해야 합니까,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야 할 임의규정입니까

83. 적용순서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가 제출한 “서울교회 제2017-051601호, 헌법질의(2017.5.16.)” 건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예장총 제101-450호(2017.1.11.) 헌법해석 통보된 공문 질의4), 질의5) 해석으로 갈음하기로 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위임목사가 헌법시행규정 제26조 7항 “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 에 의거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 “적용순서는 총회 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 등의 순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임으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에 의거 12월 9일 당회석상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가던 중, 조건부 재신임의 이야기를 (증거1) 교단 헌법을 잘 알지 못하고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약속이 무효가 되었음에도, 위임목사가 안식년을 통해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질의2) 총회 헌법위원회는 2017년 1월 11일 예장총 제101-450호 질의 5번에서 “12월 9일 당회록에 ‘재신임을 받겠으니 잘 협조해 달라’ 고 했으니 금반언의 원칙, 신뢰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되는 자신까지는 위 규정을 준수하여 목회자로서 성도들에 대한 언행일치의 본이 되어야 한다” 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회석상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던 중, 분명한 조건을 달아 했던 약속이었고, 그 조건은 당회원들이 잘 도와주고 협조하면 재신임을 받겠다고 한 것인데, 협조는 커녕 그때부터 각종 고소 고발과 막말기도, 그리고 다수의 횡포로 당회를 파행시키는 등 목회를 방해했음으로 박노철 목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반대파 장로들이 법원에 제소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도 반대파 장로들이 주장한 금반언의 원칙을 박노철 목사가 어긴 것이라

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증거2) 금반언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박노철 목사가 교단 헌법까지 어겨가면서 위임목사로서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84. 특별소송절차 / 재심청구권자

서울서노회장 최내화 장로가 제출한 “서노 제96-13호, 헌법 질의 해석의 건(2017.6.1.)” 과 서울서노회 마포교회 김성은 집사 외 14인이 제출한 “헌법 및 시행규정에 관한 질의(2017.5.31.)”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3편(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8조(재심청구권자) 및 헌법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 1항에 의거 1심(당회 재판국)의 고발인이 2심(노회 재판국) 및 3심(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여 직접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질의2),3)에 대하여 “헌법 제3편(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8조(재심청구권자)에 의거 재심청구권자의 자격을 결한 고발인의 재심청구는 법적으로 무효이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헌법 제3편(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8조(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기소위원장, 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심(당회 재판국)의 고발인이 2심(노회 재판국) 및 3심(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여 직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3장(권징) 제73조(재심청구) 1항 “헌법 권징 제128조의 재심청구권자가 재심청구를 함에는”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권징 제128조의 재심청구권자의 자격을 결한 고발인의 재심청구서는 법적으로 유효한지요

질의3) 총회 재2심재판국이 재심청구권자의 자격을 결한 자(고발인)가 부적법하게 제기한 재심청구에 대해 헌법 제3편(권징) 제129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2항 “재심의 청구가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5항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

여야 한다" 에 의거 재심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 규정에 대한 법리판단을 잘못한 법규적용의 착오가 아닌지요

85. 헌법위원회의 권한

경동노회 금장교회 임시당회장 유봉준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요청 건(2017.7.3.)" 건

해석 : 질의1),2),3)에 대하여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헌법시행규정 제36조 6항)."

질의내용 /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회 금장교회와 관련한 헌법질의입니다. 먼저, 헌법질의의 배경은 지난 경동노회 정기노회(2016.10.6.~7) 정치부 보고시,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하기로 결의된 사항이고, 총회 헌법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헌법해석을 받은 사안입니다. 2차례 송달받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을, 경동노회(임원회)가 처리한 사항이 적법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1) 총회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을 송달받은 경동노회 임원회가, 지체없이 시행하지 않고, 정치부에서 다루도록 이첩한 것이 적법한지

질의2) 경동노회 임원회로부터 헌법해석을 이첩받은 정치부가, 총회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을 심의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3) 임원회가 정치부의 헌법해석 심의와 결의를 통보받고, 정치부의 결의를 수용하여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과 반하는 결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86. 목사의 임직식 및 위임식

경남노회장 박태부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017-104호, 헌법질의 건(2017.6.29.)"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33조(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 헌법시행규정 제17조(위임식)에 의거 노회가 위임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교회와 상의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내용 / 1. 헌법 정치 제5장 목사 제33조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에 의거 위임식은 노회의 주관이며,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17조 위임식 1호에 의거 위임목사의 직무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된다고 되어있습니다.

2. 본 노회의 소속교회의 목사님 중 헌법 정치 제5장 목사 제26조 목사의 칭호 1호에 의거 폐당회가 되어 자동적으로 담임목사가 되었다가 금번 정기노회에서 위임목사로 결의된 경우가 있으며, 같은 사례인 제주노회의 질의에 위임식을 생략할 수 있다는 헌법해석이 있습니다.

3. 위임식은 노회의 주관이며 위임식을 거행하여 직무가 시작됨으로 서약, 선포의 2가지 절차는 진행하여야 한다고 사려됩니다. 또한 생략한다가 아닌 생략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주관처인 노회가 위임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행함이 맞다고 사려되오니 위에 대한 여부

87.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서울강남노회장 김예식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60-077호,재심의 요청서(2017.6.29.)”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위원회는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석한 것이며, 헌법위원회의 해석 자체가 무효로 될 수는 없으며, 질의에 대하여 “예장총 제101-947호, 헌법해석 통보(2017. 6. 8)” 로 헌법해석을 재확인하다”

질의내용 / 본 노회 소속인 서울교회의 노 문환, 서 문석 장로가 총회장(총회헌법위원장)에게 제출한 헌법 질의의 건(본회가 이를 2017. 4. 13.접수하여 총회로 송부함)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통보(예장총 제101-947호)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서울교회의 현 상황에 대한 사실적 관계 인식이 잘못 되었다.
2. 서울교회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과 배경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
3. 이에 따른 장로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객관적 인식이 결여되었다.
4. 장로들의 질의서는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적 행위와 행동은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상황과 근거만을 가지고 헌법위원회의 답신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
5. 서울교회 사태의 발생원인과 이유, 그리고 진행된 현재까지의 사태에 대해서는 서울강남노회가 우선적으로 잘 파악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 왔고, 모든 문제를 총회헌법과 사법부의 의견을 따라서 교회를 안정시키고자 하였으나, 헌법위원회는 본노회의 이런 노력을 간과한 채, 전체적 상황을 참고하지 않고 부분적 상황만을 참고하여 법을 문자적으로 해석, 서울교회의 사태를 더욱 혼란시켰다.
6. 또한 헌법위원회가 “헌법을 준용하여 서울강남노회가 개 교회 문제를 처리한 과정의 문제를 헌법해석이란 명목으로 해석하여 잘잘못을 가리는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만일 서울강남노회가 헌법을 어긴 것이라면 이는 별도의 행정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일처리 방식이 아닌가, 판단된다. 즉 이번

헌법해석은 헌법위원회가 일처리에 대한 절차를 무시한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헌법위원회에 위 해석에 대해 재심의 및 재해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88. 당회장 결원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 교회 및 노회 수습

경동노회장 이상철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46-90호, 헌법해석 시행요청에 대한 답변(2017.6.30.)" 건과 경동노회장 이상철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46-106호, 원론적인 헌법해석에 대한 재질의(2017.7.11.)"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16조의 7(당회장 결원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및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13항에 의거 수습전권위원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제직회 혹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헌법과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단, 1차 부결된 당사자를 재청빙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질의내용 / '예장총 제 101호-994호, 헌법해석 시행요청'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 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에 대하여 명확한 헌법해석의 통보, 답변이 없으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헌법 해석 재질의에 대한 명확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노회장 이상철 목사의 재질의(예장총 제101-746호)에 대한 헌법 해석통보(2017.4.12.)

금장교회 담임목사 재 청빙이(2015.2) 부결됨으로 인해 대립이 되었고 노회는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수습전권위원회는 합의를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서로의 주장이 첨예함으로 (시무장로 4명중 2대 2) 수습을 위하여 (수습전권위원회 결의대로) 임시당회장 파송을 시행하였습니다.

"질의) 수습전권위원회가 당회원권과 당회기능을 정지시키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제직회를 통하여 본 교회 당회가 1차 부결시킨 무임목사를 청빙함이 적법한지" 에 대하여 "헌법 시행규정 16조의 7(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및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 13항에 의거 수습전권위원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제직회 혹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헌법과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에 대하여

1. 해석에 대한 난항

1) 재질의 내용인 **'1차 부결시킨 무임목사'** 를 청빙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헌법시행규정 제 16조 7과 제33조 13항의

원론적인 헌법만 명시.

2) 본 교회 당회가 **'1차 부결시킨 무임목사'** 를 청빙함에 대한 적법성의 명시가 없다.

질의) 원론적인 헌법해석에 대한 재질의 - 수습전권위원회가 당회원권과 당회기능을 정지시키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제직회를 통하여 담임목사를 "헌법시행규정 16조의 7(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및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 13항에 의거 수습전권위원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제직회 혹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헌법과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이 헌법 시행규정에 의거하여 본 교회 당회가 1**차 부결시킨 무임목사**를 청빙함이 적법한지.

89. 장로의 사임 / 직원의 전임과 사임

전남노회장 조원섭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8-116호, 총회 헌법위원회 헌법해석 청원서(2017.7.4.)"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청원서 전문과 첨부한 자료(당회 확인서) 등에 의거 '광주노회 장성읍교회 김성규 장로는 2013년 10월 13일 예배 때 교회(장성읍)에 출석하지 않겠으며 시무 사임하겠다고 두 번이나 의사를 밝혔고 약 7개월 정도 교회출석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헌법 정치 제6장(장로) 제43조(장로의 사임 및 사직) 제1항, 헌법시행규정 제24조(직원의 전임과 사임) 제2항에 의거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임으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 / 헌법위원회는 '제99회(제98회기) 총회 헌법위원회 보고 제110번, 제100회(제99회기) 총회 헌법위원회 보고 제28번' 과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장성읍교회 김성규 장로는 당회에 자필사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성읍교회 당회에서 2014년 10월 27일 사임을 결의한 것은 원인무효이다. 아울러 제101회(제100회기) 총회 헌법위원회 보고 제17번 해석은 취소한다" 라는 해석을 구합니다.

90. 책벌의 원칙 /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평양남노회장 이형철 목사가 제출한 "평양남노 제186-34호, 노회경유 서류이첩(2017.7.10.)"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예장총 제101-749호(2017.4.12)와 예장총 제101-750호(2017.4.12.)" 로 해석 통보된 공문으로 갈음하기로 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장로가 공 예배 때 담임목사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대표기도를 하여 교인들이 동요하고 예배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예배 방해에 해당됩니까?

질의2) 대표 기도로 인하여 예배가 소란하고 방해를 받았다면 예배를 주관할 당회가 기도자에게 대표기도를 쉬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까?

질의3) 예배시 기도한 내용과 다른 거짓 기도문을 자신이 한 기도문이라고 교인들에게 MMS로 보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됩니까?

질의4) 헌법위원회가 회신한 대로 시행하지 않고, 본인이 헌법위원회의 회신에 자의적 해석과 판단을 달아 문서를 작성하여 당회와 교인들에게 배포하였다면 무슨 죄에 해당됩니까?

질의5)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질의6) 예배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한 장로에게 당회 및 공동의회에서 시무사임을 권고 결의할 수 있습니까?

91. 공개 구두사임 / 직원의 전임과 사임

경남노회 내간교회 권영국 목사가 제출한 “내간교회 증 제17-4, 부전지(공개 구두사임 처리에 관한 총회 헌법 질의의 건), 2017.7.13.)”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구두 사임 처리를 인정한 사례(제95회기 헌법해석 사례 65번)도 있으나, 이 경우는 구두사임으로 볼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6장(장로) 제43조(장로의 사임 및 사직) 제1항, 헌법시행규정 제24조(직원의 전임과 사임) 제2항에 의거 당회결의 없이 제직회나 공동의회에서 사임처리를 할 수 없다.”

질의내용 / 2016년 10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본 교회 이몽주 장로 부부가 사실도 아니며, 거짓증거들로 모의하여 목사를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교인들이 모함한 이장로 부부를 질타하고 항의하자 자신들의 입장이 난처해지게 되었다. 2016년 11월 13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시간 광고 시간에 이몽주 장로가 발언권을 얻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교회에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교회를 떠났다가 4월 9일, 16일 두 번 나와서 난리를 치며 교회 예배 방해로 평온을 깨뜨리고 신앙생활의 불안케하고 현재는 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사임처리를 하여 교회생활의 불안과 예배방해로 평안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1) 목사 1인 시무장로 2인으로 당회가 조직된 교회입니다. 이몽주 장로

부부가 2016년 11월 13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시간 광고시간에 발언권을 얻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교회에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본인 스스로 구두사임을 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공개 구두사임이 무효인지 유효인지요

질의2) 헌법 제2편 정치 제43조 장로의 사임 및 사직에서 〈자의사임〉 에 의거하면, 사임을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장로는 구두사임한 16년 11월 13일부터 현재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장로 한명도 예배시간에 방해소동을 부리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 성수가 되지 않으므로 제직회에서나 공동의회에서 구두사임을 받아 사임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

92.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에 관한 해석

기소위원장 정완봉 장로가 제출한 “예장총부 제101-544호, 헌법해석과 관련 업무처리 협조 요청의 건의 이의제기 및 헌법해석 요청(2017.7.26.)”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예장총 제101-1066호(2017.7.14.) 헌법해석과 관련 업무 협조 요청 공문은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에 의거한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총회임원회 결의사항이므로 총회기소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

질의내용 / “헌법 권징 제57조의2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 해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헌법 해석에 대한 재해석을 요청합니다.

1.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적용범위 2항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등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며 개정해야 한다.
2. 그러므로 헌법에 기록된 법을 헌법위원회에서 헌법해석을 할 수는 없다.
3. 헌법권징 제57조의2 총회기소위원의 직무 제1항 제4호는 전항 1,2,3호 죄과를 전제로 한 해석은 잘못이며, 헌법 제57조의2 제1항 4호는 고소고발 또는 기소의뢰한 자와 기소의뢰를 당한자의 소속노회가 상이한 사건이다. 라는 기록자체가 헌법이다.
4. 기소의뢰한 자와 기소의뢰를 당한 자가 같더라도 총회재판국과 공범일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도 있고, 해소되면 기소를 취소하면 된다.
5. 헌법권징 제59조의3 기소권자 및 피고인 제1항 권징 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치리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장이며, 기소위원회는 피고

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하며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6. 그러므로 헌법위원회는 재판국 판결처럼 해석한 것이 잘못이며 헌법을 권장하여 상급심 또는 재심에 사용하도록 한다.(행정은 곧바로 적용한다.)
7. 헌법위원회는 기소위원에서 인지수사권도 아닌 고소고발에 의한 조사여부를 관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93. 특별소송절차 / 재심사유

서울남노회 효성교회 원로목사 이창재 목사가 제출한 “총회 재판국의 고소장 반려에 관한 헌법질의(2017.7.2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질의한 공문에 기록된 내용대로라면 고소장 반려는 불법이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에 의거 하여 재판국이 확정 판결한 경우에만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 반려에 대하여는 재심청구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재판국(예장총재 제101-298호)은 2017.5.30. 효성교회 고소장(사건번호 제100-01가호, 제100-02가호) 2건을 “관할권 위반으로 총회 재판국에서 접수하여 치리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정치 제2편 제87조 2. 총회는 하급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서,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총회특별재심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에 의거 반려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고소장은 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미 2015. 9.18 각각 재판비용 예납 영수증을 첨부하여 총회 재판국에 접수되었고 ② 수차례 고소인과 피고소인 쌍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심의중에 있었으며 ③ 총회 제99회기, 100회기를 거쳐 2년 동안 계속 심의해 오던 재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총회 재판국원들이 고소된 내용을 심의하여 각하를 하던 기각을 내리던 판결을 하면 될 것이지, 느닷없이 재판중이던 사건을 ‘관할권 위반’ 이라는 명분으로 고소장을 반려하고, 접수 시에 예납하였던 재판비용을 돌려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통보를 하다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헌법 권징 제3조 6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단도직입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총회재판국(예장총재 제101-298호)의 고소장 반려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질의2) 헌법 권징 제124조(재심사유) 4항과 8항에 의하면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에 재심을 청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중이던 고소장을 갑자기 반려한 행위가 헌법 권징 제3조 6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에 해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심청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94. 특별소송절차 / 재심의 관할

총회 재판국장 김진욱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재 제101-1호, 헌법질의(2016.10.12)”건(헌법해석 정정)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5조(재심의 관할)에 의거 재심재판국 그 이상의 심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급에 따를 수가 없어 더 이상 불복은 불가능하고 총회재판국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다.”

질의내용 / 1. 사건 표시(재심 제100-2사건)

가. 사건명 : “예총재판국 사건 제 99-10호/익산노회 이리남중교회 홍광수 장로가 익산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무효확인의 소-담임목사 청빙허락 무효확인)”에 대한 재심 청구

나. 재판당사자

원고(재심청구인):홍광수, 65세, 남, 장로, 전북 익산시 금이면 용순1길 68

피고(피재심청구인):경정 전:윤갑수(익산노회장), 남, 목사

경정 후:송영대(익산노회장), 남, 장로

전북 익산시 인북로 131-4 익산노회

제3자 소송참가인:박춘수, 56세, 남, 목사

전북 익산시 인북로 226-17(이리남중교회)

변호인:이영수 65세 남 안수집사 전북 익산시 인북로 226-17

다. 행정소송의 종류 :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변론종결일 : 2016년 9월 7일

판결선고일 : 2016년 9월 7일

주문 : 1.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라. 총회재판국 판결 표시(예총재판국 사건 99-10호)

주문 : 1. 소를 각하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변론종결일 : 2015년 9월 8일

판결선고일 : 2015년 9월 8일

마. 재심청구 취지

1. 총회재판국 판결의 파기를 구합니다.

2. 박춘수 목사의 이력 허위기재의 불법으로 허락된 익산노회의 이리남중교회 위임목사 청빙승인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질의) 재심재판국이 파기 환송한 총회재심재판국 제100-2행정 사건에 관하여, 총회재심재판국은 2016년 9월 7일 총회재심재판국 제100-2행정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총회재판국에서 자판할 수 있는지 여부

95.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의 위헌 여부

서울북노회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헌법 정치 제28조 6항, 권징 제57조 2항, 2항-4, 3항, 4항에 대한 위헌, 무효판단 청원서(2017.5.1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목사 청빙에 관해 장로교는 성도들의 권리이므로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 제1조(양심의 자유), 제2조(교회의 자유)에 입각하여 교단이 교회의 자유(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장로교 원칙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장로교는 감독정치가 아니라 대의정치와 회중정치에 근거한 교파이기 때문에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공동의회의 결정으로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가 인준하고 있다. 그럼에도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본 교단이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제1편(교리) 제4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 제2조(교회의 자유), 제4조(교회의 직원),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5항 ①호(당회가 제시한 사항)를 위배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1항, 제2항, 제3항과 충돌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 제2편(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2)에 대하여 “이 조항들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에서 제102회 총회 시 헌법 개정(안) 제안을 위해 연구 검토 중에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정치 제28조 6항의 위헌 여부

“헌법 정치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담임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은 다음과 같다.
   ①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12월 8일 공포된 소위 세습방지규정(헌법 정치 제28조 6항-(1), (2)이 기존의 28조 1,2,3항과 충돌되고 있습니다. 세습방지규정이 제28조 1,2,3항의 교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정치 제28조 6항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제28조 6항은 헌법 정치편 원리의 1조와 2조, 그리고 기존의 정치 제28조 1,2,3항에 벗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기본적인 목사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다면 누구를 목회자로 청빙하던지 그것은(교인)교회의 권리요 자유입니다(헌법 정치 제16조)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목사의 청빙규정에 반드시 교인들의 동의를 구해야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합법적 공동의회를 통해서 목사를 청빙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노회원으로서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며 교인은 교회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원권을 가진 교인들의 권리는 침해당할 수 없으며 다만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정치 제74조)

권징 제6조(책벌의 원칙)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권징 제72조(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 정치 제74조(노회원의 자격)

1.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뿐만 아니라

6.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조문 역시 교인의 권리 침해와 법의 형편성에 적절하지 못한 위헌조항입니다. 한마디로 자립하는 교회의 권리는 제한하고 미자립교회의 권리는 인정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부자의 권리는 제한하고 가난한 자는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뜻이니 사람에 대한 차별이요 작던 크던 모두 주님의 교회인데 교회의 차별입니다. 공교단의 헌법이 이렇게 교회와 교인을 차별하는 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특별히 장로교회 정치제도의 특징은 성직자의 치리권과 교인들의 기본권을 근간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균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인의 권리와 성직자의 치리권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제약할 수 없는 것(정치 제74조, 권징 제6조)과 마찬가지로 이 권리는 불가침적인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비롯하여 교회 직원의 선택은 교인들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소위 세습방지법은 명백한 교인들의 권리 침해입니다. 혹자는 노회의 목사청빙 승인을 노회의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권리라고 한다면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합법적으로 청빙한 목사가 흠결이 있거나 교회를 시무하는데 현저하게 교회의 건덕이나 유익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행정청에서 적법하지 못한 절차와 대상에 대하여 행정승인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절차적 권리이지 행정청의 권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청원자의 청원이 전혀 문제가 없는 적법한 청원이라면 행정청은 승인을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거부한다면 송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리회가 위법을 행한다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회의 목사청빙 승인은 노회의 권한이라고 하기 보다는 “지 교회를 보호하고 교리를 보존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한” 절차적 권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정치 제72조, 제77조) 그러므로 목사의 청빙은 노회 폐회 후에는 노회의 결의가 아닌 임원회와 정치부의 승인만으로도 목사의 청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제29조 청빙의 승인

1.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3. 노회의 폐회 중에는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한하여 노회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청빙 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 정치 제28조 6항’ 은 기존의 제28조 1,2,3,항과 배치될 뿐 아니라 지교회(교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의2) 권징 제57조 2항, 2항-4, 3항, 4항의 위헌 여부

제57조 [총회 기소위원회 구성과 임기]

2항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

1. 다음 각 호의 사건은 총회기소위원회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기소는 총회재판국에 제기하며, 총회기소위원회가 그 기소를 수행한다.

모든 재판은 2심, 혹은 3심으로 재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경우 총회재판국 판결로 확정판결이 되며 결국 총회재판국 단심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재판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권징 제4조 1항, 2항)를 제한하는 위법(위헌사항)입니다.

제4조 [재판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또한 장로는 당회(헌법 권징 제26조 1항), 목사는 노회, 총회원으로서의 행위 등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권징 제7조 1항, 2항)에도 위배됩니다.

제2장 재판국

제1절 통칙

제7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1. 총회재판국은 총회에, 노회재판국은 노회에, 당회재판국은 당회에 각각 설치한다.
2.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재판국에 속한다.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재판국에 속한다.

헌법과 같이 노회나 총회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노회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제기하고 노회재판국이 재판하도록 해야하며, 노회재판국 판결이 불복할 경우 총회재판국에 상고하도록 해야합니다

① 총회장, 총회 총대 또는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장이나 이사가 총회원 또는 총회 직원,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이사 또는 직원을 그 직무와 관련된 죄과로 고소(고발)하거나 기소 의뢰한 사건

④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한 자와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를 당한 자의 소속 노회가 상이한 사건

고소(고발)과 재판관할권은 피고가 속한 노회에 제기하는 것은 상식입니다(권징 제53조 1항) 이런 법은 무지의 소치로 무효임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3. 총회 기소위원회가 전항의 기간 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발인은 10일 이내에 총회 재판국에 직접 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 재판국은 그 결정으로 직접 재판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재판국이 기소내용으로 기소위원회에 재수사명령을 결정할 수 있으나 총회재판국이 기소결정 한 사건을 직접 재판할 수는 없습니다. 재항고의 의미와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인 조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소되지 않은 사건을 총회재판국이 직접 재판함으로 소송의 일반규례(권징 제14조)를 위반한 위법(위헌)적 재판이 됩니다.
4. 총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 간주에 대하여 불복하는 고소(고발)인 또는 기소의뢰인은 제65조 제4항에 준하여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 역시 권징 제65조[항고 및 재항고] 1항에 위배되며 교인의 권리(재판받아 자기를 보호할 권리 권징 제4조 1항)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권한,질의해석,헌법개정]

1.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목사5, 장로4)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3.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 에 의거 헌법 정치 제28조 6항 및 권징 제57조 2항, 2항-4, 3항, 4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96. 위탁재판청원의 처리

군산노회장 김호성 목사가 제출한 "군노 제78-062호, 헌법 질의 건(2017.7.3.)"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보정지시를 통해 보정처리하면 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위탁재판) 제122조(위탁재판청원의 처리) 제2항은 권고(훈시)규정이기 때문에 위법 [참고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사건의 처리)]은 아니나, 기간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질의3),4),5)에 대하여 "공개재판 규정에 대해 본 교단 헌법 권징에는 없으나,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재판공개의 원칙) '재판의 심리와 재판은 공개한다.', 동법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진술권) 제3항 '...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의거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공개여부는 재판국(헌법 권징 제2장 제2절 제13조)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6)에 대하여 "강행규정으로 공소시효이다."

질의내용 / 동신교회 위탁재판의 건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총회헌법 권징 53조 1.고소 및 고발은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소속치리회장에게 서면으로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고소인 김대현은 치리회장인 노회장에게 하지 않고 기소위원장에게 고소를 했습니다.(첨부서류 참조)

   질의1) 기소위원회에서 고소장을 접수받고 사건처리 후 한 달 만에 고소인에게 보정 지시를 통해 기소위원장을 노회장으로 고치는 것과 아니면 잘못 된 서류를 반려하는 것이 맞습니까?

2. 총회헌법 권징 122조 2.노회장으로부터 위탁재판사건 서류를 송부 받은 기소위원회는 사건 서류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군산노회 14차 임원회가 2017년 3월 6일 동신교회 위탁재판청원 서류를 기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하다 로 결의한 후 이미 위탁재판서류는 3월 3일경 기소위원회 서기가 노회사무실에서 미리 가져갔으며 기소일자는

2017년 5월 30일입니다.

질의2) 기소위원회가 위탁재판 사건 서류를 송부 받은 후 85일후에 기소했으면 헌법위반이 아닌지요?

3. 총회 헌법 권징에는 공개재판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산노회 재판국은 이제까지 재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기소위원, 변호인, 증인들이 출석하여 재판해 왔습니다.

질의3) 헌법 권징에도 없는 공개재판을 노회 재판국에서 할 수 있는지요?

질의4) 할 수 있다면 재판국장이 단독으로 공개재판을 시행해도 되는지요?

질의5) 아니면 재판국 회의에서 출석 2/3이상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지요

질의6) '제59조의 2 [기소 제기의 시효]1.기소제기의 시효는 원인 행위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에서 기소제기의 시효는 일종의 공소시효로써 3년이 지난 원인행위를 기소 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요?

97. 가중시벌 / 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101-1084호, 재심재판국 판결에 대한 가중처벌 관련 헌법 질의(2017.7.21)"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7장(시벌 및 해벌) 제143조(가중시벌), 헌법시행규정 제87조(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 제3항에 의거 총회재심재판국 판결과 관련하여 가중처벌을 의뢰하거나 가중시벌(처벌)을 할 수 있다."

질의내용 / 1. 제 100회기 총회 재판국은 "강원노회 오인근 목사가 강원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에 대하여 "오인근 목사 정직 1년"을 선고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강원노회 기소위원장과 오인근 목사의 각각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제 101회기 총회 제 1재심재판국은 "오인근 목사 출교"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강원노회장은 총회 제 1재심재판국 판결(오인근 목사 출교)을 오인근 목사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중처벌 의뢰서"를 총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헌법위원회에 헌법 질의하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총회 재심재판국 판결과 관련하여 가중처벌을 의뢰하거나 가중시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총회 헌법 제 3편 권징 제 7장(시벌 및 해벌) 제 143조(가중 시벌) 및 헌법시행규정 제 87조(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에 근거하여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8. 당회장 결원시 임사당회장 및 위임(담임) 목사 청빙 / 교회 및 노회 수습

경동노회 금장교회 양병갑 장로 외 1인이 제출한 “총회 헌법해석 요청서 직접 제출 사유서(2017.1.5.)”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예장총 제101-1105호 헌법해석 통보(2017. 8. 3)” 로 갈음하기로 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임시목사가 당회에서 재청빙 결의가 되지않아 3년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재청빙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회장실과 사택을 비우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하며 현재까지도 버티고 있어 교회가 새로운 후임목사 청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이며 여러 가지 사유로 총회재판국에서 당사자인 현재 무임목사에 대하여 경동노회에 기소명령을 통보한 상황에서도 노회에서 해당 무임목사에 대해 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조치인지요

질의2) 이것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임에도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 제2항에 의거 시무기간 3년이 경과된 무임목사를 교회와 사택에서 보내지는 않고 오히려 노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무장로 4명 전원에 대하여 당회원권을 정지시키고 당회결의도 없는 상태에서 임시당회장이 제직회를 개최후 담임목사 청빙신청서를 정기노회에 제출토록 동조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분규가 아니고 헌법을 위배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무임목사에 대하여 치리를 하지않고 오히려 불의한 무임목사를 옹호하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이해할 수 없는 직권남용이라 생각되며 이로 인하여 교회가 지금까지도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는 수습전권위원회에서 권한을 명백하게 남용, 오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노회와 수습전권위원회의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행정 행위가 적법한 조치인지요

질의3)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재청빙을 받지못한 무임목사로 인해 문제가 발생된 현재의 금장교회 상황과 아주 유사한 사례인 “수습전권위원회가 당회원권 정지후 당회를 거치지않고 제직회를 통한 목사 재청빙”의 적법성 질의에 대한 총회 제90회기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22번(무임목사 재청빙 불가) 및 총회 제93회기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41번(임시목사 연임청빙 및 임시목사 청빙 불가)의 답변사례(재청빙 불가, 연임청원 불가, 담임목사 청빙불가 등)가 있음에도 본인은 무임목사로 일정기간 있었기 때문에 재청빙도 연임청빙도 아니라는 억지를 부리며 노회에서 자신을 옹호하는 세력을 동원하여 재청빙을

계속 도모하든 중 경동노회에서 총회 헌법위원회에 금장교회의 본 사태에 대해 질의를 하여 2016년 12월 15일 총회 헌법위원회로부터 '수습전권위원회가 시무장로에 대하여 당회원권 정지후 수습전권위원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제직회를 소집한 것은 적법하나 당사자를 재청빙한 것은 부당' 하다는 헌법 해석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임목사는 아직도 총회 헌법위원회의 답변을 인정하지 않고 말장난하듯 본인은 청빙 대상이지 재청빙 대상이 아니라며 황당한 자기주장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임목사의 목회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과연 적법한지요

질의4) 위와 관련하여 임시목사가 3년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중간에 교회가 다른 목사를 청빙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청빙 받지못한 해당 무임목사가 당회장실을 계속사용(개인서적 다량 비치 등)함은 물론 아직도 사택에 가족과 함께 살면서 노회 수습전권위원회의 퇴거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투쟁중에 있으며 무임목사 본인은 본당의 가장 뒷부분의 의자에 앉아 예배에 참관하고 있고 새로운 아파트에 입택한 성도의 가정에 성도들과 함께 심방도 본인이 직접 인도하였고 본인을 옹호하는 재정부장에게 당회의 결의도 없이 불법(배임)적인 사례비도 계속 지급받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을 금지토록 해당 무임목사에게 통보한 노회의 행정명령도 계속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무임목사는 제90회기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22번(무임목사 재청빙 불가)답변사래를 참고한바 '재청빙'이 불가한 상황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구러나 무임목사의 주장은 본인은 무임으로 일정기간 있었기 때문에 재청빙이나 연임청빙과는 해당이 없고 '청빙' 대상자 라고 주장하고 있어 용어정립 창원에서 교회와 해당 무임목사의 재청빙 문제는 '재청빙, 연임청빙,청빙'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사안인지

99.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익산노회 새소망교회 황철규 목사 외 2인이 제출한 "새소망 제2017-8호, 총회 헌법해석과 시행에 관한 질의(헌법시행규정 제87조 3항), 2017.5.29.)"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이다."

질의2)에 대하여 "재판국이 권한을 남용하여 판결하였다면 위법이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5항, 6항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 익산노회 재판국이 가중처벌 할 수 없기에 총회는 '가중처벌은 할 수 없으며 처벌은 무효이다' (예장총 제101-876호)라고 헌법을 해석하고 익산노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노회장(이병호 목사)과 익산노회 재판국은 목사(황철규, 윤갑수) 면직, 출교를 한다는 '가중시벌'을 하고 기독공보에 '헌법시행규정 제87조 제3항에 의거하여 면직,출교 공고한다(2017.5.13.일자)' 라고 이미 처분시행 완료하였고, 서신(문서)으로 노회원들에게 알린바 있으며, 그리고 총회와 총회 연금재단에도 문서로 통보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익산노회가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87조 3항에 의해서 가중시벌을 했는데 "피고인이 시벌을 불이행할 시는 소속치리회(폐회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고" 라고 한다. 이 규정에서 판결을 의뢰할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은 어느 재판국을 말하는가요? 익산노회 재판국인가요? 아니면 총회 재판국인가요?

질의2) 만약 익산노회 재판국이 총회 재판국이 가지고 있는 재판권을 익산노회 재판국이 권한을 남용하여 판결하였다면 당연히 위법이며 무효인지요? 익산노회 재판국이 총회재판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 재판권을 행사 처분한 것이라면 익산노회장과 노회 서기, 재판국장, 기소위원장등에게 어떠한 죄과가 성립되는지요?

질의3) 익산노회장(이병호 목사)은 익산노회의 '가중처벌' 한 목사(황철규, 윤갑수)가 현재 총회 재심 재판국에서 재심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 '가중시벌' 이라는 위법한 재판권을 행사하여 언론(교단지 기독공보)에 유포하였다면 총회 헌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요? 총회 헌법에 저촉된다면 그 '규정과 처벌내용' 은 어떠한지요?

100.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익산노회장 이병호 목사가 제출한 "익산노회 제13-73호, 헌법질의(2017.5.24.)" 건

해석 : 질의1),3)에 대하여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2)에 대하여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 판단 등은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하며, 이 판단이 헌법 권징 제124조 제6항에 해당될 때 재심청구권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질의내용 / 질의1)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았고, 고소장이 접수된 날에 그 고소 사유가 없어지지 않았으며, 고소

인이 고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존재한 가운데서 알게 된 날이 2년을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어 헌법 권징 49조와 권징절차에 의거하여 판결하였다면 그 판결이 유효한 것인지요

질의2)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헌법위원회 해석만으로 판결을 무효할 수 있는 것인지요

질의3) 확정된 하급심의 판결에 대하여 두 개의 확정판결에 다 재심사유가 있어서 재심청구가 경합하는 경우에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확정된 판결을 선고한 하급심의 재판국을 말한다(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15항)에서 노회 재판에서 책벌된 죄과가 총회재판국에서 기각되어 총회재판국과 노회재판국에서 각각 확정되어 재심청원이 총회재심재판국과 노회재판국에 각각 접수된 경우 원심은 하급심이 되는 것인지요

101. 항존직 / 적용범위

부산남노회장 공두관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74-95호, 헌법질의(2017.7.24)”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항존직원이 정년 전에 본인 자의로 절차에 의하여 은퇴할 수 있으나, 결의에 의하여 은퇴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에 위배된 결의는 무효이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1항, 제2항에 의거 법 규정이라면 지켜야 한다.”

질의4)에 대하여 “헌법위원회는 질의한 내용이 진실함을 전제로 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질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위원회의 해석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에 규정된 장로의 시무연한 70세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회 유익을 위해 당회가 합법적 절차를 거쳐 65세 조기은퇴하기로 결의하여 시행한 것이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까?

질의2) 위 1항의 8년전 당회 결의(그 당시 시무장로 13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13명 전부 65세 은퇴하기로 한다는 자필서명까지 하였음)를 지금까지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은 스스로 지켜왔으며, 문제없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당회 결의가 원천무효에 해당합니까?

질의3) 당회의 결의에 불복하여 서리집사 개인이 질의(특히 서리집사의 질의3 은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결의하였음) 하더라도 법규정에 대

한 문제이므로 회신내용에 교회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합니까?

질의4) 잘못된 사실을 전제한 질의에 대한 총회의 회신을 강행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이러한 회신에 교회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합니까?

102. 은퇴장로 / 언권회원

제주노회장 이정일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91호, 언권회원의 권한에 대하여(2017.7.26.)" 건

해석 : 질의1),2),3)에 대하여 "은퇴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의 회원이 아니며 다만, 언권회원이기 때문에 언권만 있을 뿐, 안건 표결, 성안에 동의하거나 안건 찬반 토론에 참여할 수 없고, 찬반의사 표시도 할 수 없다."

질의내용 / 헌법 정치 제45조 : "은퇴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에서 제주노회 태흥교회 김춘길 장로(1946년생)는 은퇴장로로서 은퇴장로의 권한인 언권회원의 조항을 들어 당회와 제직회에 일일이 참석하여 은퇴자로서 시무회원 같이 동일한 권한을 행사를 주장하고 있어서 교회의 회의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권회원의 권한과 기능을 쉽게 이해하도록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언권회원은 당회와 제직회에 항시 참석하여서 안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질의2) 언권회원은 당회와 제직회에서 다룰 안건에 성안하여 동의하거나 모든 안건에 찬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질의3) 아니면 출석은 하였지만 필요한 안건에 한하여 자문이나 의견을 의장이나 회원이 요청할 때 만 답하거나 찬반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까?

103. 당회의 직무 / 교인의 이명 / 항존직

여수노회 여수영락교회 김성기 목사 제출한 "여수영락교회 제2017-03호, 총회 헌법위원회 질의에 대한 헌법해석 답변 요청(2017. 8. 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제5항에 의거 재정감독권이 있는 당회이며,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3장(교인) 제13조(교인의 정의)~제17조(교인의 이명) 등에 의거 전에 출석하던 교회 교인이 아닌 현재 등록하여 출석하는 교회의 교인이다."

질의3)에 대하여 "전에 출석하던 교회에서 항존직분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현재 등록한 교회에서 항존직분의 취임(임직)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시무 항존직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직회원이 아니다.”

질의내용 / 질의1) 일반성도가 교회 재정장부의 열람을 원할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야 하며, 재정장부열람을 허락하는 교회의 최종기관은 어디입니까?

질의2)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 일반성도가 현재 출석하던 교회의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이후 다른 교회에 등록하여 그 등록한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회” 와 신년을 맞아 제직으로 “서리집사” 로 임명을 받았으며, 현재 등록된 교회에서 교회봉사를 하고, 외부 행사홍보지에도 자신을 등록한 교회 교인이라고 소속을 밝혔다면, 이 성도는 어느 교회 성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질의3) 전에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서 항존직분을 받고 봉사하던 성도가, 사정상 교회를 옮겨와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당회는 이명증서도 요청하지 않았고, 등록한 교회에서는 제직으로 임명하지도 않았으며, 본인도 안수를 받은 전 교회 성도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였다면, 등록된 교회에서는 항존직분자라도 당회의 임명 없이 당연 제직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104.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 항고 및 재항고

군산노회장 김호성 목사가 제출한 “군노78-072호, 헌법 질의(2017.8.4.)”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제3항,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제2항, 제3항, 동 규정 제3조(적용범위) 제1항~제4항에 의거 적법하지 않다.”

질의2),3),4)에 대하여 “기소여부는 기소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5)에 대하여 “헌법 제3편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2절(기소) 제65조(항고 및 재항고) 4항에 의거 재항고 할 수 있다.”

질의내용 / 1. 2016년 10월 23일 군산동신교회 당회는 대리당회장 홍기표 목사의 주재 하에 교회 정관에 근거해서 김대현 위임목사를 12월 31일로 사임시키기로 결의했습니다. 또한 김대현 목사가 사임하지 않으면 생활비 감액, 설교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 후로 이 문제를 공동의회에서 다룬 적도 없으며, 총회 헌법 정치편 제35조에 따른 권고사임의 절차를 밟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대리당회장 홍기표 목사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당회 결의를 무효화 시키지 않는 한 당회 결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교회에서는 김대현 목사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사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10월 23일 당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입니다.

1) 김대현 목사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홍기표 목사를 동신교회 대리당회장으로 계속해서 모시기로 하다.
2) 김대현 목사를 교회정관 제9조 9항과 제11조 2항에 의거하고 지난 10년 동안 김대현 목사의 목회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 부적합 받았기에 그 책임을 물어 2016년 12월 31일자로 사임시키기로 하다.
3) 김대현 목사가 사임을 거부할 시는 2017년 예산을 책정할 때 생활비 등등을 조정하여 일부 감액하기로 하다. 단, 감액 부분은 목회실적을 평가하여 반영하기로 하다.
4) 계속해서 김대현 목사가 사임을 거부하고 나갈 시에는 교회정관 제9조 2항에 의거하여 주일예배, 수요기도회, 새벽예배 등 설교를 일부 제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은 당회 서기에게 맡기기로 하다.

질의1) 대리당회장이 이와 같이 위임목사의 사임을 결정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질의2) 대리당회장의 이런 행위를 '헌법 권징편 제54조의 3'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기소할 수 있는지?

2. 위에서 서술한 당회 결정 이후 2016년 12월 11일 연말 제직회에서 돌연 교단 탈퇴 건이 상정, 가결,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 안팎에서 상당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군산노회에서 헌법위원회에 '군노 제78-009호'로 질의했고, '예장총 제101-570호'로 위법 무효 하다는 해석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질의3) 제직회장이 제직회에서 교단탈퇴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받아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가결 선포했는데, 이런 행위를 '헌법 권징편 제54조 3'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기소할 수 있는지?

질의4) 제직회 석상에서 교단탈퇴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제직회장에게 압박을 가한 제직회원들의 행위를 위와 동일한 죄과로 기소할 수 있는지?

질의5) 위의 두 사건을 기소위원회에서 '헌법 권징편 제54조의 3[고소(고발) 및 기소의뢰의 제한]'에 의거해서 불기소 처리 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

105. 장로의 자격 / 무흠의 기산과 적용

포항남노회장 유원식 목사가 제출한 “포남노제 94-19호, 헌법해석 질의요청(2017.8.8.)”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6장(장로) 제40조(장로의 자격), 헌법시행규정 제12조(이명과 직원) 제2항, 동 규정 제26조(직원 선택) 제9항 등의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항존직 자격을 결하였기 때문에 원인 무효에 해당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 선택) 9항과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6항에 의거 시행하면 된다.”

질의3)에 대하여 “이명증서 제출에 대한 귀책사유는 당사자인 H장로에게 있다 할 것이다.”

질의4)에 대하여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헌법시행규정 제27조(무흠의 기산과 적용)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 본 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H교인(이하 H장로)이 약 20년 전 교회를 떠나(2017년 기준) 타교단 교회(고신, 북울산교회)에 등록한 후 장로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본 교회에 다시 등록(2012년 1월 1일)하여 전입 장로로 있던 중, 본 교회 장로로 취임하는(2014년 10월 9일) 과정에서 이명증서를 요구하였지만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교회의 취임절차에 따라 장로로 취임하여 지금까지 시무해 왔으나, 헌법 정치 제6장(장로) 제39조(장로의 직무), 제40조(장로의 자격), 제41조(장로의 선택), 제42조(장로의 임직),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12조(이명과 직원) 2항,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26조 8항 등에 의거 무흠 기간 7년을 경과하지 않고 장로로 취임한 것에 대해 일부 교인들이 노회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본 사안이 당회로 이첩되었습니다.

질의1) H장로는 장로 취임 당시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아(현재까지도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 ①장로 취임에 있어 무흠 기간 7년을 경과하지 않고 장로로 취임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무 장로직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인지, 혹은 ②헌법과 헌법시행규정, 헌법해석사례 등에 의거 그 시무가 정지되고, 추후 무흠기간이 충족된 후 신임 투표를 거쳐야 다시 시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③H장로 취임시 이명증서 없이 한 장로의 취임절차는 원인 무효가

되고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질의2) 이상의 질의에 대한 헌법해석 결과에 따라 ①당회장은 당회 결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②당회는 별도의 행정절차(재판 등)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③헌법시행규정 제26조 직원선택 9항에 의거 당회장은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당회에 보고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3) 교회가 이 일로 문제가 되고 있어 ①H장로가 지금이라도 이명증서를 전교회로부터 발부 받아 제출하면 효력이 있는 것인지, ②만약 당회가 이명증서를 요청했음에도 H장로가 여전히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③전교회에 이명증서를 요청하고 본 교회에 제출하는 책임은 H장로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 있는 것인지

질의4) 헌법시행규정 제27조(무흠의 기산과 적용) 3항 '무흠 기간은 항존직 직원(목사,장로,집사,권사)으로 임직 시에 적용하고 이미 임직되어 시무중인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무, 직분, 권리, 신분을 제한할 수 있다' 는 헌법시행규정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이 규정이 위의 장로 취임 시 무흠 기간 산정 하자에 따른 문제제기 된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인지

106. 지교회의 원로목사(예우) 박탈이나 폐지 결의의 헌법 위배 여부

서울북노회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지교회의 원로목사(예우) 박탈이나 폐지 결의의 헌법 위배 여부 질의(2017.8.11.)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원로목사의 예우는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제7항, 헌법시행규정 제21조(원로목사) 제1항에 의거 공동의회에서 투표 과반수로 가결하고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직위 해임은 행정조치로 할 수 없고, 다만 그 행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고소(고발)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2항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제96회기 총회헌법해석사례 46)

질의내용 / 원로목사 제도는 헌법 명문상 "그 명예를 본존하기 위한 것" 으로 되어 있지만 원로목사 제도의 도입은 현재와 같은 목회자 연금제도나 국가의 연금제도가 되입되기 전, 은퇴 후 목사들의 생계수단이 별무하였기에 20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하여 그 여생을 교회가 책임을 지도록 제정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원로목사 제도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현행법이 존재하는 한 원로목사 제도는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에는 교회가 허락한 원로목사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원로목사 예우를 중단하거나 파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원로목사 제도는 헌법이 정한 제도이며, 만약 원로목사(예우를 포함하여)를 폐하려하면 소송이나 혹은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문제이지 교회가 임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교회가 임의로 예우를 폐지할 수 있다면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원로목사로 청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목회자의 은퇴 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일이며, 예우를 박탈하는 것은 원로목사 입장에서 보면 원로목사로서 받아야 할 법적인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질의) 노회가 허락한 원로목사(예우)를 지교회가 노회의 허락이나 권징없이 임의로 폐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지

107. 위탁재판의 청원

전남노회장 조원섭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8-137호, 총회헌법위원회 헌법해석 청원서(2017.8.14.)”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기소위원회에 상소 요청은 할 수 있으나, 동일한 사건내용으로 고소장을 다시 제출할 수 없다”(헌법 권징 제52조 제3항, 동 법 제91조 제3항, 제4항).”

질의2),3)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위탁재판) 제121조(위탁재판의 청원)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72조[위탁재판의 청원. 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제3항에 의거 당회장이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청원할 수 있으나, 당회 회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회 회집을 하지 않고 당회장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청원한 것은 위헌이다.”

질의내용 / 대한예수교장로회 나주교회(이하 ‘나주교회’ 라고 한다) 당회장인 최태훈 목사는 2017년 01년 22일 정기당회에서 결의하기를 “나주교회 최태훈 목사의 뜻대로 최태훈 담임목사에게 2017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안식년을 허락하기로 동의 제청하여 가결하다” 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안식년이지만 실상은 시무사임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태훈 목사는 2017년 01월 31일 전남노회장에게 “목사 휴무 청원”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2017년 02월 06일 정치부의 결의와 2017년

02월 07일 임원회의 승인으로 목사 휴무가 결정된 것입니다. 휴무 사유는 '심신의 휴양을 위해'입니다. 또한 최태훈 목사는 2017년 01월 31일 전남노회장에게 '나주교회 대리당회장 선정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최태훈 목사는 2016년 12월 09일 나주교회 김성돈 장로 외 3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전남노회기소위원장이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중이었으나 2017년 06월 30일 판결문 주문에 "총회 헌법 제89조 제5항을 준용하여 재판국원 전원일치로 당 사건의 기소를 기각한다" 라고 처리가 된 것입니다. 최태훈 목사는 동일한 고소장을 2017년 07월 07일 재고소한 것입니다.

질의1) 현재 휴무 상태인 최태훈 목사가 휴무 전인 2016년 12월 09일 위탁재판청원서와 함께 전남노회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2017년 04월 07일 기소가 된 사건을 2017년 06월 30일 전남노회 재판국에서 기소 기각 판결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의 고소장을 2017년 07월 07일 다시 제출한 것인데 이러한 고소장이 합법적입니까?

질의2) 현재 휴무 상태인 최태훈 목사가 2017년 07월 07일 전남노회에 위탁재판청원서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탁재판청원서에 "당회장 최태훈 목사" 라는 문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물론 권징 제10-1호 서식의 당회 서기는 미기재 상태입니다. 당회 서기 이름이 없는 위탁재판청원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질의3) 제101회 총회 헌법위원회 보고서 제29번을 참고하여 질의합니다. 현재 나주교회는 당회가 분쟁된 상태가 아니고 대리당회장 체제로 정상적인 당회를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휴무 상태인 최태훈 목사가 자신이 선정한 대리당회장을 통하여 당회의 결의를 거친 다음에 노회에 위탁재판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무시하고 자신이 임의로 위탁재판청원서를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108. 항존직 재신임 투표 불가

평북노회장 전세광 목사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202-102호, 헌법질의(2017.8.16.)"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2조(항존직),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 선택) 7항에 의거 항존직 재신임 투표는 할 수 없으며, 상위법규인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위반한 내규(정관 등)와 그로 인한 모든 회의와 행위는 무효이다."

질의내용 / 최근 지교회에서 당회나 공동의회를 통해 담임목사 또는 위임목사와 장로들을 대상으로 신임 투표를 시행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고, 이를 목사,장로의 사임 또는 해임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안수식 또는 목사, 장로의 신임투표 행위' 가 어떤 형태로든지 본 교단 총회 헌법에 적법한지 여부, 적법하다면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109. 특별소송절차 / 재심청구권자

서울서노회장 최내화 장로가 제출한 "서노 제96-76호, 헌법질의 해석 요청(2017.8.16.)"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예장총 제101-1101호 헌법해석 통보(2017.8.3)" 로 갈음하기로 하다.

질의내용 / 1. 제출배경

1) 총회 제2재심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사건번호 제101-5권징]에 관련합니다.
2) 피재심청구인들 상기 재심 심리 중에 총회 헌법위원회에 헌법해석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서울서노회 마포교회 김성은 집사 외 14인이 제출한 "헌법 및 시행규정에 관한 질의(2017.06.01.)]
3) 금번 총회 제2재심재판국이 위 사건[사건번호 제101-5권징]을 2017년 7월 18일에 판결 선고 후, 재심청구인(피재심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습니다.
4) 그러나, 피재심청구인들은 주장하기를 총회 제2재심재판국이 자격이 없는 재심청구인의 재심청원를 받아주었으며, 귀 총회 헌법위원회의 헌법질의 해석도 '재심청구권자의 자격을 결한 고발인의 재심청구는 법적으로 무효이고, 청구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바, 총회 제2재심재판국이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질의 사유

원고발인 마포교회 민응규 집사는 노회 재판국 판결(사건번호 2015-5 / 판결선고일: 2016.06.10)에 불복하여 총회 재판국에 '상고' 하였으나, 노회 기소위원장이 총회 재판국에 상고 소송을 포기하여 원 고발인이 직접 상고하게 되였으며, 사건 심리 후 원고부적격과 기타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예총재판국 사건 제100-43호) 그러나, 원 고발인 마포교회 민응규 집사가 총회 재판국 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100-43호)의 부당함과 재심 사유 사항에 해당되어, 앞서 총회 재판국 상고할 때부터 노회 기소위원장이 자격을 포기한 이후였고, 원

고발인이 부득이 직접 재심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1) ‘제5장 상소 제1절 통칙 제91조 상소권자’ 와 ‘제6장 특별소송절차 제2절 재심 제128조 재심청구권자’에 대하여 상소권자와 재심청구권자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요?

질의2) 제5장 상소 제1절 통칙 제91조 상소권자’ 와 ‘제6장 특별소송절차 제2절 재심 제128조 재심청구권자’가 서로 상충될 경우 우선 적용해야 할 법조항은 있는지요? 아니면 2개 조항을 다 적용해도 되는지요?

질의3) “제5장 상소 제1절 통칙 제91조 상소권자 1항, 2항, 3항 생략

4. 전항의 경우에 기소위원회가 고소인(고발인)의 상소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상소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고소인(고발인)이 직접 상소할 수 있다”

상기 조항의 경우, ‘고소인이 직접 상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91조 4항에 근거하여 고소인(고발인)이 직접 재심 청구할 수 없는지요? 고소인(고발인)이 직접 재심 청구 할 수 있는지요?

110. 위탁재판 청원 / 책벌의 적용과 범위

서울강남노회장 김예식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60-111호, 헌법해석통보에 대한 보충 질의(2017.7.14.)”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예장총 제101-766호, 헌법해석 통보(2017.4.12.)” 로 갈음하기로 하다.

질의내용 / 1. 2017.4.12. 시행 예장총 제101-766호 헌법해석통보와 관련하여 헌법위원회의 예장총 제101-766호 헌법해석통보에서 서울강남노회의 서울교회의 시무장로 17인이 헌법상 “장로,집사,권사 등을 상대로 하여 당회가 수신인으로 된 고소(고발)장에 대하여 당회장이 당회에 전혀 보고하지도 않은 채 바로 단독으로 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한 행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위탁재판) 제121조(위탁재판의 청원) 헌법시행규정 제72조[위탁재판의 청원, 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제1항,제2항에 의거 당회장이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할 수 있으나, 사전에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회신하여 개 교회에서 당회장이 상회인 노회에 위탁재판 청원을 할 수 있는 시기 또는 단체와 관련하여, 헌법 권징 제121조 헌법시행규정 제72조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소,고발만 되어 있는 단계에서도 위탁재판을 청원할 수 있다는 대전제 하에서 다만 ‘사전에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질의1) 이와 관련하여 당회장이 당회에 사전보고하지 않고 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한 사건에 대하여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이미 개 교회에서 헌법 권징 제121조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72조 제3호 소정의 당회나 교회의 분쟁으로 당회의 구성 또는 당회의 회집이 불가능하여 사전에 당회에 보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전보고 없이 위탁재판 청원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2. 2016.12.14. 시행 예장총 제101-298호 헌법해석통보 및 이와 관련한 2017.6.8. 시행 예장총 제101-946호 헌법해석통보와 관련하여 2016.12.14. 시행 예장총 제101-298호 헌법해석통보에서는 “질의 가),나),다),라)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4절(당회 재판국) 제26조(심판사항) 제2항에 근거 당회결의로 기소 및 재판을 대신하기로 한 후 책벌을 논의하던중 위탁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며, 위탁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고 답변하여 당회에서 이미 기소 및 재판을 대신하기로 결의한 후 책벌을 논의하던 중에는 위탁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질의 다)는 ‘위 고소건 이외에 당회에 접수된 신규 고소,고발 건과 관련 추가 질의’ 라는 제목 하에서 당회에서 이미 기소 및 재판을 대신하기로 결의한 후 책벌을 논의하던 고소 사건과는 전혀 다른 신규 접수된 고소,고발 건에 대하여 아직 기소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 제121조를 적용하여 노회에 위탁재판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내용으로서 당회에서 이미 기소 및 재판을 대신하기로 결의한 후 책벌을 논의하던 고소 사건을 헌법 제121조를 적용하여 노회에 위탁재판할 수 있는지를 물은 질의 가),나)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오히려 질의 다)의 내용은 위1.항에서의 2017.4.12 시행 예장총 제101-766호 헌법해석통보에서의 질의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2016.12.14. 시행 예장총 제101-298호 헌법해석통보 및 이와 관련한 2017.6.8. 시행 예장총 제101-946호 헌법해석통보에서와 같이 질의 가),나)뿐만 아니라 질의 다)에 대한 답변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면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2016.12.14. 시행 예장총 제101-298호 헌법해석통보와 2017.4.12.시행 예장총 제101-766호 헌법해석통보는 답변내용이 서로 상반되어 결과적으로 동일한 질의 내용에 대하여 모순된 해석이 나온 것으로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질의3) 만일 신규 접수된 고소,고발 건에 대하여 아직 기소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 제121조를 적용하여 당회장이 노회에 위탁재판청구를 하여 온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여야만 하는지요

111. **교회의 직원 /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 노회원의 자격 / 행정쟁송의 대상 및 종류**

영등포노회장 김용희 목사가 제출한 “영노 제118-35호, 행정쟁송 당사자 적격 여부 질의서 제출의 건(2017.8.22.)” 및 추가자료 건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제9항에 의거 적법하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1조(교회의 직원의 구분) 제2항에 의거 적법하다.”

질의4)에 대하여 “제69회 총회(1984.9.21.~26, 서울영락교회당)결의에 의거 외국 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는 직원이 될 수 없으므로 적법하지 않다.”

질의5)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3항 ①호, 제29조(청빙의 승인)에 의거 담임목사라 할 수 없다.”

질의6)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1장(노회) 제74조(노회원의 자격) 제1항에 의거 노회원이 될 수 없다.”

질의7)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8장(행정쟁송) 제2절(행정소송) 제151조(행정소송의 대상),제152조(행정소송의 종류) 제1항, 제153조(재판관할) 제1항, 제2항, 제154조(원고적격) 제1항에 의거 이용우 씨는 영등포노회 노회장을 상대로 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원고부적격).”

질의8)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4항, 제88조(재판계류와 교단탈퇴)에 의거 이용우 씨가 노회와 교단을 탈퇴하였다면 노회와 총회 소속인 제일교회와 관련하여 노회장을 상대로 행정쟁송을 할 자격이 없다.”

질의내용 / 1. 헌법 제27조(목사의 칭호) 9항에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 없는 목사이다.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을 계속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해직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1) 이용우 목사는 1983년 2월 서울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현재까지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한사항이 없는 목사이므

로, 본 노회에서는 헌법 제27조에 따라 목사의 직이 자동해직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요

질의2) 또한 본 교단과 관련이 없으며 아무런 법적인 조치도 없이 미국의 3개 교단에서 목사로 시무하였고 1998년 9월 마지막 시무지인 미국 성광교회에서 교회 분쟁으로 사임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본 노회에서는 상기 헌법 제27조에 따라 목사의 직이 해직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2. 우리 총회는 제69회기(1984.9.21.~26, 영락교회)와 제87회기(2002.9.9.~13 영락교회)에서 “시민권(미국)을 소지한 이중국적자를 담임목사로 청빙하지 않는다” 라고 결의하였습니다. 본 결의에 따라 총회 소속 모든 교회는 시민권 소지자(이중국적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2012년 12월 총회 헌법개정시 본 내용을 헌법 제21조(교회의 직원의 구분)에 헌법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질의3) 총회 결의에 따라 이중국적자를 담임목사로 청빙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요

질의4) 위와 같은 총회 결의에 따라 담임목사를 청빙하지 않는 사항을 2012년 헌법 명문화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급적용’ 한 것은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3. 2010년 우리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이 교회를 운영 중인 제일교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시에 상기 2항을 모두 간과하고 헌법 28조(목사의 청빙) 절차에 따라 당회,제직회에서 청빙결의 한 후 목사의 관련서류와 함께 노회에 청원하였으나 상기 1항(이중국적자)에 해당되어 헌법 29조(청빙의 승인)에 따라 승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질의5) 노회에서 청빙이 허락되지 아니한 목사가 지교회 담임목사라고 할 수 있는지요

질의6) 노회에서 지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이 허락되지 아니한 이중국적자인 목사가 우리노회 회원이 될 수 있는지요, 또한 본 교단 소속 목사회원이 될 수 있는지요

질의7) 상기사항 모두를 참고하면 이용우 씨는 본 노회의 회원도 아니고 따라서 제일교회 담임목사는 더더욱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본 교단의 목사회원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용우 씨는 해직된 목사이며 영등포노회와는 아무상관이 없는 자이므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 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8장 제2절 154조(원고의 적격)에 따라 이용우 씨가 원

고가 되어 영등포노회 노회장을 상대로 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요

4. 가사 이용우 씨가 목사직이 있고 청빙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2015년 3월 14일에 영등포노회를 탈퇴하고 이를 2015년 4월 27일 신문에 게재하면서 자신들은 영등포노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용우 씨와 그의 추종자들은 제일교회를 떠난 상태입니다.

질의8) 노회와 교단을 탈퇴한 목사가 노회와 총회 소속인 제일교회와 관련하여 노회장을 상대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요

112. 시무장로 자격 요건

광주노회장 정태진 목사가 제출한 “광노제31-113호, 헌법해석에 대한 질의(2017.8.24.)”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장로의 소속은 당회인바 당회에서 정식으로 사임처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당회장(강영구 목사)이 제출하였기 때문에 당회장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한 것이다.”

질의내용 / 본 광주노회는 예장총제101-1106호 장성읍교회 시무장로 자격 요건에 대한 헌법해석이 어떠한 기준에 해석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본 노회의 시무장로 자격 요건에 관한 질의에 대해 예장총 제100-489호의 답변과 장성읍교회 임순배목사 질의에 대해 예장총 제101-754호에 대하여 동일한 해석을 헌법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광주노회 재판국은 재판을 진행하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예총재판국 사건번호 제101-35호의 판결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상고인(피고인)은 무죄로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총회 헌법위원회의 예장총 제101-1106호 헌법해석이 이전 2번의 헌법해석과 다른 판단을 한 기준이 무엇인지, 본 노회 재판국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 통보를 기준을 가지고 판결하였는데, 그렇다면 본 노회의 권위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요?

113. 헌법 질의의 사실 여부

경동노회장 이상철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46-144호, 헌법 해석 질의(2017.8.25.)” 건은 경동 제146-145호, 금장교회 임시당회장 유봉준 목사의 헌법해석 질의에 대한 노회의 답변(2017.8.25.)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노회의 공문과 첨부된 자료를 살펴 판단하건대 허위 질의라 할 수 없다.”

질의내용 / 담임목사 3년의 임기가 되어 본 당회에서 재청빙을 받지 못하여 자동으로 무임목사 된 자를, 대리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을 통하여 재청빙(가결, 부결) 절차의 당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해석질의(경동 제145-97호)에 ‘재청빙이 부결된 자로’ ‘본 교회 당회가 1차 부결시킨 무임목사’라는 질의를 했다고 해서 허위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114. 헌법위원회의 질의 해석의 유효 여부

경동노회장 이상철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46-146호, 헌법해석 질의(2017.8.25.)” 건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헌법위원회는 질의한 내용이 진실함을 전제로 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질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위원회의 해석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질의내용 / 1. 헌법 질의 내용중 사실이 아닌 허위로 질의를 한 것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답변이 유효하다고 하는 것이 적법한 지

2. 금장교회수습전권위원회에서 “당회원권과 당회의 기능을 정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경동노회장은 당시 금장교회에는 당회장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당회장이 시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당회장권을 정지시켰다” 고 질의한 것은 적법한지

3. 금장교회의 2017년 2월 15일 당회의 소집 및 결의는 “당회장이 교인들과의 갈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2월 말이나 3월 말에 사임하겠다”라고 하고, 당회장이 당회실을 나갔습니다. 당회장이 나가고 난 다음 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 없이 ‘구두로 사임한 것’에 대하여 장로 4명이 수의한 결과 2:2로 사임이 부결된 것(결의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지만)을 당시 목사 반대측에 있던 양0갑 장로(당회 서기)는 사임이 통과되었다고 기록을 하였고 양0갑 장로와 김0우 장로는 이날 당회에서 있었던 것을 1차 연임이 부결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진정서에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동노회는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목사측 반대 의견만 듣고는 “1차 부결된 무임목사를 재청빙하는 것이 적법한지” 라고 질의했고 헌법위원회에서는 적법하지 않다고 헌법해석을 한 것입니다.

질의1) 사실이 아닌 허위의 내용으로 질의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2) 허위로 질의한 것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은 유효하

다고 보는 것이 적법한 지

115. 재판의 원칙 / 위탁재판청원

군산노회장 김호성 목사가 제출한 “군노78-077호, 헌법 질의(2017.8.31.)” 건

해석 : 질의1),4)에 대하여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시행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제3항].”

질의2)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헌법시행규정 제8장(행정쟁송) 제1절(통칙) 제1항, 제2항을 참고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3)에 대하여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5)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위탁재판) 제122조(위탁재판청원의 처리) 제2항은 권고(훈시)규정[참고 :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사건의 처리)]이지만, 기간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질의내용 / 질의1) 재판 진행에 있어서 절차와 법 위반으로 원인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재판을 총회 헌법위원회에 답변을 받을 때까지 연기하자는 측과 재판을 계속 진행해도 된다는 측이 있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의 여부?

질의2) 임시당회의 결의의 건이 행정소송의 건인지 혹은 권징 재판의 건인지의 여부?

질의3) 당회장의 불법적인 녹취로 인한 귀책사유 및 고의적인 당회 소집회피, 당회결의에 대한 행정소송의 치리회 결의 무효의 소나 취소의 소 제기 기일이 지난 상태에서의 위탁재판 청원의 적법성 및 당사자 자격의 존재 여부?

질의4) 헌법과 규칙을 위배하는 절차상 하자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기다려야 한다는 피고인의 방어권 및 진술권이 재판국장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재판국장이 임의적으로 재판을 진행 할 때 재판의 적법성 여부?

질의5) 위탁재판의 건에서 권징122조 2항에 의거 기소위원회는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한다에서 광주노회장 박찬환 장로가 제출한 “광노제29-124호, 피고소인 출석요구 연기신청에 관한 질의

(2015.8.6.)"건에서 권징 제6장 제122조 2항대로 피고소인의 출석 연기 신청을 받아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소인을 흠석으로 하고 60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에서 총회 헌법위원회는 총회 헌법 권징 122조 2항대로 시행하라고 해석 했는데 이 조항이 권징 조항이라 하여 60일을 넘겨도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헌법이 권징 조항이라면 누가 헌법을 지키겠는지.....그러므로 헌법 권징122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사건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의 여부?

116.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군산노회장 김호성 목사가 제출한 "군노78-078호, 헌법 질의(2017.8.31.)" 건

해석 : 질의1),2),3),4),5)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1절(통칙) 제8조(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는 국원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재판국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 중에는 가능하나, 최종 판결을 앞둔 시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새로 선임된 재판국원이라도 그 재판에 반이상 참석치 아니하면 판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참조, 제85회기 총회 헌법해석사례 28번)

질의6)에 대하여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과 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결의로도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에 질의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다[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제5항]."

질의내용 / 1. 군산동신교회 위탁재판 진행중 최종변론이 끝나고 마지막 판결만 남은상태에서 피고인들은 재판국원(재판국장과 서기)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기피 신청 사유는 헌법 권징 제8조 2의 ②항 "국원이 이해관계로 인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질의1) 최종 판결을 앞둔 시기에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질의2) 기피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당사자 배제 후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해야만 합니까

2.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기피 사유를 소명했습니다.

① 8월 3일 군산노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은 불공정한 재판이 재판국장과 서기에 의해서 진행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

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노회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들의 방어권 및 진술권, 형사소송법의 증거재판주의를 따르는 재판의 대원칙이 훼손되었습니다. 절차상 하자 및 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 능력에 대한 합리적인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무참하게 무시되는 상황에서 불공평한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되겠기에 헌법에 보장된 재판국원 기피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② 재판정에서는 재판 지휘권이 재판국장에게 있으나 재판의 절차, 피고인의 청원 및 재판 진행상 문제점 등은 당연히 재적 2/3의 출석과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시행 및 처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국원들은 무시당한 채 재판국장과 서기가 전체 재판을 독주하여 이끌어 가는 현실에서는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기에 재판국원 기피를 신청합니다.

질의3) 상기 내용에는 이해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헌법 권징 제8조 2. ②항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기피사유가 적법합니까? 위와 같은 사유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질의4) 헌법 권징 제8조 2.②항에 나오는 '이해관계의 범위' 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학교 동문이나 또는 신분관계가 이해관계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질의5) 재판진행에 필요한 모든 결정을 할때는 반드시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만 합니까?

3. 피고인들은 헌법위 질의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시행규정 제36조 2항에 나오는 '헌법위 질의시 처기기간의 자동연장' 규정을 '재판절차의 의무적 중단' 으로 해석했습니다.

질의6) 헌법위 질의 중일 때에는 재판을 중단해야만 합니까?

117. 교회 및 노회 수습 / 당회장의 행정권 정지 및 목회권 정지 불가

평북노회장 전세광 목사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202-111호, 헌법 질의 해석(2017.9.4.)"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3항에 의거 당회장의 행정권은 정지시킬 수 있으나, 목회권(설교,심방,기도,광고,헌금기도,축도)정지는 할 수 없다."

질의2),3)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3항에 의거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3개월 정지시키는 것 외에는 위임목사, 시무장로 권고사임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

으므로 권한 없는 자가 한 행위(그 투표 결과)는 무효이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3항에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라고 되어 있는데, 평북노회 수습전권위원회에서는 주광식 위임목사에게 설교를 제외한 광고, 헌금기도, 축도를 못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습전권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회장의 행정권을 제한시킬 수 있지만, 목사로서의 시무를 정지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축도나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일은 법정신에서 벗어난 위법행위가 아닙니까?

질의2)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 30분에 평북노회 수습전권위원회는 본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위임목사 주광식 목사와 시무장로 배근성 장로의 권고사임 건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교단 헌법 제3편 권징 제4조 ‘재판의 원칙’ 제1항에서는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와 권징 제6조 ‘책벌의 원칙’ 제2항에서는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을 할 수 없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헌법시행규정 26조 ‘직원의 선택’ 제7항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 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공동의회를 강행하여 권고사임 안을 가결시키는 것은 적법한 일입니까?

질의3) 헌법시행규정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제3항에서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로 되어 있는데 상기 공동의회 결과 위임목사와 장로 1인의 사임권고안이 통과 되었다고 위임목사와 장로 1인은 권한을 정지시키고, 나머지 장로와 부목사들은 권한정지를 해제 시켰는데, 아직 교회 수습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당회원만 권한정지를 해제시킬 수 있습니까?

118. 목사의 칭호 / 원로목사 추대

서울관악노회장 최용호 목사가 제출한 “관악 제42-57호, 총회 헌법에 관한 질의(2017.9.4.)”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제7항에 의거 원로목사로 세울 수 있다.”

질의내용 /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위임목사로 시무한 A목사가 조기은퇴 의사를

밝혀 시무교회의 당회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원로목사 추대 결의를 하였으나, A목사의 연금기간 부족으로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무임목사로 2년 동안 연금을 완납한 후 완전 은퇴했을 경우에 원래 교회가 원로목사 추대 결의한 대로 소속 노회에 청원하여 원로목사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가부 여부

119. 판결의 정정 / 기소기각의 판결

전남노회장 조원섭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8-147호, 총회 헌법위원회 헌법 질의와 해석 신청(2017.9.5.)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7조(판결의 정정) 제1항].”

질의2)에 대하여 “기소기각의 사유에 해당되면 판결로써 기소기각의 선고를 하는 것은 적법이다[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3절(재판) 제89조(기소기각의 판결)].”

질의3)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90조 제2항에 의거 치리회장의 직인이 날인되었을 경우에는 유효하다.”

질의4)에 대하여 “대리당회장을 통하여 당회의 결의를 거쳐 위탁재판을 청원해야 한다.”

질의5)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제5항에 의거 재정감독권이 있는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질의6)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제3항,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제3항에 의거 대리당회장은 사회권은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전남노회 재판국에서 판결문을 판결 당일 2017년 6월 20일 판결문을 작성하여 고발인과 피고발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재판 석상에서 판결을 하여 판결문 송부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모르지만, 이미 판결문을 고발인과 피고발인에게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노회 재판국에서 판결문을 2017년 6월 23일 정정하여 우편으로 6월 28일 송부 받았습니다. 이것이 적법한지요

질의2) 전남노회 재판국은 “총회 헌법 제89조 제5항을 준용하여 재판국원 전원일치로 당 사건의 기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라고 판결주문 하였습니다. 총회 헌법 제89조 제5항은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1심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 적용이라 이해됩니다. 그런데 위탁재판은 특별소송절차라는 것입니다 (제3편 권징 제6장 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 위탁재판) 그리고 위탁재판의 준용규정은 시행규정 제123조(준용규정)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특별소송절차인 위탁재판에 총회 헌법 제89조 5항을 준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질의3) 위탁재판 청원서 서식 권징 제10-1호에 의하면 당회서기의 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당회 서기는 당회장을 2016년 3월에 김성돈 장로와 함께 나주경찰서에 업무상 황령혐의로 진정한 자이고, 2017년 5월 28일 당회에서 당회장을 전남노회에 고소하기로 결의 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7일 접수한 고소장을 위탁재판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기 전에 당회 서기를 찾아가서 서명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였고, 내용증명서를 보내서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진행하겠다고 통보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탁재판을 청원할 때 권징 제10-1호 서식에서 요구하는 당회 서기의 서명이 있어야 위탁재판을 청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당회 서기의 서명이 없이 당회장의 서명으로만 당회장의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청원할 수 있는지요

질의4) 제98회기 헌법해석 사례) 71. 당회의 개회성수 / 위탁재판, 부산동노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부동노 제67-65호, 헌법해석 질의서(2014.4.3.)” 건 질의2) 위탁재판의 청원(헌법 권징 121조 시행규정 72조)건에 대해서 현재 저희교회 형편은 60년 사상 재판의 선례가 없으며, 당회원들 간의 소송 문제로 분쟁중에 있으며 특히 당회장이 피고인이 되어 노회 재판국에 정식으로 회부되어 재판계류 중에 처해 있어 위의 근거에 의해 당회 재판국이 구성 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당회장과 일부 당회원들이 당회 재판국 구성과 기소위원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함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당회장이 피고소인이라면 당회장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회 재판국이 구성될 수 없음으로 노회에 위탁하여 재판을 하여야 한다” 라는 해석과 제97회기 헌법해석사례) 64. 위탁재판/재판비용, 서울서노회장 송여태 목사가 제출한 “서노제88-10호, 헌법질의 해석 요청 및 회신(2013.6.3.)” 건 2)2013년 4월 21일(주일) 희성교회 오전 예배 전, 당회장실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독단적으로 “예배를 방해한 행위” 죄과로 당회원 1명과 제직(안수집사) 5명을

고소하여 본 노회 재판국에 위탁재판 청원서를 제출(4월 29일) 하였습니다. 3) 본 노회는 위탁재판 청원서 서식(권징 제10-1호)에 의거 제출한 양식에 맞지 않다는 것과, 당회장이 위탁재판 청원에 대한 당회보고 또는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접수할 수 없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1) 상기 경우에 대한 위탁재판의 청원시 당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당회장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청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위탁재판) 2,3항과 헌법시행규정 제3장(권징) 제72조(위탁재판의 청원) 제3항에 의하여 당회가 정상적일 때는 반드시 당회의 결의를 거쳐 위탁재판을 청원하여야 하지만 당회나 교회의 분쟁으로 당회 재판국의 구성 또는 당회의 회집이 불가할 때는 당회장의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청원할 수 있으며”, 라는 해석을 인용하여 다음의 질의4)의 내용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3편 권징 제2장 재판국 제1절 통칙 제7조(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2항과 제3절 노회재판국 제20조 3항과 4항에 의거 당회장이 고소고발의 당사자가 될 때, 또한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은 재판 관할은 노회재판국에서 하며, 노회재판국의 심판 사항도한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과 당회장이 청원한 위탁재판사건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위탁재판) 2,3항과 헌법시행규정 제3장(권징) 제72조(위탁재판의 청원) 제3항과 제4항 ①에 해당될 때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사항으로 당회장이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당회장이 고소인(고발인)이 된 경우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할 경우 대리당회장이 위임된 상황에서 당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사회권만 있고 행정권, 권징권 즉 치리권이 없는 대리당회장을 통하여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당회장 직권으로 노회에 위탁재판청원 할 수 있는지요

질의5) 현 재정부장이 이미 공동의회에서 모든 재정에 관한 결의하여 보관중인 전 재정부장과 관련한 재정서류와 교회에 모든 보고가 된 교회리모델링, 교회 사택건축과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당회의 결의나 당회장의 허락없이 교회 밖으로 유출할 수 있는지요, 또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재정부장이 개인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지요

질의6) 지난 1월 22일 당회에 당회원 17명 전원일치로 결의한 내용에 대

해서 결의를 어기지도 않았고 당사자가 없는데 4명 참석하지 않고 13명이 참석하여 찬성 10명, 기권 2명 반대 1의 결과로 대리당회장은 번안동의하여 번복 결의하였는데, 번안동의란 회기 내에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회기란 회의를 시작하여 폐회가 되는 순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기가 지난 결의 건에 대해서 번안동의하는 것이 맞는지, 이 사항을 대리당회장이 사회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대리당회장이 결의는 적법한지요 그리고 대리당회장이 당회장과 두장로에 대한 아무런 이유없이 노회에 고소하기로 한 것을 사회하여 결의 한 것이 적법한지요 대리당회장이 당회장의 승용차 유류 사용료를 제한하는 것을 결의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120. 항소 및 상고의 방식 및 제기기간

서울관악노회장 최용호 목사가 제출한 “관악 제42-58호, 총회 재판에 관한 질의(2017.9.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항소기간[헌법 권징 제5장(상소) 제2절(항소) 제95조(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제3절(상고) 제108조(상고의 방식 및 제기기간)]이 도과되고, 총회재판국에 상고할 수 없는 (심급 위반) 사건을 총회재판국에서 한 판결은 위법이다.”

질의2)에 대하여 “위법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당연히 무효이고, 원심(당회)재판국의 판결이 유효하다.”

질의내용 / 질의1) 당회 재판국 판결이후 항소 기간이 도과되어 노회 임원회에서 항소권 없음을 결의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총회 재판국에 상고하여 총회 재판국에서 ‘기소를 기각한다’ 라는 기판력 없는 판결을 결정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적법한지요

질의2) 당회 재판국과 노회 임원회에서 모두 항소기간이 도과되어 책벌이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에서 주문으로 원심파기하거나 양형의 변경없이 단순이 “기소를 기각한다” 라는 기판력 없는 판결을 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 후 원심 재판국 판결이 효력은 계속 유효한지요

121. 이단성 목사 총회 판결 사회법 무효 판결에 관한 질의

두레교회 차영근 목사 외 1인이 제출한 “두레17-094-3, 이단성 목사 총회 판결 사회법 무효 판결에 대한 헌법 질의(2017.9.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이단, 이단성, 사이비, 사이비성, 신학적 문제성, 윤리적 문

제성, 목회적 문제성을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에서 결정된 개인이나 단체는 상회 기관의 문건 권고에 대하여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였다고 해벌될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이단성으로 의심되는 개인이나 이단 단체로 의심되어 이대위에 '이단 사이비연구 조사'를 의뢰하면 이대위는 이대위의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이단, 이단성, 사이비, 사이비성, 신학적 문제성, 윤리적 문제성, 목회적 문제성'으로 결정하는 것과 같이 이대위에 해벌을 의뢰하면 '이단 사이비연구 조사'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해벌한다."

질의3)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본(本) 교단과 다른 교단에서 '이단, 이단성, 사이비, 사이비성, 신학적 문제성, 윤리적 문제성, 목회적 문제성'으로 결정된 개인이나 단체는 소속 교단에서 해벌이 되지 않는 상태로 본(本) 교단에 가입할 수 없다."

질의4)에 대하여 "본(本) 교단에서 '회중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단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결정된 이단성 목사를 총회 재판국 '면직출교' 양형 판결은 마땅하다. 절차법을 위법하였다고 교회법으로 이단적 행위의 죄과로 '면직출교'한 목사 판결을 무효하는 사회법 판단에 대하여 범 총회 총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총회 100회기 이대위의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총회에서 보고가 결의 되었으나 '총회 홈페이지 이단사이비 상담소 주요 결의'에 등록되지 않는 것 또한 이단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즉시 등록해야한다."

질의5)에 대하여 "총회 헌법 권징 제54조의 3 [고소(고발) 및 기소의뢰의 제한]에 의거 치리회의 결정, 해석, 판결 등 업무상의 행위는 책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평양노회장 장창만 목사, 같은 교회 기소위원장 조중기 장로, 1심 재판(평양노회) 이문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기소위원회 서기 윤승열 목사가 이문장 이단성 목사의 재판을 무효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고의로 총회 재판국에 '파기환송'을 요청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교회법 절차에 따라 책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질의6)에 대하여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63조의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의 ‘인정의견서’와 총회 이대위의 ‘연구보고서’는 ‘이단, 이단성, 사이비, 사이비성, 신학적 문제성, 윤리적 문제성, 목회적 문제성을 연구 조사하여 최종 이단에 대한 의견을 결정한 동일한 문건이다. 이단성과 이단으로 의심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이대위는 이대위의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이단, 이단성, 사이비, 사이비성, 신학적 문제성, 윤리적 문제성, 목회적 문제성을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63조를 보완하여 최종 결정한 것이다.”

질의내용 / 1. 총회에서 이대위의 ‘이문장 목사의 이단성 연구보고서’를 평양노회에 통보한 문건(예장총 제99-406호)에 ‘한국교회와 총회 앞에 부적절한 설교에 대해 통절히 사과하고 제발 방지를 약속하는 조차를 평양노회에서 시행하기 바란다.’ 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이문장 목사는 2015.2.4. 총회 교단지 기독공보에 ‘이단성 오해를 야기하여 사과드리고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취지의 사과문을 게재하였는데

질의1) 위 사실만으로 이단성 목사를 해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질의2) 총회 이대위에서 이단성 목사로 결정되면 이단성 목사를 해벌할 경우 어떤 절차에 의해 해벌합니까?

질의3) 통합교단을 탈퇴한 이단성 목사가 해벌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합교단에 재가입 될 수 있습니까?

2. 총회 측은 이단성 행위라는 중대한 죄과로 ‘면직출교’ 의 판결을 하였으므로 정교 분립의 원칙상 위 교회법 판결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법 판단에 나아가지 않을 경우 두레교회를 둘러싼 현재의 법적 분쟁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총회재판국 판결의 효력 유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질의4) 총회 이대위에서 연구 조사한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이단성 연구보고서’에서 ‘원죄’, 죄, 속죄의 교리에서 비(非)성경적, 반(反)기독교적, 이교(異敎)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등에서도 위험한 사상이 두루 발견되어 이문장 목사는 장로교회의 목회자로서 회중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단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결정되어 면직출교한 권징 재판을 무효라고 결정한 사회법 판결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회 차원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3. 평양노회 재판국에서 '이단적 행위' 의 죄과로 '2년 정직' 판결로 평양노회 기소위원회에서 이단으로 결정된 목사를 '2년정직' 양형에 불복하여 총회 재판국에 상고하여 재판 중인 것을 2개 노회(평양노회,평양남노회)로 분립되어 두레교회가 속한 평양노회는 이문장을 옹호한 록원교회 장창만 목사가 노회장으로 추대되고 같은 교회 장로인 조중기 장로가 기소위원장,평양노회 재판 중에 이문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윤승열 목사가 기소위원회 서기가 되어 '이단적 행위'의 죄과로 '2년 정직' 양형을 면직출교를 주장해야 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지않고 정반대로 이문장의 변호인으로 곧바로 총회 재판국에 '파기환송'을 요청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어처구니없는 불법행위로 사회법에서 총회 재판국 판결이 무효가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제5) 총회에서 결정한 이단목사를 옹호하고 비호한 장창만 목사, 윤승열 목사, 조중기 장로는 총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총회와 두레교회 재산의 손실을 끼친 명백한 죄과로 총회법에 의한 법적 제재는 무엇입니까?

4. 사법부는 확인의 이익 여부에 대해서 총회 재판국은 총회법으로 정한 절차적 요건마저 갖추지 못한 판결로 절차상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문장은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63조 '헌법 권징 제59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헌법 권징 제3조 제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기소제기를 할 때는 기소위원회가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시하며 중대한 절차법을 어겨 총회 재판이 무효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문제6) 헌법 규정에 의하여 평양노회 기소위원회에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을 선정하여 직접 질의서를 보내 과반수의 찬성 의견서를 첨부하는 '인정의견서' 와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 15명, 해당분야 교수 3명, 상담소장 1명) 시행규정에 의한 '연구보고서'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100회기 헌법 해석 사례

▶ 헌법 질의 해석

1.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용천노회장 김성철 목사가 제출한 “용천 제153-96호, 정치 제28조 6항 ②에 따른 헌법 질의 (2015.8.10.) 건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한다(개정 90.1.13)’에 의거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에 속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 총회 정치 법제 28조 6항 2의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본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코저 합니다. 현재 당회원 총 11명인데 그 중 2인이 매제(1인은 동서관계)되는 목사님이 청빙대상의 한사람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경우 헌법 제28조 6항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3. 담임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은 다음과 같다.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질의1) 시무장로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

질의2) 시무장로의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2. 목사의 임직과 위임식

울산노회장 김영동 목사 제출한 “울노 제70-030호, 유권해석 요청서면 및 기타서면 자료(2015.8.16.)”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언양평강교회는 울산평강교회 20주년 기념사업으로 교인들이

뜻을 모아 삼억원의 선교헌금으로 당시 부목사였던 조성호 목사를 파송하여 설립한 교회로, 분쟁중인 언양평강교회에 대해 울산평강교회에서 한 행위(내용증명에 나타난 내용으로 볼 때 도의적 책임으로서의 수습)와 조성호 목사의 처세(언양평강교회 분쟁 해결을 위한 기도 및 도움 요청서에 나타난 문맥상으로 볼 때 상식적인 판단에 의한 처세)는 불법을 행하거나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질의내용 / 헌법 정치 제5장 제27조 목사의 칭호 1항/정치 제5장 제33조/정치 제11장 제73조 2항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27조), "노회는 목사의 임직과 위임식을 주관한다."(33조), "노회는 노회 소속목사와....."(정치 제11장 제73조 '노회의 조직' 2항) 조성호 목사와 (울산)평강교회의 행위가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의한 울산노회 목사 위임권과 언양평강교회 목사 청빙권에 대한 침해 여부와 위임목사 직무 해태에 대하여

사건개요 - ① 울산노회 언양평강교회 위임목사인 조성호씨는 당회의 권고사임 요청이 발생하자 2014년 11월 27일 조성호씨의 개척을 지원한 (울산)평강교회에 자신의 위임목사 전권을 위임 한다는 공문을 발송함.

② 언양평강교회의 위임목사 조성호씨의 위임목사 전권을 위임한다는 공문을 접수한 (울산)평강교회는 즉시 당회를 열어 노회 임원회도 조직할 수 없는 "언양평강교회 수습전권위원회" 를 조직하여 위원장에 (울산)평강교회 최기성 장로, 위원에 김광윤, 김충호 장로로 구성하여 언양평강교회 교인들에게 협박성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으로 통보함.

3.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인준, 취임 승인절차

충주노회장 이래혁 목사가 제출한 "충주노회 제06-72호, 헌법해석 통보에 대한 질의(2015.9.2)"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7조(파송, 인준, 취임승인 절차) 3항 '... 총회 신학교육부가 공천하되 복수로 공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복수 공천된 자 중에서 해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한다. 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에 2명 이상 선임할 수 없다'에 의거 개방이사와 당연직이사(총장, 동문,

유지이사)에게도 적용된다."

질의내용 /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7조(파송,인준,취임승인 절차) 3항 '..... 총회 신학교육부가 공천하되 복수로 공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복수 공천된 자 중에서 해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한다. 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에 2명 이상 선임할 수 없다' 에 대한 규제중 (별표2 신학대학교 임원 할당) 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에 2명 이상 선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개방이사와 당연직 이사(총장, 동문, 유지이사)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

4. 장로의 선택

익산노회장 윤갑수 목사가 제출한 "익산노회 제11-70호, 헌법 해석 질의(2015.10.14)" 건

해석 : 질의1), 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6장(장로) 제41조(장로의 선택) 1항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항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 선택) 1항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할 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헌법 정치 제41조 2항(당회 추천)의 경우 반드시 당회장(대리당회장)이 참석하여야 하고, 헌법 정치 제64조 2항(세례교인 비례)을 지켜야 한다.'에 의거 당회(헌법 정치 제67조 4항 미조직 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에서 장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나, 공동의회에서 일괄적 가부로 선출할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찬반 표시하여 총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질의내용 / 1. 헌법 정치 제6장 41조 1항에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투표로 선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교회에서 투표를 생략하고 박수로 인준하였는데(해당교회 공동의회록 첨부)이것이 적법인지 불법인지 (참조 : 정치 제13장 90조 6항에서도 인선은 선거이기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2. 해당 교회는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4장 제5조에 의거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 요청

5. 무죄추정의 원칙

부천노회장 곽태문 목사가 제출한 “예장부천노회 제134-48호, 헌법해석 질의(2015.10.8)” 건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절(재판) 제72조(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에 의거 노회원이므로 정기노회 시 노회 각 부, 위원회에 공천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본 노회 재판국에서 “피고를 2015년 7월 30일 본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천노회 소속 목사의 직분에서 면직하며, 부천노회로부터 출교한다.” 로 판결이 난 목사가 현재 총회 재판국에 상고를 하여 재판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사를 본 노회 노회원으로 명단이 남아 있어야 하는지

질의2) 위 목사를 정기노회 시 노회 각 부, 위원회에 공천를 할 수 있는지

6. 유기책벌과 당회장권 /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서울서노회장 유병호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92-68호, 헌법 질의해석 요청 건(2015.10.16)”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0(유기책벌과 당회장권) 및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에 의거 당회장의 결원으로 볼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0(유기책벌과 당회장권) 및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에 의거 임시당회장을 한시적으로 파송할 수 없다”

질의내용 / 1) 당회장의 유고 시에는 대리당회장을 당회(당회장)가 청빙한다.

유고 : 당회장의 질병 또는 장기 출타(외국 등), 기타사정, 유기책벌(시무정지,시무해임, 정직) 고의적 또는 부득이한 경우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당회장의 결원 시에는 임시당회장을 노회가 파송한다.

결원 : 당회장의 시무사임, 면직, 사망에 따른 더 이상 그 직무와 직분이 상실되었을 때

3) 헌법 관련 내용

① 제2편 제10장 제67조

②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8,10,12

4) 상기 헌법에 따른 당회장의 유고(정직 24개월)시에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이 정당하나, 희성교회는 2011년부터 시작된 갈등과 빈목, 내

홍으로 극심한 혼란과 문제에 있는 바, 당회장의 유고(정직 24개월)에 따라 대리당회장 수행만으로 교회의 수습과 안정을 되찾기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당회장의 유고기간이 정직 24개월으로서 장시간 동안 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뿐더러 유기책벌 만료 후 복귀한다 하더라도 교회의 정상화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질의1) 교회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 발생된 소송고 해당 노회에서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후 불가피 생긴 당회장의 유고(정직 24개월/6개월 이상 장기간)일 때 예외적(or 한시적)으로 유고가 아닌 결원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당회장 유고로 인하여 해당 사교교회 내에서 이단활동 또는 소속(교단)이탈, 자체분립 주도 등으로 당회의 기능과 교회 정상화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노회가 긴급조치로 임시당회장을 한시적으로 파송할 수 있는지

7.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 / 증거능력 있는 서류 / 재판비용

광주동광교회 김민식 목사가 제출한 "동광 제2015-39호, 총회질의서(2015.10.22)"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총회 감사위원회의 지적대로 처리하면 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89조(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에 의거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할 수 있다"

질의3)에 대하여 "수사기능은 없고, 심문기능은 있다."

질의4)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재43조(재판비용)에 의한다."

질의내용 / 질의1) 왜 범법을 자행한 김유섭 장로에 대해서 역대 총회 감사 위원들의 외부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2) 총회 헌법 권징 제3편 제3조 14항에 의하면 교회 노회 총회와 총회 산하단체 및 기관운영에 있어서의 부정과 공금유용, 횡령 배임 등의 재정 비리가 있을 경우 권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총회는 이러한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유섭 장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섭 장로가 총회 총대 회원이기 때문에 동광교회 당회가 직접 총회에 제소를 해도 되는지, 총회에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저희 당회에서 재판 국을 구성하여 재판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질의3) 총회 재판국은 노회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을 총회에서 수사

기능을 발휘하면서 재판을 하고 있으며 권징 82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대법원기각판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능을 발휘하면서 재판을 진행해도 되는지

질의4) 권징 제3절 재판 제75조 피고인의 진술권에서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은 피고인에게 공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공탁금을 내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8. 피고인의 무죄추정 / 노회의 증명서 발급 가능

부천노회장 박재갑 목사가 제출한 "예장부천노회 제135-1호, 헌법해석 질의(2015.10.23)"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절(재판) 제72조(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에 의거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 본 노회 재판국에서 "피고를 2015년 7월 30일 본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천노회 소속 목사의 직분에서 면직하며, 부천노회로부터 출교한다" 로 판결이 난 목사가 현재 총회 재판국에 상고를 하여 재판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사가 본 노회에서 증명서를(1.소속증명,재직증명, 대표자 증명)발급 받을 수 있는지

9. 전도목사 계속시무 청원

전주노회장 유지영 목사가 제출한 "전주노회 제37-5호, 헌법해석(적용)(2015.11.5)"건

해석 : 질의1),2),3)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4항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 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의 정한 바에 의한다.' 에 의거 3년마다 연임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노회 결의는 합법이며, 임기허락을 노회가 결의할 수 있으며, 전도목사 사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노회가 결의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우리 노회 제37회 정기노회 진행중 "전도목사 계속시무청원서를 3년마다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는 노회 결의와 관련하여 주장과 설명이 있었습니다.
1)주장내용 : 제36회 정기노회에서 국내선교부의 청원으로 전도목사는

매년 연임청원하기로 결의하고 제37회 정기노회에서 국내선교부가 매년 하던 전도목사 연임청원을 3년으로 하도록 청원하였으나 한 회원이 전도목사로 한 번 허락 받으면 연임청원 할 필요 없는데 1년 마다, 3년마다 연임청원서를 제출하라는 결의는 헌법에 위배되니 종전대로 연임청원 없이 계속 시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답변내용 : 구법에서는 전도목사에 관하여 "~임기는 시무처가 정한 바에 의한다" 였지만 개정 헌법은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의 정한바에 의한다" 로 되어 있어 노회가 전도목사 형편에 따라 임기를 정할 수 있고, 담임목사 연임 계속 청원과 형평성을 같이 하여 3년마다 연임청원서 제출하도록 결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① 노회(총회) 산하 병원, 학교, 교회가 청원(파송)하여 당해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사역(근무)하고 있어서 전도활동과 관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시무처에서 전도목사 사례비를 전액 지원받는 전도목사는 노회의 결의로 임기를 시무처의 청원대로 허락할 수 있고, ②노회가 전도목사에게는 관리 감독 차원에서 담임목사의 경우처럼 3년마다 연임청원서를 제출하도록 노회가 결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질의1) 정치 제5장 제27조 2. 4에 근거하여 ②의 경우처럼 노회가 전도목사의 임기와 관련하여 3년마다 연임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노회 결의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질의2) 위 ①과 같은 경우처럼 전도목사 사역활동과 관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생활비를 전담하는 경우 시무처(파송처)가 청원하는 대로 임기허락을 노회가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질의3) 매년 "전도목사 사역보고서" 를 제출하도록 노회가 결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

10.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 판결의 확정

서울남노회 효성교회 대리당회장 이창재 목사 외 4인이 제출한 "효성교회 관한 헌법해석 질의(2015.9.23.)"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2013.8.12)판결, 총회 제2재심재판국 (2014.4.3) 판결, 국가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의 본안 판결, 예장총 제99-293호, 헌법해석 통보(2014.12.9)에 의거

'노회가 위임목사로 또다시 허락할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2항에 의거 질의할 수 있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4조(판결의 확정) 2항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에 의거 무효이다."

질의내용 / 질의1) 2015년 8월 4일 서울남노회는 임원회를 열어 '전중식 목사 위임목사 청빙서'를 허락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7월 22일 "대리당회장 이창재 목사 외 4인(전체 당회원 6인)으로 임시당회장 파송 청원건에 대한 답변서" 에서 총회 제1재심재판국 제98-7호, 제98-10호 및 헌법위원 회의 헌법해석(예장총 제99-293호)에 따라 전중식 목사가 현재 효성교회 위임목사이다" 라고 분명히 밝혀 놓고 또다시 '전중식 목사의 위임목사청빙' 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장난을 친 모순된 행정이며 불법입니다. 총회 100년 역사상 이런 불법행정은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현재 위임목사인 자를 다시 위임목사로 청빙하고 이를 노회가 허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한 전중식 목사는 2013년 8월 12일 총회 재판국에서 위임목사 청빙 무효판결과 2014년 4월 3일 총회 제2재심재판국에서 위임목사 청빙 무효확정 판결문을 받았으며 더군다나 국가재판에서 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위임목사 청빙 무효 판결을 받았음에도 노회가 총회 판결과 국가 판결을 불복하고 위임목사로 또다시 허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2) 2015년 1월 6일 이창재 목사와 이형규 장로가 헌법위원회에 헌법질의를 한바 서울남노회에서는 노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질의서를 경유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창재 목사는 서울남노회 공로목사요 전 노회장이며 이형규 장로도 서울남노회의 전 노회장입니다. 전 노회장은 노회 언권회원입니다. 노회 언권회원은 헌법 질의를 할 수 없는지요

질의3) 2013년 8월 12일 총회 재판국에서 전중식 목사의 위임 무효판결이 나오자 전중식 목사는 2013년 8월 16일 당회 재판국을 열어서 본인이 당회 재판국장을 맡아 이형규 장로를 면직 출교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7월 8일(예장총 제99-1044)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 "헌법 제3편 권징 제34조 2항에 의거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에 의거 전중식 목사의 당회장

권 상실 시점이 2013년 8월 12일인 바 2013년 8월 16일 당회 재판국의 판결은 원천 무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재판으로 이루어진 이형규 장로에 대한 면직 출교 판결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형규 장로에 대한 면직 출교 판결은 무효입니까? 무효가 아닙니까?

11. 판결의 효력

서울남노회 효성교회 대리당회장 이창재 외 4인이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2015.10.23)" 건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예장총 제100-165호, 사실확인 요청 회신(2015.10.19)" 공문에 의거 '총회 재심재판국의 판결은 총회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3절(총회 특별재심)에 의거한 총회특별재심 청원에 대한 총회 결의에 의하여 특별재심 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 결정되기 전에는 그 효력이 유지됨을 확인합니다.' 로 갈음하다"

질의3)에 대하여 "총회 제2재심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전중식 목사 '위임목사청빙무효판결은 유효하다"

질의4)에 대하여 "서울남노회 이창재 외 4인이 제출한 '효성교회 관한 헌법해석 질의(2015.9.23)' 건중 질의3)의 해석으로 갈음하다"

질의내용 / 질의1) 본 교회는 2013년 8월 12일 총회재판국 '결의무효확인의 소'(사건번호:예총재판국 사건 제97-29호)에서 승소하였고 2013년 9월 2일 총회장(손달익 목사) 명의로 판결집행문을 첨부하여 헌법집행통보서(문서번호:예장총 제97-1220호)를 서울남노회에 송달하였으며 이어서 2014년 4월 3일 총회 제2재심재판국(총회 제2재심재판국 제98-2호)이 재심청구인(전중식)의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전중식의 위임목사 '결의무효확인의 소' 는 확정판결이 되었습니다. 총회 제2재심재판국의 최종판결은 총회특별재심을 거치지 않고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질의2) 본 교회는 애당초 2013년 4월 8일 '전중식 목사의 효성교회 위임목사 청빙무효확인' 소송을 하였는데 2013년 8월 12일 총회재판국은 판결문에 '결의무효확인의 소' 라고 오기했다가 뒤늦게 2014년 3월 31일 '무효 등 확인 소송' 으로 정정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를 지적하여 2014년 9월 18일 총회 제1재심재판국은 '정정판결은 무효'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을 근거로 하여 서울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무효가 되었으니 총회 제2재심재판국

의 판결도 자동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4년 12월 9일 전중식을 위임목사로 승인하였습니다. 총회 제1재심재판국의 판결로 총회재판국의 원심판결과 총회 제2재심재판국의 확정판결을 한꺼번에 모두 무효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3) 본 교회는 2015년 4월 14일 귀 총회 헌법위원회에 "총회 재판국의 정정판결은 유효한가? 총회 재판국은 정정판결을 할 수 없는가?" 라고 헌법질의를 하였고 이 질의에 대하여 2015년 7월 8일 귀 위원회는 "헌법 제3편 권징 제37조(판결의 정정) 1항에 의거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 할 수 있다" 고 헌법해석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총회 재판국의 원심판결이 무효가 아니라 오히려 총회 제1재심재판국의 판결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총회 제1재심재판국의 판결문 어디를 찾아보아도 총회 제2재심재판국의 최종판결을 무효라고 선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판결은 법리적으로도 할 수 없고 해서도 또 안 될 것입니다. 이를 파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총회 특별재심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전중식의 위임목사 청빙무효판결은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질의4) 2013년 8월 12일 총회재판국에서 전중식 목사의 위임 무효판결이 나오자 전중식 목사는 2013년 8월 16일 당회 재판국을 열어서 이형규 장로를 면직 출교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정판결 하였습니다(항소장도 2013년 9월 5일자로 서울남노회에 접수함) 이는 2015년 7월 8일(예장총 제99-1044호)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 "헌법 제3편 권징 제34조 2항에 의거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에 의거 전중식 목사의 당회장권 상실 시점이 2013년 8월 12일인 바 당회장권도 없는자가 재판국장이 되어 재판을 진행한 2013년 8월 16일 당회 재판국의 판결은 원천무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재판으로 이루어진 이형규 장로에 대한 면직 출교 판결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형규 장로에 대한 면직 출교 판결은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12. 주택임대차보호법 / 교회 대표자 명의로 등기

서울남노회장 김강덕 목사가 제출한 "서울남 86-36호, 예장총 제99-1158호, 헌법해

석통보에 대한 서울남노회 재판국장의 헌법해석의 문제점 발견으로 인한 추가 질의(2015.10.14)" 건

해석 : 질의1),2),3)에 대하여 "현행 사회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1997.7.11. 96다7236 판례를 보면 '이 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지, 법인을 그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1항, 확정일자 업무편람 제3조].'에 의거 현행 사회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지교회의 결의로 교회 대표자 명의로 등기(계약)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위원회가 본 노회로 통보한 예장총 제99-1158호 헌법해석 통보문에서 '현행 사회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기 위하여 지교회의 결의로 교회 대표자의 명의로 등기(계약)을 할 수 있다'는 문구중 '교회대표자의 명의' 라는 의미는 교회의 명칭은 표기되지 않고 단지 목사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교회명칭과 함께 교회대표자의 이름으로(예컨대 00교회 대표자 목사 000)'으로 등기(계약)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질의2) 교회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제직회 등의 결의만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경우에 목사 개인명의로 등기나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질의3) 헌법 제2편 제97조 2항에서 '당회장으로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당회가 위 사항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당회가 구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당회가 없는 교회라면 무조건 교회이름으로 등기나 계약을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13. 장로의 선택

군산노회장 정창환 목사가 제출한 "군노 제77-008호, 헌법 질의(2015.11.12.)"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41조(장로의 선택),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선택) 3, 4항에 의거 이 경우에는 1년 이내에 3차 투표까지 할 수 있다"

질의내용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6장 제40조에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여 40세 이상 인자로 한다와 동 제41조 1항의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3장에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질의) 본 교회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에 청원한 5명의 장로선택을 2015년 4월 21일 본 노회 제76회 춘계정기노회의 허락을 받아 동년 10월 4일(주일)과 동월 11일(주일) 2회에 걸쳐 공동의회에서 5명의 장로 선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1명의 장로도 선출되지 않아 동부교회 교세에 최소한 15명의 장로 당회원이 있어야 하는데 2015년 10월말 현재의 시무장로 7명중 휴무장로 1명과 2015년말 2명 2016년 말까지 2명 모두 4명의 장로가 은퇴하면 이후 상당기간 동안 3명의 장로만 남게되어 절차에 의한 시무장로의 충원과 당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하여 10월 25일(주일) 정기당회에서 3차 투표에 대한 논의 결과 노회에서 허락한 6개월의 기간이 이미 경과되어 3차까지의 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는데 반하여 본 질의자들은 이건 유효기간은 6개월이 아닌 1회기 기간인 2016년 4월 춘계정기노회 전까지인 1년으로 사료되어 이에 질의

14. 노회원의 자격

부천노회장 박신철 목사가 제출한 “예장부천노회 제135-10호, 헌법 해석 질의(2015.11.20)”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6항과 제11장(노회) 제73조(노회의 조직) 2항, 제74조(노회원의 자격) 3항, 제77조(노회의 직무) 8항에 의거 지교회의 노회총대 파송의 권한은 그 당회에 있으므로 지교회에서 총대로 파송했을 경우 노회에서는 장로총대로 받을 수 있으며, 장로총대(노회원)로, 노회결의에 의해 총회 총대로 선출이 되었다면 총회 총대로 가능하다.”

질의2)에 대하여 “시무장로라도 신대원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으며, 시무장로로 소속교회에서 장로 총대로 파송 받았다면 그의 신분은 장로이다.”

질의내용 / 현 시무장로가 노회에서 시행하는 목사후보생고시(신대원입학자격고시)에 합격을 하여 신대원에 입학하였기에 질의

질의1) 소속교회에서 장로총대로 노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노회에서는 장로 총대로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본 노회 장로총대로 총회 총대로 파송되었습니다. 총회 총대로 가능한지

질의2) 총대 파송이 가능하다면 노회 행정으로 장로와 목사후보생(전도사) 둘 중 어느쪽으로 구분을 해야 하는지

15. 헌법 준수 / 교회의 직원

전남노회장 서순석 목사가 제출한 "시행 제127-012호, 은퇴 정년 연장을 노회에 계속 요구할 때 대책(2015.11.13)"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교단 헌법은 교단의 교리(제1편),정치(제2편),권징(제3편),예배와 예식(제4편)의 내용을 규정하는 규범으로서 교단의 치리회인 총회,노회,당회는 물론 교단 산하 모든 지교회와 기관 및 직원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신앙생활과 교회 정치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앙과 교회 정치에 관한 교단 최고의 규범이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 헌법의 권징조항(권징 제3조)에 따라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따라서 총회, 노회, 당회는 물론 교단 산하 모든 지교회와 기관 및 직원 그리고 모든 교인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2조(항존직)에 의거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질의내용 / 은퇴 정년이 된 담임목사가 성도들을 앞세워 은퇴하지 않고 은퇴 연장을 노회에 계속 요구할 때 어떤 권징이 있는지

16. 노회의 개회성수 / 노회원의 자격

강원노회장 고승태 장로가 제출한 "강노 제125-44호,총회 헌법해석의뢰(2015.12.3)" 건과 "강노 제125-043호, 우제영 목사 강원노회 소속증명 확인(2015.12.3.)"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영월교회의 제1차(2015.4.12), 제2차(2015.5.15) 공동의회 결의는 영월교회 노회 탈퇴(이관) 및 결의 재확인에 관한 것이지, 우제영 목사에 관한 것은 아니며 또한 우제영 목사는 총회재판국에 결의무효 확인의 소(예총 재판국 사건번호 제99-33호) 준비서면에도 본인은 강원노회 소속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헌법 제11장(노회) 제72조(노회의 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 지교회가 있으므로(행 6:1-6)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노회가 있다.',

헌법 제73조(노회의 조직) 2항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제74조(노회원의 자격) 1항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헌법 제76조(노회의 개회성수) ’노회는 회원(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에 의거 목사는 노회소속의 신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제영 목사는 합법적(헌법 제29조,제30조,제34조)으로 타노회로 이명하기 전에는 강원노회 소속이다.”

질의2)에 대하여 “제87회, 제89회 총회 결의, 제95회 총회 재결의(00노회 경계 밖에 있는 교회는 00노회 가입은 불가하다. 즉 지역내 기존교회는 타 지역노회 가입은 불가하다)와 98회 총회헌법위원회 해석 83번(종전 소속노회와 신규로 가입할 노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지역노회에 소속되었던 교회가 무지역노회로 가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에 의거 강원노회에 소속된 영월교회는 강원노회의 허락 없이는 타노회의 가입은 불가하다.”

질의3)에 대하여 “성경과 헌법과 헌법시행규정 등을 위반했다면 헌법(권징) 절차에 따라 치리할 수 있다.”

질의내용 / 2015.4.12. 총회 재판 계류중 강원 노회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열어 결의하여서 본인에게 노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통보하였지만 노회에 불참하여 제124회 강원노회(2015.4.23.춘천동부교회)는 치리회로 전환 출석회원 99명중 찬성84표, 반대 2표, 기권 13표로 헌법시행규정 제88조 2항의 근거로 제명처리 되었음을 선포하였는데 또 다시 5.15 본인이 당회를 열어 5.20 공동의회를 열어 노회이관이라는 헌법에도 없는 결의를 하고 본인의 제명이 부당함을 상고하여 예총재판국 99-33호로, ‘노회탈퇴는 교회자유’를 들어 ‘제명결의는 무효’ 라는 판결을 받아서 현재 노회는 총회에 재심청원을 해놓은 상태이며, 그에 앞서 권징 건으로 노회재판을 받아 상고하여 예총재판국 99-8호에 의해 2015.5.26. 정직 2년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벌에 불응하고 있고, 제123회(2014.10.23.~24, 춘천성광교회) 노회에서 헌법시행규정 75조 행정소송의 대상법위 3항을 위반하여(제121회기 결의무효 소, 제122회기 정기노회소집지 가처분을 사회법정에 고소) 노회에서 만장일치 연임청원을 부결한 것에 대해 총회 99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33번에 ‘노회원 만장일치로 계속시무청원이 부결된 사항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은 99-11호로 제123회 강원노회에서의 ‘영월교회 담임목사 계속시무청원 부결 결의는 무효이다(위위 서면 답변에서 동년 8.10에서 본인은 ’강원노회와 영월교회 간에 청원과 허락의 행정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강원노회 소속임을 주장‘ 하였습니다) 영월교회 담임목사로 계속시무청원 된 우제영 목사의 계속시무청원은 허락한다’ 의 판결에 노회는 즉시 재심을 청원하여 총회 제2재심재판국 제99-3호 행정 2015.9.9. 판결에 의해 ‘영월교회 우제영 목사 계속시무청원은 불허한다’ 의 판결을 받아 현재 무임목사인데 노회 치리에 불응할 뿐 아니라 교인들을 선동하여 목회를 계속하고 있어 총회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청원한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참고로 우제영 목사는 노회와 총회재판에 행정건 2건, 권징건과 가중처벌까지 2건 도합 4건에 연류 된 자입니다)

질의1) 권징의 정직2년 시벌에 무임임에도 본인은 제명 이후 노회이관을 결의 하였음으로 강원노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시벌과 결의를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자신의 제명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답변으로 노회원이라 주장하여 99-33호로 ‘노회탈퇴는 교회자유’ 를 들어 ‘제명결의는 무효’ 라는 판결을 하여 노회에서 재심청원하여 제99-3호 행정 2015.9.9.에 ‘계속시무청원은 불허한다’ 고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은 탈퇴했으니 노회 소속이 아니라고 하는데 노회 소속이 아닌가요?(참고로 총회 재판 99-33호 판결선고일은 2015.8.25.이며, 제124회 노회이후 노회이관 공동의회는 2015.5.20.이며 노회에는 이명청원도 한바가 없습니다).

질의2) 우리 총회는 제95회기 결의사항에 “‘교회설립 및 노회가입에 대한 질의의건’ 에 대한 답변은 제87회, 제89회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대로 00노회 경계밖에 있는 교회는 00노회 가입은 불가하다’ 로 결의하다.” (즉 지역내 기존교회는 타지역노회 가입은 불가하다)는 의미인데 타 노회가입이 가능한가요? (강원노회와 영월교회간에 청원과 허락의 행정 절차도 없었고 총회 결의에 따라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질의3) 제88조(재판계류와 교단탈퇴) 2. ‘재판에 계류중 여부와 관계없이 탈퇴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조치로 치리회에서 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부에는 탈퇴로 인한 제명이라고 쓰며 이 제명의 효과는 재판에서 면직과 출교책벌을 병과하여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로 노회 탈퇴와 노회이관이라는 공동의회를 두 번이나 하였는데 어떻게 치리해야 하나요? (참고로 예총재판국 99-33호로, '노회탈퇴는 교회자유'를 들어 '제명결의는 무효' 라는 판결을 받아서 현재 노회는 총회에 재심청원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17. 장로의 자격

광주노회장 한상영 목사가 제출한 "광노제 30-22호, 시무장로 자격 요건에 관한 질의(2015.12.7)"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노회공문 전문과 회의록 등을 살펴 판단하건데, 사임서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무장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교회예배 때 교회(장성읍)에 다니지 않겠으며 시무 사임하겠다고 두 번이나 공회 앞에 선언하고 9개월이나 교회출석 등을 하지 않았고(95회기 65번 헌법해석 참조), 장로 복권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시무장로로 인정할 수 없다."

질의내용 / 본 노회 소속된 장성읍교회가 목회자 청빙문제로 사고교회가 되어 노회에서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장성읍교회를 정상화 시키고자 하였으나 김성규씨의 장로자격 문제로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성규씨는 2013년 10월 13일에 교회예배때에 "나는 교회(장성읍)에 다니지 않겠으며 시무사임 하겠다" 하고 두 번이나 공회앞에 선언하고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장성읍교회 당회는 2013년 10월 27일에 사임처리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나서 다시 장성읍교회에 출석하며 지금까지 시무장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와 노회를 출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목회자 청빙문제가 불거지면서 김성규씨에 대한 장로 자격 논란이 생겨났고 이에 장성시찰위원회에서는 다시 장로로 복권되기를 원하면 복직 절차를 받으라고 권면하였지만 시찰위원회의 지시는 전혀 듣지않고 교인들을 선동하여 시찰위원회 지시를 들을 필요없다고 하고 노회에 장로 천서를 내었습니다. 또한 장로 천서 역시 현재 유일하게 시무중에 있는 장로 1인을 배제하고 자신이 노회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노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노회는 장로 자격문제가 있음을 알고 천서를 반려하였더니 첨부한 질의서로 질의를 하여 왔습니다. 김성규씨의 주장은 시무사임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아서 장로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회예배 중에 시무사임선언을 교인들 앞에서 하였고 교회출

석을 6개월이상 하지 않은점(헌법 제19조)과 제20조 교인의 복권과 제47조 3항 장로의 복직절차가 없었던 자입니다. 이에 김성규씨가 시무장로자격이 있는지

18.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경동노회장 임종수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43-66호, 헌법해석 질의(2015.12.7.)”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67조(당회장) 2, 3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1, 3항에 의거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1항~9항의 권한을 임시당회장이 행사할 때 당회장이 아닌 임시당회장도 당회장(헌법 정치 제67조 1항)과 같은 권한인 결의권이 있다(임시당회장의 권한은 임기만 유동적일 뿐 당회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질의내용 /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1항, ‘임시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8조의 권한을 행사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바 헌법 제2편(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1항~9항의 권한을 임시당회장이 행사할 때, 당회장이 아닌 임시당회장도 당회장과 똑같은 권한인 결의권이 있는지, 헌법 제2편(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1항, 당회장은 그 교회의 시무목사(위임목사, 담임목사)가 된다’에서 명시하고 있는바, 임시당회장이 헌법 제2편(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의 권한 행사를 할 때 ‘결의권이 있다’ 고 명시하고 있지 않음으로 상황에 따라 확대 해석하여 결의권 행사를 해도 된다거나 그와는 반대로 ‘결의권이 없다’ 고 아전인수격 해석이 분분하여 질의

19. 무임목사의 처리 / 복직 절차

여수노회 둔병교회 노장호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위원회 질의 요청(2015.11.5.)”건

〈1. 둔병교회 제2015-03호. 헌법해석에 대한 질의서 답변 요청의 건(2015.11.01.)〉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여수영락교회 김성기 목사가 제기한 결의무효 확인의 소(총회 제2재심재판국 제99-1행정)에서 총회 제2재심재판국(2015.9.9)은 ‘예총재판국 사건 제99-3호(2015.2.26) 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의 소송은 2015년 9월 8일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한다· [제100회기 화해총회를 앞두고 노회의 평안과 질서를 우선으로 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재심청구인(김성기 목사)과 피청구인(여수노회

장), 제3자 소송참가인(김춘길 목사)은 화해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는 판결을 하였다고 해서, 법적 문제(여수노회가 헌법에 위배된 미조직교회 목사의 위임목사 결의)까지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무임목사 3년이 경과된 해직목사는 헌법시행규정 제19조(무임목사의 처리) 3항 '무임목사로 해직된 후 복직하려면 헌법 정치 제37조(목사의 복직) 절차를 준용한다' 에 의거 복직 절차를 거쳐야 한다.(예장총 제99-1045호, 6번)".

질의3)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43조(재판비용) 5항(재판비용 면제) 1호에서 10호까지에 의거 재판비용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 1.둔병교회 제2015-03호. 헌법해석에 대한 질의서 답변 요청의 건 (2015.11.01)

여수노회장 서병근 목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총회 헌법위원회는 예장총 제99-656호(2015.3.10), 예장총 제99-1045호(2015.7.8)의 헌법해석결과에 대하여 통보를 접수 받았었고, 또한 총회 임원회로부터 예장총 제99-960호(2015.6.2)의 행정명령을 공문으로 접수 받고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헌법시행규정 제36조 6항에 의거해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지체없이 시행해야 됨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면 이 행위는 총회와 총회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여수영락교회 김성기 목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총회 제2재심재판국의 판결 예장총부 제99-379호(2015.9.11)을 결의무효임을 판결 결과를 통보받고도 당사자 간 화해가 있었기에 모든법에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법질서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1) 여수영락교회 김성기 목사가 제기한 결의무효소송에서 총회 제2재심재판국에서 여수노회가 결의한 미조직교회 목사의 위임목사 결의는 무효이며, 총회법을 어긴 행위라고 판결을 받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재심청구인과 피청구인(노회장), 제3자 소송인(당사자)이 100회기 화해 총회를 앞두고 화해하고 소송을 취하했는데 법을 어긴 당사자와 개인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해서 법적문제까지도 모두 소멸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에 따른 절차를 지켜 나가야 하는지

질의2) 총회 헌법 제19조(무임목사 처리) 3. 무임목사로 해직된 후 복직하려면 헌법 정치 제37조(목사의 복직) 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총회법인데 그 절차를 따라 법적으로 시행해야 되는지

질의3) 치리회장(당회장)이 상회 치리회장(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비용은 치리회간 소송이 성립됨으로 면제되어야 하는데 만약 납부하였다면 반려되어야 하는지

〈2. 둔병교회 제2015-04호. 헌법해석에 대한 질의서 답변 요청의 건(2015.11.01.)〉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27조(목사의 칭호) 2항과 헌법 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3항에 의거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하지 않아 연임기간을 넘겼다면 그의 신분은 무임목사이다."

질의2)에 대하여 "여수노회(임원회)는 담임목사 3년 연임기간이 지나 무임이 된 목사에게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허락한 것은 위헌이므로 담임목사청빙 대상자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1장(노회) 제74조(노회원의 자격) 1항, 2항에 의거 무임목사는 노회의 언권회원이고, 회원이 아니므로 피선거권이 없다."

질의내용 /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3. 담임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은 다음과 같다. ①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당회 미조직교회는 제직회 회의록을 제출한다. ②매 3년마다 담임목사의 연임청원시 만장일치로 연임을 찬성하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으나 1인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투표해야 한다. ③연임청원시 당회장을 제외한 당회원이 장로만 2인일 경우에 한하여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1인이면 공동의회 출석과반수의 결의로 담임목사의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질의1) 이와같은 총회법에 따라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하지 않아 연임기간을 넘겼다면 해당목사는 무임목사가 맞는지

질의2) 여수노회 임원회가 담임목사 3년 연임기간을 넘기고 자동 무임목사가 된 일부목사에게 담임목사 청빙청원을 하라고 통보했음에도,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임원회는 정치적인 힘에 의해 담임목사 청빙이 아닌 연임청빙으로 허락했다면 총회법에 따라 적법한 처리인지

질의3) 무임인 목사가 임원으로 출마하는 자격이 주어지는지

20.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광주노회장 한상영 목사가 제출한 “광노제 30-23호, 광주동광교회 재판국장 자격에 관한 질의(2015.12.7)”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피해자일 경우라면 헌법 제3편 권징 제8조(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1항에 의거 위반에 해당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52조 1항 ‘고발은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과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발하지 못한다.’ 에 의거 판단하여 처리하면 된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52조 3항 ‘고발을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발하지 못한다. 또 고발과 동일한 내용의 후 고발자의 고발은 반려한다’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질의4)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장(원리) 제6조(권징)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1항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2항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헌법 권징 제72조(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에 의거 범죄 혐의자는 헌법 권징 제8조(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 본 노회 소속되어 있는 광주동광교회 당회에서 다음과 같은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고1 : 정동길-재판내용 :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않는 행위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협박
각종 증명서 위조행위
가중처벌

피고2 : 이길룡-재판내용 : 총회 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한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각종 증명서 위조 행위

피고3 : 이안기-재판내용 : 직원의 명예 훼손한 행위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행위
성경상의 중대한 위반행위

피고4 : 채은화-재판내용 :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피고5 : 김휴섭-재판내용 : 총회 헌법 제 규정위반(가처분)
허위사실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협박
각종 증명서 위조 행위

피고6 : 김효주-재판내용 : 허위사실 유포하여 교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않는 행위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협박
각종 증명서 위조행위
가중처벌

상기 피고 6인은 당회 재판국에서 출교 처분판결을 받아 2심 재판국(노회 재판국)에 항소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김휴섭씨가 다음과 같은 질의를 본 노회에 요청하였는데 질의 내용은 현재 사회 재판 중에 있는 건과 또 다른 내용의 고소 사건으로 현재 노회와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건과 다른 재판내용의 건을 가지고 당회 재판국장에 대한 자격이 없음을 질의하였기에 헌법위원회의 판단 요청

질의1) 재판국장 김민식 목사는 현재 사회재판에서 본인과 서로 고소, 고발중이며 고발장에 명시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 로 되어 있는데 이는 헌법 권징 제8조 1항의 1목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2) 또한 현재 증거로 삼은 사건들은 전부 권징 제52조 1항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알게된지 1년이 넘은 사건들인데 재판이 가능한지

질의3) 또한 김민식 목사가 본인이 고발인이 되어 최초 고발후, 취하를 한 후에 교인들로 하여금 다시 고발케 한 사건인데 헌법 권징 제52조 3항 위반인지 여부

질의4) 마지막으로 현재 김민식 목사는 범죄 혐의자인데 재판국장의 범죄자 및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자 인데 재판국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21. 당회의 직무 / 공동의회 / 제직회

경동노회장 임종수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43-74호, 헌법해석 질의(2015.12.17)"건

해석: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5항,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5항 1호, 2호, 제91조(제직회) 5항에 따라 재정 감독권이 있는 당회, 교회의 예산 및 결산권이 있는 공동의회, 예산집행권이 있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 / 1. 본 교회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2014년 10월 26일자 당회특별위원회인 기획위원회가 본당리모델링 및 수리건 기획안에 대한 로드맵을 정하다 2014년 12월 8일 예결산위원회 심의하여 동년 12월 14일 제직회를 거쳐 동년 12월 21일자 공동의회 통과로 2015년 리모델링비 예산 37,449,670원 일반회계 반영한다.

2. 2015년 5월 31일 당회에서 리모델링위원회 설립을 결의하고 방병주 장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위원장 책임하에 조직을 구성하고 기획위원회 로드맵을 따라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됨. 리모델링위원회에서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공사 개요 및 예산을 확정하고 본교회 전체교인을 상대로 2차례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년 11월 1일 제직회에 상정 리모델링 현안보고 및 대출청원의 건을 설명하여 부족분 1억 7천만원 대출하기로 전원찬성으로 가결하다. 2015년 11월 8일 공동의회에 상정 리모델링 현안보고를 마치자 모장로가 예결산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공동의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회의가 무산됨.

질의) 위와 같이 특별회계의 운영절차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지

22. 적용범위 / 책벌의 원칙

땅끝노회 해남중앙교회 김대용 목사가 제출한 “해중 2015-11호, 교회내규에 대한 헌법해석 건(2015.12.17.)”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1항~4항, 헌법 제2편 정치 제22조(항존직), 헌법 제3편 권징 제6조(책벌의 원칙) 2항에 의거 헌법규정에 위배된 내규이므로 개정해야 한다.”

질의내용 / “교회 내규 제2장 공동의회 제6조 8항 ‘당회원으로서의 시무 연한은 임직일로부터 7년이며 당회원으로서 재 시무하고자 본인이 직접 청원하면 공동의회에서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교회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규칙임). 7년이 지나 당회원이 되기 위한 재신임을 청원하지 않는 경우 사역 장로로 장로 직분은 유지한다.” 의 교회 내규에 관하여

23.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 고소(고발) 및 기소의뢰의 제한

서울서노회장 장재도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93-06호, 헌법질의 해석 요청(2015.11.25)의 질의4)에 관한 건

해석 : 질의4)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13항 및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54조의 3 (고소(고발) 및 기소의뢰의 제한)에 의거 치리회의 임원회 및 각 부서 · 위원회의 결의, 결정, 해석, 판결 등 업무상의 행위는 책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금품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와 관련한 비리행위는 책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질의내용 / 금번 본 노회 제93~94회기 임원회에서는 ‘2016년 노회원 수련회’ 준비를 위해 교육자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회장 지시로 실행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노회 서기가 부장에게 이를 알리자 아무런 이견이 없다가, 다음날 간사를 통해 교육자원부의 실행위원을 소집하는 문자를 보내자 실행위원회는 부장이 소집해야 하는데 왜 초법적인 행위를 하느냐는 항의가 있어 부서 임원(부장,서기,회계)만을 한정하여 노회 임원과 연석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상황에서 법을 어겼다는 이견이 있어 이를 질의하며 또한 본 노회는 지난 2015년 봄 정기노회시 총회총대 선거개표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재발방지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요청되어 임원회가 이를 위해 규칙 제정안과 함께 공청회를 가질 것을 결의하고, 본 노회 규칙부로 규칙 제정안을 이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질의

질의4) 노회 임원회의록이 행정쟁송과 권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24. 목사의 청빙 / 무임목사 / 전도목사

부산남노회장 배춘일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71-86호, 헌법질의(2016.1.29)”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제4항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 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가 정한 바에 의한다’에 의거 부산남노회의 전도목사(귀 노회의 경우 임기가 3년 이라면) 허락 기간 여부에 따라 신분이 결정된다. 전도

목사 임기가 남아있으면 전도목사, 임기가 경과되고 노회에 연임청원을 하지 않았다면 무임목사[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제9항]이며, 파송기관에서 명예만 유지할 경우 또한 무임목사이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9조(청빙의 승인) 제3항에 의거 '노회에서 전도목사로 파송(연임)허락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노회 기간까지 연임청원을 허락받지 못하면 3년이 되는 노회 개회 시부터 무임목사가 된다."(제98회기 헌법해석 사례 35번 참조)

질의내용 / 질의1) 부산남노회가 2015년 질의한 기도원에서의 전도목사 청빙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에서 원칙적으로 허락할 수 없다는 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노회의 경우 전도목사로 허락받고 기도원 원장으로 시무하다가 지금은 원장직을 사임(기도원 자체에서의 사임)한 후 다른사람(고신 교단)에게 주고 본인은 명예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원장직 시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무임목사입니까? 아니면 노회가 전도목사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질의2) 만약 무임목사라고 한다면 무임목사 기산일이 언제부터입니까? 해석통보 받은 날부터입니까? 아니면 원장직을 사임한 그 날부터 소급적용 되는 것입니까?

25. 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 / 목사의 사임 및 사직

평양노회 두레교회 이영래 장로 외 15인이 제출한 "헌법시행규정 제18조 3항 '자동승계'(2016.2.11)"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8조(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 3항 '정상적인 당회가 개회되지 못하면 부목사의 임기는 자동 연장된다.'에 의거 최봉철 목사는 자동 연장이므로 두레교회 부목사이다."(첨부한 서증 참조).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목사) 제35조(목사의 사임 및 사직), 헌법시행규정 제24조(직원의 전임과 사임), 동 규정 제18조(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 3항에 의거 최봉철 목사를 평양노회 정치부에서 사임 보고도 없이 무임 목사로 표기한 것은 위법이며 무효이다."(첨부한 서증 참조).

질의내용 / 1. 평양노회 두레교회 당회 상황

그 동안 두레교회 이문장 당회장은 국법과 교회법에 교인들을 고소해

왔지만 2015.6.24 평양노회 재판국 제181-2 판결문은 이문장 목사에게 '정직2년' 과2015.1. 5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제99-406호는 '....따라서 이문장 목사는 장로교회의 목사로서 회중을 영적으로 지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이단성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2014.9.29 평양노회 재판국 제179-2 판결문은 이문장 목사에게 '견책' 판결중 2항 '....일부 부목사는 당회 결의없이 해임한 사실은 인정되어 직권남용' 즉 2항에 '일부 부목사' 는 '무임이 아니라 부목사 자동승계' 주장입니다.

2. 최봉철 '부목사 자동승계 주장 일지' 입니다.

2010.12.26. 두레교회 제1대 당회장의 청원청빙으로 최봉철은 부목사로 사역중에 2013.12.31. 제2대 당회장은 2014년 12월까지 '사역계약서'를 최봉철 목사에게 주었고

2014. 1.25. 당회회의록 5번에 '부목사 계속 연임청원 건' 최봉철 목사 포함 결의되다.

3. 8. 위 판결문 2항에 '당회 결의없이' 연임청원에서 최봉철 목사를 누락시켰으며

4.21. 제180회 노회 회의안 정치부 보고에 '부목사 최봉철 사임' 이 없었습니 다. 이문장 목사 소장답변서 p32, 2-④ 와 p33, 3-②에서 두 번씩이나 '최봉철 목사에게 해임을 통보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주장하였습니다.

5. 노회후 노회보고서에 무임목사 명단 126번에 2014.4에 무임으로 표기

10.13 노회장께 '최봉철 목사, 재직증명서 청원' 접수에 발급 없었습니다.

10.16 노회장께 '두레교회 부목사로 정정청원' 제출 2회에도 소식 없었습니다.

11. 6 '직권남용으로 해임된 부목사 복권'을 위한 598명 진정서에도 무소식

2015. 2.11 두레교회 재정부가 '목사님 퇴직금을 입금하여 드렸습니다. 라는 문자에 우리 16명 장로들은 2월 11일 6,731,550원을 사임한 바 없어 반환시켰습니다. ❊ 분규중 당회는 헌법시행규정 18조 3항에 최봉철 목사 '자동승계'가 준법

4.20 제182회 노회 회의안 16번 '최봉철 목사 무임정정청원서 정치부로 보내다'

10.19 제183회 평양노회가 분립되는 상황에서 정치부 보고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3. 재항고, 당한(예장총재 제99-241호) 최봉철 목사

2015.2.12. 총회 헌법위원장의 예장총 제99-546호에 의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즉시 당회에 복귀시켜야 한다' 와 노회장의 제181-90호 '총회 헌법에 준한 당회가 아닐때에는 당회에서 결의된 모든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 는 상회 지시에도 이목사는 불순종 하였습니다. 그후 이문장 목사는 정상적인 당회가 없었고 노회 재판국에서 '견책' 과 '정직2년' 과 총회서 '이단성' 의 이문장 목사인지라 저희 두바협 공동체는 장로 16명과 수백명의 교인들은 한 예배당, 두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면서

2015.1.24 노회장과 시찰장에게 두바협 예배드림과 시간을 문서로 보고하였습니다. 1월~7월 최봉철 목사 설교중 3월 8일은 노회 임원도 참석하였습니다. 그후 이목사 측근에 의하면 설교중 최목사는 밖으로 끌려 나갔으며 두바협 예배는 주자창 옆 식당 등으로 쫓기며 박해를 받아 왔습니다.

2.11 이문장 목사는 최봉철 목사에게 '법적책임 내용증명' 도 2차례 보냈습니다.

2015.5.26. 이문장 목사 수하 장로 6명이 노회 재판국에 최봉철 목사를 고소했으나 평노기소위원장은 제181-6호에 '범죄인정 안됨과 자동연장이다' 후

2015.6.15 총회 재판국 제98-31호 재항고건에 답변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현재 총회 재판국 문서번호 예장총재 제99-241호는 계류중에 있습니다.

8. 2 부터는 다른 부목사의 설교로 예배를 드려오다가

12.27 주일부터 평양노회장의 주선으로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재항고장의 소의 내용과 소의 이익은 사라졌습니다.

4. 두레교회 당회 분규 상황에서 최봉철 목사는 두레교회 부목사임을 아래의 조항으로 주장합니다. 헌법시행규정 18조 3항 '자동승계' 와 평노재판국장의 '당회결의없는 직권남용' 과 평노기소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연장' 과 당회장의 '2014년 12월까지 사역계약서' 와 정치부에서

사임보고 없는 '무임처리' 와 2016.2 현재도 정치부에 계류중인 사항과 이문장 목사의 소장답변서에 '최봉철 목사에게 해임통보 한바 없다' 는 주장에 의거하여 최봉철 목사는

질의1) 두레교회 부목사 자동승계(연장) 입니까?

질의2) '정치부의 사임 보고도 없이, 위 18조 3항을 위법한 무임' 입니까?

26.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 당회장 유고 시 대리당회장 / 유기책벌과 당회장권

서울서노회장 장재도 목사가 제출한 "서노 93-47호,헌법 질의 재해석 요청(2016.2.15.)" 건

해석 : Ⅰ의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67조(당회장),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1항 '헌법 정치 제67조 2항의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당회(제직회)를 할 때는 노회에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지 않을 때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정치 제67조(당회장),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당회장 유고 시 대리당회장) 1항, '헌법 정치 제67조 3항 당회장의 유고 및 기타 사정의 경우에는 결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노회 또는 폐회 중의 임원회는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동 규정 제16조의 10(유기책벌과 당회장권) 1항에 의거 당회장 결원 시에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정직 24개월은 유기책벌에 해당됨으로 당회장 유고 시에는 노회 또는 폐회 중의 임원회는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Ⅱ의 질의1),2)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

과 연임청원) 2항, 3항과 헌법시행규정 제25조(목사, 장로의 휴무) 2항을 준용하여, 정직 중인 위임목사의 생활대책은 당회와 제직회가 정할 것이나, 우리 교단헌법[청빙서(정치 제5-2호 서식)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배. 예식서」에 정한 '목사위임예식 순서]은 개혁교회의 전통과 성경에 따라 목회자의 생계비를 그를 청빙한 교회나 기관이 책임지도록 하였고, 오늘날 목회자들의 생계는 전적으로 교회에서 제공하는 주택과 매월 생활비를 통해 유지하고 있는 것이 통례이다."

Ⅲ의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2항 ... '대리당회장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3항]은 단,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 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헌법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3조(임시직), 제8장(집사 및 권사) 제59조(서리집사의 임명),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당회장 유고 시 대리당회장)에 의거 할 수 있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6조 8(당회장 유고시 대리당회장) 4항에 의거 당회의 결의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당회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등을 의미한다."

질의내용 / 총회 공문(예장총 제100-583호, 헌법해석 통보)을 받고 Ⅰ의 질의에 대한 재해석 요청

Ⅰ. 서울서노회 희성교회 우동화 은퇴장로가 제출한 질의

헌법 제2편 정치 제67조(당회장)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1, 2항 및 제16조의 10(유기책벌과 당회장권)에 의거 ① A교회의 B위임목사는 2015. 8. 25부로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2년 정직의 권징을 받아 동일부로 당회장 직무를 정지당하였다. ② A교회의 당회는 2015. 9. 22부로 당회원 8명중 5명이 연명하여 H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하였다. ③ A교회의 당회는 현재까지 소속노회에 대리당회장 파송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질의) 헌법 제67조는 당회장(임시, 대리 포함)을 노회가 임명토록 되어 있다. 당회장이 직무정지를 당한 교회의 당회가 당회원 과반수 이상의 연명으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였으나 2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노회에 파송 요청을 하지않고 있는데 만일 3개월(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고도 노회에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2항에 따라 노회(폐회중에는 임원회)에서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Ⅱ. 서울서노회 희성교회 홍표철 장로가 제출한 질의

1) A교회의 B위임목사는 2015. 8. 25부로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2년 정직(헌법 정치편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⑥정직 :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지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을 선고 받았다.

2) 교회 헌법은 정직 시 효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바 국가공무원 법을 참조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③ “정직은....(중략)....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3) 목회자는 별도의 생계 수단이 없고 교회에서 주는 사택에서 생활하며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 생활을 영위해가는 것이 현실인 바, 비록 잘못이 있어 정직이란 책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그러나 A교회의 당회는 대리당회장 주재 당회에서 “B목사님이 기거하고 있는 사택을 6개월 안에 비우라” 고 결의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질의1) 대리당회장이 주재하는 당회에서 ‘정직중인 위임목사의 사택을 기간을 정하여 비우라’ 고 결의한 것은 교회법 원칙에 적법한지

질의2) 보충적 질문은 당회의 결의로 ‘정직 동안에 사례비를 전액 지급치 않고 있는데 이 또한 교회법 원칙에 적법한지(제직회와 공동의회 결의는 없었음)

Ⅲ. 서울서노회 희성교회 홍표철 장로가 제출한 질의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2항에 의거 1)

A교회의 B위임목사는 2015.8.25부로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2년 정직의 권징을 받아 동일부로 당회장 직무를 정지당하였다. 2) A교회의 당회는 2015. 9. 22부로 H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하였다. 3) A교회의 당회는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대리당회장 사회로 당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결의를 하고 그 내용을 교회주보에 기재하였다. ① 공석중인 전도사를 임명 ② 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집책과 위원을 임명.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30조는 대리당회장에게 인사권(서리집사 임명은 제외)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상기의 전도사 임명과 재정위원회 소집책 및 위원의 임명은 교회법 원칙에 적법한지

질의2) 보충적 질의로 헌법시행규정 제30조 단서 조항의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 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

27. 총회 기소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총회 기소위원장 강상용 장로가 제출한 "예장총 제100-563호, 헌법해석 요청(2016.1.29)"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2장(재판국) 제2절(총회 재판국) 제10조(구성 및 자격), 제11조(국원의 임기 및 보선), 제57조(총회기소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의거 총회 기소위원은 총회재판국원과 같은 총회의 승인으로 선임되고 임기 3년의 년조가 부여되는 상임부서 이므로 본 헌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상임위원회로 구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이 개정되어 시행과정에 있어 헌법과 규칙이 상이할 경우 그역할에 합당하도록 허락하고 규칙은 규칙부에서 수정하여야 하므로 총회기소위원장은 현재 총회 제1인사위원회 위원이다."

질의2)에 대하여 "101회 총회 시부터 적법한 [헌법(시행규정), 규칙, 조례, 결의] 절차에 따라 총회 공천위원회의를 통하여 공천하여야 한다."

질의3)에 대하여 "적법한 [헌법(시행규정), 규칙, 조례, 결의] 절차에 따라 총회 규칙 제13조(상임위원회의 위원)에 의거 총회 공천위원회가 결정하여 시행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 1. 아시는 바와 같이 제100총회 시 헌법 개정을 통해 총회기소위원회가

신설, 조직되어 고소(고발) 및 기소의뢰 건에 대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심사 및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57조의 1항에는 총회기소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대하여 적시하고 있고, 다만 금번 100회기에 한 하여 총회임원회가 총회기소위 위원을 구성토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헌법 질의하니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총회기소위원회는 총회 상임부, 위원회로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와 총회기소위원장이 제100회기 총회 제1인사위원회 위원인지 여부

질의2) 총회기소위원회는 년조를 가진 위원회로 제101회 총회 시 부터는 공천위원회를 통하여 공천되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3) "나"의 질의에 대한 해석이 공천이 선행되는 것이라면 "57조의 1" 의 "4항"에 의거 비총대 중에 선임될 시 년조 부여를 어떻게 해야 되며, 그 임기는 "동 조의 1항"에 의거 3년 동안 보장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28. 전임전도사 경력

전남노회장 서순석 목사가 제출한 “제127-046호, 전임전도사 경력에 관한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 요청(2016.2.17)” 건

해석 :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목사) 제26조(목사의 자격) 1항 2호 ‘30세 이상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4(목사의 자격과 안수) 1항 ‘헌법 정치 제26조 1항 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은 그 절반을 인정한다.’ 2항 ‘전항의 증빙서류는 제5-3호 서식에 의하며 당회장이 발부한다.’ 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5항(기관목사 사역지)을 준용하여 교단 직영 호남신학대학교에서 2년 이상 전임교원(조교수)으로 근무하였다면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로 인정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호남신학대학교 총장이 발부하면 된다.”

질의내용 / 헌법시행규정 제16조 제1항 “헌법 정치 제26조 1항 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 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은 그 절반을 인정한다” 의 내용중에서 ‘전임전도사 경력 2년이 교단 직영 호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 교원(조교수)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일 경우에 지교회에서 전임전도사로 교역 경험을 가진 자로 인정' 하는지 여부

29. 귀책사유 / 위탁재판

평양노회 두레교회 이영래 장로 외 15인이 제출한 "헌법질의(2016.2.22) 건과 평양노회 두레교회 이영래 장로 외 15인이 제출한 "2월 22일자 헌법질의에 관한 부전지 내용 추가자료(2016.3.1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질의서에 첨부한 자료 등을 살펴 판단하건데, 두레교회 당회가 열리지 못한 것은 고의적으로 당회를 소집하지 않는 당회장에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당회의 분쟁이라고 할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위탁재판) 제121조(위탁재판의 청원) 2항, 헌법시행규정 제72조 [위탁재판의 청원. 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3항에 의거 당회장이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청원할 수 있으나, 당회 회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회 회집을 하지 않고 당회장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청원한 것은 위헌이다."

질의내용 /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는 2015년 11월 6일에 총회 헌법 제3편(권징) 제121조 제2항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와 시행규정 제72조 제3항 "헌법 제3편(권징) 제121조 2항에 의한 당회나 교회의 분쟁으로 당회 재판국의 구성 또는 당회의 회집이 불가할 때에는 당회장이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 의 사유를 들어 평양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두레교회는 현재 당회의 분쟁으로 당회 재판국을 구성 또는 당회의 회집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당회장이 총회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3회) 노회의 행정지시, 당회원의 당회소집요청(24회) 등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당회를 소집하지 않아 당회가 열리지 못하여 당회 재판국을 구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질의1) 총회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 노회의 행정지시, 당회원의 당회소집요청 등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당회를 소집하지 않아 당회가 열리지 못한 것을 당회의 분쟁이라 할 수 있는지요

질의2) 당회의 소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회 소집을 하지 않고 당회장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청원할 수 있는지요

30. 타교단 장로의 임직 절차

경동노회장 임종수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43-133호, 헌법해석 질의(2016.2.24)”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당회) 제64조(당회의 조직)에 의해 헌법 정치 제6장(장로) 제39조(장로의 직무), 제40조(장로의 자격), 제41조(장로의 선택), 제42조(장로의 임직)에 의거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임직을 인정하여 장로 취임 절차대로 하면 되나, 타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의 경우는 처음 선택할 때의 임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안수는 생략할 수 있다”.

질의내용 /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시행규정 제26조 8항 -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당회의 장로선택 청원과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투표로 신임하며 노회 고시부의 면접 후 취임할 수 있고, 타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의 경우는 처음 선택할 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안수는 생략할 수 있다. 단 세례교인 비례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질의) 위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시행규정 제26조 8항에 관한 정확한 설명과 의미를 질의합니다. 즉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와 타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의 선택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31. 무흠의 기산과 적용 / 고시위원회의 권한

고시위원장 리종기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 제100-498호, 헌법해석 요청(2016.1.8)” 건

해석 : 질의1), 2)에 대하여 “헌법 제1편(교리) 제2부(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 11조, 제4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4장(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제5부(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제5장(인간) 3번,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6조(목사의 자격), 헌법시행규정 제27조(무흠의 기산과 적용)에 의거 이혼이 무흠과는 관계가 없으나, 고시위원회에서 자숙기간의 의미로 결의(규정)하여 처리하면 된다”

질의내용 / 1. 본 총회 고시위원회는 목사고시 과목으로 면접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위원회가 고시생의 이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혼인관계증명서와 소명소견 및 신앙고백서의 질문내용 중에 이혼이나 별거 경험여부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이를 기반으로 목사고시 이혼을 한 고시생의 경우에 자숙기간의 의미로 7년(그리고 헌법이 정하는 무흠 7년을 준용)을 정하여 정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해당 고시생은 면접에서 불합격 처리해 왔습니다.

3. 하지만 최근의 이슈인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정신상태, 범죄경력 등)가 있는데 유독 이혼 사유만을 가지고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혼 사유의 7년은 부당하므로 폐지하자는 의견과 이와 반대로 면접은 고시위원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26조 [목사의 자격] 1.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시생의 이혼여부를 헌법에서 명시하는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의 내용을 준용하여 이혼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해당 고시생은 면접과목을 불합격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질의2) 인권문제를 차치물론하여 고시위원회의 권한으로도 이혼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해당 고시생은 면접과목을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가능한지?

32. 장로 선출

평양남노회 방주교회 백의장 장로가 제출한 “헌법위원회에 방주교회 항존직분자 선거 부정관련 질의 및 처결요청(재), 2016.3.14)” 건과 “평양남노회 소속 방주교회 항존직분자 불법선거에 관하여(2016.4.22)”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6장(장로) 제41조 3항, 헌법시행규정 제26조 1항에 의거 부합하다.”

질의2)에 대하여 “투표 후 개표는 공정선거를 위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투표 후 신속 투명하게 개표하여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질의3),4)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6장(장로) 제41조, 제8장(집사 및 권사) 제54조, 헌법시행규정 제26조 1항, 5항 등에 의해 장로, 집사, 권사를 선출해야 한다.

질의내용 / 방주교회는 2015년 항존직분자 장로 선출시 평양노회 소속해 있었으며 장로 7명을 본 교회가 세울 것을 노회로부터 허락을 받고 2015.9.6.과 동월 13일 동월 20일 3주에 걸쳐 공동의회에서 장로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할 때 성경과 우리 장로교회 헌법을 어기고, 세상 정치권이나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도 부정한 방법으로 항존직분자들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에 선거부정을 보고 2회에 걸쳐

(2015.10.20.과 동년 12.30) 총회에 시정처결을 건의하였는바 총회에서는 평양남노회에 “총회 헌법 절차에 따라 방주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방주교회 당회를 잘 지도해 주기를 바란다” 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하였으나 평양남노회 박영득 노회장은 총회에서 그와같은 공문을 받은 일이 전혀없다고 말하였을 뿐만아니라 동 노회 서기 김문재 목사는 방주교회 당회는 총회 헌법대로 항존직분자 선거를 실시했을뿐 잘못이 없다고 하므로 부득이 우리 장로교회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고저 다음 내용을 질의하는 바입니다.

질의1) 2015.07.30. 우리 방주교회 항존직 모임에서 당회가 결의한 57명(장로 7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30명)의 배수 총 114명을 투표하여 당회가 추천함이 우리 총회 헌법에 부합 하는지요

질의2) 항존직 130여명이 모여서 배수투표를 한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인영 장로, 전승남 장로, 김 혁 장로)는 1개월 동안 항존직분자들이 투표한 결과를 개표하지 않아 투표조작의 의문을 사고 있는데 투표후 즉시 개표하지 않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 총회 헌법에 부합 하는지요

질의3) 투표후 공식적으로 개표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방주교회 당회는 개별적으로 장로후보대상자 14명에게 득표순위까지 통보한 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개표상황과 순위를 취소하고 장로후보 배수 14명에게만 순위추첨 하도록 한 것이 우리 총회 헌법에 부합 하는지요

질의4) 방주교회는 3주에 걸쳐 임직자들을 투표하였으며 1~2차에서 장로 후보 1명만 당선이 되자 3차에서는 1~2차 투표에서 다득표자 중에서 상위 6위 이내에 들어간 후보에게만 투표하라고 당회장이 주일 예배시간에 수차 광고한 것이 총회 헌법에 부합 하는지요

33. 무임목사

진주남노회장 하영남 목사가 제출한 “진주남 제118-26호, 헌법해석 질의(2016.3.15.)” 건

해석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9항, 헌법시행규정 제19조(무임목사 처리) 1항에 의거 타노회에서 자동해직 목사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직목사라 할 수 없고, 귀 노회 시무처로 전입하려고 서류를 제출하였을때 허락여부는 귀 노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9조(무임목사 처리) 3항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포함)에는 이혼한 목사의 노회전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락여부는 귀 노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 타노회 무임 3년 된 목사가 본 노회 지역에 기도처를 설립하고 본 노회에 기도처 허락청원 및 전도목사 파송 청원을 2015년에 하였으나 본 노회에서는 2013년 11월 13일에 이혼한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재차 2016년도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의견이 분분하여 총회 헌법위원회에 명확한 답변 요청

질의1) 타노회에서 무임목사 3년이 지났는데 목사 자동해직이 되지 않고 본 노회에 전입하려고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그것을 허락할 수 있는지

질의2) 자동해직된 목사가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3) 이혼한지 2년 5개월 된 목사가 타노회에서 본 노회로 전입을 원할 때 본 노회에서 허락할 수 있는지요

34. 목사고시 응시자격

경남노회장 김덕규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제016-30호, 헌법질의(2016.3.14.)” 건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목사고시의 응시자격 및 합격여부에 관한 사항은 고시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질의내용 / 본 교회 목사고시 후보자가 있습니다. 나이는 올해로 만 40세입니다. 전도사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기전에 불신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시에는 신학을 할 뜻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득불 사명자의 길을 가지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이길을 가자고 믿음이 없는 아내를 설득하여 권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선교의 사명을 이해할 수 없었고 목회를 한다면 헤어지겠다고 했답니다. 전도사님은 함께 가길 노력하였지만 어느날 아내가 친정의 일로 한국에 간다고 떠나서는 그 일로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헤어진체로 3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서로를 위하여 이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합의하여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혼한지가 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힘들게 공부하여 다소 늦은 나이에 목사고시에 응시할려고 준비를 하였는데 이혼자는 시험을 쳐도 합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험을 보류하고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1) 이혼자 및 재혼자가 하나님께 목회사명을 받아 목사고시를 응시하고자 할때에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질의2) 이혼자의 사유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예:고린도전서 7장 15절의 경우에 해당될 때) 합격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서 시험을 잘 치르고도 면접에서 탈락한다면 시험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혼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고시자의 인품과 사명감이 목회자로서 자질을 갖추어 담임목사와 노회장님의 추천이 있다면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35. 소송절차 / 무죄추정 / 적용범위

서울남노회장 이정달 장로가 제출한 "서울남 87-30호,서울남노회원 배동호 목사의 '헌법해석질의' 내용에 대한 서울남노회의 사실관계 확인서(2016.3.14.)" 건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에 규정한 질의권을 제한하는 노회규칙은 상위법규 위반이며, 상위법에 위반되는 서울남노회 규칙에 따라 창성교회 배동호 목사에게 행하는 행정보류는 부당한 행위이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제3편(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3절(재판) 제72조(피고인의 무죄추정)에 의거 불법이다."

질의4)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2항에 의거 절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질의5)에 대하여 "서울남노회 규칙 제34조 2항은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2항에 의거 위헌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한다[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2항]."

질의6)에 대하여 "'헌법 제3편(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4항은 권고적 성격이므로 재판국의 판단에 의해 재판할 것이나(헌법해석 사례집 제90회기 79번 참조), 헌법 제3편(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2조(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재판국은 60일 이내에, 노회재판국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헌법시행규정 제36조 2항에 의거 질의에 소요된 기간만큼 정해진 기간에서 자동 연장된다"

질의7)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6항 ‘헌법해석 권한이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 에 의거 서울남노회는 지체없이 시행하고 법리판단을 해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본인은 2015년 9월 2일 내용증명을 통하여 서울남노회에 본인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이는 서기에게 2차례, 사무원에게 3차례나 전화로 요청하였으나 발급요청을 거절 당하였기 때문에 취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재직증명서는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담임하고 있는 창성교회는 2015년 4월 28일 서울남노회 제87회 정기노회와 2015년 10월 27일 제87회 정기노회에 2차례나 시찰회를 경유하여 장로선거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어떠한 통보도 없이 거절 당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서울남노회가 2015년 4월 18일 제85회 11차 임원회에서 〈노회 규칙 제34조, 2항, ‘정당한 이유없이 임원회의 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회에 행정서류를 제출 혹은 이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보류 또는 권징을 시행한다’를 위반한 창성교회 배동호 목사에 대하여 행정보류를 시행키로 하다〉 라고 결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본인은 서울남노회 임원회로 하여금 노회재판국에 고소(고발)당하여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건데 서울남노회가 행정보류라는 이유로 본인이 요청한 재직증명서 발급을 수차례 거절한 것은 목사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처사이며 본 교회가 청원한 장로선거 청원의 건을 역시 행정보류라는 이유로 묵살한 것은 지교회를 돌아보고 지교회의 성장을 도와주어야 할 노회가 도리어 지교회의 성장을 해하는 것이고 담임목사의 기본권 및 담임권을 침해하는 지극히 불공정한 행위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서울남노회가 행정보류라는 이유로 본인이 요청한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절하고 본 교회가 청원한 장로선거 청원의 건을 묵살한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까, 부당한 행위입니까

질의2) 헌법 권징 제1장 6조(책벌의 원칙) 2항은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남노회가 정당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2015년 4월 18일 제11차 임원회에서 본인에 대하여 행정보류를 시행키로 한 결의는 헌법 권징 제1장 6조(책벌의 원칙) 2항을 위반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질의3) 헌법 권징 제4장 72조(피고인의 무죄추청)는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에 의거 본인에 관한 재판은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로 추정해야 하는바 서울남노회가 본인과 본 교회에 대하여 권징에 해당하는 행정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까,아닙니까

질의4) 본인은 2015년 4월 14일 귀 위원회에 부전지를 붙여 '효성교회에 관한 질의'를 의뢰하였습니다. 부전지의 내용인즉 본인이 2015년 4월 7일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헌법질의서가 서울남노회를 경유하였으나 2015년 4월 14일까지 공식적인 통보가 없었고 2015년 4월 10일 당시 서울남노회장 김강덕 목사와 전노회장 장승현 목사의 요청으로 만난 자리에서 두 사람이 함께 본인에게 헌법질의서를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바 이에 본인은 서울남노회의 경유가 불가능하고 노회장이 헌법질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부전지를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귀 위원회는 본인의 헌법질의를 심의하여 2015년 7월 8일(예장총 제99-1044호) 헌법해석 통보를 내렸습니다. 본인이 부전지를 첨부하여 총회 헌법위원회에 헌법질의를 한 것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질의5) 헌법시행규정 제36조 2항에 의하면 '헌법에 관한 질의시 반드시 총회 상임(특별)부서장 또는 노회장의 공문(임원회의 결의 또는 노회장의 직권)으로 질의 할 수 있으며, 거부시 부전지 혹은 내용증명(복사본)을 첨부할 경우 헌법위원회는 접수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총회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헌법 질의를 할 수 있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노회장이 거부할 시에도 헌법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는 헌법 권징 제4조 1항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와 마찬가지로 모든 교인(직원)은 헌법질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서울남노회는 노회 규칙 제34조 2항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임원회의 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회에 행정서류를 제출 혹은 이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보류 또는 권징을 시행한다' 라고 정해놓고 얼마든지 헌법질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차단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부전지고 내용증명이고 뭐든지 간에 임원회의 결의없이 상

회에 헌법질의를 했다가는 행정보류 또는 권징을 당하는 무서운 법입니다. 이는 교회와 목회자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옥죄는 악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법입니다. 서울남노회 규칙 제34조 2항은 헌법시행규정 제36조 2항을 제한하는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질의6) 헌법 권징 제4조 4항에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남노회 재판국은 2015년 4월 17일 고소장(2015년 서남기 2호), 2015년 4월 18일 고발장(2015년 서남기 3호), 2015년 4월 20일 고발장(2015년 서남기 1호) 등 3건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에 11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재판을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남노회 재판국은 헌법 권징 제4조 4항을 위반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질의7) 2015년 2월 24일 서울남노회 제85회 임원회는 헌법 제14장(재산) 제97조 지교회 부동산 변경위반으로 본인을 고발하였습니다. 내용인즉 목사 사택을 전세계약 할 때 교회 명의로 하지않고 교회 대표자인 목사 개인의 명의로 계약한 것이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채권보전이 문제가 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제직회에서 명의 신탁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본인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지만 결국 기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2015년 4월 30일 서울남노회를 경유하여 귀 위원회에 헌법질의를 하였고 2015년 8월 17일 헌법해석 통보(예장총 제99-1158호)를 받으바 '현행 사회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기 위하여 지교회의 결의로 교회 대표자의 명의로 등기(계약)을 할 수도 있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시행규정 제36조 6항 '헌법해석 권한이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하고' 에 따라 서울남노회 재판국은 상기 헌법해석 건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고 법리판단을 하여 재판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남노회 임원회와 재판국은 이를 지체없이 시행하지도 않고 재판을 끝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서울남노회 임원회와 재판국은 헌법시행규정 제36조 6항을 위반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36. 판결집행과 종국판결

서울서노회장 장재도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93-70호, 헌법질의 요청(2016.3.23)”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질의서 전문에 기재된 상황 설명 세 가지를 살펴 판단하건대, 헌법시행규정 제87조(집행과 종국판결) 3항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 희성교회 0 0 목사는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직권남용 등의 죄과로 2015년 8월 25일에 정직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희성교회 당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0 0 목사에게 통지하였지만 현재까지 세가지의 적절치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2015.10.27. 당회 결의서 수령)

1. 당회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이행 또는 거부하고 있는 행위
   ① 자동차 운행 중단(사용하는 자동차 열쇠 반환):즉시, 사무실 보관(안함)
   ② 목양실 열쇠 회수 및 사물 이동 조치 : 즉시, 이동장소 통보요청(안함/보안장치 교체)
   ③ 당회록 회수 : 즉시, 사무실 보관(안함 / 은닉)
   ④ 제직회의록 회수 : 즉시, 사무실 보관(안함 / 은닉)
   ⑤ 사택퇴거 : 당회 결정 6개월 이내(2016.2.25.까지) 처리(안함/불응)
   ⑥ 교회 소유의 교역자 컴퓨터, 노트북, 성경프로그램, 테블릿PC : 즉시, 사무실 보관(안함)
2. 총회 재판국에 출석하여 ‘정직’ 선고를 받은 자는 즉시 시벌이 시작되지만 이를 무시하고 다음날 새벽기도회를 인도하였고 예배시간마다 강대상 앞자리에 앉아 침묵시위를 하는 것과 상회, 당회로부터 핍박받는 모양새를 연출하여 성도들에게 동정을 얻고자 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행위
3. 0 0 목사의 지지자들이 예배 중간에 집단 이탈하거나 교회 내 별도 공간에서 따로 예배를 드린바 있고, 교회 건물 안팎에서 대리당회장과 장로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피켓시위와 발언을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수개월부터 현재까지 시위를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이런 행위를 하는 장소에 나타나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는 등 동조한 행위

이런 상황을 희성교회 당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 노회에 ‘가중시벌의뢰서(2016.02.11) 를 보내 왔습니다. 위 세가지 내용이 헌법시행규정 제87조 3항 ’시벌을 불이행할 시’ 에 해당하는지를 헌법위원회에 질의

질의)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따른 ‘정직’ 24개월 시벌중에 있는 자가 위의 세가지 행위를 하였을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87조 3항(가중처벌) ‘시벌을 불이행할 시’ 에 해당되는지 여부

37. 일반소송절차 / 시벌 및 해벌 / 시벌방법

강원노회장 고승태 장로가 제출한 “강노 제125-177호, 헌법해석 질의 취소 및 헌법질의 (2016.4.7.)” 건

해석 : 질의1), 2)에 대하여 “헌법 제3편(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4조 2항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제7장(시벌 및 해벌) 제142조(시벌방법) 4항 ‘시벌의 기산일은 피고인이 최종 확정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 한다. 단, 피고인이 최종 선고를 재판회의 석상에서 받았거나 혹은 재판국으로부터 직접 판결문을 전달(팩스)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에 의거 본인이 출석하여 판결을 받았고 또 판결문 송달을 받았는데, 판결집행문이 별도로 송달되어야 시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질의3)에 대하여 “현재 총회 재판 가중처벌과 재심재판국 재판계류 중에 있어 판결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사면은 신청할 수 있으나 사면(해벌) 여부는 특별사면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질의내용 / 우제영 목사는 강원노회 재판국 제122-1호에(2014.10.14)의해 면직출교를 받아 총회에 상고하여 사건번호99-8호(2015.6.4)에 의해 정직 2년 판결을 받았으며, 그 후로도 총회 제2심재판국 99-3호행정(2015.9.9)에서 ‘제123회 강원노회가(2014.10.24)정기노회에서 영월교회 담임목사 계속 시무청원 승인을 불허한 것은 정당함을 확인한다’ 판결을 받았으며 그리고 재판계류중에 노회 탈퇴(헌법시행규정 3장 권징 88조 2항 위반)를 한 결의로 2015.4.23. 제124회 강원노회에서 제명치리를 받은 자입니다. 상기인은 총회 재판국의 정직 2년에 대한 가중처벌과 재심재판국의 제명건에 대해 계류중에 있습니다.

질의1) 위의 총회 사건번호99-8호(2015.6.4)에 의해 정직 2년 판결을 받은 자로 총회로부터 판결집행문을 통보받지 않았다하여 시벌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본인이 판결심에서 직접 판결을 받았고 판결문도 받았는데, 또 총회는 지금까지 예로 보면 판결 이후 판결문으로만 집행을 대신하였는데 반드시 판결집행문이 통보되어야 시벌이 되는지요

질의2) 2015. 6. 4 정직 2년 판결이후 판결집행문 통보가 없어 총회의 시벌을 받을 수 없다 주장하여 백번 양보하여 시일이 지났지만 노회는 권징 제120조(집행과 종국판결) 4에 의거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위해 제125회(2015.10.22) 노회 장소에 집행문을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의 집행문이 통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임이며(총회 판결 확정) 노회로부터 제명처리 되어 재심에 계류중인자로 총회장 집행문이라야 한다고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총회 집행문이라야 하며 시벌이 되는지 또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3) 현재 총회 재판 가중처벌과 재심재판국 재판계류중에 있어 판결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100회 총회 특별사면(해벌)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38. 시벌의 기산일

부천노회장 박재갑 목사가 제출한 “예장부천노회 제135-37호, 총회 판결의 절차 질의(2016.3.24)”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3편(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4조 2항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제7장(시벌 및 해벌) 제142조(시벌방법) 4항 ‘시벌의 기산일은 피고인이 최종 확정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 한다. 단, 피고인이 최종 선고를 재판회의 석상에서 받았거나 혹은 재판국으로부터 직접 판결문을 전달(팩스)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에 의거 처리하면 된다.”

질의내용 / 문서번호 예장총재 제100-224호 관련입니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천노회 제28회 정기노회(2012.4.17)에서 부천노회 경인교회 이길원 목사의 임시목사 청빙청원을 허락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입니다.

질의) 총회의 판결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시행하여 노회시 노회원으로서 호명을 하지 않는 것인지, 판결 이후 첫 노회인 이번 봄노회에 노회원으로 호명을 하고 총회 헌법위원회의 판결을 노회에 보고 후 노회원 명부에서 삭제를 하는지

39. 직권남용의 여부

경남노회장 김덕규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제016-42호, 헌법 질의(2016.4.13.)”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장로의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 총회 헌법 제5장 제27조 2항 임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기간은 3년이다. 헌법 제5장 제28조 3항 임시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중략)

.....다만 계속 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위 항에 의하면 임시목사의 연임청원은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당회의 결의가 중요한 이유는 목회자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라는 것이고, 제직회의 결의가 중요한 이유는 당회가 대의적 기관으로서 성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질의) 그러나 뚜렷한 이유없이, 그리고 성도대다수의 의견에 반하여 장로들이 담임목사의 연임을 반대할 경우 이는 장로의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가

40. 수습전권위원회의 기간

강원노회 원주제일교회 당회장 오인근 목사가 제출한 "원주제일 제20151203-1호, 강원노회 정기노회에서 2015.10.22.(목) 결의하여 파송한 원주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기간연속 연장 청원 건과 오인근 목사의 당회장권 정지(1,2차, 3차)와 파송한 대리당회장 유영준 목사에 대한 원천무효여부에 대한 질의(2015.12.3.)" 건

해석 : "분규가 발생한 원주제일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강원노회는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1항에 의거 노회의 결의(2015.4.23.)에 의해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3항에 의거 3개월(2015.4.23.~7.22) 당회장 및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한 후 1차로 3개월 연장하였지만(2015.7.23~10.22) 수습이 미진하여 다시 정기노회(2015.10.22)에서 수습이 될 때까지 수습전권위원회 존속을 결의(2015.10.22)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2차 3개월 추가연장(2015.10.22.이후)하여 당회장과 당회원권, 당회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은 위헌이다"

질의내용 / 1. 강원노회는 2015.4.23.자 원주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키로 결의하여 ①원주제일교회 당회장 및 당회원권 1차로 3개월 정지(2015.4.23.~7.22) ② 대리당회장으로 유영준 공로목사로 보고하다.

2. 강원노회 원주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2차 3개월 정지) ① 원주제일교회 당회장 및 당회원권 2차로 정지(2015.7.23.~10.22) ② 대리당회장으로 유영준 파송

3. 강원노회 정기노회에서 2015.10.22.(목)자로 원주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청원하여(3차 3개월 정지) ① 원주제일교회 당회장 및 당회원권 3차로 3개월 정지(2015.10.22.~2016.1.22.) ② 대리당회장으로 유영준 파송

질의) 경과내용 3항 강원노회 정기노회에서 2015.10.22.(목)자로 원주

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이미 1차 3개월, 2차 수습전권위원회 3개월 합하여 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헌법시행규정 제33조 3항에 따라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당회장권이나 당회에서 요청한 대리당회장은 동시에 정지(소멸)되고 노회 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단, 권한과 기능의 정지처분은 1차에 한하여 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는 법을 위반하여 강원노회가 연장하여 원주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당회장권, 당회원권을 3차로 3개월 정지 처분은 적합한지

41. 대리당회장의 권한

강원노회 원주제일교회 오인근 목사가 제출한 "원주제일 제20151218-1호, 당회장권 정지된 담임목사의 교회대표자 권리, 설교권 및 예배방해의 범위, 대리당회장의 권한 범위(2015.12.18.)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1항,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3항,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헌법 권징 제72조(피고인의 무죄추정), 헌법 정치 제67조(당회장) 1항,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위임목사, 담임목사)가 된다' 에 의거 현재 원주제일교회 대표자는 오인근 목사이다.

질의2)에 대하여 "목사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설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며, 헌법 제3편 권징 제5조(책벌의 종류) 1항 5호, 제6조(책벌의 원칙) 1항, 2항에 의거 재판으로만 가능하다."

질의3)에 대하여 "예배방해의 여부는 사실조사에 의해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4)에 대하여 "원주제일교회 대표자는 오인근 목사이나, 교인들이 법원에 신청한 비송사건에서 누구를 대표자로 인정할 것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 1. 강원노회 재판국은 2015. 7.24일 자로 원주제일교회 오인근 목사를 면직, 출교를 판결하였고, 오인근 목사는 총회에 상소하여 현재 총회 재

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2. 강원노회는 정기노회에서 2015.10.22.(목)자로 원주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청원하여 (3차 3개월 정지) ① 원주제일교회 당회장 및 당회원권 3차로 3개월 정지(2015.10.22~2016.1.22) ② 대리당회장으로 유영준 파송
3. 대리당회장 유영준 목사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5비합 19, 2015. 11.3.신청)에 오인근 목사 해임을 위한 비송사건의 피신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1) 오인근 목사는 강원노회 재판국에서 면직 출교를 받았으나 총회 재판국에 상소한 중에 있고, 원주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당회장권을 3개월 정지를 시켰는데 현재 오인근 목사가 원주제일교회 대표자의 자격이 적법한지

질의2) 오인근 목사의 당회장권 정지가 설교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설교를 못하도록 막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3) 새벽기도회 설교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예배방해에 해당되는지

질의4) 대리당회장 유영준 목사가 교회의 대표자로 행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또한 총회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위임목사의 해임을 위한 비송 사건" 의 피신청인으로 행위가 적법한지

42.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및 파송

강원노회장 고승태 장로가 제출한 "강노 제125-131호, 헌법질의 취소 및 의뢰(2016.2.1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강원노회의 원주제일교회수습전권위원회 파송은 노회 때 존속 결의하였으므로 불법이 아니며, 헌법 제2편 정치 제9장(치리회) 제63조(치리회의 권한) 4항,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1항에 의거 노회의 결의에 의해 구성된 수습전권위원회를 총회 재판국이 해체하라고 할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3항에 의거 위법이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14항에 의거 총회 재판국은 당회 기능, 당회장권, 당회원권 정지 여부에 대해

서만 결정할 수 있다.”

질의4)에 대하여 “고유번호 재발급, 교회, 기관, 부서 통장의 발급 및 재발급 등은 당회장이라도 교회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질의5)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0조(변호인의 자격 등) 1항을 준용하여 대리인으로 본 교단 직원이 아니면 고소, 고발케 할 수 없다.”

질의6)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은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3항, 제2장(재판국) 제2절(총회 재판국) 제14조(심판사항),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27조(당사자 능력) 3항, 헌법 제3편 권징 제8장(행정쟁송) 제1절(통칙) 제161조(직권심리)에 의거 재판국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으나, 교회 내의 문제까지 이의서 내용에 첨부되었다고 모두 판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질의7)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0조(타 교단 교인 및 직원의 이명 접수) ‘타 교단에서 이명해 오는 교인 및 직원에게 이명을 허락할 때는 본 교단의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회 석상에서 서약케 한 후에 교인 명부[헌법 정치 제71조(당회가 비치할 명부) 5항]에 등록한다.’, 또한 제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단지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본 교회의 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저희 강원노회는 제124회 정기노회에서 원주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수습전권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위원장 : 신현준 목사, 서기 : 안재호 목사) 원주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원만한 교회 수습을 위하여 헌법시행규정 33조 3항에 의거 3개월(2015.4.23.~2015.7.22.)간 원주제일교회 당회의 기능과 당회장권, 당회원권을 정지하였습니다. 또 노회는 대리당회장으로 유영준 목사를 파송하여 교회 행정업무를 대행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 동안 노력을 기우렸으나 문제가 수습되지 못하여 또 다시 3개월(2015.7.23.~2015.10.22.)간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기능을 정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수습은 교인들과 담임목사, 교인들과 교인들 간에 감정적 대립으로 원만한 수습에 이르지 못한 채 6개월이 되었습니다. 2015.10.22.일에 소집된 제125회 정기노회에서 수습전권위원회는 원주제일교회 상황을 보고하면서 노회로 하여금 수습전권위원회를 수습이 끝날 때 까지 존속하도록 해 주실 것을 청원하여 허락을 받고, 수습전권위원회는 수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전권위원회가 사임을 청함으로

허락하고 노회는 새롭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 조좌상 목사, 서기 :안재호 목사)를 파송하여 원주제일교회를 수습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수습전권위원회는 원주제일교회 당회장, 당회원, 당회기능을 3개월(2015.10.22.~2016.1.23.)간 정지하기로 결의하고 교회수습에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원주제일교회 담임 오인근 목사는 2015.12.11.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라고 총회 재판국에 재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질의1) 총회 재판국은 노회가 정상적으로 파송한 '수습전권위원회가 불법하니 즉시 해체하라' 는 결정문을 하였습니다. 노회가 절차상 하자가 없는 1년이 안 된 수습전권위원회를 총회 재판국이 해체하라 할 수 있는지요?

질의2) 2015. 10. 22 제125회 강원노회가 파송한 원주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기능을 3개월 정지한 것이 위법인지요

질의3) 헌법시행규정 33조 14항에서 이의신청내용을 '당회 기능, 당회장권, 당회원권 정지에 대하여' 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습전권위원회의 사항이 아닌 이의서에 첨부된 교회 내부에서 민, 형사상의 다투어야 할 문제까지 모두 결정할 수 있는지요

질의4) 당회의 결의없이 당회장이 고유번호 재발급(분실했다고 허위 신고로) 받아 교회통장과 기관부서 통장을 마음대로 재발급 받아도 되는지요

질의5) 교회 직원도 아닌 6개월이 안된 새신자에게 자신을 위임장을 써주고 자신을 대신해 경찰과 검찰에 고소, 고발케 할 수 있는지요

질의6) 피신청인을 노회장으로 청원하여 '당회기능 제한' 에 관한 것 이외 교회내의 문제까지 이의서에 청원했다고 해서 총회재판국이 재판할 수 있는지요

질의7) 타 교단 교인으로 교회 등록을 하여 이명은 왔으나 교회내 새신자 교육과정과 당회절차와 이명명부에 등록되지 않았는데 본 교회 교인으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요

43. 특별소송절차 / 재심사유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100-725호, 헌법 해석 요청(2016.3.7.)"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본 재심청구서는 총회 재판국 판결 결정에 대한 청구로서, 헌법 정치 제9장(치리회) 제63조(치리회의 권한) 제4항,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수습) 제1항에 의거 노회의 결의

에 의해 구성된 수습전권위원회를 총회 재판국이 해체하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6항에 의거 재심사유가 된다고 판단한다.”

질의내용 / 본 총회 임원회는 총회에 첨부와 같이 제출된 “강원노회장 고승태 장로의 재심 청구서” 서류 일체를 해 관할부서인 총회 재판국으로 이첩하여 재심 청구에 대한 후속절차 확인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은 첨부된 서류가 재심청구의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서류를 회송하였습니다. 이에 총회 임원회는 재심청구 여부에 대하여 귀 헌법위원회의 해석 요청

44. 타 교단 교인 및 직원의 이명 접수 / 교인의 지위

강원노회장 고승태 장로가 제출한 “강노 제125-157호, 헌법질의(2016.3.14)”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및 제3편 권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완함으로써 타당한 법 해석과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에서 타당한 법 해석이라 함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말하며, 법 시행이라 함은 법의 구체적인 실현 적용을 말한다[제2조(용어)]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제3조(적용범위) 1항]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제3조(적용범위) 4항]에 의거 헌법시행규정 제10조(타 교단 교인 및 직원의 이명 접수)를 준행하지 않았으며, 또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과정 5주 이수 과정을 마치지 않아 교인자격 불충분으로 교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자에게 담임목사가 아무리 행정책임자라 할지라도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교인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질의2)에 대하여 “교단 헌법은 교단의 교리(제1편), 정치(제2편), 권징(제3편), 예배와 예식(제4편)의 내용을 규정하는 규범으로서 교단의 치리회인 총회, 노회, 당회는 물론 교단 산하 모든 지교회와 기관 및 직원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신앙생활과 교회 정치

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앙과 교회 정치에 관한 교단 최고의 규범이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 헌법 권징조항에 따라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총회, 노회, 당회는 물론 교단 산하 모든 지교회와 기관 및 직원 그리고 모든 교인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3편(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0조(변호인의 자격 등) 1항에 의거 교회직원도 아니며 교인의 지위도 부여되지 않는 자에게 교회분쟁 해결을 위해 위임이나 대리인으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질의내용 / 타 교단 교인으로서 교회등록은 하였으나 헌법시행규정 제10조를 준행치 않았으며 또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과정 5주 이수과정을 거치지 않아 교인 자격 불충분으로 교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자에게 담임목사가 일방적으로 '교인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위임장을 써주어 교회분쟁 문제 해결을 위해 위임할 수 있는지

질의1) 당회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교회에서 시행하는 새신자 이수과정을 마치지 않아 교인 지위가 안 된 자에게 담임목사가 일방적으로 '교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질의2) 교회 직원도 아니며 교인의 지위도 부여되지 않는 자에게 위임장이나 본인을 대신한 대리인으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45. 교인의 복권 / 집사 및 권사의 휴무 및 복직 / 제직회 / 은퇴장로

평양남노회장 박영득 목사가 제출한 "평양남노 제184-9호, 공문이첩(2016.5.10.)" 건과 "평양남노 제184-2호, 공문이첩(2016.4.22)건과 문성교회 남형우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 해석 요청 건(2016.3.14.)"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송승규씨에 대한 당회의 결의(제명)는 위법이 아니며, 교인의 복권 조항에 적합한지 여부는 헌법 제2편 정치 제3장(교인) 제20조(교인의 복권) 제1항에 의거 처리하면 된다."

질의2)에 대하여 "송승규씨의 안수집사 복권(직) 여부는 헌법 제2편 정치 제8장(집사 및 권사) 제56조(집사 및 권사의 사임과 사직)를 참조하여 해당여부를 살핀 후에 헌법 제2편 정치 제58조(집사, 권사의 휴무 및 복직)에 의거 처리하면 된다."

질의3)에 대하여 "송승규씨는 헌법 제2편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1조(제직회) 제1항에 의거 제직회 회원이 아니다."

질의4)에 대하여 "은퇴장로는 당회의 조직(헌법 정치 제64조)과 개회성수(헌법

정치 제66조)와는 무관하고 언권회원이며(헌법 정치 제45조), 회원(언권회원 포함)은 회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참조).”

질의내용 / 본 교회 교인 송승규씨는 2002년 2월 10일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았으나 사업관계로 충남 서천군에서 거주하면서 본 교회 공 예배에 전혀 참석하지 못하였고(2008년~2015년 12월말까지) 이 기간 동안 헌금(십일조 및 기타) 및 기타 항존직으로서의 의무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부모(현 은퇴장로,은퇴권사)로부터 당회에 수차례 안수집사 제적 처리 요청에도 수년간 기다리다가 2015년 12월 5일 연말 인사당회(2016년 인사건)에서 최종 항존직에서 제외하기로 결의 후 2016년 제직자 명단(위 송승규씨는 삭제)을 유인물을 통해 교인들에게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송승규씨가 2016년 1월 31일자(첨부-항존직 복직신청서) 안수집사로서의 복직을 당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질의1) 송승규씨에 대한 정치 제20조 교인의 복권 조항에 적합한지

질의2) 송승규씨가 안수집사복직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정치 제 58조에 의거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요

질의3) 송승규씨가 정치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에 근거 제직회에 참석이 가능한지요

질의4) 은퇴한 장로가 당회에 들어 올 경우 재적으로 포함하는지 회의 진행중 시무 장로에게 반말이나 거친 말을 할 경우 당회장은 원만한 당회의 진행을 위해 퇴장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46. 재판비용

평양노회장 장창만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84-5호, 재판비용에 대한 질의(2016.5.11.)”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43조(재판비용)에 의거 재판비용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 본 평양노회 기소 184-1호(고발인:이임석 부노회장, 피고발인 : 김현수 목사)관련 고발인인 노회 임원이 노회 임원회의 결의없이 개인적으로 고발한 경우 헌법 시행령 제43조 5항 1호의 재판비용 면제대상의 여부

47. 재판국의 결정 / 재판의 원칙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100-946호, 질의서 이첩(2016.5.10)”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66조(재판국의 결정) ‘총회 재판국은 60일 이내에 재항고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재항고 기각을

하고(헌법 권징 제66조 제1항 제1호), 재항고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노회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명령한다(헌법 권징 제66조 제1항 제2호) 기소 명령에 대하여는 이의(불복) 신청할 수 없으며(헌법 권징 제66조 제2항) 이 기각 결정 또는 기소명령 결정의 그 정본을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 피의자와 관할 기소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헌법 권징 제66조 제3항).' 헌법 제3편 권징 제4조(재판의 원칙) 제4항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이는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소가 되지 않았으면 피고가 아니며 재판을 할 수 없다. 총회재판국은 재항고서와 그 기록을 접수한 후 60일을 넘겨 750일 이상 재판한 것은 잘못이다."

질의2)에 대하여 "원고소자 외에 재항고시 추가로 고소자의 명단을 변경한 것은 불법이다."

질의3)에 대하여 "기소장은 재판국의 허가를 얻어 기소장에 기재한 기소사실을 또는 적용규정의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재항고시 고소자의 명단을 추가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다."

질의4)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68조(증거조사) '증거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신문 중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에 의거 피고가 아니면 증거조사를 할 수 없다. 총회 재판국은 기소권이 없음으로 기소되지 않는 사건을 재판할 수 없으며 총회 재판국이 기소되지 않는 사건을 재판했다면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질의5)에 대하여 "지금까지 김휴섭 장로를 고소자로 추가하여 재항고장에 접수하여 고소를 진행해 오다가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은 불법이다."

질의6)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80조의 증거재판주의에 의하여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바로 엄격한 증명의 원칙을 입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증거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형식적인 증거 능력이 없으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증거법에 의하여 헌법 권징 제82조(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제2항 '국가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에 의해서 국가 기관의 확정 판결서가 있다면 제출할 수 있으나, 그것을 기초로 사실 인정

여부는 재판국이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7)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68조 ‘증거 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위법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능력은 부인해야 함이 마땅하고, 기소가 되어 있지 않으면 피고가 아니며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가 아닌데 증거조사를 했다면(중대한 증거 절차 규정을 위법 했다면) 위법수집증거배재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 권징 제80조 증거재판주의에 의해 하여야 하지만, 헌법시행규정 제69조에 의하여 피고가 된 적이 없으면(증거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했다면) 절차적 하자로 위법이다.”

질의8)에 대하여 “예납금 외에 그 어떤 금액도 예납을 요구할 수 없다.”

질의9)에 대하여 “행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행정쟁송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10)에 대하여 “재판국에서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고소. 고발을 할 수 없다.”

질의11)에 대하여 “재판을 하지 않았다면 패소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 권징재판을 했다면 판결을 해야 하지만 재판을 하지 않았다면 판결이라는 용어는 적법하지 않으며 총회 재항고 재판국이 원심 재판국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판결이라는 용어는 쓸 수 없다.”

질의12)에 대하여 “재심청원은 할 필요가 없으며 총회에서 기소명령을 하였으므로 원심재판국인 광주노회 재판에 회부되어 응해야 하는지는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 질의1) (광주노회 사건번호 2014-2, 광주동광교회 김민식 목사 고소건) 이 사건은 광주 노회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광주노회에서 불기소 된 것이기에 총회 접수 당시 노회 불기소 처분이 합당할 때는 기각했어야 되고 아니면 광주노회에 기소하도록 이첩했어야 할 터인데(총회 헌법 제66조 항고 및 재항고) 총회는 750일이상 김민식 목사를 피고인으로 재판을 진행해 오다가 최근에야 피재항고인으로 결정을 해서 노회로 기소명령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적법한지요

질의2) 광주노회 기소위원도 모이지 않고 하루 전날 김휴섭 장로가 기소위원장을 찾아가 기소위원장 도장도 없는 재항고장을 총회에

접수하여 기소위원장까지 원고소장에 없는 광주노회 기소위원장을 재항고장에 삽입하여 재항고장을 총회 재판국에 접수 했습니다. 이것이 적법한지요

질의3) 원 고소자는 이우행, 조대원, 정동길, 김신옥 이었는데 이우행을 빼고 김휴섭과 이길룡을 고소자로 추가하여 2014년 7월 7일 총회에 재항고 했습니다. 즉 고소자를 변경했습니다. 이것이 적법하며 고소자 변경이 가능한지요

질의4) 헌법시행규정 제68조 중거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결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단 신문 중에도 이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 목사는 지금까지 기소되어 피고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은 지금까지 피고로 취급하여 공문을 보내고 증거조사를 하고 재판을 하였는데 적법한지요, 이것이 가능한 일이며 적법한지요

질의5) 지금까지 김휴섭 장로를 고소자로 추가하여 재항고장에 접수하여 고소를 진행해 오다가 이제는 추가 고소자의 명단에서 빼고 변호사로 선임계를 총회 재판국에 제출했지만 허락되지 않자 본 재판국 내 권징분과에서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준 것은 적법한지요, 총회 재판국에서는 허락하지 않는 것을 권징분과에서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이 합법한 것인가요

질의6) 헌법 82조 당연히 증거있는 능력 2항 국가기관의 확정판결서, 지방검찰의 7건 무혐의 및 각하, 고등법원에 기각 2건, 대법원에서 기각, 이와같이 당연히 증거있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에서 채택하지 않고 재판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지방검찰 7건, 고등법원 2건, 대법원 1건의 증거를 재판국 채택하여 주지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질의7) ‘헌법시행규정 제68조에 증거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은 피고가 된 적이 없는데 증거조사를 받음이 적법한지요

질의8) 총회 재판국에서는 예납금 외에 공탁금을 공탁하라고 강요하면서 공탁하지 않으면 재판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위원회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재판비용 예납외에는 그 어떤 금액도 예납요구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재판국 조사위원장인 박ㅅㅈ장로는 상대방의 주장대로 헌법위원회의 해석도 무시하고 공탁금을 공탁하라고 하고 본 교회 재정에 관련된 서류

(2008년~2013년 회계관련 장부)를 외부에 복사 의뢰하여 유림회계 사무소를 선정 감사케 하고 사실과 거리가 있는 보고서를 제출받아 총회 재판국은 그것에 의하여 재판을 하고 기소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과 이 절차가 합법적인가요

질의9) 박ㅅㅈ장로는 제출하라고 한 서류를 모두 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문(기소)에서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음으로 스스로 자인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와 같이 증거사실이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10) 박ㅅㅈ장로는 유림회계사무소의 사실과 거리가 있는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김민식에게 협박성 문자로 일반법에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재판국원이 피의자의 성격이 있는 자에게 이런(협박성)행위가 국원으로서 적법한가요

질의11) 총회 재판국이 결정문에 기소명령을 하면서 결정문 10페이지 주문과 같이 판결하여 '원심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일금 5,400만원을 김휴섭 장로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결정입니까, 무슨 판결입니까, 김민식 목사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본적이 없는데 판결이라는 용어가 적법합니까

질의12) 김민식 본인이 총회에서 보내온 내용에 의해 광주노회에서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되면 응해야 됩니까? 아니면 총회결정통보에 의한 총회에 재심청원을 해야 됩니까?

48. 공동의회 / 직원선택

서울강동노회장 최민준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58-12호, 공동의회 결의로 당회 서기와 노회 총대가 된 질의서(2016.5.20.)" 건

해석 : Ⅰ.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 선택) 제8항에 의거 이명장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본 노회 총대와 교회의 시무장로가 될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의 답변에 따라 노회 임원회가 해 당회에 행정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다"

Ⅱ. 질의1), 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 선택) 제8항에 의거 당회의 장로선택 청원과 노회의 허락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밟았으면 행정소송으로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면 노회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질의내용 / Ⅰ. 노회에 소속된 당회가 타노회의 장로 공동의회의 결의만으로만(2008년 7월 27일) 본 노회 소속된 교회에서의 당회서기와 노회 총대까지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016년 3월에 소속 당회원들이 〈이명장로 절차관련 조문〉 제3편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직원선택 8항에 의거하여 임직절차를 요구하였으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이명장로 절차관련조문'을 무시한 채 본 노회 소속된 장로로서 지교회의 당회서기와 노회총대라고 구두로 천명하였다는 것을 문서상으로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질의1) 〈이명장로 절차관련 조문〉 제3편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직원선택 8항의 절차를 무시하고 공동의회의 결의로 타노회의 장로가 본 노회 총대와 소속된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는가요

질의2) 첫째항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답변에 따라 노회 임원회가 해 당회에 행정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는가요

Ⅱ. 본 노회에 소속된 당회가 타노회의 장로를 공동의회의 결의만으로만(2008년 7월 27일) 본 노회 소속된 교회에서의 당회서기와 노회총대까지 수행을 하고 있던 중에 최근 2016년 3월에 소속 당회원들이 연명으로 〈이명장로 절차관련 조문〉 제3편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직원선택 8항에 의거하여 임직절차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결과로 타노회의 장로가 당회의 결의로만 본 노회 소속된 장로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건으로 '타노회의 장로가 당회의 결의된 장로가 본 노회 소속 장로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소송' 이 접수된바가 있습니다.

질의1) 〈행정소송 기간 조문〉 "제3편 제2절 행정소송 157조 소의제기 및 제기기간" 에 따라 본 '확인소송'에 관한 제기기간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끝난 것인지

질의2) 1항의 결과에 따라 만약 "직원선택"도 하지 아니한 직원(장로)이 당회의 비호 아래 '직원(장로)' 행세를 하였다면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리고 노회 행정처분으로만 '직원(장로)' 행세를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인지요?

49. 당회의 조직 / 교육목사(파트타임)

서울북노회 승리교회 문원순 목사가 제출한 "승리 제16-1호, 헌법질의(2016.5.22)"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64조(당회의 조직)에 의거 (파트타임) 교육목사라도 부목사 신분이라면 당회원이다"

질의내용 /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64조 당회의 조직 1항에서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우리 교회에는 부목사로 있으면서 교회에서 상근하지는 않으나 파트타임(주로 교육목사) 사역하는 부목사에 대해 당회에서 결의권이 있는지 없는지

50. 이명증서 / 장로의 자격 / 무흠의 기산과 적용 / 원로장로

평북노회장 함용호 장로가 제출한 "평북규칙 제200-002호, 헌법질의 및 회신 요청(2016.4.29.)"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4장(부칙) 제5조에 의거 위헌은 아니다."
질의2)에 대하여 "'예장총 제98-1253호(2014.9.2) 헌법위원회해석[헌법시행규정 제12조(이명과 직원) 3항에 의거 이명증서 요청 후 2개월이 지나면 이명된 것으로 간주한다'에 의거 헌법 정치 제6장(장로) 제40조(장로의 자격)에 따라서 처리했으면 위헌이 아니다. 또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란 세례(입교:헌법 제2편 정치 제3장 제14조 참조)를 받고 흠이 없이 7년을 지난 사람이라는 뜻으로,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목사) 제26조 제2항 '이 법에서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치,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헌법시행규정 제27조(무흠의 기산과 적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6장(장로) 제44조(원로장로) 제1항 '원로장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이다'에 의거 이전 공동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은퇴한 장로 및 은퇴 기간이 경과한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는 지교회가 원하고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하면 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위임목사 청빙 결의 방법에 대하여-본 교회 정관 제37조(목사의 청빙) 제2항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총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청빙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따른다. 라고 규

정하여 총회 헌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 교회에서는 위임목사 선임안건을 공동의회에서 교회 정관에 따라 총회 헌법 제37조(목사의 청빙) 2항과 총회의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2조 4항(인사문제는 무기명비밀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를 적용해서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총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의회에서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본 교회에서는 당회의 결의 후 총회 헌법 제 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3항 2호(매 3년마다 담임목사의 연임청원시 만장일치로 연임을 찬성하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으나 1인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투표를 해야 한다)를 적용하여 회원 중 한사람이 만장일치 추대하자는 발의를 하고 무기명 비밀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만장일치 추대하는 형식으로 의결한 것은 헌법 제28조 2항의 의무조항(임의조항 아님)과 "총회 회의규칙" 제12조 4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위임목사 결의방법을 오인하고 잘못 의결한 것으로 의견 대립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회 헌법위원회의 위헌 여부

질의2) 항존직(장로)선출 안건에 대하여-본 교회 정관 제45조(항존직 자격과 선택) 제2항 '장로의 자격과 선택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6장 장로, 제40조와 제41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교회에서는 교회 분쟁으로 전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한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지난 2014. 4.24일자로 평북노회에서 설립(신규)한 교회로 설립 2년차에 장로 등 항존직 선출을 한 바 있는데 총회 헌법 제6장(장로) 제40조(장로의 자격)에서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교회 설립 2년차 밖에 되지 않은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한 것은 서리 집사도 교회 등록(입교) 1년이 경과한 후에 신앙생활을 지켜보고 서리 집사로 임명하는 것이 상례인데 항존직 장로야 말로 신입교회 등록일기준, 최소한 입교(등록)후 무흠 7년의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선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교회 신규설립 2년차에 선출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사안이 아니냐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세례교인(입교인) 7년에 대한 법률적 명쾌한 유권해석으로 위헌 여부

질의3) 원로장로 추대 안건에 대한 질의-본 교회 정관 제46조(원로장로) 제1항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할 수 있다' 본 교회에서는 이전 공동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기히 은퇴한 장로 및 은퇴기간(만 70세가 되는 해 12월 말일)이 경과한 장로들을 대상으로 설립교회에서는 시무자격이 있는 동안 시무한 경력이 전혀 없거나 시무경력이 2년도 채 되지 않은 장로들을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원로장로로 추대한 사안과 관련하여 본 교회 정관 제46조 1항과 총회 헌법 제6장(장로) 제44조(원로장로) 1항 '원로장로는 한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이다' 의 규정에 비춰볼 때 본 교회는 2014.4.22일자로 평북노회에서 신규 설립한 교회로 설립 2년차 밖에 되지 않았고, 대상 장로들을 이전 교회에서 기히 은퇴한 장로요 신규 설립한 교회에서는 2년도 안되었을 뿐 아니라 은퇴 시기가 지난 경우로(은퇴하는 경우란 진행형에 미 해당)이후에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이렇게 자격이 되지 않는 장로들을 원로장로로 추대한 것은 교회 정관 및 헌법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데 총회(노회)의 입장과 법률적 위헌 여부

51. 책벌의 종류와 내용 / 가중처벌

서울서노회장 장재도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94-06호, 헌법질의 해석 요청의 건(2016.5.17.)"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총칙)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제1항 제8호(가중처벌)에 의거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질의2)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질의내용 / 희성교회 00 목사는 총회 재판국으로 부터 직권남용 등의 죄과로 2015년 8월 25일에 정직 2년 선고받고 시벌 중에 있는 분이십니다. 희성교회 당회는 다음과 같이 사항을 들어 '시벌을 불이행'을 주장하며 가중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당회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이행 또는 거부하고 있는 행위
   ① 자동차 운행 중단(사용하는 자동차 열쇠 반환) : 즉시, 사무실 보관(안함)
   ② 목양실 열쇠 회수 및 사물 이동 조치 : 즉시, 이동장소 통보요청(안

함/보안장치 교체)

③ 당회록 회수 : 즉시, 사무실 보관(안함/은닉 or 무응답)

④ 제직회의록 회수 : 즉시, 사무실 보관(안함 / 은닉 or 무응답)

⑤ 사택퇴거 : 당회 결정 6개월 이내(2016.2.25.까지) 처리(안함/불응)

⑥ 교회소유의 교역자 컴퓨터,노트북,성경프로그램, 태블릿PC : 즉시, 사무실보관(안함)

2. 총회 재판국에 출석하여 '정직' 선고를 받은 자는 즉시 시벌이 시작되지만 이를 무시하고 다음날 새벽기도회를 인도하였고, 예배 시간마다 강대상 앞자리에 앉아 침묵시위를 하는 것과 상회, 당회로부터 핍박받는 모양새를 연출하여 성도들에게 동정을 얻고자 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행위

3. 00 목사의 지지자들이 예배 중간에 집단 이탈하거나 교회 내 별도 공간에서 따로 예배를 드린바 있고, 교회 건물 안팎에서 대리당회장과 장로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피켓 시위와 발언을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수개월부터 현재까지 시위를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이런 행위를 하는 장소에 나타나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는 등 동조한 행위

이런 상황을 희성교회 당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 노회에 '가중시벌의뢰서(2016.02.11)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세가지 내용에 관련하여 헌법시행규정 제87조 3항(가중처벌) '시벌을 불이행할시' 에 해당하는지 총회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서는 설교권과 치리권(인사권)만을 제한하고 있는데 "정직 24개월" 의 시벌을 받고 있는 목사가 설교권과 치리권(행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위의 열거한 사항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시벌을 불이행하여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따른 '정직' 24개월 시벌중에 있는 자가 위의 세가지 행위를 하였을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87조 3항(가중처벌) '시벌을 불이행할시' 에 대하여

질의1) "정직 24개월" 의 시벌을 받고 있는 목사가 설교권과 치리권(행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위의 열거한 사항이 가중처벌에 대상이 되는지

질의2) 시벌을 불이행하여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의 예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시기를 요청

52. 교회 및 노회 수습 / 임시당회장 파송 법적 근거와 절차

평양노회 두레교회 이영래 장로 외 15인이 제출한 “헌법질의서(2016.6.21)” 건과 “헌법질의에 대한 평양노회 임원회 현 상황 추가 현안(보고), 2016.6.27.)”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당회(교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임시당회장 파송 요청을 의도적으로 노회 임원회가 지연시켜 파송을 못하고 있다면 직무유기이다.”

질의2)에 대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법적 근거와 절차는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제2항과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5항 ‘치리회(노회)의 사고여부는 치리회장(노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 치리회장(노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에 의거 사고노회는 아니다.”

질의4)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1항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 2항 ‘노회의 의뢰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판단으로 개교회와 노회에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에 의거 상당한 이유가 있어 파송할 수 있다”

질의내용 /1. 헌법 절차에 의해 당회 결의로 요청한 임시당회장 파송 요청을 의도적으로 노회 임원회가 지연시켜 파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1) 두레교회 대표자(임시당회장, 담임목사)를 노회에서 계속 거부 시 개교회에서 취할 수 있는 대안은?

질의2)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법적 근거와 절차가 있는지 여부

2. 노회장이 회기 기간에 두 번이나 사임을 표명하고 현재 부노회장이 대행하고 있으나 노회장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수차례 두레교회 임사당회장 파송을 위한 임원회도 정상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노회 사무실에서 부노회장이 이단에게 폭행을 당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질의3) 사고 노회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총회에서 노회에 수습전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파송할 수 있는지 여부.

53. 당회의 조직 및 직무 / 교인의 자격

대전노회장 성호경 목사가 제출한 “예장 대노 제128-32호, 동산교회가 제출한 당회 정족수 문제에 대한 결의 여부 건(2016.6.8.),(당회원의 사임서 제출후 출석하지 않아서 당회를 열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당회는 치리회로서 교회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처리한다[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그러나 분규로 인하여(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정상적인 회집이 되지 못해 교회의 중요한 현안들을 결정, 처리되지 못할 경우, ‘당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전년도를 기준으로 예산, 결산, 서리집사, 각 부서장을 임명하여 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제96회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 63번), 당회원 5명 중 3명이 사임서를 내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면, 헌법 정치 제3장(교인) 제19조(교인의 자격정지), 제10장(당회) 제64조(당회의 조직) 제1항에 의거 처리하면 된다.”

질의내용 / 동산교회는 위임목사 1명, 장로 5명으로 구성된 당회의 당회원인 장로 3명이 사임서를 내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 당회가 성수(과반수 4명)가 안돼 당회를 열지 못할 경우 당회 결의로 처리해야 하는 교회 재정, 행정, 인사에 대한 결의는 어찌해야 하는지

다음의 구체적인 현안들을 문의 드립니다.

1. 교회 재정의 예산, 항, 목 변경
2. 교회 부채로 인한 자산의 매각
3. 장로 사임 결의
4. 교회 시설물의 보수, 비품 구입 결의
5. 6개월~1년 불출석 교인의 회원 자격 정지 또는 실종교인 처리에 대한 결의방법
6. 회계처리규정 및 감사규정의 제정
7. 장로로서 주일예배 대표 기도자 공석 등 예배위원 공석에 대한 처리방법
8. 장로로서 각 제직위원회 직 업무 공백에 대한 처리
9. 당회 성수부족으로 2017년도 예산, 재정, 인사에 대한 당회 결의 불가로 인한 처리방법
10. 기타 당회가 결의할 사항들에 대한 처리방법

54.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광주노회장 한상영 목사가 제출한 “광노제 제30-121호, 질의서(2016.7.5.)”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1,3,4,6항에 의거 총회 재판국을 비롯하여 총회 산하 모든 부, 위원회와 기관단체와 교회는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에 따라야 한다(제98회기 101번 헌법위원회 해석사례 참조).”

질의내용 / 본 노회 소속 광주동광교회(김민식 목사) 재항고건(사건번호 제98-50호), 재차재항고건(사건번호 제100-39호)에 관한 것이며 첨부1(예장총재 제100-383호, 결정통보)과 같이 본 노회로 총회 재판국의 결정통보 및 시행명령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노회는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바 첨부2(예장총 제100-1039호, 헌법해석통보)와 같이 해석통보를 받았습니다. 본 노회가 총회 재판국과 총회 헌법위원회의 결의 내용중 어느 부서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지

55. 불기소 처분

서울서노회장 장재도 목사가 제출한 “서노제 제94-18호, 헌법해석 요청(2016.7.12.)”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67조(불기소처분) 6항에 의거 직접 재판을 할 수 있다”

질의2)에 대하여 “기소 없이도 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의내용 /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67조(불기소처분)

6. 헌법 권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소명령을 받은 노회기소위원회 또는 당회 기소위원회가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의 기소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은 1차에 한하여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에 재차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재차 기소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노회 기소위원회 또는 당회 기소위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재판하여 처리한다 . 위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질의1) 당회 기소위원회에서 기소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노회가 직접 재판하여 처리할 경우에 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없이 노회 재판국이 직접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질의2) 위 규정이 기소 없이도 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56. 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에서 제출한 “새봉천 제10호, 헌법해석 질의(2016.7.8.)”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5장(상소) 제2절(항소) 제95조(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2항에 의거 불법이다.”

질의내용 / A 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3편 권징 절차에 따라 당회(제1심 재판국)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선고까지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억울하다고 하여 노회 재판국(제2심)에 항소를 할 시에는 헌법 제3편 권징 제5장 상소, 제95조 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1,2항에 의거(제기기간 20일)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나 제95조 2항에 “항소의 제기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항소의 제기기간이 지났어도 (도과) 노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57. 행정쟁송 / 행정소송 / 재판관할 / 특별심판위원회 구성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100-630호, 헌법해석 요청(2016.2.17)” 건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8장(행정쟁송) 제2절(행정소송) 제153조(재판관할) 3항, 4항, 제154조(원고적격) 2항, 제3절(결의 취소 등의 소송) 제164조 1항, 헌법시행규정 제77조(총회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에 의거 김제노회 조남두 목사는 원고적격자(총회 총대)가 되지만 전주노회 한홍석 목사는 원고부적격자(총회 비총대)이므로 특별심판청원을 할 수 없다”

질의내용 / 김제노회 조남두 목사 외 1인(전주노회 한홍석 목사)이 총회 임원회 제100-3차 회의결의 및 처리에 대하여 “총회 특별심판 청원”을 첨부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1) 김제노회 조남두 목사 외 1인(전주노회 한홍석 목사)이 제출한 “특별심판 청원” 의 취지와 원인(사유)이 총회 헌법 제3편[권징] 제153조 5항과 헌법시행규정 제77조에 해당되는 특별심판 청원으로 성립되는지 여부

질의2) 총회 총대가 아니어도 총회 헌법 제3편[권징] 제153조 5항과 헌법시행규정 제77조에 해당되는 “특별심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58. 문서처리 / 도장사용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100-648호, 헌법해석 추가 요청(2016.2.19.)”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총회행정사무 처리 규정 제2장(문서처리) 제13조(도장사용) ‘각종 문서(발송문서)에는 발송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시행한다. 단 경미한 문서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송기관장 명의 아래쪽에 직인생략을 표시해야 한다.’에 의거 개인의 특별심판 청원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원회의 결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48조(고소권자), 제49조(고소기간), 제53조(고소 및 고발의 형식), 제54조 3[고소(고발) 및 기소의뢰의 제한]에 의거 피고소 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예장총 제 100-630호 / 헌법해석 요청”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헌법질의로 개인의 특별심판 청원시 소속 노회 경유 확인란에 소속 노회 직인 사용이 해당 노회 임원회 결의 없이 사용 가능한지

질의2) 김제노회 조남두 목사 외 1인이 첨부와 같이 총회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회 헌법 권징 제 3조에 의거하여 총회 서기가 총회 임원회 결의와 관련하여 사전에 청원인과 공모하였다고 추측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59. 헌법시행규정의 적용범위

인천노회장 임형빈 목사가 제출한 “인노 제66-17호, 본 교단 헌법 제3편 권징과 헌법시행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질의(2016.5.12)”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사항에 관한 건은 재판국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2)에 대하여 “이미 접수되었기에 당회의 답변서를 받아 진행하면 된다”

질의3)에 대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원고측이 제시한 ‘행정행위를 안날’ 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행정행위가 있던날, 1차 투표 2015년 7월 19일, 2차 투표 2015년 7월 26일, 원고들이 행정행위를 알았다고 하는 날은, 2016년 3월 20일. 그러나 원고들은 2차 투표후 부정과다 투표용지 22표를 적발, 진상조사신청과 투표보전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재검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도 5차에 걸쳐 보냈습니다. 1차 2015년 12월 22일, 2차 2016년 1월 7일, 3차 2016년 1월 19일, 4차 2016년 1월 22일 장로투표 재검요구. 그러나 수천 표에서

22표는 당락에 아무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2015년 12월 27일, 당선인 2명을 임직식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 권징 157조에 의하면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은 안날로부터 60일, 있은 날로부터 120일이라고 했는데 원고들이 안 날이란? 2015년 7월 26일부터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6년 3월 20일로 해야 하는지

질의2) 행정소송의 절차 문제입니다. 원고는 노회 재판국으로 바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시행규정 권징 76조 1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의 원고는 권징 제5-1호, 서식에 의한 소장을 행정처분을 한 치리회에 접수를 시키고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권징 제7-4호 서식에 의한 답변서를 첨부하여 차상급 치리회에 송부하여야 하고 차싱급 치리회는 재판국에 10일 이내로 이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권징 76조 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의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소각하 판결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피고측은 치리회를 거치지 않고 차상급 치리회에 바로 소를 제기한 것은 절차가 잘못되었음으로 원고의 소제기는 당연히 각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피고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제7조 2항에 의거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 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한다" 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76호 1항과 비교했을 때 행정소송의 절차가 제7조 2항이 맞는지 아니면 제78조 1항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만일 노회 재판국이 소 각하를 했을 경우, 원고가 절차를 밟아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3) 행정소송의 원고가 변호인 선정을 요구하는데 일반소송절차 제29조 변론 2항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소송절차 제29조 변론 2항의 피고처럼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일반소송의 피고처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60. 목사고시 응시 자격 / 청목

여수노회장 김봉구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42-3호, 윤경원 전도사 목사고시 응시, 청목에 관한 질의(2016.5.31)"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본 교단 여수노회 소속인 여수 선민교회의 담임교역자로 청빙

을 받아 사역하고 있는 윤경원 전도사는 비록 독립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지만,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청목으로 받아줄 수 없으며[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교파의 목사청빙), 청목 불허],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4년 졸업, 미주 해외한인장로회(L.A 소재) 직영 신학대학원(M.Div) 3년 과정을 졸업하였기 때문에 본 교단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목사) 제26조(목사의 자격),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교파의 목사 청빙) 제5항 제5호에 의거 당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질의내용 / 1. 경위설명-총회 고시위원회 임원회에서 저의 고시 응시를 허락해주지 않은 이유는 독립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독립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는데 본교단에 들어와 다시 본교단 목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목사고시를 보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청목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여부

2. 이력 및 경위설명-저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4년과정을 졸업하고 미주해외한인장로회(L.A 소재) 직영신학대학원(M.Div) 3년 과정을 졸업한 후 고려신학대학원 성경강해학 석사(Th.M) 2년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헌법 2장 정치 23조 5항 5) 해외한인장로회 직영신학대학원 중 미국 소재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과정(M.Div)을 이수한 전도사의 경우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본 총회 직영 지방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에 시무할 수 있고,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므로 당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미국 사역 후 귀국하여 국내에서 독립교단에서 사역 후 독립교단 목사 안수를 받고 진주삼일교회(고신측) 협동목사로 영어예배 및 교구목회자로 4년간 시무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수노회(통합) 여수선민교회 당회의 청빙요청으로 담임 전도사로 청빙 받고(교단이 달라 통합측 목사로 인정받지 못하여) 6개월간 사역하다 금년 (2016년)의 목사고시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응시했는데 독립교단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관계로 반려를 받았습니다.

3. 저는 지금 여수선민교회 담임전도사로 부임하여 목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립교단 목사로서의 모든 자격을 내려놓고 통합 교단이 정하는 합당한 수순준과 과정을 밟아 본교단의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제가 본 교단 목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헌법에 따라 어떠한

과정을 밟는 것이 옳은 것인지

61. 교회 및 노회 수습

평양노회 두레교회 이영래 장로 외 15인이 제출한 “헌법질의서(2016.6.21)” 건과 “헌법질의에 대한 평양노회 임원회 현 상황 추가 현안(보고), 2016.6.27.)” 건중 질의3) 건

해석 : 질의3)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5항 ‘치리회(노회)의 사고여부는 치리회장(노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 치리회장(노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에 의거 사고노회는 아니다.”

질의내용 / 2. 노회장이 회기 기간에 두 번이나 사임을 표명하고 현재 부노회장이 대행하고 있으나 노회장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수차례 두레교회 임사당회장 파송을 위한 임원회도 정상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노회 사무실에서 부노회장이 이단에게 폭행을 당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질의3) 사고 노회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62. 당회장 / 대리당회장

부산남노회장 배춘일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72-100호, 헌법질의(2016.7.11.)”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5항에 의거 대리당회장은 은퇴목사, 무임목사도 가능하나, 임시당회장은 될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2항에 의거 전도목사도 노회 소속의 지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다(총회헌법위원회 해석사례, 98회기 29번 참조).”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제67조 임시 및 대리당회장 요청 건에 대하여 무임목사는 임시 및 대리당회장이 가능한지

질의2) 개척교회를 제외한 기관, 또는 기타사역지에서 시무하는 당회장권이 없는 전도목사는 임시당회장을 할 수 있는지, 헌법 제67조 2항에서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또는 연명)로 요청한 해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에서 당회가 당회장권도 없고 당회 운영경험이 없는 전도목사를 고의로 요청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3. 교회의 직원 / 직원의 전임과 사임 / 항존직

경동노회장 임종수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44-99호, 헌법해석 질의(2016.8.5.)”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2조(항존직), 헌법시행규정 제15조(교회의 직원과 유급종사자, 은퇴자) 1항, 헌법시행규정 제24조(직원의 전임과 사임) 2항에 의거 적법하지 않다.”

질의2)에 대하여 “증거자료 채택여부는 노회와 총회 재판국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3장(교인) 제15조(교인의 의무), 제18조(교인의 출타 신고), 제19조(교인의 자격정지)에 의거 적법하지 않다.”

질의4)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4조(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1항에 의거 적법하지 않다.

질의내용 / 질의1) 시무장로가 당회장에게 우호적이지 못한자, 시무장로 본인의 ‘조기사임 의사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당회장(위임목사)의 일방적 권한으로 날짜, 시간, 장소 등을 정하여 주보에 공지하고, 일방적 통보와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강제로 은퇴식을 하여 시무장로를 조기 은퇴시킨 것이 적법한 지

질의2) 장로 피택(공동의회) 전에 당회장으로부터 “조기 사임한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알리면 장로피택이 되기 쉽다” 는 말을 듣고, 당회장이 미리 워드작업을 해가지고 온 사임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후에 시무장로가 되어 당회장의 불순한 의도를 알고는 당회장 앞에서 “조기사임을 안한다” 는 항의표시로 시무사임서를 찢어 스레기통에 넣었는데, 당회장은 이 찢어진 시무사임서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노회와 총회 재판국에 제출한 것이 “증거자료” 로서 적법한지

질의3) 안수집사(당시 피택장로였음, 위 2번의 피택장로와는 다른 사람임)가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주도에 가 있는 동안, 매주일 본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지만 현지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2~3개월에 한번씩 본 교회(영천중앙교회)에 출석하여 최소한의 교인의 의무(주일성수,십일조,감사헌금,기타 헌금)를 하며 신앙생활을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회장에게 제주도에서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본 교회의 출석하는 때면 담임목사님께 인사도 드리는 등 성도들과도 꾸준히 교제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당회장에게 우호적이지 않자 “당회장 직권으로 실종교인

처리한 것” 은 적법한 지

질의4) 위 3의 안수집사가 개인적인 일을 마치고 본 교회에 돌아와 성실히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뒤늦게 당회장이 당회에서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왔으므로 실종교인 처리하기로 하다” 라고 일방적 결의 및 공지한 것이 적법한지

64. 노회재판 절차 / 일반소송 절차

대전노회장 성호경 목사가 제출한 “예장 대노 제128-49호, 노회재판 절차에 대한 질의(2016.7.19.)” 건과 동산교회 윤호철 목사가 제출한 “동산 제16-47호, 노회재판 절차에 대한 총회 헌법위원회 답변 재요청(2016.7.15.)” 건

해석 : 질의1),9)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29조(변론) 1항 ‘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재판국에서 변론한다.’ 2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0조(변호인의 자격 등) 1항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본 교단의 직원이라함은 헌법 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1조(교회의 직원의 구분), 제22조(항존직), 제23조(임시직)에 명시되어 있으며, 직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교회수첩, 직원증명(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이나, 채택여부는 재판국이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3)에 대하여 “활동할 수 있다”

질의4)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3절(노회 재판국) 제21조(전문위원) 1항 ‘노회재판국은 필요한 경우에 법학사의 학위를 가진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2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항 ‘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3항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질의5)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9조(해명권, 질문요청권) 3항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에 재판국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항 ‘재판국장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규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질의6)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40조(소송지휘권)에 의거 재판국장의 소송

지휘에 따라야 하며, 기소위원장 외에 기소위원은 재판을 참관할 수 있다.”

질의7)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43조(피고인의 소환) 1항 ‘재판국장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에는 10일 전에 통지하여 한다.’ 2항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죄과명, 출석일시, 장소를 기재하고 재판국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질의8)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3절(재판) 제68조(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1항 ‘재판국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항 ‘재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3항 ‘재판기일은 기소위원장,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항 ‘재판국장은 직권 또는 기소위원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질의10)에 대하여 “재판국원들의 명단 공개는 재판국이 결정할 사항이며,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13조(의결방법) 1항 ‘전원합의부 판결합의는 재적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질의11)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56조(노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1항 ‘노회 기소위원회는 노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4인(목사 2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한다.’ 3항 ‘노회 기소위원회의 임기는 노회임원을 선출한 정기회를 기준하여 2년으로 한다.’

질의12)에 대하여 “기소위원회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신문한 후 신문조서에 본인의 자필서명이나 날인을 하는 것은 조서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서명, 날인, 간인이 있어야 한다.”

질의13)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2절(기소) 제59조(기소의 제기) ‘기소는 기소위원회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

질의14)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50조(고소의 취하) 2항에 의거 ‘고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

질의내용 / 질의1) 피고인은 재판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는 변호인을 세우려 했으나, 재판국장이 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변호인 없이 재판이 가능한지요, 이때 변호인 없이 진행된 재

판은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질의2) 노회 재판에서 변호인의 자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재판 시작 전 피고인이 13명의 변호인 선임서와 13명이 속한 교회의 교인 수첩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국장은 “13명의 변호인들을 사전에 심사하지 않았고,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변호인으로 세울 수 없다” 며 재판정에서 퇴장을 명했습니다. 이 때 13명이 변호하려던 피고는 같은 교회 위임목사였습니다. 재판국 서기는 재판 며칠 전 전화통화를 통해 “변호인이 그 교회 직원임을 알 수 있는 교회주보나 교회 요람을 재판 당일 제출해도 된다” 고 답했습니다. 제출된 교회수첩은 경찰서에서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재판국장이 위 상황에서 변호인의 자격을 확인도 하지 않고 퇴장시킨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총회 헌법에 명시된 변호인의 자격 ‘직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질의3) 변호인이 1심 기소제기 전 선임돼 활동을 했으면, 1심 재판국에 별도의 변호인 선임서 제출 없이도 변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요

질의4) 재판정에서 재판국원이 아닌 노회가 선임한 ‘전문위원’ 또는 ‘자문위원’ 이 재판국원들과 동석해 재판에 대해 발언을 해도 되는지요, 전문위원은 법학사 학위없이 활동할 수 있는지요

질의5) 피고인은 재판정에서 질문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 로만 답해야 하는지요

질의6) 피고인은 재판중에 재판국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만 발언을 할 수 있는지요, 다른 재판국원들과 기소위원장 기소위 서기는 발언권 없이 발언을 할 수 있는지요, 재판국장이 방청을 허락하지 않은 비공개 재판에서 기소위원장 외에 기소위원이 재판을 참관할 수 있는지요

질의7) 재판국 서기가 피고인과 기소위원장에게 ‘발신자 : 대전노회 재판국’ 이라 표기하여 등기로 재판일정을 적어 보낸 문서가 재판국장의 직인이 없으면 재판국의 공식문서가 될 수 없는 것인지요

질의8) 피고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국 서기로부터 등기우편으로 받은 문서의 재판일정대로 전화로 확인하며 준비를 했으나, 재판국장이 재판 당일에 ‘재판국 서기가 보낸 문서는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니 공문서가 아니므로 재판국장이 지금 진행에 따르라’ 며 예상

치 못한 순서대로 재판을 진행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재판국장은 재판일정과 내용을 피고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재판당일에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질의9) 피고가 재판국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재판국이 변호인 선임계와 서류를 검토한후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재판국이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라면 그 선정기한과 기준은 무엇인지요

질의10) 피고가 재판정에 배석한 재판국원들의 명단을 요청했을 때 "알려줄 수 없다" 고 하는데 이는 적법한 것인가요, 재판국원이 전원 출석하지 못해도 재판이 가능한지, 재판 가능한 정족수가 있는지요

질의11) 노회 내 같은 교회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으로 각각 고소가 접수되고 고소내용이 중복되는 사건을 1기소위와 2기소위로 나눠 진행하는 것이 위법인지요, 노회 내 기소위원회는 정해진 임기동안 1개만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요

질의12) 기소위원회가 작성한 피고소인 진술 조서를 피고소인이 확인하고 날인하는 절차없이 기소 제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질의13) 기소위원회 때 피고소인 진술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하는 인권침해를 받았다면, 기소제기가 적법한 것인지요

질의14) 노회재판중 기소절차의 하자 등으로 인해 기소가 취소될 경우, 고소인은 동일한 사건을 노회 재판에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요

65. 전도사 시취시 임지

제주노회장 김관진 목사가 제출한 "제노 제76호, 전도사 시취 시 임지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의 안(2016.7.15)" 건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3조(임시직), 제7장(전도사) 제48조(전도사의 직무)에 의거 전도사는 헌법 정치 제7장(전도사) 제49조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도 임지가 없으면 전도사 인허 또는 시취를 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 헌법 제2편 정치(제49조 전도사의 자격), 전도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25세 이상된 자로서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졸업자
2. 무흠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3. 노회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 다만 시무장로는 전도사직을 겸할 수 없다.

질의1) 위의 3가지의 자격을 만족한 자가 임지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

이 전도사 인허 또는 시취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질의2) 위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한 자가 임지가 없는 경우 전도사가 인허 또는 시취를 받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임지가 생겼을 경우 해당 교회의 당회 또는 당회장의 허락만으로 시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66. 목사의 자격과 안수

순천노회장 윤태현 목사가 제출한 “순노 제98-78호, 서로사랑하는교회의 총회(노회) 가입 관련 헌법질의(2016.8.5)”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질의서에 명시된 이런 특별한 경우(총회 특별사면과 관련된 사항)라면,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6조(목사의 자격) 1항 2호,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4(목사의 자격과 안수) 1항, 2항에 의거 서로사랑하는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로 시무한 3년 6개월의 교역 경험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2),3)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 선택) 8항에 의거 처리하면 된다.”

질의내용 / 질의1) 서로사랑하는교회 최승남 (부)목사는 2013년 2월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2013년 1월부터 서로사랑하는교회에서 전임전도사로 시무중에 2015년 4월 서로사랑하는교회가 소속한 국제독립교회연합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총회 특별사면으로 서로사랑하는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순천노회에 가입후 최승남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서 목사안수를 다시 받고자 할때에 서로사랑하는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로 시무한 3년 6개월의 교역자 경험이 인정되는지

질의2) 2016.7.1 현재 서로사랑하는교회는 세례교인 640명에 목사 3인과 장로 6인으로 구성된 당회를 갖고 있습니다. 장로 6인 중 3인은 순천노회 동부교회에서 임직을 받고 섬기다 2009.7.5부터 서로사랑하는교회(국제독립교회연합회 소속)로 옮겨 섬기고 있는 중 순천동부교회에서 2010.8.8. 실종교인으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이번 특별사면 후 위 세 장로에 대한 취임을, 현재 순천노회 소속으로 정식적인 당회가 없으므로, 서로사랑하는교회가 교단 가입 후 공동의회 결의로 할 수 있는지요

3) 다른 장로 3인은 서로사랑하는교회에서 선택하고 임직하여 시무 중인 장로들입니다. 이 세 장로들의 취임 절차는 서로사랑하는교회가 대한예

수교장로회(통합) 순천노회에 가입 후 순천노회 정치부 또는 고시부의 면접으로 취임이 가능한지요?

67. 전도사 고시 및 인허

제주노회장 김관진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87호, 전도사 고시 및 인허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2016.7.28.)”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6조(목사의 자격) 1항을 준용하여 전도사 고시에 응할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시무지가 없기 때문에 당회장이 추천할 수 없다.”

질의3)에 대하여 “시무지가 없기 때문에 전도사 인허를 받을 수 없다.”

질의4)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8조(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 5항에 의거 처리하면 된다.”

질의5)에 대하여 “시무지가 있다면 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3조(임시직)에 의거 처리하면 된다.”

질의내용 / 질의1) 전도사는 평신도와는 달리 교역자인데 남편이나 부인이 교회출석을 하지 않음에도 전도사 고시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시무지가 없는데 당회장이 추천하여 고시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시무지가 없는데 전도사 인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인허를 받고 시무하다가 사임한 후 무임으로 몇 년간 있으면 자동 해임이 되는지 여부

질의5) 자동 해임된 후 복직할 수 있는 여부

68. 총회 총대 자격

평양노회 두레교회 이영래 장로 외 15인이 제출한 “총회 총대 자격에 대한 문의(2016.8.8)”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 규칙 제8장(총회 총대, 지시 정리위원 및 이사) 제25조(총회 총대) ‘노회장과 서기는 당연직 총회 총대로 하며 ...’ 에 의거 장창만 목사가 노회장 사임서를 제출하고 노회 임원회에서 사표 수리가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당연직 총회 총대 권한(자격)은 상실하였다.”

질의내용 / 평양노회 제184회기 노회장으로 선임된 장창만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 규칙 제7조(임원의 임무) 1항 노회장은 본 노회를 대표하고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노회장의 직무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단 목사를 옹호하고 노회원 간에 불신을 키워 상회 기관

에서 사고 노회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이르는 초유의 사퇴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평양노회 규칙 제8장 총회 총대, 지시 정리위원 및 이사 제25조에 “노회장과 서기는 당연직 총회 총대”(증제1호)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인의 2번의 사임 의사로 노회 임원회에서 사표가 결의되어 박능팔 부노회장이 직무 대행한다고 공표된바 장창만 목사는 총회 총대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1) 장창만 목사 노회장 사임 총회 총대 권한 상실-장창만 목사는 본인이 사임서를 작성하여 사임서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노회원에게 알려 사임한 것처럼 행동하였지만 노회 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고 하다가 다시 사임서를 제출하여 2016년 5월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사표가 수리되어 부노회장 박능팔 목사가 직무대행을 한다고 본인이 직접 수차례 답변하였으며 부노회장 박능팔 목사가 임원회 소집을 하였으며 장창만 목사는 단 한차례도 임원회 소집이나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이단 목사 옹호와 직무유기로 두레교회 16인 시무장로 공문 발송-총회 재판국에서 이단의 죄과로 면직출교된 이문장 목사를 즉시 시벌 통보를 하지 않고 총회 재판국 판결문을 고소 당사자인 두레교회 16인 장로들에게 의도적으로 통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단의 재산(두레교회)을 보호하고 수천 명의 두레교회 성도들을 이단에서 격리하여 복음을 수호해야 하는 노회장이 오히려 이단 목사를 감싸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증제 2호)
3) 두레교회 임시당회장 요청 무시-면직출교 판결 후 즉시 두레교회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함에도 16인 장로의 세 차례 긴급으로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임원회 개최를 무산시켜 임시당회장 파송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단 목사를 비호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증제 3호)
4) 이단 목사 옹호와 비호 행위에 대하여 내용증명 통보-장창만 노회장의 주제로 두레교회 분립에 대해 이단 재판은 상회 기관에 일임하고 분립에 임한다고 합의하였으나 2015년 12월 4일 분립 합의 이틀후에 “이단 문제도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이문장에게 보낸 문자로 두레교회 16인 장로들을 기만한 이문장과 장창만 목사의 음모가 들어나 합의가 파기 되었는데 두바협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증제 4호)
5) 총회 재판국 이단재판 건 파기환송 요청-평양노회 재판국에서 이단의 죄과로 [2년 정직]으로 책벌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단의 죄는 면

직출교 해야 한다고 기소위원회에서 총회 재판국에 상고하여 재판이 계류 중인 것을 노회 재판국에서 재판이 잘못되었으니 파기환송 해달라고 총회 헌법 규정에 없는 막가파 행동을 한 것은 평양노회 기소위원장을 장창만 목사가 시무한 록원교회 장로를 임명하여 이문장 이단 목사를 들어내 놓고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교단의 비웃음을 당해 평양노회와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증제 5호)

질의)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이단성 목사로 결정이 되어 총회 임원회와 100회기 정기 총회에서 완전 보고되어 교리상으로 이단 목사로 결정이 되었고 이단적 행위의 죄과로 총회 재판국에서 면직출교된 이단 목사 이문장을 옹호하고 비호한 것은 노회장으로써 있을수 없는 죄과로 노회장의 지위를 면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장창만 목사 스스로 노회장직을 사임하여 노회 임원회에서 결의되었기에 장창만 목사 노회장의 모든 권한은 박탈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101회기 총회 총대 권한을 주장한다면 평양노회 권위와 명예,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권위와 명예가 크게 실추 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회장으로 당연직인 총회 총대권은 다른 노회원에게 승계됨이 옳지 않는지를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9. 교인의 회원권 정지

대전서노회 성광교회 길창호 집사 외1인이 제출한 “헌법해석 요청서(2016.7.25.)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서리집사 임명당시(2016.1.3) 그 이름을 호명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존의 서리집사 28명을 위해 기도하고, 불참자는 서리집사에서 제외한다는 언급없이 임명을 마친 사안에 대하여 임명 당시 불참했다는 이유로 6개월이 지난 후 제직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며(제직이며), 회장(당회장)이 일방적으로 제직회 장소에서 퇴장시킬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금년 1월 3일 임명받고 7월 3일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제직에게 헌법 정치 제19조 ‘교인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라는 법에 근거하여 금년 7월 3일 제직회 명부에서 그 이름을 삭제한 것은 법리왜곡이며, 삭제할 수 없다.”

질의3)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퇴장시킬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서리집사 임명당시(2016년 1월 3일) 그 이름을 호명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존의 서리집사 28명을 위해 기도하고, 불참자는 서리집사에서 제외한다는 언급 없이 임명을 마친 사안에 대하여 임명 당시 불참했다는 이유로 6개월이 지난 후 제직이 아니라 할 수 있는지와, 회장(당회장)이 일방적으로 제직회 장소에서 퇴장시킬 수 있는지

질의2) 금년 1월 3일 임명받고 7월 3일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제직에게 헌법 정치 제19조에 "교인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라는 법에 근거하여 금년 7월 3일 제직회 명부에서 그 이름을 삭제할 수 있는지?

질의3) 헌법시행규정 제14조 제1항에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위의 법 규정에 따라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한 어떤 사실도 없이, 위 헌법 정치 19조에 근거하여 제직회에 참석한 제직을 회장(당회장)이 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장시킬 수 있는지

70. 원로목사 자격

부산노회장 박상수 목사가 제출한 "부노제182-75호, 원로목사 자격 요건에 관한 질의(2016.8.10)"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적용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제7항, 헌법시행규정 제27조(무흠의 기산과 적용) 제3항에 의거 시무정지 6개월로 인해 20년에서 6개월이 부족하여 6개월을 더 시무하면 원로목사의 자격 요건에 부합된다."

질의내용 / 질의 1)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27조 목사의 칭호 7항의 원로목사 자격에 있어서 제3편 권징, 제1장 총칙,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1항 책벌은 다음과 같다. ④ 시무정지 :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치리권(행정권과 권징권)을 정지한다. 에서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27조 무흠의 기산과 적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만일 원로목사 기산일이 행정권 시무정지 6개월로 인해 20년에

서 6개월이 부족하면 6개월을 더 시무하면 원로목사 자격요건 기산일로 셈하는지

71. 원로장로 추대

평양남노회장 박영득 목사가 제출한 “평양남노회 제184-35호, 원로장로 추대에 관한 헌법질의(2016.8.16.)”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이런 경우는 무흠 장로의 이명서를 그 당회에 접수하여 허락받고 등록한 날로부터 20년 이상이면 지교회의 당회,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으면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질의내용 / 1) 장로로 1982년 12월 임직 받고 임직 받은 교회에서 13년간 시무하다 개인사정으로 같은 노회 OO교회의 장로로 이명등록(무흠)(1995.10.1.)을 허락받고, 협동 장로로 출석하다가 공동의회에서 신임결의 받은 후 현재까지 시무하며, 2016년 말에 은퇴하면 한 교회에서 장로로 21년 이상이 되고, 공동의회에서 신임결의 일을 기준으로 하면 만 20년이 약간 부족합니다.

2)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21조(원로목사) 1항” 을 준용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6장(장로) 제44조(원로장로) 1,2항”에 의거 지교회의 당회, 공동의회의 결의로 지교회가 원하면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위와 같은 경우 원로장로 그 기간계산은 그 교회에 같은 노회 소속 교회 무흠 시무장로의 이명서를 그 당회에 접수 허락받고 등록한 날부터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되는지

72. 재판국의 결정과 원칙 / 증거조사

광주노회장 한상영 목사가 제출한 “광노 제30-132호, 헌법 재차 질의(2016.8.12)”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예장총 제100-1039호, 헌법해석통보(2016.6.7)”로 가름하다.

질의내용 / 총회 재판국의 사건 제98-50(제100-39) “재차재항고건”에 관련된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질의 합니다.

1. 이 사건은 광주노회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2. 광주노회에서 불기소 된 것이기에 총회접수 당시 노회 불기소 처분이 합당할 때는 기각했어야 되고 아니면 광주노회에 기소하도록 이첩했어야 할 터인데
3. 총회는 750일이상 김민식 목사를 피고인으로 재판을 진행해 오다가 최근에야 피재항고인으로 결정을 해서 노회로 기소명령을 하였습니다.

질의1) 이것이 과연 적법한지요?

4. 광주노회 기소위원도 모이지 않고 하루 전날 김휴섭 장로가 기소위원장을 찾아가 기소위원장 도장도 없는 재항고장을 총회에 접수하여 기소위원장까지 원고소장에 없는 광주노회 기소위원장을 재항고장에 삽입하여 재항고장을 총회 재판국에 접수 했습니다.

질의2) 이것이 적법한지요?

5. 원 고소자는 이우행, 조대원, 정동길, 김신옥이었는데 이우행을 빼고 김휴섭과 이길룡을 고소자로 추가하여 2014년 7월 7일 총회에 재항고 했습니다. 즉 고소자를 변경했습니다.

질의3) 이것이 적법하며 고소자 변경이 가능한지요?

6. 헌법시행규정 제68조 증거 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결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단, 신문 중에도 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 목사는 지금까지 기소되어 피고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은 지금까지 피고로 취급하여 공문을 보내고 증거조사를 하고 재판을 하였는데 적법한지요?

질의4) 이것이 가능한 일이며 적법한지요?

7. 지금까지 김휴섭 장로를 고소자로 추가하여 재항고장에 접수하여 고소를 진행해 오다가 이제는 추가 고소자의 명단에서 빼고 변호사로 선임계를 총회 재판국에 제출했지만 허락되지 않자 본 재판국 내 권징분과에서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준 것은 적법한지요?

질의5) 총회재판국에서는 허락하지 않는 것을 권징분과에서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이 합법한 것인가요?

8. 헌법 82조 당연히 증거 있는 능력 2항 국가 기관의 확정 판결서 지방검찰의 7건 무혐의 및 각하

(증빙자료 4- ①2013년 제71194호 : 업무상횡령 외(혐의없음)
②2013년 제55911호 : 업무상횡령(혐의없음)
③2014년 제38986 : 횡령(혐의없음)
④2014년 형제 38402 : 횡령 외(혐의없음)
⑤2014년 진정제1065호 : 목회학박사논문(혐의없음)
⑥2015년 제15044호 : 업무상횡령방조(각하)
⑦2015년 제3680호 : 횡령(혐의없음)

고등 법원에 기각 2건 (①2013년 초재23 : 횡령
②2015년 초재224 : 횡령)

대법원에서 기각 : 이와 같이 당연히 증거 있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에서 채택하지 않고 재판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질의6) 지방검찰 7건, 고등법원 2건, 대법원 1건의 증거를 재판국 채택하여 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9.“헌법시행규정 제68조에 증거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7) 김민식은 피고가 된 적이 없는데 증거조사를 받음이 적법 한지요?

10. 총회재판국에서는 예납금 외에 공탁금을 공탁하라고 강요하면서 공탁하지 않으면 재판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위원회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재판비용 예납외에는 그 어떤 금액도 예납요구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재판국 조사위원장인 박ㅅㅈ장로는 상대방의 주장대로 헌법위원회의 해석도 무시하고 공탁금을 공탁하라고 하고 본교회 재정에 관련된 서류(2008년~2013년 회계관련 장부)를 외부에 복사 의뢰하여 유림회계 사무소를 선정 감사케 하고 사실과 거리가 있는 보고서를 제출받아 총회재판국은 그것에 의하여 재판을 하고 기소명령을 하였습니다.

질의8) 이 과정과 이 절차가 합법적인가요?

11. 박ㅅㅈ장로는 제출하라고 한 서류를 모두 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문(기소)에서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음으로 스스로 자인 한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질의9) 이와같이 증거 사실이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박ㅅㅈ장로는 유림회계사무소의 사실과 거리가 있는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김민식에게 협박성 문자로 일반법에 고소 한다고 했습니다.

질의10) 재판국원이 피의자 성격이 있는 자에게 이런(협박성) 행위가 국원으로서 적법한가요?

13. 총회 재판국이 결정문에 기소명령을 하면서 결정문 10페이지 주문과 같이 판결하여 “원심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일금 5,400만원을 김휴섭 장로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질의11) 이것이 무슨 결정입니까? 무슨 판결입니까? 김민식 목사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본적이 없는데 판결이라는 용어가 적법합니까?

14. 김민식 본인이 총회에서 보내온 내용에 의해 광주노회에서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되면 응해야 됩니까? 아니면 총회결정통보에 의한 총회에 재심청원을 해야 됩니까?

73. 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광주노회장 한상영 목사가 제출한 “광노 제30-133호, 헌법추가질의(2016.8.12)”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재판국에 제출해야 한다[헌법 권징 제95조(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1항, 헌법 권징 제108조(상고의 방식 및 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판결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헌법 권징 제95조(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2항, 헌법 권징 제108조(상고의 방식 및 제기기간)] 원심 재판국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재판국에 송부하여야 한다[(헌법 권징 제96조(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 헌법 권징 제109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에 의거 항고장이 없는 ‘이의신청서’ 란 유인물을 가지고 재판을 한 것은 위법이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43조(재판비용) 6항에 의거하여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이 헌법 권징 제66조(재판국의 결정)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기소명령을 하면 상급치리회는 그 예납된 재판비용을 차하급 치리회에 귀속시켜야 한다’에 의거 적법하지 않다.”

질의3)에 대하여 “재항고 사건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에서 기소명령을 하면서 하급치리회가 총회 재판국의 결정문 주문대로 기소하라고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헌법 권징 제58조[고소(고발)인의 조사 및 피의자 신문] 3항 ‘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 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에 의거 피의자에 대한 그 이익이 되는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위법이다.”

질의내용 / 총회 재판국의 사건 제98-50호(제100-39호) “재차재항고건” 에 관련된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2016년 4월 18일자 불법문서인 유림 회계사무소 재정감사 보고서가 맞다고 주장하여 기소명령 결정문을 만들어 광주노회에 송달하였습니다. (기소명령서 주문에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에 귀속한다.)

2016년 4월 26일 “김민식 목사의 죄과사실”에 대하여 광주노회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 김민식에 대하여 죄과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출석요구서를 보내어 피고소인 진술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

지 않았습니다. 진술인의 진술조서도 받지 않았고 총회 기소명령 결정문대로 기소제기하여 광주노회 재판국에 기소하였습니다.

2016년 4월 30일-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노회기소위원회에서 기소장누락 보완하여 재판국에 넘겼습니다.

2016년 5월 31일- 광주노회 재판국에 계류중인 사건을 재항고인 조대원, 김신옥, 정동길 변호인(재항고인측) 김휴섭은 진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처럼 둔갑시킨 재차 재항고장을 위조문서로 만들어 광주노회 기소위원회도 경유하지도 않고 몰래 총회 재판국에 접수하였습니다.

2016년 6월 17일-권징분과장 양OO과 서기인 박OO는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하여 기소명령서를 광주노회에 보냈습니다.(기소명령서 주문에 예납된 재판비용 일금 150만원 중 일금 100만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노회로 귀속하고 일금 50만원은 총회로 귀속한다.)

2016년 6월 25일-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노회 기소위원회는 광주노회 재판국에 제3차 기소명령하였습니다.

2016년 6월 29일-광노제30-13호 광주노회 재판국 진행상황이 총회 재판국에 접수되었습니다. 제2차로 광주노회 기소위원회에서 기소 명령하여 광주노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6년 7월 12일-총회 재판국 권징분과장인 양00과 박00는 김0ㅅ과 탁하여 “이의신청서 1차(7/5), 2차(7/7) 불법괴문서를 접수받아 권징재판국 이0진 전문위원이 ‘불법이므로 할 수 없다’ 고 법률자문하였으나 불법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권징분과 재판결과: 부결) 권징분과 재적국원 7명중 4분의 3의 결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2016년 7월 29일 광노 제30-130호 광주노회 재판국 진행상황이 총회 재판국에 접수되었습니다. 2016년 7월 12일에 권징분과에서 재판을 진행할 때에도 2016년 8월 2일 총회 재판국 합의부에 상정하여 재판을 진행할 때에도 재판정에서 접수된 공문(광주노회 재판진행상황)을 읽어 주었음에도 재판을 강행하여 시무해임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3년 동안 피고가 되어 기소위원회에서 조사한번 받아 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여서 총회 재판국 합의부에서 시무해임 1년을 판결하였습니다.

질의1) 광주노회 재판국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장도 없이 권징분과에서 부결된 재판을 상고장이 없는 ‘이의신청서’ 란 불법 괴문서를 가지고 합의부에서 시무해임 1년을 판결한 것이 과연 적법한지요.

질의2) 예납금은 하회로 보내야한데 결정문에 1차 기소명령을 할 때는 '예납금 150만원을 총회로 귀속한다' 2차 기소명령을 하면서 결정문에는 재판비용 일금 150만원 중 일금 100만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노회로 귀속하고 '예납금 50만원을 총회로 귀속한다'라고 결정문을 발송하였는데 적법한지요.

질의3) 총회 재판국에서는 광주노회 기소위원회에 기소명령을 하면서 토씨 하나 고치지 말고 총회 재판국 결정문대로 기소하라고 명령한 것이 과연 적법한지요.

74. 장로의 직무 / 공동의회 / 책벌의 원칙

익산노회 이리남중교회 이현수 집사 외 2인이 제출한 헌법해석 요청서(2016.6.1)"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속하지 않는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6장(장로) 제39조(장로의 직무)에 의거 범주에 속한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2항에 의거 다룰 수 없다."

질의4)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을 위배한 것이며, 헌법 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2조(항존직),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2항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질의5)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 선택) 제7항에 의거 불법이다."

질의6)에 대하여 "총회 헌법에 규정된 적법한 공동의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질의7)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헌법 제43조 2항에 따르면 "장로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 된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춘수 목사가 이리남중교회에 제출한 청빙이력서의 학위와 경력 허위기재문제를 홍광수 장로가 당회에 알린 점이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 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질의2) 홍광수 장로의 박춘수 목사에 대한 이력허위기재문제 지적은 총회 헌법 정치 제39조에 규정된 장로의 직무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질의3) 총회 헌법 정치 제90조 2항에 따라 공동의회를 개최할 경우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1주일 전에 교회에 일

시, 장소, 안건을 광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돼 있는데, 박춘수 목사는 홍광수 장로 권고사임에 대한 안건을 공동의회 소집일 1주일 전인 2015.5.10 교회 주보에 안건을 광고하지 않고 2015.5.17. 임시공동의회 소집 당일에 광고하지 않은 홍광수 장로의 권고사임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다룰 수 있는지

질의4) 박춘수 목사를 포함한 이리남중교회 당회가 2015.5.17 임시공동의회에서 홍광수 장로 권고사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시도한 점은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26조 7항의 "헌법 권징 제4조 1항,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 를 위배한 것은 아닌지

질의5) 박춘수 목사를 포함한 이리남중교회 당회가 박춘수 목사의 이력허위기재 문제를 당회에 알린 홍광수 장로를 권고 사임시키기 위해 2015.5.17 공동의회를 개최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6) 박춘수 목사를 포함한 이리남중교회 당회가 박춘수 목사의 이력허위기재 문제를 당회에 알린 홍광수 장로를 권고 사임시키기 위해 2015.5.17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한 것은 총회 헌법에 규정된 적법한 공동의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질의7) 박춘수 목사의 이력허위기재문제를 당회에 알린 홍광수 장로를 권고 사임시키기 위해 개최한 2015.5.17 임시공동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는 홍광수 장로 권고사임 안에 대해 투표로 결의하고자 할 때, 홍광수 장로를 포함한 위 안수집사들이 사회자 박춘수 목사에게 홍광수 장로 권고사임 안 처리를 반대한다며 강단으로 가던 중 진행위원들과 실랑이를 한 것이 공동의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 것인지

75. 당회장 / 재판의 원칙 / 제직회 / 책벌의 종류와 내용

서울서노회 희성교회 우동화 은퇴 장로 외 변호사 김병헌 장로가 제출한 "헌법 질의서(2016.6.16)" 건과 "헌법질의사항 추가 및 기제출 헌법질의사항 일부(2016.6.24)" 건과 "헌법질의 자료추가 제출(2016.6.24.)" 건

해석 : 질의1) ①위5의 나1)~3),5)에 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제3항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2항, 3항 '대리당회장은 위임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 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에 의거 위헌이다."

②위5의 나4)에 대하여 "총회헌법사례집 총회 제91회기 헌법위원회보고서 해석27(당회장 제직 임명권 남용의 효력): "당회장은 헌법 제2편(정치) 제10장(당회) 제66조(당회장) 4항 및 제67조(당회직무) 4항에 의거 제직임명권이 있으나 그 임용권을 남용하여 종전 서리집사 28명중 23명을 제외하고 5명만을 재임용한 것은 임용권의 남용이고 그 남용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법이다" 로 해석했다. 본 질의에서 대리당회장은 "헌법시행규정 제30조2항 후반부 - 단,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에 의거 서리집사를 임명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 할 수 있으나 기존 서리집사 480명중 293명을 제외하고 187명만 서리집사로 임명한 것은 대리당회장의 임용권의 남용이요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법이다"

③위5의 다1),2),질의2),질의3)에 대하여 "권징권 행사와 관련된 결의에 대하여는 대리당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당회결의는 교단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1항, 제6조(책벌원칙) 1항,2항에 의거 무효이다.”

질의4)에 대하여 “위5의 나4)에서와 동일하게 당회결의는 무효이다.”

질의5)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1조(제직회) 4항,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직무) 9항(기타)에 의거 당회에서 제직회 직무와 상충되는 결의를 하였을 경우 제직회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질의6)에 대하여 “정직 판결 확정된 방충근 목사는 헌법 제3편(권징)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제1항 6호와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16조의 12(정직과 직무와 관계)에 따라 목사의 신분은 유지하되 정직기간동안 신분이 정지될 뿐이며 “대리당회장이 헌법시행규정 정치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2항 후반부 헌법정치 제68조 제8항의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에 의거 당회장실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의 당회결의는 명백한 규정위반으로 무효이다”

질의7)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질의내용 / 1. 우동화는 희성교회 은퇴장로로 황태주 대리당회장이 소집하여 회집된 당회에서 당회 결의로 장로직에서 제명되고 교회출입까지 금지 처분을 받은 희성교회 교인입니다.

2. 2015.8.25자 총회 재판국이 희성교회 당회장 방충근 목사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제6호 규정중 정직 2년의 판결이 선고된 후 희성교회 당회는 2015.9.29.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0(유기책벌과 당회장권) 제1항에 따라 원로목사 황태주를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하여 동일부터 교회 대리당회장의 지위에서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제2항 규정의 대리당회장의 권한 범위에서만 교단 헌법 정치 제68조(당회의 직무)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3. 황태주 목사는 대리당회장의 지위에서 2015.9.29.부터 2016.4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헌법 조문의 규정이나 헌법해석에 위배한 당회 결의를 한 바 있으나, 이 결의는 당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의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각 당회 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헌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4. 가. 헌법시행규정 제30조(대리당회장의 권한 범위) 제2항 규정의 범위를 헌법 정치 제67조 3항(당회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정)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거나 혹은 제16조의 8의 4호의 사유로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청한 경우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4항 장로,집사,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교단 헌법 정치 제68조 4항 장로집사 권사의 임직에 관한 당회 결의의 위법

나. 위 헌법시행규정 제2항의 교단 헌법 정치 제68조 제4항과, 7항의 임직권 및 권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임직권 및 권징권을 행사한 당회 결의의 위법

다.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30조 2항 후문 단서 당회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인사권이 없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인사권에 관한 당회의 결의 위법

라. 교단 헌법 정치 제91조(제직회) 제직회는 다음과 같다. 제4항 제직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는 제직회의 자주조직권에 관한 규정에 위배함과 동시에 교단 헌법 정치 제68조(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9항 기타(제직회나 공동의회 직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행할 직무의 범위를 위배하여 제직회 조직을 개편한 당회의 결의 위법

마.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 질의 해석) 제6항 헌법해석 권한이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면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중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 부분에 위배하여 헌법위원회 해석의 선례에 반하는 당회 결의

1) 헌법위원회의 해석(예장총 제98-707호)에 위배하여 임의로 제직회 조직 개편에 관하여 한 당회 결의 위법
2) 헌법위원회의 교단 헌법 정치 제66조(당회장) 제67조(당회의 직무) 제4항의 당회장의 서리집사 임명권 남용은 그 남용의 정도가 명백 중대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헌법해석에 위배하여 2015.12.27. 2013년도 서리집사 480명중 293명을 제외하고 187명만 임명토록한 당회 결의는 위법

바. 2016년 1월 당회 결의로 방충근 목사에 대하여 한 목양실에서의 퇴거를 내용으로 하는 당회 결의는 권징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제1항 6호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2(정직과 직무와의 관계) 규정에 위배된 불법 결의 등으로 모두 교단 헌법 규정 및 헌법해석에 위배하고 그 위배의 하자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할 뿐만 아니라 정의 관념에도 위배함으로 당연 무효입니다.

5. 위 각 당회결의가 모두 위법하여 당연 무효인 이유

가. 황태주 대리당회장의 당회장권의 범위에 관한 시행규정 제30조 2항 규정에서 동인은 항존직 임직권 권징권 부동산 관리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서리집사를 임명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위배된 당회 안건을 포함한 교단 헌법 규정에 위배한 당회 안건을 심의키 위해 당회를 소집한 행위, 소집된 당회에서 당회장의 지위에서 그 안건을 당회에 회부하여 당회원들로 하여금 표결토록 회의를 진행한 행위는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이 위법하여 결의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당회의 결의임으로 이 결의를 기초로 한 대리당회장의 위 각 결의집행 행위와 그 광고 행위 역시 당연 무효인 것입니다.

나. 항존직 임직권과 인사권 행사 관련된 당회의 위법 결의에 관하여

1) 황태주 대리당회장의 소집으로 2016.1월 회집된 당회에서 동인의 회의진행으로 홍표철 장로, 지용근 안수집사, 배효원 안수집사, 이란희 권사 등에 대한 제명 또는 권고사직케 하는 내용의 당회 결의
2) 황태주 대리당회장의 소집으로 2015.11월 회집된 당회에서 동인의 회의진행으로 한 손수경 장로에 대한 대표기도 보류키로 한 결의

3) 황태주 대리당회장의 소집으로 2015.11. 회집된 당회에서 동인의 회의진행으로 한 배효원 안수집사에 대한 회계직 직무를 정지케 한 후 박성태 장로를 회계로 임명한 당회 결의

4) 황태주 대리당회장의 소집으로 2015.12월 회집된 당회에서 동인의 회의집행으로 기존의 서리집사 480명중 293명을 제외하고 187명에만 서리집사로 임명하는 결의

5) 황태주 대리당회장의 소집으로 2016.4월 회집된 당회에서 동인 사회로 진행된 당회에서 등록된 교인인 구상회외 75명에 대하여 이명증서 미제출이라는 이유로 회원권을 잠정 정지시키는 내용의 당회 결의

질의1) 위 5의 나 1)~5)의 당회 각 결의는 인사권이나 임직권이 없는 대리당회장의 당회 소집으로 회집된 당회에서 동인의 사회로 위 각 안건을 회의안건으로 상정하여 당회원으로 하여금 의결케 한 것이므로 그 의결은 교단 헌법 특히 헌법시행규정 제30조 2항에 위배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 무효로 사료되는바, 귀 위원회의 견해는

다. 권징권 행사와 관련된 당회 결의의 위법에 관하여

1) 황태주 대리당회장의 소집으로 2016.1.회집되어 동인의 사회로 진행된 당회에서 우동화 은퇴장로, 손수경 장로, 문영준 안수집사, 강동권 집사, 김용소 집사, 김지한 집사, 김재석 집사에 대한 제명 결의

2) 황태주 대리당회장의 소집으로 2016.2 회집되어 동인의 사회로 진행된 당회에서 이병구 은퇴장로 외 16명, 우동화 은퇴장로 외 25명에 대한 출입을 금지시킨 당회 결의

질의2) 소집권한이 없는 대리당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당회 결의는 소집절차 및 의결 방법에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단 헌법 권징 제4조(재판의 원칙) 제1항 제6조(책벌원칙) 1항,2항에 규정된 대원칙에 위배하여 한 결의임으로 당연 무효라 사료되는바, 귀 위원회의 견해는

라. 헌법선례 해석에 위배한 위법

질의3) 위 나의 2)의 손수경 장로에 대한 장로 사임 처리가 경료되었음을 전제로 대표기도 보류의 당회 결의는 예장총 제98-706호 헌법위원회의 장로의 사임 처리에 관한 해석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임처리할 수 없다는 해석)위배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귀 위원회의 견해는

질의4) 위 나의 4)의 서리집사 임명은 2007.1.18자 서울강북노회장 박귀동 목사가 제출한 질의에 대한 해석에서 서리집사 28명 중 23명을 제외한 서울강북노회 한샘교회 이용철 목사의 제출의 진정서를 참고로 받고 종전 헌법해석에 근거에 따라 임명권의 남용으로 무효라 판단한 선례에 반한 서리집사 임명 행위로 무효라고 사료되는바, 귀 헌법위원회의 견해는

마. 헌법규정에 위배한 각 당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질의5) 대리당회장 황태주 목사의 소집으로 2015.11월에 소집으로 회집된 당회에서의 제직회 조직 개편 결의는 무효입니다. 교단 헌법 제91조(제직회) 4항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는 제직회 자주조직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존중하는 교단 헌법 정치 제68조(당회 직무) 제9항 기타(제직회나 공동의회의 직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모두어 보면 제직회 결의없이 황태주 대리당회장이 소집하여 2015.11 회집, 당회를 하여 동인의 사회로 진행된 당회에서 기존 제직회 28부서 7개 위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당회 결의는 위 각 법문 규정에 위배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판단되는 바 귀 위원회의 견해는

질의6) 정직 판결에 확정된 당사자인 방충근 목사는 교단 헌법 권징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제1항 6호 규정과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2(정직과 직무와 관계) 규정에 따라 목사의 신분은 유지하되 정직기간 동안 신분이 정지될 뿐인데 황태주 대리당회장으로 소집된 2016.1 회집되어 동인의 사회하에 진행된 당회에서 방충근 목사가 마치 면직판결을 받아 목사의 신분까지 박탈되었다는 전제하에서 당회장실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의 당회 결의는 위 각 규정에 위배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판단되는데 귀 위원회의 견해는

질의7) 황태주 대리당회장 목사는 위에서 본 부정행위 이외에 방충근 목사에 대한 각 종 소송을 직접 제기하거나 사람을 시켜 제기시켜 교인들을 괴롭게 하고 있어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출입하지 않고 있어 대리당회장의 적격성에 대하

여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귀 위원회의 견해는

76. 이단에 관한 특별사면(해지)방법과 선포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최성광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부 제100-328호, 이단에 관한 특별사면(해지)방법과 선포에 대한 헌법 질의(2016.8.5)”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합법적이지 않다”

질의내용 / 1. 지난 제100회 총회시 총회 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를 총회 특별위원회로 구성토록 허락해 달라” 는 청원사항을 총대들이 받아들이기로 결의하여 금회기에 한시적으로 특별사면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2. 따라서 특별사면위원회는 허락된 청원내용 그대로 특별사면을 시행하도록 제100회 총회에서 허락받을 줄 압니다.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사면을 시행하는 형식과 사면방법도 [총회 보고서 p978~979]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총회특별사면위원회는 사면형식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범위 내에서 특별사면(해벌)”을 하는 것을 명시하였고, 사면방법도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질의) 이단사이비에 관하여 본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처리해 온 운영지침과 그동안의 절차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이단사이비문제에 대한 결의를 한 후, 그것을 다가오는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 석상에서 허락을 받아야 확정됨이 현행 헌법 범위 내에서의 절차였습니다. 그러면 특별사면위원회가 이단사이비에 관련한 사면(이단해지 등) 결과를 제101회 총회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총회 전에 이단사이비에 대한 사면(해지)을 총회장이 발표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요?

77. 공동의회 / 재판 및 책벌의 원칙 / 적용범위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오균섭 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2016.8.1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합병한 교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락을 받아야 유효하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제1항,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7항에 의거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위임목사, 담임목사)가 된다. 공동의회의 의장은 당회장이 한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제1항, 제6조(책벌의 원칙)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2항, 제3항에 의거 무효이다.”

질의내용 / 질의1) 봉천교회/세광교회는 2015년 11월 15일 통합되어 [새봉천교회]가 되었는데 새봉천교회가 탄생하기 전인 2015년 11월 1일 공동의회를 열어 [새봉천교회 정관]을 제정하였는바, 이 정관은 유효한 정관인지요?

질의2) 공포는 당회장이 아닌 공동의회 의장이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지요?

질의3) 새봉천교회 정관 제14조는 헌법 제3편 권징 제26조 제2항에 배치되므로 무효 조항이 아닌지요?

78. 재판국원의 합의방법

여수노회장 김봉구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42-19호, 유권해석 질의(2016.8.30.)”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41조(재판국원의 합의방법)에 의거 처리하면 된다.”

질의내용 / 본 교단 헌법 권징 제2장 재판국, 제2절 총회 재판국, 제13조 의결방법, ‘재판국 회의는 재판국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1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절 노회 재판국, 제19조 의결방법, ‘제13조 의결방법의 규정은 노회 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회 재판국에서 권징 사건(위탁재판)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변론 종결을 선언한 후, 책벌의 종류까지 결정하였습니다. 차기 재판일자에 판결이유를 채택하고 선고하는 절차만 남았는데 재판국원 일부가 의도적으로 결정된 시벌에 불만을 품고 세차례나 출석하지 않아서(재판국원 9명중 1명 입원, 3명 불참), 노회 재판국에서는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1) 위와 같은 경우에도 권징 제19조 의결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요

질의2) 위 상황에서 여수노회 재판국이 권징 제19조 의결방법을 지켜야 한다면, 여수노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79. 특별 전문사역 부문(청소년 교육 등)” 에 타국 시민권자인 교수의 포함여부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이사장이 제출한 “시행법인 사무국2016-067호, 총회 헌법

제21조 2, ②항의 특별전문사역 부문 적용에 대한 해석 질의(2016. 9. 5)”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교회의 직원이 될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타국 시민권자인 교수도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 제21조 교회의 직원의 구분

1.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2.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선교사역자
   ②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전문사역 부문(청소년교육 등)
   ③ 해외선교사

총회 헌법 제21조 2, ②항에서 타국시민권자인 교수는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전문사역 부문(청소년 교육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1) “②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 전문사역 부문(청소년 교육 등)” 에 타국 시민권자인 교수의 경우 총회 헌법에서 인정하는 제21조 ‘교회의 직원’ 이 될 수 있는지

질의2) 총회 헌법에서 인정하는 ‘청소년 교육 등’ 의 특별전문사역 부문’ 에 타국 시민권자인 교수도 포함되는지?

80. 고발기간과 취하 / 기소장의 변경

익산노회 새소망교회 황철규 목사 외 3인이 제출한 ‘헌법질의서에 대한 유권해석(2016.9.5.)’ 건

해석 : 질의1),2),3)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익산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와 익산노회 재판국의 유죄 선고는 무효이다.”

질의4)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 헌법시행규정 제60조(고발인의 자격, 방식, 취하, 송달과 화해) 제3항에 의거 공소시효 도과로 인하여 무효이며, 또한 송달일 도과로 인하여 고소(고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질의5)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78조(기소장의 변경), 헌법시행규정 제69조(기소장의 변경) 제1항, 제3항에 의거 재판의 중대한 하자이므로 원인무효이다.”

질의6)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3절(노회 재판국) 제21조(전문위원)에 의거 위법이다.”

질의7)에 대하여 “기소위원회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신문한 후 신문조서에 본인의 자필서명이나 날인을 하는 것은 조서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서명, 날인, 간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확인절차가 없어, 재판에 현저히 불이익이 초래되었다면 그 재판은 절차상 잘못되었기 때문에 위법이다.”

질의내용 /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일 : 2013년 8월 19일

고소에 적용한 총회 헌법 개정(신설)일 : 2014년 12월 8일

죄과를 범하였다고 고소인이 고소한 날 : 2015년 11월 5일

고소장이 기소위원회에 접수된 날 : 2015년 11월 13일

기소위원회 기소일 : 2015년 12월 30일

원심재판국(익산노회) 선고일 : 2016년 4월 25일

질의1) 상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의할 때 행위일(죄과를 범한 날:2013. 8.19)은 총회 헌법 권징 죄과에 미리 죄과를 정해 놓지 아니하여 입법화 즉, 죄형법정주의가 부존재(입법불비)하였기 때문에 설혹, 고발인의 고발에 대하여 피의자가 죄가 인정된다 하도라도 2014년 12월 8일에 비로소 신설된 죄과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

질의2) 질의1)항의 소급적용이 위법이라면 익산노회의 기소위원회에서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 이후의 신설된 죄과를 적용하고, 소급입법하여 피의자들의 죄과를 유죄로 보고 기소하였다면 동 기소위원회의 기소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

질의3) 또한 동 기소위원회의 기소장의 내용에 터 잡아 익산노회 재판국에서 판단하고 피의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면 동 재판국의 선고는 기소위원회의 무효를 전제로 한 판단이어서 무효라고 판단되는데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

질의4) 총회 헌법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 1)제1항에 의하면 ‘고발은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과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발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 8월 19일의 행위에 대하여 2015년 11월 5일 고소,고발한 것은 공소시효 도과로 인하여 원인무효로 보아야 하며, 2)헌법시행규정 제60조 3항에 의하면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도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산노회장은 2015년 11월 5일 접수한 고소(고발)장을 2015년 12월 8일자로 송달(34일경과) 하였으므로 고소(고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

질의5) 총회 헌법 권징 시행규정 제69조(기소장의 변경) 제1항에 의하면 '기소위원장이 기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권징 제7-7서식에 의한 기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하면 '전항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국장이 임의로 기소내용을 추가하여판결하고 선고한 것은 총회 헌법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검사의 기소가 없으면 재판부가 판단할 수 없다' 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재판의 중대한 하자이므로 원인무효에 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귀 위원회의 해석

질의6) 원심재판국(익산노회 재판국)의 과오에 대한 질의로 익산노회 재판국은 재판석(재판국장의 오른쪽 자리)에 고문의 명패를 놓고 국원들과 같이 고문에게도 법복을 입고 앉게하여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고문(타노회 은퇴목사)은 재판국장에게 잘문을 지시하거나, 피고인에게 묻기도 하고, 피고인의 답변에 자기 의견을 여러차례 개진하였으며 국장은 고문이 재판에 관여하게 하는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위화감과 판결에 불리한 영향력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는 재판의 절차상 심각한 흠결로서 재판의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귀 위원회의 해석

질의7) 헌법시행규정 제62조 제4항에는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2조 제5항에는 '전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 주어야 하며,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제6항에 의하면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 라고 규정하여 기소위원들이 피의자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반드시 피의자에게 조서를 확인케 하고 그 조서에 날인토록한 후가 아니면 피의자의 조서 즉 기소위원회의 기소조서로서의 효력 자체가 없기에 기소위원장의 기소처분 자체가 무효이어서 기소위원장의 기소장을 토대로 관할 재판부가 재판을 하여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자체를 상실하여 무효라고 판단되는데 귀 위원회의 법리에 대한 판단은 어떠하신지

81. 탈퇴한 지교회의 무지역노회 가입 여부

평양남노회 박영득 목사가 제출한 “평양남노 제184-7호, 공문이첩(2016.5.9)” 건과 “평양남노 제184-14호,지역노회 탈퇴한 지교회의 무지역노회 가입에 대한 질의(2016.5.20)” 건과 상삼교회 김수태 목사가 제출한 “질의서(2016.4.29.)”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교회 설립에 대해 헌법 정치 제2장(교회) 제10조(지교회의 설립),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6조(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의 처리)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87회, 제89회 총회 결의와 제95회 총회에서 ‘00노회 경계 밖에 있는 교회는 00노회 가입은 불가하다. 즉 지역 내 기존교회는 타 지역노회 가입은 불가하다’라고 재결의하였다. 그리고 제98회 총회헌법위원회 해석 83번 ‘종전 소속노회와 신규로 가입할 노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지역노회에 소속되었던 교회가 무지역노회로 가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질의서에 기재된 ‘상삼교회 현 상황에 따른 부연 설명과 자료 등’ 을 살펴 판단하건대, 이런 경우 상삼교회 성도들이 무지역 노회(평양남노회)에 가입을 원하여 청원하였고, 무지역 노회인 평양남노회가 가입청원을 승인하였다면, 평양남노회(무지역 노회)는 상삼교회를 회원명부에 등재해야 할 것이다.”

질의2)에 대하여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질의내용 / 1. 상삼교회는 목사가 3개월 이상 공석인 상황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하였는데.....전북노회는 “사전에 노회 허락을 득하지 않은 청빙” 이라면 담임목사 청원을 불허하고 전북노회의 전횡 중에 상삼교회 당회원 5명 중 3명만을 정직 2년이라는 판결을 내리므로 당회를 분리시켰으며, 청빙 받은 담임목사를 소속 노회에 고소하여 목사면직을 요구하였고, 노회 재판국에서 기각 처리되자, 총회 재판국에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여 동일하게 목사직을 면직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전북노회는 지교회를 돌아볼 책임은 회피하고 권력만 휘두르고 ..... 목사 청빙은 당회 결의로 집행한 일임에도 당회원중 일부만 정직 처리함으로 공예배중에 처리받은 장로가 기도한다고 하여 치리받지 아니한 장로가 기도문을 빼앗는 일이 생기고.....이 일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이 생겼으며 새로

청빙받은 목사로 인하여 좋은 소문을 듣고 그동안 불출교인이 새로이 출석하며 모이던 중에 이 일리 생기자 교인들 중 합동측 교회로 옮겨 가기에 이르자.....견디다 못한 상삼교회는 전 교인의 뜻을 물어서 전북노회를 탈퇴하였습니다(2014.4.25, 실로암 선교신문 게제/전북노회에 내용증명 발송 및 팩스 송신).

2. 전북노회가 평양노회와 총회에 고소한 건에 대하여는 "전북노회가 교회를 돌아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을 질책하였으며 모두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3. 총회 재판국의 판결(기각)이 있은 후에....."전북노회와 손잡은 손00 장로가 "전북노회 탈퇴와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이단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퍼트림으로 순진한 일부교인들(자녀들 포함하여 약 17명)이 이탈하여 바로 길 건너에 '영광교회를 개척' 하였는데....전북노회는 이탈한 '영광교회' 쪽에 편을 들어 교회명칭을 상삼교회로 바꾸게 한 다음 다시 전북노회에 가입케 하였습니다. (현재 가입되었음)
4. 이로써.....지금은 엄연히 다른 두 개의 독립교회로 분리되었고, 전북노회는 2014. 11. 24일자 기독공보에 올린 노회 촬요에는.....서유만 목사를 담임목사를 청빙한 것을 게재하였으며 이중에 상삼교회가 주소를 옮긴 것처럼 허위로 게재한 것은 엉큼한 속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2014.4.25.일 전북노회 탈퇴를 선언한 이후로 전북노회는 현 상삼교회에는 노회 일자 고지나 기타 어떤 연락도 있었으며.....이탈한 '영광교회' 에 있는 분들만을 노회에 참석케 한바 있습니다.
6. 이런 상황에서 상삼교회 교인들은 현 담임목사가 소속한 노회에 가입하기를 원하였고 만장일치로 담임목사에게 노회 가입 건에 대하여 위임한 상태입니다.
7. 이후 무지역 노회에 가입청원을 하였으나 전북노회 측에서는(추우 당시 전북노회장 김기범 장로를 만나서 확인한바 전북노회의 뜻이 아닌 일부 몇 사람의 뜻이었음)노회 가입 청원한 해당 노회를 찾아가서 "상삼교회와 잘 해 볼테니 노회에서 받지 말고 시간을 달라" 고 하는 등 훼방하였고 물론 그에 따른 어떤 제스추어도 없었고 지금껏 노회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8. 최근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 힝존 직분자를 세워야 할 형편인데 노회가 입이 수차례 미루어지자 교인들은 조급해하며 "통합측 노회

만 주장하지 말고 독립교단으로 가자" 고 하는 상황인데 단지 담임 목사에 대한 예를 다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노회가입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9. 2016. 4. 28일 현재 상삼교회는 무지역 노회에 가입청원을 한 상태이고 해당 노회는 전북노회의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헌법위원회의 질의응답에 따라서 가입을 허락하기로 한 상태로 헌법위의 질의응답을 기다리고 중입니다.

질의1) 상삼교회는 교회 설립요건 헌법 정치 제10조의 자격 요건을 구비하여 무지역 노회에 교회 설립 청원을 할 경우 저희 교회는 무지역 노회로부터 교회의 지위를 득할 수 있는지

질의2) 교인들의 뜻에 따라서 독립교단으로 가게 될 경우 .....현재의 담임목사의 목사권은 유지되는 것인지

82. 경동노회장 임종수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44-98호, 헌법해석 질의(2016.8.5.)"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2절(기소) 제66조(재판국의 결정) 제1항에 의거 60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적법하지 않다"

질의2),3)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2절(기소) 제66조(재판국의 결정) 제1항에 의거 60일내 기간에 심문하는 것은 적법하다."

질의4),5),6),7),8),9),10)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11)에 대하여 "헌법 권징 부칙 제1조에 의거 적법하지 않다. 개정헌법은 공포 후 효력이 발생한다."

질의12),13),14),15),16),17),18)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19)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8조(부목사,전도사의 연임청원) 제3항에 의거 적법하다(부목사)."

질의20),21)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재판국 권징분과(이하 '총회 재판국' 이라 함)에서 재항고인의 재항고 건에 대하여 총회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60일 이내가 아닌 "6개월 이상(2015.11.25.~2016.6.8.)다루다가 기소명령 결정을 내린 것" 은 적법한지

질의2) 위의 재항고건을 총회 재판국에서 다루면서 서류심사 또는 증빙자료가 아닌 "해당 기소위원장과 재항고인, 원피고소(고발)인들을 수차례 소환하여 직접 조사하고 심문하는 등 재판을 진행한 것"

이 적법한지

질의3) 노회 기소위원회에서는 재항고인을 조사한 적이 없어 재항고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데 총회 재판국에서 위 2항을 진행한 후 노회 기소위원회에 기소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법한 지

질의4) 총회 재판국에서 재항고 사건에 대하여 노회 기소위원회로 기소명령을 하면서 “책벌의 범위 즉, 면직출교, 3년 이상 상회 총대 파송금지, 목사 정직 2년, 노회 기소위원회 해산 등을 결정하여 기소를 명령한 것” 이 적법한지

질의5) 총회 재판국에서 행정쟁송과 관련하여 무효 판결통보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에게도 통보되었음) “서기가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하여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않은 죄과를 적용하는 것” 은 적법한지

질의6) 재항고인에서 당회장권 정지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재항고인의 이의신청 등으로 경정하는 과정에서 오고 간 행정행위에 대하여 “문서의 위,변조로 판단하는 것” 이 적법한지

질의7) 총회 재판국(행정쟁송분과)에서 2016년 1.12(사건번호 예총 제100-14호) 안강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즉시 활동을 멈추고 지난 4월 정기노회(2016.4.5)시 지난 활동보고를 끝으로 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총회 권징 재판국에서 재항고인의 이유없는 억지 주장을 인용하여 “재차 해제하라” 는 명령이 적법한지

질의8) 위 7항의 수습전권위원회를 “재차 해체하라” 는 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회 임원회와 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기에게 “가중 처벌하도록 기소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법한 지

질의9) 총회 재판국의 재항고 결정 이유에서 경동노회 서기부에서 재항고인의 고소(발)장 접수시 흠결부분을 보완하여 접수하라고 한 행정행위가 “헌법의 업무방해와 부정한 방법으로 노회를 운영한 행위” 로 판단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10) 재항고 결정 이유에서 경동노회 서기부의 흠결보완 요청과 경동노회 기소위원회의 절차를 밟아 재접수하라고 반려한 것이 “경동노회 임원들과 노회 기소위원회가 함께 모의한 것” 으로 판단하여 총회 재판국이 “불기소(각하)에 해당하는 행위” 로 판단한 것이 적법한 지

질의11)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재항고인의 부전지에 의한 고소(발)장 접수 당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반려(2015.11.16.)한

것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에서는 새로이 개정되어 공포(2015.12.8.)된 헌법을 적용하여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적법한 지

질의12) 총회 재판국이 재항고된 사건에 대하여, 기소되지 않은 재항고 사건을 총회 재판국이 직접 조사하여 자판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13) 국가법(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부)에서 결정하여 소집된 회의를 “교회수습전권위원장과 서기가 막지 못했다” 는 이유로 “총회 헌법과 제규정을 위반한 행위, 직무유기, 타인에게 범죄케한 행위”를 적용, 판단하여 판결한 것이 적법한지

질의14) 재항고인을 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고소(발)한 사건을 노회기소위원회에서 불기소처분한 것을 재항고인이 수습전권위원장과 서기를 무고의 이유를 들어 “성경상의 중대한 위반행위, 총회 헌법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위반행위” 로 판단한 것은 적법한 지

질의15) 총회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항인 기소 결과를, 총회 재판국에 즉시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적법한 지

질의16) 국가법원에서 판결받은 “재항고인의 안강제일교회 출입금지 가처분” 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에서 재항고인의 출입을 명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법성

질의17) 위 16항에 대하여 재항고인의 출입을 방해할 경우 “가중처벌의 기소를 명령”한 것이 적법한 지

질의18) 총회 재판국이 재항고인이 제기한 피고발인 외의 사람들 즉, 동조하는자, 협력하는 자를 고소(발)없이도 “기소명령”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19) 안강제일교회 당회장인 재항고인이 고의적으로 정상적인 당회가 열지않아 부목사를 전도목사로서의 청빙 결의한 것과 관련하여 그 지위(전도목사)가 결의 무효되었을 때, 그 지위가 부목사인 것이 적법한지

질의20) 위 19항의 부목사를 총회 판결 이후 정기노회 보고서에 안강제일교회 목사로 보고한 것을 두고,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않은 죄과와 직무유기의 죄과에 해당하는 책벌을 하는 것이 적법한 지

질의21) 총회 재판국이 재항고 결정에서 경동노회 임원회와 기소위원회가 “함께 모의했다” 는 근거없는 이유를 들어 “경동노회 기소위원회를 전원 교체하라” 고 명령한 것이 적법한 지

83. 목사의 칭호 / 원로목사 / 집사, 권사의 자격

서울강동노회 동성교회 김영진 장로가 제출한 “총회헌법질의(2016.8.9.)” 건

해석 : 질의Ⅰ,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7항, 헌법시행규정 제21조(원로목사)에 따라 대리당회장(헌법 정치 제67조 3항, 헌법시행규정 제30조 2항, 3항)이 사회로 진행하여야 한다.”

질의Ⅰ,2)에 대하여 “헌법 등 실체적, 절차적 규정을 위반한 문서이므로 효력이 없다.”

질의Ⅰ,3)에 대하여 “발언권의 허락여부는 사회자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질의Ⅱ,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6장(장로) 제40조(장로의 자격), 제41조(장로의 선택), 제8장(집사 및 권사) 제51조(집사의 자격), 제53조(권사의 자격), 제54조(집사, 권사의 선택)에 의거 선출한다.”

질의Ⅱ,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9조(당회의 회집)에 의거 회집한다.”

질의Ⅲ,1),2),3)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질의Ⅳ)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89조(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 1항, 2항, 제91조(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 및 조치의 적용 범위)에 의거 처리하면 된다.”

질의내용 / 질의Ⅰ,1)‘원로목사 예우에 관한 당회원 일부 비공식합의서’ 문건을 2016년 1월 3일 공동의회에서 보고하여 채택한 행위는 총회 헌법 제27조 7호 및 헌법시행규정 제21조[원로목사] 규정에 따라 은퇴청원 또는 (정년)은퇴행위가 사전 불이행되었고, 원로목사 추대 및 예우처리절차는 당회 결의후, 공동의회의 의결 절차로 순서대로 이행되어야 하며 각각의 회의 경우에도 목사 본인의 예우 등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 대리당회장 등이 사회,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총회 헌법 제90조(공동의회)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①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예산 및 결산, ③직원선거, ④상회가 지시한 사항외에는 결의할 수 가 없다. 이상과 같이 실체적 및 절차적 법규 위반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공동의회에서 ‘보고하고 채택한 건’의 효력은?

2)‘원로목사 예우에 관한 비공식합의서’ 의 보고 채택 건이 만일 하자와 결함이 있다면 일부 당회원이 합의한 ‘원로목사 예우에 관한 비공식합의서’ 문서의 성격과 효력은?

3)공동의회 의사일정과 관계없이 회원중 1명이 발언권을 얻어 장로 3~4명에 대한 비난성 발언을 하였으나 끝까지 주의 및 중지 조치 없었으며, 또한 해당 장로들에게 해명 발언을 요구하였으나 그 누구에게도 발언권은 주지않고 끝남에 따라 현재까지 발언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거나 명예가 훼손된 상태로 상존하고 있다. 사회자가 주의, 중지 및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명예회복 등 사후 조치 방안은?

질의Ⅱ,1)당회에서 결의한 것은 총회헌법규정 범위 내에서 우리 교회 실정 및 관행에 따라 장로 후보자는 전체 안수집사 중 45세 이상~65세이하인 자로, 안수집사와 권사는 전체 서리집사를 대상으로 뽑는 신정 기준을 自律的으로 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피선거권의 자격과 요건을 (당회)결의한 것이된다. 당연히 자격 미달자가 발생하면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45세 이상인 자로서 당초 명단에서 누락된 안수집사 해당자는 당연히 후보자 명단에 포함시킴으로써 회원의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만일 자격 미달자가 장로 후보자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서리집사에서 장로 후보자와 안수집사 후보자 자격을 동시에 부여하는 구성상 모순점이 발생되는 것이고, 형평성의 문제가 된다고 본다. 이와같이 피선거권을 박탈되거나, 결격자가 후보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진행되었다면? (선거행정에 반영)

2)(당회운영관련) 직원선거는 중요한 선거로서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충분한 기도와 시간을 갖고 준비할 이유가 있다고 본다. 또한 아쉽게도 당회 소집시기는 공동의회와는 다르게 헌법상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5월 8일(주일) 치러지는 직원 선거를 1주일 앞둔 5월 1일(주일) 선거(진행)와 관련한 최초의 임시당회 개최 건을 당회 서기를 비롯한 당회원들이 회의 당일에서야 알게 되었고, 예배시간 30분 전에 소집되었기, 후보자 자격실질심사, 투표용지제작, 선거에 관한 방법 절차 등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할 수 없었다, 정기 당회라면 모르지만 임시당회를 당일 날 개최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기도나 준비없이 결정하는 제도이고 형편이라면 장로회 대의 민주정치에 있어 의사결정과정과 방식에 심대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총회 선거관련 규정 및 회의 규칙 또는 회의 일반원칙(조리법)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교회 당회 소집에 관한

법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는? (한편 우리 교회는 당회 소집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질의Ⅲ.1)공동의회 및 제직회의시 어떤 안건 등이 처음 상정되어 소속 회원이 정당한 회원권(질문 및 질의 및 토론)을 가지고 이의 신청, 규칙발언, 의사진행 발언 등을 요구 하였음에도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이의가 없으므로 당연히 후속 제청 및 토론도 없을 것임)이는 회의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우선적 처리 의무" 규정 위반 및 장로회 대의민주정치 원칙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를 간과하고 진행된 회의 및 통과된 안건 등에 미치는 영향은?

2)공동의회 또는 제직회의시 이의를 신청했음에도 사회자로부터(원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안건에 대한 긴급동의,이의제기 등 발언할 수 있는 방법은?

3)위에서 '갑','을','병' 모두 성립과 효력에 관한 문제 등으로 견해가 갈릴 때에는 사후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는 바, 회의중 이의신청(후속적으로 제청 및 토론 등)등이 원만히 진행되어 회의, 안건 모두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방법과 요령은?

질의Ⅳ) 헌법시행규정 제36조 6호 규정에는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로 규정 되어있다. 접수받은 기관이 시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 등이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84. 노회의 분립,합병,폐지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100-1141호, 서류이첩 중 '정치부장 전두호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부 제100-252호, 헌법대로 시행 촉구 청원(2016.6.27)'"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1장(노회) 제82조(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3항에 의거 2016년 12월 31일(2014년 기준)까지 노회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지된다"

질의내용 / 현 총회 산하 66개 노회 중 조직교회 30개 미만인 노회 [2014년 기준, 5개 노회 서울남(20), 인천동(27), 전북동(26), 남원(29), 김제(22)]에 관하여는 총회 헌법 정치 제11장 제82조(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3항(노회가 설립된 후 설립기준 미달로 2년이 경과되면 노회가 폐지된다)에 따라 헌법대로 시행해 달라는 요청의 건

85. 소송절차 / 치리회의 권한 / 책벌의 종류와 내용 / 위탁재판의 청원

경동노회장 임종수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44-131호, 헌법 질의의(2016.9.8.)” 건

해석 : 질의1),2),6)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54조의 3[고소(고발) 및 기소의뢰의 제한)에 의거 책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9장(치리회) 제63조(치리회의 권한) 4항, 헌법 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1항에 의거 노회의 결의에 의해 구성된 수습전권위원회를 총회 재판국이 해체하라고 할 수 없다.”

질의4),5)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제1항 제8호, 헌법시행규정 제72조[위탁재판의 청원, 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제7항[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제5호에 의거 가중 처벌할 수 없다.”

질의7)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7장(시벌 및 해벌) 제142조(시벌방법) 제3항, 제5장(상소) 제3절(상고) 제120조(집행과 종국판결) 제4항에 의거 총회장이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경동노회 치리회장을 상대로한 행정소송에서 ‘치리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무효임을 확인한다’ 는 판결주문을 받았을 때, 행정행위와 함께 권징으로써 치리회장과 임원인 부노회장을 함께 처벌 또는 가중처벌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2) 치리회장이 행정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할 때, 부노회장이나 임원들도 같은 임원이기 때문에 치리회장과 같은 행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처벌 또는 가중처벌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3) 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중에 ‘총회 재판국의 최종판결 결정으로 인하여 자동해체 된다’ 고 판결을 받은 것이 총회 재판국의 판결결정으로써 자동해체가 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4) 총회 재판국의 최종 판결결정(2016.1.12)으로 ‘수습전권위원회가 자동해체된다’ 고 하여 그 후 안강제일교회의 수습과 관련한 어떤 모임이나 활동도 전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총회 재판국의 최종 판결결정 이후 정기노회(2016.4.5.) 각 부 및 위원회 보고시, 전 수습전권위원장 및 전 서기가 보고서의 내용 [수습전권위원회 구성(2015.10)~총회 재판국의 최종 판결결정일(2016.1.12)까지의 활동한 것] 을 노회원들의 허락으로 보고한 것이, 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의 연장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적법한 지

질의5) 또한 위4의 수습전권위원회가 한 활동을 전 수습전권위원장과 전 서기가 정기노회에서 지난 활동상황을 보고한 것이,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응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6) 총회 재판국의 최종판결로 “대리당회장의 결정이나 결의가 무효하다” 라고 했을 때, 대리당회장이 행정행위는 권징으로써 처벌 또는 가중처벌을 가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7) 치리회장(당회장,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 누가 집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86. 장로의 자격 / 선택 / 임직

충주노회장 김길수 목사가 제출한 “충주노회-150호, 장로가택 청원에 관한 헌법해석의뢰(2016.9.8.)”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6장(장로) 제40조(장로의 자격) 제41조(장로의 선택) 제42조(장로의 임직), 제10장(당회) 제64조(당회의 조직) 제2항에 의거 선출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저희 교회는 세례교인 125명이고 시무장로님이 4인으로 2017년에 3인의 장로님이 70세 정년으로 은퇴하시게 되어서 정상적인 당회원 구성에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새로이 장로님을 선출하기 위하여는 1)당회결의와 2)시찰회 허락을 받고 3)노회 정치부의 심사를 통과하여 4)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에 5)교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고 6)상당기간 교육과정을 거쳐 7)노회에서 장로고시에 합격한 후에 8)교회에서 안수받고 난 후 9)담임목사님의 해당교회 당회원임을 선포함으로 비로소 장로로 또한 당회원으로서의 자격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치자면 아무리 빨라도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바 그렇다고 현재까지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온 장로님들이 미리 조기은퇴 하여서 당회가 공백이 생기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현재의 당회를 유지하고 은퇴 후에 바로 새로운 당회원이 공백을 채워서 교회를 정상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뜻입니다. 저희 교회는 헌법에 규정대로 2017년 3인의 장로님들의 정년은퇴에 대비하여 은퇴로 발생되는 당회원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미리 행정적으로 절차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질의) 총회 헌법 정치 제64조 2항에 관하여 위 헌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세례교인 30명에 2인의 장로를 세울 수 있고, 그 후에는 30인

에 1인의 장로를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차후에 현 시무장로 은퇴시기가 예정되어 있을 때 당회원의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당해 교회에서 미리 장로 선출을 준비하기 위하여 장로 가택청원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87. 치리회의 권한 / 노회의 직무

총회 규칙부장 최수남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부 제100-405호, 서류반려(2016.9.12.) 건중 서울서노회장 장재도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94-13호, 규칙질의 해석 요청의 건(2016.6.21)”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9장(치리회) 제63조(치리회의 권한) 제6항, 제11장(노회) 제77조(노회의 직무) 제2항에 의거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질의내용 / 1. 2015년 10월 22일경 마포교회 김영재 장로 외 1인이 제출한 ‘탄원서’가 노회에 접수되어 제92회 제14차 임원회의(2015.10.26)에서 정치부로 보내기로 결의함.

2. 제93회 정기노회(2015.10.29)시 정치부에서 상기 ‘탄원서’를 다루기로 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보고함

3. 노회 정치부에서는 ‘탄원서’ 에 대하여 ‘마포교회소위원회’ 를 구성하고, 탄원서의 원고측을 만났음(1~2월 중)

4. 이후 마포교회 당회는 상기 ‘탄원서’ 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개인과 당회의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바 탄원서의 1부를 받아보기를 원해 2월 25일자, 3월 16일자 협조공문을 보냈다’ 는 내용을 담은 협조요청서(2016.3.24./별첨2, 참조)를 본 노회에 발송함.

5. 노회 정치부에서는 제94회 정기노회(2016.4.28)시 총회 규칙부에 상기 공문내용과 상황에 대하여 규칙 질의하기로 결의함.

질의) 상기 ‘탄원서(마포교회 김영재 장로 외 1인)’ 에 대하여 노회 정치부가 ‘마포교회 당회에서 열람 및 복사본을 요청하였다’ 고 해서 거기에 응해야 하는지

88. 교인의 정의 / 이명과 직원 / 책벌의 원칙

땅끝노회 관춘교회 김영복 집사 외 1인이 제출한 “헌법질의서(2016.9.19.)”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3장(교인) 제13조(교인의 정의),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12조

(이명과 직원) 제1항에 의거 김영복 집사와 김금수 권사는 관춘교회 교인이다.”

질의2)에 대하여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위임목사, 담임목사)가 된다[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제1항], 제4항 ‘미조직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당회장은 당회의 직무[제68조(당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위탁재판) 제121조(위탁재판의 청원), 헌법시행규정 제72조[위탁재판의 청원, 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제3항, 제5항에 의거 관춘교회는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로, 위탁재판 없이 권징 할 수 없다.”

질의내용 / 목사님이 회계를 맡아 교회 돈을 목사님 돈처럼 사용하다가 나중에 회계집사에게 인수인계 하였으나 수입은 있으나 지출 잔액이 없어서 3,000만원이 증발되어 목사님에게 여쭤봤더니 김세동 담임목사가 300만원은 인정하고 교인 앞에서 사과하고 변제하겠다던 분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져서 김영복 회계집사와 부인 김금수 권사를 교인이 아니다고 교회 출입문에 출입금지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질의1) 회계부정을 저지른 담임목사께 문의한 회계집사와 그 부인 권사에게 보복으로 교인등록을 안했다 이명증서를 첨부 안했기 때문에 교인 아니다고 교회 유리창 및 주보에 부쳤는데 저희들은 목사님 권유로 등록도 하였고 앞에 강단에 나와서 인사도 하였습니다. 이명증서는 한번도 제출하라는 명도 없었고 제출의무도 없고 무흠계산이 필요한 경우는 제출하라고 하겠지만 교회가 임직한 적도 없습니다. 교인이기에 회계집사를 시켰고 차량운행 등을 시켰지 않습니까 권징 6조에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교인이 아닌지

질의2) 땅끝노회에서는 노회장 허락도 없이 질의서 및 이의제기서를 반려하였는데 정치 제67조 4항을 미조직교회의 단독 당회장권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당회장 횡령문제로 당사자 문제를 권징 없이 교인 아니다는 애매모한 광고를 하였다 당회장권으로 위탁재판도 없이 권징할 수 있는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504호(연지동,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http://www.pck.or.kr 전자우편 : thepck@pck.or.kr
대표전화 : 02-741-4350 발 행 : 행정재무처(2021.11.24.)